

백서 [VIII]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14.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발 간 사

2018년 10월 27일 새벽 2시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2017년 3월 초순경 언론이 이탄희 판사의 법원행정처 겸임해제 사건을 보도하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1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은 실질적인 조사는 하지도 않고 조사 시늉만 하였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그해 11월에 대법원은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추가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원에서 진일보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 자료의 입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법원은 2018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였고 그해 5월 25일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른바 대법원 3차 진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상당했다. 그러나 이후의 과정은 국민들의 실망과 한탄과 우려만을 낳았다. 특별조사단이 그 조사내용을 공개하는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국민들은 대법원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믿었으나 대법원은 결국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민변은 2018년 5월 25일 위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는 직후에 50여 명의 회원들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T/F는 먼저 사법농단 관련 전체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적인 분석과 해설을 한 '이슈리포트'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이슈리포트는 언론에 배포하는 용도였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참고하기를 바랐다.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이슈리포트가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전언이 있었다.

사법농단 수사의 1차적인 어려움은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이었다. 수사 단초로서의 압수수색 영장이 번번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통상 90%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사법농단 수사에서는 발부율이 10% 미만이었다. 10%의 영장발부율도 그나마 '사법행정왜곡' 사건에 대하여 발부된 것이고 '재판관여' 사건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발부율은 1% 정도였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은 영장전담판사들이 전면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형국이 되었다. 심지어 유해용 변호사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단으로 반출한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즉시 폐기처분하였고,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휴대폰을 파괴하거나 폐기처분하였다. 법원의 전, 현직 판사들은 한몫이 되어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폐기하고 각종 영장을 기각하면서 국민을 기만하였다.

이에 T/F에서는 민변 역사상 최초로 1인 시위를 결정하였다. 민변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과 동문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에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변호사들에게 1인 시위는 그리 친숙하지 않았다. 경험을 해본 변호사들도 있었지만 상당수 변호사들

은 1인 시위를 처음으로 하였다. 더욱이 그 장소가 일상 재판을 하러 다니는 법원이었으므로 마음이 불편 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음으로 양으로 이를 격려해주는 판사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많은 위로가 되었다. 민변 사상 처음으로 연인원 1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1인 시위에 동참하였다. 지부에서도 독자적으로 1인 시위를 하였다. 민변 회원들이 사법농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굳센 의지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와중에 드디어 임종현이 구속되었다. 임종현은 원세훈 댓글공작 사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범의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사건 등 사법농단의 핵심적 지위에 있었기에 그의 구속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2019년 1월 24일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판사들은 엘리트 집단으로 통칭된다. 늦은 밤까지 서초동의 거대한 법원 건물은 불빛이 꺼질 줄을 모른다. 판사들은 그 불빛을 정의의 나침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또한 자부심을 느꼈을 터다. 1990년대 중반부터 법조비리의 대책으로 법원은 판사들과 변호사들을 포함한 일반인과 사이에 장벽을 치기 시작하였다. 변호사가 판사를 방문할 때에는 방문대장에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다음에는 허가를 받으라고 하였고 이윽고 유리문으로 막아버렸다. 유리장벽이 변호사와 판사들 사이의 비리를 막는 장치라고 한다면 판사들은 다른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더 지속하려고 노력했어야 한다. 상고법원의 방안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올바른 방법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행 방법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안만을 절대시하였고 심지어 이를 위하여 국가권력에 아부하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사법농단의 매듭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부터 풀어야 한다. 판사들은 수사를 하는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누가 감히 누구를 수사하느냐는 반발을 하였다. 검찰이 순수하고 결점이 없어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검찰의 문제는 검찰개혁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법원은 통상 90%를 상회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을 보여왔다. 법원은 압수수색에 있어서 피의사실 '관련성'의 개념을, ① 압수수색시점 시점으로, ②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③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로 환원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동종 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④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라면,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왔다. 그것이 사후적으로 전혀 압수수색의 계기가 된 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환부 내지 폐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오직 사법농단 사건 관련하여만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혹은 '압수대상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없다'는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적어도 법원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에서만은 최소한의 기본을 지켜야 했다. 법원 판결의 정당성은 헌법이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였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기초하는 것

이다.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존립의 근거가 되는 반면 이러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얻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불가침의 독립성을 헌법이 보장하는 이유는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요 특징은 이들에게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예견하였던 바이다. 민변은 이러한 예견에 근거하여 특별재판부에서의 재판을 요구해왔다. 다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국면이다.

민변은 또한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였다. 2021년 2월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사법농단 판사들은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정직 1년에 불과해 설령 징계절차를 통해 최고 정직 1년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들이 언제든지 재판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재판업무 배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파면을 통해 영구적인 재판업무 배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직 피해자들의 구제까지 험난하고 기나긴 여정이 남아 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사법농단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변은 혼신의 노력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단죄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결국은 법원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변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모든 분들은 사법개혁의 소망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 백서가 사법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되었으면 한다.

2021. 5. 10.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변호사 천 낙 봉

목 차

1. T/F 구성현황	백서 [I]
2. 사법농단 일지	백서 [I]
3. T/F 회의 일지	백서 [I]
4. 법원 조사보고서	백서 [I]
5. 사법농단 관련 문건	백서 [II]
6. 공동고발장	백서 [III]
7. 이슈페이퍼	백서 [III]
8. UN 법관과 변호사 독립 특별보고관 긴급청원	백서 [III]
9. 사법농단 관여 법관 시민사회 탄핵소추안	백서 [IV]
10. 사법농단 관련 특별법 법안	백서 [V]
11. 사법농단의 기록 [민주변론 기고]	백서 [V]
12. 사법농단 관련 토론회 등 자료집	백서 [VI]
13. 성명, 논평 등	백서 [VII]
14.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백서 [VIII]
15. 법관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	백서 [IX]

14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사법농단 관여 법관 형사 판결문

□ 개요

-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형사재판은 현재(2021. 5. 26.) 모두 계속중이며, 확정판결은 없음.
-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형사재판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음.

순번	피고인	사건명	진행상황		
			1심	2심	3심
1	임종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8고합1088 (2019고합68, 2019고합176 병합) 계속중		
2	1. 양승태 2. 박병대 3. 고영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9고합130 계속중		
3	유해용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9고합186 2020. 1. 13. 무죄선고	서울고등 2020노132 2021. 2. 4.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2485 계속중
4	1. 이민걸 2. 이규진 3. 방창현 4. 심상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9고합187 2021. 3. 23. 선고(일부유죄)	서울고등 2021노546 계속중	
5	1. 신광렬 2. 조의연 3. 성창호	공무상 비밀누설	서울중앙 2019고합188 2020. 2. 13. 무죄선고	서울고등 2020노531 2021. 1. 29. 항소기각	대법원 2021도2486 계속중
6	임성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9고합189 2020. 2. 14. 무죄선고	서울고등 2020노471 계속중	
7	이태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서울중앙 2019고합190 2020. 9. 18. 무죄선고	서울고등 2020노1756 계속중	

- 이하 수록한 판결문은 다음 7개임.

-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3. 선고 2019고합186 판결(피고인 유해용의 1심 판결문)
- ② 서울고등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32 판결(피고인 유해용의 2심 판결문)
- ③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19고합187 판결(피고인 이민걸, 이규진, 방창현, 심상철의 1심 판결문)
-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188 판결(피고인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의 1심 판결문)
- ⑤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노531 판결(피고인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의 2심 판결문)
- 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189 판결(피고인 임성근의 1심 판결문)
- ⑦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고합190 판결(피고인 이태종의 1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8 형사부

판 결

사 전 2019고합18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
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법규위반, 절도

피 고 인 A

점 사 신봉수(기소), 단성환, 박주성, 최태은, 김현우, 김진혁, 고영하, 김
진용, 이주용(공판)

변 호 인 범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범무법인(유한) D 담당변호사 E, F
변호사 G, H, I

판 결 선 고 2020. 1.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란 공시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인의 경력 및 J법원 K·L연구관 재직 당시의 지위·업무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6. 2. 10.경까지 J법원 K연구관으로, 2016. 2. 11.경부터 2017. 2. 8.경까지 J법원 L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J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등을 위해 J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J법원 재판연구관들을 지휘하고 근무평정, 사무분담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L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상고심 계속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하여, 직접 또는 K연구관 등을 통해 신전 및 심증검토 사건의 지도·검토를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사건 배당을 주관하는 한편, 'M위원회'의 간사, 'N 회의'의 주재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상 및 검토 등 전 과정을 관할하는 등 모든 재판연구관들을 지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아니한 사건 중 L연구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행정·조세·형사·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신전 및 심증검토 사건의 지도·검토를 관장하며 당해 재판연구관들을 지휘하였다.

나. O의 경력 및 P기관 차장 재직 당시의 지위·업무

O은 2012. 8. 13.경부터 2015. 8. 11.경까지 P기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8. 12.경부터 2017. 3. 19.경까지 P기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O은 P기관 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J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P기관장을 보좌하여 '국

- 1) 'M위원회'는 전원합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 6. 29.경 AD법관 행정회의에서 통과되어 만장여권 제도로 2017. 6.경까지 운영되었음
- 2) 'N 회의'는 M위원회에서 논의할 사건을 선별하기 위하여 L연구관이 주재하는 회의로서, K연구관, 6개 공동조의 총괄연구관, 전속조 재판연구관 중 선임, 기획법관 등 총 10여명이 참석함
- 3)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J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3조 제1항



회, 행정부처 등 대외관계 업무', '재판사무 감사 및 재판에 대한 사법지원 업무', '법관 인사·징계 및 비위조사 업무', 'L·K연구관 근무 평정' 등은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일체를 처리하고, P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주위적 공소사실】

가. 범행 배경

'KQ'이라는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R과 S 부부는 2013. 12.경부터 대통령 관저를 비공식적으로 드나들며 T 대통령의 비용성형 시술을 해주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깊은 친분을 맺게 되었다.

'시술용 실 삽입장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KQ은 2014. 4. 8.경 다른 의료기기 업체의 위 특허권 관련 특허등록무효심판 청구로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2014. 9. 23.경 특허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있을 후, 위 청구 업체의 불복으로 2014. 10. 8.경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의 위소를 구하는 등록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특허법원은 2015. 11. 19.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청구 업체의 상고로 2015. 12. 14.경 사건을 접수한 J법원은 2016. 3. 24.경 상고를 기각하였다.

T 대통령은 위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2015. 4.-8.경 R으로부터 '재판이 오래 걸리고, 특허무효 인용률이 높으며, 특허청에서 파견 나온 기술심리관이 법대에 법관과 열석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관련 특허소송 문제점들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은 뒤, U수석비서관 V에게 위 특허소송 진행상황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며 위 문건을 전달하였고, 2015. 9.-10.경 R



등으로부터 재차 위 특허소송 상대방에 대한 불안사항을 듣게 되자, V에게 '상대 회사에서 선임한 특허 전문 법무법인 W가 전관예우를 받는 곳이어서 ㈜Q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니 법무법인 W의 수입건수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2015. 12. 14.경 위 특허등특무요 사건이 J법원에 접수되자, V에게 위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R의 위 특허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V에게 관련 지시를 하였다.

한편, P기관은 2015. 8.경 청와대 X비서관 Y으로부터 위 특허소송 관련 '특허분쟁이 장기화 지연되고 특허청 파견 기술심리관이 법원과 열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대리인인 변리사와 유착되어 사건의 결론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 내용을 전달받고 그 무렵 '민원 해결 방안으로 법원이 자체 채용할 수 있는 기술심리관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X비서관실에 전달하는 한편, 이후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X비서관실 특의 요청에 따라 '최근 3년 간 및 5년 간 법무법인 W의 연도별 사건 수입 현황' 자료, '㈜Q이 당사자로 진행 중인 다수의 특허분쟁 사건의 진행내역' 자료, 판결문 등을 X비서관실에 제공하였다.

나. 범행 사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J법원 L연구관으로서 J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등을 위해 J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건의 지도·검토를 관장하고 사건 배당을 주관하는 등 재판연구관을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O은 P기관 차장으로서 청와대 등 행정부처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각종 보고 업무 등을 위해 P기관 소속 심의관



을 자취·감독하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및 법관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O은 2016. 2. 중순경 Y으로부터 '원재 J법원 재판 중인 Z호 특허등복무효 사건이 대법원의 관심사건이니 쟁겨봐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사항을 전달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청와대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Z호 사건의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O은 법관 및 기술심리관 정원 증원, 헌법재판소·특허청과의 의견대립 시 협조 요청, 재외 공판 법관 파견 확대 등 J법원장과 P거판가 원하는 사항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의 요구 자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 AA 소재 J법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B조 총괄 재판연구원 AC에게 위 특허등복무효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한 것을 지시하여 2016. 3. 2.경 AC로부터 '사안요약'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전달받은 O이 그 무렵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위 특허등복무효 사건의 내용, 처리계획, 당사자들 간에 갯송 중이던 다수의 관련사건에 대한 진행경과 및 사건처리 계획 등 재판부 내부의 검토 방향이 정리되어 있었는바,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과 심리 계획에 대한 정보를 청와대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 유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선 넘어 위법하며, 청와대를 통해 소송당사자의 일방인 R 측에 제공될 경우 재판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J법원 재판연구원 AC에게 각종 사법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재판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



한 지시를 함으로써 AC로 하여금 위 특허등록무효사건의 상고심 및 관련 재판의 진행 경과·처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J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AD법관이 직접 검토하는지 여부, 재판연구관이 보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특허조사관이 작성한 기술검토서 내용 등의 정보는 당해 소송의 일방 당사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제공될 경우 재판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중대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O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각종 사법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AC가 작성한 위 '사안 요약' 문건을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그 부령 위 '사안 요약' 문건을 Y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문건에는 R 관련 Z호 사건이 2016. 1. 21.경 공동조인 AB조에 해당된 사실, 주심 AD법관이 AE AD법관인 사실, AF 특허조사관이 기술검토 중인 사실, 2016. 3. 중순경 보고연구관이 주심 AD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과 함께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가. 범행 배경

'NQ'이라는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R과 S 부부는 2013. 12.경부터 대통령 판저를 비공식적으로 드나들며 T 대통령의 이용성형 시술을 해주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깊



은 친분을 맺게 되었다.

'시술용 실 삽입장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㉞Q은 2014. 4. 8.경 다른 의료기기 업체의 위 특허권 관련 특허등록무효심판 청구로 특허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2014. 9. 23.경 특허심판원의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있는 후, 위 청구 업체의 불복으로 2014. 10. 8.경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등록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지만, 특허법원은 2015. 11. 19.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청구 업체의 상고로 2015. 12. 14.경 사건을 접수한 J법원은 2016. 3. 24.경 상고를 기각하였다.

T 대통령은 위 특허 분쟁과 관련하여 2015. 4.-8.경 R으로부터 '재판이 오래 걸리고, 특허무효 인용률이 높으며, 특허청에서 파견 나온 기술심리관이 법대에 법관과 열석하고 있어 재판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관련 특허소송 문제점들이 기재된 문건을 건네받은 뒤, U수석비서관 V에게 위 특허소송 진행상황을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며 위 문건을 전달하였고, 2015. 9.-10.경 R 등으로부터 제차 위 특허소송 상대방에 대한 불만사항을 듣게 되자, V에게 '상대 회사에서 선임한 특허 전문 법무법인 W가 전관예우를 받는 곳이어서 ㉞Q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으니 법무법인 W의 수입건수가 과다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하였으며, 2015. 12. 14.경 위 특허등록무효 사건이 J법원에 접수되자, V에게 위 특허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R의 위 특허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V에게 관련 지시를 하였다.

한편, P기관은 2015. 8.경 청와대 X비서관 Y으로부터 위 특허소송 관련 '특허분쟁이 장기간 지연되고 특허청 파견 기술심리관이 법관과 열석하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대리인인 변리사와 유착되어 사건의 결론을 불리하게 몰아가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민원 내용을 전달받고 그 무렵 '민원 해결 방안으로 법원이 자체 채용할 수 있는 기술심리관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X비서관실에 전달하는 한편, 이후 2015. 12. 18.경까지 사이에 청와대 X비서관실 측의 요청에 따라 '최근 3년 간 및 5년 간 법무법인 W의 연도별 사건 수임 현황' 자료, 'KQ이 당사자로 진행 중인 다수의 특허분쟁 사건의 진행내역' 자료, 판결문 등을 X비서관실에 제공하였다.

나. 범행 사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J법원 L연구관으로서 J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등을 위해 J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건의 지도·건토를 관장하고 사건 배당을 주관하는 등 재판연구관을 지휘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O은 P기관 차장으로서 청와대 등 행정부처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각종 보고 업무 등을 위해 P기관 소속 심의관을 지휘·감독하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및 법관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O은 2016. 2. 홍순경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J법원 재판 중인 Z호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Z호 사건의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홍순경 서울 AA 소재 J법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B조 총괄 재판연구관 AC에게 위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2016. 3. 2.경 AC로부터 '사안요약'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전달받은 O이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위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내용, 처리계획, 당사자들 간에 정송 중이던 다수의 관련사건에 대한 진행경과 및 사건처리 계획 등 재판부 내부의 검토 방향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과 심리 계획에 대한 정보는 사법부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 유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J법원 재판연구원 AC에게 사법부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특정 재판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처리 계획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AC로 하여금 위 특허등록무효사건의 상고심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J법원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AD법관이 직접 검토하는지 여부, 재판연구원 AC가 보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시점, 특허조사관이 작성한 기술검토서 내용 등의 정보는 당해 소송의 일방 당사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제공될 경우 재판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중대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O은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AC가 작성한 위 '사안요약' 문건을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그 무렵 위 '사안요약' 문건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문건에는 R 관련 Z호 사건이 2016. 1. 21.경 공동조인 AB조에 해당된 사실, 주심 AD법관이 AE AD법관인 사실, AF 특허조사관이 기술검토 중인 사실, 2016. 3. 중순경 보고연구관이 주심 AD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과 함께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3. 절도,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범행 경위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이하 '검토보고서 등')는 최종심인 J법원의 법리 판단 및 재판 합의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에 따라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된다. 또한, 검토보고서 등에는 상고심 사건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정리되어 있고, 그 자체가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J법원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J법원에서도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헌법적 가치인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로의 무단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검토보고서 등에는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고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내용'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정보의 주체인 상고심 소송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관여된 재판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이익 도모 등 해당 재판 외의 목적이나 법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동의한 바도 없어,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검토보고서 등의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J법원 민사 AG조 총괄 재판연구관 AH 등 분야별 담당조의 총괄 재판연구관에게 자신이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 재직 당시 작성된 각종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모아달라고 지시하여 AH 등으로부터 재판연구관



예정인 사실과 함께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보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3. 절도, 공공기록물관리예외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범행 경위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이하 '검토보고서 등')는 최종심인 J법원의 법리 판단 및 재판 합의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이고, 이에 따라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된다. 또한, 검토보고서 등에는 상고심 사건에 관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정리되어 있고, 그 자체가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되어 J법원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J법원에서도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헌법적 가치인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로의 무단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검토보고서 등에는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고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성명, 사건번호, 사건내용'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정보의 주체인 상고심 소송당사자들이 자신들이 관여된 재판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이익 도모 등 해당 재판 외의 목적이나 법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동의할 바도 없어,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검토보고서 등의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J법원 민사 AG조 총괄 재판연구관 AH 등 분야별 담당조의 총괄 재판연구관에게 자신이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 제작 당시 작성된 각종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모아달라고 지시하여 AH 등으로부터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문서파일 최종본이 저장된 USB 등 외장저장장치를 전달받는 등 2014. 2. 13.경부터 2017. 2. 8.경까지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검토보고서 지도·검토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로부터 검토보고서 등의 문서파일이나 출력물을 직접 전달받거나,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검토보고서 등의 문서파일을 다운로드·출력하는 방법 등으로 검토보고서 등의 문서파일 내지 출력물을 소지·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경 AI법원 부장판사로 인사발령을 받아 J법원을 떠나면서, 위와 같이 소지·관리하던 검토보고서 등 문서파일 내지 출력물을 J법원에 반환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AI법원 내 피고인의 사무실로 무단 반출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2. 13.경까지 사이에 법관 사직을 결심하며 향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재직할 경력과 함께 위 검토보고서 등을 사건 수입 및 변론 활동에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 사실

검토보고서 등은 재판연구관이 J법원장의 명을 받아 J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공공기록물로서 상고심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J법원 심리 및 판결 과정에서 검토된 법리 관련 쟁점들을 담고 있어 현재 J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리는 물론 향후 채택할 수 있는 법리도 알 수 있는 자료라는 점 등에서 변호사들의 변론 및 수입 과정에 사 그 활용가치가 높아 변호사 업계 등에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J법원 전산시스템인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다수의 검토보고서 등을 수시로 검색·출력·



이용할 수 있는 권한, 검토보고서 등 지도·검토 권한을 가지고 각종 소송사건에 관한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등 상고심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검토보고서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은 대한민국의 자산으로서 J법원이 관리하는 출력용지를 이용하여 출력한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이므로 J법원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만 재판연구관 등에게 그 사용 및 소지가 허용되어 있을 뿐, 목적 외의 사용이나 취득·반출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경 AI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에 서 퇴임하면서, 그 무렵 AI법원 피고인의 사부실에서 그곳에 있던 검토보고서 등 전자 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반출한 후 2018. 3.경 피고인이 개업한 서울 AJ, AK호 '변호사 A 법률사무소' 등에 보관·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록물인 별지 검토보고서 등 목록 순번 1부터 22까지의 검토 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상고심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같은 목록 순번 23부터 47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48부터 58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절취하였다.

4.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부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조비리의 주요한 원인인 소위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판사·검사 등으로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은 J법원 K연구관으로 재직하였을 당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 학교법인 AL을 상대로 J법원에 상고한 AM 사건(이하 '이 사건 상고심 사건')⁴⁾와 관련하여 2015. 1. 2.경 주심AD법판이 지정된 후 AX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통해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여 2015. 2.경까지 담당 재판연구관의 상고이유 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휘·지도하고, 그 신건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주심 AD법판이 2015. 3.경 심층검토를 지시하자, 그 무렵 AX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통해 심층검토를 담당할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경 L연구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7. 2.경 AI법원 부장판사 발령을 받아 J법원 재판연구관실을 떠날 때까지 직접 또는 K연구관 등을 통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휘·지도하여 심층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을 취급하였고, 2018. 2. 13.경 법관직을 퇴직하여 2018. 3. 13.경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급하였던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2017. 12. 22.로 선고 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기일이 추정되었고, 2018. 5. 14.경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으며, 원고 측에서는 1·2심에서는 승소하였는데 갑자기 J법원 소부에서 심리하지 않고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 원고 패소 확지로 파기될 경우 2007. 5.경부터 2012. 5.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으로 AL에서 일 단 납부한 약 73억 원을 되돌려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매년 약 14억 원 상당의 대부료까지

4)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2. 5. 10. 원고(학교법인 AL)에게 부과된 73억 원 상당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에서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의 상고로 2014. 11. 11. J법원에 접수됨



지불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고, AN대학교 총장 AO 등은 학교법인 AL 이사인 변호사 AP를 통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소위 '전관예우'가 가능한 고위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긴급히 물색한 뒤 2회에 걸친 긴급회의 끝에, 피고인이 위 사건이 J법원에 계속 중일 때 총판을 했던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으니 소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8. 6. 초순경 AP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연구원 및 L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여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31.경부터 2018. 6. 9.경까지 J법원 L연구원 AQ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수임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면서 관련 소송 정보를 취득하고, 2018. 6. 11.경 학교법인 AL과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법원에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며, 그 직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학교법인 AL에서 원하는 대로 J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취소되었고, 수임 17일 만인 2018. 6. 28.경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였다.

판 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1. 변호인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2항 중 가. 범행배경 부분은 마치 피고인이 R, S 부부의 특허분쟁



초기부터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하여 P기관과 함께 관여한 것처럼 법원으로 하여금 착각이나 예단을 불러일으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고, 공소사실 4항 중 학교법인 AL이 피고인을 선임하게 된 경위, AQ L연구관과의 연락, 해당 수임사건 처리결과등 기재한 부분은 공소사실 특징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마치 전판에우물 이용하여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기재한 것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2.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J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J법원 L연구관인 피고인은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청와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P기관 차장인 O과 공모하여, 2016. 2. 하순정 피고인의 J법원 사무실에서 AB조 총괄 재판연구원 AC에게



J법원 Z 특허등록무효 사건(이하 '야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이라 한다)의 내용 및 처리제척,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AC로 하여금 이에 관한 문건(이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O에게 위 사건이 2016. 1. 21.경 AB조 재판연구관에게 배당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하고, O은 그 무렵 청와대 X비서관 Y에게 이를 제공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Y'을 '사법부 외부의 설명불상자'로 변경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범죄유형이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굳이 주위적 공소사실의 특징이나 그 내용 전달에 지장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청와대를 통해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관측 당사자인 R 측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제공될 경우를 가정하고, 위 사건이 2015. 12. 14. J법원에 접수되기 훨씬 이전의 대통령과 R과의 관계, 대통령이 당시 R으로부터 들었다는 불만내용,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상대 회사 대리인인 법무법인 W의 수입진수 과다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U수석비서관 V에 대한 지시사항, 청와대 X비서관 Y이 O에게 전달하였다는 청와대 요청사항, 법무법인 W의 연도별 사건 수입 현황 등 P기관가 청와대 X비서관실에 제공하였다는 자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정리된 내용이 청와대를 통해 R 측에 제공될 경우의 효과 등이 '범행배경'란과 '범행사실'란에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증거조사결과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재 자체로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유죄 내지는 부정적 심증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매우 예민하고 중대한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가운데 O



에게 청와대 요청사항을 전달한 사람과 O으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받은 사람을 모두 변경 전 공소사실에 장황하게 기재했던 대통령, R, 청와대 U수석비서관과 X비서관과의 관련성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로 변경하고, O 이 청와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목적이 J법원장과 P기판가 원하는 사항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도 삭제하였다. 이를 보면 당초 O의 범행 동기가 이러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한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려는 쪽에 매우 특별한 비중을 두고 기소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식의 공소장변경은 자칫 입증의 대상인지 또는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한 증거조사 전에 미리 형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건에 대한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진술하게 하는 결과가 되거나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도 허용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피고 회사 운영자가 당시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사건의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에 관하여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청와대 전달자라는 공범 O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다소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는 직무행위의 목적과 필요성·상당성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 예비적 공소사실도 기소 전과 달라진 증거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는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



을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참예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수임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이 범조비리 주요원인인 이른바 '전판예우'를 근원적으로 축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피고인이 수임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제1, 2심 결과 73억 원 상당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J법원 선임 또는 L연구관이 일반적으로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휘·지도한다는 사실,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자 위 사건의 원고 측이 이른바 '전판예우'가 가능한 변호사급 긴급히 물색하여 학교법인 AL 이사인 변호사 AP가 피고인을 소개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L연구관 AQ과 동화하면서 관련 소송 정보를 취득하고,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선임계 체결 이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취소되고, 수임 17일 만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등(이하 '이 사건 주변사실들'이라 한다)이 매우 상세하고,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특정에 필요한 정도로 정리하면,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변호사인 피고인이 2018. 6. 11.경 J법원 선임 또는 L연구관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J법원 A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사건을 수임하였다."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사건 주변사실들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 자체를 직접 증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어서 굳이 덧붙여 기재할 필



요가 없다. 반면 이 사건 주변사실들은 피고인이 J법원 선임 또는 L연구관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 일반의 오해 내지 편견을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이 사건 상고심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과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과 관련해서도 선임 또는 L연구관이었다는 자체로써 곧바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이라는 구조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이미 유죄로 결정될 것 같은 예단을 가지게 함에 충분히 효과적인 내용이다. 즉 이 사건 주변사실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심증형성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을 치유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청난 방어 부담을 지우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자신과 무관하다고 해명하려고 매우 노력하였지만, 정작 유무죄를 결정짓는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리할 필요가 없고, 전혀 입증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 것이 대부분이다. 설령 그러한 사실들이 증거로써 증명되지 아니하더라도, 즉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원고 측이 이른바 '전관예우'가 가능한 변호사를 긴급히 물색한 끝에 피고인을 선임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인이 AQ으로부터 관련 소송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거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각 판결이 훨씬 나중에 선고되었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면서 이미 그 기재 자체만으로써 공소사실에 대한 강한 유죄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한다.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신건 또는 심층검토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정하고, 그들을 지휘·지도하여 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했다는 기재가 증



거조사 전에 미리 공소사실의 목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사실상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의 1. 기초사실 가.항에 기재한 선일 또는 L연구관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위나 권한과 구별되는 특별히 의미 있는 내용이 아니다.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정확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지휘·지도하였다는 재판연구관의 이름까지 연결시켜 그 직무상 취급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이 취급 부분의 기재와는 달리 2018. 9. 6.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기획제1심의판 6505호, 증거목록 순번 103번) 기재, 중인 AR의 법정진술과 AS, AC, AT, AQ, AU, AV,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X조(이하 'AX조'라 한다)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은 해당조 총판 재판연구관이 관련사건 유무, 업무 부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 AW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신건 검토보고서를 보고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2016. 2. 11.경부터는 L연구관으로서 행정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AS 재판연구관이 2017. 8.경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심층사건 검토에 착수하여 같은 해 10. 18.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심층 검토보고서를 입력할 때는 이미 1법원을 떠난 상태라 원원적으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관여할 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지위, 권한 내지 관여 가능성을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수행하지도 않은 구체적인 행위 내용으로 혼동 또는 의제하게 함으로써 엄격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사실과 무관하게 당연히 곧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



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암시하면서 이른바 '전관예우'와 결부시켜 강한 유죄의 심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주변사실들의 기재는 형사소송절차의 근간을 이루는 공판중심주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나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취급' 자체의 해석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고, 뒤에서 보는 검사의 견해에 따르면, 이 사건 주변사실들 중 일부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될 수도 있다. 기소한 입장에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이 사건 주변사실들을 적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I. 총체적 수사절차 위법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주장에 관하여

1. 변호인 주장

변호인은, 검사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수사과정에서 L연구관이었던 피고인을 비공식적으로 소환하여 수사과정 기록 없이 사실상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관련자료 제출을 종용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과잉·별건·표적 수사를 자행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언론을 이용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으며, 공개소환을 통한 포토라인 세우기로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변호권을 본질적으



로 침해하였는바, 이러한 총체적 위법수사에 기초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진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개별 위법사유에 대한 판단

가. 2018. 9. 2.자 비공식 변담의 위법성 여부

1)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9. 2. 오후 4시경부터 두 시간가량 BU검찰청에서 비공개 변담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수사과정 기록제도를 위반한 편법적·탈법적 피의자 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7. 21.경 전 P기관 차장이던 O의 명함형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파일명에 피고인의 이름이 포함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파일명: Z요약보고[A].hwp)이 발견된 사실, ㉡ 위 파일에 당시 T 전 대통령과 직분이 있던 R, S 부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와 주식회사 AY 사이의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 및 관련사건의 진행경과와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 이에 검사는 2018. 8. 23. 피고인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사실로 압수수색명장을 청구하였으나, "검찰이 이미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위촉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을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문건을 소지하고 있을 개연성이나 다른 압수·수색청구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재판의 본질적 부분 침해 가능성,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상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포괄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기각되었고, 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 ㉣ 이후 2018. 8. 28.경 피고인이 선임할 예정이었던 AZ



변호사가 BU검찰청에 방문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할 듯한 의사를 밝혔다가 2018. 8. 30. 그 의사를 번복한 사실, ㉔ 이에 접사는 2018. 8. 31. 위 영장 일부 기각사유와 관련하여 직접 본인을 통하여 J법원 L연구관으로 제직 시 J법원에 계류 중인 특정 사건의 사건절차진행정보를 유출해 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비공식 변답을 제안하였고, 2018. 9. 2. 오후 4시경 검사의 요구로 BU검찰청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위 혐의인정 여부 및 관련자료 임의제출 의사 유무를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음날인 월요일 중으로 의사를 명확히 하겠다고 하고, 면담 말미에 검사가 요구하는 진술서 작성은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비공식 변답'이라 한다), ㉕ 피고인은 다음날 새로 선임한 BA 변호사를 통하여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제직하는 동안 P기관의 요구로 특정 사건의 진행경과나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기억이 없고,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물 임의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사실, ㉖ 이어서 검사가 2018. 9. 3. 청와대 U수석비서관실, O순으로 대통령 관심사건임을 전해 들은 피고인이 O를 통해 청와대 측에 이 사건 특허 등록무효 사건의 처리계획 등을 전달해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 (재)청구 필요성](증 제20호증의 1)와 이 사건 비공식 변답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관련한 자료의 임의제출 의사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부인 및 임의제출 거부 의사 확인](증 제20호증의 2)를 함께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였고, BB법원 명장전담판사는 2018. 9. 4. 압수할 물건과 압수·수색의 방법을 대폭 제한하여 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1항, 제3항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있고,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행적을 조서 또는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조서 작성절차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4)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을 다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된 후 AZ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할 듯한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반복한 과정을 고려할 때, 검사로서는 피고인 본인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굳이 피의자 신분에서의 공식적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비공식 면담이 이루어진 약 두 시간 동안 검사는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관한 질문이 아닌 추상적으로 P기관의 요구로 특정 사건의 사건진행경과를 기재한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억이 있는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피고인은 J법원 재판연구관실과 P기관의 관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설명하였을 뿐 구체적 혐의사실과 관련한 질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비공식 면담 말미에 검사의 진술서 작성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비공식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실상 피의자 내지 참고인으로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수사기관에게 그러한



조사될 전제로 한 수사과정 기록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파일·별건·표적수사 여부

1) 변호인은, 피고인은 P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는 무관하고, J법원 자체조사의 대상자도 아니며, 이미 현장에서 물러나 있었음에도, 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파일명에 기재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이른바 keyman으로 지목한 후 위 수사에 필요한 J법원 내부문건들을 손쉽게 확보하려다 피고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BU검찰청장의 지휘로 피고인에 대하여 파일·별건·표적수사를 하였고, 특히 공소사실 4항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공표한 후 어떻게든 별건 범죄혐의를 찾아내고자 수사협조의뢰라는 형식으로 피고인의 수임내역을 뒤져 그중 AI 사건을 발견하여 뒤늦게 인지한 후 기소한 것이라 명백한 표적·별건 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에게 수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거 없는 추측에 의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나, 수사기관의 수사경험상 범죄행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도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 또는 조사활동을 종결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수사의 개시 여부에 관



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강행직이나 논리최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J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P기관 차장으로서 국회, 행정부처 등 대외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O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J법원 K·L연구관을 지냈던 피고인의 이름이 파일명에 첨부되고, 청와대 관심사건이라는 J법원 Z 목려등록무효심판 청구 사건 진행경과와 처리계획 등이 기재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이 발견되었고, 당시는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터 잡아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서는 위와 같은 O과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 파일명에 첨부된 피고인의 이름, 파일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 R, BC 등에 대한 수사결과 등을 기초로 해당 내용이 청와대 등 사법부 외부에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 L연구관인 피고인이 관여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검사가 2018. 9. 5.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압수할 물건인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과 출력물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 개인 컴퓨터에 접속한 내역이 남아 있던 상당수의 외부저장장치(USB)들 중 1개만을 압수할 수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외부저장장치는 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을 언론을 통하여 접한 후 이미 모두 빼기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사실, ㉡ 검사는 당일 오후 출력물 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다량의 J법원 검토보고서 등 J법원 내부 문건을 발견하였고, 영장 집행 종료 즈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현장보전조치들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 ㉠ 검사가 당일 영장 집행 직후 위 J법원 내부 문건 등에 대하여 추가로 압수수색명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실, ㉡ 피고인은 2018. 9. 6.경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와 같이 압수수색명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컴퓨터 보조기억장치인 SSD(Solid State Drive)를 분리하여 버리고, 보관하고 있던 J법원 내부 문건 출력물도 대부분 세단하여 폐기한 사실, ㉢ BU검찰청장이 이러한 폐기사실을 알고 나서 2018. 9. 10.경 기자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분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내용이 기사화된 사실, ㉣ 검사는 2018. 9. 9.과 같은 달 10. 2회에 걸쳐 BD변호사회에 피고인과 H, G 변호사의 수입사건 등 내역에 대하여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보냈고(변호인도 검사가 2회에 걸쳐 공문을 보낸 날자가 위와 같음을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11. 송부 받은 회신을 기초로 수사를 진행하여 같은 달 13. 추가로 AL 사건 수입과 관련한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인지한 사실, ㉤ 검사가 2018. 9. 13. 피고인이 재판연구관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입하였음을 별죄사실로 하고, 압수할 물건을 이와 관련되는 소송자료, 선임계약서, 이면계약서 등으로 하여 압수수색명장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달 14. 위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실, ㉥ 검사가 2018. 9. 18.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연관된 피의자들 가운데 최초로 이미 퇴직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명장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검사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출력물 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J법원 검토보고서 등 J법원 내부 문건을 발견한 이상



J법원 검토보고서 등 내부문건의 생성 경위나 내용,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게 된 시기나 경위, 피고인의 변호사 업무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검사로서는 피고인이 J법원 K·L연구소로 재직할 당시 취급했었던 각 검토보고서 관련사건을 퇴직 후 변호사로서 수임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소속 검사로 하여금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지휘하는 것은 BU검찰청장이 자신의 일반적 직부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인 점, ③ BU검찰청장이 2018. 9. 10.경 피고인의 출력물 등 폐기 사실을 알고 나서 기자단에게 엄중 처벌 의지를 밝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같은 달 9.경부터 검사가 BD변호사회에 변호사법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송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수사가 피고인의 증거인멸 행위를 이유로 한 표적수사 내지 이른바 먼저떨이식 수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또 형식적 인지절차를 밝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J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참조), 검사가 이를 수사하기 위하여 BD변호사회에 피고인 등의 수임내역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내의 수사라고 할 것인 점, 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도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판단은 검사의 고도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USB와 컴퓨터 내 SSD, J법원 내부 문건 출력물들을 대부분 폐기한 것을 확인한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것 역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원인 중 일부였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정형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수사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의사실공표 여부

1)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집중 보도되게 하거나, 피고인이 영장전담법관 등에게 구명메일을 보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하는 등 언론을 동원하여 광범위한 위법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2) 기록에 첨부된 관련 기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3차장졸'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의 개략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 권역서 인터넷법률 사이트에서 연람·출력되었습니다.		
2018. 8. 26.	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BE 전 AD법관A 전 L연 구관 압수수색영장 기각	
1	검찰은 법원이 몸살적인 사건에서는 압 수 없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6일 BU지법 특수1부는 BE 전AD법관, A 전 연구관, BF 전 P기관 기획조정심의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BE지법 BG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5일 새벽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략) 검찰은 A 전 연구관이 J법원 L연구관 시절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한 '청와대 보고용' 문건이 O 전 사장을 거쳐 청와대로 전달된 상황도 확인했다. (중략)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중략) 이에 대하여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중략) 구체적인 수사 방식과 수사 범위, 최종 판단에 대한 예단 등 수사지휘를 계속하는 등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영장기각사유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BH 기사 (2019. 4. 1.자 공판심리의견서 참고자료1)



2	<p>2018. 8. 27. '북 관심 재판' 보고서, P기관 불해 유출...관련 명장문 모두 기각</p> <p>사법농단 의혹은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는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재판 보고서가 청와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p> <p>유출된 보고서는 T 청와대의 '관심사건'에 대한 보고서인 것으로 일러졌습니다.</p> <p>검찰이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재판 보고서가 P기관별 불해 청와대로 유출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p> <p>검찰은 A 전 J법원 L연구관이 작성한 재판 보고서가 O 당시 P기관 차장에게 유출됐고, O 전 차장이 이 보고서의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p>유출된 재판 보고서는 T 청와대의 관심사건에 대한 보고서인 것으로 알려졌다.</p>	<p>BI 기사 (2019. 12. 30.자 검찰 의견서 15. 16쪽)</p>
3	<p>2018. 9. 3. [단독]검찰 '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무더기 소환</p> <p>검찰이 1일과 2일에 걸쳐 BJ 전 청와대 X비서관, BK 시고법 부장판사, A 전 시고법 부장판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A 전 부장판사는 T 청와대가 관심을 가진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A 전 부장판사는 문건 작성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p>	<p>BI 기사(중 제39호경의 1)</p>
4	<p>2018. 9. 5. 법원,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문건 '1건'만 압수수색 허용</p> <p>징용소송·비선진료·특허소송 개입 의혹 명장 무더기 기각</p> <p>BU지검 수사팀(팀장 BM 차장검사)은 P기관가 T 전 대법원의 '비선진료'형 받았던 S 원장 측의 개인 소송문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기에 참여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명장문 발부받았다. 그러나 BN 부장판사는 S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문건 1건만 압수수색 하라며 발위를 제관했다. (중략)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지문 1건 외에는 압수 수색을 하지 말라는 것은 명장을 발부하는 외형만 갖추되 발부하지 않은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했다.</p>	<p>BO 기사(중 제42번)</p>



5	<p>2018. 9. 5. '사법농단' 영장 또 무더기 기각... 검찰이 확보한 문건만 압색 허용</p> <p>강제징용·특허소송 재판개입 관련 영장 변원, 단 1건만 발부하고 잠소도 제한해</p> <p>T 청와대와 BP J법원의 '사법농단'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출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법원이 계속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며 완벽 방어벽 좁지 않고 있다. (중략) 검찰관계자는 "이미 검사가 확보한 자료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것을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압수수색의 범위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중략) 검찰 검찰관계자는 "이제 와서 어떻게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p>	BL 기사(중거목목 순번 43번)
6	<p>2018. 9. 5. [일반]사법농단 연루 전관 변호사 사무실에서 J법원 기밀문서 '무수수'</p> <p>T 청와대 보고문건 작성 혐의 전직 J법 재판연구관...수백 건 문건 빼돌려</p> <p>5일 BU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BM 3차장검사)은 전 J법원 L연구관인 A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J법원과 P기관의 문서들이 다량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달초 'T 비선 의료진' R씨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A 변호사가 J법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정보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금 하다 이 문서파일들을 발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을 피고인이 J법원 K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문서들로 적어도 수백여 건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문서 중에는 당시 J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각종 재판에 관한 것들도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재판관련 문서들을 이렇게 대량으로 유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영장급 청구할 방침"이라면서 "증거를 없애기 전에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재판관련 자료나 보고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는 금단의 영역"이라면서 "그런 자료엔 퇴적하면서 대량으로 가져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며 어처구니없어 했다.</p>	BQ 기사(중거목목 순번 45번)



7	2018. 9. 5.	[단독]'사법농단' 연루 전관 변호사 사무실서 J법원 기밀문서 무더기 발견	BR 기사 (2018. 4. 1. 자 공판심리 의견서 참고 자료2, 최초 입력 시각: 2018. 9. 5. 17:09)
		<p>검찰, A 전 J법원 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건 파일 확인 T 청와대 관심 재판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는 A 전 J법원 L연구관(현재 변호사)이 재직 시절 취득한 J법원 내부 기밀 문건을 외부로 배낸 사실을 검찰이 5일 확인했다. (중략) BU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BM 3차장검사)은 이날 A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용소 수석건에 달하는 J법원 재판 기밀 문건 파일이 A 전 연구관의 PC 하드디스크에 저장돼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애초 A 전 연구관이 작성한 T 비선 의료진 R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의 파일 목록을 검색했는데 다른 기밀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중략) 한 법조계 관계자는 "J법원의 재판기밀이 문패로 유출된 것을 조주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이 사건을 수임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 J법원 재직 시 확보한 기밀문건을 가져온 것 아니겠느냐"며 "사법부의 도덕성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8	2018. 9. 5.	[단독]전관변호사 PC서 J법원 기밀 무더기 발견 "사법농단' 압수수색 중 확인"이라는 소제목 순번 7번과 같은 위치의 기사	BR 기사(중 거목목 순번 44번)
9	2018. 9. 10.	<p>BS "前 재판연구관 증거인멸 행위, 엄정한 책임 묻겠다." BS "상식적 납득 어려운 증거인멸행위" A "압수수색 열람 기각 후 문건 등 파기" BS 지검장은 10일 오후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중략) 앞서 검찰은 BP P기관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A 전 J법원 L연구관이 횡령하며 J법원 자료 다수를 배당권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자료 확보를 위</p>	BT 기사(중 제34호중)



	<p>해 압수수색명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J법원에 A 전 연구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일 다시 압수수색명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사실상 모두 기각됐다. A 전 연구관은 이 기관 관련 문건 등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p>	
10	<p>2018. 9. 11. 'J법원 문건 유출' 변호사, 판사들에게 수상한 이메일 A 전 연구관, 지인 판사들에 이메일 보내 문건 유출 불법성 전면 부인...영장 기각 주장 검찰, 오늘 A 전 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중 전직 연구관이 최근 판사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중략) 검찰은 법원이 압수수색명장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A 전 연구관이 협박 판사들을 상대로 사신삼 '구명' 시도할 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략) 검찰은 이날 제한적으로 반부패는 영장에 따라 서울 AJ A 전 연구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p>	BT 기사 (중 제14호증)
11	<p>2018. 9. 11. [포토]노출 피하려 신문·보자기 총동원...전 J법 L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J법 기밀자료북 무단 반출해 재판기록은 파기한 것으로 파악된 A 전 J법원 L연구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검찰은 BU지검 수사팀(팀장 BM 3차장)이 이날 오전 AJ A 전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피고인 모습이 포함된 변호사 사무실 내부 사진, 사무실 유리창 가림막 사진, 사무실 복도에 기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진들을 전부</p>	2019. 4. 1. 자 공판심리 의견서 참고 자료3
12	<p>2018. 9. 12. '비선 의료진 소송' 자료 유출...“V 지시로 받았다” P기관, S 부부 측에 소송 자료 줘에 넘겨 “V 지시로 O에 부탁” 齊관계자 진술 확보 H 소환조사...“T대통령에 도와 달라 부탁했다” S 부부가 관련된 측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넘긴 과정에 V 전 U수석 이 관련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BU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BM 3차장)은 최근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p>	BT 기사(중 제39호증의 2)



	<p>서 V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O 전 P기관 차장에게 부탁해 관련 자료 를 넘겨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S 원장의 부인 R씨도 최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R씨는 "T 전 대통령에게 박혀소송과 관련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 략) O 전 차장은 해당 재판자료를 청와대에 건넸고 R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O 전 차장은 당시 A J법원 L연구관을 통해 소송 관 련 자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A 전 L연구관(현 변호사)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p>		
13	2018. 9. 12.	<p>'J법원 근무 추억'이라던 유출문건...삼달수가 신규 접 수사건</p> <p>문건 유출 법관, 압력 만 맞는 해명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은 다릅니다. 서로 접수된 사건을 다루는 연구관 10명에게 J법원 관계자가 USB를 돌려 각자 맡은 사건 의 보고서 등을 전부 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중략) 자료 중에는 새 로운 사건 외에도 BW당이나 강제징용 사건 등 이른바 재판개입 정황 이 담긴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p>	BV 기사(중 제39호중의 3)
14	2018. 9. 18.	<p>'재판거래' 첫 명장...전 J법연구관 '전관예우' 추적</p> <p>A 변호사 관권초고 등 수만건 빙 둘러 혐의 J법서 검토한 사건 수입하고 17일 만에 승소 확정 검찰은 A 전 연구관이 퇴직 이후 변호사로 수입한 J법원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을 파악하고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 략) A 전 변호사 측은 "사건 담당, 연구관 지정, 보고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사건 접수만으로 관여한 것으로 본다면 연간 2만 건이 넘는 사건을 취급한 것이 돼 상식에 어긋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자체 를 부인했다. 검찰은 "A 전 연구관이 J법원 근무 당시 USB에 문건을 담아오라고 했다"는 후배 재판연구관들의 진술을 확보했다.</p>	BO 기사(중 제10호중)
15	2018. 9. 21.	<p>前 판사 명장 기각한 판사, 검찰 보랏 돛 3600자 사유 서</p>	BX 기사(중 제35호중)



	<p>A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검찰은 한 달 가까이 BM BU지검 3차장 명의로 멀티미디어메시징서비스(MMS) 형태의 입장문을 하루에도 두 차례 이상 보내왔다.</p>	
16	<p>[Web발신] 3차장(품)사법농단 수사 중, BY 법외노조화 소송에 P기관가 개입한 혐의와 청와대 관심사건에 대한 J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한 부분 등의 수사를 위하여 BE 전 AD법관 등 관련 판사들에 대하여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각하였음. - 주요 기각 사유는, (중략) '(재판연구관 보고서 유출 관련하여) J법원 재판연구관이 해당 재판 보고서를 작성하여 O에게 보낸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생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중략) 등임. *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증거자료가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점 (중략) 등 통상 사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따른 영장 기각이 계속되고 있음.</p>	<p>증 제38호증 '3 차 장 풀' MMS 문자메시지</p>

3) 위 기사들과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수사 당시 보도된 기사에는 청와대로의 문건 유출 정황,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개략적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혐의 관련 자료 수집 현황, J법원 문건 유출 및 피고인 보유 경위나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선임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 피고인을 비롯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내용 및 기각 여부, 기각 및 발부 사유, 집행과정 등 혐의내용이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 특히 일부 기사들의 경우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따르면', 'BU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은 ~ 확인했다' 등 수사기관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사실, ㉢ 피고인에 대한 2018. 9. 5.자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완료된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당초 피고인이 작성한 대통령 비선 의료진 R 씨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 보고서를 확보



하기 위해 하드디스크의 파일 목록을 검색했는데 다른 기밀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BR 기사가 최초 입력되기도 하였고(위 표 순번 7번), 피고인이 컴퓨터 내 SSD를 폐기한 후 BU검찰청장이 이해적으로 직접 나서 2018. 9. 10.경 기자단에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러한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각 언론사 기사에 게재되기도 한 사실, ㉔ 검찰은 위 기사가 게재된 바로 다음날 BD변호사회로부터 피고인의 사건수업정보를 제공받아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 ㉕ 역시 위 발표 다음날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사실이 언론에 알려져 다수의 취재기자들이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 앞 복도에 대기하면서 피고인의 모습야 포함된 사무실 내부와 사진촬영을 막기 위해 사무실 유리창에 붙여 놓은 가림막을 사진촬영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던 사실, ㉖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하여 검찰이 BU검찰청 제3차장검사 명의로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 관련 입장을 기재한 MMS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기자들에게 발송해 왔던 사실, ㉗ O은 검찰 조사 당시 2018. 8. 27.자 BI 보도 내용처럼 피고인이 O에게, 다시 O이 청와대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전부 확인된 것으로 각각해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 피의사실공표죄가 피의자의 명예와 함께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내지 순수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피고인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점,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범피혐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4) 그러나 ㉠ 당시 사법부와 행정부 측 사이의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해당 의혹이 언론의 중점 취재대상이었던 점, ㉡ 수사기관이 이에 대하여 알려 주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앞서 인정한 언론기사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느낀 불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지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 수사기관이 이러한 정당한 목적 외에 부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범죄사실에 관한 문자메시지들 발송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공표의 형식도 수사기관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피의사실이 알려지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공개발표하거나 배포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 2019. 10. 30. 법무부훈령 제12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준칙 제4절이 규정하는 공보의 범위 내에서 수사사건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었던 점, ㉥ 위와 같이 일부 기사에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있거나 수사 진행 상황과 극히 밀접하여 관련 내용이 보도된 것만으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먼저 그 내용을 전부 기자들에게 알려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위 기사들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위 '3차장풀' 문자메시지(증 제38호증) 역시 추상적으로 관련자들의 영장 청구 혐의사실을 기재하고,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비난에 그칠 뿐 피고인의 실명이나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언급된 바는 없어 해당 문자메시지들 기자들에게 발송했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알려 준 내용이 피고인이 증거인멸죄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공공기록물관리법위



반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하였다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는 않고, 법원과 피고인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수사기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5)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변호인 참여권 침해 여부

1) 변호인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10에 의하여 변호인의 신문내용 수기 기록이 허용되어야 함에도, 2018. 9. 9.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가 조사 시작 전부터 입회한 변호인에게 '필사 수준의 메모를 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메모를 제한하는 취지의 고지문을 하였고, 점심 휴식 전 메모를 검열하였으며, 조사가 종료되었을 무렵에도 메모를 확인한 후 사본하여 가져가는 등, 변호인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권 내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다(J법원 2008. 9. 12. 자 2008도793 결정 참조). 위 신문 당시 적용되던 구 검찰사건사무규칙(2018. 10. 4. 법무부령 제9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4항 제4호는,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



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되,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 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 10. 4. 법무부령 제93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3조의10 단서 제2호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변호인의 신문내용 수기 기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검사가 2018. 9. 9.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직전에 변호인에게 필사 수준의 메모를 제한하는 취지의 주의를 주고, 피의자신문 도중에 메모를 확인하였으며, 신문 종료 후 메모 내용을 사본하여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 당시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환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이 다른 피의자들의 혐의사실과 연관되어 있어 그 수사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컸던 점, ㉡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내용이 필사 수준으로 기재되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관련사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사는 일정한 경우 변호인이 신문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위 구 검찰사건사무처리규칙 규정에 따라 사전에 필사 수준의 메모를 하지 말 것을 환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신문 과정에서 그러한 수준의 메모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메모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았던 점, ㉣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 변호인이 기록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어 수사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부분을 사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이러한 행위가 변호인 참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개소환을 통한 인격권 침해 여부

1)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자 검사가 일종의 응징 차원에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례적으로 2회에 걸쳐 피고인을 공개소환하여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게 하는 방법으로 언론에 노출시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심리적 부담감, 위축감, 모멸감,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공개재판 전에 사실상 유죄의 낙인을 찍게 함으로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의 인격권 등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기사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2018. 9. 9., 같은 달 12.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피고인을 공개 소환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피의자신문을 위하여 BU검찰청에 출두하면서 청사 건물 입구의 포토라인을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출석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어 다수의 언론에 집중 취재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엄청난 심리적 위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 우리 법령상 피의자나 참고인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소환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 이른바 '포토라인'은 검찰 등 공공기관, 공항, 기자회견장 등에서 다수의 취재진이 제한된 공간에서 취재를 해야 할 경우 취재진의 동선을 제한하여 혼란을 막기 위한 제한선으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취재원의 인권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 기자회견들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된 것일 뿐 포토라인 설정 자체에 수사기관이 개입하지는 않은 점, ㉢ 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2019. 10. 30. 법무부훈령 제1256호로



때지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소환대상자가 피고인
 과 같은 차관급 이상의 사법부 소속 공무원인 고위공직자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소환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거나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소환 전후에 걸쳐 소환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환 일시 및 귀가 시간, 궐
 병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앞서 본 공개소환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수사기관의 공개소환이 위법한 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영장 허가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압수·수색 여부

변호인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명백히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사들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III. 1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2018.
 9. 5.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이 명시하고 있는 전자정보 수색
 방법의 제한을 위배하여 수사 중인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새로운 별건 사실에 관한 증
 거를 수집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전
 차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때라 함은 무권한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
 리키는 것인바,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암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J법원 1990. 9. 25. 선고 90도 1586 판결, J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2의 바.항 기재와 같이 검사가 2018. 9. 5.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에 명시한 전자정보 검색방법의 제한을 위배하여 위법하게 수사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등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위법사유만으로 당해 위법수사의 결과물인 개별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II. 개별 증거들의 증거능력 유무

1. 위법수집증거 여부

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 및 관련 증거들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제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



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피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론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회색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J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 3061 전원합의체 판결, J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J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2)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및 제출 경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7. 21.경, 전 F 기관 차장이던 O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색명장 집행 결과 O의 명함형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2017. 2. 8.경까지 J법원 L연구관으로 근무한 후 A법원에서 재판업무 수행하다 2018. 2. 13.경 퇴직한 피고인의 이름이 포함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파일명: Z요약보고[A]hwp)이 발견되었다.

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는 당시 T 전 대동령에 대한 비공식적인 마용성형 시술을 위하여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T와 친분이 있던 R, S 부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AY 사이의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 및 판연사건의 진행경과와 향후 처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이에 검사는 2018. 8. 23. BB법원 영장담당판사에게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공함으로써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을 혐의사실로 하여 위 혐의사실과 관련된 서류 및 물건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Q이 당사자인 사건의 관련자료, 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파일 또는 그 출력물 등 일체에 대하여 압수수색명장을 청구하였으나(영장청구번호 2018-16656), BB법원 영장담당판사는 다음날 '현 단계에서 포괄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위 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증 제19호증의 3).

라) 이후 검사는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 관련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이 사건 비공식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과 변호안으로부터 관련 자료 제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다시 같은 혐의사실로 혐의사실 관련 자료를 포함한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일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였고(영장청구번호·2018-24599), BB법원 영장담당판사는 2018. 9. 4. 압수할 물건과 압수·수색의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서울 AJ, AK호 또는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

압수할 물건

본 영장 범죄사실란 기재 문건인 “사안요약” (문서정보 상 최종수정일 2016. 3. 8.)의 원본파일과 그 출력물 및 위 파일의 사본파일과 그 출력물로 한정함.

압수수색의 방법 제한

위 압수할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피의자 본인의 참여 하에서 [별지] 기재 내용을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음.

[별지]

1. 문서에 대한 압수

- 생략-

2. 컴퓨터 등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휴대전화기 제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가. 전자정보의 수색

(1) 수색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만 함.

(2) 수색은 검색어 “Z” 또는 “CC”를 입력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에 의해서 실시함.
 나. 전자정보의 압수

(1) 전자정보의 소재지에서 위 방법에 의해 수색된 전자정보 중 2016. 2. 17.부터 2016. 3. 8.까지 사이에 작성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2) 저장매체의 하드카피·이미징 및 저장매체 원본 반출은 허용되지 않음.



(3) 압수시 준수사항

- ㉠ 피의자에게 압수할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함.
- ㉡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

파) 검사는 다음날인 2018. 9. 5. 10:20경부터 16:20경까지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였는데, 현장용 디지털 포렌식 장비(CFT, Computer Forensic Tool)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한 후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방법인 "Z" 또는 "CC"를 검색어로 입력하여도 압수할 물건을 찾을 수 없자, 임의로 "BZ"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수색을 계속한 결과 피고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J법원 사건번호 중 "BZ"가 포함된 사건들의 기초보고 등 파일 리스트가 나타났다.

바) 이에 검사는 같은 날 11:37경과 15:05경, 위와 같이 "BZ"가 포함된 사건들의 기초보고 등 파일 리스트가 나타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사진 촬영하였고(이하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이라 한다), 2019. 3. 5. 피고인을 '위 사진상 나타난 기초보고 등 파일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위 파일의 해당 사건 중 당사자가 자연인인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하면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및 그 촬영 시각 등이 기재된 속성 화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3)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 1)에서 본 법리와 앞서 본 이 사건 영장 집행 경위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조사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557번, 592~595번, 601번, 602번)과 그 속성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604번 중 해당 부분)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



하고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도 없다.

가)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 중립적인 법관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영장이 컴퓨터 등 정보저장매체 수색방법을 검색어 "Z" 또는 "CC"로만 한정된 제한을 위배하여 "BZ"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수색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 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이 검사로 하여금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 검사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방법을 위배하여 수색한 결과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인 공무상비밀누설과 관계없는 새로운 별건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별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에 대한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은 이 사건 영장 가운데 압수수색의 방법 제한에 기재된 같은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압수물 자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독립한 증거가치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사진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의하면, 검사가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의자 등에게 교부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



자를 밝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관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압수물 목록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검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전혀 무관한 별건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인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압수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압수물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수색방법의 제한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위법하게 압수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수사기관은 이미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인 2018. 8. 23. 압수수색영장(영장청구번호 2018-16656) 장구 시에도 압수할 물건을 '보고서, 회의록 등 회의 관련 자료, 업무일지, 다이어리, 메모지, 쪽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교환내역, 수사대비 서류 등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 및 물건, J법원에 제류 중인 BY 관련 및 관련 사건의 의견서(판결문 초고), 검토메모(연구보고서), 이와 관련된 회의자료, 주식회사 Q이 당사자인 사건 관련자료,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파일(이메일 포함) 또는 그 출력물, 피고인이 소지·관리·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휴대폰,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 관련 자료,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라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영장담당판사는 재판 물건과 정보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어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다. ②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청구 전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비공식 면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법원 관련 문건 일체와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다. ③ 영장담당판사는 압수할 물건을 오로지 사안요약 파일 1개와 그 출력물로 특



별히 한정하는 것 외에 사실상 종전의 영장과 다르지 않은 검사의 청구글 전부 기각하고, 검색방법 역시 검색어 "Z" 또는 "CC"로만 입력하여 탐색하는 방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④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 및 방법에 대비되는 집행시간, 집행 종료 즈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현장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검사가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BZ"가 포함된 다른 사건들의 기초보고 파일처럼 영장 기재 협의사실과 무관한 자료의 임의제출을 계속 종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자료의 성격상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종전처럼 기각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도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 중 추가 범피혐의가 확인되었다면서 압수할 물건을 J법원에 서류 중인 특정사건의 재판연구관 보고서 등으로 하여 당일 다시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영장청구번호 2018-17736)도 발부되지 아니하였다]. ⑤ BL 2018. 9. 5.자 기사(증거목록 순번 43번)가 인용한 검찰 관계자가 "압수수색 범위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했다"라고 지적했다면 그 검찰 관계자도 이 사건 영장의 집행방법이 일반적인 영장보다 훨씬 제한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의 해당 파일과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 AH의 외장하드(WD My passport)에 저장된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영장청구번호 2018-17987)도 2018. 9. 10. 기각되었다. ⑦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을 마치고 나서 피고인에게 '압수물 없음'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9번)까지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로서도 이 사건 영장의 집행으로써 압수할 물건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마) 검사는,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촬영은 압수·수색 과정을 보다 부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가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부수처분에 불과하거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 규정(대검찰청예규 제410호, 2006. 11. 21. 제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점증 현장에서 대상 정보처리시스템 구성 및 주변장치의 연결 상태 등을 파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사진 촬영한 후 목이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부수처분은 이 사건 영장의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전혀 관계없는 파일리스트를 취득하려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에 즉시 소명자료로 활용하고, 이 사건에서도 독립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수사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예컨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주거에 들어갈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 압수할 물건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영장의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굳이 사진촬영이 필요하였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위 대검찰청예규 역시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실제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나아가 위법한 압수·수색 결과물을 사진 촬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하며,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이 위 대검찰청예규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을 촬영한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위 규정은 2012. 11. 6. 대검찰청예규 61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촬영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바) 검사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상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이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식에는 파일 제목을 기반으로 검색하는 방식과 본문을 기반으로 검색하는 방식이 있고, 제목 기반 검색의 경우 띄어쓰기 여부에 따라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뒤로 다른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정보도 검색 가능한 "*검색어*"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는데, 이 사건 영장 [별지] 2. 가. (2)항에는 검색어로 "Z" 또는 "CC"를 입력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검색 방식이나 "*" 입력 기능 활용 여부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여권대, 압수할 대상 파일 제목이 "CACB BZ", "CA CBBZ", "CA CB BZ"와 같이 띄어 쓰는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의 최종본의 압수할 허용하는 영장의 취지 등에 비추어, O USB에 저장된 파일명과 전혀 다른 이름으로 위장해 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CA*" "*CB*" "*BZ*"와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수색하는 것은 이 사건 영장의 수색방법 제한 범위 내에 해당하여 적법함에도 피고인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실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장이 제한하는 문언 그대로의 수색방법으로만 집행했을 때, 아무런 검색결과가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영장이 수색방법을 위와 같이 특별히 제한한 것은 황범위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상



압수할 물건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등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나 혐의사실과 무관한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수색 대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제목 중 "CA" 또는 "CB" 또는 "BZ"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의 수색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 검사는,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영장에 기재된 전자정보 수색방법에 따라 "Z", "CC"를 입력하여 제목기반 검색, 내용기반 검색을 하였으나 아무런 파일도 확인되지 않아 "*CA*" "*CB*" "*BZ*"를 입력하여 제목기반 검색을 하였고, 당시 검사가 'CA CB BZ' 또는 'CD CB BZ'처럼 검색어 중간에 띄어쓰기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검사 및 수사관들의 그러한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해보시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컴퓨터 옆에서 압수·수색 과정을 지켜보던 변호사들도 검찰의 설명을 듣고 아무런 이의문 제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일 오전 11:37경 수사관이 이 사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는 장면을 다시 촬영한 사진을 증 제40호증으로 제출하면서 향후 증거 수집절차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영장 집행 후 4일이 지난 2018. 9. 9.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부터 "저는 당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이의문 제기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별건 압수수색이고,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48970쪽 10행 이하), "저는 당시 압수수색 절차에 종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수사기록 49007쪽



10행 이하)라고 진술하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원이 수색방법으로 제시한 'Z', 'CC' 두 개의 검색어 외에도 '성형'이나 아라비아 숫자 등 다른 검색어를 넣었던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수사기록 49020쪽 8행 이하)라고 진술하는 등 매우 강하고 일관되게 이 사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영장주의에 관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압수물이나 압수물을 찍은 사진에 대하여 사후에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J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64 판결 참조).

4) 이른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가) 수사보고[A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위 증거는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을 마친 후 당일 위 집행 전반의 개요를 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기초로 위 컴퓨터에 다량의 검토보고서 파일 등 내부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 결과와 그 사용 필요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CE에 대한 2018. 9. 7.자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46번 중 수사기록 47422쪽 2행부터 47428쪽 8행까지), AH에 대한 2018. 9. 9.자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수사기록 48928쪽 20행부터 48937쪽 3행까지), AH에 대한 2019. 2. 17.자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174079쪽 3행부터 174087쪽 진술 끝부분까지)



CE과 AH에 대한 각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은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개별 파일들의 출처 주소(디렉토리)상 폴더 명의자들 중에서 당시 J 법원 재판연구관이던 CE과 AH를 순차 소환하여, ① CE에게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CE, AH가 2015년 한 해 동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민사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사실을 알려면서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묻고 답한 내용, ② AH에게 다시 2016. 2.경 AH 요구로 1년간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었다는 CE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마찬가지로 AH가 같은 시기에 1년간 AG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을 취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를 묻고 답한 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들이다. 그리고 AH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 역시 앞선 1회 검찰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검사가 석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캡처하여 직접 제시하면서 개별 파일별로 사전번호, 저장 경로, 속성을 AH가 소지한 파일들과 비교하면서 해당 신건보고서 파일 전달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다.

위와 같이 ㉠ 위 각 검찰 진술조서의 해당 부분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자를 특정한 점, ㉡ CE과 AH에 대한 1회 검찰 진술조서는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입수한 지 2일과 4일 만에 작성된 점, ㉢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진을 직접 제시하면서 질문했던 점, ㉣ 그러한 질문 방식에 따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CE과 AH가 스스로의 기억만으로 그 기재와 같이 대답하기는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이 없었다면 그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검사는 CE이 "AH 재판연구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진술 역시 검사가 이 사건 영상 실행의 결과로 획득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내용으로 알게 된 AH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수사보고[AH 판사의 외장하드 임의제출능의서 등 편철](증거목록 순번 48번), 임의제출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49번), 압수목록 교부서(증거목록 순번 50번), 정보저장 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1번), 이미징 등 참관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2번), 현장조사 보고서 2부(증거목록 순번 53번), 수사보고[AH 판사의 외장하드 파일 목록 CD첨부](증거목록 순번 54번), 파일목록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55번), 수사보고[A 컴퓨터 문서파일과 AH 제출 파일 목록 비교](증거목록 순번 151번), 수사보고[전 J법원 재판연구관 AH 판사가 임의제출 한 J법원 민사 AG조 재판연구관 작성 검토보고서 90,330개 파일 제목' 출력물 편철](증거목록 순번 164번), J법원 민사 AG조 재판연구관 작성 검토보고서 90,330개 파일 제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65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제출 등 요청) 공문(증거목록 순번 545번), J법원 CV (본소) 등 기초보고(26부) 중 공소사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0 해당 부분(증거목록 순번 546번 중 일부), A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과 AH가 임의제출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파일 비교 1부(증거목록 순번 558번), AH 주장판사가 임의제출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파일목록 중 'FV' 분자열이 포함된 문서파일 필터링 결과 1부(증거목록 순번 559번),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70번), 소송대리인 등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CV 외 25건)(증거목록 순번 571번)



위 증거들은 AH가 1회 검찰 조사를 받은 2018. 9. 9. 당일,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J법원 선건 검토보고서 파일 및 나머지 검토보고서 파일의 제목 목록을 임의제출하고, 수사기관이 해당 파일의 제목 목록을 AH의 참관 하에 이미징한 사실에 관한 서류(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3번), 이미징 파일 목록이 저장된 CD와 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5번, 165번), AH가 임의제출한 파일 목록 중 'FV'가 포함된 파일과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파일과의 속성을 비교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558번, 559번),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으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2019. 1. 16. P기관로부터 회신 받은 해당 파일의 출력물 첫 페이지 부분과 2018. 9. 11. BD변호사회로부터 회신 받은 수입사건 경유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545번, 546번 중 일부, 570번, 571번) 및 각 그 수집 경위나 결과를 정리한 수사보고들(증거목록 순번 48번, 54번, 151번, 164번)이다.

위 증거들 역시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바탕으로 AH가 피고인에게 검토보고서 파일을 교부한 경위 및 현재도 위 파일을 교부하고 있는지를 추궁한 결과 AH가 위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임의제출 받아 수집된 증거들,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으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P기관로부터 회신 받은 해당 기초보고 파일의 출력물 첫 페이지, BD변호사회에 해당 사건번호로 신고된 수입사건 경유내역 자료들, AH 소지 문건 파일과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파일 사이의 비교 증거들인 점, 이 사건 명장 집행 과정에 있어 위법의 중대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위 증거들 수집과정에 어떠한 적법한 행위가 개입되었다거나 위 증거들이 다른 경로로 발견되었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검사는, 수색방법 및 그에 대한 사진 촬영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 현장 사무실 캐비닛 등에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출력물이 쌓여있는 것을 견문한 상태에서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H 등 관련자의 소환이 불가피하였고, AH 등이 스스로 독립적 판단에 기하여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검찰이 영장주의 정신을 꺾거나 잠탈하려 한 바 없고,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론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물 초래하므로, 일련의 수사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4)항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1차적 증거를 기초하여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적 진실이 2차적 증거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형사 사법 정의론 실현하려는 것인지 자체부터 다루어질 수 있는 점, ㉡ 위 III. 1의 가. 3)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위법하게 압수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자체나 그것을 이용하여 형성된 상태를 다시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집된 것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한 출력물에 근거하여 수집된 것이 아닌 점, ㉣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쌓여있던 검토보고서 출력물의 작성자를 바로 CE과 AH로 특정할 수 있는 사정은



없었고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의 출처 주소상 작성자 이름을 근거로 CE와 AH를
특정한 점, ㉑ 수사기관이 CE와 AH 외에 위 검토보고서의 다른 작성자는 조사하지 않
은 점, ㉒ CE와 AH가 수사기관에의 출석 자체는 임의로 했더라도 이 사건 모니터 화
면 사진으로부터 독립된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사진에 현출된 파일을 소지하게 되었다
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내용을 진술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㉓ 재판연구원 AH
가 2018. 9. 9. 검찰에 임의제출한 외장하드(WD My passport)에 저장된 J법원 재판연
구원 검토보고서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도 그 다음날 기각된 점(중 제19호중
의 5), ㉔ 이미 2018. 8. 26.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바 있고,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측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색을 계속한 점, ㉕ 이
사건 영장 집행 직후 BQ 기사(증거목록 순번 45번)에서 인용한 검찰 관계자가 "재판관
련 자료나 보고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없는 급단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면 그 검찰관계자는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과 관련된 자료 역시 피고인이 임의제출
하지 않는 이상 입수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㉖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영장담당판사는 이 사건 영장을 발
부함에 있어 수색방법의 제한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별한 제한을 위반한 것을 두고 가
벼운 절차위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㉗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그 증거
가치가 1차적 증거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요건을 위반하여 1차적 증거를 수집하더
라도 이를 근거로 수집하는 2차적 증거는 나중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
대로 영장을 집행해 보자"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론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들의 증거능력

1) BD변호사회 회신의 증거능력

가) 변호인 주장

변호사법 제89조의8에서 법조윤리협회의 위원·간사·사무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공작퇴임변호사의 법조윤리협회에 대한 수임자료 제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변호사 업무의 공익적 성격, 형사소송법 제112조가 변호사의 업무상비밀에 대한 압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72조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넘어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필요한 사항의 보고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강제처분 방식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그것도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수사등 위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탐색적으로 제출 요구하여 BD변호사회로부터 송부 받은 피고인 등의 수임자료(증거목록 순번 572번 내지 575번)는 인정주의 원칙을 침해하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취득한 CF, AW, CG, AQ, CH, AS, AV, CI, AO, C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L 사건을 수임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부분,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 소송위임계약서, 답변서 사본, 통화(문자) 이메일 내역,



기사, 사건진행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85번, 119번 중 수사기록 제53252쪽 제7행부터 제53269쪽 제20행까지, 124 내지 127, 129, 130, 132 내지 139, 145, 147 내지 149, 152, 153, 156, 405 내지 409, 411 내지 414, 416 내지 429번) 역시 2차적 위법수집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변호인이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기한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따라, BD변호사회가 2018. 9. 11. BU검찰청 특별수사 제1부에 송부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사무소 소속 G, H 변호사의 2018. 3. 1.부터 회신 전달까지 신고된 수임사건의 사건명, 사건번호, 위임인, 상대방 등이 기재된 수임사건 경유내역(증거목록 순번 572번 내지 575번)이다.

(2) 살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의 성격, 관련 규정 취지, 검사가 위 수임사건 경유내역 자료제공 요청에 이르게 된 경위, 보호이의 간 비교형량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18조가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탁인의 유품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명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하여 명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소 등이 수사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 보



고의 내용이나 형식에 관하여는 공무원 등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BD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검사의 BD변호사회에 대한 이 부분 자료제공 요구는 위와 같은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수사의 필요성이나 보호이익의 비교형량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임사건 경유내역 자료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는가 여부에 관한 판단, 즉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의 판단은 수사기관이 재판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합리적인 제량에 위임되어 있다. 이 사건 명장에 의한 압수·수색 당시 법원을 퇴격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다량의 J법원 재판연구원 검토보고서 등이 발견되었는데, J법원 내부 지침인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 제4조도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의견서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부 또는 일부도 J법원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검토보고서들의 생성 경위나 내용,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게 된 시거나 경위, 피고인의 변호사 업무와의 연관성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하였다고 사료할 만한 소지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를 수사하기 위하여 BD변호사회에 피고인 등의 수임사건 경유내역에 대한 자료문 요청하는 것은 그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연히 탐색적으로 별죄 혐의가 포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표적수사 내지 먼자떨이식 수사라고 볼 수 없다.

(라) 변호사법 제89조의7 제1항과 제89조의4 제3항에 의하면, 법조윤리협회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 사건 목록을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 위 수임사건 경유내역 자료가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입수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전수임내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처럼 명시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마) BD변호사가 회신한 내용은 피고인과 H 변호사가 2018. 3. 1.부터 회신 전달까지 수임한 사건들의 수임일, 관할기관, 사건번호, 사건명, 위임인, 상대방 내역들로서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신념, 인격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검사가 사실조회의 형식으로 위 회신내용을 보고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제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침해 가능한 개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점에서 변호인이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2, 3년 동안의 요양급여내역만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증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아파트와 빌딩 관리사무소 회신의 증거능력



가) 변호인 주장

위 회신자료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아파트와 사무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과 행위 정보가 수록된 CCTV 영상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인데도 강제처분이 아닌 사실조회 형식으로 제출받음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영장주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부분 증거들은 검사의 2018. 9. 11.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및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의 각 관리소장에 대한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임의제출한 피고인 거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입구, 분리수거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중 피고인이 2018. 9. 6. 20:03경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서 분리한 SSD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폐지수거자루에 버리는 동선 과정이 발췌된 부분의 사본(증거목록 순번 83번), 위 아파트 지정 폐기물 수거업체인 CK 주식회사 폐지야적장 사진 4장(증거목록 순번 84번), 2018. 9. 5. 16:00경부터 2018. 9. 11. 10:00경까지의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5층 복도 CCTV 영상 사본(증거목록 순번 87번)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따라 공사단체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 보고의 내용이나 형식은 공사단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 검사가 위 자료제공 요청에 이르게 된 경위, 보호이익 간 비교형량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증거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 아니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에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사용 사무실 복도 CCTV, 피고인 거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외부 및 분리수거장 CCTV는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기록된 혐의 관련 영상을 피고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제공하는 것도 그 설치·운영의 제한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 검사가 위 자료제공 요청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8. 9. 11.경 전달자로 발부된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영장청구번호 2018-25367)에 기한 BW당 행정소송 관련 J법원 내부분견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으로부터 '2018. 9. 6.경 피고인에 대한 J법원 내부분견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피고인 소유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하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렸고, 기타 J법원 문서 출력물들 대부분은 세단기로 파쇄해서 버렸다'는 진술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검사로서는 증거물의 확보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수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영장 집행 종료 직후인 2018. 9. 5. 16:00경부터 후속 영장 집행 직전까지 피고인 거주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분리수거장 및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5층 복도 CCTV 영상을 제공받은 것은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CCTV들은 모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된 것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빌딩 5층 복도 CCTV 영상은 위 빌딩 공용부분이고, 아파트 엘리베



이터와 분리수거장 CCTV 영상과 폐지야적장 사진 역시 피고인이 컴퓨터에서 분리한 SSD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폐지수거자무에 버리는 동선 과정만을 발췌한 사본과 야적상태의 압축폐지 외판으로서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은 아니므로, 앞서 본 수사의 필요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침해 가능한 개인적 이익보다는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기타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하여

1) 피의자 A 및 그 변호인 작성의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0번)

가) 변호인은, 이 부분 증거는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검사가 한 시간가량 계속 압박하면서 사무실 내 컴퓨터 현장보전조치등 요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인데, 이는 검사가 자신의 재량 범위를 넘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이 사건 영장에 기하여 사안요약 문건 파일과 출력물을 수색하던 도중 피고인의 사무실 내 랩톱, 책장, 캐비닛 등에서 다량의 J법원 재판연구원 작성 검토보고서 등 파일과 출력물이 발견된 사실, 이에 검사가 집행 당일 오후 피고인에게 위 파일과 출력물의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검사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물건을 압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집행과정에서 검색한 파일을 삭제하거나 손상시키지 않겠다는 확인서라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마저도 계속 거부한 사실, 결국 BA 변호사가 어쨌든 압수·수색을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이



BA 변호사와 연명으로 "2018. 9. 5. 본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검색한 내역에 대해 자료화면을 임의제출을 할 수는 없으나, 현장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 경위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2018. 8. 23.자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자신이 소유하던 외부저장장치(USB)들 중 상당 부분을 폐기했다는 진술을 들은 상황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다른 혐의사실과 관련될 수도 있는 새로운 파일이 다량 발견되었으나, 피고인이 임의제출을 거부하여 검사로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변호인과 함께 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장시간 상의한 후 결국 연명으로 작성한 점, ④ 위 확인서 작성 과정에 검사로부터 임의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위력이나 유무형의 압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현장 사진들과 그 속성사진 및 컴퓨터 로컬디스크(C) 속성 사진

가) 이 부분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 집행 장소인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에 입장하여 촬영한 사무실 복도와 출입문 사진,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사진, 사무실 내부 전경 사진들(증거목록 순번 582-591번, 596-600번), 피고인 컴퓨터 로컬 디스크(C) 사용공간이 표시된 속성 사진(증거목록 순번 603번), 위 각 집행현장 사진의



촬영시각 등이 기재된 속성 사진(증거목록 순번 604번 중 해당부분),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시의 현장용 디지털 포렌식 장비의 검색결과 예시화면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605번)이다.

나) 변호인은, 압수수색 전 압수수색 장소가 아닌 사무실 입구 복도 부분을 촬영한 것은 그 자체 영장주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진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 및 피고인 컴퓨터 로컬디스크 사용공간 속성 사진들 역시 앞서 본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과 마찬가지로 영장에 기재된 압수대상물이 아닌 것을 사진 촬영을 통하여 습득한 것으로 사실상 위법한 별건 압수물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은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성을 담보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제출된 점, 위 사진상 어떠한 별건 혐의를 발견할 수 있는 영상은 없는 점, 달리 수사기관이 영장주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촬영한 사진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증거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에 관한 진술 부분의 특신상태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변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



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행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J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J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J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J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비추어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진술내용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에 관한 부분의 진술(수사기록 48976쪽부터 1행부터 49007쪽 2행까지, 이하 '이 부분 진술'이라 한다) 경과에 관하여 보건데, ① 최초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시한 피고인이 검사에게 그 작성일을 물으면서 문건 유출에 관한 언론보도나 사신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의사실을 검토하여 문제되고 있는 보고서가 특려사건에 관한 보고서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삽입된 박스 상단 부분에 색깔을 넣고 박스 외관을 붉은 줄로 하는 게 평소 사용하는 방식이라 자신이 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사건 진행경과 등을 누가 작성해서 보낸 것을 모양만 보기 좋게 편집해서 보낸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닌지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나 해당 문건 작성 및 전달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②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을 전제로 해당 문건의 경우와 같이 J법원에 근무하는 동안 특정 사건에 대해 알아봐달라는 P기관 측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많지 않음에도 기억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면서 O이 특별히 요청해서 작성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냐고 거듭 질문하자, 만약 자신이 O에게 보내 준 것이 맞다면 사건 진행경과를 알려달라는 O의 부탁으로 보내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술하고, ③ 검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이전부터 P기관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청와대 측의 요구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관련 당사자의 특허분쟁 사건에 관하여 자료를 전달해 준 사실, P기관장이던 CL가 위 특허분쟁 사건을 검색했으면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고인이 O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최종본을 만들어 보내준 것 아니냐고 계속 묻자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문건의 내용상 AB조 총판부장 또는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하여 초안을 받아 편집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복신상태 인정 여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1993년경 법관직을 시작하여 2014. 2. 13.경부터 2017. 2. 8.경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J법원 K·L연구관으로 근무한 후 AI법원 재판장을 거쳐 2018. 2. 13.경 퇴직한 사실, ② 변호인의 참여 하에 제1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사실, ③ 피고인이 10:00경 시작하여 22:55경 종료된 신문과정에서 두 차례의 휴식시간과 점심, 저녁식사 시간을 가진 사실, ④ 조서 발미에 "오늘 장시간에 걸쳐 친절하게 조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등에 관하여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진술이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 부분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1) 이 부분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전달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O, AC 역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을 요청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요청받아 작성·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



성 근거로서 박스 상단에 찍자를 넣고, 박스 외판을 검은 줄로 하는 게 피고인이 평소 작성하는 형식과 같아 보인다는 피고인의 전술 또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의 기초가 되었던 AF 특허조사관이 작성한 기술검토서에 삽입된 표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삽입된 표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여 이후 피고인에 의한 편집 여적이 없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처럼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사과정에서 인정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기소된 공소사실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전달에만 관여하였고, 실제 작성자는 AC이라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보기 좋게 편집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사실과 다르게 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신문 당시 J법원의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J법원 L·K연구관을 지낸 피고인과 관련하여 연일 많은 기사가 보도되고 있었고, 여기에 피고인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영장담당판사로부터 수차 기각되어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었다. 특히 2018. 9. 2. 이 사건 비공식 변담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J법원 재판연구원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량의 J법원 내부문건이 발견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다수의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포토라인을 통과하여 공개소환에 응한 피고인으로서의 조사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이었던 것이다.

4)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앞서 II. 2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조사 시작 전부터 변호인의 신문내용 메모를 제한하는 취지의 주의를 주었고, 점심시간 무렵에도



메모 내용을 확인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으로서의 검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5) 진술과정에 있어서도 진술 초기에는 문건의 형식상 평소 자신의 스타일과 유사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청와대 문건 유출 사실, 언론보도 내용, 사안요약 문건의 상세한 내용, 정보요청자로 추정되는 O, CL와 피고인 사이의 친분관계 유무 등을 거론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대하여 계속 반복하여 집중 추궁하자(이 부분에 관한 신문은 15:05경부터 시작하여 저녁식사를 마치고 19:30경 조사를 재개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즉석에서 이에 대하여 일일이 적절하게 반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검사 질문에 포함된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해 줌으로써 그 부분에 관한 조사에서 벗어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 조서라는 것이 진술한 내용을 전부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진술한 내용이 전부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다. 2018. 9. 9. 오전 10시부터 밤 22:50까지(휴식시간 14:40~15:05, 16:35~16:50, 식사시간 12:10~13:30, 18:45~19:30) 조사하여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70쪽 정도인 반면, 영상 녹화된 O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과 비슷함에도(조사 시작 시각 : 09:26, 종료 시각 : 22:07, 휴식시간 11:39~11:45, 15:20~15:35, 16:54~17:12, 20:42~21:05, 21:24~21:53, 식사시간 12:40~13:40, 18:46~19:48) 173쪽에 이르고,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이 오전 10:31경부터 오후 15:18경까지(식사시간 약 2시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이루어졌음에도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만 정리되어 있는 피고인신문 녹취서가 오히려 77쪽에 이르는 점에 비



추여 보면,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한 내용으로서 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에서는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 경위에 관하여도 검사의 질요한 추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앞서 본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사안 요약 문건 등 '청와대 관심사건에 관한 J법원 내부자료가 청와대에 유출되었다'는 다수의 언론보도를 접한 상태였고,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검찰도 이미 이를 확인한 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진술은 언론 보도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 검토를 통하여 자신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받고 있는 문서가 바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임을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 문건이 청와대로 유출된 과정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착각한 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8) 피고인이 O의 요청에 따라 AB조 총판부장 또는 연구관에게 지시하여 받은 초안을 편집한 후 그 최종본을 만들어 보내준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O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향후 피고인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았으면 한다고 유보하고 있어,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수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비난성 보도 및 공개소환 등으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오도될 수 있는 정보들에 영향을 받고, 암시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에 유도되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9)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바로 그것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한 이유



라면서 자신이 진술한 모든 내용과 전후 맥락이나 뒤안스가 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IV. 개별 공소사실 인정 여부

1. 작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하여

이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함께 판단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로 하여금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거나, O이 청와대 X비서관 Y(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예비적 공소사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O과 공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지시 및 전달 관련

1) 피고인은 AB조 총괄 재판연구관 AC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해보라고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AC은 피고인이 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면, 자신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AB조에 신건이 접수된 경우 AD법관님이나 수석 또는 K연구관이 특정 사건을 문의할 때 위 사안요약 문건과 같은 양식의 보고서를 수차 만들어 보고했었고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그중 누구로부터 요청받았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AC이 2016. 3. 2. 관련사건인 2014허7356 사건을 검색하고, 기존에 재판연구관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던 2011후3971 파일 양식을 사용해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을 작성했더라도, 그 작성 지시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J법원 내부 또는 피고인 소지 물건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통한 전달 과정이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6. 2. 11.자로 K연구원에서 민·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L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작성 지시 및 전달 시점으로 전제하는 2016. 2. 하순경부터는 지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4) AC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B조에 신건이 접수된 이후 인문예 보도되거나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같은 내용과 형식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업무는 통상 '잡무'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5) O은 이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을 송부한 사람의 이름을 부기하는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명에 피고인 이름이 부기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O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관련하여 어떤 부탁을 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받았다는 기억은 전혀 조금이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O의 명함형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선별 압수된 8,600여 개의 문건에는 파일명에 이름이 부기된 것보다 부기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많고, 그중 피고인의 이름이 파일명에 부기된 문건은 4개에 불과하며, 위 4개 중에서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비롯한 재정신청과 공소제기결정[AJhwpx(첨거목록 순번 560번) 문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이름이 파일명에 부기되어 있음에도 실제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O의 통상



적인 파일 저장 습관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O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O이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시받고 '기억은 없는데, A 연구관으로부터 이런 문건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진행경과와 처리계획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증거목록 순번 204번 85876쪽 4, 5행)라고 진술하고, 이어 'A이 검찰 조사에서 위 사안요약 문건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 문건을 피의자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같은 순번 85878쪽 7 내지 9행)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O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관련하여 어떤 부탁을 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받았다는 기억은 전혀 조금이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진술을 기초로 한 유도성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독자적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Y(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사범부 외부 생명불상자(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제공 관련

1)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내용에 대하여 가장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R은 검찰에서, 주된 관심사는 특허침해 관련 가치분 사건, 침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이었고, 특허등록무효 사건은 당연히 J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관련한 진술은 찾아볼 수 없고, Q의 특허분쟁 사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던 R의 동생 CM이나 S의 검찰 진술 취지 역시 마찬가지다.



2) BC은 검찰 진술과 관련사건(BB법원 2018고합1088 등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은 본 기억이 없고, U수석실 X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Q 특허분쟁 사건의 진행경과를 정리한 내용의 보고서를 두 번 정도 작성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보고서는 CN P기관 심의관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지만 두 번째 보고서는 J법원이나 특허심판원 사이트에서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업데이트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며, P기관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었다면 이를 참고해서 작성했을 것인데 당시 작성된 두 번째 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내용 중 J법원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종료 및 중간보고 예정 시기에 대한 기재가 없고, 단순히 소송진행 경과만 기재되어 있어 참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V U수석으로부터 주식회사 Q이 당사자인 특허 분쟁 사건에 관하여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고 BC 행정관에게 해당 사건에 관하여 확인할 것을 지시했을 것이라던 청와대 X비서관 Y은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기억이 없고 전화통화로도 그 처리계획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이 법정에서 '그 형식이 독특해서 봤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서 단순히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나머지 진술은 전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전달이나 제공과 관계없는 내용이다.

4) Y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 당시, 검사가 Y에게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제가 직접 Y X비서관에게 전달하였는지, 심의관을 통해 X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하였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라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Y이 'O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청와대 보고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O의 진술을 알려준 상태에서의 유도성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불과하다. 오히려 O은 이 법정에서 2018. 8. 27.자 BI 보도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면 당연히 Y이나 심의관을 통한 경로로 생각하였고,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Y과 BC의 각 검찰 진술에 따르면, 자신이 청와대로 이를 전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는 Y의 법정 진술보다는 검찰 조사 당시의 위 진술을 더 믿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정에서 위증죄의 처벌 부담까지 무릅쓰고 이처럼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판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으로 진술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특허등록무효 사건 접수 통계, 특허법인 수입현황, 주식회사 Q 특허분쟁 사건 진행내역 자료를 취합하여 청와대 측에 제공해왔던 CN P기관 심의관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6) O은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직접 Y X비서관이나 심의관을 통해 X비서관 행정관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피의자신문 직전 즈음에 피고인이 작성한 청와대 관심사건 보고서가 자신을 통해서 청와대로 전달되었다는 여러 언론보도를 본 후, 본인의 압수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인해보니 파일명에 피고인의 이름이 부기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발견했고, 사실 정확한 기억이 없었지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밝혀진 것이라면 Y이나 P기관 심의관을 통하여 청와대 측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



안요약 문건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Y, BC의 각 검찰 조사 당시 진술과 2018. 8. 27.자 BI 보도들 비롯하여 실제 당시 청와대 측의 요청에 따라 청와대 관심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법원 내부 문건이 다수 청와대에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법정 증언을 더 믿을 수 있다.

7) O과 P기관 소속 심의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거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되었다거나 청와대 등 사법부 외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다. O과의 공모 관련

1)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은 특정 개인 간 소송이 아닌 법인 간의 소송으로 당시 사회적 관심 사안에 관한 소송도 아니었고, 위 문건이 작성될 당시라는 2016. 2. 하순경은 위 소송에서의 피고 회사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R, S 부부의 T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나 이른바 비선의료진에 관한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피고인이 미리 대통령이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2015. 1.경부터 2016. 3. 24.까지 법관 및 직원들이 법원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기재된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하급심 및 상급심을 비롯한 주식회사 Q 관련 민·형사 사건 판결문이나 진행을 검색해 본 수백 건의 내역 중에 피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O은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전달 자체에 관하여 대부분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뿐, 청와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성 있는 정황사실을 추정할 만한 내용을 진술한 바 없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외에도 국정감사나 국회의 헌안 질문과 관련하여 P기관 측이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설령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했더라도 특별히 이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절도의 점에 관하여

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0 기재 기초보고 전자문서 파일에 관하여

1) 사실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0 기재 기초보고 전자문서 파일(이하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이라 한다)을 유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III.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557번, 592-595번, 601번, 602번)과 그 속성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604번 중 해당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수사보고[A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명장 집행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CE에 대한 2018. 9. 7.자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46번 중 수사기록 47422쪽 2행부터 47428쪽 8행까지), AH에 대한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수사기록 48928쪽 20행부터 48937쪽 3행까지), AH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174079쪽 3행부터 174087쪽 진술 끝부분까지), AH가 임의제출한 외장하드, 임의제출 동의서, 이미징 등 참관확인서, 파일목록 저장 CD 및 그 출력물, P기관 회신, BD변호사회 회신, 파일 비교 문건들 및 각 관련 수사



보고(증거복복 순번 48 내지 55번, 151번, 164번, 165번, 545번, 546번 중 공소사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22 해당 부분, 558번, 559번, 570, 571번)들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외에 나머지 증거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단거나 상태가 다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파일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저장되었을 수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이 사건 영장 집행 이후 피고인이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해서 폐기한 경과에 관한 진술과 2016. 2.경 AH로부터 업무에 참조하기 위하여 1년간 작성한 신권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전달받았을 수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포괄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피고인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폐기한 SSD에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압수·수색 절차에 증대한 하자가 있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던 검토보고서가 최종등록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였으며(수사기록 53216쪽 14행), CE, AH의 각 검찰 진술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면서 AH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던 파일과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했던 파일이 동일한지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고 있고(수사기록 53218쪽 3행), 검찰 이래 이 별정에 야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증거 수집절차의 위법성



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검찰 진술의 진정한 취지가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증인 CE의 '2016. 2.경 1년간 작성한 선전 검토보고서 파일을 AH 조장 연구관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CE에 대한 2018. 9. 7.자 검찰 진술조서 중 CE의 J법원 근무 이력,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가치에 대한 사건이나 통상적인 검토보고서 등록 과정에 관한 진술(증거목록 순번 46번 중 47421쪽 1행부터 47422쪽 1행까지, 47428쪽 9행부터 47432쪽까지), AH에 대한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AH의 이력,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 진술(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48928쪽 1행부터 19행까지, 48937쪽 4행부터 48938쪽까지), AH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선전 검토보고서 작성 및 등록, 검토보고서 취합 관련 일반적 진술 부분(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174059쪽부터 174079쪽 2행까지), 피고인이 SSD를 폐기한 상황에 관한 CCTV 발췌 영상(증거목록 순번 82, 83번),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49번 중 일부), 다른 사건 J법원 기초보고 문건(증거목록 순번 554번), J법원 재판연구관시스템 업무 개요(증거목록 순번 555번) 등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다.

라) 이차립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2) 가정 판단

설령 피고인이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일부 기초보고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으로 약칭한다)의 적용범위, 입법취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위 파일이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공기록물법 제2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 공공기록물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관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장 이하에서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 본문에서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록물을 국민에게 널리 공개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고 할 것인데,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는 AD법관의 심리 및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하여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에 대한 검토 등이 기재된 조사·연구보고서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관련사건과의 모순·저속을 방지하고, 재판연구관 연구보고지원, 협업, 통계 활용 등을 위하여 2009년경부터 관련 규칙이나 예규 등이 없이 J법원 내부에 자체적으로 설치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되어 J법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것이어서(검찰 조사 당사 AH는 보안이 필요한 일부 중요한 사건은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J법원 L·K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Q도 보고서 등록이 의무로 되어있지는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초 국민 일반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 기록에도 첨부되지 않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이나 국민에 대한 공개와는 무관하다.

(다) 공공기록물법은 제2장에서 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질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의 특성상 그 등록·분류·편질 등의 방식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사·재판 관련 기록물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물의 생산에 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장에서는 P기관, 사법연수원, 각급법원 등이 기록물로 남겨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국제기구 또는 외국법원과 체결하는 주요협약 등에 관한 조사·연구서, 검토서(제9조 제1항), J법원 또는 P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 등의 회의록(제10조), J법원장·AD법관·P기관장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등 시청각기록물(제11조)을 생산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거나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제12조 제1항), 각급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생산을 완료한 기록물에 대하여 J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접근 권한을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을 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기록물 보존기간을 당해 기록물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생산의 시기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5조 제1항 참고).

그런데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기초보고 파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나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지도 않는 등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라) 공공기록물법 제48조가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J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참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본이 아니고, AH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만으로는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소지·관리하였던 일부 파일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J법원의 2019. 10. 4.자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 J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전자문서 파일이나 종이문서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기록물의 생산·분류·관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도 기록물로 검색되지 않는다(증 제33호증).

(2) 공공기록물에 대한 인식이나 무단 유출의 범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L·K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민사 AG조의 경우 매년 2월 사무분담이 변경될 부럽 업무 적용 및 검색 편의 등 업무 처리의 효율성, 관련사건과의 모순·저촉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민사 AG조 재판연구관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한 해 동안 작성·보고했던 검토보고서 파일을 모두 취합하여 기존 및 새로 진입한 민사 AG조 재판연구관들 사이에 공유하여 왔던 사실, ㉡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K연구원에서 J법원 민·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L연구원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심층사건을 포함하여 민사 신건 사건에 관하



여 담당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지도·검토 등 업무도 맡게 된 사실, ㉔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민사 신청 검토보고서 지도·검토 등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작성되었던 민사 AG조 검토보고서 파일을 교부받아 업무에 활용하였던 사실, ㉕ 이후 피고인이 2017. 2.경 AI법원 제33민사부 재판장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평소 업무에 참고하였던 자료를 저장해 두었던 외장하드에 J법원 재직 중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전자문서 파일도 함께 추가로 저장하여 둔 사실, ㉖ 피고인이 2018. 2. 13.경 법관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AI법원 사무실 내에 있던 일체의 개인소지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위 외장하드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파일의 경우 보직이 변경되거나 사무실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둔 파일을 새로운 근무자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놓고 이를 업무에 계속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피고인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외장하드에 같은 형식이면서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보다 훨씬 많은 사적 정보나 업무 관련 자료도 저장되어 있었을 점에 비추어 보면, 평소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직을 사직하면서도 개인소지품과 함께 그동안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외장하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을 두고 공공기록물에 대한 인식이나 무단 유출의 새로운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제5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의 식명에 대하여 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초보고 파일과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AI법원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간 행위를 유출로 보고 기소하였고, J법원 사무실에서 AI법원 사무실로 가져간



행위는 정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파일을 외장하드에 계속 저장하여 두었다가 보식이 변경되는 경우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계속 그대로 업무에 참고해 온 점, 피고인이 2018. 3.경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개인소지품을 옮길 때 이러한 외장하드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하였다 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한 외장하드에 자연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해당하는 파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대부중개업체 영업본부장이 퇴사하면서 개인정보를 대부중개 영업에 사용하려고 USB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사안(BB법원 2015. 6. 5. 선고 CO 판결)이나 학원 원장이 원생정보관리 파일 8개 등을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사안(BB법원 2017. 1. 26. 선고 CP 판결)에서 제3자에게 전달한 바 없음에도 개인정보의 유출이 인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유출'이란 사전적으로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러 내보냄',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이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의 뜻으로 사용되는 점, ②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와 구별하여 그 훼손, 멸실, 변경, 위조를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



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대하여도 별도의 형을 정하고 있는 점, ③ 행정안전부가 2017. 7. 26.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011다24562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사안들은 모두 피사 직전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고, 피사 직후에도 바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소지품을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옮긴 전후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위가 전혀 없었던 이 사건에 위 사안들을 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 별지 목록 순번 41 내지 58 기재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소지·관리하게 된 경위

검사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이 J법원에서 선임 도

- 5)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면, 이첩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형식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혼란이 없는 지에겨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는 L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수행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로부터 직접 전달받거나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출력하는 방법 등으로 소지·관리한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과 같은 것임을 전제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지 경위나 출처를 다루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출력물은 전혀 그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18. 9. 5.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및 책상 등에서 발견된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파일 및 출력물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 종료 후 당일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다음날 BB법원 영장담당판사가 해당 문건 유출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다시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 ㉡ 피고인은 2018. 9. 6.경 언론 보도를 통하여 그와 같이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하여 버리고,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 출력물을 세단하여 폐기한 사실, ㉢ 이후 피고인은 P기관 윤리감사관실의 요청으로 2018. 9. 10. 같은 달 초순경 이루어진 검사와의 면담 및 압수·수색 전후 과정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세단하여 폐기한 후 일부 남아 있던 출력물 목록을 작성하여 2018. 9. 12. P기관 윤리감사관실에 송부한 사실, ㉣ 검사는 P기관로부터 위 목록을 회신 받아 그중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검토보고서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것만 선별하여 이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출력물은 AD법관 보고용 형태와 달리 모두 2쪽씩 모아 찍기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 ㉥ 별지 목록 순번 48 내지 50 기재 기초보고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2016나2052768 사건에 대한 연구원



작성 메모에(증 제24호증의 4), 별지 목록 순번 52, 53, 55 기재 검토보고서와 검토메모 등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Q 사건 메모에(증 제25호증의 5), 별지 목록 순번 57 기재 검토메모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R 사건 메모에(증 제26호증의 3), 별지 목록 순번 51, 56 기재 기초보고와 검토메모 해당 사건은 AI법원 CS 사건 연구원 작성 메모에(증 제27호증의 9), 별지 목록 순번 54 기재 검토보고서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T 사건의 참고자료 문건에(증 제28호증의 4), 별지 목록 순번 58 기재 검토메모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U 사건 합의참고자료 문건에(증 제29호증의 6) 각 인용되어 있으며, 위 각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AI법원에서 실제 관여했던 사건인 사실, ㉔ 하급심 법원이 동종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비공식적으로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부터 검토보고서 등을 제공받아 업무에 참고하기도 하는 점, ㉕ 심리적인 부담과 전방위적인 수사에 어디로 불똥이 떨어지 모르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법원 재직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를 폐기한 피고인이 일부러 기소된 출력물만 남겨 놓았다기보다는 폐기하고 남은 문건들을 분류하던 중 AI법원 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취득했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나중에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기소한 출력물이 J법원 업무수행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소지·관리하게 된 출력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유출의 사전적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과 구별되는 다른 태양에 관한 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유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



통제권을 벗어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라서,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개인정보가 그 후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장소적으로 수차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출'에 해당된다면 각 행위마다 모두 '유출'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안에서) 밖으로 흘러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밖에 나가 있는 상태라면,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비로소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라면 이후 당해 개인정보가 장소적으로 이전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유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은 J법원 재판연구관들이 AD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사건 기록에는 편철되지 않는 점, ② 그 출력물 해당 파일은 원칙적으로 J법원 내에서만 설치되어 운영되는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J법원 내에서만 작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다운로드·출력이 가능할 뿐 J법원 외부에서는 위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점, ③ 2009. 8.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J법원 내부 지침인 사전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 제2조, 제4조가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의견서 등은 대외비에 순하여 관리하며,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파일, 인쇄본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그 전부는 물론 일부도 J법원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자를 재판연구원, P기관 근무 법관, AD법관 비서관, 사무원 등 J법원 근무자들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법원 내부에서만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이 미치고 그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이미 그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이 2018. 2. 13.경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이 이러한 J법원 사무실이 아닌 AI법원 사무실에 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사직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나와 보관·비치한 출력물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라도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인 J법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 유무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 제5조 제1항 제3호가 하급심 법원이 등종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J법원판결의 판시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J법원 외부에 검토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AI법원 사무실에 있던 출력물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법원에서 K 또는 L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소지·관리한 것이 아니라 AI법원 재판 과정에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당하던 사건 메모들과 함께 AI법원 사무실에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보관하다가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다른 개인소지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이러한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 공소사실 기재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입에 활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절도의 점

가) 점유 및 범의에 관하여

(1)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다고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J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J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9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관리범위, 관리실태 및 관행, 피고인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보관 기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출력물에 대한 절도의 범의가 있다거나 출력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절취했다는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2014. 2. 13.경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서부터 피고인이 계속 소지·관리해 오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그 출력물이 있는 곳도 계속 달라졌다.

(나)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J법원 내부에서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고 J법원 외부로 반출된 경우에 대비한 보관 방법이나 회수절차 등이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고, 실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P기관 윤리감사관 실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처음으로 2018. 9. 9.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특



목록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 그 목록을 작성해서 송부했다. 특별히 회수에 장애가 될 사정이 없지만, 원재까지도 위 출력물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2019. 10. 4.사 J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이라도 J법원에서 다 법원으로 진출할 때 재판연구원들이 소장하고 있던 재판연구원 보고서 출력물을 반환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재판연구관이 보고서의 생성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초고나 다른 사건 보고서 출력물 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조치 없음"으로 회신하고 있다.

(라) J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증인 AR은 이 법정에서 업무 과정에서 출력하여 참조한 검토보고서 등은 통상 파쇄하거나 버리고, 다 법원으로 진출할 때 본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업무에 참조한 다른 자료나 논문들과 함께 자신의 업무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가져간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CE 역시 이 법정에서 재판연구원 보고서 출력물은 폐기하여 버리고, 다 법원에 진출할 때 본인이 작성한 것은 USB에 담아서 가지고 간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도 AI법원 재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취득하여 검토한 후 그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사건 메모와 함께 AI법원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다른 개인 소지품과 함께 위 메모들에 끼워져 있던 위 출력물을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AI법원 재판업무에 활용한 것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사건 수임 및 변론 활동에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소에 보관·비치하여 변호사 영



업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객체에 관하여(가정 판단)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 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7. 2. 선고 2002도745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이 J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 내지 J법원 재판연구관들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절취한 것이라면,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이 되어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설령 공소사실 기재처럼 J법원이 관리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서를 출력하는 데 이용된 출력용지 자체를 절취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검토보고서를 직접 전달한 재판연구관 또는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으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한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검토보고서 정보를 출력한 것은 모두 J법원이 처리하는 업무, 즉 재판연구관실에서 상고심 사건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검토보고서 정보를 출력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이 그 출력용지 자체에 대하여는 재판연구관이나 피고인의 사용과 소지를 허락하였다고 보인다.

또, 인쇄된 내용을 제외한 출력용지 자체는 소모품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력을 위해 사용되는 순간 이미 그 단계에서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라서 이후로도 계속 대한민국이 사실적 관리가능성과 지배의사를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점유 이전이나 처분에 관하여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가 새물의 소유권에 관한 법리로 주장하는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 6223 판결에서의 LDM REFLECTOR 설계도면 1장 등은 재물로서의 성격이나 가치가 출력용지 자체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반환하거나 파기하지 않고 AI법원 사무실로 가지고 나왔더라도 출력용지 자체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다거나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당사자의 주장

1) 검사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가 이른바 '전판예우'라는 사회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고 2000. 1. 28. 개정 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을 추가함으로써 가벌성은 대폭 확장하여 현실적으로 취급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당해 직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포함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J법원 L·K연구관으로서 재판연구관실 업무를 포함하고, 총판 재판연구관 등을 통하여 신건 및 삼층 사건 보고연구관 지정 및 각종 보고서 검토에 관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L연구관(민·상사)과 K연구관(헌법·행정, 형사·군로, 조세, 지세)이 각 분야를 정하여 보고서를 검토하여 연계는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수정·보완을 지시하거나 처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L연구관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상고심 사건을 포함하는 지위에 있어 민·상사가 아닌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였거나 취급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 J법원에 계속된 사실조차도 몰랐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처럼 관여한 실체가 없음에도 이를 취급한 사건으로 의제하여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취급'의 의미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 관련규정 체계,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라 함은 직무상 직접적·실질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조항은 장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



으로 재직 중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얻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직무연결성을 보장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 혹은 공적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 변호사의 품위와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되어 어느 일방을 대리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금지조항의 입법목적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이 사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서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880 결정 참조).

3) 이 사건 조항과 별도로 이른바 전관예우를 방지하여 국민의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법이 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되면서 제31조 제3항이 신설되어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하던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되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종전 근무기관과의 관계를 전제로 적용되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전제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직무수행의 금지기한을 두지 않고, 변호사로서 실제 수행한 직무 내용이나 비중에 관계없이 단순히 수임 사실 자체, 즉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도 징계처분을 넘어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에 의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데,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 직무수행의 절차와 내용, 사건의 성격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추상적 관여 가능성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수임제한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변호사로서 직업수행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

4) 같은 수임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어 기관의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수임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려면 재직 중 실제로 알게 된 어떤 정보나 사건강악력 혹은 공적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예컨대 1년 구관 퇴직 직전에 접수만 되어 있는 단계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후 수임한 경우 처럼, 극단적으로는 위 제31조 제3항에조차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조항에는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5)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임을 승낙한 사건과 상대방이 위압한 사건이 동일한지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인지 여부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사건 조항도 위 제3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수임제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는 입법취지가 같다는 점에서 위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사건 범위에 관한 해석은 이 사건 조항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과 관련이 있더라도 분쟁의 실제 또는 실질적 쟁점이 다른 사건은 얼마든지 수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의 금지규범을 위배하여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에 따라 처벌되는 변호사법위반되는 수임하는 사건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과 그 분쟁의 실체나 실질적 쟁점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



라고 할 것인데, 이는 사건의 실체나 쟁점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처리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6)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휘·지도하며 (신건 넷 심층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였다는 식으로 다소 모호하거나 혼동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취급의 직접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다. 변호사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역시 사건을 취급하는 것과 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구조상 구별됨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또 취급한 사건은 관여한 사건(제89조의6 제6항)과도 구분된다.

7) 만약 일반적·추상적 관여가능성만으로도 사건을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본다면, 이 사건 조항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취급하게 된 사건을 구별하고 있는 의미도 없어진다.

8) 검사는 수임이 금지되는 사건이 실제 직무상 취급한 것뿐만 아니라 취급하게 된 것도 포함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취급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당해 직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게 된 것으로 기소하지도 않았는데,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에서라면 공소장 변경도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 의하여 피고인이 선임 특히 L연구관으로 재직할 기간 동안 상고심 계속 중인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 주심 AD법관을 보좌하여 조사·연구업



무를 담당할 뿐 사건의 판단권자도 아닌 재판연구관이 오히려 같은 상황에서 직무상 위급하게 된 사건은 주심 AD법관보다 훨씬 다 많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합리하다.

9) 직무상 위급하게 된 사건과 직무상 위급한 사건이 형식적으로 구별이 되는 한 다. 그러나 예컨대 이 사건에서는 재판연구관의 보고서금 실제로 검토하는 경우와 같이 직무상 위급한 사건과 달리 아직 외부로 표출되는 실행행위로서의 정형이 없어 실제로는 재판연구관으로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나 사건장악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전혀 무관한 상황만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고, 실제 그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기도 매우 어렵다.

법관의 직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가 그 처벌에 있어서는 직무상 실제 위급한 사건과 위급하게 된 사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는 이상, 직무상 위급하게 된 사건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죄형관행과 책임주의 원칙상 실제 위급한 사건과 최대한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야 한다. 일용의 추상적 기준으로 직무상 위급하게 된 사건이라 함은 통상의 직무수행절차에 의한 때 근접한 시간 내에 현실적으로 바로 취급에 착수할 수 있게 된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10) 검사는, 2000. 1. 28. 변호사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조비리블 직결하고 법조공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에 직무상 위급하게 된 사건까지 추가하여 가벌성을 대폭 확장한 입법자의 의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직무상 위급하게 된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9. 12. 17. 제208회 제16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이번에 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제기된 배경은 98년도에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또 금년에 대전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해서 드러난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는 법조비리를 척결해야 된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법무부에서 모처럼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개정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변호사법개정법률안(대안) 원문(의안번호 152496, 제안일자 1999-12-17)의 대안의 제안이유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법조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의록 해당부분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여러 제도개혁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는 포괄적 설명일 뿐 구체적으로 이 사건 조항의 개정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위 변호사법개정법률안(대안) 원문에 따르면 "2. 대안의 제안이유"에 '재판·수사기관 직원들과 변호사와의 유착관계 근절을 위하여 (중략) 판사·검사 등으로 자식 중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까지 추가하여야 할 배경이나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고, "3. 대안의 주요 골자"에서도 여러 개정 및 신설 법률 조항들을 나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조항은 빠져 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법조비리 척결이라는 개정법률의 취지가 새로이 신설되거나 개정된 조항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 이유를 넘어, 개별적으로 이 사건 조항에 관하여 실질적·직접적인 처리가능성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일반적·추상적 판여가능성만으로 무조건 취급하게 된 사건으로 보아 가벌성을 확장하려는 의도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1) 검사는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검토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고심 소송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논리대로라면 검토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였는지 여부라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검토보고서를 성실하게 검토한 K·L연구관에 비해 검토를 게을리하거나 K·L연구관 및 총괄 재판연구관 등의 업무범위조정 등을 통해 최대한 직접 검토업무를 회피한 K·L연구관의 처벌범위가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후의 수임을 고려하여 작위적으로 사건의 취급을 조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수증하기 어렵다. 실제 취급한 사건 수와 수임이 제한되는 사건 수가 비례할 수 있지만, 제직 중 알게 된 정보나 사건장악력을 사적 여의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려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이다.

12) 변호사직무에 관한 모범규칙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의 고재과 변호사의 관계에 관한 Rule 1.126)도 전직 판사인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수임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직무 이력과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처리 경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a) Except as stated in paragraph (d), a lawyer shall not represent anyone in connection with a matter in which the lawyer participated personally and substantially as a judge or other adjudicative officer or law clerk to such a person or as an arbitrator, mediator or other third-party neutral, unless all parties to the proceeding give informed consent, confirmed in writing.



가) 피고인은 2014. 2. 13.부터 2016. 2. 10.까지 J법원 K연구관으로, 다음날부터 2017. 2. 8.까지 L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AJ법원 제33민사부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2. 13. 법원직을 사퇴하고, 같은 해 3.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2018. 6. 11.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였다.

나)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2014. 11. 11. J법원에 접수된 이후, AX조 담당 재판 연구관 AW이 2015. 2. 5. AX조 AV 부장연구관의 감수를 거쳐 '전속연구관 검토 또는 AX조 회부' 의견으로 주심 AD법판에게 신건보고를 하였고, 이후 추가 검토를 위하여 AX조 심층조에 회부된 이래 별다른 검토가 없다가 2017. 2.경 총괄 재판연구관을 통하여 재배당 받은 재판연구관 AS이 같은 해 8.경부터 이 사건 상고심 사건 검토를 시작하여 같은 해 10. 18. 심층 검토보고서를 작성·입력하였으며, 2018. 6. 2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 판단

가) 사건을 직부상 취급했다고 할 수 있으려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휘·지도하여 심층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을 취급하였고,'라는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처럼 어떤 업무를 수행했어야 한다. 수행의 사전적 의미도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낸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전임 또는 L연구관으로서의 직부를 처리했던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어야 한다.

나) 살펴건대, J법원 AX조 부장 재판연구관 AV이나 재판연구관 AS, AW이 검찰 조사 당시 'K·L연구관은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연구를 포괄적·전반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사건의 조사·연구 지휘가 본연의 임무이므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담당 재판연구관과 함께 내용을 파악하고 처리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AQ, AS,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L·K연구관은 민사 신건 검토 임무를 제외하고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의 지령이나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심층사건 검토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해당조의 총괄 재판연구관이 지정한 담당 재판연구관으로부터 해당조의 토론회 총괄 재판연구관의 점검·수정·보완을 거친 검토보고서와 의견서를 보고받은 이후에서야 해당 사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L·K연구관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피고인이 K연구관으로 재직하던 2015. 2. 8. 신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어 주심 AD법관에게 보고되었는데, 피고인이 2016. 2. 11경 민·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L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2017. 2. 8경 J법원 근무를 마치고 AI법원 재판업무에 복귀한 이후인 같은 해 8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층검토가 시작되어 같은 해 10경 검토보고서가 작성·보고된 점, 실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검토·보고한 AG조 담당 재판연구관 AW과 위 신건 사건 보고를 지도·검토한 부장 재판연구관 AV이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임 또는 L연구관으로서의 직무를 처리했던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검사는, AV,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총괄 재판연구관이 K연구관의 관리·감독 하에 신건보고 재판연구관을 지칭하므로, 피고인이 2015. 1.경 K연구관으로서 신건보고 재판연구관 지칭에 관여한 점이 분명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AV은 자신이 총괄 재판연구관이었을 때 담당 재판연구관 지정 전에 K연구관과 상의한 기억이 없고, AW을 담당 재판연구관으로 지정한 사람은 FW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55465쪽), AQ도 관여를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K연구관은 AG조의 초기 검토에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AG조의 검토는 민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총괄 재판연구관이 감수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2707쪽).

마) 검사는, AQ, CH,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제든지 시스템에 등록된 신건 검토보고서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지시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고, 신건보고 재판연구관 AW이 작성하여 AD법관에게 보고한 검토보고서를 세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것은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위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이유로 검토하지 아니한 것을 검토한 보고서와 함께 위급한다면 오히려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 AW은 AV 부장 재판연구관에게 신건 검토보고하고, 부장 재판연구관이 바로 AD법관에게 보고 드렸으며, 피고인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4406쪽). AV은 AW이 신건 보고할 당시 AX조는 부장 또는 총괄 재판연구관까지만 보고했고, K연구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5467쪽).

바) 검사는,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주심 AD법관이 심층검토를 지시한 2015. 2월 말경이나 3월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AX조를 총괄하는 K연구관으로서 총괄 재판연구관과 협의하여 심층 재판연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



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Q은 공동조의 경우, 조별로 연구관별 전문분야의 차이, 업무부담의 정도 및 관련사건 처리 경향 등을 고려하여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총괄 재판연구관밖에 없고, 재판연구관에 대한 배분과정에 수석 또는 K연구관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2709쪽). AV은 주심 AD법관이 심층검토를 지시한 사건도 원칙적으로 총괄 재판연구관이 지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5460쪽). 또, 검사의 입장대로 심층 재판연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사건 조항이 직무상 취급한 사건과 취급하게 된 사건을 구별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사) 검사는, AQ, AS,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주심 AD법관이 지시하는 과정에서 K연구관인 피고인이 심층 재판연구관의 검토과정에도 직접 개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Q은 AS 재판연구관이 2017. 10.경 작성한 심층검토 보고 이전 추가 보고서 작성은 없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54837쪽), AS도 사건을 재배당 받은 후 2017. 8.경까지는 검토하지 않다가 같은 해 10. 18. 시스템에 심층검토 보고서를 입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522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바 2016. 2. 11.부터는 L연구관으로 보직이 변경됨으로써 현행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점, 심층사건 검토과정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해당조의 총괄 재판연구관이 지정한 담당 재판연구관으로부터 총괄 재판연구관의 감수할 거친 검토의견서를 보고받기 전에는 해당 사



건을 검토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L연구관으로 보직 변경되기 이전에도 심층 재판연구관의 검토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 검사는, AU,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L연구관이 직접 또는 K연구관을 통해 모든 재판연구관 사건을 통괄하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고심 계속 중인 모든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절차를 총괄·관리함으로써 이를 담당해 왔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대해서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L연구관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고심 계속 중인 모든 사건을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처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 이러한 일반적·추상적 관여 가능성만으로도 사건을 취급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심 AD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함에 불과한 재판연구관이 일부 사건을 취급하게 되는 주심 AD법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든 사건을 취급하게 된다는 결과가 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V.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열람회력으로 미흡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1-14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탁남천 _____

 판사 심 판 _____

 판사 이원식 _____



[별지]

검토보고서 등 목록

순번	사건 번호	형식	문건 종류	개인정보 주체
1	CV(본소), CW(반소)	전자문서 파일	기초 보고	
2	CX			
3	CY			
4	CZ			
5	DA			
6	DB			
7	DC			
8	DD			
9	DE(본소), DF(병합), DG(반소)			
10	DH			
11	DI			
12	DJ			
13	DK			
14	DL(본소), DM(반소)			
15	DN(본소), DO(반소)			
16	DP(본소), DQ(반소)			
17	DR			
18	DS			
19	DT			
20	DU			
21	DV			
22	DW(본소), DX(반소)			



본 관공문은 특별서 인터넷연결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1-14

대한민국 저작권위원회 관공문				
23	CV(본소), CW(반소)	전자문서 파일	기초 보고	원고 : DY
24	CY			원고 : DZ
25	CZ			원고 : FA, EB / 피고 : EC
26	DB			원고 : ED / 피고 : EE
27	DC			원고 : EF / 피고 : EG
28	DD			원고 : EH / 피고 : DY
29	DE(본소), DF(병합), DG(반소)			원고 : EI / 피고 : EJ, EK
30	DH			원고 : EH / 피고 : DY, EL
31	DJ			원고 : EM
32	DK			원고 : EN
33	DU(본소), DM(반소)			원고 : EO
34	DN(본소), DO(반소)			원고 : EP
35	DP(본소), DQ(반소)			원고 : EQ
36	DR			피고 : ER
37	DS			원고 : ES
38	DT			원고 : ET / 피고 : EC
39	DV			원고 : EV, EW, EX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1-14

순번	사건 번호	형식	문건 종류	개인정보 주체
40	DW(본소), DX(반소)	출력물		원고 : EY / 피고 : EZ
41	FA			원고 : FB
42	FC			원고 : FD
43	FE			원고 : FF
44	FG		검토 보고서	원고 : FH
45	FI		원고 : FJ	
46	FK		검토 메모	원고 : FL
47	FM			원고 : FN, FO, FP, FQ
48	FA	출력물	기초보고	/
49	FC			
50	FE			
51	FR			
52	FG		검토보고서	
53	FI			
54	FS			
55	FK		검토메모	
56	FT			
57	FM			
58	FU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노13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 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신봉수(기소), 단성한, 고영하, 남상오(공판)	
변 호 인	범무법인 FX 담당변호사 FY, FZ, GA, GB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3. 선고 2019고합18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 촬영사진 및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

1) 검사는 2018. 9. 5.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띄어쓰기를 고려한 컴퓨터 파일 탐색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CA CB BZ"를 입력하여 제목검색을 실시한 결과,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J법원 사건번호 중 "FV"가 포함된 사건들의 기초보고 등 파일 리스트가 나타났고, 위 파일 리스트가 나타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사진 촬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이라 한다).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를 적법하게 검색한 결과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일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은 CE, AH가 검찰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P기관 또는 AH 등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것으로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 나아가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안요약 문건 관련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J법원 Z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이 기재된 문건(이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라 한다)의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



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해당 진술 부분의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받았고 충분한 휴식시간과 저녁식사 시간을 부여받는 등 진술의 임의성이 충분히 담보된 상태에서 이 부분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도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청와대 Y 또는 법무심의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Y도 검찰에서 O이 청와대에 보고를 한 것이라고 하면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이 부분 검찰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O 및 Y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도 낮게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라. 절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는 재판연구관이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관련 J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비록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 또한



그 중 일부 검토보고서에는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성명, 사건 번호, 사건내용'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원에서 퇴임하면서 검토보고서 파일을 변호사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그 출력물을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는 행위는 공공기록물 및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 각 범행에 대한 범의 역시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마.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변호사법 조항은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기존 수임금지 조항에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까지 추가하여 가벌성을 대폭 확장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취급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당해 직무를 취급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J법원 L·K연구관으로서 재판연구관실 업무를 통할하고, 총괄재판연구관 등을 통하여 신건 및 심층 사건 보고연구관 지정 및 각종 보고서 검토에 관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언제든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수정·보완을 지시하거나 처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였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관직을 퇴직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 것임에도,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 중 증거능력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1) 관련 법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압수·수색 ... 을 받지 아니하며"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라고 정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하고 있다.

이를 이어받아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상세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즉,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과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위와 같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제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무릇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엄격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 조항에 따르지 않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과정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등 참조).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회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등 관련 증거의 수집 및 제출 경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8. 7. 21.경 O 전 P 기관 차장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O의 명함형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포함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파일명: Z요약보고[A].hwp)이 발견되었다.

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는 T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R, S 부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AY 사이의 J법원 Z 특허등록무효 사건(이하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이라 한다) 및 관련사건의 진행경과와 향후 처리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검사는 2018. 8. 23. '피고인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O에게 제공함으로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위 혐의사실과 관련된 서류 및 물건을 포함하여 Q이 당사자인 사건의 관련자료, 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파일 또는 그



출력물 등 일체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영장청구번호 2018-16656). 그러나 BB법원 영장담당판사는 2018. 8. 24. '검찰이 이미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작성하여 송부한 사실을 다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문건을 소지하고 있을 개연성이나 다른 압수·수색청구 문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포괄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위 영장청구를 기각하였다.¹⁾

라) 검사는 피고인에게 특정 사건의 사건절차진행정보를 유출해 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관련 자료 임의제출 의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공식 면담을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일요일) 16:00경 BU검찰청을 방문하였고, 검사는 위 혐의인정 여부 및 관련 자료 임의제출 의사 유무를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까지 의사를 명확히 하겠다고 답하고, 면담 말미에 검사가 요구하는 진술서 작성은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공식 면담'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8. 9. 3. BA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연구관 재직 시 P기관의 요구로 특정 사건의 진행경과나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기억이 없고, 검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임의제출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마) 검사는 2018. 9. 3. 피고인이 대통령 관심사건임을 전해 듣고 O을 통해 청와대 측에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처리계획 등을 전달해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²⁾와 이 사건 비공식 면담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혐의 관련자료의 임의제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³⁾를 함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9호증의 3(공판기록 666면)

2) 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재)청구 필요성(증 제20호증의 1, 공판기록 770면)



계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였다. BB법원 영장담당판사는 2018. 9. 4. 압수할 물건과 압수·수색의 방법을 특별히 제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다.⁴⁾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서울 서초구 AJ, AK호 또는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

압수할 물건

본 영장 범죄사실란 기재 문건인 “사안요약” (문서정보 상 최종수정일 2016. 3. 8.)의 원본 파일과 그 출력물 및 위 파일의 사본파일과 그 출력물로 한정함.

압수수색의 방법 제한

위 압수할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피의자 본인의 참여 하에서 [별지] 기재 내용을 준수하여 집행할 수 있음.

[별지]

1. 문서에 대한 압수

- 생략-

2. 컴퓨터 용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휴대전화기 제외)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가. 전자정보의 수색

(1) 수색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압수 없이 수색만 함.

(2) 수색은 검색어 “Z” 또는 “CC” 를 입력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에 의해서 실시함.

나. 전자정보의 압수

(1) 전자정보의 소재지에서 위 방법에 의해 수색된 전자정보 중 2016. 2. 17.부터 2016. 3. 8. 까지 사이에 작성된 전자정보를 선별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3) 피의자 A의 범행 부인 및 임의제출 거부 의사 확인(증 제20호증의 2, 공판기록 800면)

4) 증 제1호(공판기록 150면)



(2) 저장매체의 하드카피-이미징 및 저장매체 원본 반출은 허용되지 않음.

(3) 압수시 준수사항

(가) 피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여야 함.

(나)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함.

바) 검사는 다음날인 2018. 9. 5. 10:20경부터 16:20경까지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장용 디지털 포렌식 장비(CFT, Computer Forensic Tool)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연결하여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검색방법인 "Z" 또는 "CC"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였으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원본파일 또는 그 사본파일을 찾지 못하였다. 이에 BU검찰청 소속 컴퓨터 포렌식 수사관 GC은 영장집행 현장에 있던 검사의 지휘를 받아 "CA CB BZ"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제목 기반 검색으로 피고인의 컴퓨터에 대한 검색을 계속한 결과, 모니터 화면에 J법원 사건번호 중 "CA" 또는 "CB" 또는 "BZ"가 포함된 사건들의 기초보고 등 파일 리스트가 나타났다.

사) 이에 검사는 같은 날 11:37경과 15:05경 위와 같이 "CA" 또는 "CB" 또는 "BZ"가 포함된 사건들의 기초보고 등 파일 리스트가 나타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검사는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기초보고 등 파일을 반출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비치한 행위가 공공기록물 무단 유출 및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및 그 촬영 시각 등이 기재된 속성 화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이 "CA CB BZ"를 입력하는 제목기반 검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가) 검사는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띄어쓰기를 고려한 컴퓨터 파일 탐색 방법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CA CB BZ"를 입력하는 방법



으로 제목기반 검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탐색 작업을 담당한 BU 검찰청 컴퓨터 포렌식 수사관 GC은 당심에서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키워드 2개('Z', 'CC')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검색하였으나 결과가 안 나왔다. 옆에 있던 수사팀 계장에게 보고하였더니 담당 검사와 상의한 후 '어떻게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고, '키워드를 나눠서 검색하면, 띄어쓰기 때문에 검색이 안 되는 부분들이 검색되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수사팀 계장이 다시 담당 검사와 상의한 후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자'라고 하여 "CA CB BZ"로 제목기반 검색을 하였다. 자신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띄어쓰기를 고려한 컴퓨터 파일 탐색 방법을 설명한 사실은 없고, 담당 검사가 피고인에게 설명해주었는지 여부를 듣지 못하였다. 이러한 검색 방법에 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으므로 검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강제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영장에 기재된 수색 방법에 위반한 수색에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인 의사로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나아가 검사는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CA CB BZ"를 입력하는 제목기반 검색에 동의를 받았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GC의 당심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이 "CA CB BZ"를 입력하는 제목기반 검색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일인 11:37경 수사관이 이 사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는 장면을 다시 촬영하여 이를 원심법정에 제출하였고,⁵⁾ 피고



인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일 밤에 이 사건 영장 집행에 '별건 수사의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여 공유하기도 하였다.⁶⁾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영장 집행 후 4일이 지난 2018. 9. 9.자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였다.⁷⁾ 만일 검사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이 "CA CB BZ"를 입력하는 제목기반 방식의 검색에 동의하였다면, 검사가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서에 남기지 않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검색방법에 동의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과 그 속성화면 사진 증거능력 인정 여부

앞서 본 이 사건 영장 집행 경위 및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⁸⁾과 그 속성화면 사진들⁹⁾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가) 헌법 제12조 제3항은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처분의 남용으로 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된다. 이 사건 영장은 컴퓨터 등 정

5) 증 제40호증(공판기록 2,473면)

6) 증 제59호증의 1, 2, 3

7) 수사기록 48970면 10행 이하, 49007면 10행 이하, 수사기록 49020면 8행 이하

8) 증거목록 순번 557번, 592-595번, 601번, 602번

9) 증거목록 순번 604번 중 해당 부분



보저장매체 수색방법을 검색어 "Z" 또는 "CC"로만 한정하고 있음에도, 검사는 이러한 제한을 위배하여 "CA CB BZ"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포괄적으로 수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영장 집행에 사용된 현장용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압수수색 대상 컴퓨터에 연결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여 제목 기반 검색을 하는 경우 'CA'가 포함된 파일, 'CB'가 포함된 파일, 'BZ'가 포함된 파일이 모두 검색되어 'CA', 'CB', 'BZ' 등 3개의 키워드를 각각 검색하는 것과 동일할 정도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¹⁰⁾ 이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나) 검사는, 이 사건 영장에는 검색어로 "Z" 또는 "CC"를 입력하도록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검색 방식이나 "*" 입력 기능 활용 여부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예컨대, 압수할 대상 파일 제목이 "CACB BZ", "CA CBBZ", "CA CB BZ"와 같이 띄어 쓰는 방식으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CA CB BZ" 등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여 수색하는 것은 이 사건 영장의 수색방법 제한 범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영장이 제한하는 문언 그대로의 수색방법으로만 집행했을 때, 아무런 검색결과가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영장이 수색방법을 위와 같이 특별히 제한한 것은 광범위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

10) 검찰수사관 GC의 당심 법정 진술 녹취록 45-46면



체의 특성상 압수할 물건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색 대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제목 중 "CA" 또는 "CB" 또는 "BZ"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의 수색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검사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방법을 위반하여 수색한 결과 이 사건 영장 기재 혐의사실인 공무상비밀누설과 관계없는 새로운 별건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별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에 대한 법관의 사법적 통제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은 압수물 자체와 같이 독립한 증거가치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사진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촬영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현재 범행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과 수색방법의 제한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하게 압수 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검사는 2018. 8. 23. 압수수색영장(영장청구번호 2018-16656) 청구 시에도 압



수할 물건을 '본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파일(이메일 포함) 또는 그 출력물, 피고인이 소지·관리·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휴대폰, 태블릿 PC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 관련 자료,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 등으로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¹¹⁾ 그러나 영장담당판사는 재판 문건과 정보를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어 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영장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② 검사는 2018. 9.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비공식 면담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J법원 관련 문건 일체와 휴대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임의제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③ 검사는 2018. 9. 2.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함에 있어서도 압수할 물건을 범죄사실과 관련된 '보고서, 결재문서, 회의록 등 회의 관련 자료, 업무일지, 다이어리, 메모지, 쪽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교환내역 등'과 같이 종전 영장청구와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BB법원 영장담당판사는 압수할 물건을 '이 사건 사안 요약 문건 파일 1개와 그 출력물'로 한정하고, 검색방법 역시 검색어 "Z" 또는 "CC"로만 입력하여 탐색하는 방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여 이 사건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사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④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 및 방법에 대비되는 집행시간, 집행 종료 즈음에 피고인으로부터 현장보전조치를 약속한다는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무관한 자료의 임의제출을 계속 종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11) 증 제19호증의 3(공판기록 682~685면)



마) 검사는,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촬영은 압수·수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소정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위한 부수처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가 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부수처분은 압수·수색영장을 원활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예컨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주거에 들어갈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여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수색방법으로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고도 압수할 물건을 찾지 못한 수사기관이 임의로 다른 수색방법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나아가 그 결과를 사진으로 촬영한 행위를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소정의 부수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른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검사의 주장 요지

설령 수색방법 및 그에 대한 사진 촬영이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있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 현장 사무실 캐비닛 등에서 검토포고서 및 의견서 출력물이 쌓여있는 것을 견문한 상태에서 당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H 등 관련자의 소환이 불가피하였고, AH 등이 스스로 독립적 판단에 기하여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검사가 영장주의 정신을 회피하거나 잠탈하려 한 바 없다. 또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부인될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련의 수사에 따라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기초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수사보고[A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¹²⁾

위 증거는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을 마친 후 당일 위 집행 전반의 개요를 기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기초로 위 컴퓨터에 다량의 검토보고서 파일 등 내부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 결과와 그 사용 필요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CE에 대한 2018. 9. 7.자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¹³⁾ AH에 대한 2018. 9. 9.자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¹⁴⁾ AH에 대한 2019. 2. 17.자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¹⁵⁾

CE과 AH에 대한 각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은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개별 파일들의 출처 주소(디렉토리)상 폴더 명의자들 중에서 당시 J법원 재판연구관이던 CE과 AH를 순차 소환하여, ① CE에게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CE, AH가 2015년 한 해 동안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민사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묻고 답한 내용, ② AH에게 다시 2016. 2.경 AH 요구로 1년간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건네주었다는 CE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마찬가지로

12) 증거목록 순번 37번

13) 증거목록 순번 46번 중 수사기록 47422면 2행부터 47428면 8행까지

14) 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수사기록 48928면 20행부터 48937면 3행까지

15) 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174079면 3행부터 174087면 진술 끝부분까지



AH가 같은 시기에 1년간 AG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을 취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위를 묻고 답한 내용 등이 기재된 서류들이다. 그리고 AH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해당 부분 역시 앞서 1회 검찰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캡처하여 직접 제시하면서 개별 파일별로 사건번호, 저장 경로, 속성을 AH가 소지한 파일들과 비교하면서 해당 신건보고서 파일 전달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다.

위와 같이 ㉠ 위 각 검찰 진술조서의 해당 부분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근거하여 조사 대상자를 특정한 점, ㉡ CE과 AH에 대한 1회 검찰 진술조서는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입수한 지 2일과 4일 만에 작성된 점, ㉢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진을 직접 제시하면서 질문했던 점, ㉣ 그러한 질문 방식에 따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CE과 AH가 스스로의 기억만으로 그 기재와 같이 대답하기는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이 없었다면 그와 같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검사는 CE이 "AH 재판연구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준 적이 있는데,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진술 역시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의 결과로 취득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내용으로 알게 된 AH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답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증거들은 모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수사보고[AH 판사의 외장하드 임의제출동의서 등 편철],¹⁶⁾ 임의제출 동의서,¹⁷⁾

16) 증거목록 순번 48번

17) 증거목록 순번 49번



압수목록 교부서,¹⁸⁾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¹⁹⁾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²⁰⁾ 현장조사 보고서 2부,²¹⁾ 수사보고[AH 판사의 외장하드 파일 목록 CD첨부]²²⁾, 파일목록 저장 CD,²³⁾ 수사보고[A 컴퓨터 문서파일과 AH 제출 파일 목록 비교],²⁴⁾ 수사보고[전 J법원 재판연구원 AH 판사가 임의제출한 'J법원 민사 AG조 재판연구원 작성 검토보고서 90,330개 파일 제목' 출력물 편철],²⁵⁾ J법원 민사 AG조 재판연구원 작성 검토보고서 90,330개 파일 제목' 출력물,²⁶⁾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제출 등 요청) 공문,²⁷⁾ J법원 CV(본소) 등 기초보고(26부) 중 공소사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0 해당 부분,²⁸⁾ A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과 AH가 임의제출한 재판연구원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파일 비교 1부,²⁹⁾ AH 부장판사가 임의제출한 재판연구원 검토보고서 파일목록 중 'BZ' 문자열이 포함된 문서파일 필터링 결과 1부,³⁰⁾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³¹⁾ 소송대리인 등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CV 외 25건)³²⁾

위 증거들은 AH가 1회 검찰 조사를 받은 2018. 9. 9. 당일, 2015. 2.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작성된 J법원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 및 나머지 검토보고서 파일의 제목 목록을 임의제출하고, 수사기관이 해당 파일의 제목 목록을 AH의 참관 하에 이미징한 사실에 관한 서류(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3번), 이미징 파일 목록이 저장된 CD와 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5번, 165번), AH가 임의제출한 파일 목록 중 'BZ'가 포함

18) 증거목록 순번 50번
 19) 증거목록 순번 51번
 20) 증거목록 순번 52번
 21) 증거목록 순번 53번
 22) 증거목록 순번 54번
 23) 증거목록 순번 55번
 24) 증거목록 순번 151번
 25) 증거목록 순번 164번
 26) 증거목록 순번 165번
 27) 증거목록 순번 545번
 28) 증거목록 순번 546번 중 일부
 29) 증거목록 순번 558번
 30) 증거목록 순번 559번
 31) 증거목록 순번 570번
 32) 증거목록 순번 571번



된 파일과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파일과의 속성을 비교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558번, 559번),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으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2019. 1.
16. P기관로부터 회신 받은 해당 파일의 출력물 첫 페이지 부분과 2018. 9. 11. BD변
호사회로부터 회신 받은 수입사건 경유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545번, 546번 중 일부,
570번, 571번) 및 각 그 수집 경위나 결과를 정리한 수사보고들(증거목록 순번 48번,
54번, 151번, 164번)이다.

위 증거들 역시 검사가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을 바탕으로 AH가 피고인에게
검토보고서 파일을 교부한 경위 및 현재도 위 파일을 교부하고 있는지를 추궁한 결과
AH가 위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임의제출 받아 수
집된 증거들,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으로 특정된 사건에 대하여 P기관로부터 회신
받은 해당 기초보고 파일의 출력물 첫 페이지, BD변호사회에 해당 사건번호로 신고된
수입사건 경유내역 자료들, AH 소지 문건 파일과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에 나타난
파일 사이의 비교 증거들인 점, 위 증거들이 다른 경로로 발견되었을 수 있었다는 사
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제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
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
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위법하게 압수절차에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2차적 증거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② 2차적 증거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 자체나 그것을 이용하여 형성된 상태를 다시 이용하는 방식으로 수집된 것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한 출력물에 근거하여 수집된 것이 아니다. 다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 제출 등 요청) 공문,³³⁾ J법원 CV(본소) 등 기초보고(26부) 중 공소사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0 해당 부분³⁴⁾는 검사의 요청으로 P기관이 해당 검토보고서를 임의제출한 자료이기는 하나, 검사는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과 이에 터잡은 CE, AH의 진술 등을 토대로 P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쌓여있던 검토보고서 출력물의 작성자를 바로 CE와 AH로 특정할 수 있는 사정은 없었고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의 출처 주소상 작성자 이름을 근거로 CE와 AH를 특정하였고, 수사기관이 CE와 AH 외에 다른 검토보고서 작성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CE와 AH가 임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했더라도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으로부터 독립된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사진에 현출된 과일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점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AH가 2018. 9. 9. 외장하드를 임의제출하기 위하여 자택으로 운전하여 갈 당시 담당 검사가 AH의 차량에 동승하는 등 AH는 이 부분 수사 당시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사는 AH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외장하드(WD My

33) 증거목록 순번 545번(수사기록 161316번)

34) 증거목록 순번 546번 중 일부



passport)에 저장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가 위 청구가 기각되기도 하였다.³⁵⁾

⑤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영장담당판사는 이 사건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수색방법의 제한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러한 특별한 제한을 위반한 것을 두고 가벼운 절차위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만일 이러한 위법한 수색을 통하여 얻은 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영장의 요건을 위반하여 1차적 증거를 수집하더라도 2차적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일단 위법하게라도 영장을 집행해 보자.'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즉, 이 사건 영장 집행과 같이 위법한 압수수색의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당해 위법수집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에 관한 진술 부분 증거능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및 전달에 관한 부분의 진술 부분(수사기록 48986면 1행부터 49007면 2행까지, 이하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이라 한다)이 공판중심주의 내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35) 증 제19호증의 5



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참조). 이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이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 J법원 L연구관을 지낸 피고인과 관련하여 많은 기사가 보도되고 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었다.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J법원 내부문건이 다량 발견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성 보도가 비등하였다. 피고인은 제1회 피의자신문을 위한 검찰 출석 3일 전인 2018. 9. 6.경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하여 버리고,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 출력물을 세단하여 폐기하였고, 검찰 출석 당시 다수의 취재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이른바 포토라인을 통과하여 공개소환에 응하였으므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이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나) 그러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은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실시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있다



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은 2018. 9. 9. 10:00경 시작되어 같은 날 22:55경 종료되었는데, 12:10~13:30에 점심식사 시간이 부여되었고, 14:40~15:05 및 16:35~16:50에 각 휴식 시간이 부여되었으며, 18:45~19:30에 저녁식사 시간이 부여되었다. 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는 "오늘 장시간에 걸쳐 친절하게 조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³⁶⁾ 수사과정 확인서에도 수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2명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신문절차에 참여한 다음 조서 말미에 서명하였는데,³⁷⁾ 변호인들이 피의자신문절차나 내용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③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총 71면이고 그 중 이 사건 사안 요약 문건에 관한 진술 부분은 수사기록 48986면 1행부터 49007면 2행까지 약 21면에 달한다. 즉,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관련된 진술 이외에 피고인의 개인 신상, J법원 재판연구관실의 구성 및 업무, O과의 관계,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제기 등 다른 진술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④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영장 집행의 위법성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6) 수사기록 49020면

37) 수사기록 49022면



저는 당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별건 압수수색이고,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³⁸⁾

저는 당시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³⁹⁾

법원이 수색방법으로 제시한 'Z', 'CC' 두 개의 검색어 외에도 '성형' 이나 아라비아 숫자 등 다른 검색어를 넣었던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5시간 가까이 장시간에 걸쳐 수색을 진행하면서 제 컴퓨터에 여러 가지를 수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아서 당초부터 별건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후 4시 반에 압수수색이 끝났는데 5시쯤에 언론에 관련보도가 되는 것을 보고 수사기밀이 이렇게 바로 밖으로 새어나가 저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관하여 유감이 있습니다.⁴⁰⁾

그런데 위와 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영장 집행의 위법성 지적, 피의사실 공표 문제 지적 등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반면,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에 대하여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8) 수사기록 48970면 10행 이하

39) 수사기록 49007면 10행 이하

40) 수사기록 49020면 8행 이하



P기관 차장으로 근무하던 O은 2016. 2. 중순경 청와대 Y으로부터 '현재 J법원 재판 중인 Z 특허등록무효 사건이 대통령의 관심사건이니 챙겨봐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 사항을 전달받고, 그 무렵 J법원 L연구소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청와대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Z 사건의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AB조 총괄재판연구소 AC에게 위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2016. 3. 2.경 AC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전달받은 O이 그 무렵 청와대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J법원 재판연구소 AC에게 각종 사법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재판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AC로 하여금 위 특허등록무효사건의 상고심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과 O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각종 사법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AC이 작성한 위 '사안요약' 문건을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그 무렵 위 '사안요약' 문건을 Y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문건에는 R 관련 Z 사건이 2016. 1. 21.경 공동조인 AB조에 배당된 사실, 주심 AD법관이 AE AD법관인 사실, AF 특허조사관이 기술검토 중인 사실, 2016. 3. 중순경 보고연구소가 주심



AD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과 함께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P기관 차장으로 근무하던 O은 2016. 2. 중순경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J법원 재판 중인 Z 특허등록무효 사건이 대통령의 관심사건이니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그 무렵 J법원 L연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하며 'Z 사건의 진행경과 및 처리계획을 알려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AB조 총괄재판연구관 AC에게 위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계획, 관련사건 진행경과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여 2016. 3. 2.경 AC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전달받은 O이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J법원 재판연구관 AC에게 사법부 외부의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특정 재판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처리 계획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AC로 하여금 위 특허등록무효사건의 상고심 및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과 O은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AC이 작성한 위 '사안요약' 문건을 O에게 전달하였고, O은 그 무렵 위 '사안요약'



문건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문건에는 R 관련 Z 사건이 2016. 1. 21.경 공동조인 AB조에 배당된 사실, 주심 AD법관이 AE AD법관인 사실, AF 특허조사관이 기술검토 중인 사실, 2016. 3. 중순경 보고연구관이 주심 AD법관에게 보고할 예정인 사실과 함께 특허조사관의 기술검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 경과와 내용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의 경과 및 내용⁴¹⁾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검사에게 그 작성일을 물으면서 문건 유출에 관한 언론보도나 자신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검토하여 문제되고 있는 보고서가 특허사건에 관한 보고서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삽입된 박스 상단 부분에 색깔을 넣고 박스 외관을 굵은 줄로 하는 게 평소 사용하는 방식이라 자신이 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사건 진행경과 등을 누가 작성해서 보낸 것을 모양만 보기 좋게 편집해서 보낸 것은 아닌지,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닌지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나 해당 문건 작성 및 전달 경위에 관하여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특정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는 P기관 측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많지 않음에도 기억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면서 O이 특별히 요청해서 작성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

41) 수사기록 48976면부터 1행부터 49007면 2행까지



고인은 만약 자신이 O에게 보내 준 것이 맞다면 사건 진행경과를 알려달라는 O의 부탁으로 보내주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 이전부터 P기관 기획조정실 심의관이 청와대 측의 요구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관련 당사자의 특허분쟁 사건에 관하여 자료를 전달해 준 사실, ㉡ CL P기관장이 위 특허분쟁 사건을 검색했었던 사실을 알려주면서 O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최종본을 만들어 보내 준 것 아니냐고 계속 추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구체적으로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문건의 내용상 AB조 총괄재판연구원 또는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하여 초안을 받아 편집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의 내용에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작성 및 전달 과정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착각한 상태에서 검사가 유도하는 바에 따라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8. 9. 3. BA 변호사를 통하여 검사에게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P기관의 요구로 특정 사건의 진행경과나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억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나)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지금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내용으로



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건에 삽입된 박스 상단 부분에 색깔을 넣고 박스 외관을 굵은 줄로 하는 게 평소 사용하는 방식이라 자신이 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고 진술하였다.⁴²⁾ 그러나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의 기초가 된 AF 특허조사관이 작성한 기술검토서에 삽입된 표와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삽입된 표의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여 그 이후 위 문건 작성자에 의한 표 부분 편집 가능성이 없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그런데 피고인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표 작성 방식이 자신의 평소 습관과 일치하므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건 아니고 편집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⁴³⁾ 만일 피고인이 대통령 관심사건임을 전해 듣고 이 부분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초안을 전달받아 이를 편집하는 방식으로 문건을 작성하였다면, 코트넷 사건검색 시스템 등 법원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판결서의 내용을 직접 검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5. 1.경부터 2016. 3. 24.까지 법원내부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을 비롯한 Q 관련 민·형사 사건 판결문이나 진행을 검색해 본 수백 건의 내역 중에 피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검찰 진술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O의 요청에

42) 수사기록 48990면

43) 수사기록 49004면



따라 AB조 총괄재판연구관 또는 연구관에게 지시하여 받은 초안을 편집한 후 그 최종본을 만들어 보내준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O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향후 피고인의 이메일을 확인해 보았으면 한다고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2018. 9. 5.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Z' 또는 'CC' 및 "CA CB BZ"를 검색어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을 검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출력물을 찾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O과 P기관 소속 심의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거 이루어졌음에도 피고인을 통한 전달 과정이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도 않았다.

마) 결국 피고인의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으로는 ㉠ '청와대 관심사건에 관한 J법원 내부자료가 청와대에 유출되었다'는 다수의 언론보도를 이미 접하였고, ㉡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J법원 내부문건이 발견되어 이에 관한 비난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 피고인은 검찰 출석 3일 전인 2018. 9. 6.경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하여 버리고,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 출력물을 차단하여 폐기하였으므로, 피의자신문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 이러한 가운데 검사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시받았는데, 문건에 삽입된 표 작성 방식이 자신의 평소 표 작성 방식과 일치하므로, 위 문건 작성 및 전달 과정에 자신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착각한 상태에서 검사가 유도하는 바에 따라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O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로 하여금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원심 및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전달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AC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AB조에 신건이 접수된 경우 AD법관님이나 L 또는 K연구관이 특정 사건을 문의할 때 위 사안요약 문건과 같은 양식의 보고서를 수차 만들어 보고했었고 그중 누구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작성을 요청받았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다. AB조에 신건이 접수된 이후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회에서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같은 내용과 형식의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한 기억이 있는데, 그러한 업무는 통상 '잡무'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AC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AC이 2016. 3. 2. 관련 사건인 2014허7356 사건을 검색하고, 재판연구관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던 2011후3971 파일 양식을 사용해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을 작성했다라도,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J법원 내부 또는 피고인 소지 문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O과 P기관 소속 심의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대규모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통한 전달 과정이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6. 2. 11.자로 K연구관에서 민·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L연구관으로



보직변경되어, 공소사실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작성 지시 및 전달 시점으로 전제하는 2016. 2. 하순경부터는 지적재산권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5) O은 원심 법정에서 '통상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파일을 송부한 사람의 이름을 부기하는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파일명에 피고인 이름이 부기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관련하여 어떤 부탁을 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위 문건을 받았다는 기억은 전혀 조금이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⁴⁴⁾ O의 명함형 이동식 저장장치(USB)에서 선별 압수된 8,600여 개의 문건에는 파일명에 이름이 부기된 것보다 부기되지 않은 것이 현저히 많고, 그중 피고인의 이름이 파일명에 부기된 문건은 4개에 불과하며, 위 4개 중에서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비롯한 재정신청과 공소제기결정[A].hwp 문건⁴⁵⁾의 경우도 피고인의 이름이 파일명에 부기되어 있음에도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O의 통상적인 파일 저장 습관만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O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O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검사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제시받고, "기억은 없는데, A 연구관으로부터 이런 문건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의 진행경과와 처리계획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

44) 검사는, O의 변호인이 BB법원 2018고합1088호 등 사건에서 제출한 2019. 3. 18.자 변호인 의견서 12를 제출함으로써 O이 1심 증언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검사 항소이유서 33면, 검사의 2020. 10. 8.자 구술변론자료 20면). 그러나 O의 변호인이 제출한 위 변호인 의견서는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전체적인 내용은 'O이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에 관하여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는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송부받았는지 위 문건을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O이 위 2019. 3. 18.자 변호인 의견서 12를 통하여 1심 증언을 번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45) 증거목록 순번 560번



다.⁴⁶⁾ 또한 O은 위 검찰 조사에서 "A이 위 사안요약 문건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 문건을 피의자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⁴⁷⁾ 그러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고인의 사안요약 문건 관련 검찰 진술을 기초로 한 유도성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의 검찰 진술이 독자적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 Y(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문건 제공 사실 인정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O이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청와대 Y(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예비적 공소사실)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내용에 대하여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R은 검찰에서, 주된 관심사는 특허침해 관련 가처분 사건, 침해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이었고, 특허등록무효 사건은 당연히 J법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과 관련된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Q의 특허분쟁 사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던 R의 동생 CM이나 S의 검찰 진술 역시 마찬가지다.

2) 청와대 X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BC은 검찰 조사와 BB법원 2018고합 1088 등 사건의 증인신문에서, "X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 Q 특허분쟁 사건의 진행경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두 번 정도

46) 증거목록 순번 204번 85876면 4, 5행

47) 증거목록 순번 204번 85878면 7-9행



작성한 적이 있다. 만일 P기관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었다면 이를 참고해서 작성했을 것인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는 단순히 소송 진행 경과만 기재되어 있어 참고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청와대 X비서관으로 근무했던 Y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기억이 없고 전화통화로도 그 처리계획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Y은 원심 법정에서 'O으로부터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다. 위 문건은 워낙 형식이 독특해서 봤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서 단순히 기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⁴⁸⁾ 한편, 검사는 Y에 대한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Y에게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Y은 "O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보고받았다고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Y의 검찰 제5회 진술은 검사가 O의 진술을 알려준 상태에서 한 유도성 질문에 대한 소극적 답변에 불과하여 독자적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4)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특허등록무효 사건 접수 통계, 특허법인 수입현황, Q 특허분쟁 사건 진행내역 자료를 취합하여 청와대 측에 제공해왔던 CN P기관 심의관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O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직접 Y에게 전달하였는지 심의관을 통하여 X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⁴⁹⁾ 그런데 O은 원심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관하여 "피

48) 공판기록 1013-1014면

49) 수사기록 85878면



의자신문 직전 즈음에 피고인이 작성한 청와대 관심사건 보고서가 자신을 통해서 청와대로 전달되었다는 여러 언론보도를 본 후, 본인의 압수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인해보니 파일명에 피고인의 이름이 부기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발견했다. 사실 정확한 기억이 없었지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밝혀진 것이라면 Y이나 P기관 심의관을 통하여 청와대 측에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⁵⁰⁾ 실제로 2018. 8. 27.자 BI 보도를 비롯하여 당시 청와대 관심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법원 내부 문건이 청와대에 다수 제공되었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O의 위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6) O과 P기관 소속 심의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거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이 사법부 외부 성명불상자에게 제공되었다거나 청와대 등 사법부 외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마. O과의 공모 인정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O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은 사회적 관심 사건도 아니었고, 문건 작성 당시라는 2016. 2. 하순경에는 R, S 부부의 T과의 친분이나 이른바 비선의료진에 관한 내용

50) 공판기록 1893-1894면



이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특허등록무효 사건이 대통령 관심사건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2) O은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에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의 전달 자체에 관하여 대부분 추측하여 진술하였을 뿐이고, 더 나아가 청와대 요구 자료를 제공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없다.

3)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 외에도 국정감사나 국회의 현안 질문과 관련하여 P기관 측이 요청한 자료를 작성하여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O에게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전달했다 해도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바.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C로 하여금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을 작성하게 하도록 지시하여 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거나, O이 청와대 Y(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예비적 공소사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O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4. 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절도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J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이하 '검토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수시로 검색·출력·이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고 각종 검토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등 상고심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으므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검토보고서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하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은 대한민국의 자산으로서 J법원이 관리하는 출력용지를 이용하여 출력한 대한민국 소유의 재물이므로 J법원의 업무 목적 범위에서만 재판연구관 등에게 그 사용 및 소지가 허용되어 있을 뿐, 목적 외의 사용이나 취득·반출은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경 AI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퇴임하면서, 그 무렵 AI법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반출한 후 2018. 3.경 '변호사 A 법률사무소' 등에 보관·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기록물인 별지 검토보고서 등 목록 순번 1부터 22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상고심 소송당사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같은 목록 순번 23부터 47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전자문서 파일 및 출력물을 정당한 권한 없이 유출하고,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48부터 58까지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절취하였다.

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0 기재 기초보고 전자문서 파일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기초보고 전자문서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여부

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검토보고서 등 목록 순번 1 내지 40 기재 기초보고 전자문서 파일(이하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이라 한다)을 유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모니터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557번, 592-595번, 601번, 602번)과 그 속성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604번 중 해당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수사보고[A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CE에 대한 2018. 9. 7.자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46번 중 수사기록 47422면 2행부터 47428면 8행까지), AH에 대한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수사기록 48928면 20행부터 48937면 3행까지), AH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174079면 3행부터 174087면 진술 끝부분까지), AH가 임의제출한 외장하드, 임의제출 동의서, 이미징 등 참관확인서, 파일목록 저장 CD 및 그 출력물, P기관 회신, BD변호사회 회신, 파일 비교 문건들 및 각 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5번, 151번, 164번, 165번, 545번, 546번 중 공소사실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22 해당 부분, 558번, 559번, 570, 571번)들은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외에 나머지 증거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단계나 상태가 다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파일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저장되었을 수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이 사건 영장 집행 이후 피고인이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해서 폐기한 경과에 관한 진술과 2016. 2.경 AH로부터 업무에 참조하기 위하여 1년간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이 저장된 USB를 전달받았을 수 있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포괄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피고인 컴퓨터에 저장하였다거



나 피고인이 폐기한 SSD에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거부하고,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던 검토보고서가 최종등독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였다.⁵¹⁾ 검사가 피고인에게 CE, AH의 각 검찰 진술을 알려주면서 AH가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던 파일과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했던 파일이 동일한지를 질문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⁵²⁾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진정한 취지가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심 증인 CE의 '2016. 2.경 1년간 작성한 신건 검토보고서 파일을 AH 조장 연구관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 진술, CE에 대한 2018. 9. 7.자 검찰 진술조서 중 CE의 J법원 근무 이력,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가치에 대한 사건이나 통상적인 검토보고서 등록 과정에 관한 진술,⁵³⁾ AH에 대한 1회 검찰 진술조서 중 AH의 이력,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 진술,⁵⁴⁾ AH에 대한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및 등록, 검토보고서 취합 관련 일반적 진술 부분,⁵⁵⁾ 피고인이 SSD를 폐기한 상황에 관한 CCTV 발췌 영상,⁵⁶⁾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문,⁵⁷⁾ 다른 사건 J법원 기초보고 문건,⁵⁸⁾ J법원 재판연구관시스

51) 수사기록 53216면 14행

52) 수사기록 53218면 3행

53) 증거목록 순번 46번 중 47421면 1행부터 47422면 1행까지, 47428면 9행부터 47432면까지

54) 증거목록 순번 47번 중 48928면 1행부터 19행까지, 48937면 4행부터 48938면까지

55) 증거목록 순번 552번 중 수사기록 174059면부터 174079면 2행까지

56) 증거목록 순번 82, 83번

57) 증거목록 순번 549번 중 일부



템 업무 개요⁵⁹⁾ 등도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다.

라) 이처럼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2) 가정적 판단 (1) - 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으로 약칭한다)의 적용범위, 입법취지,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공공기록물법 제2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공공기록물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

58) 증거목록 순번 554번

59) 증거목록 순번 555번



정하고, 같은 법 제8장 이하에서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공기록물법 제35조 제3항 본문에서 "비공개 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지나면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J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는 AD법관의 심리 및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하여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 쟁점에 대한 검토 등이 기재된 조사·연구보고서에 불과하다. 이는 향후 다른 관련사건과의 모순·저촉을 방지하고, 재판연구관 연구보고지원, 협업, 통계 활용 등을 위하여 2009년경부터 관련 규칙이나 예규 등이 없이 J법원 내부에 설치한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되어 J법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국민 일반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재판기록에도 첨부되지 않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이나 국민에 대한 공개와는 무관하다.

(3) 공공기록물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장에서는 P기관, 사법연수원, 각급법원 등이 기록물로 남겨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국제기구 또는 외국법원과 체결하는 주요협약 등에 관한 조사·연구서, 검토서(제9조 제1항), J법원 또는 P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 등의 회의록(제10조), J법원장·AD법관·P기관장의 업무관련 활동과 인물사진 등 시청각기록물(제11조)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은 그와 같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거나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그런데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기초보고 파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나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지도 않는 등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서 규



정하는 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4) J법원의 2019. 10. 4.자 사실조회회보에 따르면이라도, J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전자문서 파일이나 종이문서에 대하여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바와 같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도 기록물로 검색되지 않는다.⁶⁰⁾

나) 피고인의 공공기록물에 대한 인식 또는 무단 유출의 범의 유무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L·K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민사 AG조의 경우 매년 2월 사무분담이 변경될 무렵 업무 적응 및 검색 편의 등 업무 처리의 효율성, 관련사건과의 모순·저촉 방지 등을 위하여 해당 민사 AG조 재판연구관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한 해 동안 작성·보고했던 검토보고서 파일을 모두 취합하여 기존 및 새로 전입한 민사 AG조 재판연구관들 사이에 공유하여 왔다.⁶¹⁾

(나)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K연구관에서 J법원 민·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L연구관으로 보직 변경되면서 민사 신건 검토보고서의 지도·검토 등 업무도 함께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존에 작성되었던 민사 AG조 검토보고서 파일을 받아

60) 증 제33호증

61) 민사 AG조 연구관들이 민사신건 보고서 파일을 공유하는 이유에 관하여 AR은 원심에서 "AG조는 하루 3-4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관련 사건의 모순 저촉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련사건은 일관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유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H도 당심에서 "J법원에서는 모순된 판결이 나오면 안 되므로 모순방지가 가장 큰 이유이고, 하루에 3-4건의 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공유하는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업무에 활용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7. 2.경 AI법원에 부임하여 제33민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업무에 참고하였던 자료를 저장해 두었던 외장하드에 J법원 재직 중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전자문서 파일도 함께 추가로 저장하여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이 2018. 2. 13.경 법관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AI법원 사무실 내에 있던 일체의 개인 소지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위 외장하드도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인에게 공공기록물에 대한 인식이나 무단 유출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파일의 경우 보직이 변경되거나 사무실이 변경되는 경우 개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둔 파일을 새로운 근무지 컴퓨터에 그대로 옮겨놓고 이를 업무에 계속 참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관들의 업무 관행, 당심 증인 AH의 진술 내용⁶²⁾, 피고인이 퇴직 당시 가지고 나온 외장하드에는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보다 훨씬 많은 사적 정보나 업무 관련 자료도 저장되어 있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개인소지품과 함께 그동안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외장하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을 두고 공공기록물에 대한 인식이나 무단 유출의 새로운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가정적 판단 (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성립 여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의 석명에 대하여 검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

62) AH는 당심에서 "피고인은 저희 팀(민사 AG조)에 관한 사건을 관여하고 결재를 하고 있었으므로 AG조의 보고서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드리는 행위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연구관 근무를 마치고 일선 법원으로 복귀하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된 검토보고서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공공기록물 유출 또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없다. 다른 연구관들도 J법원 연구관 직무를 마치고 일선 법원에 복귀하면서 자신이 보고한 자료를 소지한 채 복귀해 온 관례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련하여 피고인이 기초보고 파일과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AI법원 사무실에서 변호사 사무실로 가져간 행위를 '유출'로 보고 기소하였고, J법원 사무실에서 AI법원 사무실로 가져간 행위는 경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게 된 파일을 외장하드에 계속 저장하여 두었다가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새로운 근무지에서 계속 그대로 업무에 참고해 온 점, 피고인이 2018. 3.경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변호사 사무실로 개인소지품을 옮길 때 이러한 외장하드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후 공소사실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한 외장하드에 자연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해당하는 파일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① '유출'이란 사전적으로 '밖으로 흘러 나가거나 흘러 내보냄',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 버림 또는 그것을 내보냄'의 뜻으로 사용되는 점, ②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와 구별하여 그 훼손, 멸실, 변경, 위조를 별도의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대하여도 별도의 형을 정하고 있는 점, ③ 행정안전부가 2017. 7. 26.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



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⁶³⁾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59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라 함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011다24562 판결 참조),

한편, 검사가 주장하는 사안들은 모두 퇴사 직전에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려는 별도의 행위가 있었고, 퇴사 직후에도 바로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소지품을 그대로 변호사 사무실로 옮기면서 개인정보의 유출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 위 사안들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초보고 파일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률위반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63)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다. 별지 목록 순번 41 내지 58 기재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소지·관리하게 된 경위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검사는 별지 목록 순번 41 내지 58 기재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이하 '이 사건 출력물'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J법원 K 또는 L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직무수행과정에서 재판연구관들로부터 직접 전달받거나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으로부터 다운로드·출력하는 방법 등으로 소지·관리한 출력물과 같은 것임을 전제로 공소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출력물의 소지 경위나 출처를 다투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출력물은 전혀 그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공소제기한 이 사건 출력물은 피고인이 J법원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지·관리하게 된 출력물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2018. 9. 5. 이 사건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 컴퓨터 및 책상 등에서 발견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파일 및 출력물에 대하여 검사가 이 사건 영장 집행 종료 후 당일 추가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다음날 BB법원 영장담당판사가 해당 문건 유출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는 이유로 다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8. 9. 6.경 언론 보도를 통하여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의 컴퓨터 내 SSD를 분리하여 버리고,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 출력물을 세단하여 폐기하였다. 피고인은 P기관 윤리감사관실의 요청으로 2018. 9. 10. 이 사건 비공식면담 및 압수·수색 전후 과정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세단하여 폐기한 후 일부 남아 있던 출력물 목록을 작성하여 2018. 9. 12. P기관 윤리감사관실에 송부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P기관로부터 위 출력물 목록을 회신 받아 그중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검토보고서 등에 해당하는 사건의 것만 선별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출력물 폐기 경위, 출력물 목록 작성 경위, 검사가 P기관로부터 출력물 목록을 송부받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지·관리한 출력물을 일부러 남겨두었다기 보다는 위와 같이 폐기하고 남은 문건들을 분류하던 중 AI법원 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취득했던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나중에 발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출력물은 AD법원 보고용 형태와 달리 모두 2면씩 모아 찍기로 인쇄되어 있는 점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④ 별지 목록 순번 48 내지 50 기재 기초보고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GD 사건에 대한 연구원 작성 메모⁶⁴⁾에 인용되어 있다. 별지 목록 순번 52, 53, 55 기재 검토보고서와 검토메모 등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Q 사건 메모⁶⁵⁾에 인용되어 있다. 별지 목록 순번 57 기재 검토메모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R 사건 메모⁶⁶⁾에 인용되어 있다. 별지

64) 증 제24호증의 4

65) 증 제25호증의 5



목록 순번 51, 56 기재 기초보고와 검토메모 해당 사건은 AI법원 CS 사건 연구원 작성 메모⁶⁷⁾에 인용되어 있다. 별지 목록 순번 54 기재 검토보고서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T 사건의 참고자료 문건⁶⁸⁾에 인용되어 있다. 별지 목록 순번 58 기재 검토메모의 해당 사건은 AI법원 CU 사건 합의참고자료 문건⁶⁹⁾에 인용되어 있다. 위 사건들은 피고인이 AI법원에서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실제 관여했던 사건이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앞서 본 유출의 사전적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과 구별되는 다른 태양에 관한 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유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라서,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개인정보가 그 후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됨으로써 장소적으로 수차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출'에 해당된다면 각 행위마다 모두 '유출'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안에서) 밖으로 흘러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밖에 나가 있는 상태라면,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비로소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었던 상태라면 이후 당해 개인정보가 장소적으로 이전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유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66) 증 제26호증의 3
67) 증 제27호증의 9
68) 증 제28호증의 4
69) 증 제29호증의 6



(2)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은 J법원 내부에서만 미치고 하급심 법원 등 외부에 있는 경우에는 이미 그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은 J법원 재판연구관들이 AD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고, 사건 기록에는 편철되지 않는다.

② 그 출력물 해당 파일은 J법원의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J법원 내에서만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다운로드·출력이 가능할 뿐 J법원 외부에서는 위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

③ 2009. 8.경부터 시행하고 있는 J법원 내부 지침인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 제2조, 제4조가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의견서 등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며,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파일, 인쇄본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그 전부는 물론 일부도 J법원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자를 재판연구관, P기관 근무 법관, AD법관 비서관, 사무원 등 J법원 근무자들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이 2018. 2. 13.경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이 J법원이 아닌 AI법원 사무실에 있던 것이라면, 피고인이 사직 후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나와 보관·비치한 출력물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고 이미 개인정보처리자인 J법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 유무

살피건대, 설령 개인정보가 담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나온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 제5조 제1항 제3호가 하급심 법원이 동종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J법원판결의 판시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J법원 외부에 검토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AI법원 사무실에 있던 출력물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J법원에서 K 또는 L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지·관리한 것이 아니라 AI법원 재판 과정에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담당하던 사건 메모들과 함께 AI법원 사무실에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보관하다가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다른 개인소지품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이러한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도 포함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이 이후 공소사실 기재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이 AI법원 재판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취득했다가 변호사 사무실로 가지고 나온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유출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



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3) 이 사건 출력물 절취 인정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관리범위, 관리실태 및 관행, 피고인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보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출력물에 대한 절도의 범의가 있거나 출력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가) 피고인이 절취했다는 이 사건 출력물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미 2014. 2. 13.경부터 2017. 2. 8.경까지 피고인이 계속 소지·관리해 오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근무지 변경에 따라 그 출력물이 있는 곳도 계속 달라졌다.

나) J법원 재판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J법원 내부에서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고 J법원 외부로 반출된 경우에 대비한 보관 방법이나 회수절차 등이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고, 실제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P기관 윤리감사관실은 2018. 9. 9. 피고인에게 보관 자료의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은 같은 해 9. 12. 그 목록을 작성해서 송부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위 출력물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2019. 10. 4.자 J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더라도 J법원에서 타 법원으로 진출할 때 재판연구관들이 소장하고 있던 재판연구관 보고서 출력물을 반환 또는 폐기하도록 조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재판연구관이 보고서의 생성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초고나 다른 사건 보고서 출력물 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조치 없음"으로 회신하고 있다.

라)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원심 증인 AR은 업무 과정에서 출력하여 참조한 검토보고서 등은 통상 파쇄하거나 버리고, 타 법원으로 진출할 때 본인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업무에 참조한 다른 자료나 논문들과 함께 자신의 업무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가져간다고 진술하고 있다. 원심 증인 CE 역시 재판연구관 보고서 출력물은 폐기하여 버리고, 타 법원에 진출할 때 본인이 작성한 것은 USB에 담아서 가지고 간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도 AI법원 재판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취득하여 검토한 후 그 과정에서 작성되었던 사건 메모와 함께 AI법원 사무실에 보관하다가, 법관직을 사직하면서 다른 개인 소지품과 함께 위 메모들에 끼워져 있던 위 출력물을 가지고 나왔다.

바) 피고인이 검토보고서 등 출력물을 AI법원 재판업무에 활용한 것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사건 수입 및 변론 활동에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소에 보관·비치하여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변호사법위반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학교법인 AL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J법원 AM 사건(이하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이라 한다)⁷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법원 K연구관 재직 당시 AX조 총괄재판연구관을

70)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가 학교법인 AL(원고)에게 73억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학교법인 AL이 위 변상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2심에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상고로 2014. 11. 11. J법원에 접수된 사건



통해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여 2015. 2.경까지 담당 재판연구관의 상고이유 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휘·지도하고, 2015. 3.경 AX조 총괄재판연구관을 통해 심층 검토를 담당할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L연구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다가 2017. 2.경 AI법원 부장판사 발령을 받아 J법원 재판연구관실을 떠날 때까지 직접 또는 K연구관 등을 통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휘·지도하여 심층 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였고, 2018. 2. 13.경 법관직을 퇴직하여 2018. 3. 13.경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입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연구관 및 L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여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31.경부터 2018. 6. 9.경까지 J법원 L연구관 AQ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수입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면서 관련 소송 정보를 취득하고, 2018. 6. 11.경 학교법인 AL과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법원에 소송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하였으며, 수입 17일 만인 2018. 6. 28.경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입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2. 13.부터 2016. 2. 10.까지 J법원 K연구관으로, 다음날부터 2017. 2. 8.까지 L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다음날부터 AI법원 제33민사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 13. 법관직을 사직하고, 같은 해 3.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2018. 6. 11.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공동조 연구관실의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L·K연구관은 민사 신건 검토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건 담당 재판연구관의 지정,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관여하지 않았다. 심층 검토 사건의 경우 각 공동조의 총괄재판연구관이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였고, 담당 재판연구관은 해당 사건을 심층 검토한 다음 해당 공동조 연구관들의 토론을 거쳐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동조 총괄재판연구관의 점검·수정을 받은 이후 심층 검토보고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L·K연구관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성된 심층 검토보고서와 의견서를 검토하면서 해당 심층 검토 사건에 실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2014. 11. 11. J법원에 접수되었고 AX조 AW 재판연구관이 신건 검토를 담당하였다. AW 재판연구관은 2015. 2. 5. AV 부장연구관의 감수를 거쳐 '전속연구관 검토 또는 AX조 회부' 의견으로 주심 AD법관에게 신건 검토보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2015. 3.경 주심 AD법관의 심층 검토지시에 따라 AX조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담당 재판연구관이 장기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7. 2. 인사이동 무렵 AX조 AS 재판연구관에게 재배당되었다. AS 재판연구관은 2017. 8.경부터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대한 심층 검토에 착수하여 2017. 10. 18.경 심층 검토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그 무렵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하였다.

5) J법원 제2부는 2018. 6. 28.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의미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 관련규정 체계, 구체적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이라 함은 직무상 직접·실질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된 사건으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일반적·추상적으로 그 직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경우 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



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결정 참조).

2) 이 사건 조항은 장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으로 재직 중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공무원으로서 얻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무원의 직무열결성을 보장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 또한, 공무원으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 혹은 공적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여 변호사 직무의 공정성, 변호사의 품위와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되어 어느 일방을 대리하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880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즉, 공무원이 장래 변호사가 되어 자신이 직무상 처리하였던 사건을 언젠가 수임할 수 있다면 그 직무를 처리할 때 개인적 이해에 따라 처리할 위험이 있고, 조만간 변호사로 개업할 예정인 공무원이 재직 중 향후 사건을 수임할 것을 기대하고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무상 취급한 사건을 퇴직한 뒤 수임하는 경우 잠재적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 사건 조항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는 이 사건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서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제31조의 다른 수임 제한 행위



유형은 징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91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해석에 있어서도 그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유추를 통하여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불명확한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 이 사건 조항과 별도로 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변호사법에는 제31조 제3항이 신설되어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되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종전 근무기관과의 관계를 전제로 적용되는 반면, 이 사건 조항은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전제로 적용된다는 차이가 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수임금지 기간 제한도 없이 단순히 법률사건의 수임 약정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 공무원의 지위와 역할, 직무수행의 절차와 내용, 사건의 성격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추상적 관여가능성만으로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수임제한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 변호사로서 직업수행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

5)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건이 동일한지의 여부는 그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1791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과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수입제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고, 변호사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한다는 입법취지가 같다는 점에서 제1호의 '사건의 범위'에 관한 해석, 즉 '분쟁의 실체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해석은 이 사건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880 전원재판부 결정 참고).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을 위반하여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에 따라 처벌되는 변호사법위반죄는 수입하는 사건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과 그 분쟁의 실체나 실질적 쟁점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인데, 일반적·추상적 직무 취급 가능성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나 쟁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

6) 검사는, 2000. 1. 28. 변호사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조비리를 척결하고 법조풍토를 쇄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에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까지 추가하여 가벌성을 대폭 확장한 입법자의 의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호사법개정법률안(대안) 원문(의안번호 152496, 제안일자 1999-12-17)의 대안의 제안이유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법조비리의 근원적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변호사법개정법률안(대안)에는 '2. 대안의 제안이유'와 '3. 대안의 주요 골자'에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을 수입금지 범위에 추가하여야 할 배경이나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가 공



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해당 사건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단순히 일반적·추상적 관여가능성만으로 당연히 '취급하게 된 사건'으로 보아 수입제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만일 검사의 주장과 같이 입법자의 의도가 일반적·추상적으로 그 직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게 된 경우까지 수입제한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을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사건'으로 조문화하지 않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7) 변호사직무에 관한 모범규칙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의 고객과 변호사의 관계에 관한 Rule 1.12⁷¹⁾도 전직 판사인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수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① AX조 총괄재판연구관을 통해 신건 검토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였거나, ② 신건 검토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휘·지도하였거나, ③ AX조 총괄재판연구관을 통해 심층 검토 재판연구관을 지정하였거나, ④ L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AX조 심층 검토 담당 연구관의 검토 업무를 지휘·지도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으로 재직할 당시 L·K연구관은 민사 신건 검토 업무를 제외하고는 신건

71) (a) Except as stated in paragraph (d), a lawyer shall not represent anyone in connection with a matter in which the lawyer participated personally and substantially as a judge or other adjudicative officer or law clerk to such a person or as an arbitrator, mediator or other third-party neutral, unless all parties to the proceeding give informed consent, confirmed in writing.



검토 및 심층 검토 담당 재판연구관의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신건 검토 재판연구관 또는 심층 검토 재판연구관 지정에 관여하거나,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또는 심층 검토 업무를 지휘·지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피고인의 K연구관 재직 당시인 2015. 2. 8. 신건 검토보고서가 작성되어 주심 AD법관에게 보고된 사실, 피고인은 2016. 2. 11.경 민·상사 사건을 담당하는 L연구관으로 보직 변경되었고, 2017. 2. 8.경 AI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는데,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은 그 이후인 2017. 8.경 비로소 심층 검토가 시작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AX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대한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업무를 담당한 AW, AV은 일치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J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V, AS, AW은 검찰 조사에서, "L·K연구관은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연구를 포괄적·전반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사건의 조사·연구 지휘가 본연의 임무이므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담당 재판연구관과 함께 내용을 파악하고 처리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L·K연구관의 일반적·추상적인 직무권한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위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접적·실질적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검사는, 총괄재판연구관이 K연구관의 관리·감독 하에 신건 재판연구관을 지정하므로, 피고인이 2015. 1.경 K연구관으로서 신건 검토 재판연구관 지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 1. 경 AX조의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하였던 AV은 AX조의 경우 총괄연구관이 신건 검토 연구관을 지정하였고, FW 총괄재판연구관이 AW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신건 검토 연구관으로 지정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⁷²⁾ 또한 피고인의 후임으로 J법원 K연구관으로 근무한 AQ도 K연구관이 관여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AG조의 초기 검토에 관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민사 신건을 제외하고는 신건 검토는 각 해당 공동조의 총괄재판연구관이 감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⁷³⁾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신건 검토 재판연구관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검사는, 피고인이 언제든지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신건 검토 보고서를 확인하고 추가 보완지시를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고, AW 재판연구관이 작성하여 주심 AD법관에게 보고한 신건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지 아니한 것은 우연적이고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X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신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던 AW은 2015. 1. 당시 AV 부장연구관에게 위 사건의 신건 검토보고를 하였고, AV 부장연구관이 검토를 거친 후 바로 주심 AD법관에게 보고 드렸으며, 피고인에게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⁷⁴⁾ 또한 AX조 부장연구관으로서 위 신건 검토보고에 관여한 AV도 AW 재판연구관의 신건 보고 당시 AX조에서는 신건 검토보고를 부장연구관 또는 총괄재판연구관까

72) 수사기록 55465면

73) 수사기록 52707면

74) 수사기록 54405-54406면



지만 보고했고, K연구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⁷⁵⁾ 이러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과 관련하여 신건 검토보고에 관여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K연구관이 재판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신건 검토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건 단계의 모든 상고사건이 K연구관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6) 검사는, 주심 AD법관이 심층 검토를 지시한 2015. 2. 말경이나 2015. 3.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AX조를 총괄하는 K연구관으로서 총괄재판연구관과 협의하여 심층 재판연구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Q은 검찰에서, "공동조의 경우 각 조별로 연구관별 전문분야의 차이, 업무부담의 정도 및 관련사건 처리 경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재판연구관을 지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총괄재판연구관밖에 없다. 재판연구관에 대한 배분 과정에 L 또는 K연구관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⁷⁶⁾ AX조의 부장연구관, 총괄연구관으로 근무한 AV은 검찰에서, 주심 AD법관이 심층 검토를 지시한 사건도 원칙적으로 총괄재판연구관이 담당 연구관을 지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다.⁷⁷⁾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심층 검토 재판연구관 지정에 관여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75) 수사기록 55467면

76) 수사기록 52709면

77) 수사기록 55460면



7) 검사는,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으로서 AX조 재판연구관의 심층 검토 과정에 직접 개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에게 심층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K연구관 재직시 AX조의 심층 검토과정에서도 공동조 총괄재판연구관의 감수를 거친 검토의견서를 보고받기 전에는 해당 사건의 검토에 착수하지 못하였던 점, 2016. 2. 11. L연구관으로 보직 변경되어 AX조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⁷⁸⁾에 비추어,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으로서 AX조의 심층 검토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8) 검사는, L연구관이 직접 또는 K연구관을 통해 모든 재판연구관 사건을 통할하는 지위에 있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한 절차를 총괄·관리함으로써 이를 담당해 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검사의 주장대로 J법원 L연구관의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J법원의 모든 사건을 취급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주심 AD법관을 보조하여 상고사건의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불과한 L연구관이 실제 상고심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D법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범위의 사건을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비현실적이고, 이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이다.

9)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8. 5. 31.경부터 2018. 6. 9.경까지 J법원 L연구관 AQ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상고심 사건 수임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

78) 2017. 2.경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재배당 받아 심층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AS은 검찰에서, "2017. 2. 인사 이동 무렵 심층 검토조로 이동하면서 해당 사건을 재배당받았으나 2017. 8.경까지는 다른 사건을 검토하는 라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검토하지 못하였다. 2017. 8.경 위 사건 검토에 착수하여 같은 해 10. 18. 재판 연구관 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심층 검토 보고서를 입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55223-55224면).



면서 '관련 소송 정보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AQ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통화하여 BW당 문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K 또는 L연구관 근무 시 접수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AN대 사건이 있는데, 변호사로서 그 사건을 수입하면 변호사법위반 소지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⁷⁹⁾ 위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의 수입으로 인한 이 사건 조항 위반 소지에 관하여 물어보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AQ L연구관으로부터 이 사건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관련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마. 소결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7.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는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안요약 문건 관련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잘못이 있으나, 이 부분 증거를 포함하더라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79) 수사기록 54846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2-05

재판장 판사 윤강열 _____

 판사 장철익 _____

 판사 김용하 _____



[별지]

검토보고서 등 목록

순번	사건 번호	형식	문건 종류	개인정보 주체
1	CV(본소), CW(반소)	전자문서 파일	기초 보고	
2	CX			
3	CY			
4	CZ			
5	DA			
6	DB			
7	DC			
8	DD			
9	DE(본소), DF(병합), DG(반소)			
10	DH			
11	DI			
12	DJ			
13	DK			
14	DL(본소), DM(반소)			
15	DN(본소), DO(반소)			
16	DP(본소), DQ(반소)			
17	DR			
18	DS			
19	DT			
20	DU			
21	DV			
22	DW(본소), DX(반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2-05

순번	사건 번호	형식	문건 종류	개인정보 주체
23	CV(본소), CW(반소)	전자문서 파일	기초 보고	원고 : DY
24	CY			원고 : DZ
25	CZ			원고 : EA, EB / 피고 : EC
26	DB			원고 : ED / 피고 : EE
27	DC			원고 : EF / 피고 : EG
28	DD			원고 : EH / 피고 : DY
29	DE(본소), DF(병합), DG(반소)			원고 : EI / 피고 : EJ, EK
30	DH			원고 : EH / 피고 : DY, EL
31	DJ			원고 : EM
32	DK			원고 : EN
33	DL(본소), DM(반소)			원고 : EO
34	DN(본소), DO(반소)			원고 : EP
35	DP(본소), DQ(반소)			원고 : EQ
36	DR			피고 : ER
37	DS			원고 : ES
38	DT			원고 : ET / 피고 : EU
39	DV			원고 : EV, EW, EX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2-05

순번	사건 번호	형식	문건 종류	개인정보 주체
40	DW(본소), DX(반소)	출력물		원고 : EY / 피고 : EZ
41	FA			원고 : FB
42	FC			원고 : FD
43	FE			원고 : FF
44	FG		검토 보고서	원고 : FH
45	FI			원고 : FJ
46	FK		검토 메모	원고 : FL
47	FM			원고 : FN, FO, FP, FQ
48	FA	출력물	기초보고	/
49	FC			
50	FE			
51	FR			
52	FG		검토보고서	
53	FI			
54	FS			
55	FK		검토메모	
56	FT			
57	FM			
58	FU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7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라.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1. 가. A 2. 가. 나. 다. B 3. 가. 라. C 4. 가. D
검 사	신봉수(기소), 김경완, 조상원, 이준동, 남철우, 신기련, 김현우, 용성진, 채희만, 이태협, 신비나, 단성한, 박주성, 홍석기, 박건영, 김진용, 김상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E 담당변호사 F, G(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H 담당변호사 I, J, K, L(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M 담당변호사 N, O(피고인 C을 위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변호사 P(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Q

담당변호사 R(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S

담당변호사 T, U(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3.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 ②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과 관련하여 ㉠ V당 비례대표 지방
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점, ㉢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
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 V당 국회
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재판 개입 관련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③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 중에서 2016. 3.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과 인정사실 및 사실인정의 근거】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인정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AG경부터 AH경까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J경부터 AK경까지 AL 상임위원으로 재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2.경부터 2017. 2.경까지 W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AJ경부터 AM경까지 AN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5. AO



AO는 AP경부터 AQ경까지 제AR대 AS으로 재직하였다.

6. AT 및 AU

AT는 AV경부터 AW경까지, AU은 AX경부터 AY경까지 각 AZ으로 재직하였다.

7. BA

BA은 BB경부터 BC경까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 재직하였고, AG경부터 BD경까지 BE으로 재직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아래 기재한 증거의 순번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피고인 B을 기준으로 한 증거의 순번이고, 피고인 D을 기준으로 한 증거의 순번을 기재하는 경우와 같이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 증거의 순번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고인의 순번임을 밝히기 위하여 증거의 순번 앞에 해당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증거의 순번에 괄호를 병기하여 괄호 안에 해당 증거의 명칭을 기재하되, 해당 증거가 증인신문조서인 경우에는 증인의 성명, 사건번호(HT지방법원 BF 사건의 경우에는 'BF'으로, HT지방법원 BG 등 사건의 경우에는 'BG'로 표시하였다), 증인신문 회차를 기재하였다. 특히 증거의 취사나 사실 인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괄호 안에 증거의 취사의 이유를 밝혔고 인정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도 밝혔다.]

1393(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868(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683(D 검찰 진술조서), 3127(AO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62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681(AU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181(B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1.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법원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수집 과정

1) 2014. 7.경 BH 관련 재판소원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인용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는 상황에 이르자, AO, AT, BA 등은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내부적으로 AI실을 중심으로 이론적 지원을 위한 헌법연구팀, 대응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한 헌법대응팀 등을 구성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는 방안,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대외적으로는 국회, 학계, 국민 등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對) 헌법재판소 관련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2) 피고인 B은 AL 상임위원으로 부임한 무렵 AO로부터 '헌법 일을 맡아서 해 줘야



되겠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하고, 그만큼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역할도 있으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유의하여 업무에 임하라'는 취지로 지시받아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받았고, 그 무렵 AT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원할 것과 BS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X와 협조할 것을 지시받았다.

특히 피고인 B은 2015. 2. 25.경 AO로부터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판단에 신중해질 수 있도록 파견 판사들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하고, 파견 판사들이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수집해서 대법원에 잘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지시받았고, 2015. 2. 27.경 AT로부터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파견 판사를 통해서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아보고, 보안을 위해 일부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판사를 통해서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받았으며, 2015. 3. 13.경 AT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 진행상황, 선고 정보 획득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중인 판사 중 1인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헌법연구관 구성(안)' 문건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5. 3. 19.경 BE BI와 함께 BJ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들에게 업무의 충실한 수행에 관하여 주의를 주었고, BI가 먼저 떠난 후 파견 판사들에게 파견 판사들에 대한 인사평정권이 법원행정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한편, 그와 별개로 '파견 판사들이 법원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면 모두 BJ 부장에게 알려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BJ에게 따로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일은 법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4) AO, AT, BA 등은 2015. 4.경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해석·적용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며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 중 한정위헌결정,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 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비추어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사건을 통틀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라고 칭한다)에 대한 내부 진행 경과 등을 파악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5) 피고인 B은 2015. 6.경 BJ에게 전화하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해석·적용한 소멸시효 조항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 진행 경과,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의 사건에 대한 의견, 토론 내용 등을 물어봐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를 요청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5. 7.경 AT의 지시에 따라 BJ에게 연락하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JU 시행령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그 후 위 사건에 관한 '시행령 위헌 헌법소원 사건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AT에게 보고한 후 AO에게도 보고하였다.

7) 피고인 B은 AT의 지시에 따라 2015. 9. 15.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해 BJ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과 별도의 경로로 수집·지득한 내용



을 종합·정리하여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파일명 : '민감 현안 정리[2015. 9. AZ 님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고 같은 날 BA, AT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BJ은 그 무렵 X로부터 위 문건을 송부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 B은 2015. 9. 23.경 AO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8) 이에 따라 BJ은 2015. 9. 19.경 X에게 KQ, KR BK대학교 공무원 사건에 대해 BL, BM, BN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재심기각결정 취소 인용' 의견의 연구보고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 중 위 문건에 기재된 사건 8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BO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BK대학교 공무원 사건, BH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연구관들의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의견, 평의 내용 등이 포함된 내부 사건 정보 및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된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피고인 B 또는 X에게 전달하였다.

9) 피고인 B은 2016. 2.경 BJ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 BK대학교 공무원 사건, BH 사건(조세감면규제법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과 위 문건에는 없지만 앞서 본 시행령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진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였고, BJ은 2016. 2. 11. 피고인 B에게 위 사건들에 관하여 '평의는 언제 했다고 함', '당분간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담당연구관이 연구 중에 있음' 등으로 그 진행 현황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10) 피고인 B은 2016. 2. 12.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해 그 무렵까지 BJ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과 별도의 경로로 수집·지득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작성한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그 주요사건으로 위 2015. 9. 15.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 이외에 공무원의제규정 시행령 사건과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이 추가되었다)을 BA, AT에게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였다.

11) 피고인 B은 AX경 이후 며칠이 지나 위 보고서를 보완하여 작성한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그 주요사건은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같다)을 선임 AZ인 AU에게 보고하였다.

그 당시는 피고인 B이 AU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과 관련하여 파견 판사인 BJ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그 무렵 AU으로부터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BS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X와 협조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12) 한편 피고인 B은 위 2016. 2. 12.자 문건을 작성할 무렵 BJ으로부터 대법원규칙을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직접 규범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에 관하여 그가 몇몇 헌법재판관에게 법원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였다'고 들었는데, 2016. 3.경 다시 BJ에게 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자 BJ은 2016. 3. 16. 피고인 B에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위 대법원규칙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 후에도 BJ은 위 2015. 9. 15.자 문건 및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연구관들의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



관들의 개별 의견, 평의 내용 등이 포함된 내부 사건 정보 및 헌법연구관들이 작성하여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된 연구보고서 등 자료를 피고인 B 또는 X에게 전달하였다.

13) 위와 같이 AO, AT의 지시 및 승인 하에 법원행정처는 지속적으로 BJ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였고, AX경 AU이 AZ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AU의 승인 하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는 BJ을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기 위한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왔다.

나. 법원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총 46건 수집

결국 피고인 B은 AO, AT, AU과 함께, 2015. 9. 19.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별지 공소장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0, 11,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45 내지 48, 54, 56 내지 59, 70,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142, 151 기재와 같이 BJ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아본 결과인 위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총 46건을 전달받았다.¹⁾

다. 이른바 한일협정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수집

1) 한편 BA은 2015. 10. 4.경 피고인 B에게, BJ에게 이른바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BJ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에

1) AO, AT, AU의 공모 범위에 관해서는 인정사실별 판단 부분에서 따로 살펴본다.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BJ은 2015. 10. 4.부터 2015. 10. 5.까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등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전달하였다.

2) 결국 피고인 B은 BA과 함께, 2015. 10. 4.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공소장 범 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5 내지 19 기재와 같이 BJ으로부터 이른바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등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 5건을 전달받았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1의 가」

1) 604(2014. 7. 25.자 AI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적 대응전략 검토」), 2181(B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 1026(2015. 1. 1.자 B 업무일지), 1027(2015. 2. 13.자 B 업무일지), 1030(2015. 2. 25.자 B 업무일지), 1032(2015. 3. 2.자 B이 X에게 보낸 이메일), 1928[2015. 3. 13.자 2015년도 헌법연구관 구성(안) 문건 1부], 3157(2015. 2. 16.경 B이 작성한 지침),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0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3) 1036(2015. 3. 19.자 B 일정표),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4) 1026(2015. 1. 1.자 B 업무일지), 1027(2015. 2. 13.자 B 업무일지), 1029(2015. 2. 25.자 B 일정표), 1030(2015. 2. 25.자 B 업무일지), 1032(2015. 3. 2.자 B이 X에게 보낸 이메일), 1034(2015. 3. 10.자 B이 X에게 보낸 이메일), 1035(2015. 3. 13.자 B이 X에게 보낸 이메일), 1038(2015. 5. 11.자 B 업무일지), 1039(2015. 6. 12.자 B 업무일지), 1045(2015. 7. 13.자 B 업무일지), 1126(2015. 4. 8.자 B 업무일지), 1127(2015. 4. 23.자 B이 BP BQ에게 보낸 '연구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28[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보고(대외비)], 1129(2015. 4. 14.자 B이 X에게 보낸 '업무방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0(2015. 4. 14.자 B이 X에게 보낸 '업무방해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1[요약(JG)], 1132(2014. 6. 19.자 JG 사건 연구보고서), 1133(2015. 4. 24.자 B이 BP BQ에게 보낸 '수정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4[2015. 4. 24.자 업무방해죄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대외비)], 1135(2015. 4. 23.자 B 업무일지), 1136(2015. 4. 24.자 B 일정표), 1137(2015. 4. 29.자 B이 X에게 보낸 '수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8[업무방해 한정위헌 문제점(JG)], 1139(2015. 4. 30.자 B이 BA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0(2015. 4. 30.자 B 일정표), 1141(2015. 5. 14.자 B이 BA에게 보낸 '현재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2(2015. 5. 12.자 관습법 위헌소원 관련 현재 동향 보고), 1143(2015. 5. 12.자 과거사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법소원 사건 동향 보고), 1144(2015. 5. 12.자 B 일정표), 1145(2015. 5. 13.자 B 업무일지), 1146(2015. 5. 29.자 B 업무일지), 1147(2015. 7. 6.자 BJ이 B에게 보낸 '법령'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8(파일명: 시행령위헌확인사건 문건), 1149(2015. 7. 6.자 B 업무일지), 1150(2015. 7. 7.자 B이 X에게 보낸 '시행령 위헌'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51(시행령 위헌 헌법소원 사건 보고), 2637(2015. 6. 20.



자 B 업무일지),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0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11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5) 839(2015. 6. 20.자 B 업무일지), 1141(2015. 5. 14.자 B이 BA에게 보낸 '현재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3(2015. 5. 12.자 과거사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법소원 사건 동향 보고), 1144(2015. 5. 12.자 B 일정표), 1145(2015. 5. 13.자 B 업무일지),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1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6) 1147(2015. 7. 6.자 BJ이 B에게 보낸 '법령'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8(파일명: 시행령위헌확인사건 문건), 1149(2015. 7. 6.자 B 업무일지), 1150(2015. 7. 7.자 B이 X에게 보낸 '시행령 위헌'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51(시행령 위헌 헌법소원 사건 보고),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의 동향-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1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7) 1050(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1159(2015. 9. 14. ~ 9. 16.자 B 업무일지), 1622(2015. 9. 15. BJ→X 이메일(제목: 답장: 완성본(관습법 사건은 각



하 의견으로 보고됨)], 2758(2015. 9. 14. - 9. 16.자 B 일정표),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1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751(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회),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8)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9) 1193(2016. 2. 11.자 BJ이 B, X에게 보낸 '보고'라는 제목의 이메일), 1194(2014. 8. 27.자 연구보고서), 1195('파일명: 2016. 2. 11. 보고'라는 문건),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0) 1946[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문건 1부],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
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
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
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11) 2689[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3530(B BF 증인신문
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2) 1946[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문건 1부],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
-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
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3) 1050(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1946[2016. 2. 12.자 헌법
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문건 1부],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
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외 동향-별책 12권)], 2689[AX자 헌법재
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대외비)],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



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제1의 나」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의 동향-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제1의 다」

1)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의 동향-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2) 2571[유출 내역 관련 BJ, B의 이메일 자료(별책 첨부: 사건정보-별책 7권, 사건의 동향-별책 12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1)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2015. 4. 10.경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전날인 2015. 4. 9.경 BT지방법원으로부터 BU(BV) 재직기간확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이 접수된 것과 관련하여 그 경위를 파악해 보자는 등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2) 당시는 AO, AT, BA 등이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다양한 견제 방안을 검토한 2014. 7.경의 이후로서, AO, AT, BA 등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해석·적용한 형법 제 314조 제1항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위 사건에 관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AO, AT, BA 등은 위와 같이 일선 법원이 직접 한정위헌 취지의 위



헌제청결정을 한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법원도 변형결정의 일종인 한정위헌을 인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거로 이용되는 등 대외적으로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낮아질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그 경위를 파악해 보자는 등의 논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었다.

3) AT, BA 등은 신청인, 담당 재판부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 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담당 재판부를 잘 설득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단속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AO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미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으로 결정이 내려진 재판에 관하여 그 결정의 변경을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4) 한편 피고인 B 및 BR 당시 BS실장은 2015. 4. 10. 오전경 BS실 심의관 X로부터 위와 같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이 접수된 사실 및 결정문이 이미 신청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판단을 덧붙인 보고를 받게 되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AT 주재 실장회의에 위 내용을 보고하여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인바, AT, BA 등은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해서는 안 되므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재결정을 하게 하고, 이러한 변경 과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산상으로도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의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블라인드 처리'를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 사실

1) 피고인 B은 2015. 4. 10.경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그 참석자 중 하나인 실장이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할 수는 없다고 말한 후, AT가 자신에게 일단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진 경위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하자, 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한 BT지방법원 BW부의 부장판사 BX에게 연락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변형결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 BX은 피고인 B에게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취지로 물었으며, 이에 피고인 B은 BX에게 '같이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고인 B은 BX과의 위와 같은 대화 과정에서 BX이,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그 결정이 있더라도 법률 조항의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므로 이는 위헌결정의 일종으로 볼 수 없고 법률해석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에 비추어 그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는 상황을 떠올리지도 못한 채 BT지방법원 BW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BX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떠올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때 가능한 것인데 BT지방법원 BU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해당 조항은 일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 상황조차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



2) 그 후 피고인 B은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BX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어서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유도하는 논의와 전산상으로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의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블라인드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AT는 AO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이미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으로 결정이 내려진 재판에 관하여 그 결정의 변경을 유도하기로 잠정 결정하였고, 피고인 B에게 'AS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니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의견을 구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다시 BX에게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BX은 피고인 B에게 '그래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3) 그 후 피고인 B은 2015. 4. 10.경 X에게 AT 주재 실장회의에서의 논의 및 AT의 잠정 결정 등을 전달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는 것으로 유도하기로 잠정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을 아무도 봐서는 안 되니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문건 작성 및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을 요청하였고, 대법원 헌·행조 재판연구관 BY에게 위헌제청결정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여, BY으로부터 '위헌제청결정의 경우 실체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이므로 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송부 받은 후, 다



시 X에게 위 보고서와 함께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 방안이 제일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BT BV(BU) 결정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하였다.

4) 이에 따라 X는 FU국 HU심의관 BZ에게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한 후 2015. 4. 12.경 자신이 2015. 4. 10. 오전경 피고인 B 및 BR에게 보고하였던 문건의 내용,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BT BV(BU) 결정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 BY의 검토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는,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이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알려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정당성 논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 해결 방안으로 직권취소 및 재결정, 경정, 방기라는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중 직권취소 및 재결정 방안이 적절하다는 내용,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재판장이 직접 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 전산상 처리와 관련하여 기존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이 전산에 등록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인 B은 2015. 4. 13.경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AT로부터 위 문건의 해결 방안대로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유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고, AT, BA으로부터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이 보여서는 안 되니 결정문 검색에서 제외하는 블라인드 처리 방안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며, AO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문건의 내용과 함께 AT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다.

6) 피고인 B은 2015. 4. 13.경 AT의 위와 같은 지시 및 AO의 위와 같은 승인에 따



라 BX에게 다시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BX은 BT지방법원 BW부의 배석관사이자 당해 사건의 주심 판사인 CA에게 '법원행정처에서 저렇게 난리를 피우니 어떻게 하겠느냐,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문을 피고인 B에게 보내면서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어서 BT지방법원 BW부는 같은 날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였으며, 위 3개의 결정에 대한 전산입력도 '위헌제청결정', '직권취소결정', '위헌제청결정'이 아닌 단순히 '결정', '결정', '결정'으로 입력하였다.

7) 피고인 B은 X로부터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담당 재판부의 공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은 후 X를 통하여 BZ에게 위와 같은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BZ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문의 양식을 받아 BX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인 2015. 4. 16.경 BZ은 BT지방법원 BW부의 요청에 따라 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2의 가」

1) 1296[2015. 4. 8.자 위헌심판제청결정서(BT지방법원 BV)], 3513(2015. 4. 10.자 BS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보고'),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262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10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2) 604(2014. 7. 25.자 AI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적 대응전략 검토」), 1126(2015. 4. 8.자 B 업무일지), 1127(2015. 4. 23.자 B이 BP BQ에게 보낸 '연구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28(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보고(대외비)), 1129(2015. 4. 14.자 B이 X에게 보낸 '업무방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0(2015. 4. 14.자 B이 X에게 보낸 '업무방해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3(2015. 4. 24.자 B이 BP BQ에게 보낸 '수정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4(2015. 4. 24.자 업무방해죄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대외비)), 1135(2015. 4. 23.자 B 업무일지), 1136(2015. 4. 24.자 B 일정표), 1137(2015. 4. 29.자 B이 X에게 보낸 '수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8(업무방해 한정위헌 문제점(JG)), 1139(2015. 4. 30.자 B이 BA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0(2015. 4. 30.자 B 일정표), 3513(2015. 4. 10.자 BS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보고'),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2181(B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262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10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3) 1444(2015. 4. 12. 21:29경 BR→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



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4) 1444[2015. 4. 12. 21:29경 BR→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3513(2015. 4. 10.자 BS실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보고'),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 3570,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제2의 나」

1) 755[2015. 4. 12.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대외비)」], 1444[2015. 4. 12. 21:29경 BR→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1476[2015. 4. 10. 21:21경 B→X에게 보낸 이메일(정리)(첨부: 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BT BV 결정 관련(B))], 증인 BX의 법정진술, 3572(B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2) 755[2015. 4. 12.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대외비)」], 1444[2015. 4. 12. 21:29경 BR→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1476[2015. 4. 10. 21:21경 B→X에게 보낸 이메일(정리)(첨부: 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BTBV 결정 관련(B))], 증인 BX의 법정진술, 3572(B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문조서 3회)

3) 755[2015. 4. 12.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대외비)」], 1297 (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1444[2015. 4. 12. 21:29경 BR→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1475[2015. 4. 10. 14:55경 B→BY에게 보낸 이메일(검토 부탁)(첨부: BT지방법원 BV 위헌심판제청결정서)], 1476[2015. 4. 10. 21:21경 B→X에게 보낸 이메일(정리)(첨부: 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 BT BV 결정 관련(B))],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484(BY BF 증인신문조서), 3551(BY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4) 755[2015. 4. 12.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대외비)」], 1416[2015. 4. 11. BZ 이메일(BT지방법원 BV 결정문 관련)],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66(BZ BG 증인신문조서)

5) 1444[2015. 4. 12. 21:29경 BR→X에게 보낸 이메일(회신: 한정위헌취지 위헌제청 관련 보고 드립니다.)],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821(X 검찰 진술조서 1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057(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1123(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274(B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10회)

6) 756[대법원 나의사건검색(BT지방법원 BV, 위헌심판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514(BT지방법원의 결정문 3부), 2479[2015. 4. 13. 14:48경 BX→B 이메일(위헌심판제청결정)], 2481[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대법원 내부 전산시스템 접근내역 등 요청)], 증인 BX의 법정진술, 3572(BX BG 증인신문조서), 3573(C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7) BF4(2015년도 코트넷 사건검색시스템상 등록 또는 입력 내역 삭제·변경 목록 및 그 사유), 1446[2015. 4. 11. 22:00경 BZ→CB에게 보낸 이메일 (전달: BT지법 BV 결정문)], 1447[2015. 4. 13. 21:03경 X→B에게 보낸 이메일(전산문제 해결책과 관련하여 보고드립니다)], 1448[2015. 4. 14. 11:08경 X→BZ에게 보낸 이메일(블라인드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1449[2015. 4. 14. 11:49경 BZ→CC에게 보낸 이메일(전달: 블라인드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1450[2015. 4. 14. 13:29경 CC→BZ에게 보낸 이메일(RE: 블라인드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1451[2015. 4. 14. 13:38경 BZ→B에게 보낸 이메일(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문구)], 1452[2015. 4. 14. 15:01경 B→BX에게 보낸 이메일(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문구)], 1453(2015. 4. 14.자 BT지방법원 민사합의과-162 '결정문 검색 제외 요청' 공문), 1507(2015. 4. 15. BT지방법원 결정문 검색 제외요청 공문 게재자 목록),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66(BZ BG 증인신문조서)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피고인 B의 AO, AU, BA과의 공동범



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3.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권고

가. 배경

1) 지방자치단체 간 신규 매립지 등에 대한 귀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립지 등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 절차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는데, 2009. 4. 1.경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 등의 귀속 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²⁾이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지방자치법 제4조)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매립지 등의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의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종전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어 사실상 같은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 심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2) 그 후인 2016. 10. 13. 헌법재판소는 CG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09. 4. 1.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가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

2) 2009. 4. 1. 개정 당시 부서 명칭은 행정안전부였다가 2013. 3. 23. 안전행정부로, 2014. 11. 19.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각 변경되어 본건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립지 등의 귀속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17. 7. 26. 다시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의 권한쟁의심판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기일에서 위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거나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의 소송과 별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나. 행위

1) 경위

피고인 B은 2016. 7. 하순경 BA 주재 실장회의에서 BA 등에게,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CG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대법원이 심리 중인 CH CI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이 사실상 동일 사건인데, 이 사건을 비롯하여 대법원이 심리 중인 총 4개의 사건이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된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위 4개의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을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심리 중이라는 내용을 구두로 보고하였고, BA이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AZ에게 우선 보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향후 의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지시하자, 피고인 B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고, 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BA, AU에게 순차로 보고하였고, AU이 위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도 이 문건의 내용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AO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으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피고인 B은 2016. 7. 27.경 위 문건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 AD에게 전달하였고, AD은 2016. 7. 29.경 위 문건을 대법원 BQ CD에게 전달하였다.

2) 2016. 10.경 법원행정처의 권고

가) 이후 피고인 B은 2016. 10. 중순경 AU 주제 실장회의에서 AU으로부터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언제든 위 사건을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AD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AS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재판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고, 2016. 10. 20.경 AO에게 위 문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하였으며, AO는 위 보고를 받고 후속 조치를 승인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고, 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 그런데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4개의 사건이 심리 중이라는 내용, 헌법재판소가 2016. 10. 13. 위 4개의 사건 중 하나인 CG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09. 4. 1.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가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기일



을 진행하였다는 내용, 해당 기일에서 위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거나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의 소송과 별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내용,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언제든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이후 AD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위 4개의 사건의 담당 재판연구관 C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 전달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중복하여 심리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E은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4개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하게 되었다.

다) CE은 2016. 10. 21.경 위 4건의 대법원 사건들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AD에게 보고하였고, 2016. 10. 24.경 위 4건의 대법원 사건들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AD에게 보고하였으며, AD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3) 2016. 11.경 피고인 B의 지적과 권고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기초 및 추가 검토 결과 등을 기초로 2016. 11. 16.자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작성하여 AU 주재 실장회의에서 AU



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재판연구관실의 검토 결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건의 매립지 사건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 등 2건은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 2건을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다만 이유에서 위 지방자치법 제4조의 합헌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 위 2건 중에서도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위와 같이 대법원이 먼저 판결을 선고한 후 '향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상이한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면 평의 결론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그 후 피고인 B은 2016. 11. 17. 오전경 AD에게 위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AZ과 BE에게 보고하였고, BE도 위 문건의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AZ에게 따로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보고하고 그 이후 먼저 선고하는 절차를 밟고 CF 대법관이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받게 되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AZ에게 따로 말하여 AZ으로 하여금 CF 대법관에게 위 문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다. 이어서 AU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보고를 하러 온 AD으로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건의 매립지 사건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 등 2건은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한다면 위 2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위 2건 중에서도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CE 작성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보고받고, AD에게 '알겠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따라 AD은 CE으로 하여금 해당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CF 대법관 등 주심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게 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3의 가」

1) 1382[2016. 7. 26.자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현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대외비)], 2782(2016. 7. 22.자 BJ이 B, X에게 보낸 '지방자치법 관련 권한쟁의사건 보고'라는 제목의 이메일)

2) 1384[2016. 10. 19.자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보고(대외비)], 2785(2016. 10. 13.자 BJ이 B, X에게 보낸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제3의 나 1)」

1381(2016. 7. 27.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매립지 사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2[2016. 7. 26.자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현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대외비)], 2768(2016. 7. 27.자 B 일정표), 2769(2016. 7. 29.자 AD이 CD에게 보낸 '매립지 사건'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제3의 나 2)」

가) 1383(2016. 10. 19.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매립지'라는 제목의 이



메일), 1384[2016. 10. 19.자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보고(대외비)], 2772(2016. 10. 20. 및 10. 21.자 B 일정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나) 2793(2016. 10. 21.자 CE이 AD에게 보낸 '매립지 관련 보고서 올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794[2016. 10. 21.자 「매립지 관련 보고」],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567(CE BG 증인신문조서)

다) 2793(2016. 10. 21.자 CE이 AD에게 보낸 '매립지 관련 보고서 올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794(2016. 10. 21.자 「매립지 관련 보고」), 2795(2016. 10. 21.자 AD이 CD에게 보낸 '전달: 매립지 관련 보고서 올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796(2016. 10. 24.자 CE이 AD, CD에게 보낸 '매립지 관련 추가보고서 올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797[2016. 10. 24.자 「매립지 관련 보고(추가)」],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567(CE BG 증인신문조서)

「제3의 나 3)」

가) 1385(2016. 11. 16.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답장: 전달: 보고서 파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6(2016. 11. 17.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7(2016. 11. 16.자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나) 1385(2016. 11. 16.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답장: 전달: 보고서 파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6(2016. 11. 17.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7(2016. 11. 16.자 베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567(CE BG 증인신문조서)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피고인 A·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5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4.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B의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배경

1) 2014. 12. 19.경 헌법재판소의 V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정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이후 V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에 당시 AL 상임위원이던 CK은 AT에게, 자신이 팀장이 되고 BS실 심의관 CL이



간사로 된 V당 행정소송 대응 TFT(이하 'V당 TFT'라고 한다)를 구성해 헌법재판소의 V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제기가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위 행정소송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고, AT는 위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그리하여 CK은 CL 등 V당 TFT 팀원들로 하여금 관련 법령, 해외 사례, 학계의 태도, 언론보도 동향, V당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각 법원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송부 받은 소장과 첨부서류 등 소송자료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V당 TFT에서는 2015. 1. 7.경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이며, 국회의원직 상실이라는 결론도 현행 헌법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크고, V당 국회의원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한 후 이를 BI, AT, AO에게 순차로 보고하였고, AO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CK에게 '법원의 위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데, 짧은 시간에 예를 많이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AO, AT, BI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또한 AO, AT, BI, BA은 2015. 2.경 CK으로부터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① 의원직상실결정의 정당성 검토, ② 정당해산결정



관련 언론 동향 보고, ③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검토, ④ V당 행정소송 소송요건 검토, ⑤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⑥ V당 지방의원 현황(상세), ⑦ V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⑧ 재판무효 법리 검토, ⑨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 ⑩ V당 행정소송 - 처분성 및 본안 검토]을 보고받았다.

그런데 위 문건 10건 중 ③ 문건은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내용에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이 더해진 것으로,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기초가 된 문건이자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이고, ①, ②, ⑨ 문건은 위 ③ 문건의 기초가 된 문건이며, ④ 문건은 V당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검토한 문건이고, ⑤ 문건은 V당 지방의회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결 결론 및 이유 설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검토한 문건이며, ⑥, ⑦ 문건은 각각 V당 지방의원 현황과 V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을 정리한 문건이고, ⑧ 문건은 현재결정이 하자 있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검토한 문건이며, ⑩ 문건은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의 처분성을 검토하고, V당 행정소송의 본안에 관하여 쟁점별로 검토한 문건이었다.

2) 한편 C은 W지방법원 기획법관·공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 2. 11.경 AI실 심의관 CM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CN이 CQ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W지방법원 CO 집행정지사건의 결정문을 이메일로 송부하며 '위 사건 재판장이 위 신청사건의 본안(W지방법원 CP)에 대해 CQ도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다룰 여



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하였고, 위 이메일 및 결정문은 같은 날 CM를 통해 V당 TFT 구성원인 CR, CL에게 전달되었다.

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

1) AT, BI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우려

가) AO는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BI, BA에게 V당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AT는 2015. 2.경 BI에게 'V당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하였다.

나) AT는 2014. 12.경 V당 TFT 간사인 CL에게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AT, BI는 2015. 2.경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 받았으며, AT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위와 같은 우려를 살핀 BI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3. 5.경 CS법원장 CT에게 '그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는 거꾸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AO, AT는 2015. 4.경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해석·적용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관하



여 한정위헌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며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진행 경과 등을 파악하여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결정을 정말로 하려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고, BI는 2015. 5.경 피고인 B에게 V당 행정소송 재판에 관한 생각을 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살펴보게 하였다.

2)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³⁾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B)

가) AT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를 살핀 BI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3. 5.경 CS법원장 CT에게 '그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는 거꾸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법원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AT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를 살핀 BI는 피고인 B에게 V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을 통해 V당 국회의원 1심 재판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BI와 마찬가지로 AT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를 살핀 BA은 피고인 B에게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대외용으로 변형하여 CU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 파일을 법원 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 및 작성자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형하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

3) CS법원 CV(원고 CW 외 4. 피고 대한민국)



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어 AT에게 보고한 후, 2015. 5. 26.경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CX' 일식집에서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그 무렵 BA, BI에게 이를 보고하였으며, AT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았다.

라) CU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을 듣고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였고, 그 후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장 CY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말하였으나, CY는 CU의 위와 같은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다.

3)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⁴⁾에 대한 지적(피고인 B)

가) BA의 피고인 B에 대한 지시 및 피고인 B의 DC에 대한 요청

(1) W지방법원 CZ부(재판장 C)는 V당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이 피고 CQ도 및 CQ도의회의장을 상대로 의원지위확인 및 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2015. 7. 22.경 변론을 종결하고 2015. 9.

4) W지방법원 DA(원고 CN, 피고 CQ도의회의장 외 1)



16.경 판결 선고틀 앞두고 있었다.

B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V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의 재판부가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에 피고인 B은 C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동기인 DB실 총괄심의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라,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알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나) 재판장의 심증 확인, 법원행정처의 지적 전달

DC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2015. 9.경 C에게 연락하여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 필요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C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C의 심증을 확인하였다.



다)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요청

(1) 이후 DC은 피고인 B에게, '재판장 C이 위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본안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보고를 받은 후 BS실 심의관 X에게 위 내용을 전하면서 이를 정리하고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2) 이에 따라 X는 2015. 9. 13.경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W지방법원 DA 사건 재판부가 본안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기재하고 청구인용에 따른 예상 파장 및 언론대응 방안 등을 덧붙인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작성하여 2015. 9. 14. 오전경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살펴본 후 X에게 청구를 기각할 경우 예상되는 논거 등을 추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X는 위 문건에 피고인 B이 요청한 내용을 추가하여 위 문건을 수정한 다음 2015. 9. 14. 오후경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라) 선고기일 변경

(1) 그런데 C은 종래 이 사건 의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호소하며 조속한 재판 확정을 촉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히 심리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



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의 DC의 말을 듣고 이를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 2015. 9. 14. 18:00경 위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을 2015. 11. 25로 변경하였다.

(2) 이후 피고인 B은 X로부터 위와 같은 선고기일 변경 사실을 전해 듣고서, X가 작성한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의 내용에 선고 기일 연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 기재해 2015. 9. 15.자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완성한 다음 이를 BA, AT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마) 판결 선고

C은 위 판결 선고 전날인 2015. 11. 24.경 위 사건의 배석판사(주심) DD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을 받았는데, DD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지 않았는바, 비례대표 CQ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 부정당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C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시는 일견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였다. 또한 C은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C은 DD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의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판결 이유에, "피고 CQ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



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
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
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
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V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며, 그러한 해석
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
안 파일을 수정(이하에서는 이를 '1차 수정'이라 한다)한 후 이를 출력하였고, 따로 판
결문 완성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지는 아니하고 위 출력물만을
지참한 채, 2015. 11. 25. 09:55경 판결 원본 없이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
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 합의 과정에서 배석판사 DD과만 합의를 진행하였고, DD과
만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
였다.

한편 C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직후 1차 수정 판결문을 저장한 파일을 찾
지 못하여 부속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출력물의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여
2015. 11. 25. 10:55경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 받은 파일
을 이용하여 판결 이유에 "① 피고 CQ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



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V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②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안을 수정(이하에서는 이를 '2차 수정'이라 한다)한 다음, 같은 날 12:02경 이를 W지방법원 공보관 DE에게 2차 수정 판결문을 송부하였고, DE은 같은 날 12:27경 이를 X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C은 2차 수정 판결문 중 ② 부분을 따로 빼내어 별도의 문단으로 구성하고,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내용으로 문맥을 수정(이하에서는 이를 '3차 수정'이라 한다)한 후, 같은 날 13:07경 DD에게 3차 수정 판결문을 송부하면서 위 판결문의 전자서명 및 판결문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판결문 수정

그런데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2차 수정 판결문을 기초로 한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이 DE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어 법원행정처가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피고인 B은 2015. 11. 25. DC에게 'DC부장



이 지난번에 V당 사건에 대해 C부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하여 C부장의 입단속을 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이에 C은 2015. 11. 25. 18:16경 DC으로부터 이 사건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DC이 자신에게 연락한 것을 일부 언론에서 행정처의 재판 관여로 논란을 삼을 수 있으니 적절히 대처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2015. 11. 26. 오전경 현 법재판소 파견 법관 BJ으로부터 V당 지방의회의원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BJ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법률이 지 않으나, 법률의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으며, 이어서 DC에게 전화하여 'BJ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너 괜찮으나'라는 취지로 물었고, DC으로부터 '별일 있겠느냐'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C은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부담을 느껴 2015. 11. 26. 10:35경 DD, DF가 전자서명한 판결문을 반려하면서 DD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문맥을 수정한, 3차 수정 판결문 제8쪽의 "따라서 이 법원은, 현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라는 문장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하여 판결문을 등록하라고 요청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DD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는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포함되지 않았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 권한 부분이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포함되었다가 다시 삭제되는 등 판결 선고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수정된 판결문을 DD으로 하여금 판결문등록시스템에 최종 등록하게 하였다.

4) 법원행정처 관여와 관련된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피고인 B)

가) 공동의 인식과 의사

(1) W지방법원 CZ부는 2015. 11. 25.경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도



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2차 수정 판결문의 이유에는 "피고 CQ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V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판결문의 이유는, C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이는 V당 국회의원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심리·판단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1. 12.경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CS법원 CV 사건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W지방법원의 판결 선고 전날 X에게 '내일 선고니까 챙겨 보라'고 말하여 선고결과를 확인하여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X는 DE으로부터 전달받은 2차 수정 판결문을 기초로 'W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위헌정당해산에 따



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법재판소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고, CS법원의 판결과 정반대의 취지로서, 향후 법관을 상대로 한 헌법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위 문건은 피고인 B, DG, AT에게 순차로 보고되었다.

(2) 그런데 2015. 11. 25.경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DH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W지방법원 공보관 DE에 의해 위 문건이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사태(이하 'W공보사태')가 발생하였다.

(3) 이로 인해 언론에 법원행정처가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도될 것과 헌법재판소에서 사태의 경위를 궁금해 할 것으로 예상되자, AO는 AT로부터 위 상황을 보고받고 'V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아닌 심의관 개인의 의견이라고 해명하여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4) AT는 BR 등과 함께 AO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은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정리해 그에 따라 언론 등에 해명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행위

(1) 그런데 2015. 11. 26. 새벽 무렵 DI에 위 문건의 유출사실 및 그 문건 내용



이 공개되자, BA은 X에게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에게 설명할 해명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X는 '①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부분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이 아닌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②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을 주무 심의관이 작성할 당시 AZ, BE, BS실장은 모두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어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보고된 바 없다'는 내용의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라는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BA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AT는 2015. 11. 26. 오전경 전일 정리된 법원행정처 입장에 따라 BA이 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하여 해명하고, AI실장 A 등은 언론과 청와대에 해명하기로 결정하였다.

(2) 그러나 사실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에 기재된,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부분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X뿐만 아니라 AO, AT, BA, 피고인 B 등의 의견이기도 했고, 위 문건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X가 작성하여 AT 등에게 보고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은 앞서 본 AT의 결정에 따라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가서 DJ DK 등 헌법재판소 관계자에게 2015. 11. 25.자 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 위 해명자료의 내용에 따라 해명하였고, 계속하여 청와대 HK비서관으로부터 자초지종에 대한 문의를 받게 되자, AI실 심의관 DL으로 하여금 위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 해명자료를 HK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게 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가서 해명한 결과를 AT, AO에게 보고하였다.



5)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⁵⁾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A, 피고인 B)

가) CS법원 1심 판결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의 검토 및 보고 지시(피고인 B)

(1) CS법원 DM부(재판장 CY)는 2015. 11. 12.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1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V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심판을 관장하는 범위에서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V당 해산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직접 적용하여 이끌어낸 결론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바, 결론적으로 위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당시 CS법원 DM부 구성원인 판사들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특히 헌법재판소의 한정적·열거적 심판권에 대비되어 법원에는 포괄적 사법권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면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선고하였다면 법원으로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은 V당 TFT가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통해 정리한 내용,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5) AN고등법원 DN(원고 CW 외 4, 피고 대한민국)



필요하다는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었다.

(2) 피고인 B은 2015. 11. 12.경 AT에게 위 판결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AT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3) 이에 피고인 B은 BS실 심의관 X에게 위 판결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X는 위 판결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일반적·포괄적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음에 반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이 열거한 제한적 심판권만을 보유한다는 점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고 헌법재판소의 준입법적 권한행사를 방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여 한정위헌결정이나 재판소원 문제에서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큰 문제이며 대법원을 통한 권리구제의 길을 봉쇄하였고 외견상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불가쟁성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과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겠다는 등의 향후 대책을 기재한 2015. 11. 12.자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5. 11. 13.경 AT, BA, A 등이 참석한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계속하여 AO에게 위 문건의 내용을 보고하였다. AO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고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5) AT는 위 보고를 받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1, 2심 판사들이 사법부의 포괄적 재판권과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심판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인식을 전환



할 수 있도록 1, 2심 판사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연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승인하였고, AO도 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기능에 대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사법연수원과 협의하여 헌법연수교육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승인하였다.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A, 피고인 B)

(1) 2015. 11. 26.경 위 CS법원 DM부의 1심 판결(CV)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자, 피고인 B은 AO에게 위 항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면서 법관 대상 헌법교육 개편 방안을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에는 그 검토 배경으로 헌법적 쟁점과 관련되어 2015. 4.경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지고 2015. 11.경 V당 국회의원 판결이 내려지는 등 문제점이 있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고, 이는 1, 2심 법관의 헌법적 소양이 부족한 탓이니 법관 대상 헌법교육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AO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으면서 '위 W공보사태로 인하여 헌법교육의 취지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교육의 제목을 한정위헌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법원 관례의 범리 등으로 하여 법원의 입장을 법관들에게 제대로 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T는 2015. 12. 1.경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BA 등에게 '위 1심 판결과 관련된 AN고등법원 사건에 대비하라'고 말하여 위 1심 판결의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한편 V당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은 2015. 12. 4.경 AN고등법원에서 재판장



DO 주심사건으로 배당되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2015. 12.경 AT가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에서 위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장 DO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이 DO를 만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4) 그 무렵 X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쟁점과 V당 TFT가 정리한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X의 보고 내용을 숙지한 후, 2015. 12.경 전화로 DO에게 'V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권한 분쟁적 성격이 있고,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다. 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이 났는데, V당 소속 의원들의 직위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5) 그런데 DO가 '곧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위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A은 이를 AT에게 보고하였고, AT는 피고인 A에게 '그렇다면 법관 인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6)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



경되자, AT는 2016. 2. 12.경 그가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이 위 사건 항소심⁶⁾의 후임 재판부(재판장 Y)에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V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위 국회의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7) 이후 피고인 B은 2016. 2. 16.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소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및 상실의 각 근거를 들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과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 495면 복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8) 한편 AU이 AX경 AZ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B은 AU에게 W공보사태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V당 TFT에 관하여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하였다.

(9) 이후 BA은 2016. 2. 25.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로부터 AT의 앞선 결정에 따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2016. 3. 3.경 항소심 재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A은 위 보고 내용과 같이 2016. 3. 3.경 서울 서초구 DR에 있는 DS에서, 항소심 재판장 Y에게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법원에 재판권이

6) AN고등법원 DN(원고 CW 외 4, 피고 대한민국)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문건과 그에 첨부된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였는데, Y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순간 이것 때문에 피고인 A이 자신을 만나려고 연락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 문건과 그에 첨부된 위 복사본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위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편 Y은 앞서 본 CS법원 DM부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판결문을 읽어보았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서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내용의 위 판결문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 A로부터 위 문건과 그에 첨부된 위 복사본을 받기 이전에 이미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서 소 각하 판결이 아니라 본안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0) 그 후 Y은 V당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상실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문건 중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기재된 부분을 읽기도 하였으나, 그와 별개로 위 재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기속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후에는 그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성이 강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후에도 그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에서까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면서 해산된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면 그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후퇴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 국회의원 직



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증을 형성하고 판결문을 작성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문건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나타나 있지 않아 심증 형성 과정에서나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나 이를 한번 읽어보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참고하지는 않았다.

한편 위 항소심 재판부의 판사 DT은 BS실 심의관 X에게 연락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력과 국회의원 지위 유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행정처가 수집·보유한 논문 등 자료가 있는지 문의하였는데, X로부터 논문 등 자료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 후 Y이 재판장인 AN고등법원 DP부는 2016. 4. 27.경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V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은 법리상 잘못된 것이고, 원고들은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로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BA은 AU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AU에게 위 판결 선고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AO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판결 선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6)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⁷⁾에 대한 권고(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범행 결의

헌법재판소의 V당 위헌정당해산결정 이후 청와대 내에서는 해산된 V당의 잔존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방침이 강조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청와대 HM과 HL수석은 V당 행정소송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HK비서관은 HL수석에게 판결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하거나 중요한 재판 진행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왔다.

7) Z지방법원 DU(원고 DV 외 4, 피고 DW시 외 4)



당시 청와대의 입장은 국회의원인지 지방의회의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V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바, CS법원 DM부가 CV 사건에서 2015. 11. 12. 선고한 소 각하 판결은 V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결론이었다. 그런데 W공보사태가 발생하여 법원행정처가 위 소 각하 판결과 반대되는 취지의, W지방법원 DA 사건의 청구인용 판결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를 의아하게 여긴 HK비서관은 BA에게 전화해서 그 자초지종에 대해 물어보았고, 이에 BA은 2015. 11. 26. DL으로 하여금 청와대 HK비서관실에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 문건을 송부하게 하였다.

위 문건을 받은 HK비서관은 그 내용이 선뜻 납득이 잘 안 되고, 위 청구인용 판결의 결론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그 검토 결과를 HL수석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HL수석은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지 않느냐, 결국 법원행정처의 입장도 V당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 W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냐, 판사들이 국가관이 투철하지 못하다, 판사 개개인에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고, HK비서관은 HL수석의 반응을 살피던 BA에게 위와 같은 HL수석의 불만을 전해주었다.

이에 BA은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의 재판에서는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기존의 법원행정처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 재판부에 청구기각의 결론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나) 법원행정처의 1차 권고



(1) BA은 2016. 1.경 피고인 B에게, Z지방법원 DU 사건 재판부(Z지방법원 DY 부)의 재판장 DX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6.경 위 재판장 DX에게 전화하여 '헌법연구회의 논의 결과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키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났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DX가 'W 판결이 맞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청구인용의 심증을 내비치자 다시 DX에게 청구기각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언급하였으며, DX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AB고등법원 AC부나 AN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보기 위하여 선고를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무렵 DX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내용의 2016. 1. 6.자 'V당 지방의원 Z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BA에게 보고하였으며, AT에게도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보고하였다.

(2) 그런데 당시 DX는 위 사건 재판에 관하여 2015. 12. 24.경 이미 변론을 종결하였고, '원고들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합의부원들과 잠정적 합의를 마치고 2016. 1. 14.경 판결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X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위 사건 재판의 결론과 이유가 올바르지 못할 경우 2016. 2.경 이루어질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대법관이 그 위원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청구기각'으로 결론을 재검토해 보기로 마음먹고, 이후 배석판사들에게 '청구기각으로 판결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어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미 잠정적 합의를 마쳤던 청구인용의 결론 변경을 논의하였으나, 배석판사



들과 의견이 달라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DX는 이미 2015. 6.경 한차례 선고를 연기하였고, 불안정한 지위에 대하여 조속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원고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재차 판결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청구기각이 맞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말을 들은 후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어 정해진 선고기일에 기존의 잠정적 합의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배석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2016. 1. 13.경 기일변경명령을 하여 선고기일을 추정하였다.

다) 법원행정처의 2차 권고

(1)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위 Z지방법원 DY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재판부(재판장 AA)는 위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재개하여 2016. 4. 28.경 다시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5. 19.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BA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2016. 3.경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변경된 위 Z지방법원 재판부에 Z지방법원 DU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V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Z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DO에게 전화하여 'V당 행정소송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이 있는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DO로부터 '재판부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절하는 말을 듣게 되자, 2016. 3. 7.경 BA 주재 실장회의에서 이를 BA에게 보고하였고, 이때 피고인 B이 친분이 있는 재판장 AA에게 직접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하



자 BA은 이를 승인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6. 4. 29.경 BA으로부터 AA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았고, 이에 그 무렵 AA에게 전화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6. 5. 2.경 AA과의 통화 사실을 BA 주재 실장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한편 AA은 W공보사태 당시 언론보도를 접하여 V당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어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AA은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이를 법원행정처의 입장으로 여겼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17년에 있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잠시 느꼈으나, 금방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고, 배석판사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2016. 5. 19.경 그가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라고 여긴 피고인 B의 말과 달리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7)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⁸⁾에 대한 권고(피고인 A, 피고인 B)

앞서 본 것과 같이 4차에 걸쳐 판결문이 수정되어 최종 등록된 바 있는 W지방법원 DA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2015. 12. 7.경 제기된 후, BA은 2016. 2. 내지 3.경 피고인 A, 피고인 B 등과 함께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AB고등법원 DZ부의 재판장 EA에게,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위헌정당해

8) AB고등법원(AC부) EB(원고 CN, 피고 CQ도)



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어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부립 EA에게 전화하여 '헌법연구회에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검토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EA가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은 쟁점이 다르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B은 더 이상 위 사건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

그 후 AB고등법원 DZ부는 2016. 4. 25.경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8)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⁹⁾ 관련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요청 및 위 상고심 재판에 대한 권고(피고인 B)

가) 범행 결의

V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2016. 4. 27.경 AN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되었고, 국회의원들의 상고로 2016. 5. 23.경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BA은 2016. 5.경 피고인 B에게 대법원 EC V당 행정소송(이하 '이 상고사건')에 대하여 AS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 BQ 및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25.경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AD에게 연락하

9) 대법원 EC(원고 CW 외 4, 피고 대한민국)



여 '이 상고사건이 AS 및 법원행정처 처·차장의 관심 사안이니 잘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지시

(1) 그 후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X에게 '위헌정당해산 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선언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X는 2016. 6. 8.경 'V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BA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V당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의 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 조사·연구에 대한 권고

(1) A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 2016. 6. 3. 경 대법원 ED EE에게 '이 상고사건은 AS이 관심을 갖는 중요 사건이니 위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잘 챙겨보고 신건연구관이 지정되면 즉시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지시하



였고, EE은 2016. 6. 3.경 AD에게 '이 상고사건은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위원회(이하 '전합 소위'라고만 한다) 후보 사건으로 하려고 한 사건'이라고 알려주었다.

(2) 한편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8.경 이메일에 위 'V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첨부한 다음 'BS실과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 실장의 의견도 같다'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B은 AU에게 위 문건의 내용 및 위 문건의 전달 사실을 보고하였다.

(3) AD은 2016. 6.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BQ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여 위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다음, 대법원 BQ이자 전합 소위 간사인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문건을 전달하였다.

(4) 한편 EE은 이 상고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전합후보안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CD, AD에게 보고하였고, CD, AD은 2016. 6. 9.경 총괄재판연구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전합 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다.

결국 이 상고사건은 2016. 6. 13.경 전합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 소위에서 AS 및 대법관들에 의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가 검토되었고, AO가 위원장으로 있는 전합 소위는 위 사건을 이른바 '전합 보고사건'(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되나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할지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별도로 결정하는 사건을 말한다)으로 선정하였다.

(5) 그 후 AO는 CD에게 위 사건의 검토를 부장급 재판연구관에게 맡길 것, 위 사건에 대한 중간 검토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해 줄 것, 위 사건이 이른바 '전합 보고사건'



으로 선정되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를 철저히 비밀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AO의 위 지시에 따라 CD은 2016. 6. 20.경 EE을 통하여 헌·행조 재판연구관 EF에게 이 상고사건에 대한 신건 검토를 지시하면서 '① 이 상고사건이 AS 관심사항이나 BQ을 통해 AS에게 중간 검토보고를 하고, ② 위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F은 위 지시 및 요청에 따라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한편 X가 작성하여 피고인 B, BA에게 보고되었고 그 내용이 AU에게 보고되었던 'V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은 앞서 본 것과 같이 AD, CD에게만 전달되었을 뿐 EF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6) 2016. 8. 9.경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던 EF은 AD에게 'AS이 2017. 2. 내지 3.경 정도에 심층 검토보고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2016. 10.경 중간 보고를 할 예정인데, 독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어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와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를 달리 보는 이론이 있으므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결론 차이를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려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보고하였다.

AD은 EF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EF으로부터 전해들은 위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주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가」

1) 91[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CL 등 협업, 2015. 1. 7.)], 775(2014. 7. 25. AI 실 작성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적 대응전략 검토」), 1307(2014. 12. 26.자 CL 이메일 「AZ님 의견 송부」 첨부파일: 의원직 관련 의견 pdf), 1880[2014. 12. 24. EG→CL, CM, EH 메일(제목: V당 사건 접수시 처리 방안)], 1881[2015. 1. 6. EG→CL 메일(제목: V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장입니다)(첨부: CS법원_CV_소장.pdf)], 1882[2015. 1. 6. CL→CK, CR, EI, BZ 메일(제목: 전달: V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장입니다)(첨부: CS법원_CV_소장.pdf)], 1884[2015. 1. 8. EJ→CL 메일(제목: V당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관련 보고)(첨부: EK(소장).hwp)], 1885[2015. 1. 11. CL→CK, CR, BZ, cc: BR(제목: 행정소송팀 회의자료 송부드립니다)(첨부: (150112)V당 행정소송제기경과보고.hwp, Z지법 EK(소장).hwp, CS법원_CV_소장.pdf)], 1886[2015. 1. 12. EJ→CL 메일(제목: 입증자료 등 첨부서류 올려드립니다~(본문무))(첨부: EK(첨부서류).hwp)], 1887[2015. 1. 12. CL→CK, CR, BZ 메일(제목: 중선위 의결 서류 등(Z 사건 첨부자료) 송부)(첨부: EK(첨부서류).hwp)], 1888[2015. 1. 14. EJ→CL 메일(제목: 집행정지신청서와 첨부서류입니다)(첨부: EK관련(집행정지신청서).hwp)], 1889[2015. 1. 14. CL→CK, CR, BZ(제목: 전달: 집행정지신청서와 첨부서류입니다)(첨부: EK관련(집행정지신청서).hwp)], 1890[2015. 2. 6. EG→CL 메일(제목: V당 비례대표의원 사건)(첨부: EL.hwp)], 2000[2014. 12. 22. 20:23 CL→BZ 메일(제목: V당 행정 소송 TFT 제1차회의 참고자료 송부)], 2001(V당 행정소송 대응 TFT.hwp), 2002[스페인 헌법재판소(EM).doc], 2003[스페인 헌법재판제도(지정토론)-2(EN).hwp], 2004(V당 해산결정.hwp),



2454[2014. 12. 29. CL 이메일(V당 대응팀 주요 회의자료 송부)(첨부파일: (141228)의
원직상실결정의 정당성 검토(EI, CR).hwp, (141229)정당해산결정 관련 언론 동향 보
고.hwp, (141229)V당 행정소송 영향 및 대응전략 검토.hwp]], 2463[2015. 2. 3. CL→
BZ, CR 이메일(V당 행정소송 팀 최종보고서 정리 부탁(오늘중으로 부탁^^))], 3195(현
재 관련 TF 검토보고서 -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 관련 -), 3196(V당 해산 관련 언론
동향 보고), 3197[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서(요약)(對外秘)], 3198(V당 행정소송 - 소송
요건 검토), 3199[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3200(V당 지방의원 현황
보고), 3201(V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3202[현재 관련 TF 검토보고서(對外秘) - 현재
결정의 효력 관련 -], 3203[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對外秘)]
3204(V당 행정소송 - 처분성 및 본인 검토), 3331[2015. 2. 4. CL→EO 이메일(스프링
제본 부탁(10권, 오늘 중으로))], 3332[2015. 2. 6. CL→CK 이메일(V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보고서 송부)], 3333[2015. 2. 9. CL→EO 이메일(스프링 제본 재 수정 요청)],
3334[2015. 2. 10. CL→CK 이메일(V당 파일 송부)], 3488(CL BF 증인신문조서),
3598(CL BG 증인신문조서), 3566(BZ BG 증인신문조서), 3577(CK BG 증인신문조서),
3539(BI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신문
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776(B 특별조사단 조사서)

2) 1891[2015. 2. 11. C→CM 메일(제목: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1892[2015. 2. 11. CM→CR 메일(제목: 전달: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1893[2015. 2. 11. CR→CL 메일(제목: 전달: 전달: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제4의 나 1)」

가) 3539(BI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262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776(B 특별조사단 조사서)

나) 91[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CL 등 협업, 2015. 1. 7.)], BF7(2014. 12. 26.자 CL 이메일 「AZ님 의견 송부」 첨부파일: 의원직 관련 의견 pdf), 3195(현재 관련 TF 검토보고서 -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 관련 -), 3196(V당 해산 관련 언론 동향 보고), 3197[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서(요약)(對外秘)], 3198(V당 행정소송 - 소송요건 검토), 3199[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3200(V당 지방의원 현황 보고), 3201(V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3202[현재 관련 TF 검토보고서(對外秘) - 현재결정의 효력 관련 -], 3203[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對外秘)] 3204(V당 행정소송 - 처분성 및 본안 검토), 3331[2015. 2. 4. CL→EO 이메일(스프링 제본 부탁 (10권, 오늘 중으로))], 3332[2015. 2. 6. CL→CK 이메일(V당 행정소송 제기 현황 보고서 송부)], 3333[2015. 2. 9. CL→EO 이메일(스프링 제본 재 수정 요청)], 3334[2015. 2. 10. CL→CK 이메일(V당 파일 송부)], 3577(CK BG 증인신문조서), 3539(BI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3529(CT BF 증인신문조서)

다) 1126(2015. 4. 8.자 B 업무일지), 1127(2015. 4. 23.자 B이 BP BQ에게 보낸 '연구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28[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보고(대외비)], 1129(2015. 4. 14.자 B이 X에게 보낸 '업무방해'라는 제목의 이메일), 1BF(2015. 4. 14.자 B이 X에게 보낸 '업무방해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3(2015. 4. 24.자 B이 BP BQ에게 보낸 '수정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4[2015. 4. 24.자 업무방해죄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대외비)], 1135(2015. 4. 23.자



B 업무일지), 1136(2015. 4. 24.자 B 일정표), 1137(2015. 4. 29.자 B이 X에게 보낸 '수정'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38[업무방해 한정위헌 문제점(JG)], 1139(2015. 4. 30.자 B이 BA에게 보낸 '파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40(2015. 4. 30.자 B 일정표), 3539(BI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제4의 나 2)」

가) 3539(BI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3529(CT BF 증인신문조서)

나) 956[일정표 2부(2015. 5. 15., 5. 18., 5. 19.)], 957[업무일지(2015. 5. 18., 5. 19.)], 959[일정표(2015. 5. 21.)], 2219[2015. 5. 19. B→BA 메일(제목: 양형이유 명시적 기재율 제고 방안)(첨부파일: 양형기준명시필요성(EP)수정(B).hwp, 법원별명시적기재율-2014년(EP)수정(B).hwp)], 2220[2015. 5. 19. B→BA 메일(제목: V당 관련)(첨부파일: V당행정소송검토보고-수정.hwp)], 2221[2015. 5. 19. B→BA 메일(제목: 26일 CU 수석)], 2243[2015. 5. 19. BA→B 메일(제목: 답장: V당 관련)(첨부파일: V당지역구지방의원대책내부용.hwp)], 3539(BI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3(BI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4(BI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69(BI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다) 959[일정표(2015. 5. 21.)], 960[(150526)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변형).hwp 문건], 961[일정표(2015. 5. 26.)],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90(CU BF 증인신문조서), 3578(CU BG 증인신문조서)

라) 3490(CU BF 증인신문조서), 3578(CU BG 증인신문조서), 3579(CY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3) 가)」

(1) 95[V당 비례대표지방법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938 [사건기본내역(W지방법원 DA-비례대표지방법의회의원 퇴직처분취소 등)],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2) 1411(2015. 9. 10.자 B 업무일지),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제4의 나 3) 나)」

95[V당 비례대표지방법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위 나) 부분과 관련하여 위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C의 진술은 기본적으로 DC으로부터 위 나)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이고 다만 DC이 그와 같은 말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DC으로부터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받은 것은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는 취지인바, 이는 일견 위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DC의 진술, 즉 C에게 위 나)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은 C의 위 진술과 DC의 위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아래 라)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당 라) 부분 인정사실과 같이 C은 국정감사와 관련된 DC의 말을 듣고 이를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변경하였다고 이 법원은 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정감사와 관련된 DC의 말을 선고기일 연기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C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DC으로부터 위 나)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위 나) 부분과 관련하여 위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C의 진술은 DC의 전화 당시 DD과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계속 변경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위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C의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진술 변경도 C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



진 상태에서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나타난 일이라고 보고, 그러한 이상 위와 같은 진술 변경만으로 위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4의 나 3) 다),

(1)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2)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1009(2015. 9. 14. B 일정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3) 라),

(1)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782[V당 행정소송 자료(CS법원 CV, Z지법 EK, W지법 CP, W지법 DA)], 942[변론기일 지정신청서(DA)],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



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2)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AT가 W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결론을 두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공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W지방법원 CZ부를 재차 접촉하여 선고기일의 변경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DC은 위 결정에 따라 2015. 9. 중순경 C에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적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선고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검사는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DC은 이 법정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 자신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한 기억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DC에게 달리 위증을 할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당시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이는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에 의하면 AB고등법원 국정감사가 W지방법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의 전날인 2015. 9. 15.로 기재되어 있어 W지방법원과 관련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제출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인정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만을 인정한다.]

「제4의 나 3) 마)」

91[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CL 등 협업, 2015. 1. 7.)], 939[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944[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1094[2015. 11. 24.자 DD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처화면(첨부 자료: W지법 DA 판결문)], 1095[2015. 11. 25.자 EQ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첨부 자료: DA.hwp)], 1098[2015. 11. 25.자 DD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처화면(첨부 자료: W지법 DA 판결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W지방법원 CP, DA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826[2015. 11. 25. DE→X 메일(제목: W지법) 전달: DA 판결문], 1827[2015. 11. 25. DD→DE 메일(제목: 판결문입니다)(첨부: CP.hwp)], 1829[2015. 11. 25. C→DD 메일(제목: 판결문)(첨부: DA(1).hwp)], 1958[2015. 11. 25. C→DE 이메일(제목: DA)], 1959[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3199[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증인 DD의 법정진술, 3597(DD BG 증인신문조서), 증인 DF의 법정진술,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020(EQ 진술서)

[공소장에는 위 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DC에게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DC은 그 무렵 이 문건을 C에게 전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C이 판결 선고 직후 급히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면서 실무관



으로 하여금 자신이 전달받은 위 물건 취지가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759(DC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DC 검찰 진술조서 2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59(DC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DC 검찰 진술조서 2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2098(B 진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2.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인 B이 보낸 편지함 내 수신확인 부분을 화면에 올려서 출력한 출력물 수집, 피고인 B이 DC과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C과 DC이 2015. 2. 1.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C이 W지방법원 CZ부 근무 당시 사용한 PC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DC에게 위 공소장 기재와 같은 물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고, DC이 그 무렵 C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문건을 전달한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수집되지 않은 점, ② DC은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는데, 워낙 업무상으로 많은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니 실제로 전달받아서 전달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조식으로 작성된 물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보면서 C과 통화했고 C에게 이를 이메일로 송부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C에게 물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DC의 위와 같은 진술, 즉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조식으로 작성된 물건 파일을 받아 C에게 이메일로 송부



했다는 내용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나타난 부정확한 진술로서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만큼 신빙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 법원은 그렇다고 하여 DC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인정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에서 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제4의 나 3) 바)」

1015[W지방법원 DA 판결문(실체 등록)], 1016(2015. 11. 27. B 일정표), 1017(2015. 11. 26. B 업무일지), 1092(2015. 11. 27. BJ 이메일), 1094[2015. 11. 24.자 DD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처화면(첨부 자료: W지법 DA 판결문)], 1097[2015. 11. 26.자 BJ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 정보 캡처화면(첨부 자료: W지법 DA 판결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W지방법원 CP, DA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826[2015. 11. 25. DE→X 메일(제목: W지법) 전달: DA 판결문], 1829[2015. 11. 25. C→DD 메일(제목: 판결문)(첨부: DA(1).hwp)], 1831[2015. 11. 25. DE 메일(제목: CN 의원 사건 보도자료)(첨부: V당지방의원행정소송결과보고(W지법, 2015. 11. 25. 선고, _1차_수정)(1).hwp)], 1833[2015. 11. 25. DE 메일(제목: CN 의원 사건 관련)], 1958[2015. 11. 25. C→DE 이메일(제목: DA)], 1959[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1961[2015. 11. 25. DE 이메일(제목: CN 의원 판결문 초고입니다)], 1962[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2364(C과 DC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3283[2015. 11. 26.자 BJ→BA 등에게 보낸 이메일(소장님 보고 완료), 첨부문건: (오늘자 DI 보도 관련 검토)], 증인 DE의 법정진술,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



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증인 DD의 법정진술, 3597(DD BG 증인신문조서), 증인 DF의 법정진술

[공소장에는 위 바) 부분과 관련하여, C은 "헌법재판소와의 마찰 및 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을 의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한편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에 의하면, BJ이 위 바) 부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C과 통화한 후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피고인 B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된 부분은 '뺄 것이다' 또는 '빼기로 했다' 또는 '빠질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BJ 스스로 그 부분과 관련되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이 그 무렵에 BJ에게 위와 같은 뉘앙스의 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J은 2015. 11. 26. 09:51경 X로부터 2차 수정 판결문을 받은 후 같은 날 10:23경 W지방법원 DA 사건을 전산으로 검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J은 2차 수정 판결문을 확인하고 사건검색을 통하여 아직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C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C이 3차 수정 판결문의 전자서명 요청을 반려한 같은 날 10:35경까지는 약 12분 밖에 되지 않고, BJ이 2차 수정 판결문을 송부 받은 때로부터 계산하여도 약 44분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의 2015. 11. 27.자 일정표에 'BJ 부장 전화(C 부장 통화 내용)'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BJ에게 전화한 시점은 2015. 11. 27.로 보이고, 이를 전제하면 피고인 B이 BJ에게 전화하여 등록된 판결문에는 국회의원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BJ이 위와 같은 B의 발언을 '떨 것이다' 내지 '빠기로 했다' 내지 '빠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잘못 기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BJ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C이 법원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제4의 나 4) 가),

(1) 798[2015. 11. 30.자 B 이메일(제목: 답장(존경하는 실장님께), 제목: (존경하는 실장님께))], 1412[2015. 11. 25.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 1829[2015. 11. 25. C→DD 메일(제목: 판결문)(첨부: DA(1).hwp)], 1958[2015. 11. 25. C→DE 이메일(제목: DA)], 1959[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2373[2015. 11. 25. X→CR 이메일(제목: 간략한 보고서를 올려드립니다)], 2374[2015. 11. 25. X→CR 이메일(제목: 수정본입니다)],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2) 1831[2015. 11. 25. DE 메일(제목: CN 의원 사건 보도자료)(첨부: V당지방의원 행정소송결과보고(W지법, 2015. 11. 25. 선고, _1차_수정)(1).hwp)], 1832[2015. 11. 25. BS실: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1833[2015. 11. 25. DE



메일(제목: CN 의원 사건 관련)], 1966[2015. 11. 25. DH→DE 이메일(제목: 전달: 전달: 수정본입니다)], 증인 DE의 법정진술

(3) 2085(법원행정처 공식 입장),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4) 1118[2015. 11. 25. B→BR, A 이메일(제목: 공식 입장)(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hwp)], 2085(법원행정처 공식 입장), 2086(2015. 11. 26.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4) 나」

(1) 785[2015. 11. 26. DI 기사ER], 786(2015. 11. 26.자 X 작성 「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문건),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2621(AT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154(AO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2) 787(2015. 11. 26.자 BJ 작성 「오늘자 DI 보도 관련 검토」 문건), 1119[2015. 11. 26. BJ→B, X, BA 이메일(제목: 소장님 보고 완료)(첨부파일: DI보도관련보고(DK).hwp)], 1120[2016. 11. 26. X→BJ 이메일((제목: 전달: W지법) 전달: DA 판결문)(첨부파일: DA(1).hwp)], 1122[2015. 11. 27. BJ→B 이메일(제목: W지법등록판결 보고)], 3058(2015. 11. 26.자 'BS실 문건 관련 자료입니다.'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59[2015. 11. 26.자 X→DL 이메일(현재 설명자료입니다.)(첨부파일: 헌법재판소 설명자료(2차 수정).hwp)], 3060('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문건), 3061(2015. 11. 26.자 '판결입니다.'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2(2015. 11. 26. ES의 문자메시지 내역), 3064(2015. 11. 26.자 '판결 최종'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5(2015. 11. 26.자 '바뀐 부분 특정'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5) 가),

(1) 91[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CL 등 협업, 2015. 1. 7.)], 946[2015. 11. BS실: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963(2015. 11. 12. 선고 CS 법원 CV 국회의원 지위 확인 판결문), 3579(CY BG 증인신문조서), 3581(ET BG 증인신문조서)

(2) 796[2015. 11. 12.자 B 이메일(제목: V당 보고) 및 첨부 문건(2015. 11. BS실 명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 796[2015. 11. 12.자 B 이메일(제목: V당 보고) 및 첨부 문건(2015. 11. BS실 명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 3499[B AN고등법원 민사부판사실(향후대책 부분을 추가한 보고)], 증인 X의 법정진술,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4) 796[2015. 11. 12.자 B 이메일(제목: V당 보고) 및 첨부 문건(2015. 11. BS실 명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 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 964[업무일지(2015. 11. 13.)], 965[일정표(2015. 11. 13.)],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5) 964[업무일지(2015. 11. 13.)], 965[일정표(2015. 11. 13.)],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제4의 나 5) 나」

(1) 797[2015. 11. 26.자 B 이메일(제목: 헌법교육) 및 첨부문건 (2015. 11. 25.자 BS



실 명의 법관대상 헌법교육 개편 방안론 검토(대외비) 물건], 967[업무일지(2015. 11. 26., 11. 27.)], 968[업무일지(2015. 12. 1.)], 1178(2015. 11. 27.자 B이 X에게 보낸 '헌법교육 관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1179[B 작성 '2015. 11. 24. 및 27. EU·AZ면담(헌법교육 관련)' 물건],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2) 2042[수사협조의뢰(AN고등법원 DN 사건 관련 접수 및 배당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2043[2018. 10. FU국: 수사협조의뢰(AN고등법원 DN 사건 관련 접수 및 배당자료 제출 요청) - 임의 제출 요청 자료 및 FU국 확인사항]

(3) 969[일정표(2015. 12. 20.)],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4) 969[일정표(2015. 12. 20.)],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5)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6) 971[업무일지(2016. 2. 12.)], 972(2016. 2. 12. 오후 6:20경에 피의자가 X에게 보낸 이메일), 973[업무일지(2016. 2. 15.)], 974[일정표(2016. 2. 16.)], 975[(160216)AN 고등전달-문제점.hwp 문건], 976[일정표(2016. 2. 18.)], 977[업무일지(2016. 2. 25.)], 978(2015. 5. 26.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문건), 1402(DQ 新민사소송법 강의 495페이지 사본),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7) 974[일정표(2016. 2. 16.)], 975[(160216)AN고등전달-문제점.hwp 문건], 976[일정표(2016. 2. 18.)], 977[업무일지(2016. 2. 25.)], 978(2015. 5. 26.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문건),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88(Y BG 증인신문조서)

(8)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9) 977[업무일지(2016. 2. 25.)], 2547[수사협조의뢰(A 전 법원행정처 AI실장의 카드사용내역 등 자료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및 기관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588(Y BG 증인신문조서)

(10) 2549(AN고등법원 DN 판결문 사본), 3588(Y BG 증인신문조서), 3589(DT BG 증인신문조서),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154(AO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제4의 나 6) 가),

3058(2015. 11. 26.자 'BS실 물건 관련 자료입니다.'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59[2015. 11. 26.자 X→DL 이메일(현재 설명자료입니다.)(첨부파일: 헌법재판소 설명자료(2차 수정).hwp)], 3060('문건 작성 및 유출 경위' 문건), 3061(2015. 11. 26.자 '판결입니다.'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2(2015. 11. 26. ES의 문자메시지 내역), 3064(2015. 11. 26.자 '판결 최종'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065(2015. 11. 26.자 '바뀐 부분 특정' 법원 이메일 수신확인함), 3552(EV BG 증인신문조서), 2616(EV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87(ES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6) 나」)

(1) 970[일정표(2016. 1. 7.)], 986[(160106)V당 지방의원 Z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보고 문건], 988[2016. 1. 7. 오전 10:19경 피의자가 BP 당시 BQ에게 보낸 메일 - (160115) EW대사건보고 EU수정.hwp(국립대학의 헌법소원 청구 관련 보고)], 증인 DX의 법정진술, 3613(DX BF 증인신문조서), 3615(DX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2(B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2274(B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0회)

[BA이 2016. 1.경 피고인 B에게, Z지방법원 DU 사건 재판부(Z지방법원 DY부)의 재판장 DX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제4의 나 6) 가)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피고



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1. 6.경 DX에게 연락을 한 후 'V당 지방의원 Z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문건을 작성하여 BA에게 보고한 점, ② 그런데 위 문건에는 '행정처의 견해(기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문언 자체로 보거나 앞뒤의 문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이 DX에게 기각을 요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BA이 지시하고 보고받는 자이므로 이는 BA의 인식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법원이 피고인 B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DX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이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④ 1375(2018. 9. 수사협조의뢰(V당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관련 사건검색 및 접근권한 부여 등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Z지방법원 DU 사건을 2016. 1. 6.에서야 최초로 검색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A이 2016. 1.경 피고인 B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권고를 DX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1389(Z지법 DU 사건진행내용), 증인 DX의 법정진술, 3613(DX BF 증인신문조서), 3615(DX BG 증인신문조서), 3590(EX BG 증인신문조서), 3591(EY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6) 다」

(1) 1389(Z지법 DU 사건진행내용), 3599(AA BG 증인신문조서)

(2) 990[일정표(2016. 3. 7.)], 993[일정표(2016. 4. 29., 5. 2.)], 994[업무일지(2016. 5. 2.)], 1375[2018. 9. 수사협조의뢰(V당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관련 사건검색 및 접근권한 부여 등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자료],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595(EZ BG 증인신문조서), 3483(BP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9(BP BF 증인신문조서 2회)

(3) 993[일정표(2016. 4. 29., 5. 2.)], 994[업무일지(2016. 5. 2.)], 2554(Z지방법원 2015구합10766 판결문 사본), 3599(AA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피고인 B이 2016. 4. 29.경 BA으로부터 AA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993[일정표(2016. 4. 29., 5. 2.)], 994[업무일지(2016. 5. 2.)], 3599(AA BG 증인신문조서)를 종합하면, AA은 Z지방법원 DU 행정소송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인 2016. 4. 29. 내지 2016. 5. 2. 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인 B의 업무일지와 일정표에는 위 사건과 관련된 기재가 총 3번 나오고, 그 날짜는 ㉠ 2016. 3. 7., ㉡ 2016. 4. 29., ㉢ 2016. 5. 2.인데, 2016. 4. 29.은 금요일이고 2016. 5. 2.은 월요일인 점, ㉡ 이 법원이



피고인 B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모두 살펴본 결과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AA에게 전화틀 하여 위와 같이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으리라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③ BA은 이미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DX에게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다가 2016. 3.경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V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④ 3570(X BG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BA은 X에게 기각이 사법부에는 제일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2016. 4. 29.경 BA 으로부터 AA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A에게 전화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본안 판단이 필요하고, 그 결론은 청구기각이 타당하다는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취지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의 나 7)」

989[업무일지(2016. 2. 23.)], 990[일정표(2016. 3. 7.)], 991[일정표(2016. 3. 14.)], 992[일정표(2016. 4. 25.)], 2552(AB고등법원 2015누1125 판결문 사본), 3592(EA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8) 가)」

981[업무일지(2016. 5. 25.)], 1373(대법원 EC 사건 진행 내용), 2382[사건진행내용



검색 자료(DN)], 2558[2016. 6. 3. AD 이메일(제목: 부탁드립니다)], 2559[2016. 6. 3. AD 이메일(제목: 답장: 부탁드립니다)],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8) 나)」

(1) 96[V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X, 2016. 6. 8.)],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2) 96[V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X, 2016. 6. 8.)],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6(X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91(X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70(X BG 증인신문조서)

「제4의 나 8) 다)」

(1) 1536[2016. 6. 8. EE→FA 이메일(제목: 전합소위 관련)], 2558[2016. 6. 3. AD 이메일(제목: 부탁드립니다)], 2559[2016. 6. 3. AD 이메일(제목: 답장: 부탁드립니다)],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612(EE BF 증인신문조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5

(2) 2560[2016. 6. 8. AD 이메일(제목: 전합)(첨부파일: V당사건전합회부관련.hwp)],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 2561[2016. 6. 8. AD 이메일(제목: 답장: 전합)], 2562[2016. 6. 8. AD 이메일(제목: 전합)(첨부파일: V당사건전합회부관련.hwp)],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4) 1534(재판연구관실 배치현황), 1537(2016. 6. 13. 전합소위원회 회의결과), 2563[2016. 6. 8. EE 이메일(제목: 6/9 전합소위 관련)(첨부파일: 2016두37003-여권영 문명 변경 거부처분(사)(20160606수정).hwp, 2016두37003(헌행조).hwp, 2016두39825(헌행조).hwp, 2016두39856(헌행조).hwp, 헌행조입무개선방안.hwp)], 2564[2016. 6. 9. AD 이메일(제목: 전체회신: 헌행조 후속대책 관련 자료입니다)],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612(EE BF 증인신문조서)

(5) 2424[2016. 6. 20. EF 이메일(제목: V당 사건 배분)],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612(EE BF 증인신문조서), 1477(EF 검찰 진술조서)

(6) 1379(2016. 8. 9.자 AD 선임재판연구관이 B에게 보낸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1380(2016. 8. 9.자 B이 AD 선임재판연구관에게 보낸 '답장: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 2425[2016. 9. 5. EF 이메일(제목: 국회의원 지위상실 관련)], 2426[현재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 관련 검토 문건(BY 작성)], 2427[독일정당해산심판과 의원(연방의회, 주의회, 지방의회)의 의원직 상실 문건(FB 작



성)], 2428[2016. 10. 24. EF 이메일(제목: 당부말씀 전달)], 2429[2016. 11. 10. EF 이메일(제목: 존경하는 수석부장님께)], 3315[2016. 11. 17. EF 이메일(전달: 선임부장님! AS님 중간보고 최종본입니다)], 3482(AD BF 증인신문조서), 3574(AD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1477(EF 검찰 진술조서)

IV당 행정소송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등(피고인 C)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6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5. V당 행정소송 관련 실증 누설 등(피고인 C)

가. 법원행정처에 대한 실증 누설

1) 피고인 C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W지방법원 기획법관·공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 2. 11.경 법원행정처 AI실 심의관 CM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CN이 CQ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W지방법원 CO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송부하며 '위 사건 재판장이 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¹⁰⁾에 대해 CQ도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다룰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하였다.

2) 이후 피고인 C은 2015. 2.경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W지방법원 DA)을 심리 중인 위 법원 CZ부의 부장판사로 사무분담이 변경되어 재판장으로서 위

10) W지방법원 CP(원고 CN, 피고 CQ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송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B은 제4의 나 3)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동기인 법원행정처 DB실 총괄심의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라,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알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5. 9.경 W지방법원 CZ부에서 계속 중인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B의 요청을 받은 DC으로부터 제4의 나 3) 나)항 기재와 같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의 말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 필요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DC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사건 재판장인 자신의 심증을 알려주었다.

나. 배석판사에 대한 판결문 수정 요청

1) 피고인 C이 부장판사이자 재판장으로 있던 W지방법원 CZ부는 2015. 2. 6.경 접수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W지방법원 DA) 사건을 심리하면서 이 사건 의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호소하며 조속한 재판 확정을 촉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2015. 7. 22.경 변론을 종결한 후 2015. 9. 16.경 판결 선고틀 앞두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은 2015. 9.경 DC으로부터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는 취지의 말을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배석판사(주심) DD이 재판장인 자신의 재판사무 수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고, 이에 DD에게 DC의 위와 같은 요청 사실을 숨긴 채 '최근에 피고 측에서 제출한 서류도 있으니, 해당 자료도 좀 더 보고 법리도 더 검토해 보기 위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연기하자, 판결 초고는 미루고 CS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이를 참고해서 작성하자'고 말하면서 DD에게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말하였고, 또 다른 배석판사 DF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14. 18:00경 위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을 2015. 11. 25.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C은 위 판결 선고 전날인 2015. 11. 24.경 위 사건의 배석판사(주심) DD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을 받았는데, DD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지 않았는바, 비례대표 CQ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 부정당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



한의 귀속을 기초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시는 일견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인 C은 DD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의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판결 이유에, "피고 CQ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V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치에 맞으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안 파일을 수정(이를 '1차 수정'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 후 출력하였고, 따로 판결문 완성본에 대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지는 아니하고 위 출력물만을 지참한 채, 2015. 11. 25. 09:55경 판결 원본 없이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¹¹⁾. 그런데 C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 합의 과정에서 배석판사 DD과만 합의를 진행하였고,

11)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판결 원본 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재판장 판사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라고 기재된 판결 선고조서에 기명·날인하였음



DD과만 합의를 진행하면서도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였다.

3)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직후 1차 수정 판결문을 저장한 파일을 찾지 못하여 부속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출력물의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여 2015. 11. 25. 10:55경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와 같이 이메일로 송부 받은 파일을 이용하여 판결 이유에 '① 피고 CQ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V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②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 초안을 수정(이를 '2차 수정'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 다음, 같은 날 12:02경 이를 W지방법원 공보관 DE에게 2차 수정 판결문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DE은 같은 날 12:27경 이를 BS실 심의관 X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계속하여 12:33경 언론사 기자들에게 '일단 급하실 듯하여 판결문 초고(등록 전 판결문)를 보내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에 2차 수정 판결문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차 수정 판결문 중 ② 부분을 따로 빼내어 별도의 문단으로 구



성하고,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 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내용으로 문맥을 수정(이를 '3차 수정'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 후, 같은 날 13:07경 DD에게 송부하면서 3차 수정 판결문의 전자서명 및 판결문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DD은 2015. 11. 25. 15:44경 피고인 C이 등록을 요청한 3차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마쳤으며, DF는 같은 날 15:53경 위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마쳤다¹²⁾.

4) 그런데 2015. 11. 25. 15:37경 앞서 본 W공보사태로 위와 같은 내용의 2차 수정 판결문을 기초로 한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이 외부에 공개되자, B은 같은 날 DC에게 'DC부장이 지난번에 V당 사건에 대해 C부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하여 C부장의 입단속을 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DC은 B의 위 요청에 따라 같은 날 18:16경 피고인 C에게 'C부장님, 오늘 선고한 명쾌하고 훌륭한 판결 언론에서 잘 보았어요, 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V당 판결에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 전국 V당 사건을 정리하면서 C부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혹시나 행정처의 재판 관여 논란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언론과 접촉할 기회가 있게 되면, 작년엔 공보관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적절히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위 내용을 수증하면서 DC에게 잘 알겠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5. 11. 26.경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BJ으로부터 V당 지방의회의원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BJ에게

12) 판결문 전자서명 및 등록절차는 통상 주심인 배석판사 →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 → 재판장 순으로 전자서명을 마쳐 판결원본을 생성한 후, 주심인 배석판사가 이를 법원 내부 판결문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법률이지 않느냐, 법률의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고, 이에 다시 DC에게 전화하여 'BJ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너 괜찮으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DC으로부터 '별일 있겠느냐'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부담을 느껴 2015. 11. 26. 10:35경 DD, DF가 전날 전자서명한 3차 수정 판결문을 반려하면서 위와 같은 DC의 요청을 전혀 알리지 않고 DD에게 판결문 제8쪽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을 삭제(이를 '4차 수정'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한 후 그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및 등록절차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DD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반려된 3차 수정 판결문 제8쪽의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라는 문장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위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절차를 마친 다음, 앞서 본 것과 같은 2차 및 4차 수정을 포함하여 판결 선고 전후로 총 4회에 걸쳐 수정된 판결문을 같은 날 11:18경 판결문등록시스템에 최종 등록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5의 가」

- 1) 1891[2015. 2. 11. C→CM 메일(제목: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 1892[2015. 2. 11. CM→CR 메일(제목: 전달: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 1893[2015. 2. 11. CR→CL 메일(제목: 전달: 전달: 결정문입니다.)(첨부: 결정문.hw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5

2)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1411(2015. 9. 10.자 B 업무일지),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제5의 나」

1) 95[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X, B, 2015. 9. 15.)], 782[V당 행정소송 자료(CS법원 CV, Z지법 EK, W지법 CP, W지법 DA)], 942[변론기일 지정신청서(DA)],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2) 91[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CL 등 협업, 2015. 1. 7.)], 943[판결선고조서(DA)], 1094[2015. 11. 24.자 DD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처화면(첨부자료: W지법 DA 판결문)], 1095[2015. 11. 25.자 EQ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첨부자료: DA.hwp)],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W지방법원 CP, DA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3199[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보고(요약)],



증인 DD의 법정진술, 3597(DD BG 증인신문조서), 증인 DF의 법정진술,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3) 944[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1095[2015. 11. 25.자 EQ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첨부 자료: DA.hwp)], 1098[2015. 11. 25.자 DD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정보 캡처화면(첨부 자료: W지법 DA 판결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W지방법원 CP, DA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826[2015. 11. 25. DE→X 메일(제목: W지법) 전달: DA 판결문], 1827[2015. 11. 25. DD→DE 메일(제목: 판결문입니다)(첨부: CP.hwp)], 1829[2015. 11. 25. C→DD 메일(제목: 판결문)(첨부: DA(1).hwp)], 1958[2015. 11. 25. C→DE 이메일(제목: DA)], 1959[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례대표지방법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1961[2015. 11. 25. DE 이메일(제목: CN 의원 판결문 초고입니다)], 1962[판결문 사본(W지방법원 DA 비례대표지방법의회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증인 DD의 법정진술, 3597(DD BG 증인신문조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1020(EQ 진술서)

4) 1015[W지방법원 DA 판결문(실제 등록)], 1016(2015. 11. 27. B 일정표), 1017(2015. 11. 26. B 업무일지), 1092(2015. 11. 27. BJ 이메일), 1097[2015. 11. 26.자 BJ 이메일 및 첨부자료 출력물, 문서 정보 캡처화면(첨부 자료: W지법 DA 판결문)], 1102[2018. 8. 법원행정처 회신 자료(수사협조의뢰 - W지방법원 CP, DA 사건 전자서명 이력내역 등 요청)], 1230(W지방법원 DA 판결문), 1831[2015. 11. 25. DE 메일(제목: CN 의원 사건 보도자료)(첨부: V당지방법의원행정소송결과보고(W지법, 2015. 11. 25. 선고, _1차_수정)(1).hwp)], 1832[2015. 11. 25. BS실: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1833[2015. 11. 25. DE 메일(제목: CN 의원 사건 관련)], 2364(C



과 DC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3283(2015. 11. 26.자 BJ→BA 등에게 보낸 이메일 (소장님 보고 완료), 첨부문건: (오늘자 DI 보도 관련 검토)], 증인 DE의 법정진술, 증인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79(2018. 4. 25.자 이메일에 첨부된 C에 대한 특별조사단 서면 문답서), 928(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증인 BJ의 법정진술, 3487(BJ BF 증인신문조서), 3550(BJ BG 증인신문조서 2회), 증인 DD의 법정진술, 3597(DD BG 증인신문조서), 증인 DF의 법정진술
IV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 개입(피고인 D)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6. V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의 경위(피고인 D)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배당실시 시기에 관하여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건배당 주관자를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으로 지정하면서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를 통한 사건배당'을 실시할 경우 그 법원의 직원을 보조자로 참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한 사건배당'의 경우에도 사건배당 주관자, 사건배당 확인자, 사건배당 담당자를 각각 지정¹³⁾하여, 사건배당 담당자는 사건분류(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등 작업), 제척사항 및 관련사건 등 배당과 관련된 사항들을 미리 입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사건

13)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3조 (사건배당 관여자) 사건배당시스템에서의 사건배당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건배당 주관자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배당 주관자로서, 사건배당시스템 중 자동배당실행 프로그램과 배당 결과삭제 프로그램은 사건배당 주관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사건배당 대리자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건배당 주관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 사건배당 확인자 :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과의 장
4. 사건배당 담당자 :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과의 직원



배당 주관자는 원칙적으로 자동배당을 실행하되,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 등의 경우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의 요건에 맞춰 그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건배당 확인자는 배당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등 배당절차와 업무 담당자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AN고등법원은 행정항소 사건의 경우 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면서 참조할 수 있도록 '직무편람'을 마련하였는데, '직무편람'에는 사건배당 담당자가 송부된 기록들을 전담사건¹⁴⁾과 일반사건으로 분류하되 전담사건에 대해 먼저 사건번호를 부여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일한 사건 내에서는 법원별¹⁵⁾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 법원 사건일 경우 '구단'이 '구합'보다 우선하되 1심 사건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항소심 사건번호를 부여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5. 12. 3. 08:49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하여 행정항소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부여 등 접수업무를 시작할 당시, 전날 17:12경 이후 기록 송부되어 접수대기 중인 행정항소 사건이 총 10건이었고, 해당 사건 중 조세 전담사건이 총 3건이었으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과 같은 일반 행정사건은 모두 1심이 CS법원이었는데 그 중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보다 사건번호가 빠른 사건이 5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N고등법원 사건배당 담당자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직무편람' 등에 따라 사건번호를 부여하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번호 부여 순서를 10건 중 9번째로 하여 사건번호를 'DN'이 아닌

14) 전담사건 내에서는 공정거래→토지수용→노동→조세 사건 순으로 사건번호 부여

15) CS법원→FC지법→FD지법→FE지법 순으로 사건번호 부여



'FF'¹⁶⁾로 부여하게 된다.

그럼에도 FG은 AN고등법원 사건배당 담당자로서 2015. 12. 3. 08:49경 전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하여 배당결재 상신 후 전날 기록 송부된 사건들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던 기존 업무 방식과 달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1건에 대해서만 전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배당결재 상신 전에 별도로 사건번호를 'DN'으로 부여하여 같은 날 08:52경 접수를 마쳤고¹⁷⁾, 09:07경 이루어진 배당결재 상신 대상 사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¹⁸⁾ 다음날인 12. 4. 09:54경 배당결재를 상신하였으며¹⁹⁾, 위 사건은 계속 배당실행이 지연되다가 같은 날 15:25경 배당실행되어 결국 DP부 DO 재판장 주심 사건으로 배당되었다.

【사실인정의 근거】

2043[2018. 10. FU국: 수사협조의뢰(AN고등법원 FJ 사건 관련 접수 및 배당자료 제출 요청) - 임의제출 요청 자료 및 FU국 확인사항], 2519[2018. 10. 16.자 수사협조의뢰 회신 공문(AN고등법원 행정과 배당직무편람 등)], 3089(FH 수석부장판사 2015. 12. 4. 배당실시 시각자료), 3090[FH 수석부장판사 배당실시 시각(201508-201602) 자료], 3090-1(FU국 배당시스템 2015. 12. 4.자 데이터 로그기록 발취 정리), 3131[AN고등법원 행정과 사건접수 및 배당자료를 정리한 문서(2015. 11. 23. ~ 2015. 12. 9.)], D 692[대법원 재판예규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개정 2015. 10. 26.

16) FF 사건은 2015. 12. 4. 배당에서 F부 나 주심으로 배당되었음

17) FG은 2015. 12. 3. 08:49경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 'DN'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였고, 09:07경 전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하여 배당결재를 상신하였으며, 같은 날 09:47경부터 09:49경까지 전날 기록 송부된 나머지 9건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였음

18) 2015. 12. 3. 전날 접수된 일반행정항소 사건은 총 26건이었고, DP부 가 주심은 배당순번 상 35번째 배당순위였으므로, DN 사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배당결재 상신하였을 경우 DP부 가 주심은 배당순번에 들어가지 않게 됨

19) 2015. 12. 4. FG이 배당결재 상신한 사건 중, 형사신청 및 행정항고 사건은 각 09:45경 결재 상신되어 09:47경 배당실행되었는데, 일반행정항소 사건은 09:54경 결재 상신되었음에도 15:25경 배당실행 되었는바, AG경부터 2016. 2. 4.경까지 일반행정항소 사건의 오후 배당실행은 2015. 12. 4.이 유일함



(재판예규 제1549호)'], D 693[대법원 재판예규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개정 2015. 10. 15.(재판예규 제1546호)']], D 694(AN고등법원 내규 '사건배당에 관한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내규'), D 709(법원행정처 회신자료에서 발췌한 2015. 12. 3. 로그 및 데이터 자료 1부), 증인 FK의 법정진술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B의 AO, AU,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8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7.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 피고인 B의 AO,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AE의 분과위원회인 AF(이하 'AF'라고 한다)은 2015. 7. 7. 공식 제안되어 2015. 7. 21. 첫 예비모임이 열렸고, 여기서 법관 사회 내부의 소동, 사무분담, 상고법원 등이 논의되었으며, BC 두 번째 예비모임이 열렸고, 여기서 상고법원에 관하여 찬성론과 반대론이 토론되었는데, 향후 정식 첫 모임이 합의부의 운용을 주제로 하여 2015. 9. 14. 로 예고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2015.경부터 2016.경까지 AE 회장이었다)은 AO, AT, BA과 함께 2015. 8. 24.경 AE의 성격에 관하여 FL와 관련이 깊고, 진보적 색채가 있으며, 연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회원이 강한 유대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인식하고, AF의 활동이 법관윤리강령 등 윤리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연구회 내 분과위원회로서의 활동임에도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위배된다고 보면서, AF가 대법원의 정책과 다른 의견을 외부에 표출하는 경우 그러한 의견이 외부에서 볼 때 AE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되고 AE의 다른 회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실질적으로 FL와 같



은 활동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전문분야연구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나. 전문분야연구회의 설립 및 활동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들이 회원이 되어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8. 10. 2. 행정예규 제1164호로 개정되어 2018. 10.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단체인데,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사무분담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에 맡겨 된 판사가 연구회에 가입한 후 그 모임에 스스로 나가 그 연구회에 이미 가입한 다른 판사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전수받거나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이하 '코트넷'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해당 전문분야연구회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스스로 살펴보는 활동이 모여 이루어진다. 한편 전문분야연구회는 매년 법원행정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매년 법원행정처에 연구회 활동 성과를 보고하며,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중 일부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국제회의나 외국 법원을 둘러보기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받고 연수 비용을 지원받은 후 그 연수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해당 전문분야연구회에 보고하여 왔다.

다. 2016. 3.경 AE 약화 및 AF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A)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BA은 별도로 2015. 8. 24.경 AI실 심의관 DL에게 AF의 활동이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위배되고, 주요 구성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내외부에 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젊은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AF 활동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AF에 대한 대



응방안을 검토 및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DL은 위와 같은 BA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추이를 관망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대응하되, 우선 AE회장이나 연구회 선배 판사가 AF 주요 회원을 상대로 원만한 설득을 시도하고, 원만한 설득이 되지 않으면 AE회장이 주도적으로 AF 활동의 관련 예규 위반 여부를 공론화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며, 그럼에도 예규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 예규상 마련된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를 활용하고, 끝내 활동을 계속하면 AF 활동 부분에 한하여 일반 회원의 활동과 분리하여 지원을 중단하되, 다만 사법행정 현안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려는 욕구를 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AF 대응방안(對外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A, BA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2) 한편 2015. 9. 14.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달 AF 모임이 열렸는데, AT가 2015. 12. 8. 판사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구상을 공지한 후인 2016. 1. 29. 다섯 번째 AF 모임이 열려서, 사법행정과 재판사무의 범위와 한계는 무엇이고, 사법행정권자와 판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사법행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사법행정에 참여할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선출 방식은 무엇인지 등이 논의되었고, 위 모임에서 FM 판사가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어서 FM 판사는 2016. 2. 1. FN에 참여할 위원에 대한 판사회의 선출이 필요하고,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전체 회의를 만들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판사회의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하였는데, 2016. 2. 19.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BA은 2016. 2. 25. 위 규칙 제정에



관하여 안내하는 글을 공지하였으며, 그 직후인 2016. 2. 26. 여섯 번째 AF 모임이 열려서,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그 과정인 2016. 2. 24.경 BA은 2016. 2. 15. 및 2015. 2. 23. FM 판사의 건의문 기사를 소개하는 언론 보도가 연달아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였고, 2016. 2. 26. AF 모임이 열려 사법행정 참여 판사의 대표성 확보 등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 사실까지 접하였다. 이에 BA은 위와 같은 경과를 FL 전, 현 회원인 판사가 핵심 그룹이 되고 AE 회원인 판사가 주변 그룹이 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파악하고, 핵심 그룹이 조직적 활동을 통하여 FN를 판사회의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FN 출범의 취지가 크게 반감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 후 BA은 2016. 3.경 AI실 심의관 FO를 통하여 DL에게, 전문분야연구회 제도가 마련된 지 15년 이상 되었으니 전반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그와 함께 AE가 판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선점하면서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고, 활동하는 판사들이 노령화된 다른 연구회와 달리 젊은 판사들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AE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FL 전, 현 회원이 핵심으로 자신들의 법관 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연구회를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AE를 약화시키고 AF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3) 이에 따라 DL 심의관은 2016. 3. 25.경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다음 BA에게 보고하였고, BA의 추가 지시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서두에 요약을 추가하여 2016. 3. 28.경 BA에게 재차 보고하였으며, BA은 그 무렵 위 문건의 내용을 AU, AO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검토배경 부분에 '전문분야연구



회 현행 체제 정립 후 장기간 경과', 'AE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AE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 항목 아래 '연구회 주도 세력의 편향성 및 영향력 증대로 인한 대응책 마련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와 관련하여 'FL 출신을 중심으로 한 연구회 핵심세력, 전문분야연구회 본질을 벗어난 활동'이라는 세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어 AE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문제점이 반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한편, 제도 전반의 문제점에 상응하는 개선책뿐만 아니라 AE의 인기요인별로 그에 상응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어 중복가입 금지규정 형해화에 따른 혜택을 AE가 가장 크게 누리고 있으니 중복가입자 정리가 필요하고, 위 방안이 'AZ, BE이 아니라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FU국장 명의로 실행할 수 있어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나 특정 연구회에 대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며, AF 해소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라는 내용, AE가 과잉 확장되어 있으니 연구회 논의 주제를 허가받은 전문분야의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 핵심세력과 다수 회원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었다.

4) 한편 B은 2016. 4. 7. AF 활동을 하는 판사 중 최연장자인 FP 부장판사를 만나 AF의 향후 활동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FP에게 AF 모임에서 이루어진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외부에 의하여 악용될 소지가 많고 법원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AF 활동이 곧 AE 활동으로 비춰지는데 AF의 활동은 AE 본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에 FP이 무리하거나 부적절한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니 무조건 막지는 말고 지켜봐 주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하자, 그 무렵 위와



같은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BA, AU에게 보고하였다.

라. 2017. 1.경 AE 및 AF 제제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피고인 A, 피고인 B)

1) AF는 2017. 1.경까지 약 12회 모임을 열었는데, FQ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AF 활동을 하는 판사들은 2016. 10.경 AE 중 AF 분과의 간사가 된 FP에게 그동안의 AF 연구 결과를 외부에 발표하자고 말하였고, 이에 FP은 검토해 보자고 하였는데, 이후 FQ은 법관인사를 주제로 FR대학교 법학연구원과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위와 같은 경과를 알게 된 피고인 B은 2017. 1. 3.경 BA에게, 2017. 1. 13.경 AU에게 각 이를 보고하면서, 판사들이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법관인사 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AE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과 AU, BA은 위와 같은 경과와 관련하여, AE 및 AF가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AS의 인사권을 주제로 삼는 내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AS의 인사권 행사와 사법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조직적으로 법원 내·외부에 표출하려는 것이므로, 공동학술대회 자체가 열리지 않게 하거나 적어도 AE 명의로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하였다.

2) 한편 AE 운영위원회는 2017. 1. 15. AF가 FR대학교 법학연구원과 법관인사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를 AE의 행사로서 개최할 것인지, 개최 시기로 3월이 적절한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AE 회장인 CK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위원들은 판사들이 법관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AE 본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당시 AE는 회원들로부터 연내 행사 주제 및 일정에 관한 의견을 공모하고 있었는데, 절차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제안된 다른 행사들과 함께 일정을 확정하기 위하여 CK과 나머지 운영 위원들은 공모기간이 끝난 후 AE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동학술대회 일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자고 하였고, AE 운영위원회는 2017. 1. 23.경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를 3월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3) BA은 2017. 1. 중순경 그때까지의 경과를 접하고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화가 난 듯한 어조로 '말려도 듣지도 않고, 이 문제는 더 손대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하여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AU에게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AO가 2017. 1. 2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 무렵 BA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BA은 AI실 심의관 DL에게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AF와 관련하여 '2016. 3. 경부터 보고되었던 자료들과 그 이후에 피고인 B이 작성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기존에 나온 모든 방안을 정리하고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로드맵까지 첨부해서 최대한 빨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AE 기획팀장이던 FS 판사에게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법원 외부와 연계된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진행할 것과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따라 DL은 2017. 1.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위 대응방안 관련 문건 작성에 참고할, AE 및 AF와 관련된 최근의 사정을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DL에게 AO의 위와 같은 말, 즉 후임 AS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그 후 DL은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뒤 BA에게 보고하였고, BA은 위 문건의 내용을 AO에게 보고하였다. 그 무렵인 2017. 1. 26. BA은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B에게 AI실 심의관 FO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며 피고인 B이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AU에게 간략하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FO에게 BA의 위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런데 위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에는 검토배경 부분에 'AE 명의 법관인 사제도 학술대회 개최 의결'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와 함께 인사제도 관련 논의 자체를 억압한다는 비판의 빌미를 주면 안 되고, 전문분야연구회인 AE의 설립목적 및 범위에 반함에도 연구회 명의로 외부와 연계된 행사를 하는 것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응방향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것에 연이어 설득·대응의 주된 대상을 AF 주도 법관이 아닌 AE 일반 회원으로 삼아 AF 주도세력과 AE 일반 회원인 법관 사이의 분리를 1차 공략지점으로 삼아야 하고, AF 주도 세력과 일반 회원인 법관 사이의 약한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일부 세력의 고립된 활동으로 만들어 과급력을 현저히 감소시켜야 하며, AE 일반 회원인 법관과 AF 사이에 거리감을 형성함으로써 AF 활동을 위축시켜야 한다는 대응방향이 기재되어 있었고, 그 구체적인 단기 대응방안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활동 범위를 AE 일반 회원인 법관에게 공지하고 관련 예규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리적 측면의 문제제기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단기 대응방안으로 현재는 사법부 내 주류 중의 주류로 인식될 수 있는 법관들이 다수 AE 일반 회원으로 포진하고 있어 젊은 법관들이 AE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앞서 관련 예규에 반하는 연구회라는 문제제기에 이어 주류 성향 선배 법관들이 대거 탈퇴하



여 다수의 AE 일반 회원이 AF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FL의 후신이 정치적 목적 아래 AE를 이용하고 있음을 일반 회원인 법관들이 자연스럽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측면의 문제제기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단기 대응방안에 대한 충격 완화책을 강구하면서 AF의 세미나가 사법부 내외에서 크게 주목받고 정치권 등의 압박이 가시화되는 경우 최후 수단으로 제도권 내 인사제도 논의 위원회 발족도 고려함이 상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어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중복 가입된 AE 회원들의 탈퇴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내용 등 AF 해소 유도 및 제재 방안을 중심으로 한 중기 대응방안이 기재되어 있었고,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중복가입 해소 요구 방안이 규범력 회복 등 명분이 충분하고, AZ이나 BE이 아니라 커뮤니티 관리책임자인 전산정보국장 명의로 실행할 수 있어 다른 방안에 비하여 법원 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 및 특정 연구회를 표적으로 한 압박수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며, 커뮤니티 게시글 전면 공개 방안과 함께 시행함으로써 중복가입 금지 규정의 엄정한 시행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고, AE의 소속감을 약화시키며, AF의 과감하고 도발적인 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2017. 3. 초순경 중복가입 해소조치 공지' 등 시기별 조치 사항을 명시한 로드맵이 기재되어 있었다.

5) 피고인 B은 2017. 2. 초순경 FO로부터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점검 사항을 보고받았고, 그 무렵 공지문 초안 작성을 마친 FO로부터 공지문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수정하여 공지문을 완성한 다음 2017. 2. 9.경 BA에게 위 공지문을 보고한 뒤



FO에게 주었고, FO가 위 공지문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A은 FO에게 그대로 게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FO는 같은 날 바로 게시하지 않고 AU에게 공지문을 보고하였고, AU은 위 보고를 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망설였다. 이에 FO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AU의 태도를 보고하자, 피고인 A은 바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과 관련된 AU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AU은 피고인 A에게 내일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2017. 2. 10. AU이 주재하는 실장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BA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AU이 주무실장인 피고인 A의 의견을 묻자, 피고인 A은 BA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AU은 알겠다고 말한 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실장회의를 마쳤다. 이때 BA, 피고인 A, 피고인 B은 AU이 더 이상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7. 2. 10.경 FO에게 국회나 감사원의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반영하여 공지문을 일부 수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FO는 2017. 2. 13. 새벽에 공지문 수정을 마치고 바로 공지문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보고를 받고 FO에게 공지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FO는 같은 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공지문을 법원행정처 FU국 FT 심의관을 통해 FU국장 CB에게 전달하였으며, CB은 같은 날 FU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게시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관사로 하여금 2017. 3. 5.까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회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연구회에서는 탈퇴함으로써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2017. 3. 6. 이후에는 위 예규의 취지에 따라 가장 먼저 가입한 연구회의 회원 자격은



유지되나 그 뒤에 가입한 연구회에서는 자동 탈퇴되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할 계획임을 알렸다.

6) 이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대하여 관사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BA은 AU에게 보고한 후 2017. 2. 20.경 BE 명의로 법원 내부 전산망에 그 시행을 유보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2017. 2. 13.경부터 2. 20.경까지 위와 같은 공지로 인하여 AE를 탈퇴한 회원이 28명, AE 회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회를 탈퇴한 회원이 FV 등 73명에 이르렀다.

【사실인정의 근거】

「제7의 가」

356(2015. 7. 21. AE: AE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 보고), 357[2015. 8. 17. AE: AE 사법제도 소모임 관련 보고(2)], 399[2015. 8. 19. B: AE(AF)의 방향(대외비)], 402[2015. 8. 19. FW: (AF(AF)) 소모임 구성 알림 및 경과 보고], 458[2015. 6. 19. FX→FP 외 18 메일(제목: 소모임 개설 관련)], 621[커뮤니티 소모임 개설에 관한 검토(대외비)(윤리감사관실, 2015. 7. 8.)], 3385[2015. 8. 19. 18:04 B→BA 외 3명 이메일(제목: AE 관련)], 3388[첨부된 "제1회모임정리(FW).hwp" 파일을 출력한 "AF 1회 모임 정리" 문건], 3391(B 업무일지 2015. 8. 17.자 기재 부분 사본), 3392(B 업무일지 2015. 8. 24.자 기재 부분 사본), 3414[2015. 7. 8. 22:51 FY→B 이메일(제목: 소모임에 관한 검토)], 3415(첨부된 "소모임_개설에_관한_검토.hwp" 파일을 출력한 "커뮤니티 소모임 개설에 관한 검토" 문건), 3416[2015. 7. 9. 08:41 B→FY 이메일(제목: 답장: 소모임에 관한 검토)], 3417[2015. 7. 22. 15:54 B→BA 이메일(제목: 소모임)], 3439[B 일정표(2015. 8. 24.자 부분)], 3440[B 일정표(2015. 8. 25.자 부분)],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제7의 나」

69[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검토(대외비)(2018. 6. 5. 법원행정처)], 70[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대외비)(DL, 2016. 4. 7. 법원행정처)], 519-1(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684(전문분야실무 연구회 지원), 1859[2015년 전문분야연구회 1차 예산 배정(안)], 303(FS 검찰 진술조서)

「제7의 다」

1) 47[2015. 8. 24. AI실: AF 대응방안(대외비)], 403[2015. 9. 15. B: AE AF 관련 (3)], 3360[2015. 8. 23. 13:55 BA→FZ 이메일(제목: AE 관련)], 3366[2015. 8. 23. 16:51 BA→FZ 이메일(제목: 신속한 고견 부탁)], 3367[2015. 8. 23. 19:03 FZ→BA 이메일(제목: 답장: 신속한 고견 부탁)], 3368(첨부된 "최근 이슈에 대한 의견.hwp" 파일을 출력한 "1. AE 내 소모임 관련" 문건), 3369[2015. 8. 24. 03:54 BA→FZ 이메일(제목: 회신: 답장: 신속한 고견 부탁)],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



인신문조서 2회), 3547(A BF 증인신문조서 3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2) 49[2016. 2. 24. AI실: FN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대외비)], 50[2016. 3. 28. AI실: FN 위원 후보자 검토(대외비)], 67[AE 대응방안(GA, GB, 2016. 3. 10. 인사총괄 심의관실)], 68[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대외비)(DL, 2016. 3. 25. 법원행정처)], 526(2015. 8. 31. 법원행정처: 미국 제도에서 착안한 사법행정 관련 개선방안 보고), 527(2015. 9. 15. AI실: FN 설립 TF 구성 및 운영 계획), 528(2015. 9. 25. FN 설립 TF: FN 설립 TF 키오프 미팅 결과), 529(2015. 12. 8. 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제도화를 위한 의견 수렴), 530(2015. 12. 22. AI실: FN 설립 관련 향후 추진 계획), 531[2016. 1. 28. 자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안)], 532[2016. 2. 2. AI실: FN 추진 일정 검토(대외비)], 533[2016. 2. 5. 법원행정처: FN 구성·운영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 방향 검토(대외비)], 534(2016. 4. 12. 통합실무지원단: FN 위촉식 논의 내용 정리), 535(2016. 4. 12. 통합실무지원단: FN 위촉식 요구사항 검토), 677[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초안)(2016. 3. 8.)], 741[FM 판사 건의문 검토(대외비)(FO, 2016. 2. 2.)], 902[2016. 3. 25.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편방안)], 904[2016. 3. 28.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수정본 + 미술품 관련 자료들)], 3413(법원 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받은 'FO 제출 참고자료' 중 포스트잇 사본), 3430[2016. 2. 1. 17:12 FM→B 이메일(제목: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3431(첨부된 "법관의_사법행정참여_제도화에_관한_건의문.hwp" 파일을 출력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문건), 3432[2016. 3. 8. 14:51 B→GA 이메일(제목: AE 명단)], 3463[B 업무일지(2016. 3. 2.자 부분)], 3464[B 업무일지(2016. 3. 9.자 부분)],



3465[B 업무일지(2016. 3. 16.자 부분)], 3553[2016. 3. 8. 18:14 BA→GA, FO 이메일 (제목: 자료송부)], 3554[위 이메일에 첨부된 '(160308)전문분야연구회구조개편방안 (FO).hwp' 파일을 출력한 '전문분야연구회 구조 개편 방안' 보고서], 3475(FO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77(FO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0(FO BG 증인신문조서),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 3523(G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24(G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14(GB BG 증인신문조서), 3605(HN BG 증인신문조서)

3) 68[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대외비)(DL, 2016. 3. 25. 법원행정처)], 902[2016. 3. 25.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편방안)], 904[2016. 3. 28. 이메일(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개선방안 수정본 + 미술품 관련 자료들)], 907[2016. 4. 8. 이메일 (제목: Fw: 전문분야연구회 및 AE 관련)], 910[2016. 5. 13. 이메일(제목: 전달: HK비서관 교체 소식 등)], 3463[B 업무일지(2016. 3. 2.자 부분)], 3464[B 업무일지(2016. 3. 9. 자 부분)], 3465[B 업무일지(2016. 3. 16.자 부분)],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

4) 3435[2016. 4. 12. 17:35 B→BA 이메일(제목: AF)], 3436[첨부된 "(060412)AFFP 등.hwp" 파일을 출력한 "AF(AE) 논의 보고" 문건],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제7의 라」

1) 363[2017. 1. 16. B 추정: AE운영위원회 경과(대외비)], 3472[AF 관련 공동학술



대회(1)], 3473[AF 공동학술대회 대책(2)], 3453[B 일정표(2017. 1. 3., 5.자 부분)], 3454[B 일정표(2017. 1. 10., 11.자 부분)], 3455[B 일정표(2017. 1. 12., 15., 16., 17.자 부분)], 3466[B 업무일지(2016. 12. 26.자 부분)], 3467[B 업무일지(2017. 1. 11.자 부분)],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2) 2[추가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2018. 1. 22.)], 9(2018. 5. 25.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 363[2017. 1. 16. B 추정: AE운영위원회 경과(대외비)], 3472[AF 관련 공동학술대회(1)], 3473[AF 공동학술대회 대책(2)], 303(FS 검찰 진술조서), 304(진술인 제출 진술표)

3) 71[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대내외비)(DL, 2017. 1. 24.)], 363[2017. 1. 16. B 추정: AE운영위원회 경과(대외비)], 3455[B 일정표(2017. 1. 12., 15., 16., 17.자 부분)], 3456[B 일정표(2017. 1. 23.자 부분)], 3457[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8[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 3561(FS 통화 상세 내역서), 3562(B 통화내역),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483(BP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9(BP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 303(FS 검찰 진술조서), 304(진술인 제출 진술표),



2778(AU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4) 71[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대내외비)(DL, 2017. 1. 24.)], 3457[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9[B 업무일지(2017. 1. 26.자 부분)],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483(BP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9(BP BF 증인신문조서 2회),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 3475(FO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77(FO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0(FO BG 증인신문조서)

[공소장에는 위 3), 4) 부분과 관련하여 "AO는 2017. 1.경 BA에게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도 'AE 문제는 내 입기 중에 정리할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AF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E 및 공동학술대회에 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U과 BA은 그 무렵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위 3) 부분 관련), "DL 심의관이 2017. 1. 24.경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뒤 BA에게 보고하자, BA은 이를 AU, AO에게 순차로 보고하였으며"(위 4) 부분 관련), "AE 운영위원회가 2017. 1. 23.경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의결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AU, BA과 함께 AO의 지시에 따라 2017. 1. 26.경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AE와 AF의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시킬 의도로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공지글은 AI실



심의관 FO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AO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위 4) 부분 관련)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공소장 기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상 사항이 증거를 사려 깊게 살펴 사실인정을 해야 하는 쟁점이다. 즉 ① AO가 피고인 B에게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AF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3) 부분 관련), ② AO가 BA에게 AE 및 AF와 관련하여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 말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3) 부분 관련), ③ AU와 BA은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3) 부분 관련), ④ BA은 DL이 작성한 2017. 1. 24.자 문건을 AU, AO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는지, 보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위 4) 부분 관련), ⑤ 피고인 A, 피고인 B이 AU, BA과 함께 AO의 지시에 따라 2017. 1. 26.경 AZ주재 실장회의에서 AE와 AF의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시킬 의도로 일용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공지글은 AI실 심의관 FO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AO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위 4) 부분 관련) 여부가 쟁점이다. 시간적 순서에는 역행하나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시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쟁점 ⑤가 제일 관건이 되는 쟁점이고, 나머지 쟁점에 관한 사실인정이 모두 쟁점 ⑤에 관한 사실인정과 논리칙과 경험칙상 모순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쟁점 ⑤부터 살펴보고 나머지 쟁점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쟁점 ⑤(위 4)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로 3457(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9(B 업무일지(2017. 1. 26.자 부분))가 있는데, 여기에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에 비추어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시행 경위에 관하여 가장 신빙할 만한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483(BP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9(BP BF 증인신문조서 2회)를 더하여 이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BA이 2017. 1. 26.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첫째, 아래 5) 부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5) 부분 인정사실과 같이 AU은 2017. 2. 9. FO가 작성한 공지문을 보고 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망설였고, 피고인 A에게 내일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논의하자고까지 말하였는바, 이러한 사실과 함께 공소장 기재와 같이, AU이 2017. 1. 26.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공지문은 AI실 심의관 FO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상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3457(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9(B 업무일지(2017. 1. 26.자 부분)),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75(FO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77(FO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0(FO BG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AU이 아닌 BA이 피고인 B에게 AI실 심의관 FO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며 피고인 B이 이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쟁점 ①(위 3)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3456(B 일정표(2017. 1. 23.자 부분)), 3468(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AO가 피고인 B 으로부터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456(B 일정표(2017. 1. 23.자 부분)), 3468(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에,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보고 경위 및 내용과 AE 운영위원회가 2017. 1. 23.경 공동학술대회를 3. 25.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을 더하여, 이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AO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시기는 공동학술대회의 3월 개최가 최종 결정된 날인 2017. 1. 23.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②(위 3)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에 의하면 AO가 B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증거에 의하면 AO가 피고인 B 이외에 BA으로부터도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BA의 보고 경위 및 내용에, AE 운영위원회가 2017. 1. 23.경 공동학술대회를 3. 25.에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한 사실을 더하여, 이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AO가 B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시기도, AO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



지로 말한 시기와 근접한 시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③(위 3)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본다. AU이 2017. 1.경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이 법원이 앞서 쟁점 ⑤와 관련하여 인정한, AU이 아니라 BA이 독자적으로 2017. 1. 26.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및 AU이 2017. 2. 9. FO가 작성한 공지문을 보고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망설였고, 피고인 A에게 내일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논의하자고까지 말한 사실과 경험칙상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U이 2017. 1.경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3456(B 일정표(2017. 1. 23.자 부분)), 3457(B 일정표(2017. 1. 24., 26.자 부분)), 3468(B 업무일지(2017. 1. 23. - 25.자 부분)), 3561(FS 통화 상세 내역서), 3562(B 통화내역),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03(FS 검찰 진술조서), 304(진술인 제출 진술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FS에게 위 3) 부분과 같이 요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를 AU이나 BA의 지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차라리 피고인 B이 AO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 ④(위 4) 부분 관련)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쟁점 ⑤ 중 BA이 AO의 지시에 따라 2016. 1. 26.경 일응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AO에게 보고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A이 DL이 작성한 2017. 1. 24.자 문건을 AU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3479(DL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1(DL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1(DL BG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BA은 위 문건 작성을 지시할 당시 그 작성을 시급하게 여겼던 사실, DL은 위 문건 작성에 앞서 피고인 B으로부터 AO의 '후임 AS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위 문건의 작성 경위에, 위 문건의 작성을 둘러싼 전후 사정, 즉 이 법원이 앞서 쟁점 ①, ②, ⑤와 관련하여 인정한 사실과 같이 AO가 2017. 1. 23.경에 한 말이 위 문건 작성의 계기가 되었고, 위 문건 작성 이후인 2017. 1. 26.경 BA이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결정한 사실에, BA은 스스로 2017. 1. 중순경 그때까지의 경과를 접하고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AU에게 위와 같은 결정 내용을 보고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돌연 2017. 1. 26.경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결정하였는바, AO의 BA에 대한 지시 이외에 이러한 경과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BA의 AO에 대한 위 문건 보고 사실 및 BA이 AO의 지시에 따라 2016. 1. 26.경 일용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AO에게 보고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 4) 부분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부분과 관련된 공소장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다.]

5) 445[2017. 2. 13.자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게시글(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 731[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대내외비)(DL, 2017. 1. 24.) 및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 2058[2017. 2. 6. FO→FT(제목: (대외비)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 2059[2017. 2. 6. FT→FO(제목: 답장: (대외비)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 2060[2017. 2. 13. FO→FT(제목: (중요) 의견 요청)], 2061[2017. 2. 13. FT→FO(제목: 전체회신: (중요) 의견 요청)], 2062[2017. 2. 13. FO→FT(제목: 제목이 없습니다)(첨부: 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말씀+2.hwp, 커뮤니티 탈퇴 방법 안내.hwp)], 2063[2017. 2. 13. FT→FO(제목: 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관련)], 2064[2017. 2. 13. CB→FT(제목: 전체회신: 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관련)], 2065(2017. 2. 6. - 2017. 2. 13. FT→GC 전문분야연구회 커뮤니티 관련 이메일), 3400[2017. 2. 7. 17:29 FO⇒B 이메일(제목: (FU국 의견 반영한 수정본)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 3401[위 이메일에 첨부된 '(170207)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1(FU국 의견 반영).hwp' 파일 출력물], 3402[2017. 2. 12. 19:04 FO ⇒B 이메일(제목: (수정본) 답장: 커뮤니티 공지문 관련)], 3403[위 이메일에 첨부된 '(170212)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말씀+2.hwp' 파일 출력물], 3404[위 이메일에 첨부된 '커뮤니티 탈퇴 방법 안내.hwp' 파일 출력물], 3405[2017. 2. 13. 02:50 FO⇒B 이메일(제목: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재수정본))], 3406[위 이메일에 첨부된 '(170213)중복가입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말씀+2.hwp' 파일 출력물], 3407[위 이메일에 첨부된 '커뮤니티 탈퇴 방법 안내.hwp' 파일 출력물], 3408[위 이메일에 첨부된 '(170213)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공지 관련 점검사항+2(전문재판부 추가).hwp' 파일 출력물], 3437[2017. 2. 11. 17:51 B→



BA(참조: A, BP, EZ) 이메일(제목: 커뮤니티 공지문), 3438[첨부된 "(170210)중복가입 전문분야연구회탈퇴등에관한안내 말씀+1.hwp" 파일을 출력한 "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 문건], 3458[B 일정표(2017. 2. 3., 6.자 부분)], 3459[B 일정표(2017. 2. 7., 10.자 부분)], 3460[B 일정표(2017. 2. 13.자 부분)], 3470[B 업무일지(2017. 2. 10.자 부분)],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1(B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33(B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 3608(B BG 증인신문조서 1회), 3609(B BG 증인신문조서 2회), 3610(B BG 증인신문조서 3회),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6(A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3607(A BG 증인신문조서),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483(BP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89(BP BF 증인신문조서 2회), 3475(FO BF 증인신문조서 1회), 3477(FO BF 증인신문조서 2회), 3600(FO BG 증인신문조서), 3492(FT BF 증인신문조서), 2778(AU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6) 446(2017. 2. 20.자 중복가입 해소조치 유보글), 447(중복가입 해소조치 회원 증감 현황), 2506[2017. 2. 21. GC→FT 등 이메일(제목: 전문분야 커뮤니티 탈퇴 현황 보내드립니다)], 2507[2017. 2. 21. GD→GC 이메일(제목: 전문분야연구회 탈퇴목록)], 2508(엑셀파일 비실명화본)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9항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8.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가.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2016. 7. 8.경 GG지방법원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관련 홍보업무 비용을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GH당 소속 GE, GF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자 GG지방법원 기획법관 GI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보고받았고, 2016. 7. 28.경 위 의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자 AI실 심의관 FO를 통해 GI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파일과 함께 보고받았다.

한편 GH당 사무부총장 GJ은 2016. 7. 15.경 GG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혐의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GE, GF 의원은 2016. 8. 10.경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²⁰⁾.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 GJ이 보석 청구를 한 이후부터 GH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서 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GJ의 보석이 가능한지, GE, GF 의원의 선고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문의를 받게 되자, GI 판사를 통해 위 사건 담당 재판부(GK부)의 재판진행 계획, 보석과 유무죄 관련 심증을 파악하여 두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 사실

1) 피고인 A은 2016. 10. 25. 13:45경 코트넷 사건 검색을 통해 위 사건들의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한 다음, 전화로 GI에게 '향후 재판진행 계획에 대하여 주심 판사나 재판

20) GG지방법원 GL, GM(병합), 피고인 GJ, GE, GF 등



부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느냐, GH당 당직자인 GJ에 대한 보석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물어 향후 재판진행 계획과 보석 허용 여부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이에 따라 GI은 주심 판사인 GN로부터 향후 재판진행 계획과 1심 판결 선고시 GJ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결정할 예정으로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이를 보고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28. 09:20경 GI에게 전화로 '변경된 진행 사항이나 주심 판사로부터 들은 게 있느냐,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하여 GE, GF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4) 이에 GI은 GN 판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GN로부터 '피고인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심증과 예상 선고기일(2017. 1. 11.) 등을 파악한 후 같은 날 09:53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이를 보고하였다.

【사실인정의 근거²¹⁾】

「제8의 가」

1602[2016. 7. 8. GI→GO 이메일(제목: (보안유지) GE, GF에 대한 청구서 사본)], 1603[2016. 7. 29. FO→GP 이메일(제목: 답장: (GG지법 GH당 영장 판례))], 1604[구속영장 청구서 스캔파일 출력물(GF)], 1605[구속영장청구서 스캔파일 출력물(GE)], 증인 GI의 법정 진술

21) 이하 제8항의 증거순번은 모두 피고인 A의 순번이다.



「제8의 나」

1) 1905[2016. 10. 25. 14:10 GI→A 이메일(제목: GH당 사건 관련)], 1906[(161025) 관련내용보고], 1907(2016. 10. 25.자 A과 GI의 GH당 사건 검색 내역), 증인 GI의 법정 진술

2) 1905[2016. 10. 25. 14:10 GI→A 이메일(제목: GH당 사건 관련)], 1906[(161025) 관련내용보고], 1907(2016. 10. 25.자 A과 GI의 GH당 사건 검색 내역), 증인 GI의 법정 진술, 954(G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3) 1902[GI의 GH당 사건(GG지법 GL) 검색 내역(47회)], 1908[2016. 11. 28. 09:53 GI→A 이메일(제목: GH당 사건 관련)], 증인 GI의 법정진술

[위 1), 3) 해당 부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I에게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오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단지 GI의 의견을 물어본 것뿐이어서 GI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더 나아가 ① GI이 피고인 A로부터 지시받기 이전에도 이미 재판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② 2016. 10. 25.에는 피고인 A이 GI에게 지시하였다는 시점과 GI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아서 GI이 GN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미 파악해두었던 자료로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2016. 11. 28.은 공판기일인 데다가 아직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도 마쳐지지 않은 시점이어서 GI이 GN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파악한 내용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I이 피고인 A과 별개로 BA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GN의 심증을 파악하였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GI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보석의 허용 여부 및 본안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A이 GI에게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GI이 당시 12년차 판사이자 기획법관 및 공보관으로서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재판부로부터 심증을 파악하라는 지시는 법관들 사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부적절한 것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GI이 피고인 A의 지시를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고민한 끝에 지시를 이행하였던 점, 보석에 관하여는 심문기일 외에는 특별한 절차가 없어서 절차적인 측면보다는 보석의 허용 여부가 중요하고 GH당 의원들도 피고인 A에게 GI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던 점(A 1416(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2016. 11. 28.자 지시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2016. 10. 25.에 이미 GI으로부터 재판부의 보석에 관한 심증을 보고받은 바 있어 GI이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재차 GI에게 'GH당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GI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GI에게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하여도 살펴건대, 판사로서 선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을 GI이 피고인 A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증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GI은 검찰에서 'BA이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대해 단지 법서비스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일선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거나 '피고인 A이 사전에 BA에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후적으로는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A 1955(GI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특별히 BA을 감싸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다. 더욱이 ① GI은 기획법관이자 공보관으로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GH당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파악해둘 필요가 있었고, ② GI이 2016. 10. 25.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보이는 13:49경부터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보낸 14:10경까지 약 21분간의 시간은 아주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GI이 파악하여 보고한 내용의 분량, 공보관이 재판에 관하여 재판부에 상세하게 물어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부족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으며(GI은 2016. 11. 28.에도 09:24경 및 09:48경 사건검색을 하였는바, 이 때에도 GI이 GN로부터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24분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6. 11. 28.은 담당 재판부의 공판 기일이었으나 GI은 GN로부터 관련내용을 파악한 후 09:53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였으므로 10:00부터 공판기일이라는 사정 자체가 인정사실과 배치되지는 않고, 아직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쳐지지 않은 시점이기는 하였으나 GI이 그 무렵 GN에게 GH당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GI과 GN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기한 사정들이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GI이 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에까지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1908[2016. 11. 28. 09:53 GI→A 이메일(제목: GH당 사건 관련)], 증인 GI의 법정진술, 954(GN 검찰 진술조서)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

1.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 대한 행위

가.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

1) 법·제도의 변화와 과거의 법·제도

많은 법률이 부칙조항을 두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 법·제도의 변화는 일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특히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새로운 법·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 과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게 된다. 법을 해석·적용하는 법원은 위와 같은 변화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법원은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의 기간 동안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핌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를 관찰하여 이를 해석에 반영할 것이고,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과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면 위와 같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법·제도의 중요 부분을 기준으로 어떠한 행위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필 것이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해석 방법이 대법원이 어떤 행위가 법해석상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살피는 방법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로 확립한 법·제도의 종합적·실질적 관찰의 일환이라고 본다.

2) 서로 충돌할 수 있는 헌법상 원칙들

헌법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후(헌법 제27조, 제101조 제1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하고(헌법 제103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헌법 제106조 제1항). 위와 같이 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귀속에 관한 헌법 조항과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헌법 조항 사이에서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독립을 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배치는 헌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다.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판사의 인사에 관하여 판사를 정년까지 또는 종신토록 근무하게 하면서 판사의 소속 법원이나 사무분담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택할 수 있으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은 위와 같은 제도를 택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헌법 제10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판사의 보직을 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 제3항은 대법원장이 근무성과 자질 평정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은 판사를 연임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위와 같은 연임심사 제도 및 근무성과 자질 평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10년간 살펴보았음에도 근무성과 자질이 평균적 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판사라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더는 그 판사가 판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판사 연임심사권을 부여하였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근무성과 자질에 맞게 판사의 근무법원과 사무분담을 정할 수 있도록 판사 인사권을 부여하였다.



위와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하여 법원에 사법권이 부여된 점,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은 사법권의 정의(定義)에서 직접 유래하기에 헌법 제101조에 이어 헌법 제103조에서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연임심사권,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권,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관의 신분 보장이 요구되기에 재판의 독립을 정한 헌법 제103조에 이어 헌법 제106조에서 법관의 신분 보장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면서 연임심사를 받도록 한 헌법 제105조 제3항의 뒤에 배치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헌법과 법률은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중요하게 여겼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으며, 재판의 독립은 그에 버금가게 중요하다고 여겼다고 본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이 입법자가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중요하게 여겼고, 재판의 독립을 그에 버금가게 중요하게 여겼다고 보지만,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지 재판의 독립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아니다.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다. 형사소송에서의 검사까지 포함하여 소송의 당사자는 증거의 취사(取捨)와 관련된 주장까지도 포함하여 서로 대립되는 주장 중 어느 하나를 주장할 뿐인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로부터 독립한 제3자, 즉 판사의 재판이 필요하고, 재판의 독립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소송의 당사자 일방의 편에 서서 하는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다. 나아가 재판이란 증거를 취사하여 신빙성 있는 증거를 기초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여기에 법을 해석·적용하는 것인 만큼, 재판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맞는 결론을 내리는



것, 즉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재판의 소송관계인과 담당 판사 이외의 제3자는 애당초 해당 재판의 증거를 접하기 어렵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기에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릴 기초 자체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에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해당 재판의 판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나 아예 해당 재판의 판사가 제3자가 마련한 결론에 따르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역시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중요하기에 해당 재판의 소송관계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재판이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은 서로 충돌될 수 있다. 사실 판사는 인력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해야 하고, 판사 1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적지 않은 수의 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문 작성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이에 판사는 해당 사건의 성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사건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시간과 노력을 배치하고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 전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가령 형사소송법은 제266조의5에서 재판장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66조의12에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 이내에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완료하고 법원은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쟁점 및 증거의 정리 후 진행되는 공판절차에 관하여 제267조의2에서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18조의4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 1명이 실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의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사자나 판사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판사는 하루에 하나의 사건의 재판만을 진행하면서 그 사건의 심리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한 날 바로 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사건의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하면 매일 계속 개정하면서 그 사건의 심리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한 날 바로 그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다른 사건의 심리로 넘어가는 방식, 즉 사건을 하나씩 차례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하루에 여러 사건의 재판을 시차를 두어 진행하고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는 동상한 달 뒤로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해당 사건의 성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불가피한 때에 한하여 특정한 사건을 선택하여 매일 계속 개정하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방식, 즉 사건별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여러 사건을 처리하면서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앞서 보았듯이 인력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해야 하고 판사 1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적지 않은 수의 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문 작성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불가피하기도 하다.

그런데 판사가 위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체 사건을 관리하면서 해당



사건의 성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맞게 적시에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였거나 나태한 판사가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다가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누구도 해당 판사에게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되었음을 지적할 수 없다고 본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다.

또한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도 서로 충돌될 수 있다. 사실 판사는 특정한 법원에서 특정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재판사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보되거나 그 사무분담이 변경된다.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는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까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누구도 해당 판사에게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고 본다면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다.

물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심급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을 그 상급심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였거나 나태한 판사가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과 같이, 자신이 배당받은 전체 사건을 현저하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미숙하거나 나태한 판사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심급 제도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한다. 즉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



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이 심급 제도에 의하여 특정 사건에 관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이 바로잡힌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그와 같이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까지 한 해당 판사는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그대로 재판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가 반드시 상소심 결과를 매번 확인하여 스스로를 단련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심급 제도에 불구하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위와 같은 충돌의 현실화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입법자는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였거나 나태한 법조인이 애당초 판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판사가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수 있으나, 과거 우리 입법자는 법·제도를 위와 같이 마련하는 대신 다음에서 보듯이, 직업적으로 그다지 단련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만큼 아직 나태함에는 그다지 물들지 않은 사람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이라는 선발 시험을 거쳐 판사로 선발·임명될 수 있도록 한 후, 그가 판사로서 경력을 쌓아 나가면서 단련 과정을 거쳐 숙련된 판사가 되도록 하는 한편, 그가 단련을 받는 과정에서 매년 근무성과 자질을 평가받도록 하고, 보직을 통하여 경쟁을 경험하도록 하며, 동료 판사의 경험을 전수받아 자신의 사건 처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10년간의 근무성과 자질 평정을 기초로 연임심사를 받도록 하여 단련 과정을 거쳤음에도 숙련된 판사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경우 더는 판사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단련 과정을 거쳐 숙련된 판사 중 일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3)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다음에서 보는 것은 입법자가 예정한 것으로서 '제도'에 해당하는 동시에,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이 사건 증거기록에 있는 전·현직 판사 대부분의 공통된 진술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성격에 비추어 일일이 증거를 거시하지 않았다.

직업적으로 그다지 단련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만큼 아직 나태함에는 그다지 물들지 않은 사람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시험이라는 선발 시험을 거쳐 판사로 선발·임명되면 그는 지방법원 합의부의 합의부원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 나는 재판장과 함께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의 직급은 판사이고, 위 재판장의 직급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인데,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응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며 직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과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 변론이 종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심증을 형성하는 한편,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 증인신문 방법과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나간다. 또한 그는 합의 과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을 배워나가는 한편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준 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위 판결문 초고에 관한 의견을 전달받음으로써 판결문 작성 방법을 배워나간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위와 같이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단련되도록 하는 한편, 그와 함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검토하며,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위와 같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를 거쳐 판사는 단독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도 그의 직급은 역시 판사이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며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자신이 배당받은 사건 전체를 관리하면서 처리해나가며, 그 과정에서 낮선 사무분담이나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경우 동료 판사에게 물어 그의 과거의 경험이나 그에 기초한 의견을 전수받거나 법원행정처가 간행·배포한 실무제요나 업무편람을 참조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는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그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배당받은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여 처리하는지 통계를 활용하여 살펴보고 지방법원 항소부 판사들로부터 그의 사건 처리가 어떠하였는지 의견을 들어 지방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위와 같은 단독판사 시기를 거쳐 판사는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그는 고등법원 합의부의 합의부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시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재판장과 함께 근무하게 된다. 이때도 그의 직급은 역시 판사이다. 그는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며 직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과 심리가 충분히 된 경우 변론이 종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심증을 형성하는 한편,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 증인신문 방법과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다시 배운다. 또한 그는 합의 과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을 다시 배우는 한편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도 다시 배우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여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준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위 판결문 초고에 관한 의견을 전달



받음으로써 판결문 작성 방법을 다시 배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위와 같이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단련되도록 하는 한편, 그와 함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무성과 자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등법원장 및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검토하며, 고등법원장이 그의 근무성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이로써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되기 위한 단련을 마친다.

위와 같은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판사 중 일부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겸임하게 된다. 판사 중 일부만 위와 같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단독판사나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위와 같은 보직을 선발이라고 여기게 되어 이를 위한 경쟁을 경험하고 단독판사 시기나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나태하게 재판을 하지 않도록 자극받게 된다.

위와 같은 시기를 모두 거쳐 판사는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의 직급은 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그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그와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합의부원, 즉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근무하게 된다. 그는 재판장으로서 기일에서 소송을 지휘하고 석명권을 행사하며 직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을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보여주면서,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 증인신문 방법과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전수한다. 또한 그는 합의 과정을 통하여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을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전수하는 한편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도 전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작성한 판결문 초고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전함으로써 판결문 작성 방법을 전수한다.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그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배당받은 사건을



어떻게 관리하여 처리하는지 통계를 활용하여 살펴보며 고등법원 항소부 판사들로부터 그의 사건 처리가 어떠하였는지 의견을 들어 지방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위와 같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를 거쳐 판사 중 일부는 고등법원 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의 직급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이다. 그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와 마찬가지로 다시 그와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합의부원, 즉 고등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근무하게 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와 마찬가지로 소송지휘와 석명권 행사, 직권 증인신문 방법과 사건을 관리하는 방법,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판결문 작성 방법을 전수한다. 고등법원장은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일부만 위와 같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되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보직을 승진이라고 여기게 되어 이를 위한 경쟁을 경험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에 나태하게 재판을 하지 않도록 자극받게 되나, 대부분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이를 승진이라고 여긴 나머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되지 못한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 일부는 자신이 승진에서 탈락하였다고 여겨 판사로 근무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

위와 같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기를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부분은 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때 그의 직급은 지방법원장이다. 그는 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 단독판사,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요컨대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판사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게 하고, 단독판사 시기에 지방법원장의 근무성과 자질 평정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임을 의식하면서 경쟁적으로 일하게 하여, 최대한 많은 단독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하며,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에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게 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준비를 마치게 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에 지방법원장의 근무성과 자질 평정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의식하면서 경쟁적으로 일하게 하여, 최대한 많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대부분의 단독판사나 고등법원 배석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 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임 발령을 선발이라고 여기도록 하고 대부분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승진이라고 여기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경쟁 상황을 조성하였다. 즉 과거에는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도, 근무성과 자질 평정, 경쟁, 보임을 수단으로 삼아 판사가 지속적으로 단련되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4)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

가) 근거

법원조직법은 제9조 제1항에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대법원장이 이를 총괄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에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고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에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포함시키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



여 정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이하 '법원사무기구 규칙'이라고만 한다)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종래의 법원사무기구 규칙(2005. 12. 21. 규칙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위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AI실 법무담당관의 사무에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 조사·연구 총괄 및 제정 개폐를 포함시켰고, 사법정책담당관의 사무에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포함시켰으며, 송무국에 민사과, 형사과, 특별과를 두어 그 사무에 각각 민사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형사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행정, 특허,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 소송·심판·조정 에 관한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다가 법원사무기구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AI실 GQ심의관의 사무에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 조사·연구 총괄 및 제정 개폐를 포함시켰고(2015. 12. 21. 규칙 제1968호로 개정된 것), BS실 GR심의관의 사무에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포함시켰으며(2015. 12. 21. 규칙 제1968호로 개정된 것. 다만 그 후 위 심의관 명칭은 GS심의관, GT심의관, GU심의관, GS심의관으로 변경되었다), BS실에 GV심의관, GW심의관, GX심의관을 두어 GV심의관의 사무에 민사, 행정, 특허와 관련하여, GW심의관의 사무에 형사, 선거와 관련하여, GX심의관의 사무에 가사, 소년·가정보호와 관련하여 각각 재판제도의 연구,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재판예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실무제요 및 각종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2009. 1. 9. 규칙 제2201호로 개정된 것), BS실에 GY심의관을 두어 그 사무에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2009. 1. 9. 규칙 제2201호로 개정된 것). 그 후 다시 법원사무기구 규칙이 개정되어 이 사건 무렵인 2014. 12.경부터 2017. 2.경



까지 위와 마찬가지로 AI실 GQ심의관의 사무에 법령, 규칙, 내규, 예규의 조사·연구 총괄 및 제정 개폐가 포함되어 있고, 2011. 10. 31. 규칙 제2367호로 BS실을 DB실과 BS실로 분리하면서 사법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는 BS실 GS심의관의 사무에 그대로 두고, DB실 GZ심의관의 사무에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에 관한, 재판제도와 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재판예규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실무제요 및 각종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요컨대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는, 담당 실·국이 바뀐 적이 있기는 하나 줄곧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에 속했다. 위 각 사무는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한 법원사무기구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사무분장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의 구체화에 해당한다.

한편 재판사무에는 사실인정, 인정사실에 대한 헌법·법령의 해석·적용, 이를 위한 모든 실체적 또는 절차적 판단 영역(이하 '핵심영역'이라고 한다)에 속하는 재판사무가 있고, 그 밖의 영역(이하 '비핵심영역'이라고 한다)에 속하는 재판사무가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은, 비록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기는 하나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것이고,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은 그 명칭에서 보듯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의 실무 처리 사례를 망라한 것이다. 또한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는 사실



인정이나 판단 영역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핵심 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것은 아니나, 일정한 범위의 사건을 전제로 한 현황 조사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주체·내용·목적·효과

(1)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는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 방안 수립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비록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기는 하나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 사무를 관장함으로써 비록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중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의 실무 처리 사례를 망라하는 사무도 관장하고 있다.

(2) 위 각 사무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예규의 제·개정은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정하는 등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도 심리 모델이나 절차 진행 매뉴얼 등과 같이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역시 그것이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도 구체적 사건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에 관한 실무 처리 사례를 망라한 것일 뿐 그것이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위 각 사무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특정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없다.

(3) 위 각 사무는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 각 사무를 판사가 처한 현실과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과 함께



살펴보면 위와 같은 목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실 판사는 인력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해야 하고, 판사 1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적지 않은 수의 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문 작성이 결코 쉽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아래 판사 1명이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전체 사건을 관리하면서 해당 사건의 성질과 재판의 진행 경과에 맞게 적시에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결코 쉽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판사 1명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동시에,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실무 사례를 축적하거나, 종래의 심리 방법에 머물지 않고 심리 방법의 개선까지 도모하여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심리 모델이나 절차 진행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회현실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현실은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보다 빠르게 변화되기에 종래의 심리 방법만으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게 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즉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종래의 심리 방법이 개선될 필요성이 커진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예규를 제·개정하거나 재판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판사들이 이를 참고하게 하였고, 이로써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판사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실 판사는 특정한 법원에서 특정한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재판사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보되거나 그 사무분담이 변경된다.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는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 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을 발간하여 판사들이 이를 참고하게 하였고, 이로써 관련 전



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하는 판사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과거에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는 시기가 지나면 단독판사로 근무하게 되었고, 다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지도를 받는 시기가 지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때 동료 판사에게 물어 그의 과거의 경험이나 그에 기초한 의견을 전수받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을 발간하여 판사들이 이를 참고하게 하였고, 이로써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각 사무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특정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없고,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 각 사무의 수행은 특정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과나 강제력도 미치지 않고,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5) 판사의 인사 사무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 제10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이 판사의 보직을 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2 제3항은 대법원장이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은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은 판사를 연임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



다. 즉 입법자는 위와 같은 연임심사 제도 및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10년간 살펴보았음에도 근무성적과 자질이 평균적 수준보다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판사라면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더는 그 판사가 판사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판사 연임심사권을 부여하였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근무성적과 자질에 맞게 판사의 근무법원과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판사 인사권을 부여하였다.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줄곧 법원행정처가 인사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면서 2009. 1. 9. 규칙 제2201호로 개편한 인사총괄심의관을 특정 실·국장 아래 두지 않음으로써, 인사총괄심의관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순서로 보고를 하거나 결재를 받아, 판사의 임명, 연임심사,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보직, 전보 등 인사 사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6)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가) 근거

(1) 헌법, 법원조직법, 법원사무기구 규칙, 각종 예규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담당 판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그렇기는 하나 이 법원은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면 헌법 제27조와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 법원사무기구 규칙,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의 해석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심급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을 그 상급심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있으나,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되고, 또한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3)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는 과거에 판사 단련 과정을 마련하였고, 법원행정처가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대법원장에게 판사 인사권을 부여하였고, 법원행정처가 판사 인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4) 그렇다고 하여 입법자가 위와 같은 제도로 충분하고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가 아니라고 징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사가 직업적 단련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나태하여 자신의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다가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나,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한 경우, 사건의 처리 시기를 정하거나 실제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해당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고 재판의 독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는 이때 그 판사를 상대로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가 스스로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그가 알 수도 없는 근무성과 자질 평정에는 반영할



수 있고, 그 판사의 인사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갑자기 더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한 재판사무를 맡기지 않을 수 있으며, 그의 10년 근무기간이 채워지길 기다려 그가 연임할 수 없게 할 수는 있다고 보면서도 그 판사를 상대로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불합리하다. 즉 판사의 인사 사무 자체에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판사의 인사 사무가 인정되는 한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물론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중요한데,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이상, 그리고 나태한 판사가 있을 수 있는 이상, 앞서 본 것과 같이 심급 제도나 그 밖에 입법자가 마련한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최대한 적게 일어나도록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의 '존재'가 필요하다.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는, 연임심사권이 실제로 행사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상당한 정도로 미숙함과 나태함에 대한 억지(抑止) 효과를 낼 수 있듯, 그것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상당한 정도로 미숙함과 나태함에 대한 억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6)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제3항에 근거하여 법원행정처의 조직과 사무분장을 정한 것으로서, 법원조직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의 구체화에 해당하는데,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



심영역에 대한 지적에 관하여 아무런 조직도 두지 않고 있고 그 사무분장을 정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사무기구 규칙의 제정 근거는 어디까지나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제3항이고,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이 그 제정 근거가 아니며, 법원사무기구 규칙 그 자체 내용에 의하더라도 가령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의 조정 등 AI실장이 지정한 업무를 기획총괄심의관이 담당하는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 관장사무를 총망라하여 분명하게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이 정한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사무기구 규칙 별표에 열거된 사무가 아니라고 하여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를 포괄적으로 정함으로써, 판사 단련 과정,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 수행, 판사의 인사 사무 수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록 법원사무기구 규칙 별표에 예시된 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사의 인사 사무에 수반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에 의하면, 사건배당 주관자는 위 예규의 선정기준에 따라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을 선정하고 그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하여 일반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 배당상 특례를 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사건배당 주관자로부터 위와 같이 배당상 특례까지 받았음에도, 해당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전혀 처리하지 않고 다른 일반사건만을 계속하여 처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 비록 사건의 처리 시기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배당 주관자는 해당 재판장에게 위와 같은 현저한 처리 지연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위 예규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이 사법행정사무에 속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에 의하면, 재판장은 매년 두 번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사건카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작성을 통하여 사건진행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특정 판사가 자신의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다가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 사법행정권자는 위 판사에게 위와 같은 현저한 처리 지연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위 예규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이 사법행정사무에 속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본다.

(8) 이상의 이유로 이 법원은 헌법 제27조와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과 제19조 제2항, 법원사무기구 규칙,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재일 98-4)의 해석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9) 현재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판사의 인사제도가 크게 변화되고 있어, 판사



단련 과정도 크게 변화되고 있고 조만간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으며, 판사의 인사 사무 중 보임이 갖는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 머지않아 10년 이상 직업적으로 단련된 사람이 판사로 선발·임명될 예정이어서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가 향후에도 남아있게 될지 알 수 없고, 앞서 본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기는 거의 없어졌으며, 고등법원 합의부는 이미 거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시기를 거친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더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지 않고 있어, 앞서 본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기도 없어지고 있다.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부분이 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는 일도 없어지고 있다. 요컨대 과거에는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도, 평정, 경쟁, 보임을 수단으로 삼아 판사가 지속적으로 단련되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였으나, 향후에는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법조인만이 판사로 선발·임명될 예정이고, 보임이라는 보상이 없어져가고 있어 경쟁 상황도 누그러들고 있다. 또한 가정법원과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한 판사가 비교적 장기간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변화 과정 중에 있어 아직까지는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된 법조인이 판사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기에 아직까지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고 있으며,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도 남아있고, 법원행정처의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도 남아있으며, 무엇보다 연임심사,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전보, 사무분담 등 판사의 인사 사무가 남아있다. 즉 현재까지도 과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유지되고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상당 부분 남아있고, 입법자가 이에 대비하여 마련한 제도도 상당 부분 남아있다.



이에 이 법원은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현재까지도 과거의 법·제도의 중요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서, 위와 같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법·제도의 중요 부분을 기준으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폈던 것이다.

나) 주체·내용·효과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바,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7조 제2항에,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는 점을 더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은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7조 제2항, 제3항에,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차장도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을 더하여 법원행정처차장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67조 제3항은 법원행정처차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처차장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2) 이 법원은, 판사가 직업적 단련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나태하여 자신의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배당받은 사건 중 쟁점이 많지 않은 사건 일부만을 골라서 처리하는 것을 거듭하다가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나,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한 경우, 비록 사건의 처리 시기를 정하거나 실제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해당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현저한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현저한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의 지적에 그치고, 이를 벗어나 위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를 판사 인사 시기 등 특정 시점 이전까지 하라거나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등 어떠한 권고를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할 수 없다고 본다.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해당 재판의 판사가 그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정한 헌법 제103조가 요구하는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그것을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갖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그것을 남용하여 일정한 권고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한 경우, 상대방인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는 위 지적권한만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지적권한의



원천이 된 연임심사권,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권, 인사권까지도 업무에 두게 되기 마련이어서 그 판사가 위 권고를 제쳐두고 위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기 마련이다. 이에 이 법원은 위 지적권한은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인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위 판사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본다.

7) 사법행정권

이 법원은 직무권한이라는 용어 자체에 드러나 있듯 권한의 행사와 직무의 수행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관찰한 것인데, 권한의 행사는 행사자의 입장에서 관찰한 것이고, 직무의 수행은 상대방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관찰한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본 후 상대방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행정사무를 관찰하면 직무의 수행의 측면이 부각되므로 이를 사법행정사무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제로 법원조직법도 사법행정사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사법행정사무 담당자의 행위가 문제되고 있어 사법행정사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관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관찰하면 권한의 행사의 측면이 부각되므로 이 법원은 이하에서 사법행정사무라는 용어 대신 같은 의미이되 관찰하는 입장만 달리하여 사법행정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과 그에 관한 행위

1) 주체 관련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



행정처차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에 주목하여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AI실장, AL 상임위원 등은 실령 그 수행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에 따라 그 지적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AI실장, AL 상임위원 등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도 없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2) 내용 관련성

가) 직권의 재량적 남용 및 월권적 남용과 지위 이용

(1)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직권의 재량적 남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문제되고, 위와 같은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는 지위 이용에 불과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 ②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③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 ④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먼저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살펴본 후 이에 관하여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본다.

(2)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그 상대방에게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법리를 관례로 확립하였다. 이 법원은 이때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것'이라고 함은, 일반적 직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직권의 재량적 남용)를 말함은 물론,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말한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직권의 재량적 남용뿐만 아니라 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부분, 즉 '속하는' 부분을 강조하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만을 말한다고 보게 되나, 이 법원은 위와 같이 '속하는' 부분만을 강조하여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련되었다는 부분, 즉 '관하여' 부분을 주목하여 보아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의 사안을 여럿 살펴보았을 때(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289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4168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5693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된 사안이 모두 그 행위가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진 사안인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행해진 사안인 것도 여럿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본래 '남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씀',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인바, 어떠한 행위가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일반적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에 부합한다.

위와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것'이라고 함은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일정한 정도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말한다고 보나, 그 관련성을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지위 이용의 구별이 무의



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은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3)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명백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지적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4)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명백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지적과 권고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종종 지적 그 자체에 일정한 권고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5)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부적절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권고라고 볼 수도 있다. 지적과 권고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때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과 명백한 잘못에 대한 사후 지적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6)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 및 적절한 판단에 대한 권고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과 명백한 잘못에 대한 사후 지적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과 적절한 판단에 대한 권고는 일련의 행위로서 서로 따로 떼어놓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



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나)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한 지적

(1) 구별의 의의

앞서 본 것과 같이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에 특정 사건의 처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일 수 없고, 최대한 많은 판사가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 각 사무의 수행은 특정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적 효과나 강제력도 미칠 수 없어,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즉 위 각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인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위 판사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에 해당한다. 즉 위 지적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

(2) 구별의 실제

사법지원이란 넓게는 재판사무를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일체의 사법행정 작용을 말하는데, 사법행정사무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사법지원은 사법행정사무와 같은 의미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위와 같이 넓은 의미의 사법지원이 아니라, 특정 사건



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및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지적은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법지원'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은 그것이 실제로 행사되는 모습을 볼 때 '직무감독'이라는 사법행정권과 구별되기 어렵고 어떠한 하나의 행위가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의 행사이면서 동시에 '직무감독'이라는 사법행정권의 행사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검사는 사법행정권의 내용을 구별하여 살펴보는 것이 어려운 데다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으로만 정한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항에 기대어 '사법지원'이라는 사법행정권, '직무감독'이라는 사법행정권이 인정되고, 위 두 사법행정권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은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사법행정권 중에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이 포함되기는 하나, 이는 모두 특정 사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수행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없다. 나아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지적하는 권한이 사법행정권 중에 포함되기는 하나, 그 권한은 검사의 주장과 같이 '직무감독'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그리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및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 법원은 헌법, 법원조직법, 법원사무기구 규칙 등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위 지적 및 권고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만을 찾을 수 있었고, 헌법, 법원조직법, 법원사무기구 규칙 등의 명문 규정은 물론 그 해석까지 포함하더라도 위 지적과 관련되어 있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또 다른 사항은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위 두 번째의 경우 그 행위의 내용은 부적절한 판단에 대한 사전 지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부적절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권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의 내용은 법령, 재판예규의 제·개정, 재판제도 개선방안 수립, 실무제요 및 업무편람 발간,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 등인바,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하는 권한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이 서로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이때 직권의 남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위와 같은 사무 수행 권한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으로 상정하고 보더라도 그 행위는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법원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의 구별이 의의가 있다고 볼 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권 행사의 실체에 있어서 그 구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와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주장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은 사법행정권 행사의 실체에 있어서 어느 순간 위 두 가지의 구별이 흐려졌고, 그렇기에 사법행정권자가 어느 순간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그 범위를 넘어 행사하면서도 스스로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여기게 되었으며, 사법행정권자의 위와 같은 인식이 이 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AI실장, AL 상임위원 등이 대법원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도 없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이 법원은, 법원행정처 AI실장, AL 상임위원 등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에 따라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그 지적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없다면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여 직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때 위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피에 있어서 그 지적의 경위, 지적 당시의 상황, 지적의 구체적인 내용, 지적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 그 지적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이 법원은 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본다.

4)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이나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가)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일반적 직권의 귀속에 따라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에 공범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갖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이 위와 같은 권한을 갖지 못하는 AL 상임위원을 거쳐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전달한 경우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행위에 AL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과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직권의 귀속에 따라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에 공범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령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갖는 법원행정처차장이 위와 같은 권한을 갖지 못하는 AL 상임위원을 거치고 다시 DB실 총관심의관을 거쳐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전달한 경우 법원행정처차장의 행위에 AL 상임위원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본다.

라.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고, 법이 공법과 사법으로 갈라지는 데 대응하여,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 즉 공권과 사법상의 권리, 즉 사권으로 구별할 수 있다. '권리'와 구별되는 것으로 '권한'이 있는데, '권한'이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그런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사법상의 권리인지 공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바,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판사의 재판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판사의 재판권은 판사의 '직무 내지 권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본다.

나) 구체화된 재판권의 현실적인 행사방해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이어야 하고,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도4599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의 재판권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하나, 판사의 재판권 행사의 방해를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재판권이 구체화되어 현실적으로 그 재판권의 행사가 방해된 경우이어야 한다.

(2)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재판권은 그가 그 사건을 배당받은 시점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법령상 명백하게 더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8조는 사건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도록 사건배당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14조는 사건배당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판사는 특정 사건을 배당받으면 향후 그 사건을 언제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특정 사건의 처리 시기를 정하는 것은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판사가 특정 사건을 배당받은 그 시점에 바로 그 사건에 관한 재판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

또한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리면 통상 더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게 되나, 예외적으로 법령상 그 사건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판사가 특정 사건에 대하여 결정 또는 판결을 내린 후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 추가로 판단을 내릴지 정하는 것도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판사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법령상 명백하게 더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을 때까지 그 판사의 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존속한다고 본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권의 공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보호법익의 침해는 침해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강학상 위험범이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5도2665 판결 참조).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요컨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강학상 위험범인 동시에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방해라는 결과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때 다음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강학상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과 권고를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를 통한 유도가 있었던 이상 재판권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그러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의 침해는 충분하므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결과 발생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의 결론과 이유가 적절하다면 구체화된 재판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과 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라는 헌법 제103조의 요청에 비추어 이러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강학상 위험범인 동시에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



적인 행사방해라는 결과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 점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의 요청과 함께 재판의 독립의 요청을 정한 헌법 제103조에 비추어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본다.

예컨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그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이를 벗어나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과 권고를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면, 설령 그 결정의 결론과 이유가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그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



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참조). 이에 기초하여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이 또한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데,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을 달리 판단하였다는 의미에서 평가모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대한 행위

가.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

1)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법익들

행정은 능동적·미래지향적인 형성작용이고, 개별적인 사안의 규율과 특정한 계획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입법·사법과 차이가 있다. 행정은 다양한 행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요소, 물적 자원, 설비를 갖춘 행정기구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행정기구들은 체계적인 계통을 이루어 행정조직을 형성한다. 행정조직은 행정임무 수행을 위하여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사법행정조직도 행정조직인 이상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위하여 통일된 계통구



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행정의 영역 내부에서도 법치주의 원리는 실현되어야 하는바, 행정임무 수행이라는 성과를 위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게 되면 행정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되거나 행정의 영역 내부에서 법치주의 원리가 무시될 수 있게 된다. 즉 행정임무 수행이라는 성과를 위한 효율적 운영이라는 법익과 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 또는 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 실현이라는 법익은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이 법원은 사법행정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위와 같은 충돌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대한 행위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을 살펴본다.

2) AZ 또는 BS실장이 GS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

BS실장이 GS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이 법원조직법 제67조 제4항, 제71조 제4항, 법원사무기구 규칙에 의하여 GS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BS실장의 상급자인 AZ이 GS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도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GS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3) BE이 HA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

DB실장이 HA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법원조직법 제67조 제4항, 제71조 제4항, 법원사무기구 규칙에 의하여 HA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DB실장의 상급자인 BE이 HA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도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여 HA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4)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종래에는 사법행정과 법원운영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이 AI실 기획담당관의 사무에 속했으나, 법원사무기구 규칙이 개정되어 이 사건 무렵인 2014. 12.경부터 2017. 2.경까지는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이 AI실 HB심의관의 사무에 속했다. 이에 따라 AI실장이 HB심의관에게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은 HB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AI실장의 상급자인 BE이 HB심의관에게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도 HB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과 그에 관한 행위

1) 주체 관련성

가) AL 상임위원이 GS심의관에게 요청한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BS실장이 GS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GS 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BS실장이 GS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이 문제된 것이 아니라 AL 상임위원이 GS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이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조직법은 AL에 관해서 법원행정처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L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는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 한편 AS는 판사의 보직을 행할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 대는 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법원은 AS이 판사에게 별도의 보직에 임하도록 명하는 것까지는 아닌 한도에서 일정한 직무의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AS이 AL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이하 'AL 상임위원 판사'라고만 한다)에게 AL 상임위원의 직무와는 별도로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



런 업무의 지원을 지시함으로써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할 권한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BS실장의 상급자인 AZ은 AS이 명한, AL 상임위원 판사의 별도의 직무수행, 즉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BS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GS심의관(이하 '헌법 담당 GS심의관'이라고만 한다)으로 하여금 그에게 협조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이 법원은 AS으로부터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원을 지시받은 AL 상임위원 판사가, AZ으로부터 위 판사에게 협조하도록 지시받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은 AL 상임위원 판사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나) AL 상임위원 판사가 HA심의관에게 전달한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BE이 HA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HA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이에 따라 AL 상임위원 판사가 HA심의관에게 전달한, BE의 지시 사항도 BE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AL 상임위원 판사가 AS 또는 AZ 또는 BE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일정한 사항을 HA심의관에게 지시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인 AS 또는 AZ 또는 BE 또는 DB실장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2) 내용 관련성

가) 이 사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직권의 재량적 남용)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



용)도 문제되고, 위와 같은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는 지위 이용에 불과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는 ① AL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 담당 GS심의관에 대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요청'이 아닌 '지시', ② BE의 AL 상임위원 판사를 통한 HB심의관에 대한 전문 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행이 문제된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또한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에 따라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본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AL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지시'한 것이 문제되었는데, 이에 위 지시 행위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 담당 GS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문제된다. 요청과 지시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종종 직급상 상급자의 요청은 상대방인 하급자에게 지시로 받아들여지는 점에 비추어, 위 '지시' 행위와 AL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 담당 GS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위 '지시' 행위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시'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BE이 AL 상임위원 판사를 통하여 HB심의관에게,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행을 지시한 것이 문제되었는바, 이에 위 지시 행위가 BE의 HB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지 문제된다.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7. 2. 20. 행정예규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3항, 제4항은 HB심의관으로 하여금 AI실 연구회 성과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하여 연구회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직무를 부여하고 있고,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2017. 7. 11. 내규 제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2는 각급법원 재판관련 연구회 및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 중 '예산지급 등 세부사항 집행'을 HB심의관의 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전문분야연구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행'은 명목상으로는 예산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규를 집행하는 것이었으므로 이는 HB심의관의 사무에 속하는바, BE의 HB심의관에 대한 위 지시 행위와 BE의 HB심의관에 대한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상급자인 BE의 위 지시 행위는 BE의 HB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3) 직권행사의 모습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피어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



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본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재판의 독립과 충돌할 수 있고, 사법행정권자는 위와 같은 충돌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검·입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거나,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권고의 전달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인 행위별로 살펴본다.

3)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E 및 AF 관련 부분에서는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두 법익, 즉 사법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법익과 사법행정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법익의 조화를 살펴, 구체적인 사법행정권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라.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대법원 판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이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판사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이하 '판사 심의관'이라고 한다)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실무 담당자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①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지, ② 판사 심의관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는지, ③ 판사 심의관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한 행위자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인지



순서대로 살펴본다.

2)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의 명시

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은 사건의 심판 외의 직을 겸임하는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관윤리강령 제1조는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간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제5조 제2항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판사 심의관은 비록 재판사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헌법 제103조에 따라 재판사무 담당 판사가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고,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에 따라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다) 원래 판사의 근본 임무는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설령 그가 배석판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합의부 부장판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헌법 제103조가 판사에게 독립하여 재판을 하도록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져서는 안 된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은 대법원장이 판사를 사건의 심판 외



의 직에 겸임하게 할 수 있는데, 위 판사는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4항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판사로 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판사에 대하여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판사 심의관의 임무는 주로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에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지게 만들 수 있다. 판사 심의관은 한번 심의관이 되면 다시는 재판사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계속 심의관으로서만 근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통상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해야 하는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어 위험하다.

위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52조 제1항 및 제71조 제4항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판사 중에서 보할 수 있다고 정하여 판사 심의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입법자는, 판사 심의관이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면서 비록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는 하나, 그 지시 사항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 것이다. 즉 입법자는 판사 심의관이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판사 심의관을 보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들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3) 판사 심의관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

가) 앞서 본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판사 심의관의 재판사무 수행 경험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재판의 독립을 위협하지 않도록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나아가 판사 심의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 그의 그간의 고유한 재판사무 경험이 반영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판사 심의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행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최종 행위뿐만 아니라 '재판 개입'이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판사 심의관에 대한 검토 및 보고 지시 등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과잉 적용으로 이어져 공무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판사 심의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행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해당 여부는 뒤에서 구체적인 지시 행위별로 살펴본다.

【인정사실별 판단】

1.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법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판사 파견 조항의 취지

가) 법원조직법은 제49조에서 판사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제1호),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제2호)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판사가 오로지 구체적 사건의 재판으로써만 다른 국가기관의 구체적 권한행사를 견제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고,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제3호)을 금지함으로써, 판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제50조에서 대법원장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판사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 업무의 성질상 판사를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판사가 파견근무에 동의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판사의 파견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업무의 성질이라는 한계와 해당 판사의 동의 및 일정한 기간이라는 한계 내에서 판사가 재판 이외의 일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향후 그가 다시 재판사무 수행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경험을 법원 내에서 공유함으로써 판사들이 다른 국가기관의 구체적 권한행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는 기초 위에서 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있다.

판사의 근본 임무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인바, 판사를 다른 국가기관으로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와 같은 파견근무의 경험이 그 판사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 도움이 되고 그 경험이 공유됨으로써 다른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파견근무의 경험이 오히려 그 판사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 장애가 된다면 이러한



파견근무는 허용될 수 없다.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조직법 제50조가 판사의 파견근무에 관하여 업무의 성질이라는 한계와 해당 판사의 동의 및 일정한 기간이라는 한계를 둔 것이다.

나) 한편 법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 판사의 경험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판사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수행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판사는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의 판지(判旨)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물론 검사, 변호사, 교수도 변론이나 판례 평석 등 논문 발표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경험을 쌓게 되고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그러나 판사는 검사, 변호사, 교수와 달리 무엇보다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판사의 판단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확인되고 실현되며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이 실현되거나 제한되는데, 판사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가 하는 말을 직접 귀로 들은 후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그가 자신이 말은 모든 사건을 사려 깊게 살피고 숙고하여 판단을 내리는 판사라면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시키는 면에서 그 판사의 경험은 검사, 변호사, 교수의 경험과 그 내용이 다르다. 이에 법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 위와 같은 판사의 경험을 필요로 하여 판사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 제50조가 이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제한적으로 판사의 파견근무를 허용한 것이다.

2)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가) 현행 헌법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 이외에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권, 헌법소원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을 헌법재판소



가 행사하게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법원의 기관소송에 관한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권은 법원의 내란죄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한 사법권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은 탄핵 소추가 된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법원의 사법권과 각각 관련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권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관한 사법권과 관련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은 위와 같은 심판의 전제가 된 사건과 그와 관련된 사건에서의 법원의 헌법해석권과 관련되어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은 모두 일정 부분 법원의 사법권 또는 헌법해석권과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종래부터 법률 조항의 문언은 그대로 두면서도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는 결정, 즉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하여 왔고, 대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그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여 왔다.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기에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은 모두 일정 부분 법원의 사법권 또는 헌법해석권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과 보다 직접 관련되기에 특히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나) 헌법재판소는 헌법해석에 의하여 구체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심사한다. 그런데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은 그 문언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령 그 문언이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도 그 문언대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즉 법률 조항의 해석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헌법해석만으로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이에 법률 조항과 법률 조항의 해석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법률 조항이 2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 가능한데 그 중 하나의 해석만 헌법에 합치되지 않을 뿐이라면 해당 법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보다는 위와 같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특정한 해석만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여 제거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나 더 낫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의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의견과 입장에 근거하여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 한편 헌법 제103조가 정한 것과 같이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 즉 법원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의 해석에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헌법해석에도 근거를 둔다. 물론 법원이 항상 헌법해석을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에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헌법해석을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에 실시하는 것이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사건의 수도 전체 법원의 사건의 수에 비하여 많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의 이유에 법률 조항의 해석 이외에 헌법해석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해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법원의 모든 재판, 특히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은 법률해석 자체를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의견은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인데, 실제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의견과 입장에 근거하여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다고 보인다.

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통하여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입법권을 견제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권을 통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장을 정하고, 정당해산심판권을 통하여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써 정치질서를 형성하며, 탄핵심판권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등을 파면함으로써 역시 정치질서를 형성한다. 위와 같은 제도 아래에서 헌법재판소가 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이 인정되거나 법원이 이에 사실상 구속되기까지 하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사법권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이른바 원행정처분을 심사함으로써 구체적인 행정권의 행사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그 구성에 관하여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에게 의존하는 것 이외에 그 결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게 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거나 법원에 대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모두 견제하거나 통제하고 정치질서를 형성하면서도 그 결정에 관해서는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법원은 이러한 결과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정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갖는다고 여겨지는 사실상의 기속력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 법원이 이를 존중과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은 물론이고 합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도 응당 법원이 이를 존중하여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1. 14. 선고 HF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HE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와 같은 존중과 숙고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본다.

마) 대법원이 처음부터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처음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과 숙고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한 것은 민법 제 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결정이다(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비방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인격·명예·신용 등이 훼손된 데 대한 손해액을 3억 원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부정적 광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구제수단인 사죄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참조). 종래 대법원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렸는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이후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과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리를 대법원 판례로 확립하였다.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4헌바40, 95헌바13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주문의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면으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의미 및 기속력을 판단하면서,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제101조는 물론이요, 재판의 독립을 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까지 하였고,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일응의 견해 표명에 불과하고, 거기에 어떠한 기속력도 있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며(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그 후 위와 같은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제두299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숙고할 필요성은 여전하다. 인정 사실에서 본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 기본법(이하에서는 '과거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 관련 사건인 2014헌바148 등 사건이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청구인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이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HF 판결 등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에서는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는데(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671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그 자체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2020. 9. 3. 선고 HE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위헌심사에까지 나아갔다고 보이기도 하는 대법관 HC의 별개의견과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심사에서 멈춘 대법관 HD의 별개의견의 사이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위법심사를 한 것인데, 일견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반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반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위헌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하고 숙고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위헌·위법심사를 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의 위헌심사에까지 나아갔다고 보이기도 하는 대법관 HC의 별개의견이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의 취지를 세심하게 고려한 것도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위와 같은 이해를 뒷받침한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1. 14. 선고 HF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HE 전원합의체 판결)이야말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숙고를 보여준다고 본다.

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법원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권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이를 숙고하여야 하고, 특히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3)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된다. 이에 광의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판사의 경험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반대로 판사도 헌법재판소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원으로 근무함으로써 헌법재판과 헌법해석에 보다 친해질 수 있고, 위와 같은 파견근무의 경험이 그 판사로 하여금 보다 풍부한 헌법적 관점에서 사건을 살피면서 재판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여 그 판사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도



움이 되며, 위와 같은 파견근무의 경험이 공유됨으로써 다른 판사들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즉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은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도움이 되고, 그 판사나 다른 판사들의 향후 재판사무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필요성 때문에도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이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갖는다고 여겨지는 사실상의 구속력도 없다고 보나,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으며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 법원은 이를 존중과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은 물론이고 합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해당 법률 조항의 해석도 응당 법원이 이를 존중하여 숙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권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이를 숙고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숙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며,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해당 법률 조항에 관한 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숙고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줄 사람이 필요한데,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야말로 위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으로 적절하다. 이에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역할, 즉 이른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성 때문에도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이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4)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직무권한

가) 앞서 본 판사 파견 조항(법원조직법 제50조)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직무권한이 인정된다.

나)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수행 경험을 기초로 하여 다른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재판관과의 토론에서 의견을 밝힐 직무권한을 갖는다. 나아가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위와 같이 의견을 밝히면서, 법원에 속하는 사법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 서서 법원의 모든 재판, 특히 대법원의 모든 재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결과이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뿐 법률해석을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본다.

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줄 수 있고, 반대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례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헌



법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고, 반대로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은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서 검토 중인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법원에 전달할 수 있고, 반대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하여 검토 중인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5)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 대한 직무권한

앞서 본 판사 파견 조항(법원조직법 제50조)의 취지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권한을 갖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법원에 헌법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서 검토 중인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법원에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는 자이고, 법원행정처차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법원행정처장 및 법원행정처차장이 위와 같은 요청권한을 갖는다.

나. AL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 대한 직무권한과 피고인 B의 직권 행사

1) 이 부분 공소장의 내용



이 부분 공소장은 ① AO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② AT의 2015. 2. 내지 2015. 3.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③ AU의 2016.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④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1)에서 BJ이 의무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 ⑤ BJ의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과 정책 및 동향 131건 전달로 이루어져 있다. BJ의 정책 및 동향 131건 전달은 뒤의 실질적·구체적 행위와 직권의 남용 부분에서 살펴보고, 여기서는 BJ의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AO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 및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AT의 2015. 2. 내지 2015. 3.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 및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²²⁾ 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AU의 2016.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피고인 B의 BJ에 대한 지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AU의 2016.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²³⁾ 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가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를 포함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22) AT의 재임기간 중 전달받은 사건 정보 및 자료로서 공소장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9를 의미한다. 검사는 검찰의견서 15를 통하여 위 49건에 한하여 AT와 공모한 것으로 기소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23) AU의 재임기간 중 전달받은 사건 정보 및 자료로서 공소장 범죄일람표(1) 순번 50 내지 194를 의미한다. 검사는 검찰의견서 15를 통하여 위 145건에 한하여 AU와 공모한 것으로 기소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본다. AO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고,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AT의 2015. 2. 내지 2015. 3.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를 포함하고 있고,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AU의 2016.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도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를 승인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고,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도 포괄적이기 때문이 그것이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은 위와 같이 AO, AT, AU의 피고인 B에 대한 포괄적인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1단계)와 피고인 B의 BJ에 대한 포괄적인 지시(2단계)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은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에 '시스템'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도 이 법원이 이 부분 공소장의 핵심 내용을 위와 같이 파악하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 인정 여부

그러나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장의 핵심 내용과 같이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



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은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를 인정하는 것은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1)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AO의 경우 2015. 2.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O의 경우 2015. 2.경을 기준으로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와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공모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모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2)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AT의 경우 2015. 2. 내지 2015. 3.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의 경우 2015. 2. 내지 2015. 3.경을 기준으로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와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49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공모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



로 하였을 때 공모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AU의 경우 2016. 2.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 승인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범위 내에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U의 경우 2016. 2.경을 기준으로 그가 피고인 B에게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지시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피고인 B의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의 BJ에 대한 지시 승인과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45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공모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공모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4)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B의 경우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가 BJ에게 지시를 한 범위 내에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경우 2015. 3.경부터 2015. 7.경 이전까지 사이를 기준으로 그가 BJ에게 지시를 한 것이 포괄적이어서 여기에 BJ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전달 지시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지시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게 만들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다.



(1) AO, AT의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가) 포괄적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AO는 2015. 2. 13.경 피고인 B에게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고, AT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원할 것과 BS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X와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AO는 2015. 2. 25.경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들이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수집해서 대법원에 잘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T는 2015. 2. 27.경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서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AO, AT가 2015. 2.경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인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하여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본다.

(나) 대상 사건 범위의 구체화

그런데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지시의 내용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피고인 B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BJ에게 헌법재



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하라는 지시이기는 하되, 그 대상 사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AO나 AT가 피고인 B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지시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AT의 2015. 9.경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AO, AT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로 비로소 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명확해졌고, AO, AT에 대한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의 보고에 의하여 비로소 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되었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AT의 2015. 9.경 피고인 B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AO, AT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와 함께 그 전체가 하나의 직무수행 지시를 이룬다고 본다.

(다) 내부 정보 범위의 구체화

아울러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지시의 내용인 내부 정보의 범위 또한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피고인 B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관하여 도대체 어떤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하라는 지시이기는 하되,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AO나 AT가 피고인 B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지시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은 AT의 지시에 따라 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하여 AO, AT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헌법연구관 토론 결과, 1차 평의에서 한정위헌이 다수였다는 내용, EN 재판관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라 단순위헌 취지의 보고서를 기초로 2차 평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보고서 완성 즉시 입수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 B은 AT의 지시에 따라 2015. 5. 12.자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법소원 사건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AO, AT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도 헌법연구관 보고서²⁴⁾를 입수하여 조속히 대응 논리를 수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③ AT는 2015. 9. 14. 피고인 B에게 BH 사건, BK대학교 공무원 사건, BO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등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 사건의 추이를 정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 8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도표로 총정리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을 작성하여 AO, AT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사전심사보고서의 내용, 헌법연구관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개별 의견, 평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이후의 개별적인 지시 및 보고를 통하여 점차 구체화되었고, AT의 2015. 9.경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AO, AT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로써 비로소 그 내부 정보의 범위가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

24) 위 문건에는 '재판연구관 보고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헌법연구관 보고서'의 오타로 보인다.



연구관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 등으로 명확해졌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그 이후의 개별적인 지시 및 보고를 거쳐 AT의 2015. 9.경 피고인 B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AO, AT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가 하나의 직무수행 지시를 이룬다고 본다.

(2) AU의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AU은 AX경 이후 며칠이 지나 피고인 B으로부터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을 보고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이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과 BS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X와 협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AU이 AX경 이후 며칠이 지나 피고인 B으로부터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인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대상 사건의 범위와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위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과 같이 하라고 승인하였다고 본다. 위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 중 10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BO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 BK대학교 공무원 사건, BH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공무원의제규정 관련 시행령 사건,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관하여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헌법연구관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B의 직권행사

형사책임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BJ에 대한 직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다.

(1) 대상 사건 범위의 구체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2015. 3.경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그 요청의 내용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BJ의 입장에 서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한 것이기는 하되, 그 대상 사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피고인 B이 BJ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요청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BJ에게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이 송부됨으로써 비로소 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명확해졌고, 피고인 B이 2016. 2. 내지 3. 무렵 BJ에게, 위 2015. 9. 15.자 문건에 비교할 때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추가된 2건(공무원의 제규정 관련 시행령 사건,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



소 심리 경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함으로써 비로소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되었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요청은 BJ에 대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송부와 함께 그 전체가 BJ에 대한 하나의 직권의 행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BJ에 대한 위 2건 관련 요청으로 다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직권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2) 내부 정보 범위의 구체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2015. 3.경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그 요청의 내용인 내부 정보의 범위 또한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이 법원이 상대방인 BJ의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관하여 도대체 어떤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그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위와 같은 요청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한 것이기는 하되,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피고인 B이 BJ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요청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은 2015. 4. 중순경 BO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과건 판사였던 HG으로부터 연구보고서를 송부받고, 헌법연구관들의 토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2015. 4. 17.자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 보고' 문건에는 위와 같이 HG으로부터 파악한 내용과 함께 '보고서 완성 즉시 입수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는 BJ에 대한 직권행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피고인 B의 업무상 인식 내지 피고인 B이 파악하고자 한 내부 정보의 범위를 추단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② 피고인 B은 2015. 5. 12.자 '과거사 사건 손해배상 소멸시효 관련 헌법소원 사건 동향 보고' 문건의 현재 진행상황 및 대응 방향 부분에는 '아직 공동연구원들이 참여하는 토론에 회부되지는 않았음, 일부 자체 연구관들은 한정위헌에 적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헌법연구원 보고서 입수하여 조속히 대응 논리 수립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헌법연구원들의 토론 및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입수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BJ은 2015. 8. 31. X에게 형사성공보수사건의 사전심사보고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BJ이 보낸 위 이메일의 제목에는 '자료'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내용에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BJ과 X의 친분관계, 사법연수원 기수, BJ의 평소 이메일 기재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BJ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X의 요청에 따라 위 사전심사보고서를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B이 작성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에는 BJ으로부터 파악한 사전심사보고서의 내용, 헌법연구원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HG으로부터 파악한 BO 비정규직 노조 업무방해 사건의 1차 평의 결과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문건은 2015. 9. 15. BJ에게 송부되었다. 피고인 B으로부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 제공 요청을 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총정리된 위 문건을 송



부반음으로써 BJ은 피고인 B이 파악하고자 하는 내부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BJ은 피고인 B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평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보거나 보고서를 달라고 한 적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⑥ 피고인 B은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 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최근 파견 법관들을 통하여 지난 1년간의 평의 내용 등을 종합,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어떤 재판관이 법원에 우호적이고 어떤 재판관이 비우호적인지에 관한 내용 및 BJ으로부터 파악한 관습법 사건의 평의 내용과 결과를 기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BJ에게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 헌법연구관 토론 및 보고 결과, 헌법재판관의 의견, 평의 내용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BJ이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을 송부 받은 무렵에는 피고인 B이 BJ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내부 정보의 범위가 위와 같은 범위로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2015. 3.경 BJ에 대한 요청은 그 이후의 피고인 B의 개별적인 요청을 거쳐 BJ에 대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의 송부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가 BJ에 대한 하나의 직권의 행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및 직권행사와 지위 이용

(1)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인 피고인 B은 AS AO 및 AZ AT로부터,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BJ에게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받았다고 보고, 피고인 B은 BJ에게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BJ에게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춘 것이라고 본다.

(2) 그 밖의 사건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 B이 AO 및 AT나 AU으로부터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BJ에게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받았거나, 피고인 B이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BJ에게 요청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 B이 BJ에게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거나, 설령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직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가령 HH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관해서 피고인 B이 BJ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지위 이용에 해당하거나 BJ에 대한 직권행사가 없었다고 본다. 결국 이 법원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파견 판사의 정보의 제공 및 협조와 헌법재판소의 서면심리 및 평의 비공개



관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본문에서 헌법재판소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고 정하면서 단서에서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연구관의 보고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해서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이 검토 중인 헌법해석과 법률해석은 모두 일견 위 단서에서 정한 서면심리에 해당하거나 평의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비추어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존중하면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 판례의 판지와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이를 존중하면서 숙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서로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사정거리 또는 대법원 판례의 판지와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의견을 주고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 심판의 성격과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자료 또는 의견 전달의 필요성에 비추어,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사건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유형이 무엇이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유형이 무엇이든 그 심판이 계속 중이라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된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이 검토 중인 헌법해석 또



는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특정하여 어느 헌법재판관은 이런 의견이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저런 의견이며²⁵⁾, 어느 헌법연구관은 이런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하였다는 식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나 헌법재판관들 또는 헌법연구관들의 의견 분포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본다.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사건 정보

(1)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주된 동기나 목적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는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동기나 목적이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은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동기나 목적에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겠다는 동기나 목적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하나, 그것이 주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보지는 않으며,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 그 자체가 위법·부당하다고 보지도 않는다. 한편 인정사실에 비추어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이른

25) 한편 이 법원은 헌법재판관의 이런 자런 의견에는 예컨대 '당분간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두 사건 모두 함께 선고하고자 했다', '원래 평의 예정은 언제지만 평의를 속행시키겠다', '동일 정점이 있어 언제 평의에 넣어 언제 함께 선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평의를 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등과 같은 사건의 심판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포함된다고 본다. 이하도 같다.



바 한정위헌결정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물론 합헌결정까지 포함하여 이를 존중하고 숙고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주된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것이었다고 본다.

(2)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

이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해서만 살펴본다.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에는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한편, 구체적 사건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더 부각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도 있는데, 그 어느 것이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선고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 중에는 규범통제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한편, 구체적 사건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더 부각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그 어느 것이나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을 선고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이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고, 또한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특정하여 어느 헌법재판관은 이런 의견이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저런 의견이며, 어느 헌법연구관은 이런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하였다는 식으로 법원에 전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본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위와 같은 내부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와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 반하여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나 헌법재판관들 또는 헌법연구관들의 의견의 분포를 법원에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에 해당하므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은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을 식별한 후 이에 대해서만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살펴본다.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2015. 9. 15.



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로서 그 제공 요청이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하여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순번 10, 11,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45 내지 48, 54, 56 내지 59, 70,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142, 151 기재 정보 및 자료 총 46건이다.

순번 1 내지 8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 AT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BJ이 피고인 B이나 X에게 알려주거나 보내준 것이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요청한 것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2 내지 14는 위 2015. 9. 15.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긴 하나 위 2016. 2. 12.자 문건이 AT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BJ이 피고인 B이나 X에게 알려주거나 보내준 것이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5 내지 25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BA의 지시와 관련된 것이므로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순번 26은 위 2015. 9. 15.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긴 하나 위 2016. 2. 12.자 문건이 AT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BJ이 X에게 보내준 것이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31, 34, 35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41, 42, 44는 BJ이 법무부의 의견서, 검사의 의견



서, 법무부의 의견 회신을 보내준 것으로서 이를 요청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 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와 헌법재판소에의 관사 파견의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순번 49 내지 53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55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60 내지 69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1은 위 각 문건에 기재된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사건의 선고 전 결정문 초고이나 피고인 B이 BJ에게 위 사건의 선고 전 결정문 초고까지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72, 76 내지 86, 88, 90, 93, 97, 98, 102 내지 118, 123, 125, 129 내지 136, 138 내지 141, 143 내지 150, 152, 153, 155 내지 194는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91, 92는 순번 73, 74와 같은 것으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별도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순번 154는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JU 사건의 결정문 초고인데, 피고인 B이 BJ에게 위 사건의 결정문 초고까지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순번 45, 47, 59, 70, 142에 관하여 추가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순번 45 중 '긴급조치위반 손해배상사건 배정 현황(IQ부 배정)' 부분, 순번 47 중 '형사성공 보수 사건(2015헌마784)' 부분과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황'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이를 알려주는 것이 BJ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순번 59 중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합헌으로 평의 종결되었다는 평의 결과' 부분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순번 70 중 2013헌바370 사건의 '결정문 초고 내용' 부분은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순번 142 중 '병역법 사건의 평의 일정'과 '병역법 사건 관련 HI 재판관의 의견' 부분은 위 2015. 9. 15.자 문건이나 위 2016. 2. 12.자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순번 142 중 '과거사 소멸 시효 사건, BK대 HJ 사건 등의 평의 일정' 부분은 그 사건들이 평의에 들어간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BJ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4) AO, AT, AU의 공모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O, AT의 2015. 2.경 피고인 B에 대한 직무수행 지시는 AT의 2015. 9.경 피고인 B에 대한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 사건' 문건의 작성 지시 및 AO, AT에 대한 위 문건의 보고와 함께 그 전체가 하나의 직무수행 지시를 이룬다고 본다. 이에 따라 AO, AT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은, 위 총 46건 중 AT가 위 2015. 9. 15.자 문건을 보고받아 승인한 이후에 수집된 순번 10부터 그가 AZ에서 퇴임하기 전에 수집된 순번 48까지 AT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총 46건 중 AO가 위 2015. 9. 15.자 문건을 보고받아 승인한 이후에 수집된 순번



27부터 순번 151까지 AO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U이 AX경 이후 며칠이 지나 피고인 B으로부터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을 보고받으면서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인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승인하고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대상 사건의 범위와 그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위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과 같이 하라고 승인하였다고 본다. 이에 따라 AU의 공모 범위에 관하여 이 법원은, 위 총 46건 중 AU이 위 AX자 문건을 보고 받아 승인한 이후인 순번 56부터 순번 151까지 AU의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5) BA의 공모 범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인 피고인 B은 AS AO 및 AZ AT로부터,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BJ에게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받았다고 보고, 피고인 B은 BJ에게 위 각 문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이 법원은 BE이 AS 또는 AZ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AL 상임위원을 겸하는 판사에게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어떠한 직무수행을 지시하면서 위와 같은 직무수행을 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본다.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법원행정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판사에게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지시하는 것인바, 이는 법원조직법 제67조 제3항이 BE의 권한으로 정한, AZ의 보좌와 법원행정처 사무의 처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2015. 9.경까지 피고인 B



에게 위와 같은 직무수행을 지시한 사람은 AO, AT일 뿐이고, 위와 같은 직무수행을 지시할 권한이 없는 BA은 그 권한이 없는 이상 피고인 B에게 어떠한 직무수행 지시를 하였다고도 보지 않는다. 게다가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BA은 위 2015. 9. 15.자 문건 및 2016. 2. 12.자 문건 작성에 앞서 피고인 B을 상대로 별다른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 법원은, 그 제공 요청이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하여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앞서 본 정보 및 자료 총 46건에 관해서는 BA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6) BA의 직권남용행위와 피고인 B의 공모

이제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15 내지 25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순번 15 내지 19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BE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법원의 재판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그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나 사정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법원에 헌법연구관의 보고서를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헌법연구관 보고서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직권의 남용에 해



당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순번 15 내지 19와 관련된 BA의 BJ에 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 요청을 BJ에게 전달하였는데, 그에 따라 BJ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순번 15 내지 19는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에 관한 것이었다(한편 순번 15는 그 중 일부 사건들의 보고 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BA의 BJ에 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 요청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요청을 BJ에게 전달하여 BJ으로부터 위 보고서 등을 전달받음으로써 BA의 직권남용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본다. 다만 이 법원은 순번 15 중 201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사건 관련 담당 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요청한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와 헌법재판소에의 관사 파견의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음으로 순번 20 내지 25에 관하여 살펴본다. 순번 20 내지 25는 BA이 피고인 B과 무관하게 BJ에게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을 요청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순번 20 내지 25는 피고인 B과 무관하다고 본다.

나) 사건 외 동향

우선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4 DI 보도 관련 검토, 순번 5, 6, 14 내지 16, 21, 27, 128 각 HQ 자료, 순번 8 주요업무계획, 순번 9, 10, 11, 18, 20, 23, 26, 115, 121 각 월례회의 자료, 순번 12, 13, 17, 19, 22, 25, 114, 120, 123, 127 각 실국장회의 자료, 순번 118 국민초청행사 세부시행계획(안), 순번 119 홈커밍데이행사 참석자 현황, 순번 129 인사발령(헌법연구관) 통보



공문, 순번 BF 지정재판부 구성변경 관련 보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BJ에게 위 각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7, 24, 116, 117, 124, 125, 126, 131 각 현재 내부 정보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이 BJ에게 위 각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1 내지 3 각 발표문, 순번 28 내지 112 각 2016. 7. 15.자 자료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순번 1 내지 3 각 발표문은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앞두고 AT가 피고인 B에게 질문거리라도 찾아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이 X를 통하여 BJ으로부터 개최 하루 전에 미리 송부 받은 지정토론자 3인의 각 지정토론문인데, 이것들은 위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외부 참석자들에게도 제공되었고 나중에 책자에 포함되어 공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각 발표문의 사전 제공 요청을 직권의 행사로 보더라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순번 28 내지 112 각 2016. 7. 15.자 자료는 AU이 피고인 B에게 'AO가 개헌시안을 검토하여 만들어 보라고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이 BJ에게 '개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여 BJ이 헌법연구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 자료들을 일괄해서 피고인 B에게 송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자료들을 선별한 후



2016. 7. 26.자 '개헌을 포함한 사법부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현재 입장'을 작성하여 AU, AO에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이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登記,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도 이와 유사하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의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 자료들에는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거나 국회 제출용으로 작성된 자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공개가 될 수 있는 자료, 일반적인 헌법이론 및 법률이론을 설명한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 헌법재판소 스스로 위 자료들을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확인하여 법원에 알리는 것이 이른바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설령 위 자료들의 제공 요청을 직권의 행사로 보더라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끝으로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순번 113, 122 각 발표문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발표문은 피고인 B이 AL 상임위원으로서 양형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BJ에게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석자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자료의 제공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여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뒤집어 말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그가 한 일이 내용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령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BJ에게 2015. 9. 15.자 및 2016. 2. 12.자 각 물건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BJ은 그와 관련된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전달하였으며,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이 검토 중인 헌법해석 또는 법률해석을 법리 자체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특정하여 어느 헌법재판관은 어떤 의견이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어떤 의견인지, 어느 헌법연구관은 어떤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하였는지를 법원에 전달하였고, 이로써 위 각 사건의 헌법재판소 평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까지를 법원에 전달하게 하였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와 헌법재판소에의 관사 파견의 취지에 비추어 BJ이 헌법연구관이자 헌법재판소 파견 관사로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유념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되 정당한 수준의 업무만을 이행함



으로써 그 직무나 역할 수행이 향후 자신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피고인 B이 가담한 BA의 BJ에 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 요청으로 인한 직권남용행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 법원이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와 공소장 범죄일람표(2) 기재 사건 외 동향 관련 정보 및 자료 중에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소장 범죄일람표(1) 기재 사건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중 순번 10, 11, 15 내지 19,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45 내지 48²⁶⁾, 54, 56 내지 59²⁷⁾, 70,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142, 151 기재 정보 및 자료 총 51건이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① AO, AT, AU과 공모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BJ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피고인 B 및 그에게 협조하는 BS실 심의관 X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BJ으로 하여금 위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②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BJ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심리 중인 한일협정 관련 사

26) 순번 47, 48의 '수신자 B, X'는 '수신자 B'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7) 순번 58의 내용 중 'JK'은 'JH'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건들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입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BJ으로 하여금 위 사건과 관련된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입수하여 일부 사건들의 보고 결론과 함께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AZ이 GS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은 GS심의관의 사무에 속하고, AS으로부터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원을 지시받은 AL 상임위원 판사가, AZ으로부터 위 판사에게 협조하도록 지시받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은 그 GS심의관의 사무에 속한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AL 상임위원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5. 2. 13.경 AO로부터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받았던 점, ② 피고인 B은 그 무렵 AT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지원할 것과 BS실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심의관 X와 협조할 것을 지시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헌법 담당 GS심의관인 X가 AZ인 AT로부터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협조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L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B이 헌법 담당 GS심의관 X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은 X의 사무에 속한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핀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2015. 4. 10.경 X를 상대로 AT주제 실장회의에서의 논의 및 AT의 잠정 결정 등을 전달하면서 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지시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보고서 작성 지시와 함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의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지시한 점, ③ X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직급상 상급자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탓에 그의 요청과 지시가 구별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④ 이에 X는 BZ에게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였고, 일요일인 2015. 4. 12.



경 피고인 B이 지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⑤ BS실의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통상적으로 피고인 B이 실질적 주무로서 X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의 위 지시 행위는, 피고인 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5. 4. 10.경 X에게 AT 주재 실장회의에서의 논의 및 AT의 잠정 결정 등을 전달하면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을 아무도 봐서는 안 되니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을 포함한 검



토 및 보고를 지시하였던 점, ②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헌제청결정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BY의 검토 보고서와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 방안이 제일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X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지시의 내용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로 후속 조치가 잠정 결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후속 조치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며, 그 밖의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X를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후속 조치를 전제로 하여, 이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 즉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에도 반한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만 하는 행위에서 한참 벗어난 행위인바, 이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도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위 나)항에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지시 및 위 후속 조치의 일환인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 보고 지시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4)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판사 심의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 그의 그간의 고유한 재판사무 경험이 반영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 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 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침해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사항이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 한 것일 것이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 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 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 금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후속 조치를 전제로 하여, 이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여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인 점, ② X가 작성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 라는 후속 조치를 구체화·정당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



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기초로 AT가 2015. 4. 13.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는 후속 조치 시행을 결정하였고, 그에 이어서 피고인 B이 2015. 4. 13.경 BX과 다시 통화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BX은 BT지방법원 BW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다시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였고, BZ에게 공문을 보내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및 위 후속 조치의 일환인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 보고 지시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X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 즉 취소 및 재결정 권고와 BX과 BZ을 통한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후속 조치 구체화·정당화 및 위 후속 조치의 일환인 전산상 조치 가부 확인 보고 지시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5) AO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AO는, X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초로 AT가 2015. 4. 13.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는 후속 조치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블라인드 조치 유도라는 후속 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이후에 이를 보고 받으면서 승인하였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AO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범행의 기수 이후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해서는 AO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6)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BT지방법원 BW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위 재판부가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BS실 심의관 X에게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는 후속 조치를 정당화하고 구체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AS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AS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공범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①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AS, AZ, BE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②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은 명백하지 않은 잘못에 대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보며, ③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일반적 직권의 귀속에 따라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에 공범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BT지방법원 BW부의 부장판사 BX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떠올리지도 못한 채 BT지방법원 BW부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도록 하였던 점, ②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 조항이 다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무엇인지 문제가 될 때 가능한 것인데, BT지방법원 BW부의 구체적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해당 조항은 일의적이어서 여러 해석 중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무엇인지 문제가 되는 상황조차 아니었던 점, ③ 그럼에도 BX은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X은 BT지방법원 BW부의 구성원으로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내림으로써,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잘못이란 폐지된 법령을 적용한 것과 같이 누구나 바로 그것이 잘못임을 알 수 있는 잘못을 말하는 바, 법률 조항이 다의적인지 여부는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여서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5. 4. 10.경 AT의 경위 파악 지시에 따라 BX에게 연락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한정위헌결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위 연락 이후 열린 실장회의에서 AT가 AO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이미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으로 그 결정이 내려진 재판에 관하여 결정의 변경을 유도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던 점, ③ 이어서 피고인 B은 다시 BX에게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었던 점, ④ AT는 2015. 4. 13.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유도하라는 취지를 지시를 하였던 점, ⑤ AO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AT의 위와 같은 지시 내용을 보고받았고, 이를 승인하였던 점, ⑥ 피고인 B은 2015. 4. 13.경 AT의 위와 같은 지시 및 AO의 위와 같은 승인에 따라 BX에게 다시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5. 4. 13.경 BX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은, 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내린 잘못된 결정, 다만 그 잘못이 명백하지는 않은 결정에 관하여, 법원행정처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판사에게 취소 및 재결정을 권고한 것이고, 이때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



한 잘못 지적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고, ②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AT의 위 권고 행위가 공범인 피고인 B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인 BX에게 전달된 것으로서, AT의 위 권고 행위에 피고인 B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피고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권고를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권고가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권고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 행사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의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펴에 있어서 그 권고의 경위, 그 권고 당시의 상황, 그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5. 4. 10.경 AT의 경위 파악 지시에 따라 BX에게 연락하였던 점, ② BX은 피고인 B으로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 설명과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한정위헌결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점, ③ 피고인 B은 2015. 4. 10.경 BX에게 다시 전화하여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2015. 4. 13.경 AT의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 지시 및 AO의 승인에 따라 BX에게 다시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④ 이에 BX은 CA에게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니 어떻게 하겠느냐,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T지방법원 BW부로 하여금 직권취소 및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으로의 재결정을 하게 하였던 점, ⑤ BX은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문을 피고인 B에게 보내면서 검토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B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은, 피고인 B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를 전하면서 위와 같이 말하였던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B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피고인 B 개인의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AT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AT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비추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을 그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하였다. 입법자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심급 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에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AT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을 부여하였는데, AT는 위와 같이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여 위와 같은 갈등 상황과 대법원 입장을 살피지 않고 위 지적권한을 그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하였던 것이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BT지방법원 BW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은 명백한 잘못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AT에게 부여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5)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가) 권리행사방해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재판권은 그가 그 사건을 배당받은 시점에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법령상 명백하게 더는 그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내릴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존속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BX이 그 구성원인 BT지방법원 BW부는 2015. 4. 9.경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문이 같은 날 법원행정처에 접수되었던 점, ②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



레나 대법원 관례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③ 당시 AT, 피고인 B 등은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의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했으나, 반대로 BY은 위와 같은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했는바, 이와 같이 법령상 명백하게 위와 같은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 당시 BX의 재판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것을 벗어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에 따라 결정을 하였다면, 설명 그 결정의 결론과 이유가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그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본 사정과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BX이 BT지방법원 BW부의 구성원으로서 내린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은 잘못된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결정은 아닌 점, ② 그런데 BX은 2015. 4. 10.경 처음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설명과 말을 듣고서, 피고인 B에게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기까지 하였던 점, ③ BX은 2015. 4. 10.경 피고인 B의 연락을 다시



받고 그로부터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B에게 '그래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던 점, ④ BX은 2015. 4. 13.경 다시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CA에게 '법원행정처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니 어떻게 하겠느냐,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T지방법원 BW부로 하여금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하게 하였던 점, ⑤ BX은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하기 전에 그 결정문을 피고인 B에게 보내면서 검토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직권취소 및 재결정이 직정한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사법 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



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바, 이에 관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6) 중간 결론

이로써 피고인 B은 AO,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BT지방법원 BW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위 재판부가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BX에게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권고를 함으로써, BX의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에 관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

다.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이 법원은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의 BZ에 대한 행위 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X가 BZ에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2) AZ 또는 BE, 판사 심의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판사에게도 FU국 심의관을 상대로 일정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필요한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예컨대 판사 심의관이나 일반적인 판사에게도 FU국 심의관을 상대로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이 있다. 따라서 AL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B과 헌법 담당 GS심의관이자 판사 심의관인 X에게도 FU국 심의관 BZ을 상대로 일정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필요한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3)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X가 BZ을 상대로 한 행위는, 그에게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한 것이고, 피고인 B이 BZ을 상대로 한 행위는, X로부터 위와 같은 전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담당 재판부의 공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듣고서, BZ에게 위와 같은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피고인 B의 BZ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와 X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Z에게 위와 같이 한 행위가 각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는 하다.

4) 그런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 행위 또는 X의 위와 같은 문의 행위는 BZ이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한 것과 상관이 없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BZ이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한 것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 행위 또는 X의 위와 같은 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BT지방법원 BW부의 공문 때문이었고, BT지방법원 BW부의 공문은 BX이 BT지방법원 BW부로 하여금 보내게 한 것이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요청 행위 또는 X의 위와 같은 문의 행위는 BX이 위 행위를 하기에 앞서 BZ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BZ에 대하여 직권을 행사하여 그로 하여금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하게 한 사람은 BX이지 피고인 B이 아니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BZ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원은 BZ에 대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3.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권고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판사인 재판연구원 보임 조항의 취지

가) 법원조직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은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판사 중에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사인 재판연구원(이하 '판사 연구관'이라고 한다)은 다른 누군가의 지시 없이 스스로 자신이 배당받은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원, 대법관에게 보고할 수 있지만, 특정 대법원 사건에 대하여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원, 대법관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할 수도 있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의 근본 임무는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물론이고 설령 그가 배석판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합의부를 이루는 부장판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즉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져서는 안 된다.

판사 연구관은 한번 재판연구관이 되면 다시는 재판사무를 담당하지 못하고 계속 재판연구관으로서만 근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통상 일정한 기간 후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에 다시 재판사무를 담당해야 하는 판사 연구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원, 대법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어 위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은 위와 같이 판사 연구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 법원은 입법자가 위와 같이 대법원장에게 판사 연구관을 보임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 취지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다) 원래 판사의 근본 임무는 재판사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통상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가 수반된다.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재판사무이지만, 판사는 위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살펴는 과정에서든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든 조사·연구 업무를 병행하여야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는 재판사무 그 자체는 아니고 이를 보조하는 업무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사·연구 업무 없이 재판사무가 가능한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한편 대법원 사건의 수는 언제나 너무나 많고, 대법원 사건 중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 사건이 많다. 이에 입법자는 대법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법관이 스스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까지 담당하지 않고 재판연구관을 두어 위와 같은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였다.

라)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는 구체적 사건의 재판사무 수행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면서도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또한 판사는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례의 관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쌓게 되고, 무엇보다 '판단'을 내리는 경험을 쌓게 된다. 게다가 판사 1명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과 인력과 법정과 예산이 제약된 사회현실 아래에서 구체적 사건의 재판을 하게 되면,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의 수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사건 처리의 순서를 정하고 사건별로 시간과 노력을 적절하게 배분



하여 선택과 집중을 행할지에 관한 경험을 쌓게 된다. 이에 입법자는 위와 같은 판사의 재판사무 경험이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필요할 수 있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판사 연구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마) 더욱이 판사 연구관은 판사 심의관과 다르다. 판사 심의관의 임무는 주로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나, 판사 연구관의 임무는 주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빠뜨림 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입론(立論)을 모두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원, 대법관이 특정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판사 연구관에게 '지시'를 하더라도 그 '지시'의 내용은 기존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살펴 추가로 연구를 하라는 것이거나 기존의 연구에서 빠뜨린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로 연구를 하라는 것이거나 기존의 연구가 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여 추가로 연구를 하라는 것이기 마련이고, 이는 그 성격상 '지시'보다는 '지도'에 훨씬 가깝다. 판사 연구관이 위와 같이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원, 대법관으로부터 특정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지시'를 받더라도 이는 그 성격상 '지도'에 훨씬 가깝기에 그 판사 연구관의 향후 재판사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바) 또한 판사가 사실심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면서 쌓는 경험은 대개 대법원 관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것보다는 증거의 취사에 따라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더 많기 마련이기에, 판사가 법률심 사건의 재판사무를 보조하면서 대법원 관례의 판지나 사정거리를 숙고하는 경험을 집중적으로 쌓거나, 사실심 법원의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거리를 두고 살펴보면서 그와 같은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이 예외적으로나마 법령에 어긋나는지,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지, 법령의 해석에 따라 심리가 미진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따져보는 경험을 집중적으로 쌓는 것은 그에게 새로



운 경험이기도 하거니와 자신의 사실심 판사로서의 경험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판사 연구관 경험이 그 판사 연구관의 향후 재판사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사) 이에 입법자는 그 업무의 내용,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과 판사 연구관의 관계에 비추어 앞서 본 것과 같은 위험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판사 연구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판사 연구관의 사무가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에 수반되는 보조사무인 점과 판사 연구관의 보임 취지, 즉 ① 대법원 사건의 수는 언제나 너무나 많고, 대법원 사건 중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가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 사건이 많기에, 대법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대법관이 스스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까지 담당하지 않고 재판연구관을 두어 위와 같은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였던 점, ② 판사의 재판사무 경험이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필요할 수 있기에 판사 연구관의 존재를 인정한 것인 점을 더하여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본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대법원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판사 연구관을 상대로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신속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가 현저하게 지체되어 있는 경



우 그 사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을 지적하고 신속하게 조사·연구를 마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을 미리 막기 위하여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신속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요컨대 이 법원은 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현저한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과 이에 이은 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 ②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이기는 하나 판사는 아니고, 법원행정처에는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연임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에게도 대법관의 임명을 제청할 권한만 있을 뿐 대법관을 임명하거나 연임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와 달리 법원행정처의 인사 사무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재판사무인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에 대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이 미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가) 주체 관련성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관하여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장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행정처차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과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가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에 있어서 구분되는 점에 주목하여 법원행정처



장과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는 설령 그 수행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에 따라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 또는 권고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 없이 AL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 또는 권고를 하거나, AL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 또는 권고를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나) 내용 관련성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관하여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위 2)항에서 본 사무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밀접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해당 행위가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것'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할 수는 있는데, 법원행정처가 그 기회에 해당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이렇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까지 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행위의 내용은 해당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



조사무의 신속한 처리 권고 내지 방향의 권고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해당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의 신속한 처리 권고인바, 신속한 처리를 권고하는 것을 벗어나 일정한 처리 방향의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적 직권인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인 신속한 처리의 권고와 함께 이루어졌다면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와 지위 이용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행위의 상대방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은 AD, CE, CF 대법관을 비롯한 주심 대법관들이고, ㉠ AD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 피고인 B이 AU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경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4개의 사건이 심리 중이라는 내용, 헌법재판소에서는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거나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조기에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달하면서 이메일 본문에 '해당 문건을 AS께도 보고드릴 테니 헌법재판소와 중복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된 사건들의 검토를 시작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행위, ㉢ 피고인 B이 2016. 11. 17.경 AD에게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달하면서 이메일 본문에 'AZ님, BE님께 보고드렸고 내용에 모두 동의하셨다. 대법원에서 위 매립지 사건들에 대해 검토한



연구관 보고서를 AZ님께 보고하고,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행위이며, ② CE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AD을 전달자로 한 위 ㉞, ㉟ 행위이고, 한편 피고인 B의 위 ㉟ 행위는 AU 등의 행위와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AD을 전달자로 하여 CE에 대하여 위 ㉟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③ CF 대법관을 비롯한 주심 대법관들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AD, CE을 전달자로 한 위 ㉟ 행위이다.

피고인 B의 위 ㉞ 행위와 관련하여, ㉟ 행위의 상대방인 AD은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대법원에서 조기에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㉟ 행위의 상대방인 CE은 위 4개의 사건들의 조기 선고를 위하여 사건 검토를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B의 위 ㉟ 행위와 관련하여, ㉟ 행위의 상대방인 AD은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대법원에서 조기 선고하는 방안을 AU에게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㉟ 행위의 상대방인 CE은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고 그 중 CF 대법관 주심 사건에 대하여 조기 선고 절차를 진행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㉟ 행위의 상대방인 CE은 위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함으로써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㉟ 행위의 상대방인 CF 대법관을 비롯한 주심 대법관들은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㉞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공소장 기재 위 ㉞ 행위와는 그 문건의 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피고인 B이 AU의 지시



에 따라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AD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AS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재판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2016. 10. 19.자 문건의 주요 내용은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언제든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대법관들이 선고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㉔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가 공소장 기재 위 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2016. 11. 16.자 문건에는 위 4개의 사건 중에서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을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즉 2016. 10. 19.자 문건과 2016. 11. 16.자 문건은 그 주요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피고인 B가 AO 또는 AU 또는 BA의 지시를 받아 공소장 기재 위 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요컨대 피고인 B가 2016. 10. 19.자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한 것은 AU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2016. 11. 16.자 문건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한 것은 AO 또는 AU 또는 BA의 지시 없이 한 것인데, 위 두 문건은 그 주요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특히 2016. 11. 16.자 문건에는 특정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권고와 특정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의 처리 방향에 관한 권고가 담겨있어, AU이 피고인 B에게 공소장 기재 위 ㉔ 행위를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 B에게 공소장 기재 위 ㉕ 행위 까지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S 또는 AZ 또는 BE의 지시 없이 AL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앞서 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 또는 권고를 하거나, AL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앞서 2)항에서 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 또는 권고를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에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㉕ 행위는 직권의 주체인 AO 또는 AU 또는 BA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 기재 위 ㉕ 행위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하에서는 공소장 기재 위 ㉔ 행위에 관해서 살펴본다.

라) 공소장 기재 ㉔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2016. 10. 19.자 문건의 주요 내용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들에 대해 언제든 선고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대법관들이 선고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4개의 사건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때 행위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위 4개의 사건들의 성질



에 따라 위 대법원 사건들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한 것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AD에게 전달한 AU의 위와 같은 권고는 AU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권고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4)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와 상대방

앞서 본 것과 같이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㉔ 행위의 상대방으로, AD뿐만 아니라 CE도 기재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6. 7.경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지방자치법 제4조는 합헌이고, 위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AU에게 보고하였고, AU이 위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도 이 문건의 내용을 알려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7. 27.경 위 문건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AD에게 전달하였던 점, ② 피고인 B은 AU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AD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AS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재판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던 점, ③ 이후 AD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



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의 담당 재판연구관 C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 전달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중복하여 심리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④ 이에 따라 CE은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4개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하게 되었던 점, 요컨대 피고인 B은 AU의 우려, 즉 위 4개의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 신속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고, AD도 AU의 위와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AD에게 전달한 AU의 위와 같은 권고는 담당 재판연구관에 대한 전달을 전제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에 AD뿐만 아니라 CE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직권행사의 모습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AU의 지시에 따라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AD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위 문건을 AS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라는 내용, 보고할 때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도 위 문건의 내용을 알렸다는 점도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 재판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을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던 점, ② 이후 AD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의 담당 재판연구관 C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일부 수정하여 전달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중복하여 심리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도 신속하게 검토를 해서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보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③ 이에 따라 CE은 대법관들이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4개의 사건에 대한 검토를 신속하게 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AD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전달한 AU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권고 행위는, 법원행정처가 그 일반적 직권, 즉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대방인 CE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에도 피고인 B과 AD이 전달한 AU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권고 행위는, 법원행정처가 그 일반적 직권, 즉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



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이에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의 성질에 비추어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권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한 헌법소원심판권을 통하여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입법권을 견제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권을 통하여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장을 정하고, 정당해산심판권을 통하여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써 정치질서를 형성하며, 탄핵심판권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 등을 파면함으로써 역시 정치질서를 형성한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제도를 국가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정한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하여, 종래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헌법



재판소 결정례를 확립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고 법률 조항으로 정한 경우, 그 입법권의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단지 종래 확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다. 그와 같이 단지 헌법재판소와 법원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확립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입법권의 행사를 위헌이라고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회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종래 확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재판할 수 없다는 법언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하여 단지 종래 확립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헌으로 선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그와 중복된 사건을 대법원에서도 심리하고 있다는 사정을 법원행정처가 알게 된 경우, 법원행정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된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수석 또는 선임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에게 신속하게 위 사건의 검토 및 보고를 마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본다.

요컨대 이 법원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하여 심리 중인 4개의 사건에 관해서는 해당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위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할 수 있고, 그러한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AU의 위와 같은 권고는 사법행정권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4의 나 (1), (2)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모두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4. V당 행정소송 재판(피고인 B의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자들의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

1)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에 관한 검사의 주장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자들의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AO, AT는 V당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V당 행정소송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고, 이에 따라 CK을 팀장으로 하는 V당 TFT를 구성한 후 V당 TFT로 하여금 V당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결과를 V당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전달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로 하였으며, 그리하여 V당 TFT의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이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 위 문건은 V당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AO가 CK으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고 CK에게 위



와 같은 V당 행정소송 활용 계획을 시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V당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마다 빠뜨림 없이 위 판단 방법을 전달받게 되었다.

요컨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항의 주요 내용은, AO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관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基調)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V당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며, 위와 같은 기조가 담겨있는 핵심 문건이 바로 V당 TFT의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이고, AO가 수립한 위와 같은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위 판단 방법이 V당 행정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마다 빠뜨림 없이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판단의 순서

검사의 앞서 본 주장에 관하여, 먼저 AO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관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는지 살펴본 후, 다음으로 혹시 AO가 아니라 AT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관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는지 살펴본다.

나) AO의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AO는 2015. 1.경 CK으로부터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보고받고 CK에게 '법원의 위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데, 짧



은 시간에 애를 많이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5. 2.경 CK으로부터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았으며,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BI, BA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 V당 행정소송이 제기된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며,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2015. 5.경 CU에게, 2016. 3.경 Y에게 각 전달되었기는 하다.

그런데 검사가 AO가 수립한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가 담겨있는 핵심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면, ① 인정사실에 나타났듯 헌법재판소가 V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하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CK이 먼저 TFT를 구성해 위 결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검토 결과를 활용해 언론이나 대외관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AT에게 보고하였고, AT가 이를 승인하여 V당 TFT가 운영되었는데, V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그때까지의 검토 결과를 참조해 CK이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하였고, 이를 AT, AO에게 보고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AO나 AT의 지시에 따라 V당 행정소송 재판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하기 위하여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이 작성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②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주요 내용은 향후 진행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내용을 예상하고 예상해본 각각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평가를 내린 것으로서, 위 문건에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내용은 없으며, 위 문건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관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특정 사건 재판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과, 그것에서 나아가 그 재판관을 활용하여 그 재판관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엄연히 구별된다. AO가 2015. 1.경 CK에게 위와 같이 한 말과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BI, BA에게 위와 같이 한 말에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내용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AO는 당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여기에 AO가 2015. 2.경 CK으로부터 위와 같이 문건 10건을 보고받은 행위를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AO의 위와 같은 말과 행위와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내용으로부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관을 활용하여 그 재판관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하라는 지시까지 이끌어낼 수는 없다. 이때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2015. 5.경 CU에게, 2016. 3.경 Y에게 각 전달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도 아니다. 결과가 발생한 근접 원인이 달리 있을 수 없다면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결과가 발생한 근접 원인이 있는데도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인과관계를 바로 살피는 사실인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에서 보았듯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CU와 Y에게 각



전달된 결과가 발생한 것에는 BI의 지시나 AT의 지시라는 근접 원인이 있는데, 이처럼 근접 원인이 있는데도 물건 전달이라는 결과 발생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원거리에 있는 사실에 해당하는 AO의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의 수립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인과관계를 바로 살피는 사실인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AO가 V당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AT의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여부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AT는 2014. 12.경 CK으로부터 V당 TFT 활동 계획,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제기가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위 행정소송에 관하여 검토하려는 계획을 승인하였고, 2014. 12.경 V당 TFT 간사인 CL에게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2015. 1.경 CK으로부터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보고 받았고, 2015. 2.경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았으며, 2015. 2.경 BI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내제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하였고, 앞서 보았듯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에, V당 행정소송이 제기된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변형한 문건이 2015. 5.경 CU에게, 2016. 3.경 Y에게 각 전달되었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AT는 AO와 달리 2014. 12.경 V당 TFT 간사인 CL에게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과, 2015. 2.경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에서 BI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내제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의 주요 내용은 향후 진행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내용을 예상하고 예상해본 각각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평가를 내린 것으로서, 위 문건에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염두에 둔 내용은 없으며, 위 문건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내용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T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초를 수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검사의 주장과 같은 AO의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초 수립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앞서 본 것과 같은 AT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활용 기초 수립 사실은 인정하나,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 관해서는 이와 달리 개별적인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별로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자들의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1) C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사법행정조직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이라는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운영되고 있는데,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이 부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앞서 본 것과 같이 AZ는 사법행정권의 행사로서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CS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속하는 CS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CS법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여 협조 요청에 응하는 사무를 그 자신의 재판사무와 함께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건 당시 CU은 CS법원 수석부장판사였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AT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초를 수립하였다.

③ BI는 피고인 B에게 V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CU을 통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④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AT에게 보고한 후 CU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㉞ 각하는 부적절하고, ㉟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㊱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⑤ 피고인 B은 2015. 5. 26.경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CU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은, 계통구조에 따라 CU에게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 담당 판사인 CY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는 CU의 사무에 속한 법원행정처의 요청 전달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

(1)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CS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CS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피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2015. 5. 26.경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CU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였고, 각하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음에도, 그 후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장 CY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문건



의 내용을 다소 회색하여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CU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물건 전달 행위와 말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를 CY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속하면서 CS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CS법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는 사무를 그 자신의 재판사무와 함께 담당하는 CS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를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2) CY는 CS법원 DM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CU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그 전달을 요청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를 CY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은, CU으로 하여금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사에 협조하게 하는 것이고, CY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



록 유도하는 것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이다.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를 통해 위와 같이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AT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초를 수립하였다.

(5) 위에서 본 것과 같이 CY가 CS법원 DM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이상 당시 법원행정처가 먼저 위와 같이 지적과 권고를 할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6)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AT의 공범으로서 CU에게 전달한, CY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권고 전달 요청 행위는 AT에게 부여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라) 의무 없는 일 하계 함 및 인과관계

(1)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뿐만 아니라 CS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이 법원은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이 부분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CS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자신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을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① 법원조직법은 제40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두고 행정법원장이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0조의2 제4항, 제29조 제4항에서 행정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선임부장판사는 부장판사로 임명된 시기에 따라 해당 법원별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따로 법원별 선임부장판사 보임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수석부장판사는 따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별도의 보임이 필요하다. 즉 행정법원장 권한의 대행을 위하여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보임하여야 하므로, 법원조직법은 제29조 제4항에서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②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을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없다면, 굳이 법원조직법이 위와 같이 그 보임의 근거까지 마련하여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보임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행정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는 헌법 제27조 제1항,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을 요청한 사항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헌법과 법률 기속성에 부합하는 것인지, 혹시라도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것인지 살펴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스스로 판단하여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이 BI의 공범으로서 CU에게, CY에 대한 지적과 권고 전달을 요청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B이 AT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CU에게 CY에 대한 전달을 요청한 내용은, ㉠ 각하는 부적절하고, ㉡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지적과 권고가 합쳐진 것이었는데, CU이 실제로 CY에게 전달한 내용은 각하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지적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② 위와 같이 비록 CU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회색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CU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③ CU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CY에게 위와 같은 지적을 전달할 당시 CY는 위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CY에게 각하를 하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④ CU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듣고 그로부터 받은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T의 공범으로서 CU에게, CY에 대한 지적과 권고 전달을 요청한 행위는 CS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CU이 CY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AT가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지적과 권고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AT의 공범으로서 CU에게, CY에 대한 지적과 권고 전달을 요청한 행위는 CU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은 AT, BA 등과 공모하여²⁸⁾,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할 목적으로 CS

28)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AO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위 재판에 관하여 일정한 권고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AO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 수석부장판사 CU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재판장 CY에게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지적과 권고를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CU으로 하여금 CY에게 위 ①과 같은 지적을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AS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AS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와 공범·상대방

(가)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2015. 5. 26.경 AT의 공범으로서 CU에게 전달한, CY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 전달 요청 행위의 상대방으로, CU뿐만 아니라 CY도 기재되어 있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AT는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BI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하였다.

② BI는 피고인 B에게 V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CU을 통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AT에게 보고한 후 CU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㉞ 각하는 부적절하고, ㉟ 기사를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㊱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 B은 2015. 5. 26.경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⑤ CU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위 문건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 문건이나 그 내용의 전달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다가 위 문건을 파쇄하였고, 각하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음에도, 그 후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장 CY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문건의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말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I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문건을 AT에게 보고할 당시 AT의 위와 같은 우려,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B는 AT의 공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CU에게 전달한 AT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권고는 CY에 대한 전달을 전제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에 CU뿐만 아니라 CY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이 AT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CU에게 CY에 대한 전달을 요청한 내용은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지적과 권고가 합쳐진 것이고, 전달자 CU이 실제로 CY에게 전달한 내용은 각하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지적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비록 CU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희석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CU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CU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CY에게 위와 같은 지적을 전달할 당시 CY는 위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CY에게 각하를 하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지적과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적은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전달자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이 공범과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지적을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지적이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위 지적이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지적이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지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지적이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위 지적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지적의 경위, 그 지적 당시의 상황, 그 지적의 구체적인 내용, 그 지적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B이 CU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문건을 전달하게 된 것은 BI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B은 CU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기에 앞서 AT에게 위 문건을 보고하였다.

② 피고인 B은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한 말은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③ CU이 회식 자리에서 CY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법원행정처를 언급하면서 위 문건 내용의 전달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④ CU이 회식 자리에서 CY에게 한 말은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의 것이었다.

⑤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관윤리강령이 대법원규칙인 이상 판사들은 통상 이에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사가, 다른 판사가 묻지도 않았고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그 판사에게 다가가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통상 일어나기 힘든, 이례



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CU은 CY가 자신의 재판인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CY에게 회식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이례적인 지적을 하였다.

⑥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판사가 다른 판사로부터 이례적으로 먼저 자신의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된 경우, 판사는 통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하게 되고,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다른 판사도 통상 긴장한 채 그 말을 꺼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상대방인 판사 입장에서 다른 판사가 위와 같은 말을 꺼낸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른 판사가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이거나 그 다른 판사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다.

⑦ CU은 회식 자리에서 CS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 CY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일 수 있는 사정은 전혀 없다.

⑧ 사법행정조직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이라는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운영되고 있고, CS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계통구조에 속하면서 CS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각급 법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며, 위와 같은 계통구조가 법원조직법에 따른 것인 이상 판사들은 통상 위와 같은 계통구조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CY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CY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CU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CU이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CY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CY는 CS법원 DM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CU이 전달자로서 CY에게 전달하여, 각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AT의 지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AT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AT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AT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



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초를 수립하였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CS법원 DM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특히 헌법재판소의 한정적·일거적 심판권에 대비되어 법원에는 포괄적 사법권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면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선고하였다면 법원으로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와 같이 사실심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다양하게 펼치는 바탕 위에서 오히려 법률심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AT의 위지적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CY가 CS법원 DM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AT가 먼저 위와 같이 지적 행위를 할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CU이 전달자로서 CY에게 전달한 AT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을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CU은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CY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CY는 CU의 위와 같은 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던 점, ② CS법원 DM부는 2015. 11. 12.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면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선고하였다면 법원으로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B이 CU에게 전달하였던, 앞서 본 문건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판결인 점에 비추어 본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AT가 지적을 통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을 담당하는 CY의 재판의 결론을 유도하였으나, CY는 그 유도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계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CU이 전달자로서 전달한 AT의 지적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2)항 중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

1)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BE이 HA심의판에게 지시한 사항은 HA심의판의 사무에 속한다. 따라서 BA이 피고인 B을 통하여 DC에게 지시한 사항은 DC의 사무에 속한다. 비록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BA의 위와 같은 지시가 그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그 지시 사항이 DC의 사무의 정당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A의 위 지시는 BA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가) 주체 관련성

앞서 본 것과 같이 AL 상임위원 판사가 AS 또는 AZ 또는 BE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일정한 사항을 HA심의판에게 지시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인 AS 또는 AZ 또는 BE 또는 DB실장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의 행위와 지위 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BA은 2015. 9.경 피고인 B에게 V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W지방법원 DA 사건의 재판부가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 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BA이 2015. 9.경 피고인 B에게 C의 심증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



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라,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알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공소장 기재와 같이 BA의 지시에 따라 DC에게 C의 심증을 확인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BA의 지시와 관계없이 DC에게 C의 심증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C의 심증 확인을 요청한 것이 직권의 주체인 AS 또는 AZ 또는 BE 또는 DB실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사정도 달리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DC에 대한 C의 심증 확인 요청은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B의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① 피고인 B의 행위

이 부분과 관련하여 DC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 C의 심증을 파악하게 한 행위, ㉡ C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법리를 설명하게 한 행위, ㉢ C에게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을 전달하게 한 행위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지위 이용에 불과하므로, 공소장 기재 위 ㉠, ㉢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759(DC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DC 검찰 진술조서 2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98(B 진술



서), DC의 법정진술, 3582(DC BG 증인신문조서), 759(DC 검찰 진술조서 1회), 1291(DC 검찰 진술조서 2회), 1820(C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2015. 2.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인 B이 보낸 편지함 내 수신확인 부분을 화면에 올려서 출력한 출력물 수집, 피고인 B이 DC과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C과 DC 사이에 2015. 2. 1.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송수신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C이 W지방법원 CZ부 근무 당시 사용한 PC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DC에게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DC이 그 무렵 C에게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수집되지 않은 점, ㉡ DC은 검찰에서 2회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개조식으로 작성된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아 이를 보면서 C과 통화했고 C에게 이를 이메일로 송부했던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도 진술하였고, 이 법정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자신이 C에게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지에 관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DC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 즉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 받았고 C에게 이를 이메일로 송부했다는 내용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져 나타난 진술로서 이 부분만큼은 신빙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이 법원은 그렇다고 하여 DC의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공소장 기재 위 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는 공소장 기재 위 ㉔, ㉕ 행위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하에서는 공소장 기재 위 ㉔ 행위에 관해서 살펴본다.

②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㉔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㉔ 행위와 관련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D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을 뿐이고, 자신이 C에게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해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관련 사건 법정에서도 BA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에서 본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DC에게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㉔ 행위와 관련하여 인정사실에서 나타났듯, 피



고인 B은 DC으로 하여금, C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서는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B의 DC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 즉 C에게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BA은 2015. 9.경 피고인 B에게 V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의 재판부가 V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라고만 말하면서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C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③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DC은 C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은, C에게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인 DC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전달한, BA의 위 지적 전달 지시 행위는,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C에게 전달하라는 것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2) C은 W지방법원 CZ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DC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C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은, DC으로 하여금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사에 협조하게 하는 것이고, C으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



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이다.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사법행정조직을 통해 위와 같이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4) 게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C이 W지방법원 CZ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이상 당시 법원행정처가 먼저 위와 같이 지적을 할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전달한, C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 전달 지시 행위는 BA에게 부여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 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



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C에 대한 지적 전달을 지시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사항이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하였던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에 정면



으로 반하는 조치에 협조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여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②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DC에게 C에 대한 전달을 지시한 내용은,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DC이 C에게 전달한 내용은 ㉠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은 다르다, ㉡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③ 위와 같이 비록 D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 중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부분을 제거하고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DC은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전달함으로써,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즉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즉 비록 D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DC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④ DC은 피고인 B으로부터 BA의 위와 같은 전달 지시 행위를 전달받고 그에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전달 지시 이행 여부에 관하여 고민을 거듭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C에 대한 지적 전달



을 지시한 행위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고, DC이 C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BA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지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C에 대한 지적 전달을 지시한 행위는 D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은 BA과 공모하여²⁹⁾ 그 직권을 남용하여 DC에게,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지적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DC으로 하여금 C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2) 직권행사의 모습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

29)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AO, AT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위 재판에 관하여 일정한 권고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AO, AT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5. 9.경 DC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본안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받은 후, 이를 X에게 전달하면서 X에게 위 보고 사항을 정리하고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던 점, ② 이에 X는 위 보고 사항을 정리하여 기재하고 청구인용에 따른 예상 파장 및 언론대응 방안 등을 덧붙인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작성하여 2015. 9. 14. 오전경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피고인 B은 이를 살펴본 후 X에게 청구기각의 경우 예상되는 논거 등을 추가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X는 위 문건에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지시한 내용을 추가하여 위 문건을 수정한 다음 2015. 9. 14. 오후경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의 위 지시 행위는, 피고인 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제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검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X에게 정리를 지시한 DC의 보고 사항은, DC이 C과 연락하여 그의 심증을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DC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을 분석하여 보고하라고 X에게 지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 지시 행위 중 DC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사정에 나타나 있듯 피고인 B은 X에게 청구인용에 따른 파장만을 분석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가 추후에 청구기각에 따른 파장도 분석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 지시 행위에 굳이 DC의 위와 같은 보고 사항이 포함될 필요가 없다. 즉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 지시 행위 중 DC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 지시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 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판사 심의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 그의 그간의 고유한 재판사무 경험이 반영된 종합적인 내용이 담기게 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를 판사 심의관으로 보임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이에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비록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지시 행위 중 DC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지시는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그 이외에 청구 인용의 경우와 청구기각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판결의 내용을 예상하고 파장을 분석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X가 작성하여 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X의 위 보고서 보고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게다가 X가 2015. 9. 14.경 피고인 B에게 위 보고서를 보고한 직후 C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바람에 위 보고서는 보고 직후 시의성(時宜性)을 상실하게 된 점, ④ X가 한 주된 일은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판결 결과를 예상하고 파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것으로서, 이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이나 위와 같은 지적 전달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지시 행위는 그 주요 부분이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X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X의 보고서 작성·보고가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지시 행위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3)항 중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범행은 직권의 남용에는 해당하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3)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피고인 B의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이 부분과 관련하여 C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 B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①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



에 반영하게 한 행위, ②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을 DC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한 행위이다.

먼저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②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D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문건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공소장 기재 위 ②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①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B이 DC으로 하여금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공소장 기재 위 ① 행위 중에서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위 ① 행위와 관련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DC으로 하여금 C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 B이 DC을 전달자로 하여 C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하게 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공범·전달자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BA은 2015. 9.경 피고인 B에게 V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의 재판부가 V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라고만 말하면서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C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에 따라 DC은 C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A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 AT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에서 비롯된 BA의 의사,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데, 이는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



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B은 BA의 공범에 해당한다. 한편 DC은 당시 직급, 전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과 달리 공범이라고 볼 수 없고 전달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DC에게 C에 대한 전달을 요청한 내용은,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으로서, 헌법재판소의 V당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경도되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DC이 C에게 전달한 내용은 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은 다르다, ②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다는 내용이다. 비록 D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 중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부분을 제거하고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DC은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전달함으로써,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즉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즉 비록 DC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DC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DC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C에게 위와 같은 지적을 전달할 당시 C은 위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C에게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지적과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



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적은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4)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전달자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이 공범과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지적을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지적이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위 지적이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지적이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지적이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



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지적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지적의 경위, 그 지적 당시의 상황, 그 지적의 구체적인 내용, 그 지적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B이 DC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을 전달하게 된 것은 BA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② DC이 C에게 연락하여 먼저 한 말은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달하면서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다고 말하여 법원행정처를 언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한 말도 필요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주겠다는 것이었다.

③ DC이 C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 B이 그에게 BA의 지시를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라) C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C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DC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DC이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C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C은 W지방법원 CZ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DC이 전달자로서 C에게 전달하여,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BA의 지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BA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사법행정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BA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BA은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AT의 우려,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하여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우려는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인식이 국가기간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에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문제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이, C은 당시 이미 본안 판단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앞서 본 사정에 이를 더하여 보면, BA의 위 지적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DC이 전달자로서 C에게 전달한 BA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을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C은 DC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당시 이미 본안 판단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DC은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지적을 전달함으로써,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즉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C은 DC의 위와 같은 전달



내용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DC이 모두에 꺼낸 말, 즉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한다는 말에 주목하면서 이를 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점, ③ C은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의 결론에 관해서는 당시 V당이 이미 해소된 사회현실이나 분위기를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문언 해석을 중시할 것인지 고민하여 판단을 내렸고, 이유 구성에 관해서는 CS법원 DM부가 2015. 11. 12. 선고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여 판단 권한에 관한 실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판결문을 수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BA이 지적을 통하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C의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유도하였으나, C은 그 유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



범으로서, DC이 전달자로서 전달한 BA의 지적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 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3)항 중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해명자료 작성 및 행사

공소장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4)항과 관련하여 (가) 범행 결의에,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AO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은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내부 지휘라인에 보고된 바 없다'는 허위의 '법원행정처 공식입장'을 정리해 그 내용에 따라 언론 등에 대응함으로써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은폐하기로 계획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계획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그가 X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인 B이 A과 BR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전달하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그러면



서 검사는 위와 같은 사정의 입증을 위하여 1118[2015. 11. 25. B→BR, A 이메일(제목: 공식 입장)(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hwp)], 2066(BR 검찰 진술조서 2회), 2447(BR 검찰 진술조서 3회)을 제출하였고, 위 2066(BR 검찰 진술조서 2회), 2447(BR 검찰 진술조서 3회)에 나타난 BR의 진술은 모두 피고인 B이 X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반대신문이 보장되어 그 신빙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증인 BR의 법정진술, 3535(BR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6(BR BF 증인신문조서 2회), 3568(BR BG 증인신문조서)에 비추어 위 2066(BR 검찰 진술조서 2회), 2447(BR 검찰 진술조서 3회)에 나타난 BR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게다가 798[2015. 11. 30.자 B 이메일(제목: 답장(존경하는 실장님께), 제목: (존경하는 실장님께))], 3586(HO BG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 B은 W공보사태가 발생한 지 몇 시간 후이고, 위 1118[2015. 11. 25. B→BR, A 이메일(제목: 공식 입장)(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hwp)]에 나타난 것과 같이 자신이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A과 BR에게 이메일로 발송할 무렵인 2015. 11. 25. 18:00 무렵 W지방법원 기획법관인 HO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는 HO을 공보관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위 이메일 발송 무렵까지도 W공보사태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3515(법원행정처 공식입장 파일의 문서 정보 자료)에 나타난 문서 생성 시각(2015. 11. 25. 18:13:18경)과 마지막 수정 시각(2015. 11. 25. 18:14:46경) 사이의 짧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B은 스스로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과 같은 내용의 파일을 받아 잠시 살펴본 후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문건을 '법원행정처 공



식입장'이라는 문건으로 만들어 A과 BR에게 송부하였다고 보이기도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 피고인 B이 X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 작성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러한 이상 피고인 B이 A과 BR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계획한 사실이나 법원행정처 관여와 관련된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4)항 기재와 같이 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마. V당 국회의원 AN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1)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2) 직권행사의 모습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CS법원 DM부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그 판결 내용을 AT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AT가 피고인 B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B이 같은 날 X에게 위 판결에 대하여 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인 점, ② 이에 X는 같은 날 바로 위 판결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겠다는 등의 향후 대책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 B의 위 지시 행위는, 피고인 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검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 즉 AT는 CS법원 DM부가 2015. 11. 12.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앞서 본 것과 같이 말함으로써 위 판결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이에 피고인 B이 X에게 위 판결에 대하여 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지시의 내용은, 위 판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 판결에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고, 위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위 대책을 정당화하라는 것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 즉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에도 반한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CS법원 DM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특히 헌법재판소의 한정적·열거적 심판권에 대비되어 법원에는 포괄적 사법권이 인정된다는 법리가 대법원 판례로 확립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하면서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선고하였다면 법원으로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럼으로써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관계가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으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와 같이 사실심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다양하게 펼치는 바탕 위에서 오히려 법률심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다양한 대책을 그야말로 검토만 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었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판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거나 위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먼저 위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상세하게 분석하라고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의 X에 대한, 향후 대책 검토 및 보고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별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앞서 본 사정, 즉 ①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사항이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고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인 점, ② 앞서 본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한다는 내용으로 X가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고, 그 전제로 위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위와 같은 향후 대책을 정당화하는 보고서를 기초로, AT가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위 판결과 관련된 AN고등법원 사건에 대비하라'고 말하여 위 대책을 실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③ 그에 이어서 피고인 A이 2015. 12.경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재판장 DO에게 전화하여 위 항소심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였던 점, ④ 인사이동을 이유로 DO에 대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AT는 '법관 인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위 항소심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제차 지시하였던 점, ⑤ 그 후 피고인 A이 2016. 3. 3.경 위 항소심 재판의 후임 재판장 Y에게 위 항소심 재판에서의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제점 검토 및 향후 대책 구체화·정당화 지시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고, X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 즉 Y에 대한 지적과



권고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향후 대책 구체화·정당화 지시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은 AT와 공모하여³⁰⁾,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할 목적으로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그 문제점 및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 판결에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위와 같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30)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O, BA이 X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AO, BA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AO는 2015. 11. 26.경 피고인 B으로부터 CS법원 DM부의 1심 판결(CV)에 대한 항소 제기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법관 대상 헌법교육 개편 방안을 보고받았는데, 이때 피고인 B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② AT는 2015. 12. 1.경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BA 등에게 '위 1심 판결과 관련된 AN고등법원 사건에 대비하라'고 말하여 위 1심 판결의 항소심 재판부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설명자료 등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③ 피고인 A,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2015. 12.경 AT가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에서 위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장 DO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이 DO를 만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하여 ㉞ 각하는 부적절하고, ㉟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



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㉔ 법원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④ 피고인 A은 2015. 12.경 전화로 DO에게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였는데, DO가 '곧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위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A은 이를 AT에게 보고하였고, AT는 피고인 A에게 '그렇다면 법관 인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때 다시 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⑤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AT는 2016. 2. 12.경 그가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이 위 사건의 후임 재판부(재판장 Y)에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⑥ 그 후 피고인 B은 2016. 2. 16.경 피고인 A에게, Y에게 전달할 문건을 전달하였다.

⑦ BA은 2016. 2. 25.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로부터 AT의 앞선 결정에 따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2016. 3. 3.경 항소심 재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 A은 위 보고 내용과 같이 2016. 3. 3.경 위 사건 재판장 Y에게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문건과 그에 첨부된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T가 2016. 2. 12.경 위 사건의 후임 재판부(재판장 Y)에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결정할 당시, AT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제된 함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T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6. 3. 3.경 Y에게 문건을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AT의 공범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B은 AT가 2016. 2. 12.경 위와 같이 결정할 당시, AO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AT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T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2016. 2. 16.경 피고인 A에게, Y에게 전달할 문건을 전달하였으므로, 역시 AT의 공범에 해당한다. BA은 AZ이 AU으로 바뀐 후인 2015. 2. 25.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로부터 AT의 앞선 결정에 따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2016. 3. 3.경 항소심 재판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으므로, 역시 AT의 공범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A이 AT의 공범으로서, 2016. 3. 3.경 Y에게 전달한 내용은,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서 지적과 권고가 합쳐진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Y에게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를



전달할 당시 Y은 위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Y에게 위와 같이 지적하고 권고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지적 및 권고와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적과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지적과 권고를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지적과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위 지적과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지적과 권고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의 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지적과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지적과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지적과 권고의 경위, 그 지적과 권고 당시의 상황, 그 지적과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지적과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A은 당시 법원행정처 AI실장이었다.

② 피고인 A은 당시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상실하는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건 및 그에 첨부된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였다.

③ Y은 실제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순간 이 때문에 피고인 A이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위 문건 및 그에 첨부된 복사본을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위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라) Y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Y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위 문건 및 위 복사본을 전달하였던 것은, 피고인 A이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말하면서 위 문건 및 위 복사본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Y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피고인 A 개인의 지적과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Y은 AN고등법원 DP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A이 AT의 공범으로서, Y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AT의 지적과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AT의 위 지적과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AT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AT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



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초를 수립하였다.

(5) 피고인 A은 당시 앞서 본 것과 같은 AT의 우려,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가 그에 내재된 합의를 모르고 재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우려가 국가기간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본다.

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것만으로 이미 모든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법원행정처로서는 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면 적어도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한 대법원 판례, 특히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면서 헌법재판소는 한정적·열거적 심판권을 가질 뿐이고 이에 반하여 법원은 포괄적 사법권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당연히 알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원행정처로서는 그렇지만 그가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와 별개로 다른 이유를 들면서 헌법재판소의 V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결정에 따라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일 그러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법원행정처로서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대법원 재판부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분장에 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재고하게 되리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다가 인정사실에 나타난 것과 같이, Y은 피고인 A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으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은 문건 및 그에 첨부된 복사본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CS법원 DM부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판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앞서 본 사정에 이를 더하여 보면, AT의 위 지적과 권고 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A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위 지적과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부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지적을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Y은 피고인 A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들으면서 앞서 본 것과 같은 문건 및 그에 첨부된 복사본을 전달받기 전에 이미 CS법원 DM부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판결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점, ② Y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정당기속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후에는 그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성이 강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후에도 그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에서까지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



정의 정당성을 다투면서 해산된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면 그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이 후퇴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고 판결문을 작성하였던 점, ③ 이에 Y은 V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고민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물건 중 국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기재된 부분을 읽기도 하였으나, 위 부분에는 위와 같은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담겨있지 않아 심증 형성 과정에서나 판결문 작성 과정에서나 이를 실제로 참고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AT가 지적과 권고를 통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Y의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유도하였으나, Y은 그 유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지적과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5)항 중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바.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Z지방법원 1심 재판

1)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축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소결 부분 중 DX가 의무가 없는데 하였고 이로써 재판권 행사를 방해 당했다고 기재된 일(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재판부 합의를 반복하고 다시 합의를 열어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의 결론을 설득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판결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미루기로 협의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추정한 일)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B이 BA의 지시에 따라 DX로 하여금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과 같은 Z지방법원 DY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DX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그 소결 부분에 기재된 일을 하게 하여 이로써 그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고, 그 범행사실 부분에 기존 합의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DX로 하여금 인정사실에서 본 행위를 하게 하여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축소사실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B 측의 변론 내용에 비추어 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도 피고인 B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위 축소사실(피고인 B이 BA의 지시에 따라 DX로 하여금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과 같은 Z지방법원 DY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



적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차장이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BA은 2016. 1.경 피고인 B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 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장인 DX에게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6.경 DX에게, '헌법연구회의 논의 결과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고, 그 결론은 청구기각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③ 이에 DX가 피고인 B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이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되묻자, 피고인 B은 DX에게 청구기각을 뒷받침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관련 논문을 소개하였다.

④ 피고인 B은 2016. 1. 6.경 DX와 위와 같이 대화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V당 지방의원 Z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문건을 작성하여 BA에게 보고하였고, 그 무렵 AT에게 DX와 통화하여 법리를 전달하였다고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A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 BA의 의사, 즉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청구기각을 권고한다는 의사를 인식하고 이를 DX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BA의 공범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2016. 1. 6.경 DX에게 전달한 내용은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서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DX에게 위와 같은 권고를 전달할 당시 DX는 위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DX에게 위와 같이 권고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권고와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



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권고를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위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권고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권고의 경위, 그 권고 당시의 상황, 그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B은 DX에게 '헌법연구회의 논의 결과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사법부에 있고, 그 결론은 청구기각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B이 DX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은 BA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 B은 2016. 1. 6.경 DX와 위와 같이 대화한 내용을 상세하게 담은 'V당 지방의원 Z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문건을 작성하여 BA에게 보고하였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은 법관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관윤리강령이 대법원규칙인 이상 판사들은 통상 이에 따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사가, 다른 판사가 묻지도 않았고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그 판사에게 다가가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지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권고를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통상 일어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DX가 자신의 재판인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DX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이례적인 권고를 하였고, 더욱이 10년 만에 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권고를 하였다.

③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판사가 다른 판사로부터 이례적으로 먼저 자신의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된 경우, 판사는 통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하게 되고,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다른 판사도 통상 긴장한 채 그 말을 꺼낸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상대방인 판사 입장에서 다른 판사가 위와 같은 말을 꺼낸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른 판사가 재판의 결론에 관하



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이거나 그 다른 판사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다.

④ 피고인 B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일 수 있는 사정은 당시에 전혀 없었다.

⑤ 피고인 B이 DX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할 당시 헌법연구회를 소재로 삼기는 했으나, 아무리 연구회 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판사가 다른 판사에게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저러한 내용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권고하는 것은 역시 이례적인 일이고, 그러한 이상 상대방인 DX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으며, AL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B에게 달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과 관련된 직무상 필요가 있을 수 없는 이상 상대방인 DX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그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다른 사람은 법원 행정처 관계자라고 보일 수 있다.

⑥ 게다가 당시 피고인 B은 AL 상임위원 판사로서 대법원 건물에 근무하면서 'HP'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DX도 당시 피고인 B이 AL 상임위원 판사로서 대법원 건물에 근무하면서 'HP'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라) DX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D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 B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지시나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D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 없는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DX는 Z지방법원 DY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DX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BA의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BA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A은 당시 V당이 이미 해산된 사회현실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서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이 사법부에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



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그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라)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한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면, 설령 그 판단의 결론과 이유가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그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기에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의 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한 경우, 위 판사가 당시 그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이러한 판단이 아니라 저러한 판단을 내려야겠다는 심증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권고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이러한 판단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끝내 자신이 형성한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



어 결국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위 판사의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본다.

민사소송법 제198조가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을 한다고 정한 것은, 판사가 심리를 하여 바로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증을 충분히 형성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재판을 받는 당사자나 국민의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은 이미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형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이라고 하여 언제나 더 이상 바뀔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변론종결 후 판사가 사건 기록을 차분하게 다시 검토하면서 변론종결 시점까지 형성하였던 심증을 바꾸는 일이 간혹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비추어 변론종결 후에는 판사의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바로 판결 선고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화되었고, 이때 당사자가 추가로 의견서나 증거를 제출하여 위 판사의 심증을 뒤흔들어 변론을 재개하게 하는 것은 소송법이 예정한 것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이 위 판사의 심증과 다른 의견을 밝혀 위 판사의 심증을 뒤흔들어 위 판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해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밝히는 것은 합의부 제도가 예정한 것이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도 아니고 합의부의 구성원도 아닌 BE이 위 판사에게 어떠한 권고를 함으로써 위 판사의 심증을 뒤흔들어 위 판사가 BE의 위 권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 권고에 따른 의견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끝내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도록 하고 결국 그로 하여금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판사의 구체적인 재판권을 현실적으



로 방해한 것이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DX는 Z지방법원 DY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당시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심증을 형성하고 다른 Z지방법원 DY부 구성원들과도 상당한 정도로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논의를 진행하여 청구인용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이었다는 점, ② 이에 DX는 2016. 1.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로부터 앞서 본 것과 같은 말을 듣고서, 피고인 B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이 맞는 것이냐'는 취지로 되물기까지 하였던 점, ③ 그런데 DX는 피고인 B와의 통화 후 청구인용이라는 잠정 결론을 재검토하고 청구기각을 검토하여 보았던 점, ④ DX는 청구기각을 검토한 후 배석판사들에게 청구기각 의견을 밝혔으나 그들은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점, ⑤ 이에 DX는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어 배석판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추정하였고, 이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청구기각 권고행위로 인하여 DX가 자신의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마) AO, AT,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더 나아가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AO, AT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DX에게 일정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AO, AT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BA의 지시에 따라 DX에게 전화한 2016. 1. 6.경으로부터 두 달가량이 지난 2016. 3.경 BA이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변경된 재판부에 V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이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Z지방법원 장으로 부임한 DO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DX에게 일정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는 BA의 앞서 본 지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DX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위법·부당한 권고를 함으로써, DX로 하여금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에 따른 Z지방법원 DY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여 DX의 위 재판에 관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³¹⁾.

2)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AS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AS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AS, AZ, BE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

31)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6)항의 (라) 소결 부분에는 DX로 하여금 변론을 재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DX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위 항의 (나) 1차 재판 개입 부분에는 DX가 변론을 재개하였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하다고 권고하는 경우, 이때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나)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BA은 2016. 3.경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재판장을 비롯하여 그 구성원들이 변경된 Z지방법원 DY부에 Z지방법원 DU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V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Z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DO에게 전화하여 'V당 행정소송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이 있는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DO로부터 '재판부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절하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BA에게 보고하였고, BA은 2016. 3. 7.경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이 친분이 있는 재판장 AA에게 직접 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향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승인하였다.

③ 피고인 B은 2016. 4. 29.경 BA으로부터 AA에게 위 사건에서 청구기각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다시 받았고, 이에 그 무렵 AA에게 전화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6. 5. 2.경 AA과의 통화 사실을 BA 주재 실장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BA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 BA의 의사,



즉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청구기각을 권고한다는 의사를 인식하고 이를 AA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BA의 공범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2016. 4. 29.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AA에게 전달한 내용은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서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AA에게 위와 같은 권고를 전달할 당시 AA은 위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고, 그럼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AA에게 위와 같이 권고한 것이었다. 이 법원은 이때 위 권고와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 즉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3) 직권행사의 모습

(가)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가 공범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이 법원은 그 권고를 전달받은 상대방, 즉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위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위 권고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위 권고가 그 주체인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공범이나 전달자의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에 따라 위 권고가 법원행정처의 위 지적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에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위 권고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그 권고의 경위, 그 권고 당시의 상황, 그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 그 권고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이 부분 인정사실에서 나타났거나, 이 법원이 이와 관련하여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에 경험칙을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본다.

① 피고인 B은 AA에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B이 AA에게 위와 같이 말하게 된 것은 BA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피고인 B은 2016. 5. 2.경 AA과 위와 같이 통화한 사실을 BA 주재 실장회의에서 간략하게 보고하였다.



②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가, 다른 판사가 묻지도 않았고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그 판사에게 다가가 그 판사의 재판에 관하여 저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권고를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통상 일어나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AA이 자신의 재판인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A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이례적인 권고를 하였고, 더욱이 AA과 함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때로부터 약 8년 만에 그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권고를 하였다.

③ 위 법관윤리강령에 비추어 판사가 다른 판사로부터 이례적으로 먼저 자신의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지적하는 내용의 말을 듣게 된 경우, 판사는 통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하게 되고, 위와 같은 말을 꺼내는 다른 판사도 통상 긴장한 채 그 말을 꺼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상대방인 판사 입장에서 다른 판사가 위와 같은 말을 꺼낸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다른 판사가 재판의 결론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이거나 그 다른 판사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다.

④ 피고인 B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에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보일 수 있는 사정은 당시에 전혀 없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 B은 AA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부속실 행정관은 AA에게 AL 상임위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이야기하며 AA에게 전화를 연결하였다.



⑤ 이에 상대방인 A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말을 꺼냈다고 보일 수 있으며, AL 상임위원 판사인 피고인 B에게 달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의 결론과 관련된 직무상 필요가 있을 수 없는 이상 상대방인 A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이 그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그 다른 사람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라고 보일 수 있다.

⑥ 게다가 당시 피고인 B은 AL 상임위원 판사이자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서 밀접하게 근무하고 있었고, A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자 이를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라고 여겼다.

(라) AA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AA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고인 B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지시나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AA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 없는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AA은 Z지방법원 DY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



인 B이 공범으로서, AA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BA의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BA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4)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BA은 당시 V당이 이미 해산된 사회현실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서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이 사법부에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은 당사자의 주장과 그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지적권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권리행사방해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그 판사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가 실제로 그 권고를 제쳐둔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6. 4. 29.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AA에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법원행정처의 입장으로 여기기는 하였으며,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17년에 있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인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잠시 느꼈던 점, ② 그러나 AA은 금방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을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고, 배석판사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2016. 5. 19.경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과 달리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BA이 권고를 통하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을 담당하는 AA의 재판의 결론을 청구기각으로 유도하였으나, AA은 그 유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검사가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사실을 각기 다른 측면에



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검사는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6)항 중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AB고등법원 AC부 항소심 재판

공소장에는 "피고인 A은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무렵 EA에게 전화하여 '그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헌법적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내줄 테니 그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달라'고 말하여 EA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B을 통해 EA에게 이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 기재된 문건을 보내주었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EA는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문건 내용을 검토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1842(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2491(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802(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회), 3294(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회),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595(EZ BG 증인신문조서), 2819(EZ 검찰 진술조서 4회), 3144(EZ 검찰 진술조서 5회), 2530(B 진술서)을 제출하였다.

위 3545(A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49(A BF 증인신문조서 4회), 3564(A BF 증인신문조서 5회), 1842(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회), 2491(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2802(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8회)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진술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EA에게 전화하여 승낙을 받았고,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EA에게 문건을 보내줬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3592(EA BG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EA의 진술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승낙을 한 사실도 없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서로 배치된다.

한편 3530(B BF 증인신문조서 1회), 3534(B BF 증인신문조서 5회), 3538(B BF 증인신문조서 6회)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진술은 EA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이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거나 문건을 보내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EA에게 전화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한 3592(EA BG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EA의 진술은 피고인 B으로부터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받거나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으나,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게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 핵심 부분이 서로 배치된다.

이 법원은 EA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3592(EA BG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 EA의 법정 진술 당시 태도에, 피고인 A이 관련 사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EA의 위 진술이 가장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모두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고 본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배척하는 이상 이 법원은 피고인 A의 위 진술의 연장선에 있는 3294(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회), 3485(EZ BF 증인신문조서), 3595(EZ BG 증인신문조서), 2819(EZ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회), 3144(EZ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5회), 2530(B 진술서)의 신빙성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EA에게 전화한 사실이나 EA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이 EA에게 위 재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면서 문건을 보내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법원은 EA에게 직권이 행사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E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범행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결국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7)항의 E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범행은 직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본다.



아. V당 국회의원 상고심 재판

1)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가 헌법 담당 GS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가 AL 상임위원 판사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2)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그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② 이에 따라 X는 2016.



6. 8.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와 같은 판단 권한이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BA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의 위 지시 행위는, 피고인 B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검임 해제 후 판사로써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더하여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반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의 구분을 벗어나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는 것도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고 본다.

(3) 법원조직법은 제2편에서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심판권에 관하여 정한 후 대법관회의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13조, 제14조, 제16 내지 18조), 그 다음에 대법원의 기관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RV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제19 내지 제22조), 그 후 재판연구관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제24조), 편을 달리하여 제7편에서 대법원의 기관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설령 같은 대법원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 자체가 구분되고, 그 사무의 내용도 대법원 재판사무 보조사무와 사법행정사무로 구분되며, 오직 대법원장에 이르러서야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이 교차된다. 이로써 대법원의 재판사무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될 수 있고, 특히 대외관계와 관계된 업무를 그 사무의 내용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로부터 대법원의 재판사무가 분리되어 수행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 연구관과 판사 심의관은 그 임무가 다르고, 판사 연구관이 특정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선임 또는 수석재판연구관, 대법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시'는 '지도'에 훨씬 가까운 것이어서 판사 심의관이 상급자로부터 받는 '지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비록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이 판사 심의관과 판사 연구관 모두에게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의 내용이 다르다고 본다. 판사 심의관에게는 대법원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대법원 사건



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되나, 판사 연구관에게 부여된 대법원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에는, 판사 심의관을 비롯하여 대학 교수 등에게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사이에 그 조직 및 사무의 내용이 구분되어 있고, 오직 대법원장에 이르러서야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이 교차되므로, 설령 법원행정처장이나 법원행정처차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대법원장이 아닌 이상,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판사 심의관에게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대법원 재판사무의 독립이 의심을 받게 만들 수는 없다. 따라서 판사 심의관의 근본 임무는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대법원 재판사무의 독립을 위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 사이를 구분한 취지에 비추어 판사 심의관에게는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 않은 이상 먼저 나서서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 않을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사 연구관은 판사 심의관과 다르다. 판사 연구관의 근본 임무는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빠뜨림 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입론을 모두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판사 연구관은 그것이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빠뜨림 없이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있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사 연구관 보임 취지에 비추어 판사 연구관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무에, 판사 심의관을 비롯하여 대학 교수 등에게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② 이에 따라 X는 2016. 6. 8.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와 같은 판단 권한이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BA에게 보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AD를 비롯한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판사 심의관인 X에게 먼저 나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B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X를 상대로,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반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의 구분을 벗어나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토 및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

(5)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EE은 2016. 6. 3.경 이전에 이미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을 6월 전합 소위 후보 사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었고, 위 사건에 대한 전합후보안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CD, AD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② CD, AD은 2016. 6. 9.경 X가 작성한 위 보고서의 내용과 반대로 총괄재판연구관 회의에서 위 사건을 전합 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던 점, ③ 결국 위 사건은 2016. 6. 13.경 전합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 소위에서 AS 및 대법관들에 의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가 검토되었고, 전합 소위는 위 사건을 이른바 '전합 보고 사건'으로 선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6)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



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재판 개입'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BA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X로 하여금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인 점, ② 판사를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보임하여 그에게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 것에 친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 사항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일 것이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판사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할 수 있고,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통하여 판사 심의관이 향후 재판사무를 폭넓게 이해하면서 수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위험성을 감수한다는 것이 바로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인데,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는 점, ③ 피고인 B은 2016. 6. 8.경 X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BA에게 보고하였고, 같은 날 BA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에 위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BS실과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다'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X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대한 권고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X에 대한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BA와 공모하여³²⁾, 그 직권을 남용하여 X에게, V당 국회의
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
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지
시에 따른 검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의 현저한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과 이에 이은 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
②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
사·연구 권고가 AS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가) 주체 관련성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관하여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가 AS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의 사무에 해

32)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AO, AU이
B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X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지시를 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
실에 대하여는 AO, AU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



당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에서 누구의 사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AZ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고 BE이 AZ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과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가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에 있어서 구분되는 점에 주목하여 AZ과 BE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AL 상임위원 판사는 설령 그 수행이 AS 또는 AZ 또는 BE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고, AS 또는 AZ 또는 BE의 지시에 따라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권고 또는 권고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AS 또는 AZ 또는 BE의 지시 없이 AL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은 지적과 권고 또는 권고를 하거나, AL 상임위원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위 2)항에서 본 범위를 벗어나는 지적과 권고 또는 권고를 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본다.

(나) 내용 관련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할 수는 있는데, 법원행정처가 해당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이렇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는 경우,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와 직권의 행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사건(이하 '이 상고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



여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AD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① 피고인 B이 2016. 5. 25.경 AD에게 연락하여 '이 상고사건이 AS님 및 AZ님, BE님의 관심 사안이니 향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연구 및 검토 과정에서 참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행위(피고인 B의 행위)와 AD이 2016. 6. 3.경 EE에게 '이 상고사건은 AS이 관심을 갖는 중요 사건이니 위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잘 챙겨보고 신건연구관이 지정되면 즉시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지시한 일(AD이 한 일), ② 피고인 B이 2016. 6. 8.경 이메일에 X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BS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한 행위(피고인 B의 행위)와 AD이 2016. 6. 8.경 피고인 B에게 '수석연구관계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검토하고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행위(AD이 한 일), ③ AD이 2016. 8. 9.경 EF으로부터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보고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EF으로부터 전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준 행위(AD이 한 일)와 피고인 B이 위 내용을 AU에게 보고한 행위(피고인 B의 행위)가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2016. 5. 25.경 BA의 지시에 따라 AD에게 '이 상고사건이 AS 및 AZ, 차장의 관심 사안이니 잘 챙겨보라'고 말한 사실 및 AD이 2016. 8. 9.경 EF으로부터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보고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EF으로부터 전해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내용을 AU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검



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더 나아가 공소장의 위 ① 부분 기재와 같이 '향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연구 및 검토 과정에서 참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인정사실에 비추어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을 다시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2016. 5. 25.경 AD에게 '이 상고사건이 AS 및 AZ, 차장의 관심 사안이니 잘 챙겨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한 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내용의 말이어서 그 내용상 그로 인하여 AD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말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공소장의 위 ②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와 합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2개월이 넘는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한 말로 인하여 AD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한 말에 공소장의 위 ② 부분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를 합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과 관련하여 AD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이 법원은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중 공소장의 위 ①, ③ 부분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하에서는 공소장의 위 ②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라) 공소장의 위 ② 부분 중 X의 앞서 본 보고서를 CD에게 전달하게 한 행위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2016. 6. 8.경 이메일에 X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BS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한 행위가 피고인 B의 행위로 기재되어 있고, AD이 2016. 6. 8.경 피고인 B에게 '수석연구관계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검토하고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일이 피고인 B의 위 행위로 인하여 AD이 하였다는 의무 없는 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이메일을 AD에게 발송한 사실, AD이 위와 같이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 행위에 A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CD에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A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메일을 받은 후 자의로 그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CD에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이메일 발송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이 CD에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장의 위 ② 부분 중 AD이 위와 같이 CD에게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한 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소장의 위 ② 부분 중 AD이 위 보고서를 검토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마)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 순경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하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② 이에 따라 X는 2016. 6. 8.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하여,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와 같은 판단 권한이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BA에게 보고하였던 점, ③ 피고인 B은 2016. 6. 8.경 BA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에 X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BS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하였던 점, ④ AD은 2016. 6.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BQ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보고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이에 비추어 보면, 이때 행위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AD을 상대로 이 상고사건 재판사무 보조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선언하는 데에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며,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조사·연구를 하도록 권고하는 것이고,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인바, 위 둘을 비교하였을 때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AD에게 전달한 BA의 위와 같은 권고는 BA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권고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3) 직권행사의 모습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판사 연구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본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2016. 6. 8.경 BA의 지시에 따라 이메일에 X가 작성한, 앞서 본 보고서를 첨부한 다음 'BS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하였던 점, ② AD은 2016. 6.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BQ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위 보고서를 보고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보고서를 전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AD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전달한 BA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권고 행위는, BA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



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2) AD을 비롯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서는 이 상고사건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조사·연구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AD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BA의 권고 행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 즉 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현저한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과 이에 이은 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 ②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해당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신속한 조사·연구 권고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는 설령 같은 대법원 건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 자체가 구분되고, 그 사무의 내용도 대법원 재판사무 보조사무와 사법행정사무로 구분되며, 오직 대법원장에 이르러서야 그 조직과 사무의 내용이 교차된다. 이로써 대법원의 재판사무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행될 수 있고, 특히 대외관계와 관계된 업무를 그 사무의 내용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로부터 대법원의 재판사무가 분리되어 수행될 수 있게 되는바, 설령 BE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대법원장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이 권고권한을 벗어난 권고행위를 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 사이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대법원 재판사무의 독립의심을 받게 만들 수는 없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 연구관의 근본 임무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빠뜨림 없이 자료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가능한 입론을 모두 연구하는 것 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판사 연구관이 그 조사·연구에 따라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사 심의관을 비롯하여 대학 교수 등에게 의견을 구할 것이고, 스스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의견을 구하지 않을 것이니, 먼저 나서서 위와 같은 권고 행위를 할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이 법원은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 연구관이 해당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법원행정처가 먼저 판사 연구관에게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적절한 판단일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경우, 위 판사 연구관을 비롯한 다른 판사 연구관이 모두 실제로 그 권고를 제쳐둔 채 자의로 조사·연구 업무를 하였다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비록 AD이 2016. 6.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앞서 본 이메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BQ에게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위 보고서를 보기는 하였으나, 위 이메일에 첨부된 보고서의 내용과는 달리 CD, AD은 2016. 6. 9.경 총괄재판연구관 회의에서 이 상고 사건을 전합 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AD의 위와 같은 회신은 그저 이 상고사건의 진행 경과를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일 뿐이라고 보이는 점, ② 위 보고서는 이 상고사건의 보고연구관인 EF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던 점, ③ 결국 이 상고 사건은 2016. 6. 13.경 전합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 소위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가 검토되었고, 전합 소위는 이 상고사건을 이른바 '전합 보고사건'으로 선정하였



던 점, ④ 이 상고사건은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본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BA이 권고를 통하여 이 상고사건 재판사무를 보조하는 AD의 조사·연구 방향을 유도하였으나, AD은 그 유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8)항 중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중에서 AD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일(앞서 본 공소장의 ② 부분 중 일부)에 관한 부분은 직권의 남용은 인정되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5. V당 행정소송 관련 심증 누설 등(피고인 C)

가. 비밀누설

1)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



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결을 선고하기도 전에 판사가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심증을 누설한 경우, 재판을 받는 당사자, 특히 패소하였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패소한 당사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되면 그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그 판결에 승복할 수 없게 되기 마련이다. 설령 재판을 받는 당사자, 특히 패소하였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패소한 당사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이 불러일으켜지게 된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벌써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국가의 재판기능을 위하여 판사는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 판결을 선고하기도 전에 판사가 법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신의 심증을 말하는 것은 판결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국가의 재판기능을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변론종결 단계에 이르게 되면 곧바로 판결에 이를 정도로 심증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은 아직 선고되지 않은 판결의 결론을 직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정보이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DC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비록 피고인 C이 DC에게 자신의 심증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



니고, 아직 최종적인 합의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잠정적인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자체로 피고인 C의 심증을 추지할 수 있게 하고 변론종결 이후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것이 잠정적인 심증이라고 하더라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이 DC에게 누설한 자신의 심증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인지 여부

가) 관련법리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사항을 누설한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356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도44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려면 그 비밀은 직무담당자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이어야 한다. 따라서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자신의 추상적인 의견은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와 같은 추상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 표시되면 '직무담당자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외부화·구체화되어 고정성을 가지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사실로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에 대하여 공개행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각 법을 합쳐 '공무원법'이라 한다). 공무원이 이러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이를 넘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인 비밀엄수의무 위반보다 불법의 질과 정도에서 높은 것이어야 하고 형법에 의한 제재 또한 보충적이어야 하므로, 형법 제127조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보다 좁고 엄격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만일 형법상 '직무상 비밀'의 개념을 비공지성과 보호필요성이라는 실질적인 보호가치의 관점에서만 파악한다면 공무원법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이라는 요건이 형해화되어 징계사유보다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형법 제127조의 직무상 비밀은 직무와 관련된 모든 비밀이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내지 '직무상 지득(知得)한' 비밀, 즉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위나 자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공무원에게 제공된 비밀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직무상 비밀은 개념적으로 공무원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사실을 전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자신의 추상적인 의견은 외부로부터 유래한 사실이 아니므로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비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들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법은 국가기밀의 형태를 '사실·물건 또는 지식'에 한정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제2호),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의 형태를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에 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국가보안법은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군



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나목에서는 이에 한정하지 않고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라고만 규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나목의 국가기밀에 대하여도 "그 기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서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일 경우에 한정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의 객체는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 또는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제317조 제1항, 제2항). 위와 같은 규정들은 개념 자체로 내부적·추상적인 의견이 아닌 외부화·구체화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법원조직법, 법원공무원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도 보호대상인 비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3) 형법은 국민에게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 법익을 보호하는 한편 범죄로 규정한 행위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형벌로써 법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명백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원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



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명확성을 확립함으로써 공무원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공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해석도 이러한 형법의 기능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고, 국가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며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가능해진다.

직무담당자는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필연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내심의 의견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 의견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무집행의 초기부터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점 변해가기 마련이다. 또한 처음부터 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안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때때로는 실현가능성이 별로 없는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며, 심지어 특정 안이 결정된 경우에도 여론이나 관련 기관의 의견에 따라 철회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직무집행의 과정에서 갖게 되는 직무담당자의 추상적인 의견은 그것이 공표되기 전에 아직 내심에 머물러있는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특정성·고정성조차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추상적인 의견까지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최소한의 특정성·고정성조차 없는 사항이 공무상비밀로서 보호받게 되어 형법상 구성요건개념이 불확정적이고 부당하게 확장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의견 자체의 보호가치가 큰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그가 갖는 의견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이 간접적으로 추지당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되어 상시적으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어떠한 의견도 표현할 수 없게 되어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받게 될 위험이 있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혼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갖게 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부와의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하거나 어떠한 의견도 표현함이 없이 그저 영혼 없는 소극적·기계적 직무수행자로서만 기능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공무원에게 비밀엄수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공무원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지득한 사실에 한정하여야 하고, 직무집행 과정에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까지도 비밀엄수 의무의 대상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4) 직무담당자가 직무집행 과정에서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도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직무담당자가 그 의견을 외부에 표시하여도 그 의견은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 아니어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더라도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직무담당자가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이 실질적으로 보호가치가 있고 직무담당자가 이를 누설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침해한 경우에는 위 누설행위는 성실의무, 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의 위반 내지 위신 손상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할 수 있다. 또한 직무담당자가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을 외부에 표시한 경우 이를 직무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무원인 제3자의 입장에서는 '직무담당자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외부화·구체화되어 고정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자체는 제3자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제3자는 직무집행상 비밀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고 위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있다³³⁾.

나)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C이 DC에게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취지인바, 위 내용 자체는 피고인 C이 W지방법원 CZ부의 재판장으로서 W지방법원 DA 사건을 담당하여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일원으로서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에 해당하고 피고인 C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이 DC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DC의 입장에서는 '재판장 C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외부화·구체화되어 고정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DC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하므로 DC이 직무집행상 비밀을 지득하였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위 발언 내용에 피고인 C의 외부로부터 유래한 구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

3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은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책임자의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인 의견이고 잠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더라도 그 실질적 보호가치만을 살펴 공무상 비밀을 인정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안에서 피고인은 수사를 직접 담당한 직무담당자가 아닌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수사책임자인 담당 검사의 의견을 부장검사를 통하여 보고받았을 뿐인바, 수사책임자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정보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추상적인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외부화·구체화되어 고정성을 가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그것을 직무상 알게 된 이상 피고인은 직무집행상 비밀을 지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앞서 살펴본 법리가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 C이 내심에서 자연스레 갖게 된 추상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비록 그와 같은 의견이 변론종결 이후의 판사의 심증이고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C이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배석판사에 대한 판결문 수정 요청

1) 축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판결문은 4차에 걸쳐 수정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첫 번째 수정을 '1차 수정', 두 번째 수정을 '2차 수정', 세 번째 수정을 '3차 수정', 네 번째 수정을 '4차 수정'이라고 한다),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1 내지 2차 수정에 앞서 DC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나 부속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문건의 취지가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컴퓨터 파일에 옮겨 적도록 한 사실 또는 4차 수정에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피고인 C이 DD에게 자신이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수정한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및 판결문 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다거나,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반영해 판결문의 일부 설시를 삭제하라고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1 내지 3차 수정³⁴⁾을 하였다는 것과 DD으로 하여금 4차 수정을 하게 하였다는 것도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축소사실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C 측의 변론 내용에 비추어 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도 피고인 C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위 축소사실을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1) 이 법원은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면 헌법 제27조 제1항과 제103조,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의 근거 조항인 법원조직법 제30조 제2항과 제27조 제3항의 해석상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사법행정사무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식과 권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앞서 본 것과 같이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은 심급 제도를 마련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재판을 그 상급심에서 바로 잡도록 하고 있으나,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되고, 또한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3) 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는 과거에 판사 단련 과정을 마련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고 있고,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도 남아있으며, 무엇보다 판사의 연임심사,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등 판사의 인사 사무가 남아있는데,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

34) 피고인 C은 1 내지 3차 수정을 거쳐 3차 수정 판결문을 DD에게 송부하였는데, 피고인 C의 직권행사를 기준으로 보면 1 내지 3차 수정이 하나의 직권행사를 이루게 되므로, 1 내지 3차 수정을 묶어서 판단한다.



무성적과 자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를 검토하며, 지방법원장이 그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4) 판사의 재판은 해당 판사의 직업적 단련 정도에 따라 충실하게 수행되지 못할 수 있다. 지방법원 배석판사는 직업적 단련이 충분하지 못하여 쟁점이 많거나 선례가 없는 어려운 사건의 처리를 유달리 어렵게 여겨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고, 특정 사건을 검토하여 합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일부 사항에 관하여 검토를 빠뜨린 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에 내재한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가 작성한 판결문의 설시나 증거의 취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쟁점이 많거나 선례가 없는 어려운 사건의 처리 방향을 권고하거나 자신이 파악한 쟁점의 소재를 알려줄 수 있고,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검토를 빠뜨린 일부 사항을 지적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의견에 내재한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 그가 작성한 판결문의 미흡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스로 수정한 판결문을 제시하며 이런 내용으로 작성하자고 권고할 수 있다고 볼 필요성이 있다. 즉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폭넓은 지적 및 권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5) 물론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고,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비추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재판장과 합의



부원은 대등하고, 재판장의 권한은 합의부원에 대하여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부를 대표하여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행사되는 것이다. 물론 기일 지정과 같이 소송법상 재판장의 권한으로 정해져있는 권한이 행사되면 소송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합의부원도 위 권한의 행사로 인하여 그 기일의 재판을 준비하느라 자신의 생활에 일정한 영향을 받게 되나, 이러한 영향을 두고 재판장의 권한이 합의부원에게도 행사된다고 볼 수는 없다.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비추어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권한은 서로에게 대등하다. 합의부 구성원인 판사는 누구나 그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서로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는 서로에게 어떠한 법률적 효과나 강제력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의견의 논리와 내용 자체가 갖는 설득력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권한일 뿐이어서 상대방이 스스로 그 의견의 논리와 내용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 의견 제시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효과를 낳지 않는다.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이 된 법조인만이 판사로 임명되는 경우 합의부 구성원이 서로 실질적으로 대등하여 그들 사이에서는 각자의 의견의 논리와 내용 자체가 갖는 설득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설득력 있는 의견을 서로에게 제시하는 권한 이외의 다른 권한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이 되지 못한 법조인이 판사로 임명되는 경우 그는 애초에 해당 사건에 맞는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 증거의 취사 방법,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는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기에 그와 상당한 정도로 경력이 차이나는 다른 합의부 구성원과 서로 실질적으로 대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기에 아직 소신과 고집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설득력 있는 의견을 서로에게 제시하는 권한 이외의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입



법자는 앞서 본 것과 같이 과거에 판사 단련 과정을 마련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직업적 단련을 위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부터 지도를 받는 것을 예정하였고, 아직까지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고 있으며,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도 남아있다.

(6)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에게 어떠한 지적이나 권고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함께 재판을 한 경험을 토대로 그의 근무성과 자질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법원장 및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전달하고, 이때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위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미숙함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로써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근무성과 자질 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법원 배석판사가 스스로 열람을 신청하지 않는 한 그가 알 수 없는 위 의견서에는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미숙함을 기재함으로써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근무성과 자질 평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 지방법원 배석판사를 상대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는 어떠한 지적이나 권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7) 물론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중요한데,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인이 판사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를 예정한 이상, 서로에게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권한만 갖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고, 입법자가 지방법원 배석판사 시기를 예



정한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넓은 지적 및 권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8) 법원조직법은 제30조 제3항에서 제27조 제3항을 준용함으로써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방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권한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배석판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판사 단련 과정,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 의견서 작성·제출, 지적 및 권고권한을 인정할 필요성에 비추어 위 법원조직법 제30조 제3항,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넓은 지적 및 권고권한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 이상의 이유로 이 법원은 헌법 제27조와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30조 제3항, 제27조 제3항의 해석상 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넓은 지적 및 권고권한이 인정된다고 본다.

(10)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의견 제시 권한은 오직 그 의견의 논리와 내용 자체가 갖는 설득력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권한일 뿐이어서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령 그것이 남용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내용상 상대방인 다른 합의부 구성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인 다른 합의부 구성원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의견 제시 권한



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나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아니라 다른 동기나 목적에 따라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한 지적 및 권고권한을 행사하여 이를 남용한 경우,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는 아직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지적 및 권고권한만 염두에 두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의 배경에 있는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권까지도 염두에 두게 될 수 있고, 지방법원 배석판사 스스로 아직 소신과 고집을 구별하기에는 이르다고 여겨 위 지적 및 권고권한 행사, 즉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너무나 손쉽게 바꾸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은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일반적 직권이 될 수 있다.

(11) 그런데 두 권한, 즉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의 의견 제시 권한과 앞서 본 지적 및 권고권한은 종종 동시에 행사되고, 서로 관념적으로만 구별될 뿐 실제에 있어서는 그 구별이 어렵다. 따라서 그 남용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위 두 권한을 관념적으로나마 구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의 범위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과 비교하여 볼 때 폭 넓다고 볼 수 있기에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 지적 및 권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는 위 지적 및 권고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



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1) 이 법원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그 사건 재판 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과 권고가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2)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㉔ 피고인 C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CS법원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데, DD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이 일견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를 포함하고 있는 한편,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자, 위와 같이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1 내지 3차 수정을 하였던 점, ㉕ 그런데 W공보사태가 일어나자 피고인 C은 이로 인한 상황 전개에 부담을 느껴 4차 수정을 한 후 DD에게 그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및 등록절차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던 점, ㉖ DD은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위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절차를 마친 다음, 위 판결문을 판결문등록시스템에 최종 등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한 1 내지 3차 수정 및 4차 수정은, 피고인 C이 DD을 상대로 판결문 초안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권고한 것으로서, 합의부 구성원 중 한 명으로서 의견 제시 권한을 행사한 것인 동시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지방법원 배석판사를 상대로 지적하고 권고한 것이고, 위 지적 및 권고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 직권행사의 모습

(1)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지방법원 배석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핌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DD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C이 한 1 내지 3차 수정 및 4차 수정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지적 및 권고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3)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1 내지 3차 수정

(1) 앞서 본 것과 같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권행사 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권행사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배석판사에 대하여 갖는 지적 및 권고권한의 남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지적 및 권고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위 지적 및 권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보다는 위 지적 및 권고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이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2) 앞서 본 사정, 즉 특히 피고인 C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CS법원 1심 재판에서 2015. 11. 12. 선고된 소 각하 판결을 보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의 귀속을 기초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쟁점의 소재를 파악하였는데, DD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이 일견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전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판시를 포함하고 있는 한편,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자, 위와 같이 쟁점의 소재를 파악한 것에 기초하여 판결 이유를 앞서 본 것과 같이 1 내지 3차 수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3) 물론 인정사실에서 보았듯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에 앞서 합의 과정에서 DD과만 합의를 하였고,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수정을 하고 판결을 선고한 후 비로소 2 내지 3차 수정을 하였다. 즉 피고인 C의 1 내지 3차 수정의 방법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

(4) 그러나 피고인 C은 1 내지 3차 수정을 하면서 판결문 초안의 명확하지 않은 기재 부분을 자신의 쟁점의 소재 파악과 연결시켜 수정하였고, 이는 위 판결문 초안의 이유 구성이 빈약하여 충분한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었으며, 그 결과 위 판결문 초안이 보다 설득력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위 판결문 초안의 기재를 최대한 살리면서 수정을 하였다.

(5) 위에서 살펴본 위 지적 및 권고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C이 1 내지 3차 수정으로써 한 지적과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나) 4차 수정



(1) 인정사실에 나타났거나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DD, DF가 2015. 11. 25. 3차 수정이 된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까지 마쳤는데, W공보사태가 일어나자, DC은 B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에게, 이번 V당 판결에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자신이 지난번에 전국 V당 사건을 정리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혹시나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 논란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혹시 언론과 접촉할 기회가 있게 되면 적절히 대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② 2015. 11. 26. 새벽 무렵 DI 보도로 2015. 11. 25. 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 유출 사실 및 그 문건 내용이 공개된 후, 피고인 C은 BJ으로부터 V당 지방의회의원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 문의를 받자, BJ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법률이 지 않느냐. 법률의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다시 DC에게 전화하여 'BJ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너 괜찮으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DC으로부터 '별일 있겠느냐'라는 취지의 대답을 들었던 점, ③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부담을 느껴 DD에게 항소심에서 위 판결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좋지 않게 볼 수 있으니 이를 삭제하자고 말하며 앞서 본 것과 같이 4차 수정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2)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았듯 피고인 C은 4차 수정에 앞서서도 합의 과정에서 DD과만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는 ① DC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처럼 혹시라도 DC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일부 언론에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 논란을 제기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즉 피고인 C의 4차 수정의 동기와 방법이 적절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다.

(3) 그러나 피고인 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는 ② 헌법재판소에서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 논증에 관하여 의문을 갖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자는 것과 ③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 논증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일부 내용("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어 혹시라도 항소심에서 위 판결문의 내용 전부를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위 ②, ③은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 논증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4차 수정으로 그 판지가 보다 명확하게 되기는 하였고, 피고인 C은 4차 수정에 앞서 DD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4차 수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4) 위에서 살펴본 위 권고의 동기나 목적, 내용, 방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C이 4차 수정으로써 한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4) 소결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6의 나항의 DD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범행은 모두 직권의 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6.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관련 배당의 경위(피고인 D)

가.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 D은 2015. 12. 2.경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법원 행정처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V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DP부 DO 재판장에게 배당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D은 2015. 12. 2.경 위와 같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을 DO 재판장 주심



사건으로 배당되도록 해 달라'는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이어서 "피고인 D은 특례배당이 아닌 '사건번호를 미리 파악하여 그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게 하는 방식'으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이 DO 재판장에게 배당되게 하기로 계획하고, 2015. 12. 2.경 1심 법원인 CS법원에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기록이 AN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임을 알면서도 사건배당 확인자인 AN고등법원 행정과장 HR을 불러 'V당 사건이 곧 올라올 것인데 행정처에서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DP부에 배당이 되어야 하는데 DO 부장이 어떡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V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잡아 보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배당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다른 항소심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HR의 법정진술과 증인 FG의 법정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HR, FG의 각 검찰 진술(HR: 2587(1회), 2625(2회), 2741(3회), 2870(4회), 2875(HR·FG 녹취서), 2995(5회), 3000(진술서), 3123(대질), FG: 2490(1회), 2620(2회), 2870(대질), 2875(HR·FG 녹취서), 2995(대질), 3130(3회), 3261(4회))을 제출하였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HR의 진술은 공소장 기재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V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나타난 HR의 진술에는 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FH으로부터, 2015. 12. 3.경 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은 중요사건이니 특례배당(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로 배당하는 것)으로



할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D과 상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과 2015. 12. 4.경 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의 배당이 이례적으로 늦어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D이 결정을 해 주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증인 FH의 법정진술은 HR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HR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 D의 법정진술, 2683(D 검찰 진술조서), 2828(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3123(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에 나타난 피고인 D의 진술에는 자신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HR에게 'V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잡아 보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과 관련하여, FH이 2015. 12.경 자신을 찾아와 먼저 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과 관련된 말을 하였고 이에 자신이 '저도 이미 요청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증인 FH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으로서, 그 핵심 부분이 피고인 D의 위 진술과 배치된다. 게다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D의 위 진술과 증인 HR의 법정진술은 그 핵심 부분이 서로 배치된다.

이 법원은 증인 FH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당시의 태도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HR의 법정진술은 기억이 떠오르는 과정에서 왜곡되었다고 보이는데다가, 증인 H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V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잡아 보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시점에 관해서는 피고인 D의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번



복한 점, ② 피고인 D이 제출한 증거 제1호증(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증인 HR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시점에 피고인 D은 AN 고등법원에 있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③ 공소장 중 "피고인 D은 2015. 12. 2.경 법원 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법원행정처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V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DP부 DO 재판장에게 배당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부분에 관한 피고인 D의 법정진술은 위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B이라는 것이어서, 2015. 12. 2.경 AO, A과 함께 자신이 예천 군비행장으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서울에 없었다는 내용의 증인 B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데, 그 내용과 진술 당시의 태도에 비추어 증인 B의 법정진술이 피고인 D의 법정진술보다 신빙할 만한 점을 더하여, 증인 FH의 법정진술이 가장 신빙할 만하고, HR의 위 진술과 피고인 D의 위 진술을 모두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HR의 위 진술을 배척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FG의 위 진술의 신빙성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다른 항소심 사건과 비교하여 볼 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배당이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에서 본 공소장 기재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거나 배당되는 데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본다.

7.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 피고인 B의 AO, BA과의 공동범행)



가. 2016. 3.경 AE 약화 및 AF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A)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6. 3.경 FO로부터 'BA의 지시에 따라 전문분야연구회 정비방안을 검토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DL이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기는 하였으나, DL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문건을 보고받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이외에 그 작성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고, 한편 BA은 피고인 A의 상급자일 뿐만 아니라, 평소 실장을 거치지 않고 실에 소속된 심의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DL의 위 문건 작성 과정에서도 포스트잇에 그 기본 내용을 적어 위 문건 작성을 상세하게 지시한 후 추가로 지시하기까지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A의 DL에 대한 위 문건 작성 지시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완료 이후에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A이 위 방안 검토 지시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본다.

나. 2017. 1.경 AE 및 AF 제제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범행)

1)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7. 1. 하순경 DL으로부터 그가 BA의 지시로 작성한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보고받기만 하였을 뿐이고, DL이 위 문건을 작성·보고하기 전에 이를 알지 못했던 점, 앞서 보았듯 BA은 피고인 A의 상급자일 뿐만 아니라, 평소 실장을 거치지 않고 실에 소속된 심



의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A의 위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은 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한 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완료 이후에 이에 가담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A이 위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본다.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L이 위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 B이 그에게 참고할 자료를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정작 DL이 위 문건을 작성한 이후에는 그로부터 위 문건을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BA의 위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B이 위 대응방안 검토 지시에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부분은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본다.

다.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과 그 상대방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회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연구회에서는 탈퇴하도록 함으로써 위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가입한 연구회의 회원 자격은 유



지되나 그 뒤에 가입한 연구회에서는 자동 탈퇴되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여 중복가입을 해소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상대로 한 것이다.

한편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그 내용을 담은 공지문이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이하 '코트넷'이라고 한다)에 게시되어 알려짐으로써 시행되었는데, 위 공지문은 법원행정처 AI실 심의관 FO가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의 수정을 거쳤으며, FO의 요청에 따라 FU국장 CB 명의로 게시되었다. 즉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그 시행 과정을 살펴볼 때 FO를 상대로 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 상대방에 FO가 포함된다.

나) FV 등을 상대로 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앞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법원행정처가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에 근거하여 FU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그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게시³⁵⁾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춘 것에 해당한다.

다) FO를 상대로 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앞서 본 것과 같이 BE이 HB심의관에게 '사법행정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은 HB심의관의 사무에 속하는바,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상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집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35) 445[2017. 2. 13.자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게시글(중복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에 의하면 위 공지글은 법원행정처 FU국장 명의로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포함하여 전국법원 법관을 대상으로 게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집행'은 위 '사법행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포함되므로, BE이 HB심의관을 상대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공지문 작성 및 게시를 지시한 행위는 BE의 HB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2) 직권행사의 모습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직권행사의 모습과 관련하여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가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이때 행위의 상대방인 법원행정처 심의관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피에 있어서 행위의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행위 이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한다고 본다.

FO가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기까지의 경위와 공지문의 내용에 관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FO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BA의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행위는, BA이 그 일반적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가) 판단의 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관사를 상대로 한 것인 한편, 그 시행 과정을 살펴볼 때 그 상대방에 FO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먼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FO를 상대로 이루어진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사법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민주주의의 요청 실현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자는 행정목적을 세울 수 있고, 정책 추진의 중점 내지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 방향이나 추진 시기를 결정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방안의 수립 및 실행을 지시할 수 있다. 또한 행정조직을 총괄하는 자는 위와 같은 주요 정책 수립·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위하여 통일된 계층구조를 활용하면서 그와 함께 긴밀한 협조와 합리적인 조정을 활용하여 행정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는 사법행정조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대법원장은 상고심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 회복이나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를 사법행정목적으로 삼을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국회에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판사가 사법행정에 참여하는 조직의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사법행정조직의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다.

한편 행정조직 운영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행정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자신과 다르게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이해하는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해나 다른 의견이 없음을 오히려 위협하게 여겨야 한다. 주요 정책 자체에는 문제점이 별로 없고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이나 현안 대응에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때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추진 과정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내세워진 다른 의견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주요 정책 자체가 아니라 그 추진 과정이나 현안 대응에만 내재한 문제점을 제대로 돌아볼 수 없게 되어 주요 정책 자체가 애초의 행정목적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행정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자신과 다르게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이해하는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이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다수임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있어서 다양한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그것이 속고를 거쳐 반영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나 행정조직 역량의 결집에만 매달려, 행정조직 외부에서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자신과 다르게 이해하는 다수의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다수의 사람을 반대 세력이라고만 파악하고 장애물로 여기며 그들의 의견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이 행정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법행정조직 외부에서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자신과 다르게 이해하는 다수의 사람이나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다수의 사람을 반대 세력이라고만 파악하고 장애물로 여기며 그들의 의견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다) 전문분야연구회의 지위 및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의 성격

(1) 전문분야연구회 일반에 관하여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들이 회원이 되어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8. 10. 2. 행정예규 제1164호로 개정되어 2018. 10.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활동하는 단체인데,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사무분담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가 연구회에 가입한 후 그 모임에 스스로 나가 그 연구회에 이미 가입한 다른 판사들을 만나 교류하면서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전수받거나 코트넷을 통하여 해당 전문분야연구회 게시판에 있는 자료를 스스로 살피는 활동이 모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이, 다른 누군가가 직무를 부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 스스로의 활동이 모여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면,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의 사적 단체이고,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판사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전문분야연구회는 매년 법원행정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매년 법원행정처에 연구회 활동 성과를 보고하며, 전문분야연구회 회원 중 일부는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국제회의나 외국 법원을 둘러보기 위한 연수 기회를 부여받고 연수 비용을 지원받은 후 그 연수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해당 전문분야연구회에 보고하고, 사무분담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가 해당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여 코트넷을 통하여 해당 전문분야연구회 게시판에 있는 재판 관련 자료를 살피거나 해당 전문분야연구회에 이미 가입한 판사들을 만나 교류하



면서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에 관한 그들의 경험을 전수받는다. 즉 판사는 자신의 사무 분담과 관련된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해당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 도움을 받는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이 전문분야연구회는 판사들을 회원으로 한 단체인 점,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법원행정처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의 해당 전문분야연구회 설립 허가를 받아야 이루어질 수 있고, 그 활동에 법원행정처의 지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은 그 자체가 재판 준비의 일환인 점에 주목하여, 전문분야연구회는 사적 단체로서의 성격보다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단체이고, 전문분야연구회 활동도 재판 준비의 일환으로서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판사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의 성격은 오히려 매우 부수적일 뿐이라고 본다.

(2) AE에 관하여

AE는 전문분야연구회 중 하나이므로, 이 법원은 AE도 마찬가지로 판사의 사적 단체이긴 하나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단체라고 보고, AE 활동은 판사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행사이긴 하나 이러한 성격은 오히려 매우 부수적일 뿐이고 재판 준비의 일환으로서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본다. 그런데 AE는 그 전문분야를 국제인권규범으로 하고 있어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의 전문분야와도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가령 국제형사재판과 관련하여 이는 AE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고 형사법연구회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으며, 국제노동기준과 관련하여 이는 AE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고 노동법분야연구회의 전문분야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판사가 형사사건이나 노동사건의 재판을 하면서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을



법원으로 삼아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경우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즉 AE 활동은 특정한 전문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분야에 걸칠 수 있고 특정한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 걸칠 수 있다.

라) AE의 설립목적과 AF 활동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AF는 판사들이 모여 상고법원 설치의 적부(適否), 합의부의 운영,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 판사 인사제도 등 사법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 법원은 판사들이 모여 사법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사법제도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재판의 독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예 국제인권규범과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판사들이 모여 사법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어서 이 법원은 판사들이 모여 국제인권규범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한계나 토대에 해당하는 영역을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오히려 국제인권규범과 직접 관련된 영역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국제인권규범과 같이 여러 전문분야에 걸칠 수 있고 여러 전문분야의 재판 준비에 걸칠 수 있는 영역의 경우 그 한계나 토대에 해당하는 영역의 연구·토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이 법원은 사법제도는 국제인권규범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한계나 토대에 해당하는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연구·토론이 국제인권규범의 이해에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비추어 이 법원은 위와 같은 AF 활동이 국제인권규범의



연구라는 AE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마)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과 사법행정권의 남용

(1) 다수자의 관여와 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

일정한 행정상 조치가 시행되는 데에는 다수자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일정한 행정상 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해당 조치와 관련된 최상급자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있고,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그를 보좌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가 있으며, 최종 의사결정을 전후하여 미리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거나 최종 의사결정에 따라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는 자가 있고, 최종 의사결정 이후 구체적 내용을 담은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와 같이 다수자가 관여하여 일정한 행정상 조치가 시행된 경우, 관여한 자 일부는 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을 갖고 있는데,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이 법원은 의사결정권의 소재에 주목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의 동기나 목적을 기준으로 위 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그를 보좌하는 자 중 한 명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에게 의견을 밝히면서 가진 동기나 목적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행정상 조치와 최종 의사결정자

한편 행정상 조치는 그 성질 및 내용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자가 다르다.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나 행정조직 역량의 결집 필요성에 비추어, 행정상 조치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그 최종 의사결정자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상 조치에 관하여 행정조직 전체를 총괄하는 자나 행정조직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자가 그 시행 여부를 일일이 결정하고 그 시행 내용까지 일일이 결정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고 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나 행정조직 역량의 결집 필요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행정조직은 내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행정상 조치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그 최종 의사결정자를 다르게 하고, 해당 조치의 최종 의사결정자의 결정이 그 상급자에게 보고 되도록 함으로써 그 상급자로부터 감독을 받도록 하며, 행정조직 내부에 위임전결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와 감독자

(가) 앞서 본 행정상 조치와 마찬가지로 사법행정상 조치도 그 성질 및 내용에 따라 최종 의사결정자가 다르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조직도 내부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해당 행정상 조치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그 최종 의사결정자를 다르게 하고, 해당 사법행정상 조치의 최종 의사결정자의 결정이 그 상급자에게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그 상급자로부터 감독을 받게 하며, 사법행정조직 내부에 위임전결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2017. 7. 11. 내규 제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제1조에서 대법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소계의 명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별표1은 사법정책 및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기본계획과 중요정책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고,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중요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며,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일반사항은 법원행정처차장이 전결자로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고,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달·통보·회보는 실·국장이 전결자로서 최종 결정할 사항이며,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각종 예규에 관한 정책적 사항과 중요사항은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고,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각종 예규에 관한 사무적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었다. 다만 앞서 본 내부 위임 전결 규정 바련의 취지에 비추어,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일반사항과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달·통보·회보라고 하더라도 전결자는 그 상급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보고하기는 하여야 하고, 그 상급자가 알지 못하게 둔 채 자신의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7. 2. 20. 행정예규 제1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3조 제2항, 제9조 제5항은 전문분야연구회의 설립허가,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회의 지정, 연구회별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참작한 경비 및 전산자원 사용 지원을 법원행정처장이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정하고 있었고, 위 예규는 제3조 제2항에서 중복가입을 금지하면서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중복가입이 생기는 경우에 관하여 달리 정하지 않음으로써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었다. 위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은 그것이 폐지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유효하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조항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위 예규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한편 앞서 본 것과 같이 판사의 사무분담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바, 이에 따라 특정 판사가 전문재판부 소속 판사가 되어 관련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그 사무분담이 바뀌었는데도 해당 전문분야에 관심을 유지하고자 해당 전문분야연구회를 탈퇴하지 않음으로써 중복가입 금지 조항에 위반하는 경



우가 생길 수 있다. 나아가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전산 지원과 결합되어 특정 판사가 1개의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비록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회는 아니지만 전문분야가 서로 겹치거나 관심이 이끄리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가 생겨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가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전문분야연구회 자체가 주로 판사의 해당 전문분야 재판 준비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그 취지에 따라 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중복가입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이기는 한데, 법이란 체계를 갖춘 것이고 통일성이 있는 것이어서 전문분야로 나누어 놓아도 각각의 전문분야가 서로 이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에 위와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며, 법질서의 통일성에 비추어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와 감독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는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허용하고 있었는데, 동시에 위 예규는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의 규정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BE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라고 본다.

사법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이나 사법행정조직 역량의 결집 필요성, 사법행정조직 내부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에 비추어, 위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가 AS 또는 AZ 결재사항으로 정한,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각종 예규에 관한 정책적 사항과 중요사항 또는 사무적 사항은,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각종 예규의 제정·개폐나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가 전국법원에 적용되는 예규인 것은 맞으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위 대법원 위임전결사항 내규가 BE 전결 사항으로 정한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일반사항에 해당하거나, 실·국장 전결 사항으로 정한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시달·통보·회보의 바로 상위에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BE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이 재판 준비의 성격을 갖고 있고, 법질서의 통일성에 따라 판사가 이미 1개의 전문분야연구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문분야에 이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판사가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일이 잦아진 경우, 사법행정조직은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반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회를 추가 지정하거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을 개폐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BE은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상급자인 AS 또는 AZ에게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개폐 필요성이나 중복가입 금지 조항의 예외에 해당하는 연구회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보고하고 그 결재를 받을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과 법원사무기구 규칙은 BE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고 AZ을 보좌한다고만 정하고 있는바, 그 보좌는 바로 위와 같이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결정할 것과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그 결재를 받을 사항을 섬세하게 분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AZ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감독자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전결자는 그 상급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보고하기는 하여야 하고, 그 상급자가 알지 못하게 둔 채 자신의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BE는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결정한 것을 그 상급자인 AZ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AZ은 그 상급자로서 해당 조치의 성질 및 내용에 따라 때로는 그 경위나 동기·목적, 내용을 상세하게 살필 수 있고, 때로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감독자로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AZ이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감독이다.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주된 동기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그 최종 의사결정자에 해당하는 BA의 동기나 목적을 살펴본다.

(4) BA의 동기나 목적

(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BA은 2015. 8.경부터 AE의 성격에 관하여 FL와 관련이 깊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AF의 활동에 관하여, 그 활동이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에 위배되고, 주요 구성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외부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외부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더라도 젊은 판사들에게 대법원의 정책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는 취지로 인식하여 그 활동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BA의 위와 같은 인식은 그대로 2016. 2. 내지 3.경까지 이어져, BA은 FM 판사가 작성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 기사를 소개하는 언론 보도가 그 무렵 연달아 나왔다는 사실을 접하고, 위와 같은 경과를 FL 전, 현 회원인 판사가 핵심이 되고 AE 회원인 판사가 주변이 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파악한 후, AE가 판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점하면서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고, 활동하는 판사들이 노령화된 다른 연구회와 달리 젊은 판사들이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는데, AE를 주도하는 판사들은 FL 전, 현 회원이 핵심으로 자신들의 법관 사회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거점으로 연구회를 활용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AE를 약화시키고 AF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까지 인식하였던 점, ③ BA의 위와 같은 인식은 2017. 1.경 AE 및 AF가 외부 기관과 공동으로 AS의 인사권을 주제로 삼는 내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다시 나타났는데, BA은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AS의 인사권 행사와 사법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조직적으로 법원 내외부에 표출하려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던 점, ④ 그래도 BA은 2017. 1. 중순경 AE 운영위원회가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를 2017. 3.경 개최하기로 한 사실을 접하고 그가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법원행정처에서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 AO로부터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던 점, ⑤ 이에 BA은 2017. 1. 하순경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을 AO에게 보고한 후, 그 무렵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7. 2. 10. 열린 AU 주재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후, AU이 주무 실장인 피고인 A로부터 BA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은 후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더 이상 AU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나) 아울러 위와 같은 사정에 나타난 사정에 더하여, BA은 오랜 기간 AE 및 AF의 약화나 해소를 사법행정목적으로까지 삼아 AE를 다른 연구회와 분리하여 약화



시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고, AF 활동을 하는 회원을 AE 다른 회원과 분리하여 AF를 해소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AE 및 AF의 약화나 해소를 위한 명목을 따로 내세워 위와 같이 마련된 구체적 방안 중 하나인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이 법원은, BA이 AO의 주요 사법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위한 사법행정조직 역량의 결집에만 매달려, AE 및 AF를 상고법원 설치나 FN 설치·운영과 같은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대한 반대 세력이라고만 파악하고 장애물로 여기며 그들의 의견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BA의 동기나 목적은 AE 및 AF 제재였고, 이는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본다.

(5)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과 사법행정권의 남용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다수자가 관여하여 일정한 사법행정상 조치가 시행된 경우, 의사결정권의 소재에 주목하여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의 동기나 목적을 기준으로 위 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그를 보좌하는 자 중 한 명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자에게 의견을 밝히면서 가진 동기나 목적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BA의 동기나 목적은 AE 및 AF 제재였고, 이는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보는바, 이에 따라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도 AE 및 AF 제재였고, 이는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



이 앞서 본 것과 같이 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하여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여 사법행정상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서, BE에게 사법행정권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BA이 BE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었다고 본다.

한편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조항 위반과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명목으로 내세워 시행되었다. 위와 같은 명목은 그 자체가 위법·부당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자체는 수긍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그 시행의 동기나 목적이 AE 및 AF 제재에 있었음에도 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명목만을 내세워 시행되었다. 즉 위와 같은 명목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사법행정상 조치의 표면적인 명목은 수긍할 만한 것인데 드러내지 않은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야말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정한 직권의 재량적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 그와 같이 표면적인 명목이 수긍할 만하다는 것은 오히려 직권의 재량적 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직권의 남용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다.

바)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FO를 상대로 이루어진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와 사법행정권의 남용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하여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여 사법행정상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서, BE에게 사법행정권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BA이 BE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었다고 보는바, 이에 따라 그 과정에서 BA이 FO를 상대로 공지문 작성 및 게시를 지시한 행위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사)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자들의 공모

(1)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전문분야연구회 지원과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주무(主務)로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앞둔 2017. 1. 하순경 DL으로부터 그가 BA의 지시로 작성한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 문건을 보고받아 BA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려는 동기나 목적을 알고 있었는데,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2017. 2. 9.경 FO에게 공지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AU이 감독자로서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2017. 2. 10.에도 BA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과 피고인 A이 2017. 2. 13. 오전경 FO로부터 공지문을 보고받고 그에게 공지문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7. 1. 23.경 AO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하고서 그로부터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는 것을 직접 들었고, AO가 그 무렵 BA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들어서 BA이 2017. 1.경 DL에게 AF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경위를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FO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라는 BA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다시 그 지시에 따라 위 공지문 초안을 수정하였으며, 2017. 2. 10.경에도 FO에게 국회나 감사원의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받



영하여 공지문을 일부 수정하라고 지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AO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AO가 2017. 1. 2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받고 피고인 B에게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고, 그 무렵 BA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② 이에 BA은 AI실 심의관 DL에게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 및 AF와 관련하여 '2016. 3.경부터 보고되었던 자료들과 그 이후에 피고인 B이 작성한 자료들을 포함하여 기존에 나온 모든 방안을 정리하고 실행하는 것을 전제로 로드맵까지 첨부해서 최대한 빨리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AE 기획팀장이던 FS 판사에게 위와 같은 공동학술대회 개최가 법원 외부와 연계된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 행사로 치러지도록 진행할 것과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③ AO는 BA으로부터 DL이 작성한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았던 점, ④ 그 무렵인 2017. 1. 26. BA은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O는 AE 및 AF 제재라는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알면서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B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O는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AU의 공모 여부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AU은 BA으로부터 DL이 작성한 'AF 관련 대



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던 점, ② AU은 BA으로부터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간략하게만 보고받았을 뿐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알지 못하였던 점, ③ 이에 AU은 FO로부터 공지문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였던 점, ④ 2017. 2. 10. AU이 주재하는 실장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BA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표면상 명목을 내세웠고, AU이 주무 실장인 피고인 A의 의견을 묻자, 피고인 A은 BA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AU은 알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실장회의를 마쳤는데, 이때 BA, 피고인 A, 피고인 B은 AU이 더 이상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U은 AE 및 AF 제재라는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세워진 표면상 명목만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달리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U은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가) 판단의 순서

앞서 본 것과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상대로 한 것인 한편, 그 시행 과정을 살펴볼 때 그 상대방에 FO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은 먼저 AE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를 상대로 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FO를 상대로 이루어진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나) FV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형

직권남용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법원은, FV 등 AE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살펴볼 때에는, 그들의 AE 또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 탈퇴가 법령상 의무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당시 시행되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 제2항 본문에 중복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던 점, ② FV 등 AE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 101명은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바로 AE 또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를 탈퇴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판사 101명은 위 예규 조항에 따라 AE 또는 다른 전문분야연구회를 탈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위 판사 101명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결국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8의 라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중 FV 등 AE와 다른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한 판사 101명에 대한 부분은 직권의 남용에는 해당하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다) FO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이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가 이 사건 당시 HB심의관이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는 그 명칭대로 전문분야연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지원이 사법행정조직 운영의 일환인 이상 그 지원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전문분야연구회의 활동에 관하여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과 다른 의견을 밝히는 다수가 있는 경우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 담당자는 그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이 다수임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즉 위 예규가 전문분야연구회의 지원을 위한 사법행정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만들어진 것인 이상 HB심의관은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가 반대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민주주의의 요청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기준과 절차로 삼아야 한다.

(2) 위 (1)항에서 살펴본 HB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의 내용, 즉 HB심의관은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의 제정 취지에 따라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가 반대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며 민주주의의 요청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기준과 절차로 삼아야 하는 점에 판사



를 HB심의관으로 보임하여 사법행정조직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그가 재판사무 수행을 통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하는 경험을 쌓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면서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HB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검사는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있었던, BA의 FO에 대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행위, 즉 과정의 행위까지 기소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가벌성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추할 수 있다고 보나, 과정의 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벌성 유무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법원은 과정의 행위에 해당하는 판사 심의관에 대한 지시가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① 그 지시가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서,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②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거나, ③ 판사 심의관이 한 일이 직권남용행위로서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FO는 피고인 B을 통하여 BA의 지시를 전달받은 후, DL이 작성하였던 AE 또는 AF 관련 문건 등을 포함하여 AI실에 있던 AE 또는



AF 관련 문건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참조하여 공지문을 작성하였던 점, ② FO는 2017. 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수반되는 점검 사항을 보고하였고, 2017. 2. 9. 피고인 A에게 공지문을 보고하였던 점, ③ FO는 2017. 2. 10. AU이 주재하는 실장회의 후에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반영하여 공지문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2017. 2. 13. 새벽에 공지문 수정을 마치고 바로 공지문 수정안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고,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던 점, ④ FO는 2017. 2. 13. 피고인 A로부터 공지문을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공지문을 FT을 통해 FU국장 CB에게 전달하여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말씀'이 게시되도록 함으로써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시행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

이에 비추어 보면, BA이 FO를 상대로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로 하여금 사법행정조직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반하여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고, 판사인 그를 HB심의관으로 보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FO가 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시행을 완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BA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을 전달자로 하여 FO를 상대로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본다.

(4)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AO,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I실 심의관 FO에게, AE를 약화시키고 AF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AE 및 AF를 제재한다는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전제로 하여 그 시행 내용을 구체



화하는 공지문을 작성하여 이를 게시함으로써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FO로 하여금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위 조치의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작성하고 그 공지문을 게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 법원행정처 AI실장은 법원사무기구 규칙 제2조 제3항과 별표 1의1에 의하여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관계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2-2에 의하여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관계 업무 중 특히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전결권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중 경미 사항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는 자신의 명의로 하며, 국회보고용 '법원현황'의 작성을 위하여 심의관을 통하여 또는 직접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에 사법행정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사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GG지방법원 기획법관인 GI을 상대로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부분 공소장의 범행 배경 및 범행 사실 부분에 피고인 A이 2016. 10. 25.경 GI을 통하여 GE, GF 의원 사건[GG지방법원 GL, GM(병합)] 담당 재판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확인한 행위가 기재되어 있고, 그 소결 부분에도 피고인 A이 GI으로 하여금 하게 한 의무 없는 일에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확인하여 보고하게 한 행위가 기재되어 있는바,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2016. 10. 25.경 GI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재판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과 피고인 A의 위 지시 행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 행위는 그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3) 법원행정처 AI실장이 각급 법원 기획법관을 상대로 위와 같이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GI을 상대로, 2016. 10. 25.경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와 2016. 11. 28.경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때 피고인 A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과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각 지시 행위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각 지시 행위는 그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이를 두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I실장이고, GI은 GG지방법원 기획법관인 점, ② GI은 피고인 A로부터 2016. 10. 25.경 및 2016. 11. 28.경 위 2)와 3)에서 본 것과 같은 각 지시를 받고 모두 같은 날 그 지시에 따른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GI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각 지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A이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 앞서 본 것과 같이 구체적인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의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먼저 피고인 A이 2016. 10. 25.경 GI에게 GE, GF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재판부의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행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사실에서 보았거나 인정사실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GH당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문의를 받았고,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본래 피고인 A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② 재판의 심리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판기일의 심리는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형사재판의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하면서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고지할 수 있어, 형사재판의 향후 진행 계획은 통상 해당 법정에서 머무르며 재판장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GI이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주심 판사 GN로부터 들어 파악한 향후 재판진행 계획도 전날 법정에서 그 재판장이 고지한 것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GI에 대한 위 지시 행위는 본래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지시 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GI에 대한 위 지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 A이 2016. 10. 25.경 GI에게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와 피고인 A이 2016. 11. 28.경 GI에게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 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의 요청, 국가공무원법 제56조가 공무원에게 법령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GI에 대한 위 각 지시 행위는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피고인 A에게 그 직권이 부여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GI에 대한 위 각 지시 행위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 이 법원은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과 마찬가지로 각급 법원 기획법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도 명시한 것이라고 본다.

(2) 이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과 마찬가지로 각급 법원 기획법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각급 법원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다른 판사의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



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앞서 본 것과 같이 GI은 피고인 A로부터 2016. 10. 25.경 앞서 본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이를 파악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함으로써 위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으며, 2016. 11. 28.경 위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이를 파악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 즉 GI은 피고인 A의 위 각 지시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되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A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GI에게, 앞서 본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 및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GI으로 하여금 위 재판부의 주심 판사 GN를 통하여 위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 및 유무죄 심증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³⁶⁾】

1.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AO는 AS, AT와 AU은 AZ, BA은 BE으로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법원의 재판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AO, AT, AU의 직무와 권한 부여에 따라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

36)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단을 기초로 구성요건 해당사실 위주로 기재한다.



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BS실 심의관을 상대로 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상대로 법원의 재판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AO와는 2015. 10. 30.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AT와는 2015. 9. 19.경부터 2016. 2. 11.경까지, AU과는 2016. 3. 16.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각 공모하여,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BJ에게, 2015. 9.경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피고인 B 및 그에게 협조하는 BS실 심의관 X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하고, 2015. 2.경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피고인 B 및 그에게 협조하는 BS실 심의관 X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BJ으로 하여금 위 각 문건 기재 사건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0, 11,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45 내지 48, 54, 56 내지 59, 70,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142, 151 기재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5. 10. 4.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BJ에게 이른바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 및 자료를 보내달라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BJ으로 하여금 2015. 10. 4.부터 2015.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중 순번 15 내지 19 기재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AO는 AS으로서, AT는 AZ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사실인정, 인정사실에 대한 헌법·법령의 해석·적용, 이를 위한 모든 실체적 또는 절차적 판단 영역에 대한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각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AO, AT의 직무와 권한 부여에 따라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BS실 심의관을 상대로 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 B은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BT지방법원 BW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BV)을 취소하고 위 재판부가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2015. 4. 10.경 BS실 심의관 X에게 위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및 재결정을 권고하는 조치를 정당화·구체화하고 위 조치의 일환으로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의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AO,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BT지방법원 BW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BV)을 취소하고 위 재판부가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2015. 4. 13.경 AT의 지시에 따라 BX에게 위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및 재결정을 권고함으로써, BX으로 하여금 그가 재판장이자 부장판사로 있는 BT지방법원 BW부가 2015. 4. 13.경 위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단순위헌 취지로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BX의 위 위헌제청결정 사건(BV)에 관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

3. V당 행정소송 재판(피고인 B의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배경과 직무상 권한

범행 배경은 앞서 본 인정사실 제4의 가항 기재와 같다.

AT는 AZ으로서, BA은 AG경부터 BE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사실인정, 인정사실에 대한 헌법·법령의 해석·적용, 이를 위한 모든 실체적 또는 절차적 판단 영역에 대한 명백한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각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AO, AT, AU의 직무와 권한 부여에 따라 BS실의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BS실 심의관을 상대로 위 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피고인 B의 AT, BA 등과의 C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할 목적으로 2015. 5. 26.경 AT의 지시에 따라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CS



법원 CV)에 관하여 재판장 CY에게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지적과 권고를 전달하여 달라는 요청을 함으로써, CU으로 하여금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 사이에 회식 자리에서 CY에게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게 함으로써 위 ①과 같은 내용의 지적을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피고인 B의 BA과의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B은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5. 9.경 BA의 지시에 따라 DC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W지방법원 DA)에 관하여 재판장 C에게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지적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DC으로 하여금 2015. 9.경 전화로 C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함으로써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V당 국회의원 AN고등법원 항소심 재판(피고인 B의 AT와의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B은 AT와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할 목적으로 2015. 11. 12.경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소 각하 판결(CS법원 CV)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 위 판결의 문제점과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 판결에서와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판결의 문제점과 위와 같은 향후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Z지방법원 1심 재판(피고인 B의 BA과의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B은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6. 1. 6.경 BA의 지시에 따라 DX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Z지방법원 DU)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위법·부당한 권고를 함으로써, DX로 하여금 2016. 1. 6.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에 따른 Z지방법원 DY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여 DX의 위 사건(Z지방법원 2015구합10766)에 관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

바. V당 국회의원 상고심 재판(피고인 B의 BA과의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피고인 B은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6. 6. 초순경 BA의 지시에 따라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V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



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속한다는 것이 선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심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같은 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른 검토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 피고인 B의 AO, BA과의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FO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AO는 AS, BA은 BE,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전문 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 업무를 위해 법원행정처 AI실 심의관을 지휘·감독할 직무상 권한을 각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AO,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E를 약화시키고 AF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AE 및 AF를 제재한다는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2017. 1.경부터 2017. 2.경까지 사이에 AI실 심의관 FO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전제로 하여 그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지문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여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FO로 하여금 2017. 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사이에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국회를 상대로 한 대외관계 업무를 위하여 지방법원 기획법관을 지휘·감독하고, 지방법원 기획법관에게 국회를 상대로 한 대외관계 업무를 위



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GG지방법원 GL, GM(병합)]에 관하여 GG지방법원 기획법관 GI에게 전화로, 2016. 10. 25. GJ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G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건 주심 판사 GN로부터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2016. 11. 28. 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확인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G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건 주심 판사 GN로부터 '피고인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인정의 근거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다.

「판시 제2항」

사실인정의 근거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판시 제3항」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가항 기재와 같다.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나 1), 2)항 기재와 같다.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나 3) 가), 나)항 기재와 같다.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나 5) 가)항 기재와 같다.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나 6) 가), 나)항 기재와 같다.

1. 사실인정의 근거 제4의 나 8) 가), 나)항 기재와 같다.

「판시 제4항」

사실인정의 근거 제7의 가, 나, 라항 기재와 같다.

「판시 제5항」

사실인정의 근거 제8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판시 제4항에 한하여, 판시 제4, 5항은 포괄하여)
-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판시 제1항과 판시 제2의 나, 다항, 판시 제4항은 각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의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3) (바), 제5의 다 (4) (가), (나), 제8의 가, 나항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을 해당 공소사실 전부와 견주어 보면 어떤 경위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가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사안이 복잡하거나 수법이 교묘한 경우 또는 상황적 요소에 의해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미묘한 사안에서는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배경 등 전후의 상황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는 다수자가 관여된 여러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되었는데, 수사 시점에 이미 행위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관여자의 기억이 흐려지거나 증거가 소실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으로 어느 정도는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다고 보이는 점,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될 정도로 특정되



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6의 가 (1)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 중 피고인 C이 2015. 2. 11.경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CQ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그 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W지방법원 CO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후 2015. 2.경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W지방법원 DA)을 심리 중인 위 법원 CZ부의 부장판사로 사무분담이 변경되어 재판장으로서 위 소송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부분과 그와 같은 상황에서 B이 DC에게 재판장인 피고인 C을 접촉하여 재판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단을 불러일으켜 피고인 C이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6의 나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중 피고인 C이 위 V당 행정소송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5. 9. 16.에서 2015. 11. 25.로 변경한 부분과 2015. 11. 25. 위 V당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 후 DC과 피고인 C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부분, BJ과 피고인 C이 대화한 부분, 피고인 C이 DC과 대화한 부분 등은 공소사실 특정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단을 불러일으켜 피고인 C이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범죄의 동기나 경위, 범의와 공모관계, 범행 배경 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심리·판단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므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도 기재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더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수법이 교묘한 경우 또는 상황적 요소에 의해 범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미묘한 사안에서는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배경 등 전후의 정황에 관한 설명 없이 단순한 범죄구성요건에 직접 해당하는 행위만을 기재하여서는 공소사실을 완성도 높게 특정할 수도 없다. 여기서 문제되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과 누설이라는 범죄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배경, 그 행위 전후의 상황을 살펴야 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그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이라는 평가적 사실로 이루어져 있어 어떠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배경, 동기나 경위, 그 행위 전후의 상황을 살펴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은 피고인 C의 변호인이 예단을 불러일으켜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검사의 입증 대상이며 이 법원으로 하여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채택·조사한 증거를 주의 깊게 살펴 판단하도록 만드는 부분



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C의 변호인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제7의 가 범행 배경 부분 전부,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제7의 나 범행 사실 부분 중 'W공보사태'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법원에 판단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CS법원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AN고등법원 DP부 DO 재판장에게 배당되도록 한 다음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부분과 2009. 3.경 HS 전 대법관이 HT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진상조사단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HT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및 법원행정처 제도 개선 TFT 등에서 재판권 침해 행위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의 이와 같은 논의 및 재판 개입 행위의 실례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부분,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제7의 나 범행 사실 부분 중 열 번째 문단인 특례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에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예단을 불러일으켜 피고인 D이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의 변호인이 예단을 불러일으켜 유죄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바로 검사의 입증 대상이며 이 법원으로 하여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채택·조사한 증거를 주의 깊게 살피



어 판단하도록 만드는 부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D의 변호인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

AE를 주도한다는 AF 회원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사법제도를 논의하고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밝힌다는 이유로, AE 및 AF 활동을 주요 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대한 장애물로 여긴 나머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계기로 AE 및 AF를 제재하여 AE를 약화시키고 AF를 해소시키려는 것이 BA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한 동기나 목적이었다.

피고인 A은 BA의 위와 같은 동기나 목적을 알고 있었고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에 관한 주무 실장이었으며 AU과 다른 실장들이 믿고 의지하는 실장이었음에도, BA이 위와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AU이 감독자로서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인 2017. 2. 10. BA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혀 결국 끝까지 주무 실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소속 심의관인 FO로 하여금 공지문을 게시하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GI에게 GE, GF 국회의원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여 보고 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GI은 위 재판부 주심 판사를 통하여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함으로써 헌법 제103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원 재



판사부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다.

이에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앞서 본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비록 피고인 A이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에 관한 주무 실장이기는 하였으나,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중복가 입 해소조치를 시행한 사람은 BA이었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이 사건에 앞서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사무를 수행하였던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BJ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헌법재판소 사건의 정보 및 자료를 전달하게 하였고, GS심의관 X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여 위법·부당한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이어질 보고서를 세 번이나 작성·보고하게 하였으며, 특정 사건 재판사무 담당 판사 BX, DX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여 위법·부당한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결정을 하게 하거나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여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두 번이나 현실적으로 방해하였고,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 HA심의관 DC으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여 위법·부당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를 해당 사건 재판장에게 전달하게 하였으며, AE의 직전 회장으로로서 그



사정을 잘 알면서도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은 어느 것 하나 별 수 없이 중대한 것이나, 그 중에서도 피고인 B이 그 스스로도 판사이면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두 번이나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은 특히 중대하다.

이에 피고인 B의 위 각 범행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 B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앞서 본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비록 피고인 B의 역할과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위 각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사람은 AT 또는 BA이고, 피고인 B은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 아래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 B은 3차에 걸친 법원의 조사와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려고 하였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이 사건에 앞서 30년 가까이 판사로 근무하면서 재판사무를 수행하였던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형의 양정

이 법원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에 비추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각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과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1의 다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O,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BT지방법원 BW부 부장판사 BX에게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2015. 4. 13.경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시행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 또는 요청을 함으로써, BX으로 하여금 BT지방법원 BW부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BV)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재결정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2의 나 5) 나)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 범행 부분 중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O,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FU국 HU심의관 BZ에게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위 위헌제청결정문 및 직권취소 결정문이 보이지 않게 하는 전산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 내지 요청을 함으로써, BZ으로 하여금 2016. 4. 16.경 위 위헌제청결정문 및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하여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2의 다항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B의 AO,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과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3항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권고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피고인 A·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5. 26.경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CS법원 CV)에 관하여 재판장 CY에게 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법원에 위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는 이유 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CY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검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CY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나 2)항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나.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피고인 B)

1) 피고인 B의 AO, AT, BA 등과의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9.경 HA심의관 DC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전달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DC으로 하여금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W지방법원 DA)에 관하여 재판부와 접촉하여 2015. 9.경 ① 심증을 파악하고, ②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③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C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다 1)항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B의 AO, AT, BA 등과의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 9.경 BS실 심의관 X에게 DC이 파악해 온 재판부 심증을 기초로 예상 판결 이유, 판결에 따른 예상 파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언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위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다 2)항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B의 AO, AT, BA 등과의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판장 C에게, 2015. 9.경 DC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여,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DC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고, 2015. 11. 25.부터 2015. 11. 26.까지 사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여 DD을 통하여 판결문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하고 판결문을 최종 등록하게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 등을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C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다 3)항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4) 피고인 B의 AO, AT, BA 등과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4)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라항 해명자료 작성 및 행사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피고인 A·B의 AO, AT, BA 등과의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5) (나)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마 2)항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1) 피고인 A·B의 AO, AT, BA 등과의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AO,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6. 1. 6.경 Z지방법원 DY부 부장판사 DX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Z지방법원 DU)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법과 의견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DX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위 재판에 관하여 이미 이루어진 재판부 합의를 번복하고 다시 합의를 열어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의 결론을 설득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그 판결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미루기로 협의하여 선고기일을 추정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함으로써, DX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선고기일을 추정하도록 하여 DX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³⁷⁾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에서 제4의 바 1)항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 중 AO, AT,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바 1)항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 중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부분에서 본 것

³⁷⁾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6)항의 (라) 소결 부분에는 DX로 하여금 변론을 재개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DX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위 항의 (나) 1차 재판 개입 부분에는 DX가 변론을 재개하였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관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의 권리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A·B의 AO, AU, BA 등과의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6) (가), (다)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바 2)항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 개입(피고인 A·B의 AO, AU, BA 등과의 E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7)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AB고등법원 AC부 항소심 재판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재판 개입(피고인 B의 AO, AU, BA 등과의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5의 다 (8) (가), (다)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중 제4의 아 2)항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V당 행정소송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등(피고인 C)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과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제5항 V당 행정소송 관련 심증 누설 등(피고인 C)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6. V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 개입(피고인 D)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과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제6항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관련 배당의 경위(피고인 D)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7.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B의 AO,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2016. 3.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8의 다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제7의 가항 2016. 3.경 AE 약화 및 AF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A)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7. 1.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피고인 A·피고인 B의 AO, AU, BA과의, 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FV 판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법관 101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 공동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AO, AU,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7. 1.경 AI실 심의관 DL, FO에게 AE 및 AF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관의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DL으로 하여금 2017. 1. 24.경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고, FO를 통하여 실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함으로써 AE 회원이었던 FV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법관 101명으로 하여금 소속 연구회를 탈퇴하게 하여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제7의 나항 2017. 1.경 AE 및 AF 제재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 및 제7의 다항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부분 중 FV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FO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8.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실증 확인 지시(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법안 등에 GH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GG지방법원 기획법관 GI에게, 2015. 10. 25.경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확인하여 알려달라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G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심 판사 GN로부터 향후 재판진행 계획을 확인하여 보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사실별 판단 제8의 나항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재판장 판사 윤종섭 _____

 판사 김용신 _____

 판사 송인석 _____



과의 합의심판을 주재하고,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들에 대한 인사 참고자료인 평정 의견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은 AJ경부터 AM경까지 AN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건배당을 주관하고, 법관 등의 사무분담, 근무평정 등 AN고등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AN고등법원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였다.

마. AO

AO(2019. 2. 11. 구속 기소)는 AP경부터 AQ경까지 제AR대 AS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법원행정처 등 관계 공무원 및 각급 법원의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바. AT 및 AU

AT(2019. 2. 11. 불구속 기소)는 AV경부터 AW경까지, AU(2019. 2. 11. 불구속 기소)은 AX경부터 AY경까지 각 AZ으로 재직하면서, AS의 지휘를 받아 대외관계 업무, 법관 인사 업무, 법관 징계 및 비위 조사 업무를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일체를 관장하고, 법원행정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였다.

사. BA

BA(2018. 11. 14. 구속 기소)은 BB경부터 BC경까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 재직

39) 민사소송법 제135조 제1항(소송지휘권), 제136조 제1항(석명권), 제206조(판결의 선고), 제327조 제2항, 제3항(신문권),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경찰권)



하면서,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국회·행정부처 기타 대외관계 업무,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 조정, 법관의 국제화 연수 등 국제 관련 업무, 예산 편성·배정·결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AG정부터 BD경까지 BE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사무 일체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법행)

가. 범행 결의

AO, AT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2013. 11.경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V당(이하 'V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HH 정부 청와대가 상대적으로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중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향후 한정위헌 결정을 양산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하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등 법원 재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7.경 BH 관련 재판소원 사건⁴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40) BH 관련 재판소원 사건 진행경과 : 자산재평가 취소를 이유로 BH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707억 원 상당의 법인세가 부과되자 BH가 위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구 법률의 부칙도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2008. 12. 원고 패소취지로 파기환송하였으나, BH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2. 6. 경과규정을 두거나 구 법률을 계속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구 법률은 실효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BH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AN고법에 채심을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인용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는 상황에 이르자, AO, AT, BA 등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은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내부적으로 AI실을 중심으로 이론적 지원을 위한 헌법연구팀, 대응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한 헌법대응팀 등을 구성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하는 방안,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대외적으로는 국회, 학계, 국민 등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對 헌법재판소 관련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AO, AT, BA 등은 2015. 2.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민감한 사건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의 토론 및 보고,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구체적인 진행경과, 헌법재판소의 사건·정책에 대한 DK 및 헌법재판관들의 동향 등을 파악할 필요성을 느끼고, 헌법재판소에 부장연구관으로 파견된 BJ 부장판사를 이용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의 중요 정보를 수집하기로 계획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AS, AZ, BE 등의 지시 및 승인 하에 법원행정처는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 내부의 중요 정보를 수집하였고, AX경 AU이 AZ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의 중요 정보 등을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

청구하였으나 AN고법은 2013. 6. 기각결정을 하였고, BH는 위 재심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음



해 수집하여 법원행정처 지휘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부장연구관이 사건 사전검토, 토론, 사건보고서 작성·검토 및 헌법재판관 보고, 헌법재판소 정책 관련 회의 등 과정에서 확보한 비공개 내부 정보와 자료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정책추진 등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정보이므로 외부에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범행 사실

(1) 피고인 B 및 관련자들의 직무상 권한

AO는 AS, AT와 AU은 AZ, BA은 법원행정처 AI실장 및 차장으로서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HP으로서 AO의 직무와 권한 부여에 따라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에 참석하며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전달 지시



피고인 B은 HP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5. 2. 13.경 AO로부터 헌법재판소 관련 정보 확보, 대응책 마련 등 對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총괄할 것과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받았고, 그 무렵 AT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역할을 당부받았다.

특히 피고인 B은 2015. 2. 25.경 AO로부터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판단에 신중해질 수 있도록 파견 법관들이 완충역할을 해야 하고, 파견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대법원에 잘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지시받았고, 2015. 2. 27.경 AT로부터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파견 법관을 활용하되, 보안을 위해 일부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관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받았으며, 2015. 3. 13.경 AT에게 '현재 내부 논의 진행상황, 선고 정보 획득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중인 법관 중 1인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2015년도 헌법연구관 구성[안]' 문건을 보고하여 AT로부터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AO, AT의 각 지시에 따라 2015. 3. 중순경 BJ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파견 법관들에 대한 인사평정권이 법원행정처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파견 법관들이 법원과 관련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모두 BJ 부장에게 바로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BJ에게 '법원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등 정보가 확인되면 바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진행경과, 비공개 평의 내용,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들의 사건에 대



한 의견, 토론 내용 및 사건 보고서 등의 정보와 헌법재판소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추진상황,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 및 관련 비공개 내부 문건 등을 입수하여 자신이나 자신을 보좌하여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BS실 심의관 X에게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AX경 AZ으로 부임한 AU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 보고를 하면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현안 사건들의 내부 평의 결과 등 주요 정보 및 BJ 파견 법관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다는 사실을 함께 보고하였고, 이후 AZ 주재 실장회의 등에서 BJ을 통해서 수집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등을 토대로 논의하였으며, 그 무렵 AU으로부터 헌법재판소 관련 정보 확보, 대응책 마련 등 對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총괄할 것과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받았다.

(3)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주요 사건의 평의결과 등 정보 및 자료 수집

(가) 2015. 7.~9.경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J은 2015. 3. 중순경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 중 법원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사건들의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재판연구원 토론과 사건보고서의 내용 및 기타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던 중, 2015. 7. 1.경부터 피고인 B에게 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심판제청 사건 등의 주심 재판관, 쟁점, 재판관 평의 일정 등의 진행경과를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다수 사건의 진행상황과 내부 동향 및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들이 작성하여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된 사건보고서 등을 보고·전달하였고, 특히 헌법재



판소 주요 사건 8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BO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 BK대학교 공무원 사건, BH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배당 현황, 재판 연구관들의 토론 결과 및 보고 내용, 평의 회부 여부, 평의 결과, 선고 예상 시점 등이 포함된 정보와 자료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5.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들에 대해 BJ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을 정리하여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파일명 : '민감 현안 정리[2015. 9. AZ님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고 BA, AT에게 이를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였다.

㉔ 2016. 2.경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J은 피고인 B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계속하여 보고하였고, 특히 위와 같이 2015. 9. 15.자 보고서로 정리한 내용보다 한층 심화된 사건경과를 확인한 후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10건(관습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BO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 BK대학교 공무원 사건, BH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공무원의제규정 관련 시행령 사건,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건 경과, 주임연구관 재배정, '평의종결(6:3)' 등이 기재된 평의 결과(한정위헌 의견을 취한 재판관 수 및 각 재판관들의 견해 포함), 한정위헌 결정의 예상 등 정보와 사건보고서 등 자료 등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BJ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다음, 2016. 2. 12.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계속 중인 주요 사건들에 대해 BJ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을 BA, AT에게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고, AX경 위 보고서를 보완하여 작성한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을 신임 AZ인 AU에게 보고하였다.

(㉔)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수집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AO, AT, AU, BA과 함께, 위 (가), (나)항을 포함하여 2015. 7.경부터 2017.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기재와 같이 BJ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사건의 평의 결과 등 내부 진행 정보와 사전심사보고서, 쟁점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사건보고서 및 개별 사건의 기록에 첨부된 청구서, 의견서, 답변서, 참고서면 등 자료 총 194건을 보고·전달받았다.

(4)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정책 및 동향 등 수집

(㉔) 2016. 7.경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수집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J은 위 (3)항과 같이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사건의 정보나 자료를 보고하면서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정책 및 기타 동향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던 중, 2016. 7. 15.경 AO, AU으로부터 헌법개정 시안 등 개헌 관련 이슈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받은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당시 논의되던 개헌,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추진 전략 관련 정보가 담긴 다수의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내부 자료들[헌법개정에 대비한 헌법재판소 대응전략



(2008. 6.) 등]을 헌법재판소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BJ으로부터 입수한 위 자료들을 검토한 후, 2016. 7. 26.경 BS실 심의관 X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헌법재판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및 논거를 정리한 2016. 7. 26.자 '개헌을 포함한 사법부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현재 입장'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보고받은 다음, BA, AU에게 위 문건을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였다.

(내) 2016. 9.경 DK 관련 동향 수집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J은 2016. 9. 2.경 DJ 당시 DK 주제 '연구관 부장 및 팀장 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DK 및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DK의 비공개 발언을 청취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DJ DK이 차기 DK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 연임 제의가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연임 때문에 소장이 임명권자를 의식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국제행사 여럿을 유치하고 국제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 등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재판관들도 오해하는 것 같아 평의에서도 이런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공개적으로 해명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외부에 밝힐 일은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BJ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같은 날 DK의 비공개 발언에 관한 위 보고내용을 정리하여 2016. 9. 2.자 '현재 회의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BA, AU에게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였다.



(㉔) 2016. 9.~10.경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수집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J은 2016. 9. 23.경 HV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DK 임기 등에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헌법재판소의 내부 동향을 파악한 다음, 2016. 10. 10.경 피고인 B에게 'DJ DK과 HW HX처장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HY HZ실장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차기 DK과 관련하여 DJ DK은 EN 재판관을 지지하고 있고 최근 평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특정 재판관에게 면박을 주었으며, EN 재판관은 DJ DK의 연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헌법재판소 내부 상황을 보고하였다.

그 무렵 AU은 AO의 지시에 따라 AZ 주재 실장회의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16. 10. 12.경 BJ으로부터 보고받은 위 내용을 정리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찬성자, 반대자를 구분하여 각자의 논거를 적시하고 DJ DK, HW HX처장, EN, IA 재판관 등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BA, AU에게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였다.

(㉕)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131건 수집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AO, AT, AU, BA과 함께, 위 (가) 내지 (다)항을 포함하여 2015. 11.경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외 동향)' 기재와 같이 BJ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업무현황 및 업



무계획 등이 담긴 주요업무계획, 월례회의, 실국장회의 등 내부 자료, DK 주재 내부 비공개 회의 내용 등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정책 및 내부 동향에 대한 자료와 정보 총 131건을 보고·전달받았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AO, AT, AU, BA과 공모하여,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BJ에게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행정처 내에서 헌법과 관련된 사법 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는 피고인 B 및 X 등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BJ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 및 추진 정책의 구체적 진행경과, 평의결과 등 내부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여 보고 및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2015. 4. 10.경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전날인 2015. 4. 9.경 BT지방법원으로부터 BU(BV) 재직기간확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이 접수된 것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무렵 AO는 위와 같이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이 접수된 사실을 보고받고, AT, BA 등에게 '한정위헌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실장회의에서 논의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AO, AT, BA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V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다양한 압박 및 견제 방안 등을 검토하고, 2015. 4. 2.자 헌법재판소의 업무방해 사건 1차 평의 결과 정보를 취득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위와 같이 일선 법원이 직접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한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법원도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한정위헌을 인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거로 이용되는 등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지고 대법원의 위상이 낮아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위헌제청결정문을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하지 않는 방법 등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AT, BA 등은 신청인, 담당 재판부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 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담당 재판부를 잘 설득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단속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AO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미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으로 종결된 재판에 개입하여 그 결정을 변경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B 및 BR 당시 BS실장은 2015. 4. 10. 09:00경 BS실 심의관 X로부터 위와 같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이 접수된 사실 및 결정문이 이미 신청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헌제청결정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AZ 주재 실장회의에 위 내용을 보고하여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인바, AT, BA 등은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해서는 안 되므로 담당 재판부로서 하여금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재결정을 하게 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재판 개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산상으로도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의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블라인드 처리'를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 사실

AO는 AS, AT는 AZ, BA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업무, 홍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고, 피고인 B은 HP으로서 AO의 직무 및 권한 부여에 따라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에 참석하며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보고 업무, 헌법 관련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B은 AZ 주재 실장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을 한 BT지방법원 BW부 BX 부장판사에게 연락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을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변형결정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빌미를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위헌제청결정을 새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최종 결정되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X에게 위 실장회의 결과 등을 전달하면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AS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야 하니 보고서를 작성 하되, 1안 직권취소, 2안 경정, 3안 방기로 하고 1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적절히 구성해 보라, 그리고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을 아무도 봐서는 안 되니 대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인 AO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심을 받기 위해 X는 2015. 4. 12.경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그 문건에는 '이 사건 제청결정이 현재에 그대로 알려질 경우 현재의 한정위헌 정당성 논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현재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결정문을 열람할 수 없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해결방안으로 직권취소, 결정, 방기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무리가 있으나 흔적이 남지 않는 직권취소 후 재결정 방안이 적절'하며, '재판부가 본건 재결정을 함에 있어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책 방안과 FU국 HU심의관 BZ을 통해 확인한 결정문 검색 제외 조치 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이미 종결된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이처럼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결론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 B은 AT로부터 'AS님에게 보고를 하려면 여러 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니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의견을 구해보라'고 지시를 받아 대법원 헌·행조 재판연구관 BY에게 위헌제청결정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여, BY으로부터 '위헌제청결정의 경우 실체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이므로 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송부받았고, 한편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의 재판장 BX도 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직권취소하는 것은 이론상 난점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2015. 4. 13.경 AZ 주제 실장회의를 통해 위 문건의 대책 방안대로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AT, BA으로부터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이 보여서는 안 되니 결정문 검색에서 제외하는



블라인드 처리 방안을 진행하라'고 지시받았고, 그 무렵 AO에게 위 보고서의 내용과 함께 위와 같은 직권취소 및 재결정 방향 등을 보고하고, AO로부터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 B은 AO, AT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X 부장판사에게 연락하여 '원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BX이 재판장으로 있는 BT지방법원 BW부로 하여금 2015. 4. 13.경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였고, 위 3개의 결정에 대한 전산입력도 '위헌제청결정', '직권취소결정', '위헌제청결정'이 아닌 단순히 '결정', '결정', '결정'으로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2015. 4. 16.경 BZ 등을 통해 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제외 조치를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AO,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BS실 심의관 X, 위 사건 재판장인 BT지방법원 부장판사 BX, FU국 HU심의관 BZ에게 각각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일선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전산상 '블라인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 내지 요청을 함으로써, ① X로 하여금 일선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 및 재결정하고 이를 은폐하는 전산상 조치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② BX으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



지 위헌제청결정을 재결정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BX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며, ③ BZ으로 하여금 전산상 결정문 검색이 제외되도록 조치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피고인 B의 AO, AU, BA과의 공동 범행)

가. 범행 결의

지방자치단체 간 신규 매립지 등에 대한 귀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립지 등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 절차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는데, 2009. 4. 1.경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 등의 귀속 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⁴¹⁾이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지방자치법 제4조)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매립지 등의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의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종전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어 사실상 같은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 심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7. 하순경 AO, AU, BA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CG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41) 2009. 4. 1. 개정 당시 부서 명칭은 행정안전부였다가 2014. 11. 19.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건 범행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립지 등의 귀속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17. 7. 다시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CH CI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과 사실상 동일 사건이고, 이 사건을 비롯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총 4건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심리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후 2016. 10. 하순경 헌법재판소에서 위 CG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09. 4. 1.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 4조가 매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절차에서 위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거나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 의 소송과 별개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자, 피고인 B은 AO, AU, BA과 함께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매립지 등의 '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들을 헌법재판소보다 조기 선고함으로써 대법원에 위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한 판단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 사실

AO는 AS, AU은 AZ, BA은 BE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 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고, 피고인 B은 HP으로서 AO의 직무 및 권한 부여에 따라AZ 및 BE 주재 실장회의에 참석하며 헌법과 관련



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보고 업무, 헌법 관련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수립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7.경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BA 등에게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매립지의 관할 지정 문제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취지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을 보고하였고, BA이 그 자리에서 위 문건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 B에게 'AZ님에게 우선 보고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향후 의논을 해보자'고 지시하자 피고인 B은 위 보고서를 AU에게 보고하였고, AU이 위 보고를 받고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에게 '대법원에도 이 보고서 내용을 알려주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AO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헌재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은 2016. 7. 27.경 위 문건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원 AD에게 전달하였으며, AD은 2016. 7. 29.경 위 문건을 대법원 BQ CD에게 전달함으로써 법원행정처에서 결론을 내린 '매립지 관할 지정 문제는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을 대법원에 알려주었다.

(1) 2016. 10.경 법원행정처 의견 전달을 통한 대법원 재판 개입



이후 피고인 B은 2016. 10. 중순경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AU 등으로부터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리 중인 사건을 조기 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AD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해주며 ‘해당 문건을 AS에게도 보고드릴 테니 헌법재판소와 중복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된 사건들의 검토를 시작하라’는 취지를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고, 2016. 10. 20.경 AO에게 ‘대법원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조기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과 그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하여 AO가 위 내용대로 조치할 것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4개의 사건이 심리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지방자치법 규정의 위헌성을 언급하는 등 매립지 관할 분쟁에 있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니, 위 사건들에 대해 현재 결정 이전에 조기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판단 권한과 선고 시기 등을 검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대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후 AD은 헌법재판소와 중복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위 4건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C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현재 심리 보고(대의비)' 문건을 전달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현재에서 공개변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원 사건도 빨리 검토를 해서 현재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대법관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야 한다. 빨리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E은 조기 선고를 위하여 위 4건의 대법원 사건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

(2) 2016. 11.경 법원행정처 의견 전달을 통한 대법원 재판 개입

피고인 B은 2016. 11.경 AO, AU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4개의 사건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 등 2개의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으로 먼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AD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AD을 통하여 위 4개 사건의 담당 재판연구관인 CE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결론과 같은 내용으로 사건 검토를 진행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AO, AU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결론과 논의내용 등을 정리하여 2016. 11. 16.자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작성



하여 AU에게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계류 중인 4건의 매립지 사건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 등 2건은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으로 먼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고, 다만 선고 이유에서 지방자치법의 합헌성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판단 권한, 선고 시기, 선고 이유 등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대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11. 17.경 AD에게 위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AZ님, BE님께 보고드렸고 내용에 모두 동의하셨다. 대법원에서 위 매립지 사건들에 대해 검토한 연구관 보고서를 AZ님께 보고하고,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를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하였고, AU은 같은 날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보고를 하러 온 AD으로부터 CE이 작성한 ‘CF 대법관 주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보고받고, AD에게 ‘CF 대법관 주심 사건을 조기 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AD은 CE으로 하여금 해당 검토보고서를 CF 대법관 등 주심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CF



대법관 주심 사건에 대해 조기 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AO, AU,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7. 27.경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AD에게 법원행정처의 의사를 사전에 전달한 다음, 2016. 10. 19.경 AD 및 위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CE에게 대법원에 중복하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조기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2016. 11. 17.경 재차 AD 및 CE에게 대법원에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하여 조기 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 내지 요청을 함으로써, ① AD으로 하여금 배립지 등의 귀속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동일한 내용으로 계류 중인 4개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대법원에서 조기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AU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② CE으로 하여금 위 사건들의 조기 선고를 위한 사건 검토에 착수하여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 중 CF 대법관 주심 사건에 대해 조기 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CE 및 CF 대법관을 비롯한 주심 대법관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5.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피고인 A·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배경

AO, AT, BE BI, BA은 2014. 12. 19.경 헌법재판소의 V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



정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이후 위 결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 V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직된 V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위 의원직 상실 결정과 퇴직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이하 'V당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이러한 상황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을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하고, 향후 제기될 V당 행정소송을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던 BH 사건 등에 대한 재판소원과 관련하여 재판 취소 결정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 등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AO 등은 CK HP을 팀장으로, BS실 심의관 CL을 간사로 하는 V당 행정소송 대응 TFT(이하 'V당 TFT'라 함)를 구성한 후, V당 TFT로 하여금 V당 해산결정으로 인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학관계, V당 해산을 둘러싼 국민 여론 및 정치적 지형, 2014. 12. 19.경 발의된 상고법원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유·불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V당 행정소송의 결론 및 그에 부합하는 판결 이유의 구성, 선고 시기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 결과를 V당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전달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K은 CL 등 V당 TFT 팀원들로 하여금 관련 법령, 해외 사례, 학계의 태도, 언론보도 동향, V당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각 법원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송부받은 소장과 첨부서류 등 소송자료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V당 TFT에서는 2015. 1. 7.경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위 소송을 전략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률상 권한 없는 결정이므로 현행 헌법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크며,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사법부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유 실시 필요, 이하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이라 함)하는 내용의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한 후 BA, BI, AT, AO에게 순차로 보고하였고, AO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CK에게 ‘법원의 위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데, 짧은 시간에 애를 많이 썼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AT, BI, BA은 2015. 2.경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⁴²⁾을 보고받고, AO는 그 후 팀장 CK으로부터 위 문건들을 보고받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최종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각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V당 행정소송을 정무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과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무효화 하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결론 및 이유 실시 방안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의

42) ① 의원직상실결정의 정당성 검토, ② 정당해산결정 관련 언론 동향보고, ③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검토, ④ V당 행정소송 소송요건 검토, ⑤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⑥ V당 지방의원 현황(상세), ⑦ V당 행정소송 제기현황, ⑧ 재판무효 법리 검토, ⑨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 ⑩ V당 행정소송 처분성 및 본안 검토



심리, 결론, 판결 이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편 C은 W지법 기획법관·공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 2. 11.경 AI실 심의관 CM의 요청에 따라 CM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CN이 CQ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W지방법원 CO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이메일로 송부하며 '위 사건 재판장이 위 신청사건의 본안(W지방법원 CP)에 대해 CQ도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다룰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위 이메일 및 결정문은 같은 날 CM를 통해 V당 TFT 구성원인 CR, CL에게 전달되었다.

나. 피고인 A·B 및 관련자들의 직무상 권한

AO는 AS, AT, AU은 AZ, BA은 법원행정처 AI실장 및 BE, 피고인 A은 AI실장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고, 피고인 B은 HP으로서 AO의 직무 및 권한 부여에 따라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에 참석하며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보



고 업무, 헌법 관련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다. V당 행정소송 개입 등

(1) V당 행정소송에 대한 관여 지시

AO는 2014. 12. 19.경 이후 지속적으로 AT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V당 행정소송에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AT는 AO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에서 'V당 행정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내재되어 있음을 위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및 재판부와 공유하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

(2)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⁴³⁾ 재판 개입 (피고인 B)

(가) 범행 사실

BI는 위 지시에 따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3. 5.경 CS법원장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은 헌재와의 관계에서 법원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법원행정처의 관심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B, AT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AO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2015. 5.경 AT가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이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을 통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에 전달하기

43) CS법원 CV (원고 CW 외 4, 피고 대한민국)



로 결정하였고, BA은 피고인 B에게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대외용으로 변형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AO는 피고인 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계획을 보고받고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 파일을 법원 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 및 작성자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형하고,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기재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든 후, 2015. 5. 26.경 서울 강남역 인근에 있는 'CX' 일식집에서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현재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니 각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무렵 AO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CU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2015. 7.경 위 사건 재판장 CY에게 '각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검토해 보라'고 말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의 취지를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재판부에 전달하라는 취지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CU으로 하여금 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부에 이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재판장 CY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검토하게 하



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CY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⁴⁴⁾ 개입 (피고인 B)

(가) 재판 개입 지시

W지방법원 CZ부(재판장 C)는 V당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이 피고 CQ도 및 CQ도의회의장을 상대로 의원지위확인 및 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2015. 7. 22.경 변론을 종결하고 2015. 9. 16.경 판결 선고로 앞두고 있었다.

AT는 AO의 위 V당 행정소송에 대한 관여 지시에 따라 그 무렵 BA, 피고인 B 등에게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 판결 이유에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BA은 2015. 9.경 피고인 B에게 위 사건 재판부와 접촉하여 심증을 확인해 보고, 법원행정처의 입장 등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C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동기인 DB실 총괄심의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이니 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고 지시하였다.

44) W지방법원 DA (원고 CN, 피고 CQ도의회의장 외 1)



(ㄴ) 재판장 심증확인,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법 전달 등을 통한 재판 개입

DC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통해 AT 등의 지시를 전달받고 그 지시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2015. 9.경 C에게 연락하여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하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 필요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의 내용을 C에게 전달하는 한편, C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검토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판장의 심증을 파악하였다.

(ㄷ) 예상 판결 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시

이후 DC은 피고인 B에게 '위 사건 재판장 C에게 판결 이유에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재판장 C이 위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청구인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보고를 받은 후 BS실 심의관 X에게 위 내용을 정리하고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X는 2015. 9. 13.경 'W지방법원 DA 사건 재판부가 본안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청구인용에 따른 예상 파장 및 언론대응 방안' 등이 기재된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작성하여 2015. 9. 14. 13:00경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

(㉞) 선고기일 변경

그런데 그 무렵 AT는 W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결론을 두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공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W지방법원 CZ부를 재차 접촉하여 선고기일의 변경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DC은 위 결정에 따라 2015. 9. 중순경 C에게 연락하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적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선고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종래 이 사건 의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호소하며 조속한 재판 확정을 촉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히 심리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던 것이고, 달리 선고기일을 연기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2015. 9. 14. 18:00경 위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을 2015. 11. 25.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X가 2015. 9. 13.경 작성한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의 내용에 선고기일 연기 사실을 추가 기재해 2015. 9. 15.자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완성한 다음 이를 BA,



AT, AO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㉞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른 판결 선고

한편,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DC에게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DC은 그 무렵 이 문건을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위 판결 선고 전날인 2015. 11. 24.경 위 사건의 배석판사(주심) DD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 받았는데, DD의 판결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지 않았는바, 비례대표 CQ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 부정 당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이에 C은 위 판결문 초안에 대한 수정 및 판결문 완성분에 대한 전자서명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2015. 11. 25. 09:55경 판결 원본 없이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 합의 과정에서 배석판사 DD, DF에게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요구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직후 급히 판



결문을 다시 작성하면서 실무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전달받은 위 문건 취지가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받고, 위 파일을 이용하여 판결 이유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라 ‘① 삼권분립의 원칙상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 ②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판결문을 완성한 다음, 이를 W지방법원 공보관 DE을 통해 X에게 송부하고, 곧바로 문단 배열, 일부 문맥 등을 수정하여 DD에게 송부하면서 그 판결문을 법원 내부 판결문등록시스템에 등록하라고 지시하였다.

(해) 판결문 수정 지시를 통한 재판 개입

그런데, 아래 (4)항 기재와 같이 위 판결 이유가 포함된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이 DE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어 법원행정처가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C은 DC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이 사건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연락한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헌법재판소와의 마찰 및 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을 의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까지 받게 되자, 이에 부담을 느껴 2015. 11. 26. 10:35경 DD, DF가 전자서명한 판결문을 반려하면서 DD에게 판결문 제8쪽의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



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라는 문장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하여 판결문을 등록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시에는 판결 이유에 실시되지 않았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 권한 부분을 판결 이유에 넣었다가 이를 다시 삭제하는 등 판결 선고 후 총 3회에 걸쳐 수정된 판결문을 DD으로 하여금 판결문등록시스템에 최종 등록하게 하였다.

(사)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 DB실 총괄심의관 DC에게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접촉하여 심증을 파악하고,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전달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DC으로 하여금 재판장과 접촉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게 하고,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법리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② BS실 심의관 X에게 DC이 파악해 온 재판부 심증을 기초로 예상 판결 이유, 판결에 따른 예상 파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언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위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고, ③ DC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통해 재판장 C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 등을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C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4)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피고인 B)

(가) 범행 결의

W지방법원 CZ부는 2015. 11. 25.경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도의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삼권분립의 원칙상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위 판결의 결론은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른 것으로, V당 국회의원 5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심리·판단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1. 12.경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CS법원 CV 사건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W지방법원의 판결 선고 직후 X에게 선고결과를 확인하여 보고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X는 'W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법재판소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고, CS법원의 판결과 정반대의 취지로서, 향후 법관을 상대로



한 헌법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을 작성하였으며, 위 문건은 피고인 B, BA, AT, AO에게 순차로 보고되었고, AO는 이를 그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2015. 11. 25.경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DH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W지방법원 공보관 DE에 의해 위 문건이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사태(이하 ‘W공보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법원행정처가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외부에 노출되어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헌법재판소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자, AO는 AT로부터 위 상황을 보고받고 ‘V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아닌 심의관 개인의 의견이고, 위 보고서는 법원행정처 내부에 보고된 적이 없는 문건이라고 대응하여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AO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은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내부 지휘라인에 보고된 바 없다’는 허위의 ‘법원행정처 공식입장’을 정리해 그 내용에 따라 언론 등에 대응함으로써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은폐하기로 계획하였다.

(내) 범행 사실

그런데, 2015. 11. 26. 새벽 무렵 DI에 위 문건의 유출사실 및 그 문건 내용이 공



개되자, AT는 2015. 11. 26. 오전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전일 정리된 법원 행정처 공식입장에 따라 'BA이 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하여 거짓으로 해명하고, AI 실장 A 등은 언론과 청와대에 거짓으로 해명'하기로 결정하였고, AO는 그 무렵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실장회의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그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A은 X에게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에게 설명할 해명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X는 '①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부분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법원 행정처의 공식적 의견이 아닌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②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 역시 주무 심의관이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 내부 지휘라인에 보고한 바 없다'는 내용의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라는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BA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기초로 W지방법원 판결의 적절성을 확인한 것으로 이는 법원행정처의 확립된 입장이고, 위 문건은 피고인 B의 지시로 X가 작성하여 BA, AT 등에게 모두 보고되었으므로, 위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 해명자료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은 위 AT 주재 실장회의 결정 및 AO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가서 DJ DK 등 헌법재판소 관계자에게 위 해명자료를 전달하고, 위 해명자료의 내용에 따라 2015. 11. 25.자 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하였으며, 계속하여 청와대 HK비서관으로부터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문제가 된 문건과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AI실 심의관 D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 해명 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HK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AT, AO에게 보고하였다.

(ㄹ)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공문서인 위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⁴⁵⁾ 개입 (피고인 A·B)

(ㄱ) CS법원의 1심 판결 비판 및 항소심 대응 문건 작성 지시 (피고인 B)

CS법원 DM부(재판장 CY)는 2015. 11. 12.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1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V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산심판을 관장하는 범위에서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V당 해산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직접 적용하여 이끌어낸 결론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바, 결론적으로 위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행정처가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통해 정리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었기 때

45) AN고등법원 DN (원고 CW 외 4, 피고 대한민국)



문에, 피고인 B은 위 판결 선고 직후 BS실 심의관 X에게 위 판결을 비판하고 항소심 대응 계획 등을 검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X는 2015. 11. 12.자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행정 11. 12. 선고)'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1. 13.경 AT, BA 및 A 등이 참석한 AZ 주제 실장회의에서 이를 보고하였으며, AT는 위 보고를 받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 B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의 법리 구성 등을 비판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자료를 전달하는 등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비판하고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처리 방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언급하며 재판 개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B은 위 AT 주제 실장회의 보고를 마친 다음, 계속하여 AO에게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1심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문건을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AO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위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위 보고서의 향후 계획에 따른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AO는 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와 사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헌법연수교육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CY 부장판사의 소 각하 판결을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잘못된 사례로 교재에 언급하여 이와 같은 판결이 다시 선고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AT 역시 같은 날 자신이 주재하는 위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1, 2심 판사들이 사법부의 포괄적 관할권과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관할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1, 2심 판사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하였다.

(ㄹ) 법원행정처의 입장 전달 등을 통한 항소심 재판 개입 (피고인 A·B)

2015. 11. 26.경 위 CV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자, 피고인 B은 AO에게 위 항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였고, AT는 AO의 위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BA 등에게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1심 판결을 뒤집고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른 결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CS법원 CY 판결과 관련된 AN고등법원 사건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AN고등법원장 D은 2015. 12. 초순경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법원행정처 관심 사안이니 V당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DP부 DO 재판장에게 배당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요구받고 그에 따라 V당 행정소송 사건기록이 AN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임에도 아래 제7항 기재와 같이 행정과장 등 배당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미리 사건번호를 채번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결국 V당 행정소송 사건은 재판장 DO 주심사건으로 배당되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2015. 12.경 AT가 주재하는 실



장회의 등에서 위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장 DO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이 DO를 만나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무렵 X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쟁점과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X의 보고 내용을 숙지한 후, 2015. 12.경 전화로 DO에게 'V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권한 분쟁적 성격이 있고,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다. 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이 났는데, V당 소속 의원들의 직위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잘 따져봐야 된다'고 말하며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DO가 '곧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위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A은 이를 AT에게 보고하였고, AT는 피고인 A에게 '그렇다면 법관 인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 때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재차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AO는 피고인 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AT, BA 등과 함께 그 무렵 AT가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이 위 사건 항소심⁴⁶⁾의 후임 재판부(재판장 Y)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

46) AN고등법원 DN (원고 CW 외 4, 피고 대한민국)



적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의 문건 및 'V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위 국회의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2. 16.경 '우리 헌법 해석상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가 일반적·포괄적 사법권을 보유하고, 헌법 역시 재판의 준거규범이며, 현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각 호 열거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고, 현재의 준비법적 권한 행사를 방기하였으며, 대법원의 권리구제의 길을 봉쇄하였다'고 CS법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V당 사건 1심판결 관련' 문건 및 V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BA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확인한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였다.

한편, AU이 AX경 AZ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B은 법원행정처가 'V당 행정소송에서 현재의 권한 없는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해 사법부의 최고법원성을 선언해야 한다'는 AO, AT의 지시에 따라 V당 TFT에서 도출한 V당 행정소송의 구체적 판단 방법을 일선 재판부와 공유하고 있는 사실 및 전임 AZ 시절 정해진 바에 따라 AN고등법원 DP부 후임 재판장 Y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기재된 문건 등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AU에게 보고하였고,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AU은 AO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기재된 위 문건 등을 담당 재판장



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AU,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2. 하순경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이에 따른 검토 문건을 전달하기로 한 종전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의 결정에 따라 2016. 3. 3.경 서울 서초구 DR에 있는 DS에서, 항소심 재판장 Y에게 'V당 국회의원 사건은 헌법적 쟁점이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권한 분쟁적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것이 있으니 참고해서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위 'V당 사건 1심판결 관련' 등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 기재된 문건들 및 DQ의 「신민사소송법 강의」 제495면 복사본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O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Y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건 내용을 검토하였고, 위 항소심 재판부의 배석판사 DT은 X 심의관에게 연락하여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물어보고 검토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Y이 재판장인 AN고등법원 DP부는 2016. 4. 27.경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V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은 법리상 잘못된 것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O에게 위 판결 선고 내용을 보고하였다.

(ㄹ) 소결

이로써 ① 피고인 B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BS심 심의관 X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CS법원 1심 판결을 비판하고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법리와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자료를 전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② 피고인 A, 피고인 B은 AO, AT, AU,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N고등법원 DP부 재판장 Y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자료를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Y으로 하여금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자료를 검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Y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6)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⁴⁷⁾ 개입 (피고인 A·B)

(가) 범행 결의

AO는 2015. 11. 27.경 위 W공보사태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B에게 '헌법교육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 헌법교육의 제목을 판례 및 법리 전달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처럼 정하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는 등 'V당 행정소송에서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이 판결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AO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그 무렵 AT, BA 등과 함께

47) Z지방법원 DU (원고 DV 외 4, 피고 DW시 외 4)



AT가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을 통해 위 W지방법원 DA 사건에 이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제기한 Z지방법원 DU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부에도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이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어 본안 판단이 필요하고, 본안 판단의 결론은 청구기각으로 한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⁸⁾.

(나) 1차 재판 개입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6.경 Z지방법원 DU 사건 재판부(Z지방법원 DY부)의 재판장 DX에게 전화하여 '대법원은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해 DX가 그 내용을 긍정하며 청구인용의 심증을 내비치자 DX에게 '법원행정처는 청구기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및 그와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알려주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를 수 없다면 선고기일 연기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이 DX를 접촉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고 선고 연기를 권유하였다'는 내용의 2016. 1. 6.자 'V당 지방의원 Z지법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결과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AT, AO에게 보고하였다.

48) 기존에 마련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은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각하 판결을 하여서는 안되고 인용/기각 상관없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Z지방법원 재판 개입 당시에는 더 나아가 본안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도 '청구기각'으로 정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음



그런데, 당시 DX는 위 사건 재판에 관하여 2015. 12. 24.경 이미 변론을 종결하였고,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마치고 2016. 1. 14.경 판결 선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X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게 되자, 법원 행정처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따라 '청구기각'으로 결론을 재검토해 보기로 마음먹고, 이후 배석판사들에게 '청구기각으로 판결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어떠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미 합의된 청구인용의 결론 변경을 논의하였으나, 배석판사들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에 DX는 이미 2015. 6.경 한차례 선고를 연기하였고, 불안정한 지위에 대하여 조속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원고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재차 판결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정해진 선고기일에 기존 합의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 채 2016. 1. 13.경 기일변경명령을 하여 선고기일을 추정하였다.

(㉔) 2차 재판 개입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위 Z지방법원 DY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었고, 변경된 재판부(재판장 AA)는 변론이 재개된 위 사건에 대하여 2016. 4. 28.경 다시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5. 19.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한편, AO는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부임한 EZ BS실장 등 법원행정



처 관계자들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연구원을 하던 사람들이 헌법교수가 되어 헌법재판소에 정도된 내용의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다보니, 심지어 판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놀랍다'고 이야기하여 V당 행정소송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한 대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법부에 유리한 판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AU, BA 등과 함께 2016. 3.~5.경 AZ 및 BE 주제 실장회의에서 변경된 위 Z지방법원 재판부에 재차 위 (가)항과 같은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판단 방법을 전달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Z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DO에게 전화하여 'V당 행정소송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이 있는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하였으나, DO로부터 '재판부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BA, AU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AU 주제 실장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 피고인 B이 친분이 있는 재판장 AA에게 직접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AA에게 전화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본안 판단이 필요하고, 그 결론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론, 즉 청구기간이 타당하다는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이를 AU, AO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AA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따르



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따라 청구기각 판결을 검토하였으나, 배석판사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달리 2016. 5. 19.경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①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사건 전임 재판장인 Z지방법원 부장판사 DX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법과 의견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DX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재판부 합의를 번복하고 다시 합의를 열어 배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의 결론을 설득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판결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미루기로 협의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추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DX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고, ② AO, AU, BA 등과 공모하여 후임 재판장인 Z지방법원 부장판사 AA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법과 의견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AA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본안 판단에 들어가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AA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7)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⁴⁹⁾ 개입



(피고인 A·B)

(가) 범행 결의

앞서 본 바와 같이 AO는 W공보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V당 행정소송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한 대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법부에 유리한 판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던 중, 2015. 12. 7.경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고 판시한 위 W지방법원 DA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2~3.경 AU, BA 등과 함께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 등을 통해 위 1심 판결 결과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무렵 BA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BA 등과 함께 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AB고등법원 DZ부 재판장 EA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관련 검토 자료를 전달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다음, 피고인 A이 EA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법원행정처의 입장 등을 전달하여 판결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범행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EA에게 전화하여 '그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헌법적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내줄 테니 그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달라'고 말하여 EA의 승낙을 받은 후,

49) AB고등법원 EB (원고 CN, 피고 CQ도)



피고인 B을 통해 EA에게 이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 기재된 문건을 보내주었고, 피고인 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U, AO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후 EA는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문건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AB고등법원 DZ부는 2016. 4. 25.경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㉔)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AO, AU,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B고등법원 DZ부 재판장 EA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는 등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EA로 하여금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등을 검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EA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8)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⁵⁰⁾ 관련,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지시 및 재판 개입 (피고인 B)

(㉕) 범행 결의

V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2016. 4. 27.경 AN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고, 국회의원들의 상고로 2016. 5. 23.경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50) 대법원 EC (원고 CW 외 4, 피고 대한민국)



이에 AO, AU은 BA과 함께 2016. 5.경 피고인 B에게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위 선언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한 다음, 해당 검토 내용과 함께 대법원 EC V당 행정소송(이하 '이 상고사건')에 대하여 AS 및 AZ, 차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 BQ 및 선입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25.경 대법원 선입재판연구관 AD에게 연락하여 '이 상고사건이 AS님 및 법원행정처 AZ님, BE님의 관심 사안이니 향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연구 및 검토 과정에서 참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지시

그 후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X에게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위 선언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고, V당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논리를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X는 2016. 6. 8.경 'V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BA, AU 등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V당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의 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전원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론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을 수 있으니,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 자체에 대해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재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소송 요건을 검토하고, 상고심 절차 진행 사항인 특정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사유⁵¹⁾가 아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상고심의 절차 진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 개입

A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요구를 받은 이후 2016. 6. 3.경 대법원 ED EE에게 '이 상고사건은 AS이 관심을 갖는 중요 사건이니 위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잘 챙겨보고 신건연구관이 지정되면 즉시 자신에게 알려 달라'고 지시하였다.

5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피고인 B은 2016. 6. 8.경 이메일에 위 'V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첨부한 다음 'BS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U, AO에게 위 문건 전달 사실을 보고하였다.

AD은 2016. 6. 8.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수석연구관께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대법원 BQ이자 전합 소위 간사인 CD에게 피고인 B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문건을 전달하였다.

이후 EE은 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전합후보 안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CD, AD에게 보고하였고, CD, AD은 2016. 6. 9.경 총괄재판연구관 회의에서 이 사건을 전합 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다.

결국, 이 상고사건은 2016. 6. 13.경 전합 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 소위에서 대법관들에 의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가 검토되었고, AO가 위원장으로 있는 전합 소위는 위 사건을 '전합 보고사건'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AO는 CD BQ에게 위 사건의 검토를 부장급 재판연구관에게 맡길 것, 위 사건에 대한 중간 검토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해 줄 것, 위 사건이 전합 보고안건으로 지정되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를 철저히 비밀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AO의 위 지시에 따라 CD, AD은 2016. 6. 20.경 EE을 통하여 현·행조 재판연구관 EF에게 이 상고사건에 대한 신건 검토를 지시하면서 '① 이 상고사건이 AS 판



심사항이니 BQ을 통해 AS에게 중간 검토보고를 하고, ② 위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EF은 위 지시 및 요구에 따라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2016. 8. 9.경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던 EF은 AD에게 'AS이 2017. 2~3.경 정도에 심층 검토보고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2016. 10.경 중간보고를 할 예정인데, 독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어 위헌 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와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를 달리 보는 이론이 있으므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결론 차이를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려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을 보고하였다.

AD은 EF으로부터 위 보고를 받고,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EF으로부터 전해들은 위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위 내용을 AU에게 보고하였다.

(㉔) 소결

이로써 피고인 B은 AO, AU,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BS실 심의관 X에게 특정 사건 상고심의 소송요건과 전원합의체 회부 등 절차 진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AD에게 이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검토 내용을 대법원 BQ 등 대법원 내부에 전달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검토 내용 및 사건 진행 경과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게 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① X로 하여금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고, 위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른 언론의 반응, 사회적 파장 등 정무적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검토한 'V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② AD으로 하여금 위 보고서를 검토 및 대법원 BQ CD에게 전달하게 하고, 대법원 ED EE에게 이 상고사건이 AS의 관심사건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보고연구관이 지정되면 이를 알려주도록 하고, 이 상고사건에 대한 보고연구관 EF의 구체적 보고내용 및 향후 처리 일자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V당 행정소송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등 (피고인 C)

가. 법원행정처에 대한 심증 누설

(1) 범행사실

피고인 C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W지방법원 기획법관·공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 2. 11.경 법원행정처 AI실 심의관 CM의 요청에 따라 CM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CN이 CQ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청한 W지방법원 CO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송부하며 '위 사건 재판장이 위 신청사건의 본안사건⁵²⁾에 대해 CQ도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다룰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위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진

52) W지방법원 CP(원고 CN, 피고 CQ도선거관리위원회)



행 경과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15. 2.경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W지방법원 DA)을 심리 중인 위 법원 CZ부의 부장판사로 사무분담이 변경되어 재판장으로서 위 소송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5. 9. 10. CS법원 DM부가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⁵³⁾ 사건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법원행정처에서 위 판결을 비판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제5의 다 (3) (나)항 기재와 같이 법원행정처 DB실 총괄심의관 DC에게 '재판장 C을 접촉하여 재판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V당 행정소송에 대한 본안 판단이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9.경 W지방법원 CZ부에서 계속 중인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위 B의 지시를 받은 DC으로부터 제5의 다 (3) (나)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DC에게 '위 사건의 소송요건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을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것'이 는 취지로 위 사건 재판장인 자신의 심증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제5항 기재와 같이 법원행정처는 V당 행정소송을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른 구

53) CS법원 EL(원고 DV 외 5명,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적 판단방법까지 수립하여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V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의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장의 심증을 확인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판결의 결론 및 그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예측하여 정무적 대응방안을 만들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재판장 내지 배석판사, 법원장, 수석부장 및 기획법관 등 사법행정라인을 접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하여 향후 위 재판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심판의 합의는 공개될 수 없고⁵⁴⁾, 재판장이나 재판부의 심증이 판결 선고 전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재판의 일방당사자가 재판장의 잠정적 결론에 대응하여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법부의 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합의, 재판장이나 재판부의 심증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비밀에 해당한다.

(2) 소결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선고결과 및 이유에 관한 재판장의 심증을 누설하였다.

나.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른 일방적 재판진행

(1)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및 합의부원의 재판권 등

피고인 C은 W지방법원 CZ부 부장판사로서 W지방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위 재

54) 법원조직법 제65조



판부 소속 법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⁵⁵⁾, 법관의 재판사무 또한 위와 같은 직무감독의 대상이 된다.

재판사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은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재판과 관련된 직무감독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영역에도 법관의 재판에 명백한 실수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직무감독권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피고인 C은 위 재판부가 심리하는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합의체를 대표하여 신문권·소송지휘권·법정경찰권·석명권을 행사하고, 판결 내용 확정을 위한 재판부 합의심판을 주재하며 판결을 선고하고,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의 건강, 직무자세, 직무수행 능력 등을 기초로 재판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의 평정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⁵⁶⁾이 있었다.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사법부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사법부 내부 작용으로부터의 독립을 포함하는바, 3인의 판사가 대등한 관계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통해 신중한 결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합의체 재판의 경우에도, 개별 법관은 재판장의 사실 및 법률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합의체의 대표기관인 재판장의 권한 행사는 합의체를 대표하여 행하여지

55) 법원조직법 제30조, 제27조 제2항, 제3항

56) 법원조직법 제44조의 2, 판사근무성적등평정규칙 제5조 제2항



는 것으로 합의체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합의부원인 배석판사가 이의를 가진 경우에는 사실상의 합의를 구하여 합의체의 의사 결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합의에 있어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표결을 통해 과반수의 의견으로 합의체의 의사를 정하여 결정해야 하는바⁵⁷⁾, 합의부원인 법관은 합의 절차에 참여하여 판결의 결론인 주문과 판결 이유의 내용에 관해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는데, 판결서에는 판결의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하고⁵⁸⁾, 판결 이유의 구성과 이유모순 등은 상고이유가 되는바⁵⁹⁾, 합의부원인 법관은 위 판결서의 작성 및 수정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고⁶⁰⁾,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성립되면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력을 가지고, 형식적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긴다⁶¹⁾. 따라서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인 법관이 판결

57) 법원조직법 제66조 제1항

58)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으로 준용

59)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

60) 민사소송법 제206조

61) 민사소송법 제205조



선고 후에 판결의 내용을 구성하는 판결 이유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범행 사실

피고인 C이 재판장으로 있던 W지방법원 CZ부는 2015. 2. 6.경 접수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W지방법원 DA) 사건을 심리하면서 '불안정한 지위에 대하여 조속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원고들의 입장과 위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재판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여 2015. 7. 22.경 변론을 종결하고 2015. 9. 16.경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은 2015. 9.경 DC으로부터 제5의 다 (3) (라)항 기재와 같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적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선고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받고, 종래 이 사건 의원 지위 유지 여부를 둘러싼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호소하며 조속한 재판 확정을 촉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히 심리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던 것이고, 달리 선고기일을 연기할 이유가 없어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해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 요청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배석판사(주심) DD이 재판장인 자신의 절차 진행 방식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식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법



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한다는 점이 DD에게 알려질 경우 DD이 위 선고기일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것을 우려하여 DD에게 법원 행정처의 위 요청 사실을 숨긴 채 '최근에 피고 측에서 제출한 서류도 있으니, 해당 자료도 좀 더 보고 법리도 더 검토해 보기 위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연기하자. 판결 초고는 미루고 CS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이를 참고해서 작성하자'고 이야기하면서 DD에게 판결 선고기일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또 다른 합의부원인 배석판사 DF의 의사는 묻지 아니한 채 2015. 9. 14. 18:00경 위 사건의 판결 선고기일을 2015. 11. 25.로 변경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판결 선고 전날인 2015. 11. 24.정 DD으로부터 판결문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 받았는데, DD이 작성한 판결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위 헌정당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지 않았는바, 비례대표 CQ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그 지위를 부정당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이에 피고인 C은 배석판사 DD, DF와 판결 이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고, 판결문 초안에 대한 수정 및 판결문 완성본에 대한 전자서명 등 절차도 진행하지 아니한 채, 2015. 11. 25. 09:55경 판결 원본 없이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의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⁶²).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직후인 2015. 11. 25. 10:55경부터 12:01경 까지 사이에 급히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면서 실무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2015. 9.경 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DC으로부터 전달받은 제5의 다 (3) (마)항 기재 문 건 취지가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받고, 위 파일을 이용하여 판결 이유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라 '① 삼권분 립의 원칙상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 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 ② 이 법원은 헌법 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 석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판결문(이하 '1차 수정 판결문')을 완성한 다음, 같은 날 12:02경 이를 W지방법원 공보관 DE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DE은 같은 날 12:27경 위 1차 수정 판결문을 BS실 심의관 X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계속하여 12:33경 언 론사 기자들에게 '일단 급하실 듯하여 판결문 초고(등록전 판결문)를 보내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에 위 1차 수정 판결문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1. 25. 12:41경 1차 수정 판결문의 문단 배열, 일부 문맥 등을 재차 수정한 후(이하 '2차 수정 판결문'), 같은 날 13:07경 DD에게 송부하면서 위 2 차 수정 판결문의 주문과 판결 이유가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반영한 것임을 숨긴 채 전자서명 및 판결문 등록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D은 2015. 11. 25. 15:44경 피고인 C이 등록을 지시한 위 2차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62)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판결 원본 없이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선고조서에 "재판장 판사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선고"라고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음



마쳤고, 배석판사 DF는 같은 날 15:53경 위 2차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을 마쳤다⁶³⁾.

그런데, 2015. 11. 25. 15:37경 W공보사태로 위 판결 이유가 포함된 2015. 11. 25. 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이 외부에 공개되어 법원행정처가 곤경에 빠지게 되자, 피고인 C은 위 2차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절차를 중단하였고, B은 같은 날 DC에게 'DC부장이 지난번에 V당 사건에 대해 C부장이랑 통화한 것과 관련하여 C부장의 입단속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DC은 B의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C에게 'C부장님, 오늘 선고한 명쾌하고 훌륭한 판결 언론에서 잘 보았어요. 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이번 V당 판결에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 전국 V당 사건을 정리하면서 C 부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혹시나 행정처의 재판관여 논란을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언론과 접촉할 기회가 있게 되면, 작년에 공보관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적절히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C은 위 내용을 수궁하면서 DC에게 잘 알겠다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5. 11. 26.경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BJ으로부터 V당 지방의회의원 사건 판결문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자 BJ에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법률이지 않느냐. 법률의 해석권한은 법원에 있다

63) 판결문 전자서명 및 등록절차는 통상 주심판사 → 주심이 아닌 배석판사 → 재판장 순으로 전자서명을 마쳐 판결원본을 생성한 후, 주심판사가 이를 법원 내부 판결문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는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은 후 즉시 DC에게 전화하여 'BJ이 전화를 했던데, 너 괜찮은 거냐. 현재가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될 소지는 없는거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DC은 '별 문제 있겠느냐'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그 무렵 B은 BJ에게 연락하여 'C 부장과 통화했느냐. 국회의원직 상실 부분은 뻔 것이니 BJ부장은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DC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이 사건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연락한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와의 마찰 및 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을 의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까지 받게 되자, 이에 부담을 느껴 2015. 11. 26. 10:35경 DD, DF가 전날 전자서명한 판결문을 반려하면서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전혀 알리지 않고 DD에게 판결문 제8쪽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을 삭제한 후 그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및 등록절차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DD은 피고인 C의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2차 수정 판결문 제8쪽의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라는 문장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부분을 삭제한 후 위 수정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절차를 마친 다음 위와 같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시에는 판결 이유에 실시되지 않았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 권한 부분을 판결 이유에 넣었다가 이를 다시 삭제하는 등 판결 선고 후 총 3회에 걸쳐 수정된 최종 판



결문을 같은 날 11:18경 판결문 등록시스템에 등록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 C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판결문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할 목적으로 이미 판결을 선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배석판사이자 주심인 DD에게 법원행정처의 요구사실을 숨기고, 판결이유의 구성에 관한 실질적 합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판결 선고 후에 자신이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수정한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및 판결문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반영해 판결문의 일부 설시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DD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부합되게 작성·변경한 판결문에 대해 이의 없이 전자서명, 판결문 등록 및 재등록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C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판결 이유를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DD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7. V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 개입 (피고인 D)

가. 범행 배경

AO, AT는 제5의 다 (5)항 기재와 같이, CS법원 DM부가 2015. 11. 12.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자 위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위 사람들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자료를 전달하는 등으로 항소심에서는 위 소 각하 판결과 달리 반드시 위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이 선고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게 되었



다.

그 결과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2015. 11. 말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위 1심 재판부처럼 법원행정처의 요구와 배치되는 판결을 선고할 위협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항소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의도한 대로 판결이 선고되도록 사건의 배당절차부터 관여하기로 마음먹고,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AI실장인 A과 과거 같은 재판부에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장 DO 주심 사건으로 배당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 사실

피고인 D은 AN고등법원장이자 AN고등법원 사건의 배당 주관자로서 헌법상 가치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부 내·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며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공정한 사건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당절차 전반에 걸쳐 사건배당 관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업무상 지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사건배당과 직결되는 재판부 구성 및 업무분장 등 법관 등의 사무분담 지정, 소속 법관 및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등 AN고등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AN고등법원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15. 12. 2.경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법원행정처에서 매우 관심이 높은 V당 국회의원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DP부 DO 재판장에게 배당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배당 주관자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해 일정한 방향으로 판결이 선고되기를 희망하여 사적 친분이 있거나 특정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법관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재판 독립의 원칙을 침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배당실시 시기를 '매일 접수를 마감한 즉시 또는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사건배당 주관자 등이 임의로 배당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배당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건배당 주관자를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으로 지정하면서도 '배당순위번호의 부여를 통한 사건배당'을 실시할 경우 사건배당 주관자가 임의로 사건의 배당순위번호 부여를 하지 못하도록 그 법원의 직원을 보조자로 참여하게 하였으며, '사건배당시스템을 통한 사건배당'의 경우에도 사건배당 주관자, 사건배당 확인자, 사건배당 담당자를 각각 지정⁶⁴⁾하고, 사건배당 담당자는 사건분류(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등 작업), 제척사항 및 관련사건 등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입력하고, 사건배당 주관자는 원칙적으로 자동배당을 실행하되,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 등의 경우

64)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23조 (사건배당 관여자) 사건배당시스템에서의 사건배당에 관여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건배당 주관자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배당 주관자로서, 사건배당시스템 중 자동배당 실행 프로그램과 배당결과식제 프로그램은 사건배당 주관자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사용될 수 있다.
2. 사건배당 대리자 :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건배당 주관자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3. 사건배당 확인자 :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과의 장
4. 사건배당 담당자 : 사건배당업무를 처리하는 각 부서·과의 직원



에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 그 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하는 방법으로 배당을 실행하고, 사건배당 확인자는 배당결과를 확인하여 최종 확정하는 등 배당절차와 업무 담당자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사건배당 주관자 등이 임의로 사건배당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AN고등법원은 행정항소 사건의 경우 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을 구체화한 '직무편람'을 통하여, 사건배당 담당자가 송부된 기록들을 전담사건⁶⁵⁾과 일반사건으로 분류하되 전담사건에 대해 먼저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동일한 사건 내에서는 법원별⁶⁶⁾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며, 동일 법원 사건일 경우 '구단'이 '구합'보다 우선하되 1심 사건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사건번호부여부에 의하여 항소심 사건번호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적인 사건번호부여를 통한 배당 가능성까지 철저히 차단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D은 2015. 11. 말경 제5의 다 (4) (가)항 기재와 같은 'W공보사태'와 관련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삼권분립의 원칙상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시한 W지방법원의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판결을 지지하는 반면에 법원에 판단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CS법원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판결에

65) 전담사건 내에서는 공정거래→토지수용→노동→조세 사건 순으로 사건번호 부여

66) CS법원→FC지법→FD지법→FE지법 순으로 사건번호 부여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는 AN고등법원 DP부 DO 재판장에게 배당되도록 한 다음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D이 AN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9. 3.경 HS 전 대법관의 HT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에 대하여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진상조사단에서 '재판부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 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HT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및 법원행정처의 '법관의 독립 침해 사례 및 기준 정립' 제도개선 TFT 등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재판권 침해 행위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 D은 법원 내부에서의 이와 같은 논의 및 재판 개입 행위의 실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 D은 AN고등법원의 배당 주관자이자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AN고등법원 사건배당 관여자들이 사건번호부여 순서나 배당시기 등을 임의로 조절하여 특정 사건의 배당순위나 배당되는 재판부가 달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배당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직무편람'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12. 2.경 위와 같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을 DO 재판장 주심 사건으로 배당되도록 해 달라'는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로 배당(이하 '특례배당')하는 것은, 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내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업무부담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 일반적인 배당방법에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명백한 경우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경우 전문 사건이 아닌 일반 행정항소 사건으로 사실관계 다툼이 없고 법리적 쟁점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으로 명확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2.경 AN고등법원의 행정 사건에 대한 배당은 누적 배당 건수가 적은 재판부부터 순차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재판부별 업무량에 현저한 불균형이 없었고, DP부 DO 재판장의 경우 2016. 2.경 일선 법원장으로 인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각각의 특례배당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W공보사태로 인하여 언론 및 IB 등 외부로부터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강하게 의심받고 있어서 특례배당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었다.

그 후 피고인 D은 특례배당이 아닌 '사건번호를 미리 파악하여 그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게 하는 방식'으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이 DO 재판장에게 배당되게 하기로 계획하고, 2015. 12. 2.경 1심 법원인 CS법원에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기록이 AN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임을 알면서도 사건배당 확인자인



AN고등법원 행정과장 HR을 불러 'V당 사건이 곧 올라올 것인데 행정처에서 관심이 많은 사건이다. DP부에 배당이 되어야 하는데 DO 부장이 어떠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V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잡아 보세요'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HR은 같은 날 사건배당 담당자인 FG에게 피고인 D의 지시사항이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V당 사건이 곧 올라올 것이니 사건번호를 미리 하나 따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FG은 같은 날 CS법원에 연락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기록이 당일 송부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15:36경까지 기록이 송부된 사건들에 대해서만 사건분류·채번 등 사건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송부된 사건들은 2015. 12. 3. 접수하는 것으로 정한 다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을 2015. 12. 3. 첫 사건으로 채번·접수하는 것을 전제로 사건번호를 'DN'으로 특정하여 포스트잇 메모지에 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HR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FG은 AN고등법원 사건배당 담당자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기록 송부가 되기도 전에 위 '법관동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직무편람' 등에 위반하여 임의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만 별도로 채번해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예규 및 편람에 의할 경우, 2015. 12. 3. 08:49경 실제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을 포함하여 행정항소 사건에 대한 채번 등 접수업무를 시작할 당시, 전날 17:12경 이후 기록 송부되어 접수대기 중인 행정항소 사건이 총 10건이었고, 해당 사건 중 조세 전문사건이 총 3건이었으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과 같은 일반 행정사건은 모두 1심이 CS법원이었는데 그 중 V당 국



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보다 사건번호가 빠른 사건이 5건이었기 때문에, 결국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번호부여 순서를 10건 중 9번째로 하여 사건번호를 'DN'이 아닌 'FF'67로 부여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5. 12. 2.경 HR으로부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번호가 'DN'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포스트잇 메모지를 전달받자 HR에게 '알았다. 사건이 오면 이 번호로 하라'고 지시하는 등 배당과정에서 위 사건번호 'DN'을 위 예규 및 편람 등에 위배되게 그 무렵 채번된 다른 행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달리 취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FG은 피고인 D의 위 지시에 따라 2015. 12. 3. 08:49경 '전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하여 배당결재 상신 후 전날 기록 송부된 사건들에 대하여 사건번호를 채번'하던 기존 업무 방식과 달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 1건에 대해서만 전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배당결재 상신 전에 사건번호 'DN'으로 별도 채번하여 같은 날 08:52경 접수를 마쳤고⁶⁷⁾, 09:07경 이루어진 배당결재 상신 대상 사건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⁶⁸⁾ 다음날인 12. 4. 09:54경 배당결재를 상신하였고⁶⁹⁾ 위 사건은

67) FF 사건은 2015. 12. 4. 배당에서 F부 나 주심으로 배당되었음

68) FG은 2015. 12. 3. 08:49경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사건번호 'DN'으로 채번하였고, 09:07경 전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하여 배당결재를 상신하였으며, 같은 날 09:47경부터 09:49경까지 전날 기록 송부된 나머지 9건에 대하여 채번하였음

69) 2015. 12. 3. 전날 접수된 일반행정항소 사건은 총 26건이었고, DP부 가 주심은 배당률 순번 상 35번째 배당순위였으므로, DN 사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배당결재 상신하였을 경우 DP부 가 주심은 배당순위에 들어가지 않게 됨

70) 2015. 12. 4. FG이 배당결재 상신한 사건 중, 형사신청 및 행정항고 사건은 각 09:45경 결재 상신되어 09:47경 배당실행 되었는데, 행정항소 사건은 09:54경 결재 상신되었음에도 15:25경 배당실행 되었는데, AG경부터 2016. 2. 4.경까지 행정항소 사건의 오후 배당실행은 2015. 12. 4.이 유일함



계속 배당실행이 지연되다가 같은 날 15:25경 배당실행되어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요구대로 DP부 DO 재판장 주심 사건으로 배당되었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D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이 법원행정처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요청대로 DO 재판장에게 배당되게 하기 위해 사건배당 관여자인 HR, FG으로 하여금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및 '직무편람' 등에 위반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만 기록 송부 전에 사건분류 기준 등에 맞지 않게 미리 별도 채번하게 하고, 기록 송부 후 미리 채번한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하는 등 사건배당 과정에서 위 사건을 달리 취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B의 AO,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피고인 A, 피고인 B은 AO, AU, BA 등과 함께 2015. 7.경부터 AE와 그 소모임인 AF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에 반대하고 법관인사 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러한 의견들이 외부로 표출될 경우 AS 및 법원행정처의 일선 판사들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되고 대법원이 내부 갈등조차 스스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것을 우려하여, 위 연구회와 AF의 활동을 저지하고 종국적으로는 연구회를 와해시킴으로써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직무상 권한 및 역할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I실장, AO는 AS, AU은 AZ, BA은 BE으로서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전문 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 업무 등을 위해 각 전문분야연구회 및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일반적 직무상 권한 및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을 지휘·감독할 직무상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AE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연구회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한 것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AE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회원들의 동향을 파악하며 법원행정처가 AE 및 AF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견제 및 와해 조치를 시행하는데 관여하였다.

다. 2016. 3.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피고인 A)

(1) 범행 사실

BC경 AF에서 'IC'를 개최하여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자 BA은 AI실 심의관 DL에게 AF에 대한 제재 및 와해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DL은 위와 같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5. 8. 24.경 'AF 활동 부분에 대하여만 예산 및 전산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일반 회원과 분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AF 대응방안(對外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DL 심의관으로부터 위 보고서를 보고받은 후 AZ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 참석하여 BA 등과 AF의 동향을 파악하고 AF의 제재 및 와해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후 2016. 1.경 AF에서는 AO가 주도하여 제도 도입을 추진한 FN의 위원 임명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FM 판사가 위 토론회에서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방안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 뒤, 2016. 2. 1.경 판사회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취지의 '법관의 사법행정참여 제도화에 관한 건의문'을 코트넷에 게시하는 등 AF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계속하여 발표하자, AO는 AU과 BA, 피고인 A에게 AE 및 AF에 대한 제재 및 와해 방안을 강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BA과 함께 AO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AI실 심의관 DL에게 AE 및 AF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DL 심의관은 2016. 3. 25.자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다음 BA에게 보고하였으며, BA은 이를 AU, AO에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검토배경을 'AE의 폭발적 성장 및 문제점 발생'으로 들면서, '중복가입자 정리가 실질적인 AE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중복가입자 정리 시행에 따른 'AE 위축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AE의 회원수가 431명에서 204명으로 줄어들어 이 조치를 통해 AE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목표가 달성될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위 조치가 AE 및 AF 와해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법관들의 자발적 연구 모임인 AE 및 AF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복가입을 이유로 탈퇴시키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법관의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2)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AO, AU,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I실 심의관 DL에게 AE 및 AF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관의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DL으로 하여금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17. 1.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피고인 A·B)

(1) 범행 사실

2017. 1.경 AE 및 AF에서 FR대학교 법학연구원과 '법관인사'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과 AO, AU, BA은 AE 및 AF가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AS의 인사권을 문제 삼는 내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AS의 인사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사법행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며 대법원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원 내·외부에 표출하려는 것이므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AO는 2017. 1.경 BA에게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도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AF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AE 및 공동학술대회에 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AU과 BA은 그 무렵 피고인 A 등이 참석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B에게 공동학술대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BA과 함께 AI실 심의관 DL에게 위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의 검토와 아울러 AE 및 AF를 와해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DL 심의관이 2017. 1. 24.경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뒤 BA에게 보고하자, BA은 이를 AU, AO에게 순차로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B은 AE 기획팀장이던 FS 판사에게 위 공동학술대회가 철저하게 법원 내부행사로 진행되도록 해주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위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는 검토배경으로 'AE 명의 법관인사제도 학술대회 개최 의결'을 들면서, 'AE 소속 일반 법관과 AF 소속 법관 사이에 거리감을 형성함으로써 AF 활동을 위축시켜야 함'이라고 검토되어 있었고, 그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FL의 후신이 정치적으로 AE를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다수 법관들의 심리적 거리감 및 주저감을 형성하는 한편, 중기 방안으로 2000. 8.경 제정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중복가입된 AE 회원들의 탈퇴를 유도하자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중복가입 해소 방안'이 다른 방안에 비하여 법원행정처의 정무적인 의도 및 특정 연구회를 표적으로 한 압박수단이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이라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2017. 3. 초순경 중복가입 해소조치 공지' 등 시기별 조치



사항을 명시한 로드맵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법관들의 연구 모임인 AE 및 AF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 하에 구체적인 시기별 시행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법관의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편, AE 운영위원회가 2017. 1. 23.경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의결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AU, BA과 함께 AO의 지시에 따라 2017. 1. 26.경 AZ주재 실장회의에서 AE와 AF의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시킬 의도로 일용 2017. 2. 9.에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그 시행을 위한 공지글은 AI실 심의관 FO에게 지시하여 작성하기로 결정한 뒤 그 무렵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AO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피고인 A은 BA과 함께 피고인 B을 통하여 위 FO에게 공지글을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FO로부터 공지글을 보고받고 이를 일부 수정하여 공지글을 완성한 다음 2017. 2. 9.경 BA에게 위 공지글을 보고한 뒤 FO에게 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FO로부터 위 공지글을 보고받고 FO에게 공지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위 공지글을 보고받은 AU이 피고인 A에게 실장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은 FO에게 공지글의 공지를 보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AU, BA과 함께 2017. 2. 10.경 AZ주재 실장회의에서 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여부를 다시 논의한 뒤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실제로는 AE와 AF를 표적으로 이들 모임의 활동을 저지하고 와해시킬 목적으로 시행되는 압박수단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위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AZ AU이나 차장 BA의 명의로 아



년 FU국장 명의로 공지함과 아울러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실시하는 이유가 마치 국회 및 감사원의 예산 관련 지적 우려 때문인 것처럼 위장할 목적으로 위 공지글에 '국회 및 감사원의 예산 관련 지적 우려'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정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결정을 FO에게 전하며 공지글에 '국회 및 감사원의 예산 관련 지적 우려' 문구를 포함하라고 지시하고, AU AZ에게 수정된 공지글을 다시 보고해야 하는지 묻는 FO에게 'AZ 주재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문구까지 결정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드릴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며 수정된 공지글을 확정해주었고, FO는 2017. 2. 13.경 피고인 A이 공지하라고 지시하자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공지글을 법원행정처 FU국 FT 심의관을 통해 FU국장 CB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CB은 같은 날 FU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위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 탈퇴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게시하여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였다.

이후 위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대한 법관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BA은 AU에게 보고한 후 2017. 2. 20.경 BE 명의로 코트넷에 그 시행을 유보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중단하였는데, 2017. 2. 13.경부터 2. 20.경까지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AE를 탈퇴한 회원이 28명, AE 회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회를 탈퇴한 회원이 73명에 이르렀다.

(2)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AO, AU,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I 실 심의관 DL, FO에게 AE 및 AF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관의 표현의 자



유 및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DL으로 하여금 시기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고, FO로 하여금 코트넷 공지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실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함으로써 AE 회원이었던 FV 판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법관 101명으로 하여금 소속 연구회를 탈퇴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9.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가. 범행 배경

피고인 A은 2016. 7. 8.경 GG지방법원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관련 홍보 업무 비용을 제3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여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GH당 소속 GE, GF 의원에게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자 GG지방법원 기획법관 GI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파일과 함께 이메일로 보고받았고, 2016. 7. 28.경 위 의원들에게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자 AI실 심의관 FO를 통해 GI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파일과 함께 보고받았다.

한편 GH당 사무부총장 GJ은 2016. 7. 15.경 GG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혐의로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GE, GF 의원은 2016. 8. 10.경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기).

피고인 A은 2016. 10. 초순경 GJ이 보석 청구를 한 이후부터 GH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서 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GJ의 보석이 가능한지, GE, GF 의원

71) GG지방법원 GL, GM(병합), 피고인 GJ, GE, GF 등



의 선고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GI 판사를 통해 위 사건 담당 재판부(GK부)의 재판진행 계획, 보석과 유무죄 관련 심증을 파악하여 GH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여 향후 사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법안 등에 대해 도움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 사실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I실장으로서 국회 등 대외관계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6. 10. 25. 13:45경 코트넷 사건 검색을 통해 위 사건들의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한 다음, 전화로 GI에게 '향후 재판진행 계획에 대하여 주심 판사나 재판부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느냐, GH당 당직자인 GJ에 대한 보석이 허용될 것인지를 파악해서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GI은 주심 판사인 GN로부터 향후 재판진행 계획과 1심 판결 선고시 GJ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결정할 예정으로 선고 이전에 보석을 허가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0. 하순경 GH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GI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11. 28. 09:20경 GI에게 전화로 'GE, GF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라는 취지로 지



시하였다.

이에 GI은 GN 판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GN로부터 '피고인 측 변명이 완전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된다면 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심증과 예상 선고기일(2017. 1. 11.) 등을 파악한 후 같은 날 09:53경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11. 하순경 GH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및 법안 등에 GH당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협조를 얻을 목적으로 GG지방법원 기획법관 GI에게 GJ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 및 GE, GF 의원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재판부 심증 등을 확인해 알려 달라는 취지의 삼권분립 원칙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GI으로 하여금 주심 판사 GN로부터 향후 재판진행 계획, GJ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 및 GE, GF 의원 사건의 유무죄에 대한 재판부 심증을 확인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범죄일람표(1) -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⁷²⁾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	2015. 7. 1.	X	헌재 내부 정보	2013헌바359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 등 헌재 심리중인 사건 11건에 대한 청구인, 청구 취지, 배당현황, 주심재판관, 일정 등 사건 정보
2	2015. 7. 6.	B	시행령 위헌확인 사건	2012헌마89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별표1 위헌확인 등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10건에 대한 주심재판관 및 보고일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
3	"	"	시행령 위헌 사건	JU, 450 시행령 사건에 대한 주심재판관, 쟁점, 관련사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건
4	2015. 7. 9.	X	헌재 내부 정보	JB, JC, JD 병역법 위헌소원 사건의 변론 진행 중 EN, DJ 등 헌법재판관들과 청구인 측 참고인 ID 교수 사이의 한정위헌 관련 질의 및 응답 내용
5	2015. 8. 31.	"	BC자, 2015헌마 784 사전심사보고서	2015헌마784 형사성공보수 사건에 대해 IE 연구관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6	"	B X	2014. 7. 29.자, 2015헌마732 사전심사보고서	2015헌마732 긴급조치 사건(IF 사건 선례)에 대해 IG 연구관이 작성한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7	"	"	헌재 내부 정보	긴급조치(IF) 사건 관련 청구취지, 주심재판관의 전원재판부 회부 가능성 등 사건 정보
8	2015. 9. 15.	X	헌재 내부 정보	관습법 사건의 연구관 보고의견(각하의견) 및 업무방해 사건의 재판관 의견(IA 합헌의견) 등 사건 정보
9	2015. 9. 19.	"	헌재 내부 정보	IH 재판관으로부터 들은 시행령 사건 관련 정보, BK대 공무원사건 및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에 대한 헌재 동향, DK의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명시 입법 추진 등 사건 정보
10	"	"	2015. 1. 7.자, KQ	KQ 등 BK대 공무원 사건에 대해 BL, BM,

72) 범죄일람표(1) 중 인정사실별 판단 제1의 다 2) 가) (3), (6)항에서 직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보거나 직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보거나 BJ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부분을 제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KR 연구보고서	BN 연구관이 작성한 '재심기각결정 취소 인용' 의견의 연구보고서
11	"	"	2013. 1. 5.자, 2013헌마242, 2013헌마497 연구보고서	2013헌마242 등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에 대해 BL 연구관이 작성한 '재심청구 기각 판결 및 원행정처분의 취소 인용' 의견의 연구보고서
12	2015. 10. 1.	B X	현재 내부 정보	JE, JF 대법원 규칙 사건에 대한 II 재판관의 의견, 추가보고서 작성 지시, 추가 검토팀 운영, 향후 일정 등 사건 정보
13	"	"	2015. 6. 30.자, 2014헌마456, 2014헌마457 연구보고서	2014헌마456 등 대법원 규칙 사건에 대해 II부 IK 연구관이 작성한 '법률조항 합헌, 규칙조항 각하' 의견의 연구보고서
14	2015. 10. 1.	B X	2015. 8. 25.자, 2014헌마456, 2014헌마457 추가보고서	2014헌마456 등 대법원 규칙 사건에 대해 II부 IK 연구관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15	2015. 10. 4.	B	소위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	200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2012헌마939,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 관련 개요, 담당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결과, 선고 일정 등 사건 정보가 포함된 문건
16	2015. 10. 5.	"	2011. 12. 12.자, 2011헌바55 연구보고서	2011헌바55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IL 연구관이 작성한 '한일협정조항-각하, 법조항-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17	"	"	2011. 11. 14.자, 2009헌바317, 2010헌가74 연구보고서	2009헌바317, 2010헌가74(병합)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IL 연구관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18	"	"	2014. 11. 24.자, 2014헌마888 사전심사보고서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IM 연구관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19	"	"	2012. 12. 7.자, 2012헌마939 사전심사보고서	2012헌마939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IK 연구관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20	"	BA	소위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	200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2012헌마939,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 관련 개요, 담당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결과, 선고 일정 등 사건 정보가 포함된 문건
21	"	"	2011. 12. 12.자, 2011	2011헌바55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IL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헌바55 연구보고서	연구관이 작성한 '한일협정조항-각하, 법조항-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22	"	"	2011. 11. 14.자, 2009헌바317, 2010헌가74 연구보고서	2009헌바317, 2010헌가74(병합)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IL 연구관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23	"	"	2014. 11. 24.자, 2014헌마888 사전심사보고서	2014헌마888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IM 연구관이 작성한 '전원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24	"	"	2012. 12. 7.자, 2012헌마939 사전심사보고서	2012헌마939 한일협정 사건에 대해 IK 연구관이 작성한 '전원 재판부 회부' 의견의 사전심사보고서
25	"	"	현재 내부 정보	한일협정사건 관련 현재 담당 연구관으로부터 들은 판시 내용 등 사건 정보
26	2015. 10. 16.	X	소송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위임방식과 규정형태	대법원규칙 사건과 관련 IN 판사(현재 과전 중)가 작성한 '소송절차에 관한 대법원 규칙의 위임방식과 규정형태'에 대한 토론 자료
27	2015. 10. 30.	"	2015. 9. 2014헌바148 등 7건 연구보고서	2014헌바148 등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에 대해 IO부 IP 연구관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28	"	"	2015. 6. 2013헌바396, 2014헌바394 연구보고서	2013헌바396 등 관습법 사건에 대해 IO부 IP 연구관이 작성한 '각하' 의견의 연구보고서
29	2015. 10. 30.	X	2015. 10. II 등 11건 연구보고서	II 등 민주화보상법 사건에 대해 BM 연구관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0	2015. 11. 1.	"	2014. 6. 19.자, JG 연구보고서	JG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IQ부 HG 연구관이 작성한 '일부 소극, 일부 한정위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1	"	"	2009. 12. 21.자, 2009헌바168 연구보고서	2009헌바168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IR 연구관보가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2	"	"	JG 추가보고서	JG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IS 연구관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33	"	"	2015. 5. 12.자, JG 추가보고서	JG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IT 연구관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34	2015. 11.	"	1998. 5. 97헌바23 연구	97헌바23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IU 연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3.		보고서	관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5	"	"	2005. 3. 3.자, 2003헌바91 연구보고서	2003헌바91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II 연구관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36	2015. 11. 10.	"	2015. 11. 9.자, JG 쟁점보고	JG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기각' 의견의 쟁점보고서
37	2015. 12. 4.	B X	현재 내부 정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관련 평의 내용(추정하기로 함), 업무방해 사건 관련 보고 및 추가검토 지시 등 사건 진행 경과
38	"	"	2015. 12. 4.자, JG 쟁점보고서	JG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IV 연구관이 IW 재판관의 지시로 작성한 쟁점보고서
39	"	"	2015. 12. 4.자, JG 쟁점보고서(수정)	JG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IV 연구관이 IW 재판관의 지시로 작성한 쟁점보고서 수정본
40	"	"	2015. 11. 30.자, JG 쟁점보고 II	JG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쟁의행위개념 등 추가 쟁점보고서
41	2015. 12. 22.	X	2015. 12. JG 형법 제 314조 제1항 위헌소원 법무부 의견서	JG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현재에 제출한 '합헌' 결정을 구하는 의견서
42	"	"	2012. 4. JG 형법 제 314조 제1항 위헌소원 전주지검 검사 의견서	JG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의 대리인 전주지검 검사가 현재에 제출한 '청구 기각' 결정을 구하는 의견서
43	"	"	2015. 7. 8.자, 업무방해에 대한 한정위헌론 검토 보고	JG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IX 연구관(파견 검사)이 IA 재판관의 지시로 작성한 업무방해에 대한 한정위헌론 검토 보고서
44	2015. 12. 22.	X	2013. 4. 22.자,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회신	JG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현재에 의견 회신한 공문(의견없음으로 회신)
45	2016. 1. 18.	"	현재 내부 정보	민주화보상법 사건, 소멸시효 사건의 합헌의견 보고 완료 사실, 긴급조치위반 손해배상사건 배정 현황(IQ부 배정) 등 사건 정보
46	2016. 2. 1.	B	2016. 1. JG 쟁점보고	JG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IW 재판관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X	서	지시로 IV 판사가 작성한 쟁점보고서
47	2016. 2. 11.	"	2016. 2. 11. 보고(과일명)	BK대 공무원 사건(KR), 조세감면규제법 사건(2013헌마496 등 3건),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헌마784), 시행령 사건(JU, 450),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황 등 현재 심리 사건 정보
48	"	"	2014. 8. 27.자, 2013헌마496 연구보고서	2013헌마496 조세감면규제법 사건에 대해 IZ 연구관이 작성한 '법원의 재판 및 원행정처분 취소' 의견의 연구보고서
49	AW	X	JH 국회선진화법 사건 관련 문건	JH 국회선진화법 사건(주심 JA 재판관)에 대해 II 재판관이 다른 재판관 설득용으로 작성한 평의 자료
50	AX	"	2015. 1. 30.자, JH 청구서	JH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국회선진화법 사건)의 청구서
51	"	"	2015. 7. 21. 접수, JH 권한쟁의사건 답변서	JH 국회선진화법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의 답변서
52	"	"	2016. 1. 26. 접수, JH 권한쟁의사건 변론요지서	JH 국회선진화법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 국회의장 대리인의 변론요지서
53	"	"	2015. 7. 16.자,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의견서	JH 국회선진화법 사건에 대한 기획재정위원장 정희수의 의견서
54	2016. 2. 24.	"	2016. 2. 17.자, II 등 쟁점보고서 - 생활지원금의 성격 관련	II 등 민주화보상법 사건 관련 JA 재판관의 지시로 II 연구관이 작성한 쟁점보고서
55	2016. 3. 11.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마382 사건 관련 2015. 12. 담당연구관에게 배정되어 사전심사 중이라는 내용 등 사건정보
56	2016. 3. 16.	B X	현재 내부 정보	대법원규칙 사건에 대한 EN 재판관의 의견, 시행령 사건에 대한 IH 재판관의 의견 등 현재 심리 사건에 대한 정보
57	"	"	현재 내부 정보	대법원규칙 사건에 대한 EN 재판관의 추가의견 등 사건 정보
58	2016. 3. 16.	B	현재 내부 정보	JE, JF 대법원규칙 사건, JK 시행령 사건에 대한 II 재판관의 의견 등 사건 정보
59	2016. 3.	B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7.	X		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합헌으로 평의종결 되었다는 평의 결과, JE, JF 대법원규칙 사건에 대한 주심인 HI 재판관 등 재판관들의 의견
60	2016. 3. 29.	"	2016. 3. 28.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25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접수일, 주심재판관, 사건 요약 내용 등 기재
61	"	"	2016. 3. 29.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263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한 접수일, 주심재판관, 사건 요약 내용 등 기재
62	"	"	현재 내부 정보	JL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연구관 검토 의견, 평의 통과, II 재판관의 재검토 지시 등 사건 정보
63	"	"	2009. 3. 18.자, JM 관련 메모보고	JM 사건에 대해 JN 연구관이 JO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평의 자료로 작성한 '전면위헌의견'의 보고서
64	"	"	2015. 7. 13.자, 2015 헌마182 연구보고서	2015헌마18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JP 연구관이 작성한 '기각(법률조항), 각하(현재결정)' 의견 연구보고서
65	"	"	1996. 8. 1996헌마172 보고서	1996헌마17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JQ 연구관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보고서
66	"	"	2008. 12. 17.자, JM 연구보고서	JM 사건에 대해 JR 연구관이 작성한 '대법원 판결 부분 각하, 나머지 부분 기각' 의견의 연구보고서
67	"	"	2016. 3. JL 연구보고서	JL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JS 연구관이 작성한 '기각(법률조항), 각하(나머지 부분)' 의견의 연구보고서
68	2016. 3. 30.	"	현재 내부 정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JL)에 대한 II 재판관, 담당 JS 연구관의 견해 등 사건 정보
69	"	"	2014. 3. 21.자, 2012 헌마641 연구보고서	2012헌마6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에 대해 JT 연구관이 작성한 '기각(법률조항), 각하(판결취소)' 의견의 연구보고서
70	2016. 4. 4.	"	현재 내부 정보	대법원규칙 사건들에 대한 선고 일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결정문 초고 내용, HI, IW, II, EN 재판관들의 견해, 업무방해 사건 등 현재 심리 사건에 대해 EN 재판관이 BJ에게 예기한 다른 재판관들의 견해, 현재 심리 중인 JU 시행령 사건과 관련하여 HI 재판관으로부터 들은 HI 재판관 의견, 평의일정, 사건 진행 상황 등 현재 심리 사건에 대한 정보
71	"	"	2016. 4. 28.자, 2013헌바396, 2014헌바394 결정문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관습법 사건에 대한 합헌 결정문
72	2016. 4. 4.	B X	2015. 9. 9.자, 2013헌바370 등 연구보고서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 대해 BN 연구관이 작성한 '합헌' 의견의 연구보고서
73	"	"	2014. 9. JU 연구보고서	JU 특가법 시행령 제3조 위헌 확인 사건과 관련 JA 재판관의 검토 지시로 직접성 요건에 대해 검토한 JV 연구관 작성의 연구보고서
74	"	"	2015. 6. 29.자, JU 연구보고서	JU 특가법 시행령 제3조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JV 연구관이 '기각' 의견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75	"	"	2014. 9. KU 연구보고서	KU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 등 위헌 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BM 연구관이 작성한 '각하(법률조항), 기각(시행규칙조항)' 의견의 연구보고서
76	2016. 4. 6.	"	2016. 4. 6.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77	2016. 5. 10.	B	현재 내부 정보	2015헌마236 등 4건의 김영란법 사건에 대한 접수일자, 주심재판관, 쟁점, 청구인 목록, 대리인 등 현재 심리 사건 정보
78	2016. 5. 11.	B X	2016. 5. 11.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79	2016. 5. 13.	B	2015. 11. 26.자, 2015헌마236 등 사건 연	2015헌마236 등 4건의 김영란법 사건에 대해 JW 연구관이 작성한 '기각 또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구보고서(병합)	인용' 의견 및 '병합' 의견 연구보고서
80	2016. 5. 20.	B X	2016. 5. 16.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383 예산편성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81	"	"	2016. 5. 18.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388 통신자료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82	2016. 6. 7.	X	현재 내부 정보	군형법 사건에 대한 재판관 심증
83	"	"	2014. 5. 23.자, JY 연구보고서	JY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JX 연구관보가 작성한 '위헌' 의견 연구 보고서
84	"	"	2014. 9. 1.자, JY 쟁점보고	JY 군형법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IA 재판관의 검토 지시로 IV 연구관이 작성한 쟁점보고서
85	"	"	JY 사건의 '쟁점별 위헌성 및 주문'에 관한 보고	JY 군형법 위헌소원 사건이 최형법정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JX 연구관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86	2016. 6. 7.	X	2015. 11. 27.자, JY 추가보고서	JY 군형법 사건의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JX 연구관이 작성한 추가보고서
87	2016. 6. 9.	B X	현재 내부 정보	JU 시행령 사건은 '평의결과 - 5(직접성 부정 각하 : IH, HI, EN, II, IW) : 4(직접성 긍정 본안심사 기각 : DJ, JZ, JA, IA)'로 각하 선고될 예정이라는 사건 정보, KU 시행령 사건이 6/23 평의에 넣어 6월말 함께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건 정보 등
88	"	"	2016. 5. 31.자,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2016헌마44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정보 등 기재된 보고서
89	"	"	2016. 6. 3.자, KU 연구보고서(수정)	KU 시행령 사건(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6조 등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BM 연구관이 작성한 '각하' 의견 연구보고서
90	"	"	2012. 9. 4.자, 2012헌마182 연구보고서	2012헌마182 형사소송법 제211조(범죄의 실행중인 자 부분)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KA 연구관이 작성한 '기각 또는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하' 의견 연구보고서
91	"	"	2014. 9. JU 직접성 요건 검토보고서	JU 시행령 사건에 대해 IV 연구관이 JA 재판관의 검토 지시에 따라 검토한 보고서
92	"	"	2015. 6. 29.자, JU 연구보고서	JU 특가법 시행령 제3조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IV 연구관이 '각각 의견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93	"	"	2012헌마182 추가보고서	2012헌마182 형사소송법 제211조(범죄의 실행중인 자 부분)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II 재판관의 지시에 의해 '형벌조항에 대한 직접성 요건 인정 여부'에 관하여 검토한 추가보고서
94	"	"	파일명 : 명령규칙 형벌조항 직접성 부정판시(II)	명령, 규칙 형벌조항의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직접성 부정판시
95	2016. 7. 7.	"	현재 내부 정보	긴급조치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토론 내용 등 사건 정보
96	"	"	2015헌마861 연구보고서	2015헌마861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 IQ부 KB, KC 연구관이 작성한 '각하(대법원 판결)/기각(심판대상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의견의 연구보고서
97	2016. 7. 15.	X	2015. 6. 1.자,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행정형벌조항의 심판대상 확정 문제	시행령 사건 관련 KD 연구관이 작성한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행정형벌조항의 심판대상 확정 문제'에 대한 보고서
98	"	"	2013. 6. 19.자, 법령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연구 - 선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선례 분석을 통한 법령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대해 KE, KF, KG, KH, BM 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
99	2016. 7. 15.	X	2016. 6. 13.자, 구두보고 IV 연구관	시행령 사건 관련 직접성의 예외에 대한 KI 팀장연구관, IG, KJ, KK 연구관 등의 내용에 대한 구두보고 내용 정리 보고서
100	"	"	2016. 6. 10.자, JU 쟁점보고	JU 시행령 사건과 관련하여 IV 연구관이 II 재판관의 검토 지시에 의해 작성한 직접성의 예외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쟁점 보고서
101	"	"	2016. 6. 14.자, JU 쟁	JU 시행령 사건과 관련하여 형벌조항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첨보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에 대한 쟁점보고서
102	"	"	1996. 2. 1994헌마213 연구보고서	1994헌마21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JQ 연구관이 작성한 '일부 각하, 일부 기각' 의견의 연구보고서
103	2016. 7. 20.	B	현재 내부 정보	JY 균형법 제92조의5(추행죄) 위헌소원 사건의 주심재판관 등 정보와 DJ DK, JZ, IA, II 재판관 등이 합헌의견이라는 사건 정보
104	"	"	현재 내부 정보	계간 관련 균형법 사건(군내 동성간 성추행사건)의 최초 보고서 쟁점 및 보고 내용, 추가 보고 쟁점, 좁혀진 쟁점에 관하여 위헌론에서 처리방안으로 검토된 내용 등 사건 정보
105	"	"	현재 내부 정보	2016. 7. 20.자 이메일로 보고한 계간 관련 균형법 사건과 관련하여 '평등권 침해 여부'는 소극으로 보고되었다는 사건 정보
106	2016. 7. 22.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바331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주심, 청구인, 대리인, 쟁점 및 결론, 토론결과 발제자와 토론자 대부분이 합헌의견이라는 내용 등 사건 정보
107	"	B X	현재 내부 정보	2016헌라1, 4, 6 사건에 대한 주심, 연구관 배정 현황 등 사건 정보
108	"	"	2016. 4. 25.자, CG 연구보고서	CG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J부 KL 연구관이 작성한 '각하' 의견 연구보고서
109	2016. 7. 28.	B	JY 균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초고	JY 균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초고
110	"	"	2015헌마236, 412, 673 (병합) 결정문 초고	2015헌마236, 412, 67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김영란법 사건)의 결정문 초고
111	2016. 7. 28.	X	JY 균형법 제92조의 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JY 균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사건 결정문 초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초고	
112	"	"	2015헌마236, 412, 673 (병합) 결정문 초고	2015헌마236, 412, 67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김영란법 사건)의 결정문 초고
113	2016. 7. 28.	B X	현재 내부 정보	군형법사건 관련 재판관들의 의견(동성간의 추행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등 사건 정보
114	"	"	현재 내부 정보	군형법사건 관련 II 재판관의 의견, BJ이 JZ 재판관에게 전달한 사항 등 사건 정보
115	2016. 7. 29.	"	현재 내부 정보	2013헌마713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이 전원부 심리 중이라는 사실과 보고연구관이 작성한 보고 내용의 개요, 의견 등 사건 정보
116	"	"	현재 내부 정보	KM 사건과 관련사건인 KN, KO 사건 등의 변론 예정, IH 주심재판관의 각하 결정 전해, 담당 연구관의 처리 일정 관련 내용 등 사건 정보
117	"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KM 성남시 등과 대통령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내용 등 기재된 보고서
118	2016. 8. 17.	"	현재 내부 정보	매립지 등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토론회 시 KP 부장연구관의 발언 내용 등 사건 정보
119	2016. 9. 19.	B	현재 내부 정보	HY 선임부장연구관으로부터 들은 BK대 공무원 사건 관련 HY 선임부장연구관의 출구전략에 관한 보고서 관련 내용과 이에 대한 재판관의 반응 등 사건 정보
120	"	"	위헌결정의 효력과 제심절차의 관계 - 한정위헌결정을 중심으로	KQ, KR BK대 공무원 사건에 대해 IH 재판관의 지시로 HY 선임부장연구관이 작성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제심절차의 관계(한정위헌결정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121	"	"	BK대 공무원 사건 관련 보고서 일부 (JPG파일 2개)	BK대 공무원 사건 관련 출구전략 관련 보고서
122	2016. 9. 30.	B X	이 사건 규칙조항의 직접성 인정 여부에	JU 등 시행령 사건에 대해 BM 연구관이 작성한 규칙조항의 직접성 인정 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관한 추가 보고서	부에 관한 추가보고서
123	"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 내용	2016헌마8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사건(청와대의 KS보도 개입 관련)에 대한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124	"	"	2016. 9. 30.자, KU 쟁점보고서	KU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인정 여부(소극) 관점에서 작성한 쟁점보고서
125	2016. 9. 30.	B X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 내용	2016헌리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KT 해임건의안 가결처리 관련)에 대한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126	"	"	현재 내부 정보	KU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II 재판관의 견해 등 사건 정보
127	2016. 10. 4.	B X	2016. 10. 4.자, JU 쟁점보고	JU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BJ 부장연구관이 작성한 쟁점보고서
128	2016. 10. 7.	"	현재 내부 정보	KU, JU 시행령 사건에 관한 평의내용 등 사건 정보
129	"	"	2016. 9. 26. 접수, CG 변론요지서	CG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대리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
BF	2016. 10. 10.	"	현재 계류중인 주요 사건 현황	KX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진정입법부작위위헌 등 총 37건의 사건 번호, 사건명, 주심재판관, 접수일, 주제어 등이 기재된 사건 현황 보고서
131	2016. 10. 13.	"	현재 내부 정보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 진행 경과 및 재판관별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 등 사건 정보
132	2016. 10. 17.	B X	현재 내부 정보	KV 부검영장 사건에 대한 DJ DK의 의견 등 사건 정보
133	"	"	2016. 10. 13. 접수, KW 청구서	KW KV 부검영장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134	"	"	현재 내부 정보	KV 부검영장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EN 재판관의 의견 등 사건 정보
135	"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내용	KW 압수수색검증영장 위헌확인 사건 (KV 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접수인, 사건요약 내용 등이 기재된 보고서
136	2016. 10. 18.	"	현재 내부 정보	2016헌가10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선고 예정일, 선고 결과, 결정문 주문 등 사건 정보
137	"	"	현재 내부 정보	KU 시행령 사건에 대한 주문(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각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기각 - 전원일치) 등 사건 정보
138	2016. 10. 19.	"	현재 내부 정보	KV 부검영장 사건과 관련하여 EN 재판관 의견 및 평의일정 등 사건 정보
139	2016. 10. 26.	B	사건요약	CG, 2016헌라1, 2016헌라4 매립지 사건의 개요, 청구 이유 등이 기재된 요약보고서
140	"	"	2016. 2. 16.자, 답변서	2016헌라1 군산시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부안군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
141	"	"	2016. 8. 17.자, 답변서	2016헌라6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답변서
142	2016. 11. 1.	B	현재 내부 정보	병역법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BK대 HJ 사건 등의 평의 일정, 병역법 사건 관련 HI 재판관의 의견, BK대 HJ 사건에 대해 법원판결을 취소하자는 입장이 IL, IA 재판관의 의견이라는 내용 등 다수의 사건 정보
143	"	"	2013. 10. 2012헌가17 등 연구보고서	2012헌가17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등에 대해 이영광 연구관이 작성한 '각하(제2국민역 편입조항), 각하 또는 합헌(병역종류조항), 합헌(처벌조항)' 의견의 연구보고서
144	"	"	2015. 3. 20.자, 2011헌바 118 등 추가보고서	KX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에 대해 IQ부 IT 연구관이 '심판대상 정리 및 추가서면 내용 요약, 입법례 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사보완'하여 작성한 추가보고서
145	"	"	BC자, KX 등 추가보 고서	KX 등 사건에 대해 IH 재판관의 지시 로 KY 연구관이 '병역종류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작성한 추 가보고서
146	"	"	JPG 파일 3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중 이유에서 효력범위를 제한한 경우'에 대한 보고서
147	2016. 11. 10.	"	현재 내부 정보	2015헌가28 변론 경과 및 선고 일정 등 사건 정보
148	2016. 11. 10.	B X	2016. 10. 28.자, 2015 가합28 참고인 의견 서	2015가합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3 조 제1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KZ대학 교 경찰행정학과 LA 교수가 작성한 참 고인 의견서
149	"	"	2016. 11. 7. 접수, 2015헌가28 준비서면	2015헌가28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인 경 찰청장의 대리인 정부법무공단에서 작 성한 준비서면
150	"	"	2016. 10. 19. 접수, 2015가합28 변론요지 서	2015가합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 조 제1호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피고인 의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변론요지서
151	2016. 11. 22.	"	현재 내부 정보	JU 시행령 사건에 대한 II 재판관의 심증 (각하 의견), 평의 결과 등 사건 정보
152	"	B	현재 내부 정보	HH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의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현재 내 부 동향
153	"	"	탄핵사건심리절차 참 고자료 - 2004헌나1관 련	2004헌나1 LB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 된 '탄핵사건 심리절차 선례참고'라는 자료
154	2016. 11. 28.	X	JU 결정문(초고)	JU 특가법 시행령 사건의 결정문 초고
155	2016. 12. 14.	B	현재 내부 정보	HH 대통령 탄핵 사건 관련 EN 재판관 의 증인신문 절차 관련 지시사항, 형소법 준용범위에 관한 내부 회의 예정 등 사 건 정보
156	2016. 12. 16.	"	2016. 12. 16. 접수, 변 호인선입신고서	LC 대통령(HH) 탄핵 사건 변호인선임 신고서
157	2016. 12. 16.	B	2016. 12. 16.자, 이의 신청서	LC 대통령(HH) 탄핵 사건에 대해 피청 구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이의신청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58	2016. 12. 22.	"	현재 내부 정보	LC 대통령(HH) 탄핵 사건 관련 2016. 12. 22. 14:00 진행된 제1회 변론준비기일 진행 내용 등 사건 정보
159	"	"	2016. 12. 19. 접수, 2016 헌나1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	LC 대통령(HH) 탄핵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들의 변호인이 작성한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서
160	"	"	2016. 12. 20.자, 준비절차기일 출석 요구 공문	LC 사건 관련 청구인 대리인, 피청구인 대리인 등에게 보내는 출석 요구 공문
161	"	"	2016. 12. 20.자, 준비절차기일 통지 공문	LC 사건 관련 대통령,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등에게 보내는 준비절차기일 통지 공문
162	"	"	2016. 12. 21. 접수, 담당변호사 지정서	LC 대통령(HH) 탄핵 사건 담당변호사 지정서
163	"	"	2016. 12. 21.자,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LC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164	"	"	2016. 12. 21. 접수, 소송위임장	LC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소송위임장(법무법인 LD)
165	"	"	2016. 12. 21.자, 변호인선임신고서	LC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변호사 LE)
166	"	"	2016. 12. 21. 접수, 소송위임장	LC 사건 관련 소송위임장(법무법인 LF)
167	"	"	2016. 12. 21. 접수, 대통령(HH) 탄핵사건 수행자(추가)선임서 등	LC 사건 관련 LG 제출 대통령 탄핵사건 수행자(추가)선임서 등
168	"	"	2016. 12. 21.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	LC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
169	"	"	2016. 12. 21.자, 준비서면	LC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170	"	"	2016. 12. 21. 접수, 입증계획	LC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입증계획
171	"	"	2016. 12. 22. 접수,	2016. 12. 7.자 제346회 국회(정기회) HH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HH 정부의 LH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정부의 LH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임시회의록)
172	2016. 12. 22.	B	2016. 12. 22 접수, LI 등 사본	LC 사건 관련 강제49호증-1로 제출된 자료
173	"	"	2016. 12. 22자, 서증 제출서	LC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서증제출서
174	2017. 1. 23.	"	현재 내부 정보	LC 대통령(HH) 탄핵 사건 관련 증인신문 일정 등 사건 정보
175	"	"	2017. 1. 23.자, 준비서면	LC 대통령(HH) 탄핵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헌법을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
176	"	"	2017. 1. 19.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공문	LC 사건 관련 LN주식회사에서 송부한 사실조회 회보 공문(LO 출연 관련 증빙자료 등)
177	"	"	2017. 1. 23 접수, 증인 LJ에 대한 피청구인신문사항	LC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증인 LJ에 대한 증인신문사항
178	"	"	2017. 1. 20.자, 증인(LK) 소제탐지축탁 결과 회신 공문	LC 사건 관련 서울성동경찰서에서 제출한 증인(LK) 소제탐지축탁 결과 회신 공문
179	"	"	2017. 1. 20.자, 증인(LL) 소제탐지축탁 결과 회신 공문	LC 사건 관련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제출한 증인(LL) 소제탐지축탁 결과 회신 공문
180	"	"	LC 대통령(HH) 탄핵 변론기일 녹취서	LC 사건의 변론기일 녹취서
181	2017. 1. 25.	"	현재 내부 정보	LC 대통령(HH) 탄핵 사건 관련 추가증인신청, 최종 선고 예정일 등 사건 정보
182	"	"	현재 내부 정보	LC 대통령(HH) 탄핵 사건의 증인신문 기일 지정 내용, 선임부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인용여부 및 선고기일 등 사건 정보
183	"	"	2017. 1. 25. 접수, 증인 LM에 대한 신문사항	LC 대통령(HH) 탄핵 사건 관련 증인 LM에 대한 신문사항(청구인 제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84	"	"	2017. 1. 25. 접수, 증인 LL에 대한 신문사항 및 증인 LK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LC 사건 관련 증인 LL에 대한 신문사항 및 증인 LK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청구인 제출)
185	"	"	2017. 1. 25. 접수, 준비서면 - LJ 증언 관련	LC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LJ 증언 관련 준비서면
186	"	"	2017. 1. 25. 접수, 준비서면 - 피청구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LC 사건 관련 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피청구인의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관련 준비서면
187	"	"	2017. 1. 25. 접수, 증인 LM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LC 사건 관련 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증인 LM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188	"	"	2017. 1. 20.자, 사실조회 공문	LP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보 공문(LQ로부터 LO 출연 요구 있었는지 여부 등)
189	2017. 1. 25.	B	2017. 1. 20.자, LC 대통령(HH) 탄핵 사건 관련한 2016. 1. 11.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	LR에서 제출한 LC 대통령(HH)탄핵 사건 관련한 2016. 1. 11.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재단법인 LO와 관련된 출연 요구가 LQ로부터 있었는지 여부)
190	"	"	2017. 1. 24. 접수, 사실조회 회신 공문	LS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 공문(재단법인 LT와 관련된 출연 요구가 LQ로부터 있었는지 여부)
191	"	"	현재 내부 정보	변론기일에서 증인 채택여부, 재판관들의 추가 증인 채택 정보 등 사건 정보
192	2017. 2. 16.	"	AM자,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	LC 대통령(HH) 탄핵 사건 관련 현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회신 공문(2016. 11. 7. LK 임의제출 녹취파일의 녹취록)
193	"	"	2017. 2. 10.자,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	LC 사건 관련 현재의 문서송부촉탁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회신 공문(LK이 임의 제출한 JQ 컴퓨터 내 녹취파일 일체)
194	2017. 4. 11.	"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의 주요 내용 - 사드 배치 관련 헌법소원사건 -	2017헌마371, 372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 사건의 청구인, 접수일, 주심재판관, 사건배경 등 사건 정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범죄일람표(2) -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외 동향)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	2015. 11. 24.	B	지정토론문(LU)	11. 25. 개최 예정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LX대 법학전문대학원 LU 교수의 지정토론문)
2	"	"	지정토론문(LV)	11. 25. 개최 예정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LV의 지정토론문)
3	"	"	지정토론문(LW 연구관)	11. 25. 개최 예정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책임연구관 LW의 지정토론문)
4	2015. 11. 26.	B X BA	2015. 11. 26.자, 오늘 자 DI 보도 관련 검토	V당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W지법 판결 내용을 법원행정처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DI 의혹 보도에 대해 BJ이 법원행정처의 입장 등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DK에게 보고한 보고서 및 DK 반응
5	2016. 3. 9.	X	2016. 2. 1.자, HQ 자료	2016. 2. 1.자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원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6	"	"	2016. 3. 7.자, HQ 자료	2016. 3. 7.자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원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7	2016. 3. 22.	B	현재 내부 정보	2016. 3. 18.자 LY 토론회에서의 DJ DK의 발언 배경 등 현재 내부 동향
8	"	"	2016. 1.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헌법재판소HX처에서 작성한 주요업무 추진방향, 역점 추진 사업 등 2016년도 현재 주요 업무 계획 등 기재
9	"	"	2016. 1. 1월 월례회의 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1.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원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0	"	"	2016. 2. 2월 월례회의 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2.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원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1	"	"	2016. 3. 3월 월례회의 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3.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원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2	"	"	2016. 1. 2월 실국장	헌법재판소HX처에서 작성한 2016. 2.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회의 자료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13	"	"	2016. 3. 4.자, 3월 실국장회의 자료	헌법재판소HX처에서 작성한 2016. 3.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14	"	"	2016. 2. 1.자, 2월 HQ 자료	2016. 2.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 현황, 전원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15	"	"	2016. 3. 7.자, 3월 HQ 자료	2016. 3.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 현황, 전원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16	2016. 4. 1.	B X	2016. 4. 1.자, 2016년 4월 HQ 자료	2016. 4.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 현황, 전원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17	"	"	2016. 3. 30.자, 4월 실국장회의 자료	헌법재판소HX처에서 작성한 2016. 4.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18	"	"	2016. 4. 2016년 4월 월례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4.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원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19	2016. 5. 2.	"	2016. 4. 25.자, 5월 실국장회의 자료	헌법재판소HX처에서 작성한 2016. 5.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20	"	"	2016. 5. 2016년 5월 월례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5.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원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21	2016. 5. 9.	"	2016. 5. 2.자, 2016년 5월 HQ 자료	2016. 5. 헌법재판소 주요 행사 및 업무 현황, 토의안건, 2017년도 예산 신규사업 목록 등 기재
22	2016. 6. 9.	"	2016. 6. 7.자, 6월 실국장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2016. 6.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23	"	"	2016. 6. 2016년 6월 월례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2016. 6.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각 팀별 전원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24	2016. 7. 2.	B	현재 내부 정보	HY 선임부장연구관으로부터 들은 차기 DK에 관한 정보, 헌법재판관의 DK 지명시 잔여임기에 관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관련 현재 내부 동향
25	2016. 7. 11.	B X	2016. 7. 5.자, 7월 실국장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2016. 7. 각 부서별 업무추진 계획 등 기재
26	"	"	2016. 7. 2016년 7월	2016. 7. 헌법재판연구원 월례회의자료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월례회의자료(헌법재판연구원)	각 팀별 전월 실적 및 현월 추진계획 등 기재
27	"	"	2016. 7. 6.자, 2016년 7월 HQ 자료	2016. 7. 현재 주요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 기재
28	2016. 7. 15.	B	국회 개헌안과 헌법재판소 개선의견 비교	국회개헌안(2014. 5.)과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선의견(2009. 1.) 비교 문건
29	"	"	2005. 11. 30. 발행,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헌법재판소에서 MA대 법과대학 MB 교수 등 4명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
30	"	"	2009. 1.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선의견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개선의견' 보고서 (국회 송부용)
31	"	"	재판관의 자격 및 구성 관련 의견 제출 현황 (처장보고)	재판관의 자격 및 구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현황, 연구용역보고서 현황, 국회 보고서 현황' 등이 기재된 보고서
32	"	"	재판관 관련 국회제출 자료	'재판관 정수,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재판관 임기' 등에 대한 국회 질의 등과 관련된 자료 제출 현황 및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
33	2016. 7. 15.	B	파일명 : 재판관정수(증원) 관련 예상질의(LZ 연구관 수정)	LZ 연구관이 수정한 재판관 정수(증원) 관련 국회 예상질의 및 답변자료
34	"	"	파일명 : 발제문종합 (기본권 최종)	기본권 관련 발제문
35	"	"	쟁점별 제출시기 결정 - 기본권편	개헌 관련 쟁점별 국회 자료 제출 시기를 검토한 보고서(기본권편)
36	"	"	기본권 TF 활동 내역 보고	2008. 9. 18.~11. 20. 기간 동안의 기본권 TF 활동내역 보고서
37	"	"	2008. 12. 헌법재판제도 개헌 검토 보고서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헌법재판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입법자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등에 대한 개헌 검토 보고서
38	"	"	쟁점별 제출시기 결정	개헌 관련 쟁점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시기를 검토한 보고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39	"	"	의견표명 여부 및 그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고려사항	개헌 관련 대 국회 상대 의견 표명 여부 및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검토 보고서
40	"	"	조항별 현행규정 및 쟁점사항 검토	개헌 관련 조항별 현행규정 및 쟁점사항 검토 보고서
41	"	"	헌법재판소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지위	헌법재판소의 본질과 헌법재판소의 지위에 대해 MC 연구관보가 작성한 검토 보고서
42	"	"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개헌논의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의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MD 연구관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43	"	"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에 대해 JN 연구관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44	"	"	입법자와 헌법재판소의 관계	입법자와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대해 KB 연구관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
45	"	"	2008. 7. 14.자, 헌법개정에 대비한 우리 재판소의 대응전략	헌법 개정과 관련한 현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제도기획과에서 검토한 보고서로 세부실천계획, TF팀 상세 운영계획 등 기재
46	"	"	2011. 3. 대법원의 흡수통합론에 대한 대응 방안	헌법재판소 AI실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대법원의 흡수통합론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
47	"	"	헌법 개정 대응전략 및 추진계획	대법원 통합론에 대한 각계의 동향, 통합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대응전략, 상반기 세부 추진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
48	2016. 7. 15.	B	2011. 2. 헌재 흡수통합론에 대한 대응 기본계획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통합론 제기, 통합론에 대한 재판소의 대응전략, 상반기 세부 추진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는 보고서
49	"	"	'붙임 1. 관련 언론기사 요약 등	헌법개정 대응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서에 첨부되는 개헌 관련 언론 기사를 요약한 내부 문건 등
50	"	"	2008. 7. 15.자, 개헌 관련 책자 요약 -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헌법재판소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라는 개헌 관련 책자를 요약한 내부 문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51	"	"	2008. 6. 헌법개정에 대비한 우리 재판소의 대응전략	헌법재판소 AI실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헌법개정에 대비한 헌법재판소의 대응 전략이 기재된 보고서
52	"	"	2010. 2. 19.자, 헌법학 교과서의 헌법재판에 대한 경향 분석	헌법재판소 제도기획과에서 작성한 헌법학 교과서의 헌법재판에 대한 경향 분석 보고서
53	"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통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통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서(헌법재판소 설립 배경, 헌법재판소-대법원 권한 갈등에 대한 의견 등 기재)
54	"	"	2013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제출용으로 작성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관련 개정의견 등 기재 문건
55	"	"	2015. 12. 개헌 대비 기초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개헌 대비 기초자료집
56	"	"	2015. 7. 헌법재판제도 개선 자료 조사집 (2010 ~ 2014)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헌법재판제도 개선 자료 조사집(2010 ~ 2014)
57	"	"	2015. 12. 2015년도 헌법개정관련 자료집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헌법 개정관련 자료집
58	"	"	개헌대비 기초자료집 발간계획	개헌대비 기초자료집 발간 계획의 목적, 수록 내용, 소요 예산안(100천원내외)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계획 보고서
59	"	"	2015. 9. 11.자, 2015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헌법재판소에서 작성한 2015년도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
60	"	"	2015. 9. 11.자, 2015년도 국정감사 예상질의·답변자료(심판사무)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2015년도 국정감사 심판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예상질의·답변자료
61	"	"	2015. 9. 11.자, 국정감사 대비 예상질의·답변자료(일반운영)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2015년도 국정감사 대비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답변자료
62	"	"	2016. 임시국회 대비 예상질의·답변자료(일반운영)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2016년도 임시국회 대비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답변자료
63	2016. 7.	B	2016. 임시국회 대비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2016년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5.		예상질의·답변자료 (일반운영) MJ과	임시국회 대비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 답변자료
64	"	"	파일명 : 16년도 임시 국회 업무현황(주요 성과, 추진계획) MJ 과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65	"	"	파일명 : 임시국회 업 무현황(주요성과, 추진 계획), 연구파트 추가	2015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66	"	"	예상질의·답변자료(심 판사무)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심판사무 에 대한 예상질의·답변자료
67	"	"	2016. 6. 29.자, 임시 국회 대비 예상질 의·답변자료(일반운 영)	임시국회 대비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일반운영 분야 예상질의·답변자 료
68	"	"	제343회 국회(임시회) 업무현황보고 인사말 씀	제343회 임시국회 업무현황보고 관련 헌 법재판소 HX처장 인사말씀
69	"	"	2016. 6. 29.자, 임시 국회 대비 주요결정 사건(2016. 6. 29. 현 재)	임시국회에 대비하여 헌법재판소 HX처 에서 작성한 주요 결정 사건 보고서(사 건명, 선고, 주심, 제청요지, 결정요지 등 기재)
70	"	"	2016. 6. 29.자, 임시 국회 대비 주요쟁점 사항(2016. 6. 29. 현 재)	임시국회에 대비하여 헌법재판소 HX처 에서 작성한 현재 계속 사건, 결정사건 등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서
71	"	"	파일명 : 답변서 ME (개헌 관련 연구용역 6.21.)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개헌 관련 연구 용역 수행 내역에 대한 답변서
72	"	"	파일명 : 답변서 MF (연구용역 6.20.)	MJ과 MK 사무관이 작성한 연구과제 및 세미나 내역에 대한 답변서
73	"	"	파일명 : 답변 MG(연 구용역 6.21.)	MJ과 MK 사무관이 작성한 최근 3년간 (2013 ~ 2016년 최근까지) 연구용역 현황 (리스트) 관련 답변서
74	"	"	파일명 : 답변서 - MH(권위적인 법령용 어 정비계획)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권위적인 법 령용어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75	"	"	파일명 : 답변서 - ML(제19대 국회 제출 법안 처리 현황 및 20대 국회 법안제출 계획)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제19대 국회 제출 법안 처리 현황 및 제20대 국회 법안제출 계획에 대한 답변서
76	"	"	파일명 : 답변서 - MM(대법원과의 통합)	대법원과의 통합에 대한 MM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77	2016. 7. 15.	B	파일명 : 답변서 - ME 위원(상시청문회법등)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상시 청문회법, 위헌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누리과정 시행령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에 대한 답변서
78	"	"	파일명 : 답변서 - ME(연구용역 6.21.)	MJ과 MK 사무관이 작성한 최근 3년 연구용역 리스트에 대한 문건
79	"	"	파일명 : 답변서 - MN(재판소법개정의견 등)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 관련 답변서
80	"	"	파일명 : 답변서 - MG 의원(6.22.)	MT과 MS 사무관이 작성한 최근 3년간 (2013~2016년 최근까지) 주요사업비 현황에 대한 답변서
81	"	"	파일명 : 답변 ME(누리과정)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시행령도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법령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서
82	"	"	파일명 : 답변 MQ(재판부 보수화 등)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인적 구성이 보수화 되어 보수적 결정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서
83	"	"	파일명 : 답변 MP(재판관 임기 연장)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필요성 검토에 대한 현재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서
84	"	"	파일명 : 답변 MQ(헌법재판소법 개정)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DK 임기 관련' 질문 등에 대한 답변서
85	"	"	파일명 : 답변 MR(개헌 관련 견해)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개정과 관련한 현재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서
86	"	"	파일명 : 답변 MN(변형결정, 재판소원)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변형결정의 합법성/정당성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변형결정은 불가피한가'라는 질문 등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대한 답변서
87	"	"	파일명 : 답변 MN(헌법재판소법개정의견 입안 경과)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의견 등 입안 경과' 등에 대한 답변서
88	"	"	파일명 : 답변서 - HV(상시청문회법)	MJ과 MI 서기관이 작성한 '국회법(상시청문회법) 관련 현재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서
89	"	"	2016. 7. 결산국회 대비 예상질의·답변자료(일반운영)	2016. 7. 결산국회 대비하여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예상질의·답변자료(일반운영)
90	"	"	파일명 : 헌법개정규정검토	제6장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해석 관련 부분에 대한 현행 규정, 개정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보고서
91	"	"	현행 헌법상 개정필요 규정 검토	현행 헌법상 개정 필요 규정인 제6장 헌법재판소 관련, 헌법해석 관련 부분에 대한 현행 규정, 개정 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보고서
92	2016. 7. 15.	B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흡수통합 관련 참고자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흡수통합 관련, 언론기사, 헌법재판소 대응 논리 등 기재 보고서
93	"	"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관련 보고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관련 보고서
94	"	"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 보고서로 예산집행내역, 주요보고사항 등의 내용 기재
95	"	"	2013. 9. 6.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96	"	"	2013. 9. 6.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2013. 9. 6.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 녹취록
97	"	"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관련 진행상황 보고	2013. 11. 2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관련 진행상황 보고서
98	"	"	2013. 11. 21.자, 헌법	2013. 11. 2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발전연구위원회 회의 녹취록
99	"	"	2013. 11. 21.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2013. 11. 2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100	"	"	헌법 전문과 총강의 구성 및 체계적 정합성 고찰	MV대학교 MW 교수가 작성한 '헌법 전문과 총강의 구성 및 체계적 정합성 고찰'이라는 주제의 보고서
101	"	"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MU 위원)	MX대 법학전문대학원 MU 교수가 작성한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보고서
102	"	"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	MX대 법학전문대학원 MU 교수가 작성한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보고서 재수정본
103	"	"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요약)	MX대 법학전문대학원 MU 교수가 작성한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보고서 요약본
104	"	"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기관의 이원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	MY대 법학전문대학원 MZ 교수가 작성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이원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
105	"	"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이원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요지	MY대 법학전문대학원 MZ 교수가 작성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이원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초안) 요지
106	2016. 7. 15.	B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이원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MY대 법학전문대학원 MZ 교수가 작성한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의 이원화와 헌법 제107조 제2항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
107	"	"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	FR대 법학전문대학원 NA 교수가 작성한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의 보고서
108	"	"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요약]	FR대 법학전문대학원 NA 교수가 작성한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의 보고서 요약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109	"	"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	선거소송의 본질과 관할(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보고서
110	"	"	2013. 12. 11.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2013. 12. 1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회의록
111	"	"	2013. 12. 11.자,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	2013. 12. 11. 개최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제2소위원회 회의 녹취록
112	"	"	2013. 12. 2013년도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 결과보고서	헌법 및 헌법재판 발전연구위원회의 개요, 운영경과, 활동 결과 등이 기재된 조사연구 결과보고서
113	2016. 7. 20.	"	집회 및 시위에서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집회 및 시위에서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캐나다 및 미국을 중심으로) 최종보고서
114	2016. 8. 8.	B X	2016. 7. 29.자, 실국장 회의자료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2016. 8. 실국장 회의자료
115	"	"	2016. 8. 월례회의자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2016. 8. 월례회의자료 각 팀별 전월 추진실적, 당월 추진계획 등 기재
116	2016. 8. 22.	"	현재 내부 정보	신임 현재 연구위원 내정자 명단, 재판소장과 HM이 참석 예정인 변호사 대회에 참석할 계획이라는 현재 내부 동향
117	2016. 9. 2.	"	현재 내부 정보	DK이 부장, 팀장을 소집하여 주재한 회의의 내용 등 현재 동향
118	"	"	2016. 8. 제2회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 행사 세부 시행 계획(안)	헌법재판소 총무과에서 작성한 2016. 8. 31.~9. 2., 9. 4. 개최된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세부 시행 계획안
119	"	"	홈커밍데이 행사 참석자 현황(전직 구성원)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할 참석자 111명의 성명, 재임기간 등이 기재된 보고서
120	2016. 9. 5.	"	2016. 9. 1.자, 실국장 회의자료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2016. 9. 실국장 회의자료
121	2016. 9. 5.	B	2016. 9. 월례회의자료	헌법재판연구원 2016. 9. 월례회의자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일자	수신자	정보 또는 자료	내용
		X	(헌법재판연구원)	각 팀별 전월 추진실적, 당월 추진계획 등 기재
122	2016. 9. 19.	B	복면집회금지에 관한 헌법적 검토	2016. 9. 30. 발표 예정인 헌법재판연구원 NB팀 NC 책임연구관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캐나다 및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123	2016. 10. 4.	B X	2016. 9. 30.자,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2016. 10. 실국장 회의 자료
124	2016. 10. 10.	B	현재 내부 정보	HY 선임부장연구관으로부터 들은 현재 법 개정 준비 관련 내용, DK과 HW HX처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 II 재판관과 IA 재판관이 차기 소장을 노리고 뛰고 있다는 내용 등 현재 내부 동향 정보
125	2016. 10. 11.	"	현재 내부 정보	현재 차기 소장 관련 현재 내부 동향 정보
126	2016. 10. 14.	B X	현재 내부 정보	권한쟁의 심판 사건 관련 대법원 의견서 제출에 부정적이라는 내용 등 현재 내부 동향 정보
127	2016. 11. 1.	B	2016. 10. 31.자, 실국장 회의 자료	헌법재판소 HX처에서 작성한 2016. 11. 실국장회의 자료
128	2016. 11. 10.	"	2016. 11. 2.자, 2016. 11. HQ 자료	각 부서별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내용 등이 기재된 HQ 자료
129	2017. 3. 16.	"	2017. 3. 20.자, '인사발령(헌법연구원) 통보' 공문	헌법재판소 인사관리과 시행 2017. 3. 20.자 헌법연구원 인사발령 통보 공문
130	2017. 4. 11.	"	2017. 3. 24.자, 지정재판부 구성 변경 관련 보고	헌법재판소 심판제도과에서 작성한 지정재판부 구성 변경 관련 보고서
131	2017. 4. 20.	"	현재 내부 정보	'현재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된다, 4월 27일 창립총회 한다, 처, 차장 불만이 쌓여 그렇다, ND 부장연구관이 4. 30.자 명예퇴직한다'는 내용 등 현재 내부 정보 전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범죄일람표(3)

순번	성명	직급	2017. 2. 21. 당시 소속	비고
1	NE	지법판사	FD지방법원	AE 탈퇴
2	NF	고법판사	AN고등법원	AE 탈퇴
3	NG	지법판사	대법원	AE 탈퇴
4	NH	지법판사	FD지방법원	AE 탈퇴
5	NI	지법부장	NP지방법원	AE 탈퇴
6	NJ	지법판사	대법원	AE 탈퇴
7	NK	지법판사	FD지방법원	AE 탈퇴
8	FV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탈퇴
9	NL	고법판사	AN고등법원	AE 탈퇴
10	NM	지법판사	NQ지방법원	AE 탈퇴
11	NN	지법판사	대법원	AE 탈퇴
12	NO	지법판사	BT지방법원	AE 탈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성명	직급	2017. 2. 21. 당시 소속	비고
13	NR	지법판사	OF지방법원	AE 탈퇴
14	NS	지법부장	HT지방법원	AE 탈퇴
15	NT	고법판사	AN고등법원	AE 탈퇴
16	NU	고법부장	OG고등법원	AE 탈퇴
17	NV	지법부장	FD지방법원	AE 탈퇴
18	NW	지법판사	OH지방법원	AE 탈퇴
19	NX	지법부장	이지방법원	AE 탈퇴
20	NY	지법부장	HT지방법원	AE 탈퇴
21	NZ	지법판사	OF지방법원	AE 탈퇴
22	OA	지법부장	FE지방법원	AE 탈퇴
23	OB	지법부장	이지원	AE 탈퇴
24	OC	지법부장	OK지원	AE 탈퇴
25	OD	지법판사	BT지방법원	AE 탈퇴
26	OE	고법판사	AB고등법원	AE 탈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성명	직급	2017. 2. 21. 당시 소속	비고
27	OL	지법부장	OH지방법원	AE 탈퇴
28	성명불상	.	.	AE 탈퇴 (탈퇴 후 재가입)
29	OM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연구회 탈퇴
30	ON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연구회 탈퇴
31	OO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연구회 탈퇴
32	OP	지법판사	FE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연구회 탈퇴
33	OQ	지법부장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연구회 탈퇴
34	OR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연구회 탈퇴
35	OS	고법판사	AN고등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연구회 탈퇴
36	OT	고법판사	OX고등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연구회 탈퇴
37	OJ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연구회 탈퇴
38	OV	지법부장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연구회 탈퇴
39	OW	지법원장	OY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를 위해 다른 연구회 탈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성명	직급	2017. 2. 21. 당시 소속	비고
40	OZ	지법부장	NP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41	PA	지법부장	OF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42	PB	지법부장	PM지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43	PC	지법판사	PN가정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44	PD	지법판사	이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45	PE	지법판사	NQ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46	PF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47	PG	지법판사	B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48	PH	지법판사	P0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49	PI	지법판사	NQ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50	PJ	지법판사	PP지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51	PK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52	PL	지법부장	B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성명	직급	2017. 2. 21. 당시 소속	비고
53	PQ	지법판사	QD가정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54	PR	지법부장	QE지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55	PS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56	PT	지법판사	NQ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57	PU	지법부장	QF지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58	PV	고법부장	AN고등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59	PW	지법판사	QG지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60	PX	지법부장	NQ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61	PY	고법판사	AN고등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62	PZ	지법부장	OY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63	QA	지법판사	대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64	QB	지법판사	OH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65	QC	지법판사	FC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성명	직급	2017. 2. 21. 당시 소속	비고
66	QH	지법판사	OK지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67	QI	지법판사	FC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68	QJ	지법부장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69	QK	지법판사	CS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70	QL	지법판사	FE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71	FP	지법부장	NQ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72	QM	지법판사	대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73	QN	지법부장	QT지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74	QO	지법부장	FD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75	QP	지법판사	FC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76	QO	지법판사	FC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77	QR	지법판사	NP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78	QS	지법판사	대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성명	직급	2017. 2. 21. 당시 소속	비고
79	QU	고법판사	AN고등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80	QV	지법판사	대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81	QW	지법판사	NQ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82	FS	지법판사	RG지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83	QX	지법부장	RH지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84	QY	지법부장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85	QZ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86	RA	지법판사	RI가정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87	RB	지법판사	W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88	RC	지법부장	Z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89	RD	지법부장	RJ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90	RE	지법판사	RI가정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91	RF	지법판사	GG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순번	성명	직급	2017. 2. 21. 당시 소속	비고
92	FK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93	RL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94	RM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95	RN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96	RO	지법판사	RU지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97	RP	고법판사	AN고등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98	RQ	지법판사	RV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99	RR	지법판사	Z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100	RS	지법판사	QF지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101	RT	지법판사	HT지방법원	AE 회원 자격 유지 를 위해 다른 연구 회 탈퇴



이유 부분 목차⁷³⁾

【공소사실과 인정사실 및 사실인정의 근거】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인정사실】

【사실인정의 근거】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인정사실】

1.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가. 법원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수집 과정 6

나. 법원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총 46건 수집 11

다. 이른바 한일협정 관련 사건의 정보 및 자료 수집 12

【사실인정의 근거】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인정사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B의 AO, AT,

73) 쪽수를 옆에 숫자로만 표시하였다.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19

나. 범행 사실 21

【사실인정의 근거】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피고인 B의 AO, AU,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인정사실】

3.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권고

가. 배경 30

나. 행위 31

1) 경위 31

2) 2016. 10.경 법원행정처의 권고 31

3) 2016. 11.경 피고인 B의 지적과 권고 33

【사실인정의 근거】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피고인 A·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인정사실】

4.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B의 AT,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배경 37



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 40

1) AT, BI의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우려 40

2)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B) 41

3)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에 대한 지적(피고인

B) 42

가) BA의 피고인 B에 대한 지시 및 피고인 B의 DC에 대한 요청 43

나) 재판장의 심증 확인, 법원행정처의 지적 전달 43

다)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요청 44

라) 선고기일 변경 45

마) 판결 선고 45

바) 판결문 수정 48

4) 법원행정처 관여와 관련된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피고인 B) 49

가) 공동의 인식과 의사 49

나) 행위 51

5)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A, 피고인 B)

52

가) CS법원 1심 판결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의 검토 및 보고 지시(피고인 B) 52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대한 지적과 권고(피고인 A, 피고인

B) 5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6)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에 대한 권고(피고인 A, 피고인 B) 59

가) 범행 결의 60

나) 법원행정처의 1차 권고 61

다) 법원행정처의 2차 권고 62

7)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에 대한 권고 (피고인 A, 피고인 B) 64

8)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요청 및 위 상고심 재판에 대한 권고(피고인 B) 65

가) 범행 결의 65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지시 65

다)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 조사·연구에 대한 권고 66

【사실인정의 근거】

[V당 행정소송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등(피고인 C)]

【공소사실】

【인정사실】

5. V당 행정소송 관련 심증 누설 등(피고인 C)

가. 법원행정처에 대한 심증 누설 97

나. 배석판사에 대한 판결문 수정 요청 98

【사실인정의 근거】



[V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 개입(피고인 D)]

【공소사실】

【인정사실】

6. V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의 경위(피고인 D) 106

【사실인정의 근거】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B의 AO, AU, BA과의 공동범행)]

【공소사실】

【인정사실】

7.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 피고인 B의 AO, BA과의 공동범행)

가. 범행 결의 109

나. 전문분야연구회의 설립 및 활동 110

다. 2016. 3.경 AE 약화 및 AF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A) 111

라. 2017. 1.경 AE 및 AF 제재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피고인 A, 피고인 B) 114

【사실인정의 근거】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공소사실】

【인정사실】

8.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가. 범행 배경 134



나. 범행 사실 135

【사실인정의 근거】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해석』

1.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 대한 행위

가.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 140

- 1) 법·제도의 변화와 과거의 법·제도 140
- 2) 서로 충돌할 수 있는 헌법상 원칙들 141
- 3) 과거의 판사 단련 과정 147
- 4)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 151
 - 가) 근거 151
 - 나) 주체·내용·목적·효과 154
- 5) 판사의 인사 사무 156
- 6)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157
 - 가) 근거 157
 - 나) 주체·내용·효과 163
- 7) 사법행정권 165

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과 그에 관한 행위 165

- 1) 주체 관련성 166
- 2) 내용 관련성 166
 - 가) 직권의 재량적 남용 및 월권적 남용과 지위 이용 166
 - 나) 송무·법령조사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무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



영역에 대한 지적	171
(1) 구별의 의의	171
(2) 구별의 실제	171
3) 직권행사의 모습	174
4) 일반적 직권의 주체의 행위가 공범이나 전달자를 거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경우	175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76
라.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76
1) 권리행사방해	176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	176
나) 구체화된 재판권의 현실적인 행사방해	177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181
2.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대한 행위	
가.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	181
1)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법익들	181
2) AZ 또는 BS실장이 GS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	182
3) BE이 HA심의관에게 지시한 사항	182
4)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183
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과 그에 관한 행위	183
1) 주체 관련성	183
가) AL 상임위원이 GS심의관에게 요청한 사항	183



나) AL 상임위원 판사가 HA심의관에게 전달한 사항 184

2) 내용 관련성 185

3) 직권행사의 모습 187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187

라.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188

1) 대법원 판례 188

2)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의 명시 189

3) 판사 심의관의 고유한 권한과 역할 191

4) 판사 심의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행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192

【인정사실별 판단】

1. 파견 판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193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193

1) 판사 파견 조항의 취지 193

2)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195

3)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 202

4)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의 직무권한 203

5) AS과 법원행정처의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 대한 직무권한 204

나. AL 상임위원 판사의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 대한 직무권한과 피고인 B의 직권 행사 205

1) 이 부분 공소장의 내용 205



2) 이 법원의 판단 207

가) 2단계의 포괄적인 지시 인정 여부 207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209

(1) AO, AT의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209

(가) 포괄적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209

(나) 대상 사건 범위의 구체화 210

(다) 내부 정보 범위의 구체화 211

(2) AU의 피고인 B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213

다) 피고인 B의 직권행사 214

(1) 대상 사건의 범위의 구체화 214

(2) 내부 정보 범위의 구체화 215

라)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및 직권행사와 지위 이용 217

(1)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 217

(2) 그 밖의 사건 218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219

1) 파견 판사의 정보의 제공 및 협조와 헌법재판소의 서면심리 및 평의 비공개의 관계 219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220

가) 사건 정보 220

(1)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주된 동기나 목적 220



(2) 2015. 9. 15.자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 문건 및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내부의 정보 및 자료 제공 요청 221

(3) 구체적인 판단 223

(4) AO, AT, AU의 공모 범위 226

(5) BA의 공모 범위 226

(6) BA의 직권남용행위와 피고인 B의 공모 227

나) 사건 외 동향 229

라.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231

마. 소결 233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B의 AT, BA과의 공동범행) 233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233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234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234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234

나) 직권행사의 모습 235

3)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236

4)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237

5) AO의 공모 여부 240

6) 소결 241



- 나.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241
 -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241
 -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공범 241
 - 3) 직권행사의 모습 244
 - 가) 직권행사의 모습 244
 -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244
 - 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245
 - 라) 소결 246
 - 4)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246
 - 5)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247
 - 가) 권리행사방해 247
 - 나)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249
 - 6) 중간 결론 250
 - 다.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250
3. 배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권고 252
-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252
 - 1) 판사인 재판연구관 보임 조항의 취지 252
 -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255
 - 3)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257
 - 가) 주체 관련성 257
 - 나) 내용 관련성 258



- 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와 지위 이용 258
- 라) 공소장 기재 ㉔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262
- 4)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와 상대방 263
- 5) 직권행사의 모습 264
-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265
- 다. 소결 268
- 4. V당 행정소송 재판(피고인 B의 AT, BA과의 공동범행) 268
-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자들의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 268
- 1) V당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공모 내용 및 공모 범위에 관한 검사의 주장 268
- 2) 판단 269
- 가) 판단의 순서 269
- 나) AO의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여부 269
- 다) AT의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여부 272
- 라) 소결 273
-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274
- 1) C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274
-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274
- 나) 직권행사의 모습 275
-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276
- 라) 의무 없는 일 하계 함 및 인과관계 277
- 마) 소결 281



- 2)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281
 -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281
 -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281
 -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와 공범·상대방 281
 - (3) 직권행사의 모습 284
 - (가) 직권행사의 모습 284
 -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전달자 284
 -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285
 -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287
 -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289
 - 1) 권리행사방해 289
 -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290
 - 라) 소결 291
- 다.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 291
 - 1)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291
 -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291
 -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291
 -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291
 - (가) 주체 관련성 292
 - (나) 피고인 B의 행위와 지위 이용 292
 - (다) 피고인 B의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293



① 피고인 B의 행위 293

② 피고인 B의 공소장 기재 ㉠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295

(3) 직권행사의 모습 296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297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298

라) 소결 301

2)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301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301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01

(2) 직권행사의 모습 302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303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304

라) 소결 306

3)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306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07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307

(2) 피고인 B의 행위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07

(3)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공범·전달자 308

(4) 직권행사의 모습 310

(가) 직권행사의 모습 310



-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전달자 311
 -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311
 - (라) C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모습 312
 -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312
 -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313
 - (1) 권리행사방해 313
 -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315
 - 라) 소결 315
- 라. 해명자료 작성 및 행사 316
- 마. V당 국회의원 AN고등법원 항소심 재판 318
 - 1)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318
 -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318
 -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18
 - (2) 직권행사의 모습 318
 -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319
 -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321
 - 라) 소결 323
 - 2)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324
 -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24
 -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324
 -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24



- (3) 직권행사의 모습 328
 - (가) 직권행사의 모습 328
 -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328
 - (다)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329
 - (라) Y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329
-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330
-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332
 - (1) 권리행사방해 332
 -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333
- 라) 소결 334
- 바.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Z지방법원 1심 재판 334
 - 1)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334
 - 가) 축소사실에 대한 판단 334
 - 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35
 -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335
 -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36
 - (3) 직권행사의 모습 337
 - (가) 직권행사의 모습 337
 -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338
 -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338
 - (라) DX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341



- 다)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341
- 라)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342
 - (1) 권리행사방해 342
 -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345
- 마) AO, AT,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345
- 바) 소결 346
- 2)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346
 -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47
 -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347
 -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47
 - (3) 직권행사의 모습 349
 - (가) 직권행사의 모습 349
 - (나) 직권행사의 모습과 공범 349
 - (다) 인정할 수 있는 사정 350
 - (라) AA의 입장에서 법원행정처의 권고로 보일 수 있는 모습 352
 -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352
 -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353
 - (1) 권리행사방해 353
 - (2)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354
 - 라) 소결 355
- 사.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AB고등법원 AC부 항소심 재판 355



아. V당 국회의원 상고심 재판 357

1)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357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357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57

(2) 직권행사의 모습 358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359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363

라) 소결 366

2)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366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366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366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지위 이용 367

(가) 주체 관련성 367

(나) 내용 관련성 367

(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B의 행위와 직권의 행사 368

(라) 공소장의 위 ② 부분 중 X의 앞서 본 보고서를 CD에게 전달하게 한 행위

370

(마)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 371

(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72

(3) 직권행사의 모습 372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373



다) 의무 없는 일 하계 함 및 인과관계 374

라) 소결 376

5. V당 행정소송 관련 심증 누설 등(피고인 C) 376

가. 비밀누설 376

1)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376

가) 관련법리 376

나) 판단 376

2) '직무집행상 지득'한 비밀인지 여부 378

가) 관련법리 378

나) 판단 383

3) 소결 384

나. 배석판사에 대한 판결문 수정 요청 384

1) 축소사실에 대한 판단 384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385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385

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390

다) 직권행사의 모습 391

3)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392

가) 1 내지 3차 수정 392

나) 4차 수정 393

4) 소결 395



- 6.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관련 배당의 경위(피고인 D) 395
- 7.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 피고인 B의 AO, BA과의 공동범행) 399
 - 가. 2016. 3.경 AE 약화 및 AF 와해를 위한 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A) 399
 - 나. 2017. 1.경 AE 및 AF 제제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범행) 400
 - 1)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400
 -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400
 - 다.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401
 -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401
 - 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과 그 상대방 401
 - 나) FV 등을 상대로 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401
 - 다) FO를 상대로 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402
 -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402
 - (2) 직권행사의 모습 402
 -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403
 - 가) 판단의 순서 403
 - 나) 사법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민주주의의 요청 실현 403
 - 다) 전문분야연구회의 지위 및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의 성격 405
 - (1) 전문분야연구회 일반에 관하여 405
 - (2) AE에 관하여 406
 - 라) AE의 설립목적과 AF 활동 407



- 마)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과 사법행정권의 남용 408
 - (1) 다수자의 관여와 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 408
 - (2) 행정상 조치와 최종 의사결정자 409
 - (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와 감독자 409
 - (4) BA의 동기나 목적 414
 - (5)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과 사법행정권의 남용 416
- 바)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과정에서 FO를 상대로 이루어진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와 사법행정권의 남용 417
- 사) 피고인 A, 피고인 B, 관련자들의 공모 417
 - (1)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417
 - (2)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418
 - (3) AO의 공모 여부 418
 - (4) AU의 공모 여부 419
- 3)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420
 - 가) 판단의 순서 420
 - 나) FV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420
 - 다) FO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422
- 8.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425
 -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425
 -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427
 -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428



라. 소결 429

【범죄사실】

1. 파견 관사를 통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430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431
3. V당 행정소송 재판(피고인 B의 AT, BA과의 공동범행) 432
 - 가. 범행 배경과 직무상 권한 432
 - 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피고인 B의 AT, BA 등과의 C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33
 - 다.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피고인 B의 BA과의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33
 - 라. V당 국회의원 AN고등법원 항소심 재판(피고인 B의 AT와의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34
 - 마.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Z지방법원 1심 재판(피고인 B의 BA과의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34
 - 바. V당 국회의원 상고심 재판(피고인 B의 BA과의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35
4.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 피고인 B의 AO, BA과의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FO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35



5.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436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및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438
2.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440
3.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44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443
2. 피고인 B 444
3. 형의 양정 445

【무죄 부분】

1.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피고인 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446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B의 AO, AT, BA과의 공동범행) 446
3.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피고인 B의 AO, AU, BA과의 공동범행) 448
4.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피고인 A·B의 AO, AT, AU, BA과의 공동범행) 448
 - 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피고인 B) 448
 - 나.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피고인 B) 449



- 1) 피고인 B의 AO, AT, BA 등과의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49
- 2) 피고인 B의 AO, AT, BA 등과의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50
- 3) 피고인 B의 AO, AT, BA 등과의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50
- 4) 피고인 B의 AO, AT, BA 등과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동범행 451

다.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피고인 A·B의 AO, AT, BA 등과의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52

라.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피고인 A·B의 AO, AU, BA 등과의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52

마.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 개입(피고인 A·B의 AO, AU, BA 등과의 E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54

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재판 개입(피고인 B의 AO, AU, BA 등과의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범행) 454

5. V당 행정소송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등(피고인 C) 455

6. V당 행정소송 관련 배당 개입(피고인 D) 455

7.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피고인 A·B의 AO, AU, BA과의 공동범행) 455

가. 2016. 3.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피고인 A) 455

나. 2017. 1.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피고인 A·피고인 B의 AO, AU, BA과의, 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FV 판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법관 101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각 공동범행] 456

8.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피고인 A) 457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3-25

[별지]

공소사실 1

범죄일람표(1) -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내역(사건 정보) 88

범죄일람표(2) -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내역(사건 외 동향) 106

범죄일람표(3) 11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3 형사부

판 결

사	관	2019고합188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신봉수(기소), 고명하, 김진용, 단성한, 민병권, 이주용, 조정호(공판)	
변	호	인	1.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D,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법무법인 I J: 담당변호사 K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 N 2.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P 법무법인(유한) Q: 담당변호사 R, S, T, U 변호사 V, W, X 3. 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P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Z, AA, AB, AC



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AE, AF, AG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A은 2015. 2. 11.경부터 2018. 2. 12.경까지 AH지방법원 AI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AH지방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형사재판부 재판장, 영장전담판사 인선 등 재판부 구성, 법원 근무행정 및 사건 배당 등 업무를 관장하고, 형사재판에 관한 기획·공보 업무를 총괄하는 등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 C는 AJ과 함께 2016. 2. 22.경부터 2017. 2. 19.경까지 AH지방법원에서 각각 제AK·AL·AM 재판부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행 결의

AN 대표 AO가 2016. 4.경 서울구치소 내에서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AP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전판 변호사에 대한 전판예우 및 고액 수입료 등의 문채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2016. 4. 28.경 'AO 상습도박 사건을 배당받은 항소심



재판장이 법조브로커로부터 AO에 대한 선처톱 부탁받았다'는 등의 현직 법관 연루 의혹이 보도되면서 이른바 'AO 게이트'로 불리는 법조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가 현직 법관에 대한 비리 수사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수시로 수사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사 확대 저지 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은밀히 AH지방법원으로부터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봉쇄 확인되는 'AO 게이트' 연루 법관 수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수사기밀을 보고받고 연루 법관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경 법원행정처 AQ으로부터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에 필요하나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게 되자, 법관 비리 은폐·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AO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AR에 있는 AH지방법원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 등 영장전담판사들에게 법원행정처의 수사기밀 수집·보고 지시를 전달하면서 'AO 게이트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법관들이 거론되는 등 법관 비리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의 영장이 접수되면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법관들이 그 사건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법관 관련 내용 및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하여 보고해 주고, 수사기록 중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중요 자료를 복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B, C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 C와 A1은 같은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면서 평소 중요 사건의 경우 영장전담판사 3명이 영장 심사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사 상황 및 영장 접수·처리 정



모든 공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 A를 통해 법원행정처 지시를 전달 받게 되자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요구 사항, 법관 비리 관련 수사상황, 증거관계 등은 공유하면서 'AO 게이트' 사건 압수수색영장, 계좌추적영장, 통신영장, 체포·구속영장이 배당되면 배당된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법관 비리 관련 수사상황, 관련자 진술 및 증거 요지 등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수사기록 중 법관 비리 관련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 조서 등 자료 사본을 만든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계획하였다.

3. 범행 사실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실제진실 규명을 위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수단으로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바, 그 대상과 증거관계 등이 유출될 경우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처 기능이 상실되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법관에 의한 영장 심사' 제도는 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자료인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영장청구 심사 재판(이하 '영장재판') 심리자료는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등에 누설된 경우 적시의 수사·재판을 통한 실제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등 외부로부터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압력이나 부당한 개입도 유발할 수 있는 등 재판의 독립을 핵심 요소로 하는 법관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외에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5. 3.경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AH지방법원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O 게이트' 사건의 각종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목으로부터 법원 비리 수사진행 상황, 증거관계, 향후 수사 계획 등 수사기밀과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사보고서 등 기록 사본을 입수한 후 아래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AQ에게 송부하였다.

또한, AQ은 검찰 수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부 법관들의 비위 혐의가 점차 구체화되자, 2016. 6. 22.경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AO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AS, AT 등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그들의 배우자, 前 배우자, 자녀, 부모 등 31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문법 수집한 다음, 암호(AU) 설정 보안 문건으로 정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검찰이 법원 수사 확대를 위해 AS 부장 등 현직 부장판사들의 가족에 대한 통신 또는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비하여,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이 자료를 토대로 영장 청구 대상에 위 법관들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고 비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는바,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A은 영장전담판사 중 선임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 나머지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AO 게이트' 사건 연루 법관 가족관계 문건을 이메일로 전파함과 동시에 '법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제과추적영장 등을 더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여 이를 공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AS 등 현직 법관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B, C는 AS와 그 가족에 대한 제과추적영장, 통신영장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기각하기도 하였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2016. 5.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AV를 팀장으로 하고 법원 행정처 심의관들¹⁾로 구성된 TFT 활동 등을 통해 AO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공판 관련 의욕을 생산·활용하여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 언론의 관심을 법원에서 검찰로 돌리는 방안, 검찰총장 압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1) 2016. 5. 3.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5. 2.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W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서, AW, AP, AX, AO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AO, AP, AW, AX, AY에 대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요청허가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AZ BA 사건과 관련하여 AP 변호사가 함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제낼 수 있는 재판부 2부 등을 언급하였고, 2부로 배당되자 반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AO AH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AP 변호사가 자신은 작업할 줄 아는 변호사라면서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해당 담당 리원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당한 다음 인사권자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고거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심 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5.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검찰수사 진행 경과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3.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AQ에게 승부하였다.

(2) 2016. 5. 10.자 범행

1) BB실의송 BC, BD실 심의관 BR, BR, BG, BH실 심의관 BI, BI, BX실 심의관 BL, BM, BN실의장실 심의관 BO 등



피고인 A은 2016. 5. 9.경 영장전담판사 AJ으로부터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W, AP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서, AO에 대한 체포추적영장청구서, AY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지독한 수사기밀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의하면, AP 변호사가 AO 사건, BP 회장 사건 등을 집행유예 청박 등 조건으로 수임하여 선임계 없이 활동하였으며, 수임 과정에서 판사, 검사와 20년 지기, 동기, 친한 사이 등 진분을 내세워 수임하였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으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AJ이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만든 사본을 전달받았고, 2016. 5. 10.경 위와 같이 AJ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AP의 사건수임 경위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0.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3) 2016. 5. 12.자 밤행

피고인 B은 2016. 5. 11.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P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원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AP 변호사가 AO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장이 22년 지기라거나 재판장과 배석판사를 밖에서 만나 대접을 했고 지인을 통하여 주심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AZ BA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1심 재판장에게 핸드백을 사줘야 한다거나, 황소심 재판장과 25년 지기로 재판부와 식사를 하고 판사들을 접대하겠다는 말도 하였다고 하고, 실제 고급 핸드백과 시계를 구입하여 AP 변호사 측에 전달하였다는 진술도 있다'는 취지의 법원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12.경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AP에 대한 범죄사실 개요,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및 관련 사건 진행경과'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2.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4) 2016. 5. 17.자 변행

피고인 B은 2016. 5. 16.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O, AX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청구서, AO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원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는 AP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붙어있지 않고, BQ 부장과의 문자 메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AX 변호사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AO 구명토비라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의 통화내역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록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17.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계좌추적영장 발부 중 검찰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7.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5) 2016. 5. 18.자 변행

피고인 B은 2016. 5. 17.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P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원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AP 변호사의 남편은 AP 변호사의 부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메모지, USB(9개)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고, AP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하였다'는



취자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구속기간 연장 결정, 압수수색 진행경과 및 압수물 내역'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5. 18.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6) 2016. 5. 25.자 범행

피고인 C는 2016. 5. 24.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BR에 대한 제과추적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AP 변호사는 아직까지는 현직 상대 영탁에 대해 합구하고 있고, BA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단서는 아직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5. 25.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AP의 진술내용,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언론의 현직 상대 수사 요구가 강하여 AP 변호사 말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AP 변호사 기소 후 현직 상대로 동화경위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다음 그 보고서(이하 '2016. 5. 25.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AQ에게 송부하였다.

(7) 2016. 8. 10.자 범행

피고인 B은 2016. 8. 10.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B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제과추적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위 수사기록에 편철된 'AO 등 공여자들 진술, AS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전달한 BR에게 금품을 건넨 AO 회사 직



원들 진술, AO 발행 수표 일부가 AS 부장판사 가족 계좌에 입금된 내역, AS 부장판사와 AO의 70여 회 통화내역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체포, 구속 등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인 '사안의 중대성, AS 부장판사의 증거인멸 시도 관련 진술' 등이 기재된 총 153쪽 분량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피의자 BR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계좌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필요 보고]'를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8. 10.경 'AS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각종 소명자료 및 향후 수사 예정사항' 등이 기재된 위 수사보고서 사본(이하 '2016. 8. 9.자 수사보고서'라고 한다)을 그대로 AQ에게 송부하였다.

48) 2016. 8. 2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22.경 영장전담판사 AJ으로부터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S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계좌추적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서 자득한 수사기밀에 대하여,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는 차량대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을 AS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계좌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AS 부장판사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AO 측의 입찰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AO 측 담당자는 AO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골프 집대를 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받으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AJ이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만든 사본을 전달받았고, 2016. 8. 23.경 위와 같이 AJ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AS 부장판사 입건사실 및 금품수수 혐위, 관계자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8. 23.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9) 2016. 9. 3.자 변형

피고인 C는 2016. 9. 1.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S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계좌추적 결과 2014. 7. 16. AS 부장판사의 딸 명의 계좌에 합계 1,8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15. 2. 6. 레인지로버 차량이 AS 부장판사의 처 명의로 이전 등록되었으며, 관련자가 AS 부장판사에게 2015. 2. 17. 2억 원, 10. 27. 1,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2016. 6. 5. 동화내역 분석을 통해 AS 부장판사의 배석 이름이 기록에 등장한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계좌추적 및 동화내역분석 결과,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9. 3.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은 토대로 'AS 부장판사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일자별 사건정리 내역,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사실'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9. 3.자 문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00 2016. 9. 9.자 변형

피고인 C는 2016. 9. 8.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AS에 대한 구속기간연장신청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O 게이트' 사건 관련 법관 비리 수사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수사기록에 의하면, AS 부장판사는 2억 원 수표 수수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은 받았다고 진술하고, 구속 이후 특별히 추가된 피의사실은 없으며, AS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 등을 보고하면서 수사기록 중 위 보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만들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9. 9.경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AS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 관계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2016. 9. 9. 자 문건'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AQ에게 송부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경부터 2016. 9.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법관 비리 관련 주요 진술 내용, 검찰수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수사 기능과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후 총 10회에 걸쳐 위 내용들을 정리한 문건 파일 9개 및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AQ에게 송부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판 단

I.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1. 법원행정처에서 임의제출 한 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법원행정처가 각종 정보저장매체 등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 하게 된 이유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및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관련 고발장과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고발장 및 조사결과에 기재된 내용과 무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자료들은 임의제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와 그 사용자가 다를 경우, 정보저장매체



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정보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의 실제 사용자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정보저장매체의 사용자(전자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 없이 정보저장매체(하드디스크, 이하 '하드디스크'라고 한다)와 하드디스크 내 전자정보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 또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그 법적효과는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검찰은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제출 받은 직후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을 작성하여 하드디스크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임의제출 받은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하면서 하드디스크 사용자의 참여권 및 이익권도 보장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1)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범죄 혐의사실'이나 '압수할 대상물' 등이 분명히 기재된 법원의 영장이 존재하지 않아 압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게 되는데,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의 범위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영장주의 등에 비추어 당연하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감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계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 106조가 적용되므로 압수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의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전체 압수·수색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은 임의제출된 전자정보 압수물을 탐색하여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일련의 압수·수색 과정에 피압수자가 참여하는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포괄적·탐색적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자정보 그 자체는 무체물이므로 그 소유나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보가 기억된 정보저장매체의 소유나 점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상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그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라고 할 것이다.

다.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경위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S단체와 BT노조 등은 2018. 1. 29.경부터 2018. 5. 30.경 사이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사법부를 상대로 다수의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법원장은 2018. 6. 15. 검찰의 수사에 대해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검찰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

② AH지방검찰청은 2018. 6. 19. 법원행정처에 AQ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법원행정처는 2018. 6. 26. AH지방검찰청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410개의 문건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자료제공 요청에 따르면서도 AQ 등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BL, BU, BV, BW, BM, 이하 'AQ 등'이라고 한다)이 사용한 일부 하드디스크에 대하여는 하드디스크에 대량의 파일이 존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개인정보나 봉신비밀, 공무상비밀이 담겨 있는 파일, 판여자가 아닌 법관이 작성한 파일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다.

③ 이에 검찰은 2018. 7. 5. 법원행정처에 AQ 등의 하드디스크에 대하여 다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고, 법원행정처장은 2018. 7. 6. AH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위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였다.

2. 귀청의 2018. 7. 5.자 수사협조의뢰(저장매체 임의제출에 따른 협조 요청)에 대하여 아래의 점을 제외하고는 응하고자 하니 아래의 점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법원행정처의 귀 기관에 대한 임의제출 대상은 저장매체에 포함된 전자정보로서 두 기관이 합의한 '파일'에 한점됨.
- BX, BY 사용의 각 저장매체에 관하여는 디가우징 등물 용한 복구 불능 상태인지 여부를 귀 청이 확인하는 데 협조하는 것이고, 포렌식 조사용 등한 각 저장매체 '파일'의 임의제출 여부는 주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함.
- 저장매체 복제물은 두 기관이 함께 봉인 조치하며 귀 기관에서 보관하되, 봉인 해제는 원본의 존재 및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법원행정처의 참여하여 실시하며, 위와 같은 목적이 소멸하면 법원행정처에 반환하여야 함. 끝.

④ 검찰은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기에 앞서 2018. 7. 초순경 법원행정처에 AQ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사실 요지를 정리하여 승부하였고, 이를 기초로 임의제출 형식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혐의사실의



요지 중 'V. 그 외 사법행정권남용과 관련된 모든 범죄행위' 부분에는 "수사과정에서 추가 고발 또는 새로운 단서의 발견으로 혐의사실 추가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법원행정처 BZ심의관 CA은 2018. 7. 9.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AH지방검찰청에 AQ 등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12개를 임의제출 하였고, 검찰은 같은 날부터 법원행정처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CB심의관 CC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참여 하에 물리이미징을 실시하였다.

⑥ 검찰은 2018. 7. 10. AQ 등이 사용한 저장매체에 대한 물리이미징을 완료했고, 2018. 7. 17.과 18. 이틀간 파일이 비치된 대법원 내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파일을 열람하는 등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였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는 컴퓨터에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두 개의 모니터를 설치하여 하나는 수사검사의 파일 검색용으로, 나머지 하나는 현장에 입회한 심의관(법관)에게 참관용으로 제공했다. 현장에 입회한 심의관은 위 모니터를 통해 검사의 파일 검색 과정을 상시 관찰하면서, 검사가 수사와 무관해 보이는 파일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소명을 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색을 제지하는 조치를 취했고,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면서 관련 검색어 입력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이 있는 파일을 선별한 다음, 선별된 파일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하였다.

⑦ 법원행정처는 2018. 7.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검찰로부터 임의제출을 요청 받은 특정된 파일에 대해 요청을 받은 날의 익일 오전 10시경 내부회의를 거쳐 파일의 관련성 및 임의제출 동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한 후 최종적으로 임의제출 여부를 결정하였고, 임의제출을 하기로 결정한 일부 파일을 순차적으로 검찰에 제출하였다. 검찰은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2018. 7. 17.경부터 2019. 1. 16.까지 사이에 총 69차례에



절차 선별된 파일을 논리이미징을 통해 최종적으로 반출하였다.

⑧ 검찰은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단계에서는 '임의제출 확인서', 물리이미징 단계에서는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 및 '현장조사보고서', 최종 반출이 이루어진 논리이미징 단계에서는 '임의제출 확인서'와 '데이터 반출 확인서(현장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제출하였고, 임의제출 확인서에는 검찰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자필 서명, 작성일, 파일명, 해쉬값, 파일 경로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⑨ 검찰은 위 절차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관련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받았는데, AQ에 대한 혐의사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160512) AP 사건 기록검토[A]' 파일을 2018. 7. 20. 임의제출 받고, '(160823) AS 부장[A]' 파일을 2018. 7. 23. 임의제출 받고, '(160523) AW 체포 등 사건 사실관계[A]' 파일에 대해서는 2018. 7. 26.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하여 같은 달 31. 임의제출 받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10.자 문건과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문건을 임의제출 받았다.

⑩ 한편,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증거들을 토대로 2018. 7. 21. AQ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AQ의 PC, USB 및 각 저장매체에 저장된 파일 등을 압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내지 (6), (8) 내지 (10)의 각 문건을 모두 수집하였는데, 해당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범죄사실 중에는 AP 변호사와 AS 부장 판사 등이 관련된 AO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AQ이 AH지방법원 AI 부장 판사인 A로 하여금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기록 검토 과정에 지득한 공무상 비밀을 입수한 후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공무상비밀누설을 지시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행이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관련 법리와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경위 등을 살펴보면,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였다고 의심받는 AQ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혐의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② AQ 등 법원행정처 근무자가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는 원래 대한민국의 소유로 사용자에게 공적 업무를 위해 제공된 것인데 AQ 등이 퇴직 및 인사 이동으로 법원행정처를 떠났기 때문에 사용권한 또한 법원행정처로 귀속되었다. 법원행정처장이 하드디스크를 관리·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지자 내지 보관자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할 권한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임의제출된 하드디스크에 담긴 전자정보가 사적인 용도가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각 전자정보를 생성한 사람의 개별적인 동의할 받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③ 형사소송법에는 저장매체의 사용주체(전자정보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명문의 조항은 없으며, 검찰은 법원행정처 관계자의 참여 아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고, 법원행정처 내부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 전자정보만 반출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검찰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전자정보 등 해당 증거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AQ으로부터 압수수색한 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검찰 수사의 단서가 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BS단체 등의 고발장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



전 공소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부분이 기재된 AQ에 대한 혐의사실은 검찰의 2018. 7. 20.자 수사보고서에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양이 500쪽 이상에 이를 정도로 내용이 방대하다. 검찰이 법원행정처 내 하드디스크에 포함된 수많은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인지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더구나 AQ에 대한 2018. 7. 20.자 범죄인지서 제1면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그 시행령이 규율하고 있는 출력기관, 출력일, 면수 및 총면수, 문서의 고유식별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2면 이하 범죄사실 부분의 경우 문서출력일자가 그보다 이전인 2018. 7. 2.로 표시되어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이전에 내사 특은 범죄 혐의도 나타나 있지 않은 단계에서 착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범죄 인지경위에 위법이 있는 이상 관련된 증거수집 절차가 모두 위법하고 AQ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 수집한 증거들은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일반적으로 범죄인지서의 '표지'는 인적사항 및 죄명 등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하면 충분한 반면, 표지 이하의 범죄사실 부분은 주임 검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결재라인에 해당하는 부장검사, 차장검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검찰 업무 과정의 특성 때문에 편의상 범죄인지서의 '표지'와 '범죄사실' 부분이 분리되어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② KICS 전자 문서 포터말 표가 오류에 관한 법무부 내부 결재 공문에 따르면, 문서식별번호와 출력일자가 잘못 기재되는 문서는 키스시스템에서 출력되는 인쇄물의 문서식별번호와 출력일자가 한글 레지스트리 영역에 저장되면서 사용자 PC에 저장된 다른 문서 출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글프로그램 운용 과정상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③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건일자는 2018. 9. 11.이지만 같은 방식의 오류로 인하여 피고인 B, C의 범죄인지서 출력일자도 그 이전인 2018. 8. 23.로 기재되어 있고, AP의 2016. 5. 10.자 피의자신문조서도 출력일자가 2016. 5. 4.로 표시되는 등 출력일자와 실제 작성일자가 다른 서류가 다수 존재한다. ④ 검찰은 법원 행정처 제공 자료에 대한 열람, 선별작업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AQ에 대한 압수수색검증명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I)항 2016. 5. 3.자 범행, (3)항 2016. 5. 12.자 범행, (8)항 2016. 8. 23.자 범행과 관련된 혐의사실을 각 기재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은 법원행정처 내 정보저장매체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AQ의 범죄 혐의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AQ에 대한 범죄인지서 및 압수수색명장 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와 관련된 부분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죄사실 인지와 관련하여 별다른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AO 및 AS의 수사기록에서 비롯된 증거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는 AO와 AS에 대한 각종 영장청구 당시 영장심사 담당 관사들에게 제출된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김사가 제출한 것들이다. 그러나 AO와 AS에 대한 수사기록의 목록에는 위



서류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19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증거 신청 내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3항에서는 "검사 등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66조의 3에서는 피고인 측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서류 등을 열람·등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 제한사유를 정하면서도 특히 그 목록에 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절대적 개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는 헌법상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이 증거개시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만큼 서류 등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사기관이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작성하게 된다면 증거개시제도는 그 기초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수사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과 허용 여부 등은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의 각 서면들과의 대조를 위해 제시한 AO 및 AS에 대한 수사기록은 기록의 보존표시, 문서식별번호, 출력일자, 기록의 명칭(제목), 원본이 아닌 수사서류가 많은 점 등 일반적으로 관리되는 수사기록과 상당히 다른 점이 있고, 피고인 C의 변호인이 문서송부촉탁결과로 취득한 AO 및 AS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증다 제3호증의 1 내지 11)에 포함되지 않은 수사기록 목록이 증거목록 순번 제1504호, 제1505호(이하 'AO 및 AS 수사기록 가목록2')이라고 한다)로 추



가로 제출된 점은 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AO 및 AS 수사기록 가목목이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에 원부원체로 보존되어 있고, 위 가목목에는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의 문건들의 제목이 등재되어 있으며, 수사기록상 그 해당 부분에 위 문건들의 원본 내지는 동일한 사본의 서류들이 편철되어 있다. 위 수사기록이나 이에 편철된 목록이 형상이나 기재 내용, 전반적인 수사의 흐름과 맥락에 비추어 사후에 작성되거나 변작되지 않고 수사 당시에 작성되거나 사본되어 수사기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문건들이 영장 재판 당시 판사에게 실제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그러한 이상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의 서류들은 모두 AO 및 AS에 대한 수사기록에서 비롯된 문건들로서 동일성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 비록 피고인들의 지적과 같이 검사가 이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AO 및 AS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을 송부하면서 위 서류들까지 포함된 목록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있지만, 당해사건이 아닌 타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이 일부 누락되어 제시되었다는 점을 들어 검사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목록 작성의무나 증거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문건들이 AO 및 AS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검사가 당해 피고인들이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수사기록 목록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증거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문건들의 증거능력 자체를 원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 법원의 2019. 10. 28.자 검증의 대상이 된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 문건들과 증거목록 순번 제1504호, 제1505호 목록의 경우 피고인 C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받은 AS 및 AO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중단 제3호중의 1 내지 11)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목록 순번의 문건들과 목록을 문서송부촉탁에 의해 위촉한 목록 및 해당 목록에 기재된 문건들과 구분하여 '이른바 AO 및 AS화 가기록·가목목'이라고 호칭하고 있으며 이 판결문에서도 구분을 위하여 위 명칭으로 기재한다.



천적으로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기록 목록 제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II.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정보를 AQ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 및 AJ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공소사실 제(1) 내지 (6)항과 제(8) 내지 (10)항 기재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AI 부장판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그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토대로 각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 AQ에게 송부하였으며,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수사기록에 편철된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사본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그대로 AQ에게 송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우선 피고인들이 각 항목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이를 AQ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공소사실 제(1)항 : 영장판사 C(AP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3.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3.자 문건의 내용을 보면, 그 중 'BA 사건 관련 사항' 항목과 'AO 사건 관련사항' 항목은 수사기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AZ와 AO의 진술을 요약한 것이고, 실제로 해당 사건 수사기록에 그러한 진술들이 존재한다. 피고인 C는 이에 관하여 2016. 5. 2. 처리한 영장들은 당시 AO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첫 영장이었기 때문에 처



리 후 피고인 A에게 비교적 상세히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작성한 2016. 5. 3.자 문건 중 적어도 'BA 사건 관련 사항', 'AO 사건 관련사항' 항목은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보고한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해당 문건의 나머지 기재는 피고인 A이 영상공람 결재, 당시까지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수사기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과 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부분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AZ BA 사건과 관련하여 AP 변호사가 항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태낼 수 있는 재판부로 2부 등을 언급하였고, 2부로 배당되자 받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AO AH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AP 변호사가 자신은 작업할 줄 아는 변호사라면서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배당 담당 직원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당한 다음 인사권자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고거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심 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는 위지의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2016. 5. 3.자 문건의 위 해당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거가 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 영장판사 AJ(AW 체포영장 청구 등)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0.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2016. 5. 10.자 문건과 관련하여 AJ은 이 법정에서 '체포영장 집행과정, 현재 남편과 관련한 부분, AP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라는 부분, BP와 CD 부분은 영장 재판에서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해당 문건 중 체포영장 집행과정과 관련한 부분은 AJ이 2016. 5. 9. 발부한 AP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집행한 과정에 관한 것으로 2016. 5. 10.자 수사보고[피의자 AP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결과 보고]에 기재되어 있어 AJ이 2016. 5. 9. AP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기록을 검토할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문건 내용 중 'AP변호사, AY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이라는 부분도 AJ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AP과 AY이 체포된 것을 전제로 하여 수사기관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5. 10.자 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당시 영장판사인 AJ을 통하여 취득한 수사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건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피고인 A이 사전검색시스템, 언론보도, AH지방검찰청 CE검사 CF 같은 수사관계자로부터의 청취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AJ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공소사실 제3(항) : 영장판사 B(AP 구속영장 청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2.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검사 및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이 작성한



2016. 5. 12.자 문건은 AQ 컴퓨터에 2016. 5. 12. 14:25경 저장되었다. ② AP에 대한 구속영장은 2016. 5. 11. 19:05에 청구되어 다음날인 12. 피고인 B에 의해 처리된 뒤 같은 날 23:50 기록이 반환되었다. ③ 피고인 B은 2016. 5. 11. 몸이 좋지 않아 AP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이전에 퇴근했다. ④ 피고인 B이 2016. 5. 12.에 담당할 영장 중에는 CG 화백 작품 위조범에 대한 것과 같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영장이 여러 건 있었다. ⑤ 피고인 B이 담당할 AO 제이트 관련 사건 중 AP 구속영장이 첫 영장이었는데, 영장 청구 당시 기록은 3,000쪽이 넘었지만, AP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 상태였다. ⑥ 그 부럼 AP 사건과 관련한 영장은 AJ이 담당할 2016. 5. 13. 압수수색영장 뿐이었고, 피고인 B이 처리한 영장은 AP에 대한 구속영장 이외에는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늦어도 2016. 5. 12. 14:00 무렵에는 AQ에게 위 문건을 승부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B이 같은 날 처리할 다른 중요한 영장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구속 전 심문을 포기한 AP의 영장을 우선 검토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전날 영장 기록이 들어오기 전에 퇴근했고, 그 이전에 AP 사건에 대해 파악할 기회도 없었던 이상 당일 출근하여 다른 영장 심문과 준비물 함과 동시에 3,000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문건으로 만들어 14:00 이전에 AQ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여기에 ① 피고인 B은 최초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2016. 5. 12.자 문건은 피고인 B의 보고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② AJ이 2016. 5. 16.(월) 12:26경에 이르러 피고인 B에게 '부장님 AJ부장님께서 지난 금요일 AP 사건 보고 파라고 계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③ 문건 중 AP와 묵비권 행사 관련 부분 등은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문건의 내



용상 피고인 A이 사건검색시스템, 판결문검색시스템, 영장 접수보고나 종국보고 또는 영장공람결재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2016. 5. 12.자 문건에 기재한 내용들은 모두 피고인 B이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보고받아 쓴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스스로 사건검색시스템, 수사관계자로부터의 청취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을 취합하여 기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B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제(4)항 : 영장판사 B(AO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7.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17.자 문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기록상' 해당 항목은 피고인 A이 영장담당 판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아울러 'CH 사건' 항목은 피고인 B이 AO 게이트 사건 외에도 전직 법관이나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을 보고해왔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A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공소사실상 비밀누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문건 중 'AP변호사 관련' 항목과 '5. 16. AX변호사, AO 관련 계좌추적 영장 등 발부' 항목 및 'AT 부장 관련' 항목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검찰의 CF 등 수사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과 영장공람결재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 및 AT 부장판사를 통해 직접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그 변소를 뒤집고 피고인 B으로부터 취



득한 정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 가운데 '수사기록에는 AP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붙어있지 않고, BQ 부장과의 문자메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AO 구명로비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의 통화내역 제공요청 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부분은 2016. 5. 17.자 문건 중 '기록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영장계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에 있다.

마. 공소사실 제(5)항 : 영장판사 B(AP 구속기간연장 신청)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18.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5. 18.자 문건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록상' 해당 항목(피고인 A의 의견을 기재한 ※표 이하 2개 부분 제외)은 피고인 A이 영장담당 판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나머지 'AP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5.17.자)' 및 '오늘 10시 CI 피고인 위증 사건 징역 3년 선고' 부분은 피고인 A이 영장공람결재와 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4)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 가운데 '수사기록에 의하면, AP 변호사의 남편은 AP 변호사의 부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메모지, USB(9개)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은 2016. 5. 18.자 문건 중 '기록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영장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있다.

바. 공소사실 제(6)항 : 영장판사 C(BR 제좌추적영장 청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5. 25.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2016. 5. 24. 접수된 BR에 대한 제좌추적영장 청구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2016. 5. 24. 16:52경 법원에 접수되어 2016. 5. 25. 03:00경 반환되었음에 반해, 검사가 2016. 5. 25.자 문건의 출처라는 취지로 제출한 AP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는 2016. 5. 24. 15:00경 신문이 시작하여 2016. 5. 25. 00:45경에 종료되었다. 피고인 C가 BR에 대한 제좌추적영장을 검토하면서 AP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볼 수 없었을 것이므로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했을 수 없다. ② 피고인 A은 AH지방검찰청 CF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토대로 2016. 5. 25.자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하고, 문건의 전체적인 표현 형식도 '-했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어 제3자로부터 청취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③ 해당 문건에 기재된 AP 기소시점과 관련하여 영장재판 기록에 그와 같은 기재는 없고, 영장전담판사가 그와 같은 내용을 예상하기도 어렵다. ④ '의혹이나 수사단서는 없음', '안본의 현직 상대 수사 요구가 강함', '수사종결하기 어려운 현실',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법원 상대 조사 사전 조율 예정' 등의 내용은 영장 판사가 영장기록을 봄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결국 이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6. 5. 25.자 문건에 기재한 내용이 피고인 C로부터



터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 공소사실 제(7)항 : 영장판사 B(피의자 BR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거래추적 및 문신사실확인자료 필요 보고)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6. 8. 10.경 BR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처리하면서 제출된 수사기록에 첨부된 153쪽 분량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복사기를 이용해 직접 사본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그대로 AQ에게 송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범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수사보고서 사본을 복사하여 법원행정처에 송부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수사보고서 사본을 받아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AQ이 위 수사보고서를 어디에선가 구해 CJ감사관 CK에게 건네주고, CK가 이를 CL심의관 BJ에게 전달하여 BJ이 'AS부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류 정리'라고 14쪽 분량으로 요약한 문건과 BZ심의관 BI이 CK와 BJ에게 보낸 이메일에 위 수사보고서 중 114쪽의 사본이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는 뿐이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H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가 전달되었다면 제가 승인을 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AH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 사본이 전달되었다면 제가 승인을 해서 보냈을 것이고 영장판사가 기록을 봐야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시킬 일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한 적은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은 AH지방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위 수사보고서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가정적으로 전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해당 진술의 앞뒤로 '수사보고서를 복사해서 법원행정처에 보내도록 하거나 보낸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제가 하루 전날 관련 영장이 접수될 것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사보고서를 확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CK는 검찰에서 'BJ이 수사보고서 전체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면, 저도 당연히 AQ님으로부터 수사보고서 사본 전체를 전달받았을 것입니다. AQ님이 저에게 따로 이야기는 안하셨지만, 영장 청구 당일 수사보고서를 구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AH 법원에 계신 분들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AH법원에서 수사보고서를 입수하여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시 AI 부장판사인 A 또는 영장재판을 담당하였던 B 부장판사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 진술 자체에서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CK는 이 법정에서도 '해당 진술은 가정적 상황에서의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였다.

AQ은 이 법정에서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CK에게 전달한 것 같으나 위 수사보고서를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검찰로부터 CM 판사의 비위사항을 정리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 외 여러 차례 문건을 검찰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적이 있는데, CM 판사 사건은 대검 기조부장이 법관 비위 정보 문건을 저에게 원천으로 전달한 것이어서 AS 부장판사 사건에서도 본격적인 수사 개시 무렵에 비공식적인 형태로 법관 비위사실 관련 문건이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Q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 CK도 이 법정에서 'AS 부장판사 전은 AH지점으로부터 CM 전과 비슷한 형태로 전달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4)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Q이 CK에게 건네준 2016. 8. 9.자 수사보고서 사본을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시된 수사보고서 사본을 피고인 B, A이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자체에 관하여 그 증명이 부족하다.

아. 공소사실 제(8)항 : 영장판사 AJ(AS 압수수색영장 청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8. 23.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2) 2016. 8. 23.자 문건의 기재를 보면, 그 중 '나. 금품 수수 내용' 항목, '다. AS부장, CN 부장(15. 2. 변호사 개업), CO 변호사 관계' 항목, '라. CP지법 사건' 항목 부분은 수사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수사기록상 사건관계자의 진술 등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해당 영장재판을 담당한 A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8. 23.자 문건에 기재된 내용 대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2016. 8. 23.자 문건 중 적어도 위 나, 다, 라 항목 부분은 피고인 A이 AJ으로부터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정보를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해당 문건의 나머지 부분인 '가. 특가법(뇌물수수) 인지' 항목과 '마. AS부장 제과 영장' 항목 기재 부분은 피고인 A이 영장공람결제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들이다).

3)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에 의하면, 판원자는 차량대금 5,000



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을 AS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제적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AS 부장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AO 측의 입찰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AO 측 담당자는 AO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골프 접
 대를 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2016. 8. 23.자
 문건 중 나, 다, 라 항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AJ이 영장제발 과정에서 이 부
 분 수사기록상의 정보들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증거가 있다.

자. 공소사실 제(9)항 : 영장판사 C(AS 구속영장 청구)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9. 3.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2016. 9. I.경 접수된 AS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범정에 이르기까지 위 문건에 대하여 '중
 요 사건으로 종전 영장 처리결과를 일자별로 정리해 두었다가 종합 정리한 것으로 당
 시 접수된 수사기록을 보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3) 2016. 9. 3.자 문건의 기재내용과 검사 및 피고인 A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을 종
 합하여 보면, ㉠ 이 문건은 피고인 A이 AQ에게만 보고한 간단한 메모 형식의 공소사
 실상 다른 8개 문건과 달리 CQ 비서실장, CK CJ감사관, BW BK실장, AQ을 수신자로
 하여 이메일 본문에 '일자별로 정리한 것인데 업무에 참고하십시오'라고 기재하여 첨부
 파일로 보낸 것이다. 문건 본문에 '요약'이라는 간단한 제목이 붙어 있고, '가. 일자별



정리' 항목 아래 2012. 5.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사건의 진행 경과가 연도별로 나누어 날짜순으로 5쪽에 걸쳐 기재되어 있다(다만, 가.항은 있지만, 나.항 이하는 없고, 맨 끝 '통화내역' 항목에 'CR-CS, CT-CU,CV' 등 사람이름이 약어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정식 보고문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³⁾). ② 이 문건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법원행정처에서 2016. 8. 15. BI 발신, BJ 수신 이메일에 첨부된 '영장.pdf' 파일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것들이고, 피고인 A이 기존에 다른 문건을 통해 보고했던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③ 이 문건은 AS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4년여 전부터 발생한 일련의 사실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들과 영장공람결재, 사건검색 및 판결검색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한편 AS 구속영장 청구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법원 내 인사이동 및 사무 분담 관련 사항, 귀대기 취재 등 언론 관련 사항, CW CX회사 부회장 자살 사실, CY회의 개최 등의 사실도 여럿 기재되어 있다. ④ 검사는 해당 문건의 출처라는 취지로 2016. 9. 1.자 수사보고[피의자 AS 구속 필요 보고]와 이른바 AO 가기록, AS 가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데 위 가기록에 편철된 서류들의 경우 그 관리나 보존 방식⁴⁾ 등에 비추어 AS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당시 영장담당 판사에게 제출된 수사기록에 모두 편철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AS 가기록에 기재된 가목록에도 2016. 6. 23.

3) 이 사건 증거기록에는 제목이 'AS부장 일자별 정리요약'으로 변경되고, '가. 일자별 정리' 항목이 '○ 2012-2013년'으로 수정되고, 본문 내용도 약간 변경된 형태의 문건이 따로 존재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AQ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자신이 보낸 2016. 9. 3.자 문건을 편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추가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1449호 내지 제1481호, 제1483호 내지 제1488호 중 수사보고서 일부는 AO 게이트의 원 수사기록 목록에 존재하지 않고, 수사보고서 대다수가 원 수사기록에 쪽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수사보고서만 원본으로 존재할 뿐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각종 조서는 모두 사본으로 되어 있다. AS 가기록의 경우 기록 제1권 외 제2권에 도 표지가 있고, 그 표제가 '나머지 기록'이라고 되어 있다. AS 가기록 제1권의 표지에는 보존표지와 문서식별번호 및 출력일자 등 꼬리말이 없고, 증거목록 순번 제1504호의 목록도 편철되어 있지 않다. AS 가기록 제2권의 AS 가목록(증거목록 순번 제1504호)에는 AS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BR에 관한 서류도 상당 부분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가기록 제1권의 수사기록 목록에 기재하지도 않은 수사서류를 'AS 나머지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수사기록의 별책이 아닌 제2권 이하에 가목록과 함께 편철해 놓고 기록을 관리했다. 이와 같이 수사기록이 통상적인 형태와 달리 편철되어 관리되었음에도 검찰은 이러한 가목록과 가기록이 어떤 경위로 조제되고 관리되었는지, 위와 같은 형태로 수사기록이 관리되는 것이 적법한지, 실제로 이러한 가목록과 가기록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작성된 서류들만 기재되어 있어 그 이전의 서류는 그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작성한 2016. 9. 3.자 문건은 당시 영장 재판관을 담당한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다음 그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이 그 주장과 같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수시로 자료를 업데이트하면서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비록 피고인 C가 당시 AS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리하면서 '2016. 9. 1.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S 구속필요보고)'를 읽고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했을 수 있고, 위 수사보고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상 유출된 수사정보로 거시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4년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중 이미 언론의 보도로 다루어진 부분도 많고, 피고인 A이 기존에 여러 차례 관련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기도 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작성한 2016. 9. 3.자 문건과 2016. 9. 1.자 수사보고에 각기 기재된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정보 해당 부분만을 특정하여 피고인 C가 AS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 당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들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차. 공소사실 계층항 : 영장판사 C(AS 구속가간영장 신청)

1) 피고인 A의 진술과 해당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9. 9.자 문건을 작성하여 AQ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2) 2016. 9. 9.자 문건의 기재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이 영장 접수보고 및 총국보



고, 영장공람결재들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앞에서 본 2016. 8. 23.자 문건과 2016. 9. 3.자 문건에서 야미 기재한 내용 및 피고인 A이 주로 CF접사 등 수사관계자로부터 듣고 기재했을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라고 함'이라는 표현 등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당사 영장재판을 담당했던 피고인 C로부터 취득한 수사정보를 문건에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는 피고인 C가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카. 소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 수사정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이 제(4), (5)항 기재 수사정보 중 각 일부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A이 제(8)항 기재 수사정보를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각 문건에 기재하여 AQ에게 보고하여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중 나머지 항목 기재 수사정보나 수사보고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하여 AQ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별행 공모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AO 제이트'로 불리는 범조직의 의욕이 높거지자 ㉠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 확대 저지 등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은밀히 AH지 방법원으로부터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 수사 기록을 보고받기로 하였고, ㉡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Q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 지시를 받아 법관 비리 은폐·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보호를 위해 그 자시에



적극 협조하여 'AO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고, ③ 영장전담 판사인 피고인 B, C 및 AJ에게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전달하자 그들이 뜻을 공유하여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수사정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보고서나 조서를 사본하여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공소사실 제(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행을 하고, ④ 실제로 법원행정처에서 지시한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을 더 엄격히 심사하고, 법원행정처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검찰 압박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요 요인별로 항목을 나누어 피고인들이 공무상 비밀누설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한다.

가. 공동정범의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법원행정처의 수사 확대 저지 목적과 검찰 압박 방안 등에 관하여



1) 2016. 4.경 'AO 게이트' 사건이 발생한 후 일련의 법관 비리 혐의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작성된 '(160509) AP 관련 종합보고[CK]', '(160512) AO 사건 관련 제도개선 방안(최종본)[BL]', '(160816) AO 수사기의 검토와 관련 보도 현황[BE]', '(160817) AS 부장 대응 방안[A CZ]', '(160817) 검찰 대응전략[DA]', '(160817) 향후 추진 방향 및 전망[BE, DB 수정]' 등 몇몇 보고서에는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와 같이 AO 상습도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공판 관련 의혹을 활용하여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 언론의 관심을 법원에서 검찰로 돌리는 방안, 검찰총장 압박 방안 등을 모색하는 취지로 기재된 내용들이 있다.

2)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위 문건들이 작성된 전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㉞ AO 게이트 사건은 AO와 관련된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전원직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사건 발생 당시 언론에는 다수의 현직 법관에 관하여 전판예우가 원인 부당한 사건처리, 역대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보도되었다. 그 중에는 현직 법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근거 없는 소문도 여럿 보도되어 사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되었다.

㉟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응하여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주된 목적으로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법원행정처 DB이었던 AQ은 2016. 4. 말경부터 법원행정처 내 심의관들에게 AO 게이트 사건으로 발생한 여론 악화에 대한 대책과 사법신뢰회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㊱ AQ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 BL, BE, BI 심의관은 제도개선방안에 관하여 서로 논의하였고, 2016. 6.경에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발표 준비를 하



면서 정식 TF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AV를 팀장으로 하여 BC, BF, BG 등 다수의 심의관이 포함되는 이른바 현안TF(이하 '현안TF'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㉞ 그 일환으로 심의관들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12.경까지 사이에 '(160429) AO 사건 관련 대응방안', '(160502) AP 관련 risk 예상', '(160503) 현안 관련 제도 개선방안', '(160503) 제도 개선 방안', '(160512) AO 사건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 여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㉟ 그 당시 심의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법원에 집중된 언론의 관심을 점검로 일부 돌리는 방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과 중점은 AO 개입과 관련한 비위법관에 대한 법원진상조사 착수,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 및 수사의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이었다.

㊱ 법원행정처는 현안TF에서 논의된 내용과 심의관들이 작성한 여러 보고서를 기초로 제도개선책에 관한 전국 법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전국 법원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2016. 6. 16.에는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함과 동시에 연고관계 사건 수임 차단, 법정 외 변론 포괄적 금지, 법관윤리교육 강화 등 각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㊲ 법원행정처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던 무렵인 2016. 8. 15. AH지방법원에서 영장 당직 판사 DC가 형직 부장판사인 AS에게 뇌물을 공여한 BR에 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런데 비공개로 진행된 BR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다루어진 현직 법관 AS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법원은 해당 언론보도가 검찰관계자의 정보제공에 따른 것이라고 의



심하였다.

㉞ 그 사건 이후 AQ은 심의관 등에게 지시하여 '(160816) AO 수사 관련 보도 현황', '(160816) AO 수사관련 분계점', '(160816) AO 수사기록 검토와 관련 보도 현황', '(160817) AS 부장 대응 방안', '(160817) 검찰 대응전략', '(160817) 향후 추진방향 및 전망' 등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해당 보고서 중에는 앞서 본 검찰에 대한 대응 및 압박 방안으로 볼 만한 내용들이 일부 기재되어 있다.

㉟ 이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은 후 AQ은 2016. 8. 17. 오후경 대검찰청 차장검사로부터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수사기밀 유지를 위해 보고라인을 축소하고 수사팀에 철저한 보안 유지란 지시하며 대검찰청 간부진의 대언론 수사 상황 언급을 자제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AH지방법원 AI 부장판사인 파고인 A은 AH지방검찰청 CE검사 CF로부터 해당 보도는 언론사 기사가 영장심문이 이루어지는 법정 밖에서 법관 출입문에 귀를 대고 들은 내용을 기사화 한 것(이른바 '귀대기 취재')이라는 해명자료를 받았다.

㊱ 2018. 8. 17. 이후 법원행정처에서는 검찰에 대한 대응이나 압박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의 기재가 이루어진 보고서가 더 이상 작성되지 않았다.

3) 위 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관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BE, DA, CK, BL는 모두 이 법정에서 '각 보고서는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며, 일부 과격한 표현은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AQ이 문구와 표현을 불러주어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고, 각 보고서의 중점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언론 대응과 제도개선방안 마련이었으며, 원안



TF에서도 검찰 압박이나 수사 확대 저지론 위한 대책 마련이 아니라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㉔ AQ은 이 법정에서 해당 보고서에 기재된 다소 파격적인 표현에 대하여 '검찰의 법원 망신주기식 수사정보 유출과 의도적인 언론플레이에 대하여 대응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며,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㉕ 현안TF의 팀장이자 법원행정처 내부 실장회의에 참석한 AV는 검찰에서 법원 행정처 내에서 검찰 압박 방안은 논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원행정처 BK실장이었던 BW은 검찰에서 'AO 게이트와 관련해서 AQ이 검찰총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실장회의에서 반대하여 AQ의 아이디어가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4) 법원행정처 BH실에서 작성한 '(160815) 조치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그 부럼 AS에 대하여 탄핵, 파면, 징계, 의원면직 등을 검토하고 있었고, CK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AS의 사건과 관련하여 BX이 사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엄정 처리를 지시하는 등 당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는 AS에 대하여 사표 수리가 아니라 엄정대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 내에서 작성된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작성 전후의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O 게이트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보고서 등을 통하여 검찰에 대한 대응 내지 압박방안의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주로 검찰이 언론을 통하여 여러 비리 의혹 범조인 중 특히 전·현직 법관에 대한 수사정보를 고의로 유출한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단기간에 주로 검토된 이러한 검찰 대응방안은 2016. 8. 17. 오후경 검찰 측에서 이른바 귀대기 취재에 대한 해명을 함과



동시에 수사팀에 철저한 보안 유지 지시를 하고 간부진의 대언론 수사 상황 언급을 자재하겠다는 약속을 함 이후 더 이상 검토되지 않았으며, 그 보고서를 통하여 검토된 방안들이 별다르게 실행에 옮겨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법원행정처에서 주로 비위법관의 사무분담 변경이나 정계, 재판업무배계에 따른 법관인사, 대언론 업무, 대 국회 업무에 중점을 두면서 법관비위 방지나 전관예우 방지 등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법관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법관 비리 은폐 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 목적에 관하여

1)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 및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㉞ 법원조직법상 법원행정처는 상급 사법행정기관으로, DB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 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㉟ AO 게이트 사건 발생 당시 대법원을 비롯한 일선 법원은 비리 연루 법관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재발 방지 및 사법신뢰 확보방안 등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함과 동시에 언론 및 국회에서 확인을 요정하는 사실에 대한 답변 등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위해서 사건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위파악이 필요했다. 피고인 A은 당시 그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던 AH지방법원의 AI 부장판사로서



사건의 경위와 실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필요가 있었다.

㉔ 법원 비위에 관한 사항은 사법행정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해야 할 중요한 사법행정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은 법원행정처 AQ에게 이 사건 9개 문건을 보고한 것이 전부였으며, AQ이나 다른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피고인 A에게 법원행정처 내부 상황에 대해 알려주거나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작성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하였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㉕ AQ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근무자였던 BJ, BB, DA, CK, BL는 모두 이 법정에서 'AQ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피고인 A에게 법원 내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니 AH지방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 및 방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을 포함하여 AH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과 상호 의사연락을 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㉖ 피고인 A은 연안TF의 구성원이 아니며, 자신이 보고한 사항을 토대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

㉗ 검사가 피고인 A 작성의 보고서로서 검찰에 대한 비교적 강력한 압박과 수사 적지 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제출한 '(160817) AS 부장 대응 방안[A, CZ]'의 경우, 피고인 A은 보고서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초안만 작성하였는데 나중에 수정되었고, 제4항과 제5항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에는 대등한 항목에서 서로 다른 기호(㉑과 ㉒)를 사용하는 등 동



일인이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AQ이 평소 자주 사용한 '절대절명', '回復不能'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AQ은 이 법정에서 '보고서 중 [4. 대응방안]과 [5. 기타 고려사항] 부분은 제가 작성하였고, 제1항 내지 제3항 부분도 수정을 했을 수 있으며, 완성된 보고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보고서의 초안에 기재한 내용은 객관적인 상황 파악과 향후 사건 전개 전망을 예상한 정도에 불과한 가능성이 크고, 그 보고서에 기재된 검찰에 대한 대응방안 등은 피고인 A이 작성하거나 그 취지를 풍유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AH지방법원 AI 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보일 뿐,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행정처 AQ의 지시를 받고 법관 비리 은폐 축소를 통한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AO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수집한 후 보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 상호간의 공모에 관하여

1)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 및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㉔ 동상 영장이 접수되면 영장 전달 판사인 피고인 B, C와 AJ은 각각 독립적으로 영장재판 기록을 검토하여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B, C와 AJ은 모두 이 법정에서 '영장 전달 판사의 업무처리 방식은 가자 단독판사로서 독자적으로 처리한다. 특정 사건의 영장이 지속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고 중요사건의 경우 결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영장 판사들과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영장 담당 판사가 기록 검토 후 다른 영장 판사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이나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종국 결정에 있어서는 담당 영장판사가 독립하여 결론을 내렸다'라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㉔ AH지방법원의 경우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 규모나 영향력이 큰 사건, 검찰의 인지수사 등 중요 사건에 관한 영장재판이 다수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영장재판은 그 특성상 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밀행적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영장의 발부나 기각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재판의 결과만으로는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중요 사건에 대하여는 영장의 발부나 기각에 따라 언론, 검찰, 정치권 등에서 결론에 대해 평가를 하고 법원을 비난하거나 공격하기도 한다. 영장 판사들이 언론의 오보나 우측성 기사,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영장 판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직접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하여는 AI 부장판사가 AH지방법원 형사부의 책임자로서 영장처리를 둘러싼 검찰, 언론, 정치권 등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반응과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영장전담판사를 보호하고, 외부의 반응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와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중요 사건의 영장처리 결과는 정확히 인지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영장 담당 판사로부터 영장 처리 결과와 해당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까지 보고 받을 필요가 있다.

㉕ 이러한 이유로 AH지방법원 AI 부장판사는 국회, 검찰, 언론 등에 대한 대처 등 사법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통적으로 중요 영장재판에 관하여는 영장 판사로부터 그 처리 결과와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아 왔다. AH지방법원 AI 부장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Q과 CZ도 'AI 부장판사 재직 시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영장처리 내용을



보고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도 2016. 2.경 피고인 B, C 및 AJ 등 영장 전담 판사 3인이 영장재판 업무들 시작한 직후 그들에게 언론에 보도되는 중요한 사건이나 법원, 법관이 관련된 사건의 경우 영장을 처리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㉔ 2016. 4.경 AO 게이트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에서는 사건 당시 재판을 담당한다수의 현직 법관에 대하여 전관예우 관련 부당한 사건처리, 역대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보도하였고, 법원 안팎에서 근거 없는 소문도 난무하였다. 피고인 A은 AI 부장판사로서 비위법관에 대한 사무분담 변경이나 징계, 재판업무배제 등 법관인사, 언론이나 국회에 대한 대응, 사법신뢰회복 방안 마련 등을 위해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4. 말경 AH지방법원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영장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B, C와 AJ 등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AO 게이트 관련 사건은 법원과 다수의 법관이 관련되어 있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나 영장처리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록에 법관에 관한 진술 등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복사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㉕ 피고인 B, C와 AJ 등 영장 전담 판사들은 통상적인 중요사건 보고와 마찬가지로 영장 처리 후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담당한 영장재판 중 법관비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영장 판사들은 각자 처리한 사건을 각자 보고하고, 다른 영장전담판사의 사건 기록을 함께 검토하거나 대신 보고하지 않았다. 영장 판사들은 각자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만 알 뿐 다른 영장 판사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다.

㉖ 피고인 A이 AQ에게 보고한 이 사건 9개의 문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



건 각 문건들의 작성 과정에 영장 판사들이 참여한 사실이 없고, 해당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장 판사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으며, 영장 판사들이 사건 각 문건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C도 '피고인 A로부터 법원행정처의 수사기밀 수집·보고 지사와 관련하여 전달받은 내용이 전혀 없고, 피고인 A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보고할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 상호간의 진술이 일치한다. A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취득한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거나 지시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법원행정처 근무자였던 BJ, BE, DA, CK, BL, AQ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원안 TF의 구성원도 아니고, 법원행정처 내부의 보고서 등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AH지방법원 영장 판사들이 직접 영장제판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없었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위 영장 판사들에게 보고나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등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 등 문건에도 AH지방법원 영장 판사들로부터 수사정보를 취득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와 AJ은 영장 전담 판사로서 통상적인 예에 따라 중요사건에 관하여 AI 부장판사에게 영장처리 결과 등을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 관련 사항을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영장 판사들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9개의 문건을 작성하여 AQ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보고한다는 사정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영장 판사들의 AI 부장판사에 대한 보고와 AI 부장판사의 법원행정처 DB에



대한 보고는 그 목적과 단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직무행위로서 각기 정당성이 있고, 전
원직 법관에 대한 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피고인 A이 영장 전담 판사들에게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고 피고인 B, C와 AJ이 이에 응한 정황은 엿보이지만, 이러한
집단 가지고 피고인들이 한 일련의 행위를 묶어서 피고인들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
한 수사 정보물 외부에 누설할 의도를 공유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이라고 인정
하기 어렵다.

다.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1) 공소사실상 AQ이 법관 가족관계 문건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서 법관 가족에
대한 영장을 엄격히 심사하라는 취지의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영장 판사인
피고인 B, C가 그에 따라 영장을 기각하기도 한 점이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정황 중
주요한 부분으로 거시되어 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본다.

2)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 AQ이 2016. 6. 22.경 AO 케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되는 AS, AT 등 원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그들의 배우자, 전
배우자, 자녀, 부모 등 31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법관 가족관계 문건(이하 '가
족관계 문건'이라고 한다)을 법원행정처 CJ감사관 CK에게 작성하게 한 다음 이메일로
피고인 A에게 보낸 사실, ㉡ 피고인 A은 2016. 6. 23. 10:47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같은 날 17:54경 피고인 C에게 가족관계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한 사실, ㉢ 피고인
B이 2016. 8. 10. BR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임장을 발부하면서 부장판사였던 AS과 AS의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계좌영장의 연결계좌 부분을 삭제하고, 거래기간을 제한
한 사실, BR에 대한 등신영장을 발부하면서 AS의 자녀에 대한 청구 부분을 기각한 사
실, 피고인 C가 2016. 8. 18. AS의 동선 확인을 위해 청구한 AS과 AS 가족에 대한 신



용카드거래내역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3) 피고인 A과 AQ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가족관계 문건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향후 AO 게이트 사건에서 판사 가족들에 대한 계좌영장이 청구될 경우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취지에서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 C 역시 같은 취지로 가족 관계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영장 판사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B, C도 '해당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인지 몰랐다. 가족관계 문건 수령 후 법원행정처와 연락하거나 BH실과 접촉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는 AS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을 일부 기각한 점과 관련하여, '2016. 8. 10.과 같은 달 18. 청구된 영장에서 AS은 피의자가 아니었고, BR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단계였다. 압수수색영장 실무에 따라 법원은 압수수색의 필요성, 상당성 소명 정도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특히 제3자에 대한 영장이나 연결계좌, 포괄계좌에 대한 영장의 경우 그 관련성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그러한 원칙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와 제한사항을 정한 것이다. 같은 원칙은 AO 게이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특히 AS 가족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하면서 거래기간을 2014. 6. 1.부터로 제한한 것은 AS의 자녀 계좌에 수표가 입금된 시점이 2014. 7. 16.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검찰이 AS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고 관련 영장을 다시 청구했을 때에는 그 영장을 발부해주었다. 모두 영장 처리 원칙과 실무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라고 진술한다.

4) 위 가족관계 문건과 해당 이메일을 보면, 피고인 A은 가족관계 문건이 포함된



이메일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이메일의 제목을 '메모'라고 기재하고, AQ에게 받은 메일을 그대로 전달(포워딩, forwarding)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별도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하였고, 가족관계 문건 제1면에는 법원행정처 문건에 병상적으로 기재되는 작성부서의 기재가 없고, 제2면 하단의 꼬리말 부분에 본문보다 작은 글씨체로 'BH심'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AH지방법원의 영장처리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법원가족 관련 문건을 전달받은 시점 전후하여 2016. 6. 23.경부터 AS에 대한 영장이 최초로 청구된 2016. 8. 10. 사이에 AH지방법원에 법관 및 법관 가족과 관련한 영장이 청구된 적이 없다.

5)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법원행정처에서 AH지방법원 영장 전달 판사인 피고인 B, C에게 가족관계 문건에 기재된 법관 및 법관 가족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엄격히 심사하여 기각하라는 취지의 이른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하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장 판사들은 가족관계 문건이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B, C가 진술하는 영장재판 처리방식은 실무상의 원칙과 관행에 부합하고, 실제로 그 영장처리 절차나 결정 내용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족관계 문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 C가 담당하는 영장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위협이 초래되거나 처리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바. 소결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의 의사로 영장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수사기록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병행을 실행에



습기기로 상호간에 모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공무상비밀누설 여부

가. 피고인 B, C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무상비밀누설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사전에 공모한 점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B와 C가 피고인 A에게 한 보고가 직무상의 행위로서 정당성을 갖는 이상 피고인 B, C의 행위는 나머지 범칙 성립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나. 피고인 A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사전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들 상호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문건을 AQ에게 보고한 행위가 별도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펴기로 한다.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죄체와 보호법의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재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



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의수사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중독적인 결정은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다만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본래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업수의무의 침체에 의하여 위협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어떠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그 내용이 알려짐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이상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이 AQ에게 보고한 수사기목상의 정보

가) 앞의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영장판사들로부터 취득하여 AQ에게 보고한 수사기목상의 정보(이하 모두 함께 호칭할 때는 '이 사건 수사정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다.

① 2016. 5. 3. 공소사실 제(1)항의 'AZ BA 사건과 관련하여 AP 변호사가 황소부 배당 전에 보석으로 매달 수 있는 재판부로 2부 등을 언급하였고, 2부로 매달되자 받기면서, 보석 확답도 받았으며 보석청구서 접수 당일 담당 재판부와 식사한다고 말



하였다고 한다. AO AH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AP 변호사가 자신은 작업할 줄 아는 변호사라면서 50억 원을 요구하였고, 해당 담당 직원에게 작업하여 원하는 재판부로 배당한 다음 인사원자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하겠다고거나, 관련 부장판사나 주심 판사도 잘 알고 지내면서 자주 식사하는 사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한다'는 취지의 정보

② 2016. 5. 17. 공소사실 제(4)항 가운데 '수사기록에는 AP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BQ 부장과의 문자메시지만 첨부되어 있다. AO 구명로비리스트에 기재된 사람들의 통화내역 제공요청 히가서가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

③ 2016. 5. 18. 공소사실 제(5)항 가운데 'AP 변호사의 남편은 AP 변호사의 부탁으로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다액의 현금, 수표, 3만 달러, 메모지, USB(9개)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정보 부분

④ 2016. 8. 23. 공소사실 제(8)항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관련자는 차량대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2억 원을 AS 부장판사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재 혐의 내용은 합계 2억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인데 계좌추적 결과 현금 2억 5,400만 원이 AS 부장 측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AO 측의 입찰보증금 반환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AO 측 담당자는 AO로부터 담당 재판부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골프 접대를 했다는 말을 수회 들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정보

나) 위와 같이 영장심사를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상의 정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 내부 및 그 영장 업무를 처리하는 법원 내부에서 담당 판사와 이분 조력하는 필수 인력 사이에서만 공유되고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의 비밀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다만 이처럼 수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라고 해



서 모두 공부상비밀누설죄의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비밀누설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관련 증거와 피고인들 및 해당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아볼 수 있다.

① 법원행정처는 법원조직법상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고,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법원장을 보좌하여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한다. AQ은 당시 법원행정처 DB으로서 처장을 보좌하여 인사, 윤리감사 등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A은 AH지법원 AI 부장판사로서 법원장을 보좌하여 법원에 접수되는 형사부 사건 배당 업무, 형사재판부 사무분담, 재판에 관한 각종 지원업무, 각종 제도개선업무, 언론보도 관련 업무, 국정 감사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답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② AO 게이트 사건이 2016. 4.경 발생하자 AH지방법원 소속 법관을 포함한 다수 현직 법관에 대해 각종 비리의혹 관련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AO 게이트 사건과 같이 전관 변호사 또는 비위 법관으로 인해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는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불의의 일으킨 법관에 대한 징계나 사무분담 변경 등 인사조치를 하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들 하며,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거나 추락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관의 비위에 관한 감독,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DB은 해당 비위 법



판에 대해 직부 배제 등 법원 비위의 내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관의 비위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일선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에 기하여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③ 실제로 법원행정처장은 AO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의 올바른 처신을 당부하는 내용의 메일 등을 법원 내부에 전달하였고, 법원행정처는 2016. 6. 16. 법관윤리 확립, 전관예우 방지 등 제도개선책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2016. 8. 16.에는 AS 부장판사에 대한 휴직인사발령을 내려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 원안질의(2016. 4. 28., 2016. 6. 30.), 대법원의 국정감사(16. 9. 26.) 등에 대비하여 AO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예상 질의·답변 자료를 준비하였고, 국회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였는데, 이와 같은 대응과 제도개선책 마련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권을 고려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는 대국민, 대국회, 대검찰, 대언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세적으로 답변준비를 하기도 하였지만, 일선 법원에 요청하여 필요한 자료를 받거나 일선 법원이 자체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답변준비를 하였고, 피고인 A도 사법행정담당자로서 이 사건 각 문건의 전달과 같은 형태로 AO 게이트 사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보고를 했다.

④ 법원조직법⁵⁴과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보고에 관한 예규⁵⁵, 감사업무 관련사

5. 제9조(사법행정사무)

-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제 공무원은 지휘·감독한다.
-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고등법원장)

- ④ 고등법원장이 귀퇴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전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9조(지방법원장)

-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법, 시·군법원 및 동가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은 지휘·감독한다.
- ④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 신속보고지침⁶⁾,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⁸⁾, 기관장 직무편람⁹⁾, 사법부 홍보 위기 관리 매뉴얼¹⁰⁾ 등 각종 법원 예규와 지침은 법관 비위와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상급 사법행정기관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법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사법행정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중요 사건에 관하여 원래의 위임자인 대법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정보를 법원행정처 DB에게 보고하였을 뿐 수사대상자나 수사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DB는 사법행정 담당자로서 직무에 기하여 법관 비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외부 유출의 위험성이 없는 사법부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동상적인 사법행정상의 보고라인에 따라 AQ에게 보고물 하였을 뿐 법원행정처로부터 특별한 지시나 요청을 받고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보고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⑥ A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보고물 받은 내용은 법원행정처 내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BK심의관 BL와 법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CJ감사관 CK에게 전달한 것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전달한 사실이 없고, 전달을 하면서

6)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처리되어 종국된 경우 그 사건의 요지 등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요한 경우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모사전송으로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7) 법관, 법원공무원의 관하여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수사 기서문 사본, 송대관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법원행정처 CJ감사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법원의 위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 제공시 법원행정처 홍보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법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경우 수석부장판사의 지휘를 받은 홍보관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법관 비위관련사항 보고 필요 요청으로 각급 법원에서는 언론보도, 수사기관의 정보 기타 방법으로 법원의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나 법원에 대해 주의요구 이상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법원행정처 CJ감사관에게 권위를 통해 비위사실의 요지 및 시인의 경과 등을 알려 주시고 그 후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업무신속보고시스템 및 팩스를 통하여 관련 차도문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요사건의 보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법원 중요사건 담당자에 대한 업무지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다.

10) 사법부 심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급 주, 구법원의 파실 또는 비위에 대해서는 소속 법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해당 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며, 보안에 주의하라고 당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L도 이 법정에서 'AQ이 극비로 해야 한다면서 자료를 주었고, 해당 내용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㉗ 수사정보가 공무상의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로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머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AQ에게 보고한 이 사건 수사정보가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거나 그러한 위험을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는 부분과 다소 관련지을 수 있는 사실로 CK CJ감사관이 2016. 8. 10.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원직 부장판사 AS을 상대로 정체를 위한 대면조사를 하였는데, AS이 조사를 받고 가서 같은 날 오후 뇌물을 전달한 BR를 만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¹¹⁾. 그러나 이에 관하여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의 근거로 제시한 공소사실 제(7)항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를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자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만약 CK가 2016. 8. 9.자 수사보고서를 읽고 이를 참고하여 질문지를 만들었다면, AS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질문지를 작성한 시각이 2016. 8. 10. 10:10이고 대면조사를 시작한 시각이 10:40인데 위 수사보고서가 첨부된 영장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시각

11) 2019. 7. 12.자 공소장변경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의 공소사실에는 'AQ가 피고인 A로부터 이 자료물을 송부받아 BX, DD에게 보고하는 한편 CK CJ감사관에게 전달하였고, CJ감사관이 이를 토대로 수사대상자인 법관과 브로커 등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위와 같은 수사기밀이 누설되도록 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는 2016. 8. 10. 번거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은 같은 날 10:38이기 때문에 더더욱 피고인 A이 위 수사보고서를 영장기록으로부터 입수하여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이다).

⑨ AO 게이트 당시 전현직 법조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 혐의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그러한 언론 기사 중에는 실제로 AH지방검찰청 수사담당자인 DE부장검사나 차장 검사 또는 대검찰청 관계자가 언론에 정식 브리핑을 하거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 A이 AQ에게 보고한 이 사건 수사정보 중 2016. 5. 3. 공소사실 제(1)항의 수사정보는 2016. 4. 29.자 DF언론 기사와 DG언론에 AZ의 접견 녹취록과 AO의 진정서 내용이 보도되었고, 2016. 5. 18. 공소사실 제(5)항의 압수수색 과정에 관한 내용은 2016.5. 19.자 DG언론과 DH언론에 각 보도되는 등 그 무렵 이미 보도되었거나 수일 내에 보도될 예정이었던 수많은 언론기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

⑩ 법원과 검찰은 AO 게이트 당시 다소의 긴장과 갈등 관계가 있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법행정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는 관계에 있었고, 실제로 비위 혐의를 받는 법관의 징계와 직무 배제 등의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빈번히 소통하곤 하였다. 대검 차장검사가 AQ 법원법원행정처 DB에게, AH지방검찰청 CF검사가 피고인 A에게, DI DE부장이 CK CJ감사관에게 혐의사실과 수사의 진행과정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수사를 직접 맡은 DI DE부장은 CK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수사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알려주었다. CK는 2016. 5. 2.경부터 2016. 9. 19.경까지 DI과 사이에 40회 이상 통화하여 검찰의 AO 게이트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예정사실을 비롯하여 법관 비위와 관련한 다수의 수사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사실을 AQ에게 보고했다. CK는 'DI 부장 통화내용' 등의 제목으로 DI과의 통화내역을 35차



례에 걸쳐 메모나 보고서 형식으로 상세히 기재해 두었다. 예를 들면, CK가 2016. 8. 9. 19:20 - 19:40 및 8. 10. 08:50 - 09:00 DI과 2차례 통화한 후 작성한 메모에는 'AO 발행 자기앞 수표 추적 결과(100만 원권 10장이 AS에게 입금 : 1장 본인 배서, 8장 딸 명의 계좌 입금, 1장 배석판사 계좌 입금), 레인지로버 관련 비용 AO 대납, 베트남 마카오 여행 경비 AO 부담, AO가 BR에게 AS 사해 명목 현금 1억 전달(관련자 진술 확보), AO와 AS 사이 70여회 통화한 내역 있음, 오는 BR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혐의 관련 계좌추적영장 신청 예정' 등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자의 진술, 영장 청구 예정 등 수사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이는 CK가 2016. 8. 10. AS을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그날 10:10경 작성한 질문지의 내용 및 구성순서와 거의 유사하다. 그 밖에도 CK가 DI과 통화한 후 그 결과록 기재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AQ에게 보고한 이 사건 수사정보와 겹치거나 유사한 부분도 많고, 그보다 더 상세하게 혐의입증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향후 수사계획 등을 알려주는 부분도 있다. 피고인 A의 보고와 DI의 수사상황 브리핑이 양자의 구체적인 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수사정보의 가치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영장 판사들로부터 이 사건 수사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재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법행정상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법관의 비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는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의 DB만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거나 비위법관의 징계나 인사조치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에 협조하여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한 정황상 이 사건 수사정보가 AQ



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하여 비밀로써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
 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 기능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제반 경위문 고려해 볼 때
 AQ을 통하여 법원행정처 내부에 알려짐으로써 위와 같은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 결
 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정보는 모두 실질
 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법행정상의 필요와 사
 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의 보고로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해당할 뿐 피고인 A이 이를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반으로는 피고인 A이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취득한 공
 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III.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
 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_____

 판사 신동주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판 사이트에서 검색·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할 수 없습니다. 게시일자 : 2020-02-13

판사 배인영 _____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노531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1. A 2. B 3. C
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신봉수(기소), 단성한, 조정호, 고영하, 신비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L 담당변호사 M(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Q 담당변호사 R, U(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V(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Z, AA, AB, AC(피고인 C를 위하여) 법무법인 AD 담당변호사 AE(피고인 C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합18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29.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가. 사실오인

- 1) 피고인들은 영장재판에서 취득한 수사정보를 AQ에게 전송하였음 [공소사실 (1)~(6), (8)~(10)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하여 AQ에게 파일 형태로 전송하여 보고한 9개의 문건(공소사실의 번호대로 7번을 제외하고 '1번 문건'부터 '10번 문건'까지로 약칭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문건'이라 한다)에 기재된 수사정보는 피고인 B, C 등 영장전담판사들이 담당한 영장재판에 제출된 수사기록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다른 경로를 통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위 수사정보를 언론보도나 영장공람결재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취득하였을 수도 있다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2, 3, 6, 9, 10번 문건에 기재된 수사정보 전부와 1, 4, 5, 8번 문건에 기재된 수사정보의 일부를 해당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2016. 8. 9.자 수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수사보고서'라 한다)의 사본을 AQ에 전달하였음 [공소사실 (7)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법원행정처 BH(이하 'BH'이라 한다)의 원심 진술, BH실 소속 심의관들의 이메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심사한 피고인 B으로부터 영장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사본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AQ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AQ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의 수사를 지지하고 영장재판에 개입하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일부를 시행하였음

법원행정처는 현직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 실국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AO 게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였고, 언론을 이용하여 검찰을 압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시달하는 등으로 관련 재판에 개입하였으며, 검찰총장을 직접 압박하는 방안도 계획하였다. 이처럼 법원행정처는 법관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일부를 실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4) 피고인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공모관계도 인정됨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AQ이 자신에게 수사정보를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AQ으로부터 수사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피고인 A은 AO 게이트 사건의 첫 영장이 접수되기 전부터 영장전담판사들에게 기록을 꼼꼼히 보고 법관의 비위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 등 영장전담판사들은 피고인 A에게 영장재판 기록에 포함된 수사정보를 보고하며 이례적으로 영장재판 기록의 일부를 복사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 등 영장전담판사들은 같은 AH지방법원 소속이 아닌 DJ지방법원 소속 AS 부장판사에 관한 수사정보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점에서 법관 비위



관련 수사정보의 최종 수요자가 법원행정처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은 영장재판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정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보고할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등으로 다른 영장전담판사가 보고한 내용에 관해서도 누설행위를 서로 공모하고 그 실행을 분담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들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고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공모하여 영장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와 영장기록의 일부인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의 고의 및 공모관계들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령위반

1) 이 사건 각 문건과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수사정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

이 사건 각 문건과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의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등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에 관한 것이거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관한 수사기관의 의견으로서, 이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AQ에게 보고한 내용 중의 일부가 이미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거나 보도될 예정이었고 검찰 관계자가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내용과 수사정보의 가치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경로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범위는 수사기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비해 질적, 양적으로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심이 실시한 사정은 이 사건 각 문건과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공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문건에 포함된 수사정보와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누설행위에 해당함

피고인들이 법원행정처에 영장기록에 포함된 상세한 수사정보를 보고하고 영장기록의 일부인 이 사건 수사보고서를 복사하여 그대로 전달한 것은 사법행정 차원의 보고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고 대법원 예규 등의 내부 규정에도 어긋나므로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누설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누설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들의 위 전달행위로 인하여 국가기능의 장애가 초래되는 위험이 발생하였음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국가 기능의 침해라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행위자가 위와 같은 결과를 인식하거나 의욕할 것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로 인하여 국가의 범죄수사 기능이나 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추상적 위험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수사의 경위 및 공소사실의 구조

1) 검사는 압수된 AQ의 USB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하드디스크에서 AO 게이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하여 AQ에게 전송한 문서 파일 9개(이 사



건 각 문건)를 발견하였고, 압수된 법원행정처 BH실 심의관 이메일에서 AO 게이트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던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일부가 촬영된 파일과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14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한 문서 파일을 발견하였다.

2) 검사는,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이 해당 문건 작성일 바로 직전에 청구된 AO 게이트 사건의 영장재판을 담당하였던 AH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영장기록을 검토하며 알게 된 내용을 AH지방법원 AI부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았고, 이 사건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B이 B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본을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법원행정처 AQ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전달 경위 및 목적에 관하여 검사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AO 게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현직 법관으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고 법관 비리를 은폐·축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및 영장전담판사들로 하여금 수사상황 및 방향을 보고하게 한 것으로 단정하였다.

3) 검사는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 중 '피고인 A이 AQ에게 이 사건 각 문건을 전송하고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사본을 전달한 행위'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정해진 누설행위로 구성하면서, 이 사건 각 문건에 포함된 수사정보와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을 전달한 해당 영장전담판사를 피고인 A의 누설행위의 공범으로 의율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관 비리 은폐·축소 및 검찰 수사 저지 목적을 AQ, 피고인 A과 공유한 영장전담판사들 전원이 각자 자신이 담당한 영장재판에서 수사정보를 수집하기로 역할을 나눈 것이라는 전제에서, 해당 문건 또는 수사보고서에 대응하는 영장재판을 담당하지 않은 영장전담판사들까지도 모두 전체 누설행위의 공범으로 구성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문건에 포함된 수사정보가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해당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취득한 정보인지 여부¹⁾

가) 1, 4, 5, 8번 문건

원심은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공무상 비밀이 이 사건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 전부가 아니라 '공소사실에서 수사기밀로 특정된 정보'에 한정된다는 전제에서, 1번과 8번 문건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정보 전부가, 4번과 5번 문건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정보 중 일부가, 각 해당 문건이 AQ에게 보고되기 바로 전날 또는 그 전날(5번 문건은 2016. 5. 19.에 보고되었다)에 검찰이 AH지방법원에 AO 게이트 사건의 영장을 청구하며 제출한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고, 해당 영장심사를 담당한 피고인 B(4번과 5번 문건), 피고인 C(1번 문건) 및 AJ 판사(8번 문건)가 영장처리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면서 그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한편,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4번과 5번 문건의 나머지 부분, 즉 4번 문건의 'AX 변호사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부분과 5번 문건의 'AP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하였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 A이 영장공람결제를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이 해당 영장전담판사(피고인 B)로부터 취득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피고인 B이 보고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4번과 5번 문건 부분의 내용은 해당 영장의 처리 결과 그 자체로, 만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해당 영장 처리 후 결과를 보고하였다면 당연히 보고하였을 내용이다. 따라서 그 문건들의 '□ 기록상' 부

1) 검사는 원심에서 제출한 2020. 1. 15.자 의견서에서 이 사건 각 문건의 내용 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특정하였는데, 이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분을 피고인 B이 보고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영장의 처리 결과인 'AX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하고 AP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였다'는 내용은 보고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공소사실에서 특정되지 않은 내용 중 1번 문건의 '● 법원 관련 사항'과 '● 검찰 관련 사항' 부분, 8번 문건 중 '가. 특가법(뇌물수수) 인지' 부분은 각 문건 작성 전날 법원에 제출된 영장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거나 영장기록을 열람한 의견을 기재한 것이고, 해당 영장전담판사가 그 영장기록에 포함된 다른 내용(원심이 인정한 사항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도 해당 영장전담판사가 함께 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와 달리 1번 문건 중 '● AP, AX의 1년간 통화사실확인영장 발부로~' 부분, 4번 문건 중 '□ 5. 16. AX변호사, AO 관련 계좌추적 영장 등 발부'의 하위 내용 부분은 피고인 A이 영장전담판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영장공람결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처리 결과를 보고하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나 영장 발부 대상기간까지 반드시 보고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영장전담판사가 이들 내용까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원심이 영장전담판사가 보고하였다고 인정한 내용 외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번 문건의 '● 법원 관련 사항'과 '● 검찰 관련 사항' 부분, 4번 문건의 'AX변호사, AO 관련 계좌추적 영장 등 발부' 부분(하위 내용 제외), 5번 문건의 '□ AP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결정(5. 17.자)' 부분, 8번 문건의 '가. 특가법(뇌물수수) 인지' 부분도 해당 영장전담판사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으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이 AQ에게 보고하였다고 인정되는 영장기록의 정보가 원심보다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AQ에게 한 보고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뒤의 법령위



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2번 문건

이 문건의 내용 중 '● 체포영장 집행과정'과 '●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중임', '● AP변호사, AY사무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 부분은 AJ이 AP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발생한 사실과 그 체포영장의 집행으로 AP의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의 검찰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AJ이 그 체포영장 기록을 검토할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 현재 남편과는~' 부분은 체포영장 기록에서 발견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 내용에 비추어 오히려 피고인 A이 AH지방검찰청 CE검사 등 검찰 수사관계자나 다른 제3자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건의 '● 수임 관련 사건' 부분의 경우, AJ에게 제출된 체포영장 기록에는 장세주에 대한 접견 횟수나 AP이 CD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이는 피고인 A이 AJ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가 아니라 검찰 수사관계자로부터 들은 정보에다가 법원 내 사건검색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사건번호와 선고 일시를 추가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번 문건의 내용 중에는 피고인 A이 AJ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다) 3번 문건

원심은 ① 이 문건이 AQ의 저장매체에 2016. 5. 12. 14:25경 저장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늦어도 2016. 5. 12. 14:00 무렵에는 AQ에게 이를 전송하였을 것인데, 피고인 B은 2016. 5. 11. 몸이 좋지 않아 AP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퇴근하여 그 기록을 파악할 기회가 없었고, 2016. 5. 12.에도 처리할 다른 중요한 영장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전 심문을 포기한 AP에 대한 구속영장을 우선 검토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J이 2016. 5. 16.(월요일) 12:26경 피고인 B에게 '부장님, 수석부장님께서서 지난 금요일 AP 사건 보고 바라고 계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은 2016. 5. 16.까지도 2016. 5. 12.에 발부한 AP에 대한 구속영장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3번 문건의 '3. AP변호사의 검찰 진술' 중 AP의 복비권 행사 관련 부분은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문건의 내용상 피고인 A이 사건검색시스템, 판결문 검색시스템, 영장 접수보고나 종국보고 또는 영장공람결재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3번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실시한 위와 같은 논거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3번 문건에 기재된 정보가 피고인 B이 영장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득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는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



나는 등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 B은 2016. 5. 11. 일찍 퇴근하였다는 증거로 2016. 5. 11. 20:39경 자신의 주거지 인근 즉 전문점에서 결제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비록 위 신용카드는 피고인 B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주로 소지하며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B이 2016. 5. 11. 복통 등으로 오전에 반일 연가를 내고 병원 진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위 결제 내역은 피고인 B의 배우자가 피고인 B이 저녁 식사로 먹을 죽을 구입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용카드 사용시각, AH지방법원에서 서울 양천구 DK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까지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 19:05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구속영장 기록이 전산입력 등을 거쳐 영장전담판사에게 인계되는 데에 필요한 시간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영장이 청구된 당일인 2016. 5. 11.에 는 그 기록을 보지 못한 채 퇴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3번 문건의 '1. 개요' 부분은 2016. 5. 11. 청구된 AP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관련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재판 경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 A이 영장공람결제와 사건검색시스템, 판결문검색시스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③ '2. 법원 관련 사항'의 내용 중 검사가 그 출처가 2016. 5. 11.자 수사보고(피의자 AP 구속 필요 보고)라고 지목하는 부분은 해당 내용이 2016. 5. 9. 이전에 영장기록에 편철되어 법원에 제출된 적이 있는 수사서류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2016. 5. 11.자 수사보고는 2016. 5. 9.에 이미 영장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던 2016. 5. 9.자 수사보고(피의자 AP에 대한 체포영장청구 및 실시간 위치추적 등 필요보고)(증거기록 32권 182,574쪽)의 내용을 상당 부분 그대로 반복한 것인데, 검사가 출처로 지목하는



2016. 5. 11.자 수사보고의 내용들은 2016. 5. 9.자 수사보고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그 일부는 2016. 5. 1.자 AO 진술조서 등 2016. 5. 1. - 2016. 5. 4.에 작성된 여러 진술조서에도 들어 있으며, 2016. 5. 9.자 수사보고나 2016. 5. 11.자 수사보고에 없는 내용들은 2016. 5. 2.자 AZ 진술조서(2회)와 2016. 5. 2.자 DL 진술조서(2회)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모두 2016. 5. 11. 전에 이미 법원에 제출된 적이 있는 자료들이다. 그리고 '6. 기타' 부분의 출처로 보이는 2016. 4. 30.자 수사보고(AX 변호인 접견 현황 및 일반접견부상 의혹내역 정리)(증거기록 3권 39,647쪽) 역시 AO 게이트 사건의 최초 영장이 청구된 2016. 5. 2. 전부터 영장기록에 편철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2. 법원 관련 사항' 중 일부 내용과 '6. 기타' 부분의 출처가 그 내용이나 선택된 단어, 문장 형식과 어순 등에 비추어 영장기록에 편철된 수사자료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6. 5. 11. 청구된 영장기록을 검토한 피고인 B이 아니라 2016. 5. 2. 청구된 영장기록을 검토한 피고인 C나 2016. 5. 9. 청구된 영장기록을 검토한 AJ이 피고인 A에게 보고한 내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은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번 문건의 내용을 AJ이 보고하였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데, 피고인 A이 2016. 5. 9. 청구된 영장의 처리 결과를 AJ으로부터 보고받고도 2번 문건을 작성하며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이 실시한 바와 같이 AJ의 2016. 5. 16.자 문자메시지에 의하여 피고인 B이 2016. 5. 11.에 청구된 영장의 처리 결과를 2016. 5. 16. 오전까지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인정되는 이상, 영장기록이 출처일 것으로 보이는 3번 문건의 일부 내용들의 보고자가 피고인 B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그 보고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출처가 영장기록이라고 인정되는 문건의 내용들은, 보고자가 특정되는 1, 4, 5, 8번 문건의 내용과 함께, 공무상비밀누설



죄 성립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지만, 뒤의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내용까지 포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3번 문건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4. AP변호사 체포 과정' 부분은 2번 문건에 이미 언급되어 있던 내용인데다가, AJ의 2016. 5. 16.자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검찰 수사관계자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6번 문건

원심은 ① 이 문건 중 AP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 검사가 그 출처로 지목한 AP에 대한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영장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 그 조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위 조서가 영장기록에 포함될 수 없고, 문장의 전체적인 표현 형식이 '~했다고 함'과 같이 제3자로부터 청취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점을 들어, ② 위 문건의 나머지 내용(기소 예정일, '언론의 현직 상대 수사 요구가 강함', '수사종결하기 어려운 현실', '현직 상대로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법관을 조사하는 경우 사전에 방법, 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임' 등)은 영장전담판사가 영장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 A이 6번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마) 9번 문건

원심이 실시한 바와 같이, 9번 문건은 피고인 A이 AQ에게만 전송한 다른 8개의 문건과 달리, AQ 외에도 CQ실장, 법원행정처 BK실장과 BH를 수신자로 하여 보낸 '일자별로 정리한 것인데 업무에 참고하십시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로, '요약'이라는 제목 하에 2012년 5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AO 게이트 사건의 진행 경과가 연도별로 나누어 날짜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9번 문건은 BH실 심의관의 2016. 8. 15.자 이메일에서 발견된 PDF 문서(증거기록 14권 65,742쪽)와 편집 양식 및 다수의 내용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AO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전담판사, 영장공람결재, 검찰 수사관계자, 언론기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문서 파일을 2016. 8. 15. 이전에 이미 작성해 놓은 상태에서, 새롭게 취득한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9번 문건을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9번 문건의 내용 중 위 2016. 8. 15.자 PDF 파일에도 기재되어 있는 부분(2014. 7. 16.자, 2015. 2. 6.자, 2015. 4. 28.자, 2015. 4. 29.자 내용 등)은 피고인 A이 2016. 9. 1. 청구된 영장의 처리 결과를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으면서 비로소 취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2015. 2. 17.자, 2015. 10. 27.자, 2016. 6. 5.자, 2016. 6. 23.자 내용과 문건 말미의 통화내역 부분 등은 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출처가 되는 수사정보가 2016. 8. 22.자 영장청구 기록이나 그 전의 영장청구 기록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²⁾ 피고인 A이 이미 AJ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

9번 문건 중 2014. 8. 8.자 내용('CT의 처가 AO 측 1,000만 원 수표 지급제시')은

2) 검사가 2015. 10. 27.자 내용의 출처라고 주장하는 DM에 대한 3회 진술조서의 작성일은 2016. 8. 17.이다.



검찰이 수표 발행인 DN을 2016. 8. 25.에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위 수표가 DN이 채무 변제조로 AO에게 교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청취함으로써 비로소 파악하게 된 정보인데, ① 그 때부터 AS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16. 9. 1.까지 사이에 검찰이 AS에 관한 다른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② AS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것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영장처리 결과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이 이 정보를 구속영장을 처리한 피고인 C로부터 보고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9번 문건은 영장전담판사의 보고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평소 AO 게이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고 있던 것을 AQ과 CQ실장 등에게 사건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차원에서 전송한 것이어서, 전송 직전에 법원에 제출된 영장기록이 그 출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관계자로부터 AS의 딸 명의 계좌에 입금된 AO 발행 수표 내역을 포함하여 AS이 AO로부터 받은 금전의 구체적인 내역 등의 수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1권 11,587쪽 등), AS이 AO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는 정보 또한 검찰 수사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가 9번 문건의 2014. 8. 8.자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9번 문건에는, AS에 대한 구속영장 기록을 검토한 피고인 C가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아도 그 내용이나 선택된 단어, 문장 형식과 어순 등에 비추어 그 이전에 청구된 영장기록을 검토한 영장전담판사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예를 들어, 2016. 6. 5.자 내용과 문건 말미의 통화내역 부분은 2016. 6. 5.자 수사보고(주요인물간 통화내역 정리 보고)에 기재된 표(증거기록 33권 182,937쪽)를 직접 보지 않고 검찰 수사관계자의 말만 듣고서는 도저히 작성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AQ에 대한 보고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고한 영장전담판사가 누구인지가 특정되는 수사정보뿐 아니라, 보고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영장기록에서 전달된 것임이 분명한 위와 같은 수사정보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지만, 뒤의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실시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수사정보를 포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9번 문건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10번 문건

원심은 이 문건이, 피고인 A이 영장 접수보고 및 종국보고, 영장공람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8번 문건과 9번 문건에 이미 기재된 내용, 피고인 A이 검찰 수사관계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할 때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라고 함'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 A이 2016. 9. 8.자 AS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처리한 피고인 C로부터 취득한 수사정보를 위 문건에 기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을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AQ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2016. 8. 10. 청구된 B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처리하면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153쪽 분량의 2016. 8. 9.자 수사보고서(이 사건 수사보고서)를 복사하여 피고인 A에게 그 사본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AQ에게 송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사보고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이를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①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AQ이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사본을 어디에선가 구해 BH에게 건네준 사실, ② 그 후 BZ심의관이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 중 한 페이지(114쪽)를 PDF 파일로 만들어 2016. 8. 10. 17:23경 BH과 CB심의관에게 업무용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증거기록 19권 79,269쪽), ③ CB심의관이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의 내용을 요약하여 14쪽 분량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2016. 8. 10. 23:01경 이를 업무용 이메일로 BH과 BZ심의관에게 전송한 사실(증거기록 15권 67,768쪽)이 인정될 뿐이다.

나)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검찰에서 'AH지방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사본이 전달되었다면 제가 승인을 해서 보냈을 것이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을 법원행정처에 보낸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AH지방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그 사본이 전달된 것이 사실일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② BH이 검찰에서 'AQ이 저에게 (어디서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을 구했는지) 따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지만, 영장이 청구된 당일 수사보고서를 입수하여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AH지방법원의 AI부장인 피고



인 A 또는 영장재판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B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그 진술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BH의 의견을 밝힌 것뿐인 점, ③ AQ은 2015년 CM 판사 비위 사건에서도 검찰로부터 법관 비위에 관한 문건을 직접 전달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AQ이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을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적절하게 실시한 위와 같은 근거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사보고서를 복사하여 그 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다시 AQ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검사는 2016. 8. 9. 작성된 이 사건 수사보고서가 2016. 8. 10. 10:28경 AH지방법원에 접수된 B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기록에 편철되어 있었고 그 영장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피고인 B이라는 점 외에는 다른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 B을 사본의 작성자로 지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AH지방법원 내에서도 피고인 B이 영장기록을 접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6년 5월부터 AO 게이트 사건의 영장을 처리해 온 피고인 B으로서 그 제목[수사보고(피의자 BR에 대한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필요 보고)]을 통해 주요 수사 결과가 요약되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수사보고서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굳이 직접 상당한 분량의 이 사건 수사보고서 전부를 복사하여 전달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첫 전제부터 인정되지 않는다.

② 검사의 주장대로, CM 판사 비위 사건에서 대검찰청 DO부장이 AQ에게 전달한 문서(증거기록 2권 22,218쪽)는 수사기록 자체가 아니라 비위의 요지를 2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한 문서로, 수사기록 자체인 이 사건 수사보고서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사건 수사보고서가 검찰 관계자로부터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원심이 실시한 바와 같이 BH은 AO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AH지방검찰청 DE부장(이하 'DE부장'이라 한다)과 40회 이상 통화하며 그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았고, 2016. 8. 10. 전후로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에는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중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AH지방검찰청 CE검사는 BR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예정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사전에 유선으로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BR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참여 검사가 법정에서 제출한 의견서(공판기록 증가1권 606쪽, 법정에서 구술로 변론한 내용이 기재된 14 페이지 분량의 문서이다)를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법원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법원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온 위와 같이 사실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사보고서가 검찰 관계자로부터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③ 법원행정처 BZ심의관은 이 사건 수사보고서가 전달된 날인 2016. 8. 10. 18:42경 'AS 부장판사 관련 사건 개요'라는 제목의 한 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취득한 다음 BH실 내부 문서 공유 방식에 따라 이를 PDF 파일로 생성하여 BH과 CB심의관에 게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19권 79,274쪽), 검사는 이 문서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



사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A이 그 문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사실이 그가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을 AQ에게 전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항소이유서 26, 27쪽). 그런데 위 문서의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아도 거기에는 'AS이 AO의 차량을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차량이 저가로 매매되고 취득세와 보험료를 AO가 대납하였다는 의혹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무상 인수 의혹, 즉 AS이 차량 매매대금을 AO에게 계좌로 송금한 후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차량 매매대금 반환 의혹은 이 사건 수사보고서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고,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 문서가 이 사건 수사보고서를 요약하여 정리한 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위 문서가 BH실 심의관의 이메일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수사보고서를 AQ에게 전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이 되지 아니한다.

④ 2017년도 AH지방법원 형사공보관은 BX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로부터 DP, DQ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받아 법원행정처 기조실에 전달해 준 사실이 있다. 이미 업무 루트가 되어 있어서 제가 기조실에 연락할 필요 없이 기조실에서 실무관 같은 분이 와서 가지고 갔다.'라고 증언하였는데(증거순번 1,672), 검사는 이 증언을 근거로, AH지방법원에서 법원행정처로 수사자료를 전달하는 업무 경로가 마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수사보고서 사본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와 AH지방법원 간에 문서 수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데다가, 당시 시행되고 있던 대법원 재판예규인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재판예규 제1306호) 등 보고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위 영장청구서 외에도 형사공보관을 통해 최서원, AS 등 여러 중요 사건의 영장청구서가



스캔되어 법원행정처로 전송된 사실은 있었지만(다만 위 예규의 보고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수사기록까지 그와 같이 법원행정처로 전달된 것은 아니어서, 형사공보관의 위 증언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공모관계의 존부³⁾

다음 가)항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이 현직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여 법관 비리를 은폐·축소하려는 의사를 상호 연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고, 나)항에서 보듯이 피고인 B, C의 경우는 '영장기록에 있는 수사정보를 AQ에게 보고하는 것'을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AQ에게 수사정보를 전달한 것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는지는 뒤에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가) AO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작성된 일부 보고서에 검찰을 압박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그러한 압박 방안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와 상호 의사를 연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그러한 검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검찰의 수사를 저지하고 영장재판에 개입하려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일부를 시행하였는데도 원심이 달리 판단하였다'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의 전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이 항목에서 같이 판단한다.



① 이 법원이 앞서 영장전달판사들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한 수사정보뿐 아니라 이 사건 각 문건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들까지 합쳐 보아도, 그 주된 내용은 비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법관이 누구이고 그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는지에 관한 것이고, 법관이 아닌 AP이나 BR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를 통해 이들이 법관들과 접촉한 내용이나 그 법관들의 처신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문건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나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도 일부 기재되어 있지만, 그 분량과 구체성의 정도에 비추어 AO 게이트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포함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오히려 영장기록에 등장하는 현직 검사나 검찰수사관의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각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당시 그와 관련된 다수의 영장이 청구되었는데도 피고인 A은 10번 문건에서 AO 게이트 사건과 무관한 DR 부장검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실 자체만을 간략히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법원행정처가 수사 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았고 이에 협조하기 위해 영장기록의 수사정보를 전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② AQ의 저장매체에서 발견된 2016. 8. 17.자 '현안 대처 방안' 보고서(증거기록 1권 11,591쪽)에는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데, 피고인 A이 이 문서의 초안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상세히 실시한 바와 같이, 문서의 편집 형식, 사용된 용어(특히 AQ이 자주 사용하는 비문인 '절대절명') 등에 비추어, 위 보고서는 피고인 A이 객관적인 상황 파악과 향후 사건 전개 전망 등의 내용으로 초안을 작성하여 전송한 파일에 AQ이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위와 같은 검찰 대응 방안 등을 추가하여 완성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검찰 대응 방안 부분의



내용이 앞서 위 ①항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A의 보고 목적과도 상반된다는 점에서, 위 보고서에 기재된 검찰 대응 방안 부분은 피고인 A이 그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검사는, 2016. 6. 22. AQ이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 C 등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달한 'AS 부장 등 가족관계'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가족관계 문건'이라 한다)을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이라고 칭하면서, 위 문건이 법원행정처가 영장전담판사들에게 '법관 및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여 기각하라'고 지시한 문서이고, 피고인들이 이에 따라 관련 영장을 기각하여 수사 저지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가족관계 문건이 그러한 지시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며 그러한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와 AJ이 영장재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검사는 위 문건에 기재된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하여 청구된 영장 3건이 기각된 사실을 항소이유서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으나, 다음 ㉠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기각 결정들에는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AO 게이트 사건에서의 영장처리 결과 전부를 살펴보더라도 그 기각 결정들이 통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AO 게이트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던 DE부장과 BH의 통화 내용이 정리된 문서 어디에도 DE부장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 피고인 B이 2016. 8. 10. AS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며 대상기간을 일부 제한한 것은 AS이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AO 측 수표가 AS 가족의 계좌에 처음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 기간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AS이 피의자로 입건된 다



음에는 AS과 그 가족들의 계좌에 대하여 검사가 청구한 대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증거기록 5권 40,884쪽).

㉔ 피고인 B이 2016. 8. 10. AS과 그 배우자의 휴대폰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하면서 AS의 자녀들 휴대폰을 제외한 것은 이들이 AO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AS이 이들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㉕ 피고인 C가 2016. 8. 18. AS과 그 가족들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은 AS이 피의자로 입건되기 전이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관련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C, B은 AO 게이트 사건에 관하여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 청구된 다수의 압수수색영장에서도 신용카드 사용내역 부분을 기각한 바 있다(증거기록 4권 39,660쪽, 증거기록 8권 49,566쪽, 49,597쪽).

나)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영장전담판사들 사이에 수사정보를 누설하기로 하는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 행위는 피고인 A이 AQ에게 이 사건 각 문건과 이 사건 수사보고서에 포함된 수사정보를 전달한 행위이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존재하는지는 피고인 B, C와 AJ이 위 전달행위를 피고인 A과 함께 공모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AH지방법원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중요 형사사건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곳으로, AH지방법원의 영장재판 결과는 많은 사회적 주목을 받아 왔고 여러 사회 세력이 과도한 비난을 가하는 일도 자주 있어 왔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기 어려운 영장재판의 특수성과 영장전담판사를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AH지방법원 AI부장은 기각 결정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응하거나, 언론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보나 추측성 기사를 방지하는 등의 후속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이를 위해 영장전담판사들이 중요 사건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다음 AI부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실무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 원심이 실시한 바와 같이, AO 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전·현직 법관의 비리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피고인 A이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였고, 영장전담판사들이 이에 응하여 영장처리 결과뿐 아니라 영장기록에 등장하는 법관 비위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때로는 영장기록 중 몇몇 페이지를 복사하여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중요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의 후속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보고를 한 것이지, 피고인 A이 법원행정처에 수사정보를 보고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러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또한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영장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때마다 AQ에게 이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본인이 다른 경로로 수집한 여러 정보들과 함께 AQ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에서 영장전담판사의 피고인 A에 대한 보고와 피고인 A의 AQ에 대



한 보고는 각각 별도의 업무수행이었을 뿐, 전자가 후자를 위한 절차가 아니었다.

③ AO 게이트 사건에 등장하는 현직 판사들 중 상당수는 AH지방법원 소속이었고, AS 부장판사는 DJ지방법원 소속이었지만 AS이 재판부에 청탁하였다고 의심을 받았던 AO의 상습도박 사건의 재판은 AH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AZ의 DS 사건도 AH지방법원에서 제1심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AH지방법원은 AO 게이트 사건과 가장 관련이 많았던 법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AS을 포함하여 현직 부장판사들의 비위 내용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장전담판사들이 자신들의 보고 내용을 피고인 A이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④ 영장전담판사들이 피고인 A이 자신들의 보고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에 보고할지 여부, 보고 시기, 보고 내용에 포함되는 정보의 선별 등은 피고인 A이 영장전담판사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하였고, 영장전담판사들은 피고인 A의 보고 시기나 보고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 A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는지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영장전담판사들의 인식 정도만으로는 이들이 공동가공의 의사, 즉 2인 이상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실행에 옮기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축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 C가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검사의 법령위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속에는 피고인 A이 AI부장판사로서 직무상 취득한 수사 정보를 AQ에게 전달하여 누설하였다는 단독법행이 축소사실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의 변론 내용에 비추어 이를 심판 대상으로 삼아도 피고인 A의 방어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 축소사실을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1) 공무상비밀누설죄의 해석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데, 여기서 '직무상 비밀'이란 직무담당자가 그 지위 내지 자격에서 직무집행상 알게 된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직접 관계되는 비밀이면 그 비밀을 알게 된 경위는 불문하지만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단순한 비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밀의 '누설'이란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널리 일반에게 알리는 행위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으로는 말이든 문서든, 작위이든 부작위이든 분지 아니하며, 나아가 비밀을 누설하는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는 물론이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협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직무상 비밀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인 역시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그 비밀을 전달받은 것이라면 그 특정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그 비밀에



관한 업무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의 형사제재를 받게 되므로, 그 특정 공무원을 통하여 비밀이 유포될 우려가 있다는 개별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특정 공무원에 의하여 비밀이 널리 알려질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제공행위는 국가의 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공무상 비밀의 누설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2) 재판 영역에서 사법행정 부문으로 재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허용되는 정보의 범위

법관은 독립하여 재판하므로 재판의 내용이 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 영역 내에 머물러야 하고, 함부로 사법행정 부문에 전달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법행정은 재판이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행정작용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판 영역에 있는 정보가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법행정 부문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만, 수사의 밀행성의 요청이 특별히 강한 영장재판에 관하여는 다른 재판에 비하여 특별히 엄격한 취급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법행정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는 ①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비롯한 재판관계자나 법원청사에 대한 방호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물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 ② 해당 재판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담당 법관에 관하여 제척이나 기피의 문제가 생겨 사건의 배당을 바꾸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③ 법관이 범죄 혐의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그 법관이 재판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사법행정 부문은 수사 책임자에게 수사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



사정보를 전달받는 등 자체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한편, 재판 영역으로부터도 일정한 정보를 전달받아 이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재판 영역에서 사법행정 부문으로 전달이 허용되는 정보의 범위는 정보 전달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특히 수사자료와 같이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필요최소한도로만 전달이 허용되어야 한다. 통상은 ① 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영장의 종류, ② 피의자의 이름, ③ 피의 사실과 사건의 개요, ④ 이에 준하는 정보로서 앞서 사법행정상의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이에 해당하고, 사법행정 부문에서 그 이상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사법행정상의 정식 경로를 통하여 획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재판 영역에서 사법행정 부문으로 정보 전달을 허용하는 것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법행정권의 본질에 반하지 않고, 행정작용에 속하는 사법행정권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의 판단

가) 1, 4, 5, 8번 문건의 각 일부 내용은 피고인 B(4번과 5번 문건), 피고인 C(1번 문건), AJ(8번 문건)이 자신들이 담당한 AO 게이트 사건의 영장기록에 있는 수사정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3번 및 9번 문건의 일부 내용 또한, 비록 보고자가 특정되지는 않지만, 영장전담판사가 영장기록에 있는 수사정보를 보고한 것이라고 인정된다(이하에서 위 각 수사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정보'라 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보를 AQ에게 보고한 것을 '이 사건 보고'라 한다).

나) 피고인 A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 A에게 비밀엄수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피고인 A이 직무상 취득한 것임이 먼저 인정되어



야 한다. 이 사건 정보는 현직 법관들의 비위 혐의 사실과 사건의 개요, 영장의 청구 및 발부 사실 등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내용을 포함하여 법관 비위에 관한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은 재판 영역에서 사법행정 부문으로 전달되는 것이 허용되는 내용의 범위를 넘어서 재판 영역으로부터 재판 정보를 취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영장전담판사들은 다른 중요 사건에서도 실무적으로 해 왔던 'AI부장에 대한 영장처리 결과 보고'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정보를 AI부장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것이고, 보고의 과정에서 상세한 설명이 일부 수반되는 것은 보고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정보의 내용이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직무와 무관하게 취득된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보를 엄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고를 한 목적, 보고의 내용, 정보의 전달 경로 및 전달 상대방의 지위, 상대방이 정보를 사용한 용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고는 일선 법원 사법행정 담당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법관 비위 정보의 보고 행위로서 직무 수행의 외관과 실질을 모두 갖추고 있고, 이러한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정보를 전달받은 법원행정처 AQ이 이를 일반에게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국가의 수사·재판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 A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보고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검사가 최초 이 사건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현직 법관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목적을 가졌고 이러한 목적을 공유한 피고인들이 이를 돕고자 이 사건 정보 등을 전달하였다고 단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법원행정처와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법원행정처가 그러한 목적을 가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특히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는 국가가 사인간의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재판 제도'가 존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법관이 범죄, 특히 본인이 담당하는 재판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의 보호 하에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로서는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속히 해당 법관에 대한 징계나 사무분담 변경 등의 조치⁴⁾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관은 재직 중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등의 신분보장을 받는데, 법관에 대한 선부른 징계나 사무분담 변경 등의 조치는 법관의 독립 및 이를 위한 법관의 신분보장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범죄를

4)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법원 재판예규인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제4호는 법원장 등은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관의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법관이 누구이고 그 혐의가 사실인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는 것은, 이를 위해 재판기록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와는 별개로, 정당한 사법행정사무의 수행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법행정의 역할 중 하나이다. 특히 AO 게이트 사건 초기부터 언론에 보도되었던 현직 부장판사들의 비위 의혹들은 직무 외 비위나 단순 업무상 실수 수준이 아니라 법관이 돈이나 향응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바꾼다는,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내용들이었다.

③ 비록 피고인 A이 수사 내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AQ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전달된 정보의 주된 내용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관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증거관계라는 점에서, 피고인 A의 보고 목적은 법원행정처로 하여금 비위 혐의 법관이 누구이고 그 비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위 혐의 법관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가 적시에 취해질 수 있게 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전달한 정보의 내용 또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로 한정되었다.

④ 이 사건 정보는 피고인 A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와 함께 법관에 대한 인사·감사 정보가 전달되는 정상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전달되었다. 보고의 상대방인 AQ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권을 위임받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관에 대한 인사, 징계, 감사 업무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실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DB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비밀엄수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에서 AQ도 피고인 A로부터 보고받은 이 사건 정보를 엄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이다.



⑤ AQ은 이 사건 정보를 법원행정처 내에서 법관에 대한 감사와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당시 AO 게이트 사건의 비위 혐의 법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제 진행하고 있던 BH실에 전달하여 사실조사를 할 때 참조하도록 하였다. AQ은 DT심의관에 계도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DT심의관이 이 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한 보고서 중 2016. 5. 12.자 'AO 사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그 제목대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한 것이고(위 보고서에 언급된 AX 변호사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정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2016. 8. 26.자 '현안 관련 대응 방안'은 AS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과 후에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한 것으로, 그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신속히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하고 사법부가 공식 사과와 제도개선 방안 발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⑥ 이 사건 보고의 목적인 비위 법관에 대한 징계나 배치변경 등의 사법행정작용은 비위 혐의 법관에게 이익이 되는 조치가 아니라 반대로 그와 대립적 관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작용'과 그 불이익 조치의 내용만을 달리할 뿐 그 목적과 성격이 동일한 작용이다. 그러하였기에 CE검사나 DE부장 등의 검찰 수사관계자도 비위 법관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피고인 A이나 BH에게 전달하였고, BH도 비위 혐의 법관에 대한 대면조사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DE부장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서로 협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스스로도 비위 법관에 관한 정보가 법원행정처에 전달되는 것이 수사기능에 별다른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여겼다는 점을 보여준다.

3.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2-0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균용 _____

 판사 이승철 _____

 판사 이병희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2-1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5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8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신봉수(기소), 단성한, 조상원, 김상민, 김경완, 홍석기, 용성진, 채희만, 남철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유) D 담당변호사 E 법무법인(유) F 담당변호사 G, H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의 지위 및 직무상 권한

피고인은 K경부터 L경까지 법원행정처 M심의관 및 N심의관, O경부터 P경까지 대법원 Q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R경부터 S경까지 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T지방법원장을 보좌하여 형사재판부 재판장, 영장전담판사 인선 등 재판부 구성, 중요 형사 사건의 접수 및 진행상황에 대한 수사 보고, 형사재판 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감사 및 보고, 형사부 소속법관들의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형사재판에 관한 기획·공보 업무를 포함하여 재판 사법행정사무 관련 지휘·감독권 및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재판 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U은 V경부터 W경까지 법원행정처 X, Y경부터 Z경까지 법원행정처 AA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국회 등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중요 사건 및 상황 수사 보고 업무, 법원행정처 내 실·국 간 중첩적으로 연계된 업무 조정,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보고 업무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을 지휘·감독하고,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및 법관을 감독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사법행정권의 한계

사법행정권은 법원의 재판권 행사가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인 지원 및 지휘·감독을 하는 권한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이 위법·부당하게 남용되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통로나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다. AB AC신문 前 서울지국장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1) 범행 결의

2014. 4. 16. AD 참사 이후 AE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치권 및 여론의 비판과 공분이 고조되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8. 3. 경 AB AC신문 前 서울지국장이 일본 AC신문에 'AE 대통령의 AD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추측성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자, AF 등 보수단체들은 2014. 8. 6.경 AB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청와대에서도 2014. 8. 7.경 'AB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며 엄정대처 의지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AB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¹⁾(이하 'AB 사건'이라 한다)이 2014. 10. 8.경 T지방법원에 접수되자, 위 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 국민적 관심사인 'AD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이 핵심 쟁점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에 이를 중요사건으로 보고하고, T지방법원의 중요 현안사건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한편, AG 산하 U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원행정처는 2015. 3. 26.경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대외비)'을 수립하여 사법부의 위상 강화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 모멘텀'의 일환으로 AB 사건의 재판에 청와대

1) 사건번호 'A', 피고인 'AB', 죄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으로, 공소사실 요지는 'AC신문 서울지국장이던 피고인이, 「AE 대통령이 AD 여객선 침몰 당일에 옛 보좌관인 AJ와 함께 있었다」는 허위의 기사를 일본 AC신문에 게재하여 보도함으로써 AE 대통령과 A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의 입장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청와대에 적극 협조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U의 요구에 따라 AB 사건 재판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 사실

가) 판결 선고 전, 보도의 허위성에 대한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법원행정처 X U으로부터 'AB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증거 조사를 진행하다가 AB가 게재한 AD 7시간 행적에 관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T지방법원 BE형사부 재판장 AK에게 그러한 법원행정처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AK은 2015. 3. 30.경 AB 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발신자 위치 추적결과나 역발신자 위치 추적 결과 혹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와 AJ와 AL, AM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AD 사건 당일 AJ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AB가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향후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

그리고 U은 같은 날 유력 일간지 사회부 차장 등을 접촉하여, 위와 같은 재판장 AK의 소송지휘권 행사의 구체적 의미는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관한 진실게임은 종료되었다'는 취지임을 설명하면서 보도 분량 및 논조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실제 해당 언론사에서는 이와 같은 U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B 사건의 재판장인 AK에게 법



정에서 공개적으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AK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 전에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비방 목적 유무' 등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AK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결 이유 수정 및 선고 시 구체적 구술내용 변경 등 관련 요청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AB 사건에 대한 재판진행 상황, 향후 예정사항, 예상되는 판결 선고일자 등이 기재된 2015. 6. 30.자 'T지법 주요 형사사건 현황(대외비)' 문건, 2015. 8. 12.자 'T지법 주요 형사사건 현황(대외비)' 문건, 2015. 9. 1.자 'T지법 주요 형사사건 현안 보고(대외비)' 문건을 각각 작성하여 U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U으로부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이유에 어떤 내용을 실시할 예정인지 알아봐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5. 11. 초순경 '무죄 선고가 불가피하고 재판장이 법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로 U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U은 피고인에게 '① 무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판결이유에 반드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실시하고, ②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③ 판결 선고 말미에 AB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달라'는 취지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5. 12.경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외교부에서 AB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서가 제출될 것이니 재판장으로 하여금 판결 선고 시에 그러한 내용을 고지해 달라'고 재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AK에게 'AB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선고 마지막 부분에 전체적인 판결 이유를 요약하면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점, AB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하여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해 달라'고 하는 한편, 특히 그와 같이 판결 선고 말미에 고지할 내용을 사전에 자신에게 검토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11.경 AK으로부터 구술본 말미 부분 초안을 전달받아 '피해자 AE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기사가 AE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AE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AB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게 되자,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요구사항이 보다 정확하게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2015. 11. 17.경 구술본 말미 부분 초안 중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등 구술본 말미 부분을 수정한 다음,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 할 듯'이라고 부기하여 이메일로 AK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구술본 말미 수정본의 결론 부분인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공



소사실 중 AJ²⁾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는 문구를 대부분 삭제하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라고 수정하는 등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차 수정한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을 AK에게 전송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전체 구술본을 정리하고 보도자료와 함께 사전에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AK은 2015. 10. 21.경 이미 재판부 합의를 거쳐 주심판사를 통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근거로 AB가 피해자 A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문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2015. 11. 18.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을 전달받고 전체 판결 구술본의 수정을 요구받게 되자, 주심판사와 협의를 거쳐 위 구술본 말미 재수정판에 맞춰 '이 사건 기사는 개인 AE의 수인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된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공직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개인 AE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개인 AE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이유를 수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결 선고 직전인 2015. 12. 중순경 '외교부에서 AB에 대하여 선처를

2) 피고인과 AK이 주고 받은 구술본 말미 파일에는 'AJ'의 오기인 'AN'도 기재되어 있었다.



바라고 있으니 판결 선고 시에 그러한 취지를 언급해 달라'는 U의 요구사항을 AK에게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AK은 2015. 12. 17. 위 AB 사건의 선고기일에 AB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AB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를 언급한 다음, 피고인의 요구로 작성·수정한 구술본 말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AB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까지 부연설명함으로써 AB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장 AK에게 판결 이유 및 선고 시 구술내용을 판결 선고 전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수정 등을 지시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AK으로 하여금 판결 이유를 수정하고 선고기일에 외교부의 선처 요청 사실을 언급하고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AB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AK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라. AQ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T법원 AV형사부는 2015. 8. 20. 15:00경 'AO, 피고인 AP 외 3인에 대한 체포치상등' 사건³⁾(이하 'AQ 체포치상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하였고, 해당 판결문에는 'AQ(이하 'AQ'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서울 중구 정동 소

3) 사건번호 'AO', 피고인 'AP 외 3인', 죄명 '체포치상등' 사건으로, 공소사실 요지는 'AQ 소속 변호사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서울남대문경찰서 AR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다.



재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던 중,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집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AR을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양형이유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피고인들의 행동과 표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피고인들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볼 수는 없지만,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선불리 단정한 채 체포행위에 나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③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16:07경 AS 소재 T지방법원 내 형사수석부장 사무실에서 T지방법원 형사공보관사인 AT으로부터 위 사건의 최종 판결문과 사건 설명자료(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게 되었다.

판결은 법원의 종국재판이므로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하고, 반드시 법원이 재판서를 작성하고 그 판결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 하게 되는데, 재판은 확정에 의하여 그 본래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대외적 성립만 있으면 재판을 한 재판기관은 스스로 그것을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불가변경력이 생기게 됨으로써 판결을



한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며, 스스로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력을 가진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28.경 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서는 재판사무에 관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같은 법원 형사부 소속법관들에게 '판결 원본 선고 원칙 준수' 및 '판결문 등록 오류 방지'를 당부한 바 있었고, 위 판결문은 판결 선고 후 형사공보 판사를 통해 언론공보 및 배포용으로 전달받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문이 이미 선고된 판결원본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T으로부터 위와 같이 판결문을 송부받게 되자, 담당 재판장으로 하여금 이미 선고한 판결의 판결 이유를 수정케 하기로 마음먹고, 먼저 AT으로 하여금 이미 배포한 판결문과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위 사건의 담당 재판장 AU에게 판결문 중 유죄의 양형이유가 기재된 부분을 직접 지적하면서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돈을 다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하며 양형이유 부분을 대폭 수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AU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8. 20. 16:07경부터 17:01경까지 사이에 위 ①, ③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② 부분은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찰관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로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는 2015. 8. 20. 15:50경 이미 최초 판결문에 대한 등록을 마쳤음에도 피고인의 수정 지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24경 등록된 최초 판결문을 등록취소 할 수밖에 없었고, 같은 날 17:54경에 이르러서야 판결문을 최종 등록하



있는바, 이는 위 사건의 피고인들인 AQ 소속 변호사 AP 외 3인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일부 유죄 주문과 그에 대한 양형 이유까지 이미 고지가 완료되고 판결문의 등록까지 마쳐진 상태임에도 피고인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최종 판결문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등록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AO 사건의 재판장 AU에게 이미 선고한 최종 판결의 양형 이유를 자신이 요구한 대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AU으로 하여금 이미 선고한 판결 이유를 수정 및 삭제하게 하고, 기 등록된 판결문을 등록취소하여 재등록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AU의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마.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관련 재판개입

T지방법원 AW형사단독 AX 판사는 2016. 1. 14. 오전경 'AY, 피고인 AZ, BA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청구사건⁴⁾(이하 '약식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T지방법원 AY 사건은 2015. 12. 30.경 유명 야구선수인 AZ, BA에 대해서 도박죄로 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이었는데, 담당 판사 AX의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AX은 재판사무시스템 접근권한이 있는 위 법원 소속 약식계 소속 실무관에게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담당 실무관이 그러한 취지에 따라 공판절차회부에 따른 전산상 입력을 하여 공판절차회부서를 당일 10:57경 등록 및 출력하고,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10:58경 생성함으로써,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위하여 통상적

4) 사건번호 'AY', 피고인 'AZ 외 1인', 죄명 '도박' 사건으로,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AZ, 피고인 BA은 2014. 11.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마카오 소재 BB호텔 32층 VVIP 룸에서 한화 4,000만 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가지고 1회 배팅액 최소 300만 원 이상을 걸고 수백 회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인 후속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담당 판사에 의한 공판절차회부서 결재(날인), 공판회부 통지서 검찰 사송 송부 및 전자전송, 공판회부 기록 조제,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기록 송부 등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AS T지방법원 내 형사수석부장 사무실에서 위 법원 소속 형사단독 2과장 BC으로부터 'AY 도박죄의 약식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의 담당 판사인 형사 AW단독 판사 AX이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약식사건에 대해서 '담당 판사가 공판절차회부를 하였다'는 취지의 중국 보고를 받게 되자, BC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당사자 등에 대한 통지 등 후속절차의 보류를 지시하는 한편, 담당 판사인 AX을 급히 부른 다음, '이 사건에 관하여 주변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가,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본 이후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하면서 위 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한 것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AX은 담당 실무관에게 공판절차회부를 위한 후속절차 진행의 보류를 지시하였으며, 이미 약식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담당 실무관에게 그러한 절차 이행을 지시하여 공판절차회부서 및 공판절차회부통지서 등이 전산상 등록 및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2016. 1. 14. 17:17경 최초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결정을 반복하고 도박죄의 법정형 상한인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X에게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공판절차회부로 등록완료된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 담당 실무관의 착오 입력으로 인하여 그러한 기록이



남게 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대응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AX도 담당 실무관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그 취지를 전달하였으며, 담당 실무관은 피고인 및 AX의 지시에 따라 이미 생성하였던 공판절차회부서에 대한 등록 이후의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미 재판사무시스템에 생성되어 있던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2016. 1. 18. 11:17경 삭제하면서 해당 결제요청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BA, AZ 등에 대한 약식사건과 관련하여 ① 담당 판사 AX에게 공판절차에 회부함이 적정하다는 결정에 따라 관련 공판절차회부서 출력, 공판절차회부통지서 생성 등 공판절차회부를 위한 절차가 진행된 사건을 재검토해 보라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AX으로 하여금 약식사건에 대하여 이미 공판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재검토하여 약식 명령을 발령하도록 하고, 공판절차회부서를 등록완료된 것은 담당 실무관의 착오입력으로 대응토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AX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고, ② 형사단독 2과장 BC 및 담당 판사 AX을 통하여 재판사무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실무관에게 공판절차회부를 위한 후속절차를 보류토록 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담당 실무관으로 하여금 후속 절차를 보류하고 재판사무시스템상 기 입력된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토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일반적 직무권한의 부존재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 자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 AK 부장판사에게 중간판결적 판단을 요청하고, 구술본 말미 수정 및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 내용고지와 AB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언급을 요청한 행위, AU 부장판사에게 양형이유의 표현을 뜯다운 해보라고 요청한 행위, AX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보라고 요청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라 한다)는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남용의 부존재

설령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⁵⁾,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사익의 추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후배 법관들이 재야법조나 언론, 정치권 등으로부터 부당한 비판 내지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필요성, 상당성 또한 인정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의무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방해의 부존재

AK, AU, AX의 재판권은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일 뿐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의 부차적 보호법익으로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의 보호도 포함되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권한남용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AK, AU, AX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후 그 취지에 공감하여 재판부의 합의를 거치거나 주변 판사들과 상의한 후 독립하여 판단 내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

5) 이하 나 - 바항의 주장은 모두 피고인에게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는 것을 대비한 예비적 주장이다.



라. 인과관계의 단절

피고인의 직권행사의 상대방인 AK, AU, AX은 피고인의 요청에 공감하여 재판부의 합의를 거치거나 주변 판사들과 상의한 후 독립하여 판단 내지 결정을 하였고, AK, AU, AX 또한 피고인의 말을 조언 내지 권고라고 생각하였을 뿐,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로 인하여 AK, AU, AX 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어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와 AK, AU, AX의 판단 내지 결정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마. 범의의 부존재

피고인은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 등으로부터 법원이나 판사가 부당한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사후에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소속법관들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점',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점',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었다.

바. 직무집행 보조자인 담당 실무관에 관한 주장

약식사건의 담당 실무관인 BD은 AX 판사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관이 AX 판사의 결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보류하고 공판절차 회부통지서를 삭제한 행위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B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가)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경위

(1) U⁶⁾ 법원행정처 X은 2015. 2. ~ 3.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AB 사건에 관하여 '재판의 유무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증거조사를 하다가 AD 7시간 행적에 관해서 허위인 점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법정에서 허위인 점이 입증되었다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 79601 ~ 79602쪽).

(2) 피고인은 그 무렵 AB 사건의 재판장인 AK 부장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이 사건은 대통령이 피해자이고, AB가 일본 언론인이라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다. 그리고 이 재판은 국격을 드높일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니 이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9쪽, 증거기록 제79602, 81966쪽). AK 부장판사는 이에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9603쪽).

(3) AK 부장판사는 2015. 3. 30. AB 사건 제4회 공판기일 도중 휴정을 한 후, BE형사부 배석판사실로 가서 주심판사인 BF 판사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고 볼 수 있는지 물었고, BF 판사는 그렇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72930쪽). 이에 AK 부장판사는

6) U은 V경부터 W경까지 법원행정처 X, Y경부터 Z경까지 법원행정처 AA으로도 제리하였다.



법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발신자 위치 추적결과나 역발신자 위치 추적 결과 혹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의 공문 등 객관적인 자료와 AJ와 AL, AM의 법정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AD 사건 당일 AJ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AB가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대통령의 당일 모든 행적을 밝히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호인의 주장에 기초한 청와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과 수신자 전화번호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AJ의 진술이나 AL 진술 등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해보고자 하는 BG에 대한 통화내역조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한다.'는 취지로 고지하고, 변호인에게 향후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없이 작성되었으며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변론을 집중하도록 고지하여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증거기록 제76129쪽).

나) 구술본 말미 부분 수정요청 경위 및 선고기일 외교부 공문 내용고지 요청

(1) BF 판사는 2015. 8. 18.경 AB 사건에 대한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여 AK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제72948, 81978, 91377 ~ 91401쪽). BF 판사는 2015. 8. 19.경 위 판결문 초고에 대한 수정본을 작성하여 AK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보냈다(증거기록 제91402 ~ 91425쪽).

(2) BF 판사는 2015. 10. 21. 다시 AB 사건에 대한 판결문 초고 수정본을 작성한 다음, AK 부장판사에게 '최종 수정해주시면 그에 따라 구술 문서와 보도 자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위 수정본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위 수정본은 '최고의 공적 존재인 대통령직에 있는 AE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 AE 대통령에 대



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피해자 AN⁷⁾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제91229 ~ 91252쪽). BF 판사는 2015. 10. 28. 위 2015. 10. 21.자 판결문 초고를 반영한 구술본⁸⁾을 작성하여 AK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91274 ~ 91296쪽). BF 판사는 2015. 10. 30. AB 사건의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AK 부장판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기록 제91297 ~ 91301쪽).

(3) U 법원행정처 AA(이하 'U'이라 한다)은 AB 사건 변론종결(2015. 10. 19.) 후인 2015.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로 AB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재판장이 법리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U이 피고인에게 '재판장이 유무죄는 알아서 하겠지만, 판결이유에서 허위인 점은 분명히 밝혀줘야 한다. AB의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알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9617, 79626쪽).

(4) U은 2015. 11.경 BH 청와대 BI비서관(이하 'BH 비서관'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점은 이미 밝혀졌기는 하지만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기사를 쓴 일본 기자에 대해서 무죄선고를 하는 것은 대통령과 BJ수석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AB에 대해 매우 엄중한 질책이 필요하다.'

7) 'AJ'의 오기로 보인다.

8) 판결문을 구어체로 정리하고 핵심을 요약하여 재판장이 선고 시에 읽고, 통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판결문의 요약본을 의미한다.



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6974, 126980쪽).

(5) 피고인은 2015. 11.경 AK 부장판사를 형사수석부장사무실로 불러 'AB에게 무죄 판결 선고할 하더라도 AB는 무죄라고 단순하게 끝내지 말아라. 일단 판결 선고를 한 이후에 AB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AB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성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이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주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전제로 구술본 말미 부분을 추가하고 그 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1 - 22, 60쪽, 증거기록 제79626, 81983쪽). AK 부장판사는 이에 알겠다고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3쪽).

(6) BH 비서관은 2015. 11.경 BK 청와대 BJ수석비서관(이하 'BK BJ수석'이라 한다)에게 AB 사건의 무죄 가능성을 보고하자, BK BJ수석은 BH 비서관에게 대통령이 AB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원행정처에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H 비서관은 U에게 연락하여 대통령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제126983 ~ 126984쪽). U은 2015. 11. 10. BL 법원행정처 BM심의관에게 AB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BL 심의관은 2015. 11. 11. 'AC 지국장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U에게 보고한 후 청와대 BJ수석실의 BN 행정관에게 보냈다(증거기록 제1131 ~ 1133쪽). BN 행정관은 이를 BH 비서관에게 보고하였고, BH은 다시 이를 BK BJ수석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126985쪽).

(7) BF 판사는 2015. 11. 11. AK 부장판사에게 구술본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



다. AK 부장판사는 같은 날 구술본 파일 중 일부를 수정하여 구술본 말미 파일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말씀하신 선고 말미 구술 부분입니다(판결문 내부의 기재는 아닙니다).'라는 내용으로 AB 사건의 구술본 말미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같은 녹취서 제22쪽, 증거기록 제76140, 81987쪽).

(8) 피고인은 2015. 11. 17. AK 부장판사에게 위 구술본 말미를 수정하여 'AB_말미(수정판).hwp'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76140, 79619쪽). 위 'AB_말미(수정판).hwp'파일의 문서 내용은 별지 AB 말미 수정판 기재와 같다.

(9) 피고인은 2015. 11. 18. 10:13경 AK 부장판사에게 '어제 보낸 파일을 다시 보니,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파란 색으로 표시하여 다시 보내 드립니다.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 명예 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전체 설명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사건은 워낙 민감한 사건이어서 전체 설명자료와 보도자료를 제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이라는 내용으로 'AB_말미(재수정판).hwp'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79627 ~ 79628, 79681쪽). 위 'AB_말미(재수정판).hwp'파일의 문서 내용은 별지 AB 말미 재수정판 기재와 같다.

(10) 이에 AK 부장판사는 같은 날 BF 판사에게 '이 사건 기사는 허위의 사실이고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은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F 판사는 이에 동의하여 판결문 초고를 수정하여, 같은 날 14:29경 AK 부장판사에게 '일단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기존에 이 구조로 대강 써 놓은게 있어서 대체하면서 몇몇 부분을 고쳤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편집용-1.hwp'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91326 - 91349쪽). 위 '편집용-1.hwp'파일 판결문 초고의 주된 취지는 '이 사건 기사는 개인 AE의 수인 범위를 넘은 명예훼손이 된다. 그리고 이는 대한민국의 최고 공적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개인 AE가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개인 AE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도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로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였다. BF 판사는 같은 날 23:59경 AK 부장판사에게 최종적으로 판결문 초고를 수정한 '편집용(관계 문구 변경).hwp'파일을 이메일로 보냈다.

(11) 법원행정처 BO심의관 BP은 2015. 11. 17.경 U에게 'AB 前 AC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설명자료'를 보고하였고, 2015. 11. 20.경 U에게 위 'AB 前 AC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설명자료'의 수정본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증거기록 제41990 ~ 41996, 182232 ~ 182233쪽). 위 보고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판을 통해 보도가 허위인 사실 명확히 확인됨
- [재판장] 공판에서 허위 사실인 점에 대한 중간판결적 판단 고지, 판결서 이유에도 보도의 허위성 명백히 판시하겠다는 입장
- 다만,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선고 예상
-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 비방할 목적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언론보도] 사상초유의 국가적 재난 발생 당일 국정최고책임자의 행적에 관한 의혹표명 → 국가 및 국민 전체의 관심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판단가능
- 공적 인물에 관한 보도의 경우, 언론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광범위 → 선진사법국가의 일반화된 명예훼손 관련 법리
- 유무죄 판단과 별개로 무분별한 보도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질책 있을 것



● 재판장이 판결 이유 고지 시, 일국의 대통령에 대하여 사실조사 없이 경솔한 추측성 기사 작성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 및 소속 신문사에게 매서운 질타 및 경고 메시지 전달할 예정

(12) AK 부장판사는 2015. 11. 18.경 조모상으로 인한 휴가를 다녀온 후 2015. 11. 23. AB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5. 11. 26.에서 2015. 12. 17.로 변경하였다(같은 녹취서 제 63쪽, 증거기록 제81994쪽).

(13) BK BJ수석은 2015. 12.경 BH 비서관에게 '한일외교관계를 위하여 외교부가 최 대한 노력을 하였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외교부 측의 간절한 부탁이다. 외교부 장관의 탄원서 제출사실이 법정에서 고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반드시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BH 비서관은 이를 U에게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 126986 ~ 126987쪽). 외교부장관은 2015. 12. 15. 법무부장관에게 AB의 선처를 요청 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7683 ~ 57684쪽). 피고인은 그 무렵 AK 부장 판사에게 '외교부의 공문이 온 것인데, 양형자료니까 법정에서 AB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제33쪽, 증거기록 제81996쪽).

(14) AK 부장판사는 2015. 12. 17. 법정에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AB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후 판결을 선고하면서, 구술본 말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일 뿐이고, AB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까지 고지하였다(같은 녹취서 제41 쪽, 증거기록 제81997쪽).

2) AQ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판여



가) 피고인은 2015. 5. 28. T지방법원 형사부 판사들에게 판결 원본 선고 원칙의 준수 및 판결문 등록 오류 방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87116쪽9)

나) AQ 체포치상 사건의 재판장인 AU 부장판사는 2015. 8. 20. 15:00경 법정에서 판결문 원본으로 판결 선고를 하면서 유죄 및 무죄 이유의 요지와 양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3쪽, 증거기록 제75512 ~ 75513쪽). 위 판결문에는 양형이유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지키고자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속 피고인들의 행동과 표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공격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피고인들의 체포행위를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볼 수는 없지만,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피고인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므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형사범죄에 해당한다고 선불리 단정한 채 체포행위에 나아간 피고인들의 범행에는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③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59053 ~ 59054쪽).

다) AQ 체포치상 사건의 주심인 BQ 판사는 같은 날 15:50경 위 판결문 원본을 등록하였고(증거기록 제79686쪽10), AU 부장판사는 같은 날 15:50경 T지방법원 형사공보관인 AT 판사에게 위 판결문 원본인 'AO.hwp' 파일 및 설명자료인 'AQ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AT은 같은 날 16:07경 피고인

9) 증 제408호
10) 증 제403호



에게 위 판결문 원본인 'AO.hwp' 파일 및 설명자료인 'AQ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9033 ~ 59034쪽). 피고인은 AT 판사에게 판결문과 설명자료를 배포하지 말고 잠시 보류를 해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66125 ~ 66126쪽).

라)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AU 부장판사에게 위 판결문의 2~3군데 정도 표현을 직접 지적하며,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돈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제75520 ~ 75521, 79643 ~ 79644쪽).

마) AU 부장판사는 같은 날 BQ 판사에게 '수석부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Q 판사와 협의하여 위 판결문의 양형이유 중 ①, ③ 부분은 모두 삭제하고, ② 부분은 '피해자의 직무집행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닌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분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 경찰관들과 계속하여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동기 및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로 수정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7 ~ 18, 21쪽, 증거기록 제59088, 75520 ~ 75521쪽).

바) BQ 판사는 같은 날 16:24경 위 판결문 원본 등록을 취소하였고, AU 부장판사는 같은 날 17:01경 AT 판사에게 위와 같이 수정된 판결문 원본인 'AO.hwp' 파일 및 수정된 설명자료인 'AQ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9035, 79686쪽). AT 판사는 같은 날 17:18경 피고인에게 위 수정된 판결문 원본인 'AO.hwp' 파일 및 'AQ_체포치상_사건_재판부_설명자료.hwp'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6경 AT 판사에게 '잘 수정되었으니 그대



로 배포해도 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59036쪽).

사) 피고인은 같은 날 17:46경 AU 부장판사에게 '판결 정리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비교적 잘 정리가 된 것 같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제87121쪽). BQ 판사는 같은 날 17:54경 수정된 판결문 원본을 등록하였다(증거기록 제79686쪽).

3)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가) AX 판사는 2016. 1. 13. 저녁경 약식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겠다는 취지로 부전지에 '공판회부'라고 기재하여 위 사건의 약식명령 초고에 붙였다. BD 실무관은 2016. 1. 14. 오전경 AX 판사로부터 부전지가 붙은 약식명령 초고 및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증거기록 제173858-34쪽).

나) BD 실무관은 같은 날 10:57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공판절차회부서를 생성 및 출력하였고, 같은 날 10:58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공판절차회부몽지서를 생성 및 출력하였다(증거기록 제174156-29쪽). 이어 BD 실무관은 서무계장을 통하여 BC 형사단독 2과장(이하 'BC 과장'이라 한다)에게 공판절차 회부결정에 따른 약식사건의 종국보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9, 174156-7쪽). AX 판사는 공판절차회부서에 서명날인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73858-36쪽).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형사수석부장사무실에서 BC 과장으로부터 '약식사건에 관하여 AX 판사가 위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였다.'는 취지의 중요사건 종국보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BC 과장에게 법원행정처에 대한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등 후속 절차 보류를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9쪽). 이어 피고인은 AX 판사를 형사수석 부장사무실로 불러 AX 판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주변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가.'고 물었고, AX 판사는 '같은 방의 판사들과 상의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X 판사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X 판사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 79658, 173858-34, 38쪽).

라) AX 판사는 같은 날 BD 실무관에게 후속절차를 잠시 보류하라고 지시한 다음, 동료 판사들 5 ~ 6명의 의견을 들었고, 동료 판사들의 '도박죄의 경우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어 형종을 달리할 수 없으면 본안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약식사건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기로 결심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4, 38, 174824쪽). AX 판사는 같은 날 BD 실무관에게 공판절차회부 지시를 변경하면서 1,0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을 위한 후속절차를 지시하였다(증인 B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 21쪽).

마) 피고인은 같은 날 BC 과장으로부터 약식사건이 약식명령으로 처리되었다는 종국보고를 받아 BC 과장에게 '기자들이 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물었고, BC 과장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착오입력을 사유로 정정입력을 하였고 외부에서 물어보면 실무관이 입력한 대로 대답할 것이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18쪽). AX 판사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약식사건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AX 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결정이 이미 입력되었으니 담당 실무관에게 추후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물으면 담당 실무관의 실수로 착오 입력되었다고 말하도록 하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8, 42, 45쪽).

바) 이후 AX 판사는 BD 실무관에게 '전산입력 결과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 묻는다면 담당 실무관이 전산상 착오 입력한 것으로 답하라'고 말하였다(같은 녹취서



21쪽, 증거기록 제174156-18쪽).

사) BD 실무관은 같은 날 17:17경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약식명령결정문을 생성 및 출력하여 AX 판사로부터 약식명령결정문에 날인을 받아 같은 날 17:49 약식명령 등본을 검찰에 발송하였다. BD 실무관은 2016. 1. 18. 11:17 공판절차회부 통지서 및 공판절차회부 통지서의 결재요청을 취소하면서 삭제하였다(증거기록 제174156-10, 29쪽).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검사 주장의 요지

가) 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의 법령상 근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법령의 근거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T지방법원장을 보좌하여 법률상 및 사실상 위 법원의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다.

(1)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며,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2)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법원조직법 제67조).

(3)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



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29조).

(4) 대법원장은 인사발령을 통해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직접 지정하는데,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법원조직법 제29조 제4항, 제26조 제4항), 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건 배당을 주관하고 법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5) 법원행정처는 매년 전국수석부장회의를 소집하여 사법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위 회의에 참석한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수석부장판사는 사법행정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국민과 법원, 법원장과 법관, 법관과 법원직원을 잇는 가교이자 조정자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

(6) 피고인은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T지방법원장의 위임·지시·명령 또는 승인에 기초하여 T지방법원의 형사재판 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감사 및 보고, 재판사무 직무감독, 형사부 소속법관들의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형사재판에 관한 기획·공보 업무 등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사실상 관장해왔다.

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은 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사법행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① 법관과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판의 적정·신속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② 법관의 독립과 사법책임 실현에 필수적인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대외업무에 필요한 경우 재판부를 상대로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고, ③ 법관의 재판이 적정·신속하게 이루어져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 법관의 징계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을 보유하고 있다.



(1) 사법행정권의 본질

헌법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달성함으로써 사법권이 주권자인 국민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천적인 방법으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법의 궁극적 목표는 법관의 독립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법관의 독립과 사법의 책임이 조화롭게 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은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독립과 사법의 책임이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과 재판사무의 적절한 운용을 지원·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 즉 사법행정권을 부여하였다. 사법행정사무는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법관의 재판의 독립을 보호'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감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의 영역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그 존재의 의의를 달성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은 사법의 독립과 책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재판사무를 감독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재판부와 소통하며 대외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판부를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재판의 영역을 대상으로 행사될 수 있다.

(2)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 재판사무 직무감독권

국민주권원리, 사법에 대한 신뢰보호, 사법행정의 본질, 법관윤리강령,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18. 1. 31. 대법원규칙 제2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재판예규의 정리에 관한 사법지원실 내규, 계속 중 재판에 대한 다수의 제도(적시처리 중요사건 선정·취소·재배당, 장기미제 보고, 판사근무성적평정 및 연임심사, 합의부 내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관



계, 시·군법원 운영에 관한 예규,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등) 등을 종합하면, 사법행정권자에게 진행되는 재판사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경우에 따라 법관의 징계에 관여할 수 있는 재판사무 직무감독권은 현행 법령상 인정된다.

(3)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 사법지원

사법행정의 본질,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의 명문의 규정 및 법원행정처의 실제 재판부에 대한 사법지원 사례 등을 종합하면, 사법행정권자가 재판부와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판의 적정·신속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전달하는 권한은 현행 법령상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결로 인한 논란의 방지 등을 이유로 AK 부장판사에게 구술본 말미 초안을 받아 이를 검토해 구술본 말미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사법행정권자가 적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법관에게 조언 및 지원한 것에 해당한다.

(4) 재판 관련 사법행정권 - 사법정책·공보·대외업무 관련 협조요청

사법행정의 본질,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분장사무표의 명문의 규정,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및 대법원 예규, 피고인이 국정감사 준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재판 관련 정보제공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법행정권자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정책 수립을 위한 대외업무에 필요한 경우 재판부를 상대로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권한은 현행 법령상 인정된다.

피고인이 AK 부장판사에게 구술본 말미 초안을 받아 이를 검토해 수정의견을 제시하면서 청와대 또는 대통령의 서운한 감정을 고려할 필요로 언급하였는 바, 이는 사법행정권자가 사법정책·대외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법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의 계속 중 재판에 대한 사법행정권 행사 사례

피고인은 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 중 재판에 대해 국회 등 대외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재판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석부장판사로서 의견을 전달하며 특정 행위를 권고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국정감사 준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부를 상대로 재판의 주요 진행 현황, 향후 계획 등 재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재판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정감사를 준비해왔다.

(나) 피고인은 AT 공보관 및 기획법관을 지휘하여 공보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속 중 사건의 재판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했다.

(다) 피고인은 언론에 문제로 지적된 법관의 언행과 관련하여 재판장을 상대로 해당 발언의 경위를 확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T지방법원 형사법관들에게 계속 중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판의 병합을 권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계속 중 재판에 참관하여 재판장의 언동, 절차진행방식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의 의미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13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 '남용', '의무'와 같이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불확정개념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 1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행위가 위헌적으로 평가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 우리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헌법 제13조 제1항). 공무원의 어떠한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탄핵대상 공무원은 탄핵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밖의 공무원은 행정적, 도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체적인 금지규범을 특정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헌법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헌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죄형법정주의가 전면적으로 형해화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 2236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나) 일반적 직무권한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사전적 의미로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 또는 "공무원·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의미한다. 직무상 권한이란 직무에 부여된 권한으로서 현실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 뿐 아니라, 그 공무원이 현재 직접 수행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에 관한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무상 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 기타 법령에 의해 정해지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반드시 법령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법상의 근거를 둔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법령의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남용"이다. 비록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면, 설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의 세력을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공무원의 직무와는 관련 없는 단순한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등 참조).

다)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독립된 국가권력으로서 사법권과 사법권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으로 법원, 그리고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독립된 국가기능으로 사법권을 보장하여 국가조직으로서 법원조직의 독립을 보장하고, 나아가 그 조직에 의한 사법권 행사를 보장한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구성원인 법관에게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을 그 중추적 내용의 하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적 지표이고 법치주의의 요소를 이룬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헌법 제101조 제1항 및 제3항, 제103조, 제105조, 제106조 등 참조), 사법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제



2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등 참조).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책을 부여받은 자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고 어떠한 인적, 물적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등 참조).

사법권 독립의 전통적 의미는 사법부 내지 그 구성원인 법관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 다른 국가기관인 행정부나 입법부의 통제 또는 기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시민단체·노동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와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행위주체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세력, 언론을 비롯한 여론의 향배 등 법과 양심 이외의 일체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나아가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 내부의 영향, 즉 '동료 법관으로부터의 독립'과 '사법부가 가지는 최소한의 조직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한다.

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법관과 법관의 의무

법관은 국가의 통치권인 입법·행정·사법의 주요 3권 중 사법권을 담당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그 종사자와는 달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기관으로서, 법관 하나 하나가 법을 선언·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이며, 그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신분을 고도로 보장받고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1헌마557 결정 등 참조).

그러나 법관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직무의 내



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법관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권의 주체로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직무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추호도 공정성과 중립성, 청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의 권위 및 법관의 명예를 지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하여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추127 판결 등 참조).

마) 사법의 책임성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 외에 책임성도 함께 요구된다. 다만, 사법의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등 참조).

바) 사법권의 독립과 책임의 조화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거나 법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본질적 요소로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는 수단으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가치는 아니다.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만 지나치게 강조할 때 공정한 재판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 실현이 저해되는 경우에는 사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사법의 책임성과 관계 속에서 조화·균



형을 이루며 보장되어야 한다.

사) 사법행정권의 의의와 근거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이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주권주의 이념이 곧 사법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등 참조).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국민의 기본권에 기속시키며, 자유민주주의원리와 법치주의원리를 헌법상 기본원리로 채택하였다.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귀속시키고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법권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법원을 통하여 행사된다. 현대 법치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권을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된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위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사법행정권은 법원의 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를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정작용으로, 사법행정권은 이를 위한 법원의 권한이다. 사법행정작용은 사법기관인 법원의 인적·물적 시설을 운영하는 작용으로, 구체적으로는 법관과 법원의 구성원 등의 인사행정, 법원의 조직·구성 등의 운영과 관리, 물적 시설의 관리, 회계·예산·보수와 같은 재무관리 등을 포함한다.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속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도록 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



· 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제19조 제2항).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사법권을 위임받은 법원이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이나 외부세력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법원은 조직과 운영 및 기능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독립하여야 한다. 이는 법원의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법부에 부여된 사법행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행정권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므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조정·조율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아) 법원의 재판의 의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바268 결정 등 참조).

3)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인정되는 사법행정권의 법령상 근거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에 대해 '법원장과 법관 사이 가교 역할, 법원장의 권한 대행, 법원장의 위임받아 사건배당 주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을 보좌하면서 각종 기획 업무의 실무를 총괄, 법관 평정 관여 및 사무분담과 관련하여 법원장을 보좌'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764, 42766쪽).

(2) 법원행정처 처장은 2010. 3. 12.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후배를 바르게 이끌어 보겠다는 의도로 재판의 일반원칙과 방법론을 강조하고 지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소속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 사무분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석부장이라는 자리에 있고, 바로 그 점에서 내부로부터 사법권 독립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고, 2015. 3. 20.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법원 구성원들 모두 합심 협력하기 위해서 법원장과 소속법관 등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수석부장님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87691 ~ 187692쪽).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각급법원에서 그동안 사실상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에게 사법행정권자인 소속 법원장을 보좌하는 업무 및 역할을 관행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원조직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며, 나아가 수석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보좌한다는 일반규정이 각급법원의 내규에 존재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형사수석부장판사가 T지방법원장을 보좌하는 사실상 업무영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상 관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사법행정권자인 소속 법원장이 권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거나 법원장의 구체적 위임 또는 지시가 없는 이상, 수석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에게 인정되는 사법



행정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에 게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인정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

(1)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되도록 하고 있고(제101조 제2항),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102조 제1항), 법원조직에 관해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제102조 제3항), 법원의 조직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법원의 구성과 조직을 법률에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조직의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원조직 법정주의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직법은 각급 법원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법원조직 법정주의 및 법원조직법상 조직·권한근거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법원조직법 제9조, 제13조 제2항)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각급 법원장은(같은 법 제26조 제3항, 제29조 제3항) 소속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2)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권자의 보좌기관으로는 법원행정처 처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AA(제67조 제3항), 법원행정처 AA·실장 또는 국장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제71조 제3항), 사법연수원장을 보좌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제73조 제3항),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보좌하는 수석연구위원(제76조의2)이 있다. 법원조직법상 사법행정권자의 권한대행기관으로는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의 선임대법관(제13조 제3항), 고등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행정법원장, 가정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할 수 없을 때의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제26조 제4항, 제28조의2 제4항, 제29조 제4항, 제37조 제4항, 제40조의2 제4항)가 있다.

이처럼 법원조직법은 권한보좌기관과 권한대행기관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 법원



조직법은 수석부장판사의 조직법상 근거규정[구 법원조직법(1961. 8. 12. 법률 제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6조]이 최초로 생긴 이래로 계속 수석부장판사를 소속 법원장의 권한대행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3)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2016. 3. 26. 'T 수석부장판사 재편 방안'문서를 작성하였고, 위 문서에는 수석부장판사의 '법령에 따른 권한'으로 법원장 권한대행과 '예규 등에 따른 권한'으로 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배당을 주관하고, '사실상의 업무 영역 및 역할'으로 '■ 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보좌 ○ 법관 및 재판과 관련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법원장의 참모 역할 ⇨ 법령이나 내규에 명시적 근거규정이 있는 것은 아님, ○ 각종 기획 업무의 실무 총괄', '■ 소속 법원 법관들과 법원장 사이에서 가교 역할 ○ 법관사회의 구심점으로 내부 소통 핵심 역할', '■ 법관 및 재판연구원 평정, 사무분담 등의 초안 작성'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87530 ~ 187531쪽).

다)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석부장판사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각급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건배당사무를 담당하고, 각급법원의 위임전결 내규에 근거하여 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일정 사항에 대해 전결할 수 있으며(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 제2항), 각급법원의 내규에 따라 일정한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사무는 소속 법원장의 구체적 위임 또는 지시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조직법상의 근거를 둔 구체적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법령상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T지방법원장이 구체적 위임이나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통해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사법행정권을 위임할 수 있으므로,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여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법행정권이 있는지, 만



약 그러한 권한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 당시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이 이를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위임, 지시 또는 명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4) T지방법원장에게 인정되는 사법행정권의 내용 및 범위

가) 검사의 재판사무 직무감독권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관의 이중적 지위

법관은 재판권 행사와 관련된 기능법적 지위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무관계에 있는 상급기관과 사이에 직무법적 지위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법원 및 그 소속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하며(제13조 제2항),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등은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제26조 제3항, 제29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도 공무원의 지위에서 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관의 직무법상 지위는 전적으로 기능법적 지위, 즉 헌법이 정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2) 재판사무의 의의 및 종류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법원에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정권을 부여하였다. 법원조직법에서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



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9조 제2항),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22조),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서는,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제1조), 대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 및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감사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도록(제5조 제3항)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장은 2010.부터 위 재판사무규칙에 따라 T지방법원에 대하여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이 대법원에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정권을 부여한 취지, 법원조직법에서 재판업무와 재판사무 또는 사법행정사무를 구별한 취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의 취지, 실제 서울고등법원장이 T지방법원에 대해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점, 사법행정권이 재판권의 행사나 재판제도를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행정사무를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의 재판사무는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에 관한 재판상 직무(이하 '재판업무'라 한다)와 재판과 관련된 행정사무(사건



집수, 기록관리, 문건집수, 기록보존 등)를 의미하는 재판 관련 행정사무로 구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판사무 중 재판 관련 행정사무는 사법행정사무라는 성격상 사법행정권자가 지휘·감독할 수 있다.

(3)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할 의무가 있으며¹¹⁾,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은 사법부는 사법이 법 규정에 맞게 작동하고 사안에 적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통틀어 직무감독권의 행사라 한다. 그런데 직무감독권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법관의 독립과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구 법원조직법에는 "이 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구 법원조직법(1987. 12. 4.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¹²⁾ 제3항], 사법행정상 지휘·감독권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반조항을 두었으나, 위 조항은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 본 헌법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취지, 법관을 독립한 헌법기관으로 정한 취지, 사법행정권의 의의와 근거에 구 법원조직법에서 일반조항을 두었던 취지를 종합하면, 사법행정권도 궁극적으로 사법권 독립 내지 법관의 독립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므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11) 법관윤리장령 전문

12) 본조항은 1973. 1. 25. 법률 제2448호의 제12조의4로 신설되어 1981. 1. 29. 법률 제3362호로 제12조의4 제3항으로 개정되어 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전면 개정되어 삭제되었다.



안 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관은 사법행정권자로부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지만, 계속 중인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 즉 재판업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법관의 조직법상 상위기관인 사법행정권자는 법관의 독립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할 수 있으므로,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대하여 사전적·사후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간섭을 할 수 없다. 즉, 사법행정권자가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만약 검사의 주장처럼 사법행정권자의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을 허용하면, 개별 법관이 조직법상 상관인 사법행정권자의 재판에 대한 지시·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해석론은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주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관의 재판권 행사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사전에 그 오류의 시정을 구할 수 없고, 사후에 심급제도를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심급제도와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것이다.

라) 더욱이 국민주권주의는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이나, 국민주권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곧바로 사법행정권자가 국민을 위하여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해야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처럼 대법원장이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보임한 것은 사실이나, 사법행정권의 총책임자인 대법원장의 형사수석부장판사 보임만으로 바로 대법원장이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재판업



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 규칙,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을 뿐(법원조직법 제9조 제2항), 수석부장판사에게 직접 위임할 수 없다.

마) 검사는 사법행정권자가 법관의 중대한 직무의무위반, 직무해태, 품위오류행위 등 사법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위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사법신뢰 훼손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6조 제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에 대하여 파면을 제한하여 재판의 독립에 필수적인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관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성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를 규율하는 법관징계법에 의하면, 징계사유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및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제2조)이고,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정직·감봉·견책이 있으며(제3조), 징계사건의 심의·결정은 법관징계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제4조)(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9헌바34 결정 등 참조).

이처럼 법관의 중대한 직무의무위반, 직무해태, 품위오류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관징계법이 사법행정권자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자가 징계권과 별도로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

바) 사법행정권자의 직무감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업무에는 특정 사건 또는 특



정 유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와 같은 실체형성행위(판결, 결정, 명령, 중간판결적 판단, 판결문의 표현방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기일지정이나 절차진행과 같은 실체형성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형성행위가 포함된다. 재판사무 중 일반적인 사건 처리의 독려, 폐지된 법령을 적용한 것과 같은 명백한 실책¹³⁾에 대한 사후적 주의 촉구, 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재판일반원칙에 대한 설명 또는 주의환기 등은 재판 관련 행정사무에 속해 사법행정권자의 정당한 직무감독권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업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요구 내지 요청, 권고하는 것은 직무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판관여로 허용될 수 없다.

(4) 검사의 법령·제도상 재판업무에 대한 직무감독권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대법원 규칙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재판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 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 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고(제5조 제2항),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과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5조 제3항). 법관윤리강령 전문은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를 갖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윤리강령은 직무외 활동의 제한에 관한 조문(제5조 제2항)에서 법관은

13) 단지 법관의 법 적용에 잘못이 있거나 또는 절차가 법령에 합치되지 않게 진행된 경우는 명백한 실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은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직무외 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법관윤리강령이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T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 규칙들은 T지방법원장에게도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종래 대법관이 각급 법원을 순회하면서 재판사무감사를 실시한 사실, 서울고등법원장은 2010년부터 위 규칙에 따라 T지방법원에 대하여 재판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법관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이 위 감사에서 개별 법관에게 계속 중인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시·요구하였다거나, T지방법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소속법관에게 계속 중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진행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시·요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오히려 법원행정처의 업무편람에는 행정사무감사 범위에서 구체적 사건의 진행, 판결내용 등을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나)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에 기획제1심의 관의 분장사무에 대해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칙 중 위 분장사무표는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제1심의관에 대한 것으로,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T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



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분장사무표는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의 선정·취소·재배당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을 선정하고(제3조) 배당하며(제5조),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이 재판 사무시스템에 등록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제4조), 재판장이 적시처리를 위해 법원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규가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T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 장기미제 보고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미제사건 처리예규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연 2회)으로 파악하여 사건카드를 작성하여 사건진행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조, 제4조), 위 사건카드를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도록(제6조)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예규가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T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마) 판사근무성적평정 및 연임심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이 T지방법원장의 구체적 위임 내지 지시를 받아 T지방법원 소속 형사법관의 근무성적평정 초안을 작성하는 등 T지방법원장의 법관 근무성적평정을 보조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 42764, 48727, 187531쪽).

사법의 독립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인적 자원으로 사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판사에 대한 평가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 없이는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를 그 직에서 배제하여 사법의 책임성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히 판사의 근무성적은 그것이 공정한 기준에 따를 경우 판사의 사법운영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요소에 비하여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결정 참조).

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규칙 제4조 제2항은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재판업무에서의 법관의 행동을 지시 또는 비판하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평정을 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법행정권자는 법관근무성적평정에 법관이 계속 중 사건에 대해 장래에 어떻게 처리하고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지시'를 포함하여서는 안 되며, 간접적 지시, 심리적인 영향력행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법관근무성적평정에 법관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어, 만일 그러한 비판이 없었더라면 법관이 어떤 다른 결정을 내릴 것임에도 직무평가에 의해서 법관이 특정한 의미 내지 방향으로 어떤 절차적·실체적 결정을 내리도록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법관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된다.



또한, 법관인사규칙 제15조의2는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법행정권자는 연임심사를 통하여 재판업무에서의 법관의 행동을 지시 하여서는 안 되고, 간접적 지시, 심리적인 영향력행사도 하면 아니 된다. 따라서 사법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 및 연임심사를 통하여 개별 법관의 재판업무에 대하여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

더욱이 위 규칙들이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T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규칙들은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바) 합의부 내의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의 관계

합의부 내에서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서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하고(법원조직법 제27조 제2, 3항, 제30조 제2항), 기일을 결정하고, 소송을 지휘할 권한(민사소송법 제135조,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을 가진다. 즉,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감독권 및 소송법상 소송지휘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66조 제1항은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업무에 관하여 부장판사와 배석판사가 동등한 표결권한을 갖는다. 부장판사가 재판업무에 관하여 배석판사의 상관은 아니며, 합의부의 모든 구성원은 구체적 사건의 결론도출에 동일한 임무와 책임을 갖는다. 통상 배석판사는 부장판사와 사건에 대한 합의를 통해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고, 판결문 초고를 수정하는 것 또한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일 뿐, 부장판사가 판결문초고를 배석판사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배석판사의 독립



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사건처리에 관한 표결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구체적 합의과정 없이 자신의 의견대로만 판결문 초고 작성을 지시하는 것은 배석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장에게 배석판사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위한 중요한 판사평정의견서를 제공하나, 이는 법원장의 근무평정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것일 뿐이고, 평정대상도 근무성적, 자질, 특기사항 등 일반적 항목에 대한 의견서일 뿐이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사법행정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재판업무에서의 법관의 행동을 지시 또는 비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시·군법원 운영에 관한 예규

시·군법원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제4항은 상주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주 1회 이상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처리를 위한 법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훈시규정일 뿐만 아니라 법정개정에 관한 원론적인 규정으로, 재판사무 중 재판업무 이외의 부분에 대한 규정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예규가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T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아)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는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관이 변호사, 검사, 일반인과 법정 이외 장소에서 면담하는 절차에 관한 행동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예규가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T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위 예규는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직무감독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자) 징계관련 권한

법관징계법에서는 징계청구권자로 '대법원장, 대법관,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각급 법원장'으로 정하고 있고(제7조 제1항),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4조 제1항),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제2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관징계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여하는 자는 징계청구권자(대법원장, 대법관, 법관의 소속 법원장), 법관징계위원회, 징계처분권자인 대법원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법관의 징계권한에 대한 명시적 법령상 근거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관의 징계에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검사의 재판 관련 사법지원권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법행정권의 한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실무제요'나 '재판실무편람'을 출간하여 각급 법원에 배포하여 개별 법관들이 이를 재판업무에 참고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의 주장처럼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부와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재판의 적정·신속을 지원하기 위해 참고자료를 전달



하는 것과 같은 사법지원권한은 사법행정의 한계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사법행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 사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조언하여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관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론은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주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에 사법지원심의관의 분장사무에 대해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재판제도와 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칙 중 위 분장사무표는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지원심의관에 대한 것으로,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T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법지원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고, 나아가 위 규칙은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사법지원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설령 수석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대한 사법지원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그 권한에는 당연히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걱정된 재판을 지원하는 사법지원권한을 행사하는 의사로 AK 부장판사를 상대로 조언 및 지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검사의 재판 관련 사법정책·공보·대외업무를 위한 협조요청권한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법행정권의 한계

검사의 주장처럼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대외업무를 하기 위해 법관을 상대로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협조요청권한은 사법행정의 한계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사법행정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제도를 구체화하여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법행정권자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대해 대외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협조를 요청하여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관의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론은 사법행정권자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통로를 주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법관의 독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2)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분장사무표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기획조정실, 법원행정처 공보관 분장사무표에 사법정책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의 분장사무에 대해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국회, 행정부처 그 밖에 대외관계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항, 법원홍보정책의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칙 중 위 분장사무표는 법원행정처 소속 사법정책심의관, 기획제1심의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에 대한 것으로,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T지방법원 소속법관에 대한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 규칙은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3)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에서는, 각급 기관의 공보관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재판부나 실·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고(제5조 제1항), 각급 법원의 공보관은 해당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의 지휘를 받아 홍보업무에 관하여 해당 법원장을 보좌하고, 재판보도와 일반보도에 관여한다(제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내규에 의하면, 각급법원의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보좌하여 당해 법원 소속 공보관의 홍보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 그러나 수석부장판사의 공보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위 내규에 의하더라도 소속 공보관에 대해서만 있을 뿐, 소속 법원의 개별 법관에 대해 홍보업무를 위해 행사할 권한은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수석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대한 홍보업무 관련 자료제공 요청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그 권한에는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홍보업무 및 사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대외업무를 위한 협조요청권한을 행사할 의사로 AK 부장판사에게 정보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대법원 예규

사건절차진행정보 및 연구관 보고서 등의 보안에 관한 유의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연구관보고서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 뿐,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에게 T지방법원 소속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은 법령상 명백하다. 나아가 위 유의사항은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에 관한



협조요청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라) 소결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재판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T지방법원장에게 그와 같은 사법행정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 당시, ① T지방법원장이 궤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법원조직법 제26조 제4항, 제29조 제4항)가 있어 피고인이 위 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② T지방법원의 내규에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법행정권을 위임하거나 전결사항으로 규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③ T지방법원장이 그와 같은 사법행정권을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 위임 또는 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피고인이 실제로 재판업무에 관하여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정감사 준비업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2015. T지방법원 국정감사 준비업무 중 예상질의 및 서면질의에 관하여 초안작성자가 초안작성을 하면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87948 ~ 187957쪽).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감사의 법령상 한계로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T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및 사법행정권자인 T지방법원장에게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재판부에게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 요청권한을 부여한 명시적 법령상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수석부장판사의 재판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정보제공 요청권한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관의 독립 원칙에 따라 그 권한에는 당연히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T지방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국정감사 준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개별 재판부의 재판의 주요 진행 현황, 향후 계획 등 재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직접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보업무 관련 정보제공요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T지방법원 공보관인 AT 판사가 BR 사건의 법정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재판장인 BS 부장판사와 주심인 BT 판사로부터 판결 선고 후 방청객 일부가 소동을 일으킨 경위에 대해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87559 ~ 187562쪽).

그러나 공보관의 위 업무는 법정에서 일어난 소동과 관련하여 재판장 및 주심판사에게 사실을 파악한 정상적인 공보업무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나 공보관이 공보업무를 하면서 위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 및 절차에 개입 내지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재판장 상대로 발언의 경위 확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보관인 AT 판사를 통하여 언론에 문제로 지적된 법관의 언행과 관련하여 재판장을 상대로 해당발언의 경위를 확인하고, AT 판사가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88101 ~ 188105쪽).

그러나 공보관의 위 업무는 재판장의 재판진행에 관한 발언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자 그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정상적인 공보업무의 일환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나 공보관이 위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내용 및 절차에 개입 내지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병합 권고 이메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2. T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에게 단독재판부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합의부 사건에 대해 '가능하다면 관련사건이 합의부에 있는 경우 합의부에서 단독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해서 함께 재판을 하면 좋겠다.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대부분 합의부에서 병합결정을 해서 한꺼번에 재판을 받으려 할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에 대한 조언은 피고인이 보낸 메일의 문구에도 참고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¹⁴⁾의 이익을 위해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에 관련사건이 있는 경우 합의부에서 병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재판일반원칙에 대한 주의환기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는 재판 관련 행정사무에 대한 조언 또는 권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법정언행 모니터링

14) 이 사건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말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30. T지방법원 소속 형사법관들에게 일부 재판부의 법정방청을 한 후 그에 관한 소감을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 188251 ~ 188256쪽).

그러나 법정언행 모니터링은 같은 법원의 동료 법관들이 서로 다른 재판부의 재판진행을 참관하고 자기 재판부의 재판진행을 참고하는 용도로 시행되는 것으로, 피고인도 동료 법관의 지위에서 다른 재판부의 진행을 참관하여, 이에 대해 형사법관들에게 일반론적 조언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발표에서 특정 재판부의 재판진행에 대한 주의 촉구나 경고 등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소결

피고인이 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행한 업무를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업무에 관하여 사법행정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의 구체적 내용

가) AB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행위

(1)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

피고인이 2015. 2. ~ 3.경 AB 사건의 재판장인 AK 부장판사에게 '여성 대통령이 모처에서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부분은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은 사건이니 이 부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 그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러한 피고인의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



차진행을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2) 구술본 말미 부분 수정요청 및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 내용고지와 AB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 요청

피고인이 2015. 11.경 AK 부장판사에게 '일단 판결 선고를 한 이후에 AB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AB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여성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이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주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전제로 구술본 말미 부분을 추가하고 그 것을 검토하기 위해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AK 부장판사로부터 구술본 말미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2015. 11. 17.과 2015. 11. 18. 구술본 말미를 수정하면서 '이 사건 기사의 허위성, 이로 인한 피해자 명예 훼손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을 먼저 상세히 실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시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전체 설명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AK 부장판사에게 '외교부의 공문을 올 것인데, 양형자료니까 법정에서 AB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러한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요청,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가 선처를 요청한 공문을 보낸 것을 언급해 달라는 요청 및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AB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나) AQ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행위

피고인이 2015. 8. 20. AQ 체포치상 사건 재판장인 AU 부장판사에게 위 판결문의 2~3군데 정도 표현을 직접 지적하며, '이 사건은 다양한 논란이 예상되는데,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일부 논란이 있을만한 표현들이 있는 것 같다. 돈을 다운하는 것이 어떨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8조), 중국재판은 특히 법적 안정성이 요청되므로 재판을 한 법원도 그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불가변경력(구속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이러한 피고인의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언급은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행위이다.

다)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행위

피고인이 2016. 1. 14. 약식사건의 담당판사인 AX 판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주변 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가.'고 물었고, AX 판사가 '같은 방에 있는 판사하고만 상의하였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이 다시 '주변에 있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AX 판사가 동료 판사들과 상의하였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결정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피고인의 발언 동기 내지 의도를 감안하여도 그 자체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절차진행을 유도하는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7) 피고인의 담당 실무관에 대한 착오입력 대응 요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6. 1. 14. AX 판사에게 '공판절차회부결정이 이미 입력되었으니 담당 실무관에게 추후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 물으면 담당 실무관의 실수로 착오 입력되었다고 말하도록 하라'고 말한 사실, AX 판사가 같은 날 BD 실무관에게 '전산입력 결과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누군가 묻는다면 담당 실무관이 전산상 착오 입력한 것으로 답하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는 앞서 본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행위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독립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X 판사에게 전산입력 부분에 대해 담당 실무관의 착오 입력으로 말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8) 소결론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법관의 재판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① 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은 현행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고, ② T지방법원장의 사법행정권(재판사무에 관한 직무감독권, 사법지원권한, 사법정책·공보·대외업무 관련 협조요청권한)은 법관 독립의 원칙상 재판업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T지방법원장이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 당시 이를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위임·지시 또는 명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가 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T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가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와 AK, AU, AX 판사 및 소속 합의재판부의 각 판단 내지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직권남용을 통한 범죄는 뇌물 관련 범죄와 함께 공무원의 대표적인 직무관련 범죄인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위해 부여된 직권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형법 제123조의 입법목적이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AB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1) 중간판결적 판단

AK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중간판결적 판단 요청을 받고 2015. 3. 30. 법정에서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내용의 중간판결적 판단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K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2015. 3. 30.경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을 바탕으로 합의부 내의 논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AK 부장판사의 중간판결적 판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AK 재판장은 이 법정에서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기 전 본인의 생각 및 재판부 내 논의과정에 대해 '당시 변호인 측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고 각종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증명을



하겠다는 취지로 증거신청을 하고 있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이 소문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당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쟁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각종 증거신청은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음에도 변호인이 이를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채택하지 않는 의견이 더 강한 입장에서 증거채부에 대해 배석판사와 의견을 나누었을 것이다. 마침 피고인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좀 밝혀주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김에 이 부분은 검찰이 이미 허위임을 입증했으니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필요없지 않을까. 다만 AJ라든지 다른 증인들에 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위치추적과 같은 증거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 ~ 18쪽). 이처럼 AK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듣기 전에도 이 사건 기사의 허위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행사할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나) AK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재판부의 중간판결적 판단 경위에 대해 '이러한 결정은 중간판결적 심증개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증거채부 결정할 때 채택하지 않는다는 결정의 이유 고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 당시에 BF 판사와 BU 판사와 의논해서 결정한 것은 맞다. 입증책임이 뒤바뀌어져있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AB가 쓴 글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 달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더 이상은 아무런 변론을 하지 말라는 취지보다는 소모적 논쟁을 법정으로 끌고 들어오니 그 부분에 관한 증거신청은 우리가 채택하지 않고 허위라는 점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 나머지 쟁점을 가지고 집중하자는 취지로 제가 법정



에서 말한 것 같다.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과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집중해달라고 얘기한 바는 없다. 재판부가 판단해서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8, 34쪽). BF 판사는 검찰에서 'AK 재판장이 제4회 공판기일에 휴정을 하자마자 배석판사 방에 들어와 AB가 작성한 AD 당일 7시간 보도 행적에 관한 보도의 허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서 그 부분은 허위가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929 ~ 72930쪽). 이처럼 AK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중간판결적 판단을 하면서 그와 별도로 변호인의 증거신청을 기각하기도 하였고, 변호인에게 향후 소송 진행의 방향에 대해 집중할 쟁점에 대해 고지하기도 하였다.

(다) AK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중간판결적 판단요청에 대해 '피고인의 말은 지시한 것은 아니었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해 보면 어떻소. 생각 한 번 해봐 정도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45쪽). 이처럼 AK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지시가 아닌 권고나 권유 정도로 생각하였다.

(라) AK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게 사법행정상으로 지휘권한은 있을 수 있을 텐데 법관으로서 직무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56쪽). 이처럼 AK 부장판사도 당시 피고인에게 재판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 구술본 말미 부분과 판결이유 수정 및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 내용고지와 AB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

AK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요청을 받았고 그 이후에 AB 사건 판결이유가 수정된 사실, AK 부장판사가 피고인의 선고기일 외교부공문 내용고지 요청을 받고 선고기일에 외교부 선처공문의 내용을 AB에게 고지하고 AB의 행위가 부적절하



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K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재판장으로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구술본 및 판결이유를 수정하고, 법적 판단에 따라 선고기일에서 외교부공문에 관한 내용고지 및 AB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더욱이 합의부의 재판은 합의부의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므로(법원조직법 제66조 제1항),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으로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AK 부장판사의 구술본 수정, 선고기일 외교부공문 내용고지 및 형사합의부의 판결이유 수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AK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BF 판사와 판결의 여러 가지 구조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러 구조가 계속 왔다 갔다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24시간이 공적관심사라면 개인의 영역은 협소한 것 아닐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려면 비방이 아주 강하게 들어와야만 명예훼손이 되지, 그 외에는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BF 판사의 생각은 조금 달랐고, 여성 대통령의 내밀한 사생활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그 부분에 대해 주심판사와 얘기하는 와중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7쪽). 이처럼 AK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요청을 듣기 전에도 AB 사건의 판결의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심판사와 재판장 사이에 판결의 이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

(나) AK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10. 21.자 판결문 초고가 11. 18.자로 바뀌는 과정



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그렇게 바꾸라고 지시를 해서 바꿨냐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게 제 대답입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저한테 그렇게 이유를 수정하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말하는 바도 애초에 배석판사의 의견과 같은 식의 구조가 되어 있고, 제가 그동안 쪽 생각했던 것이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다시 수정해보자고 했다. 피고인의 말이 계기가 되었거나 영향을 줬다는 것은 맞지만, 다시금 찬찬히 생각한 다음에 합의를 했다고 보면 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7 ~ 28쪽). BF 판사는 검찰에서 '둘 다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써야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었는데 AK 부장판사가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합의된 것이 AJ와 AE를 나눠서 무죄 판결을 작성하던 중, AK 부장판사가 2015. 11. 18.경 제 의견과 같이 둘 다 허위의 사실이고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것 같다는 식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제가 이미 의견을 냈던 부분이라 쉽게 수긍하고 판결문을 구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956 ~ 72957쪽). 이처럼 AK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구술본 수정요청을 받고 곧바로 그 지시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주심판사와 합의를 거쳐 판결문 초고를 수정하였다.

(다) AK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말이 제게 어떤 결재를 받거나, 지시하거나 그에 따라 제가 판단하거나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듣고 우리 배석판사와 얘기를 해 보는 것이라는 정도였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48쪽). 이처럼 AK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을 권고나 권유 정도로 생각하였다.

(라) AK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외교부공문 내용고지 경위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합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선고하기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있듯이 피고인이 외교부에서



선처를 요청하는 문건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법정에서 외교부공문에 대해 얘기해 준 이유는, 첫째는 당신을 처벌해달라고 정부부처에서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는 삼권분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선처해달라고 하는 것은 유죄일 때 형을 감해달라는 취지이다. 우리는 당신을 무죄로 선고하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있는 국가라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외교부는 선처를 요청하지만 우리는 아예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로 말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33쪽). 이처럼 AK 부장판사는 독자적 판단 이유를 가지고 법정에서 외교부공문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마) AK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고를 다 하면 한 번 더 정리해서 강조점을 두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구술본은 배석판사에게 선고 끝나고 나면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나 간략하게 작성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을 해서 배석판사가 작성해 온 것이다. 피고인의 구술본 말미 수정 요청을 받고 제 견해대로 배석판사에게 바꾸자고 말한 것 같다. 주심인 BF 판사가 반대의견을 표시하지는 않았다. AB 선고는 구술본의 내용을 읽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36 ~ 37, 62쪽). 이처럼 AK 부장판사는 주심인 BF판사와 구술본 말미부분 수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하였고, 작성된 구술본 말미에 따라 선고하였을 뿐이다.

(바) 앞서 본 것과 같이 AK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재판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 AQ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재판관여

AU 부장판사가 2015. 8. 20. 피고인으로부터 판결문의 양형이유 수정요청을 받고 BQ 판사와 함께 양형이유를 수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U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 및 재판부의 합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판결문의 양형이유를 수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합의부의 재판은 합의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므로(법원조직법 제66조 제1항), 재판장의 의사와 독립된 것으로 재판장이 혼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형사합의부의 판결문 양형이유 수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AU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BQ 판사와 같이 의자를 놓고 앉아서 판결문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칠거나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한 부분은 없을가에 대해 서로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의사의 합치를 본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양형이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결론이나 양형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7 ~ 18, 24쪽). 이처럼 피고인은 AU 부장판사에게 양형이유를 어떻게 고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AU 부장판사는 BQ 판사와 합의를 거쳐 양형의 이유를 수정하였다.

(2) AU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말을 듣고 권유 또는 조언 정도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BQ 판사님과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재판장이 언론이나 여론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조언으로 기억한다. 지시라고 생각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17, 23쪽). 이처럼 AU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지시가 아닌 권유나 권고 정도로 받아들였다.

(3) AU 부장판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사이에 구체적 재판업



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 이해한 적은 전혀 없다. 판결문 수정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당했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서 제29 ~ 30쪽). 이처럼 AU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에게 재판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

AX 판사가 2016. 1. 14. 피고인으로부터 주변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볼 것을 요청받고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약식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X 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동료 판사들과 논의를 거쳐 법적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약식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재판관여행위와 AX 판사의 약식명령 발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AX 판사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제안하였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지 다른 판사들과 상의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이고, 최종결정 전 다른 판사들과 종종 상의한다. 공판절차에 회부해도 정식재판 담당판사가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니 공판절차 회부 지시를 취소하고 더 중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6, 38, 40쪽). 이처럼 AX 판사는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들은 후 실제로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동료 판사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약식사건에 대해 공판회부 대신 약식명령을 발령하



었다.

(2) AX 판사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가 이례적이긴 하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다른 형사단독판사들과 상의해보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종 결정 전에 선배법관으로서 한 조언으로 받아들였다. 피고인이 결정을 반복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다. 다른 판사들과 상의해보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46 ~ 47쪽). 이처럼 AX 판사는 피고인의 요청에 대해 지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배법관의 조언으로 생각하였다.

(3) AX 판사는 검찰에서 '판결 선고라면 구두 선고하면서 바로 효력을 갖는 것이지만, 공판회부결정문에 날인하기 전에 한 공판회부지시는 그것만으로는 공판회부결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47쪽). 이처럼 AX 판사는 당시 약식사건에 대해 공판회부결정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약식명령으로 절차를 변경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와 AK, AU, AX 판사 및 소속 합의재판부의 각 판단 내지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약식사건 담당 실무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



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28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BD 실무관은 2016. 1. 14. 약식사건의 공판회부 부전지를 받고 공판절차회부서를 출력한 이후 AX 판사의 지시로 공판회부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 BD 실무관은 2016. 1. 18. 공판절차회부 통지서의 결재요청을 취소하면서 공판절차회부 통지서를 삭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담당 실무관이 약식사건 후속절차를 보류하고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한 행위는 약식사건의 담당판사인 AX 판사의 판단 및 약식명령발령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절차를



한 것으로 AX 판사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BD 실무관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약식사건 담당실무관의 정식재판회부시 업무처리 절차(제17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는 재판사무시스템의 권한담당자로부터 각급 법원의 사용자들이 재판사무시스템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제5조, 제6조)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직무를 행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법원사무관등'이라고 칭하고 있으며(제25조 제1항), 그 하위직인 법원서기 및 법원서기보는 법원사무관등 및 판사를 보조하는 입장에서 재판참여사무를 하고 있다. 법원사무관등이나 법원서기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형사소송법상 효과 있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사무관등의 직무 중 고유의 권한이 있는 직무는 ① 재판장의 인증을 요하는 경우로서 각종 조서의 작성(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② 법원의 결정을 요하는 경우로서 공시송달의 시행(제64조) 등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448조 ~ 제458조)에 약식사건의 담당 실무관에게 명시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명백한 점, 형사소송절차에서 실무관은 판사의 결정 내용에 따른 전산입력, 송달, 소환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행정예규에 따른 담당 실무관의 재판사무시스템 사용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 규정만으로 약식사건 담당 실무관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AX 판사는 검찰 등에서 '담당 실무관에게 공판회부라고 적힌 부전지가 붙은 기록을 전달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제안을 받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실무관에게 후속절차를 잠시 보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동료 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후 약식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공판절차회부서에 날인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3858-34, 36쪽, 174824쪽). 담당 실무관은 검찰에서 '당시 서무실무관을 통하여 차후 통지절차를 보류할 수 있겠냐는 낚아스의 의미의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고, 이 메시지를 들은 직후 담당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와달라고 하여 판사실에 갔더니 판사님께서 다시 약식명령으로 변경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4156-16쪽). 이처럼 AX 판사는 공판절차회부서라는 결정문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의 요청으로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듣고 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결정하였고, 다시 직무집행 보조자인 담당 실무관에게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것을 지시하여 담당 실무관은 공판절차회부통지서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송인권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2-17

판사 김택성 _____

판사 김선역 _____



별지

AB 말미 수정판

요약 하자면, 이 사건 공소제기 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에 대해 본 재판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AE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AE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AE 대통령이나 피해자 AJ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단하는 범위는 이 사건 기사, 즉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한정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보편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도 무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인의 인권과 공익이 서로 조화되는 건전한 언론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런 문구를 더 보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다만..)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대한민국이 AD 침몰 사고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사고 수습 등에 관해 행정적, 정치적, 궁극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사고 당시 애정관계에 있는 AJ와 함께 있느라 AD 침몰 사고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런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공직자와 사인을 희화화하는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오로지 공익적 목적만 있었다고 한다면 사인인 AJ의 실명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



입니다. (‘오로지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삭제 의견)

하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제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여야 함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도 명시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문제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되도록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 공직자의 지위가 높거나 권한이 클수록 보장의 정도도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인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것이 공적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 쪽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 할 듯..)~~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고인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소수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이고, 외국 내지 외신 기자의 언론의 자유만 차별적으로 제한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이며, 피고인이 일본 내지 일본 국민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측면어도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또한 언론의 자유의 보호 영역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기사, 즉 피고인의 행위에 부적절한 점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함부로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N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적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있어 언론 자유의 가치를 우위에 두어 심사하여야 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2-17

다는 점과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별지

AB 말미 재수정판

요약 하자면, 이 사건 공소제기 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에 대해 본 재판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 AE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기사가 AE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AE 대통령이나 피해자 AJ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단락 부분에 AB의 이 사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결과적으로 훼손되었다는 점을 설시한 다음,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의 범위 내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단락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본 재판부가 이와 같이 판단하는 범위는 이 사건 기사, 즉 피고인의 행위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에 한정됩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보편 타당하고 적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도 무제한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개인의 인권과 공익이 서로 조화되는 건전한 언론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런 문구를 더 보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대한민국이 AD 침몰 사고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사고 수습 등에 관해 행정적, 정치적, 궁극적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사고 당시 애정관계에 있는 AJ와 함께 있느라 AD 침몰 사고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



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를 비판하고자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런 허위 사실을 기초로 공직자와 사인을 희화화하는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오로지 공익적 목적만 있었다고 한다면 사인인 A의 설명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었는데 의문입니다. (∴ 오로지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삭제 의견)

하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제도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여야 함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도 명시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문제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되도록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 공직자의 지위가 높거나 권한이 클수록 보장의 정도도 넓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적인 존재인 이상,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것이 공적 사안에 관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 대통령이 피해자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 쪽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 할 듯..)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고인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소수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이고, 외국 내지 외신 기자의 언론의 자유만 차별적으로 제한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이며, 피고인이 일본 내지 일본 국민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측면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 또한 언론의 자유의 보호 영역 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기사, 즉 피고인의 행위에 부적절한 점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함부로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2-17

~~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N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적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있어 언론 자유의 가치를 우위에 두어 심사하여야 한다는 점과 '의심스러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별지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조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1조

-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제102조

-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5조

-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원의 권한)

-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법률상의 쟁송(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제1항은 행정기관에 의한 전심(전심)으로서의 심판을 금하지 아니한다.
- ③ 법원은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감독한다.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제9조(사법행정사무)

-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대법원장)

-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9조(법원행정처)

-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법령·문헌·사료 등 정보를 조사·수집·편찬하고 이를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제26조(고등법원장)

-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7조(부)

- ① 고등법원에 부를 둔다.
-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둔다.
- ③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2(특허법원장)

- 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 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지방법원장)

- ①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 ② 지방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부)

- ① 지방법원에 부를 둔다.
- ②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7조(가정법원장)

-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2(행정법원장)

-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 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 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보직)

- ①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합의의 방법)

- ① 합의심판은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 ② 합의에 관한 의견이 3개 이상의 설로 나뉘어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에 따른다.



1. 액수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최다액(최다액)의 의견의 수에 차례로 소액의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최소액의 의견
2. 형사의 경우: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조직)

-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 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직명)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⑤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3조(조직)

- ① 사법연수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교수 및 강사를 둔다.
-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연수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6조의2(조직)

-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구 법원조직법(1961. 8. 12. 법률 제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¹⁵⁾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고등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법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고등법원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둔다. 지방법원장은 판사로써 보한다.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관하지원의 법원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지방법원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장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실장·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5) 본 조항은 1959. 1. 13. 법률 제516호로 신설되어 현재 법원조직법 제26조로 유지되고 있음.



⑤ 행정각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보·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보)하되, 특정직공무원으로만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국장은 중앙행정기관마다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차장(국무조정실 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 이상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대통령비서실)

-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20조(교직원의 임무)

-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검찰청법

제13조(차장검사)

-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 ②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법관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제4조(법관징계위원회)

-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를 개시)

-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청구권자는 해당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징계청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26조(징계등 처분 및 집행)

-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2-17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② 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 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0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공판조서의 서명 등)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64조(공시송달의 방식)

- ①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②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79조(재판장의 소송지휘권)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한다.

제450조(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재판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사무관리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원칙)

재판사무 등은 적정,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능률과 봉사를 지향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분담)

① 각급법원(지원 포함, 이하 같다)의 재판사무 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법원의 장이 정한다.

제5조(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와 보고)

① 대법원장은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법원의 장은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소속법원의 법관 기타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하기관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의 장은 연중계획에 의하여 매년 1회 재판사무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체 법원과 관하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감사결과를 대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원홍보업무에관한내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보고:사법행정의 기본정책에 관한 보고를 말한다.
2. 재판보고:재판의 대상이 된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과 결과에 관한 보고를 말한다.
3. 일반보고:사법부 또는 개개 법원의 사법행정 기타 일반적 사항에 관한 보고를 말한다.

제3조(홍보업무)

①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법원홍보정책의 기획과 운영 및 언론보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공보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법관 또는 법원직원으로 하여금 공보관을 보좌하여 홍보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법관 중에서 지정한 사람
제5조(업무 협조)

① 각급 기관의 공보관은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재판부나 실·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공의 요청을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공보관의 직능)

① 법원행정처 공보관은 홍보업무에 관하여 법원행정처 AA를 보좌하고, 정책보도, 재판보도 및 일반보도에 관여 한다.

② 각급 법원의 공보관은 해당 법원장 또는 수석부장의 지휘를 받아 홍보업무에 관하여 해당 법원장을 보좌하고, 재판보도와 일반보도에 관여한다.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18. 1. 31. 대법원규칙 제2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② 실·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 실·국장의 분장사무, 실·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과 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④ 법원행정처 AA 밑에 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둔다.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 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⑥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인사 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⑦ 공보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관 밑에 심의관을 둘 수 있



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법관윤리강령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제1조(사법권 독립의 수호)

법관은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제2조(품위 유지)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

제3조(공정성 및 청렴성)

- ①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 ② 법관은 혈연·지연·학연·성별·종교·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직무의 성실한 수행)

- ① 법관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 ② 법관은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 ③ 법관은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한다.
- ④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 ⑤ 법관은 교육이나 학술 또는 정확한 보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



제5조(법관의 직무외 활동)

- ① 법관은 품위 유지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종교·문화단체에 가입하는 등 직무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법원사무관리규칙

제16조(결재)

- ① 문서는 당해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당해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때에는 미리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결재권자가 휴가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다.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법관 및 사법보좌관(이하 "법관 등"이라 한다)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함에 있어 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치거나 판사회의가 없는 경우 법관 등의 의견을 들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후 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판부의 종류(합의부 및 단독판사)와 수, 명칭 및 배당순서



2. 법관 등의 배치 및 분담사무
3.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 유고시의 대리순서
4. 합의부 구성판사의 합의사건에 대한 주심분담비율(재판장에 대해서는 주심사건을 분담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5. 사건배당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6. 「법원조직법」제7조 제3항 단서, 제32조 제1항 제1호,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제2조 단서 제4호, 제3조 제1·2호 단서, 제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합의부(이하 "재정결정부"라 한다)의 구성
7.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른 당직법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무분담의 확정)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법관 등의 인사로 인하여 그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등이 정하여지거나 변경되면 지체 없이 법관 등의 사무분담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4 (합의부 재판장의 보임)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합의부 재판장을 부장판사 재직기간과 종전에 부장판사로서 단독판사의 업무를 담당한 기간, 법조경력,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임한다.

제9조 (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재일2006-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사건(이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한다)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처리가 지연될 경우 막대한 규모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2.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가 정하는 중요 선거범죄사건 등 다수당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다수 있고, 사건의 성질상 일정 시점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사건
3. 처리가 지연될 경우 불필요하게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사법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는 사건
4. 사안의 내용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5. 그 밖에 당사자의 수,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처리시한 등에 비추어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3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절차)

- ① 주무과장은 접수된 사건이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선정보고사건"이라 한다)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 ② 재판장은 사건의 심리 중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따라 제1항의 선정보고사건 및 제2항의 선정요청사건 중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선정한다.
- ④ 사건배당 주관자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제2항의 요청이 없는 사건이라도 제2조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⑤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은 사건 접수시 소장에의 표시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
- ⑥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이 상소된 경우에 상소심법원의 사건배당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그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표시 및 등록)

- ① 제3조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의 사건명 기재 우측의 적당한 여백에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라고 붉은 색 고무인을 날인하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전



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②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은 전항의 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 중 사건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공소장 첨부)를 입력한 후 공소장, 소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해당 요지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배당 특례)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친 후 사건의 전문성, 복잡성, 처리시한, 재판장의 인사이동 가능성, 현재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를 지정하여 배당하거나 배당배제를 할 수 있다. 협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다만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전담재판부에 배당한다.

②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질 등을 고려하여 일반사건과 비교한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하여 일반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다.

제6조 (적시처리를 위한 지원)

재판장은 사건의 적시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의 취소)

① 사건배당 주관자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사건을 더 이상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의 선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판장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배당된 사건을 더 이상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이 취소된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사건기록 표지에 날인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표시를 붉은 색으로 지우고, 재판사무시스템에 그 취지를 등록하고, [전산양식 A2730]전산양식 A2730]에 의하여 전자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④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이 종국된 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주무과장 또는 법원사무관 등이 종국보고를 함에 있어 [전산양식 A2730]전산양식 A2730] 중 종국요지 등의 작성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건요지란 등에 그 취지(예 : 판결문 첨부)를 입력한 후 판결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화한 파일을 재판사무시스템에 첨부함으로써 종국요지 등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

제4조 (사건카드 작성)

①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2월 말 및 8월 말 현재 계속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전산양식 A2731]의 「사건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6월이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건카드를 작성한다.

②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사건카드 작성을 통하여 사건진행관리를 검증하고 향후 적절한 사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제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6조 (사건카드 제출)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은 매년 3월 15일 및 9월 15일까지 법원장(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및 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참조 사법지원실장)에게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제4조 제1항의 사건카드를 제출한다.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제2조(평정대상)

① 근무성적과 자질(이하 "근무성적 등"이라 한다) 평정은 판사에 대하여 행한다.

제3조(평정자)

① 근무성적 등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제4조(평정사항)

① 근무성적 등 평정은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②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평정방법)

-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실질처리건수, 종국률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고, 자질에 관한 사항을 평정하는 경우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균형감, 책임감 등이 포함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량으로 평가하되,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 ② 평정자는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 합의부 재판장으로부터, 지원(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 지원장인 지원은 제외) 소속 단독판사에 대하여는 지원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평정에 참고하고, 그 의견서는 평정표에 첨부한다.
-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판사에 대한 평정을 함에 있어 그 국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평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9조(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 ① 판사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한 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

제10조(평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 ①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판사가 고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해당 연도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 ② 제1항의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장은 제2항의 의견서를 제출한 판사에 대하여 평정을 행한 평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대법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견서를 평정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법관인사규칙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 말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 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군법원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상주법원 판사의 사무분담)

- ① 상주법원의 판사로 지명된 법관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법원장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얻어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상주법원의 판사가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 및 상주법원의 사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일정한 원칙(예: '일주일 중 2일 이상 소속 지원의 재판사무를 처리하고, 일주일 중 2일 이상은 상주법원의 재판사무를 처리한다')을 부기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함에 있어,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구체적·개별적인 사건부담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시에는 제2항의 사무 분담처리 원칙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상주법원의 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사무를 분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매주 1회 이상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처리를 위한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법관의 면담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면담 및 접촉의 금지)



법관은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호사 또는 검사와 면담하거나 접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법관이 화해·조정·심문 등 재판절차의 진행을 위한 장소로 집무실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절차에 관련된 문제로 법관이 변호사나 검사에게 집무실에서 면담을 요청한 경우
3. 법원장(지원장 및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법행정상 필요로 하는 경우
4. 검사나 변호사가 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부임인사 또는 개업인사 등을 위하여 방문하는 경우
5. 학술회이나 관혼상제·동창회 등 의례적인 모임의 경우

■약식명령 및 정식재판청구사건 등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9조 (정식재판청구의 사유통지, 사건종결, 기록송부)

- ① 정식재판청구서를 인계받은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정식재판청구통지서를 사용하여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 사유를 통지한다.
- ②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약식사건은 재판사무시스템에 중국사유를 정식재판청구로 하여 입력 처리하되 약식사건기록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 ③ 기록조제는 종전 약식사건기록에서 약식사건기록표지와 약식공소장 및 그 이후의 서류를 분리하여 편철한 후 약식사건기록표지의 약식사건번호 밑 해당란에 공판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고인 이름 밑 또는 옆에 "정식재판청구"라고 주서한다. 구속에 관한 서류(피고인이 구속될 경우)는 약식공소장 바로 다음에 편철한다.

제16조 (공판절차회부)

약식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회부할 때에는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공판절차회부서에 의한다.

제17조 (약식절차의 종결과 기록송부)

- ①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때에는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공판회부통지서를 사용하여 공판회부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한다.
- ② 공판절차에 회부된 약식사건의 종결과 기록조제는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중국사유는 공판회부로 전산입력하고 공판사건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이름 밑 또는 옆에 "공판절차회부"라고 주서한다.
- ④ 약식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약식사건이 공판절차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송기록



과 증거물 송부서"를 첨부하여 약식기록을 공판사건 담당 접수계로 송부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재판서의 경정)

①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

제1조

이 예규는 각급 법원 사무분담에 맞게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 권한이 관리되도록 권한 부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이 예규는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는 각급 법원 법관, 법원공무원과 법원행정처 전산 정보관리국장(다음부터 "전산정보관리국장"이라한다)이 사용권한을 승인한 협력업체직원에게 적용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판사무시스템"은 법관, 법원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으로 'jaepan.scourt.go.kr', 'justice.scourt.go.kr'로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2. "업무시스템"은 재판사무시스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민사, 가사, 형사, 신청, 영장, 조회, 출납 등과 같이 구분 가능한 단위 업무별 시스템을 말한다.
3. "각급 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법원의 지원과 시군법원을 말한다.
4. "권한담당자"는 각급 법원 사무분담을 기준으로 한 각 과의 과장 또는 동등한 역할을 하는 사무관 이상의 법원공무원을 말한다.
5. "협력업체 직원"은 법관, 법원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예규는 별도의 규칙이나 예규가 존재하는 업무시스템을 제외한 재판사무시스템에 적용한다.

제5조 권한부여 담당자와 역할



① 전산정보관리국장, 각급 법원 권한담당자, 각급 법원 소속 전산직 공무원, 정보화심의관이 권한부여자로 지정한 협력업체 직원은 권한부여 담당자로서 각급 법원 사무분담에 따라 재판 사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② 권한부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자에게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1. 코트넷에 등록된 법관과 법원공무원

2. 코트넷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직무상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산정보 관리국장이 승인한 자

③ 권한부여 담당자는 사무분담 변동으로 인한 종전 사용자의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권한을 회수한다.

제6조 사용자의 관리 의무

① 사용자는 사무분담에 따라 재판사무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한다.

② 사용자는 사무분담과 관련 없는 재판사무시스템의 사용 권한 부여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부여 담당자에게 알려 잘못 부여된 사용 권한이 회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권한 부여 방식

①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재판사무시스템 중 특정 업무시스템을 별도 관리 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각급 법원 권한담당자는 [별표 1-1] 또는 [별표 1-2] 양식에 따라 정보화심의관에게 별도 관리 대상 업무 사용 신청을 하고, 정보화심의관은 이를 확인한 후 권한을 부여한다.

② 각급 법원의 권한담당자는 제1항의 별도 관리 대상 업무를 제외한 업무시스템에 대하여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에 따라 권한 부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권한을 부여한다.

③ 각급 법원 전산직 공무원 또는 협력업체 직원은 권한담당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권한 부여 업무를 [별표 2-1] 또는 [별표 2-2] 양식으로 위임받은 후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9-2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6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9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검 사 신봉수(기소), 단성한, 조정호, 김진용, 고영하, 홍석기, 이태협, 최
태은, 신비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유한) D 담당변호사 E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H, I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2015. 8. 12.경부터 2018. 2. 12.경까지 J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J지방법원의 재판장 및 영장전담판사 인선 등 재판부 구성, 사무분담, 법관 근무평정 및 사건 배당, 기획·공보, 인사, 감사 업무 등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집행관에 대한 임면·감독 및 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범행 결의

법원행정처는 언론 대응 등을 위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법원 관련 '중요 사건 및 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각급 법원 기획법관 또는 공보관에게 '해당 법원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되었거나, 예상되는 중요사건 및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 예규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즉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신속히 보고할 것을 수차례 지시·강조해 왔고, 2016. 9. 6.경 긴급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등 회의에 참석한 법원장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법원행정처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달하였다.

피고인은 J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지시·강조 및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필요로 하거나 관심이 있을 만한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고, 각급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내용이 사법부의 부당한 조직 보호 등을 위해 관리·활용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서는 2016. 8.경 J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압류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특정 보관업자에게 보관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압류 사건 현장에 참여한 노무자의 인건비를 부풀려 이



를 편취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2016. 8. 31.경 및 2016. 9. 12.경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서 J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하여 2차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J지방법원 형사과장 K으로부터 보고받고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사무국장 L, 총무과장 M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면서 K에게는 향후 추가 영장이 청구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M에게는 기획법관 N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협조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즉시 O P에게 전화로 보고하였고, P으로부터 N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N에게 검찰의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N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계좌추적영장 스캔 파일을 M으로부터 받기도 하였다.

그 후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에서 2016. 10. 18.경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와 같은 압수수색 사실을 M으로부터 보고받고 알게 되자, 계속되는 수사 상황 및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L, M, K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파악하고, 영장청구서 사본도 검토되거나 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N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한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 또는 승인하는 한편, N을 통해 영장전담판사인 Q, R에게도 집행관사무소 비리 관련 각종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통해 지득한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증거관계,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 및 영장 재판 진행 경과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



들을 통해 수사기밀을 수집하고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 사실

1) 수사기밀 누설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수단으로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하는바, 그 대상과 증거관계 등이 유출될 경우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처 기능이 상실되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법관에 의한 영장 심사' 제도는 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자료인 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영장청구 심사 재판(이하 '영장재판') 심리자료는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등에 누설될 경우 적시의 수사·재판을 통한 실체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등 외부로부터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압력이나 부당한 개입도 유발할 수 있는 등 재판의 독립을 핵심 요소로 하는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직접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외에 범죄혐의자,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수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과 함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서울 S 소재 J지방법원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J지방법원에 접수된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관련 영장청구서와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하고, N이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P



에게 송부하였다.

(가) 2016.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경 J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Q을 불러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의 보고누락에 대해 질책하였고,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N은 같은 날 Q으로부터 영장채판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 진행 상황, 수사 확대 가능성 등 수사기밀을 입수한 후 'J지법 집행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Q으로부터 입수한 수사기밀 및 M 등으로부터 받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토대로, 'T, U의 계좌에서 자기 월급 이외의 많은 입금내역 발견(영장전담판사의 전언)', '2016. 10. 18. 집행관사무실 압수수색 실시', '수사 진행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J지방법원 전체 집행관 및 사무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전담판사가 발부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에 기인하여 이에 대하여는 기각, 추후 전체 집행관 및 사무원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보관업체 등 특정 업체가 거론되고 있고, 다른 모든 법원 집행관사무소도 동일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서울 관내 법원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N을 통해 이를 P에게 송부하였다.

(나) 2016. 10. 21.자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N은 2016. 10. 21.경 'J 집행관사무원 등에 대한 수사 등 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을 토대로, '노무비청구서철 압수됨', '서부지검, 2016. 10. 18.(화)



V(W, X) 소환 조사 : 점심값, 수고비 정도 제공 사실은 인정(대표집행관 전언)', '2016. 10. 21.(금) 총무과 감사계, Y 면담 : T, U에게 부풀린 노무비 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검찰 진술)', '2016. 10. 21.(금) 총무과 감사계, Z 면담 : T, U에게 건당 20 내지 30만원 지급', '2016. 10. 21.(금) 총무과장, T, U 면담 : T은 돈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 U은 수고비조로 받은 것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음', 'J 보관업체가 서울중앙, 서울남부, 고양 등도 담당하고 있어 타 법원 수사 확대 가능성', 'T은 영장청구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추후 수사 예상' 등을 추가 파악하여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N을 통해 이를 P에게 송부하였다.

㉔ 2016. 10. 25.자 1차 벌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N은 2016. 10. 25.경 J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T, U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M 등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입수하는 한편, 위 내항 기재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을 토대로 'J 집행관사무원 등에 대한 수사 등 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2016. 10. 25.(화) T, U 체포영장청구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실시간 위치 확인)', '본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은 본건 수사가 개시되자 공여자를 찾아가 진술조작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 '2016. 10. 24. Z, Y 대질 : Z - T, U에게 동일하게 인원을 부풀려 상납하였다고 진술, Y - Z과 동일하게 부풀린 금액 전부를 상납했다고 진술', '체포영장 발부 시 T, U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등을 추가 파악하여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N을 통해 이를 P에게 송부하였다.

㉕ 2016. 10. 25.자 2차 벌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N은 2016.



10. 25.경 위 (대)항 기재 T, U에 대한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R의 사무실에서, R의 협조로 체포영장청구서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열람한 후 그 중 수사 상황, 향후 수사계획 등에 관한 부분을 직접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같은 날 'J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보고'라는 제목으로 '10. 25. 오후 체포영장 발부', '수사기록 5권 2645쪽 수사보고서(체포 필요성 수사보고) 내용 : 구체적인 범죄사실(강제집행 신청 채권자들로부터 166,185,500원 편취, 보관업자들로부터 148,350,000원 배임수재), 증거관계(Y, Z, V 범행 인정, 업무일지, 수표 사본, 메모지 등 압수, 피의자들 계좌추적 결과), 체포 필요성', '수사기록 기록목록 등에 따른 수사 확대 가능성 : 수사보고서에 노무업자 Y이 집행2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A에게도 부풀려진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업무일지에 그 근거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 있음, 기록목록에 집행3부 사무원 보조로 근무한 AB가 T에게 9회에 걸쳐 11,7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 있음', '집행관 및 타 법원에서의 수사 확대 가능성(T, U의 체포 및 구속 이후, 수사의 불뚱이 어디까지 될지는 미지수임)'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N을 통해 이를 P에게 송부하였다.

(대) 2016. 11. 4.자 범행

피고인이 지시 또는 승인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N은 2016. 11. 3.경 J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 관련 압류 물건 보관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발부한 Q으로부터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수사 확대 가능성 등 수사기밀을 입수하고, 2016. 11. 4.경 'J 집행관사무원 수사 등 상황보고 III'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입수한 수사기밀 및 M 등으로부터 받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토대로 '2016. 10. 28.(금)



T, U 구속영장 발부', 'T, U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AC와 AD로부터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함', '2016. 11. 3.(목) AC, AD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체포영장발부 사실이 사전에 법원에서 T, U에게 유출, 서부지검은 유출경로를 밝히려 노력', 'AC, AD 압수결과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실로 확대가능성 있음, 추후 집행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함'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N을 통해 이를 P에게 송부하였다.

(배)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N, Q[위 (가), (배)항에 한함], R[위 (배)항에 한함]와 공모하여, 2016. 10. 18.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사이에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지지를 위해 위와 같이 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기록으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관계, 향후 수사 계획 등 외부로 유출될 경우 범죄수사 기능과 법원의 재판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수사기밀 및 영장재판 자료를 수집한 후 총 5회에 걸쳐 그 내용을 보고서로 정리하여 이를 P에게 송부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검찰 수사상황 파악 지시

피고인은 2016. 10. 18.경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보관·노무업자들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뿐만 아니라 집행관에게도 돈을 주었는지 여부 및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수사가 확대되는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J지방법원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2016. 9. 12.경 지시에 이어 L, M에게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그 진술내용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서 보고하고, 영



장청구서 사본과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N에게도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K에게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총무과에서 필요한 영장이 있으면 이를 사본하여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M은 이를 감사계장 AE, 대표집행관 AF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6. 10. 18.경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를 사본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총무과에 제공하였고,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집행관사무소 비리 관련 영장청구서가 접수되면 이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한 후 L, M을 통해 피고인과 N에게 보고하였고, L, M, AE, AF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사건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집행관사무소 사무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내역,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집행관들이 비리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과 N에게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 수사가 집행관 및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 J지방법원 사무국장 L, 총무과장 M, 형사과장 K, 감사계장 AE, 대표집행관 AF에게 집행관사무소 비리에 관한 영장청구서 사본 및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L, M, K, AE, AF으로 하여금 영장청구서 사본 입수 및 보고, 사건 관련자의 검찰 진술내용 파악 및 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판 단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¹⁾

1. 이른바 P USB에서 발견된 이 사건 보고문건 및 2차적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P에 대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증거순번 2 내지 6 보고문건(이하 '이 사건 보고문건'이라고 한다)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보고문건은 위 영장에 기한 압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고문건에 대한 당초의 압수는 위법하고(압수 자체의 위법성의 측면), ② 가사 이 사건 보고문건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혐의사실과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고문건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피고인 사건과의 관련성 측면), ③ 나아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초해 영장을 받아 압수한 증거들이나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해 임의제출받은 증거들 및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해 받은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 등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도 하였다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은 제16회 공판기일에 철회하였다. 그리고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도 2020. 8. 18.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철회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만약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자 2011도1839 전원합의



체 결정 등 참조).

다. 이 사건 압수·수색 및 범죄인지 경위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7. 21. 아래와 같은 요지의 압수·수색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하였다.

-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피의자: AG, AH, P, AI**
-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 ① **법원 내 특정 모임 와해 시도**
 - 1. 'AJ' 및 'AK' 관련
 - 2. 'AL 카페' 관련
 - ② **상고법원 정책 추진 과정 사법행정권 남용**
 - 2. AM를 통한 여론 조작 시도
 - 3. 지역 언론을 통한 여론 조작 시도
 - 4. 상고법원 정책 추진 과정 법무부 상대 빅딜 시도
 - 5. AN 명의의 기고문 게재 관련: 피해자 AM에 대한 업무방해
 - ③ **법관과 AO 등에 대한 사찰 및 여론 조작 시도 관련**
 - 1.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 개입 및 여론 조작 시도
 - 2. 상고법원 도입 등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에 대한 사찰
 - 3. AO 및 AP 전 회장에 대한 사찰 및 제재 조치 관련
 - 4. 국회 개헌특위에 배제되어야 할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 5. AQ 사법위원장 AR 변호사에 대한 공청회 토론 방해
 - 6.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운영, 의장 선거 개입 및 여론조작 시도
 - 7. 정치적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지시 등 관련
 - ④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 관여 및 재판 거래 시도 관련**
 - 2. AS 사건 재판 개입 등
 - 3.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청와대 동향파악
 - 4.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 5. AT당 의원 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 개입
 - 6. 청와대 관련 주요사건 재판 개입 등 재판거래 시도
 - 7.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관련 재판거래 시도 및 재판개입
 - 8. AU 변호사, AV 전 부장판사 등 관련



9. AW과 현직 법관이 관련된 형사사건 재판 개입 등

■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1. P의 주거지

2. P의 신체, P이 전속적으로 운행·사용하는 차량,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

■ 압수할 물건

1.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보고서 등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서류 및 물건
2. 위 각 자료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그 전산자료 및 출력물, 이들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노트북 포함), CD, DVD 등 저장매체, USB 등을 비롯한 외부저장장치 등

■ 일부기각 및 기각의 취지

- 기타(범죄혐의 관련부분으로 제한)

2)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2018. 7. 21. P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집행되었고, 검사는 P으로부터 USB(Universal Serial Bus, 이동식 기억장치) 총 5개를 제출받았다(이하 위 USB 5개를 'P USB'라고 한다).

3) 검사는 P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J지방법원 기획법관 N이 작성하여 P에게 송부한 이 사건 보고문건 파일 총 5개를 발견하였고, 이를 압수하였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20. AG, AX, P, N에 대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다. 위 범죄인지서에는, ① N이 영장전담판사 Q, R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작성한 후 보고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 ② AG, AX, P이 공모하여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 ③ N이 J지방법원 총무과장 M과 공모하여 대표집행관 AF, 감사계장 AE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요지를 정리하게 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AF, AE으로 하여금 검찰의 수사상황 파악 및 진술요지를 보고하



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전날인 2019. 3. 4.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고문건을 P에게 송부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② 피고인이 L, M, K, AE, AF으로 하여금 각종 영장 청구서를 사본하고 관련자들의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이 사건 보고문건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²⁾.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본문 가.항 ①과 같이 이 사건 보고문건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압수 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압수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실형 이 사건 보고문건이 당초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본문 가.항 ②주장의 객관적, 인적 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므로, 위 ①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검사가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68호 등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피의자 및 피압수자가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바, 위 사건과 달리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도 하다).

검사는, 이 사건 보고문건이 적법하게 압수된 경우에는 이를 다른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의 특정 판시 부분을 근거로 들고 있다(검사가 인용하고 있는 해당 판시는, "적법하게 압수된 이 사건 각 전자정보 출력물을 피고인 AY 및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Z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교육자지법 위반 혐의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된 부분이다). 그러나 앞서 위 본문 나.항에서 인용한 각 대법원 판결에서는, 압수·수색의 결과를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은 그 이후로도 그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바(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도6775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4341, 2019전도130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일단 적법하게 압수한 물건이라도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사실 사이에 객관적·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위 대법원 2015도9784 판결은 그 사실관계에서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해당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였으므로, 검사가 인용한 판시 부분을 일반적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리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먼저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가) 객관적 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들과 그 사실관계를 전혀 달리하므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다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①, ②, ③ 분류 혐의사실과는 그 유형이나 성격이 아예 다른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④ 분류 혐의사실과는 그나마 일부 사실관계가 유사하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P의 ④ 분류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의 경우에도 사안별로 그 사실관계,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이 각각 다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중 어떤 혐의사실에 대하여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 전부와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인적 관련성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도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P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므로,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당초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P USB에서 발견하여 압수한 이후에는 N을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의 피의자로 인지하였고, 이에 N만이 P과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후에 피고인을 N의 공동정범으로 인지하면서 비로소 피고인도 N과 함께 P을 상대방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까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인



P과의 인적 관련성을 확대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관은 압수된 이 사건 보고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검찰 진술내용이 수집되었다는 사실 등에 주목하여 먼저 N·M의 AF, AE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인지하고, 그 후에 피고인의 L, M, K, AE, A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인지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인 P과 피고인은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의 인적 관련성도 인정되기 어렵다.

4)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별도로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고문건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으로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은 N의 이메일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증거순번 299), ②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은 N, L의 이메일 임의제출에 의한 각 압수(증거순번 395, 397), ③ 이 사건 2016. 10. 25.자 1차 보고문건은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증거순번 99), ④ 이 사건 2016. 10. 25.자 2차 보고문건은 BB의 이메일 임의제출,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각 압수(증거순번 100, 408), ⑤ 이 사건 2016. 11. 4.자 보고문건은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증거순번 101)에 의하여 재차 증거로 수집되었다. 위 각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절차는 적법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5개의 보고문건은 각 별개의



증거수집절차를 통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³⁾

마.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을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 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3) 다만 이 사건의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 증거순번 2 내지 6의 증거들이 이미 채택되어 있고 위 각 증거들은 이들 증거들과 동일하여 중복되는 증거라는 이유로 이들 증거를 채택하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2 내지 6 증거는 당초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로서는 위법수집증거이지만, 그 후 법도의 임의제출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회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고문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상당수는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을 토대로 수집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각 2차적 증거의 유형별로 그 증거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M, B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

(1) 검사가 2019. 5. 28.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증거의 출처 자료에 의하면, 증거순번 70, 74~76, 124, 128, 135, 140, 259, 265~269, 447, 448의 각 증거는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이고, 증거순번 214, 216, 327, 328의 각 증거는 B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이다.

(2) 피압수자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증거순번 438), 피압수자 B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증거순번 462)은 2018. 8. 22. 발부되었고, 위 각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에는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압수함으로써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공무상 비밀누설 범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보고문건 압수 당시의 압수·수색에 관한 관련 법규정으로부터의 실질적 일탈 정도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⁴⁾, 이 사건 압

4) 이 사건 보고문건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된 이후로 ① P 등의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기밀 수집 지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②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③ 피고인의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 제출되었는바,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르면 각 공소사실별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수·수색영장의 발부는 수사절차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일종으로서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료를 압수할 권한을 부여하고 피압수자에게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효력을 지닌다. 그렇다면 실령 위 영장의 기초가 된 이 사건 보고문건 등의 자료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2차적 증거 수집이 위법한 당초의 증거를 직접 이용하여 행하여진 것으로는 쉽사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당초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증거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나)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

(1) 검사가 2019. 5. 28.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증거의 출처 자료에 의하면, 증거순번 81~93, 96~106, 108~122, 127, 129~134, 136~139, 150, 151, 164, 166, 170, 228, 245~248, 250, 253~258, 281, 283, 285의 각 증거는 J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증거이다.

(2) 살피건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제1부에서 2018. 8. 23. J지방법원에 발송한 임의제출 요청 공문 내용 중 이 부분 관련 기재는 아래와 같다.

○ 2016년 발생한 J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원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당시 J지방법원 관계자들이 공모

기재 혐의사실과 사이에 객관적, 인적 관련성의 인정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보고문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라도 이 사건 보고문건이 피고인의 별개 범죄혐의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면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동일 증거와 관련하여 수사가 확대되고 파생 사건이 추가로 인지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행위이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공판에서도 최초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제한 없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압수·수색영장에 혐의사실도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도 당초 압수된 증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무상 다소간의 혼선이 있는 정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고문건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검사가 고의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거나 회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하여 검찰 수사기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수사 중
에 있습니다.

- AE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금품수수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하여 상부에 보
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임의제출을 요청하면서 고지한 혐의사실은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압수함으로써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보고문건에 대한 위법한 압수와 J지방법원의 임의
제출 사이에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 3.항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J지방법원은 자체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임의로 해당 증거를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초의 이 사건 보고문건 압
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이 부분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N, L, AE, BB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

(1) 검사가 2019. 5. 28. 및 2019. 9. 25.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증거의 출처
자료에 의하면, ① 증거순번 177~201, 203~206, 224, 226, 231, 249, 251, 261, 27
1~275, 282, 284, 286, 298, 299, 308, 309, 311, 326, 331, 342, 370~377, 382, 383,
389~391, 394, 395, 401~406, 409~428의 각 증거는 N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② 증거순번 332, 387, 388, 392, 393, 396, 397의 각 증거는 L의 이메일 임
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③ 증거순번 357~366, 368, 269, 380, 381, 384~386, 39
8~400, 429, 430의 각 증거는 AE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④ 증거순번
293~297, 324, 334, 335, 378, 379, 407, 408의 각 증거는 BB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이다.



(2)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㉔ N은 2018. 8. 23.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이 혐의사실로 포함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받았고, 2018. 8. 26.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㉕ L은 2018. 8. 31.에, AE은 2018. 8. 23.에 각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두 사람이 각각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은 당일이다. ㉖ BB은 2018. 8. 17. 검찰에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검찰은 그 이전부터 N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검찰은 2018. 8. 23. 및 2018. 8. 27.경 BB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위 증거들이 압수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N, L, AE, BB은 검사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압수하면서 인지하게 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메일을 임의제출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각 이메일 임의제출은 이 사건 보고문건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N 등은 아래 4. 내지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각 이메일을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의 이 사건 보고문건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이 부분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 증인들의 법정 진술 및 N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AE, N, L, Q, R 등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R의 이메일 진술서, ② 증인 L, AE, Q, N, R, K, M의 각 법정 진술,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580)에는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



받고 진술, 작성되었거나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초한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각 검찰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조서 중 이 사건 보고문건이 별도 임의제출절차로 적법하게 압수되기 이전에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하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은 이러한 진술과 이 사건 보고문건의 절차적 위법과의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어서 이 부분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각 법정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보고문건은 그 후 별개의 증거수집절차를 통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으므로 위 각 법정 진술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위에서는 수사기관의 주요한 증거수집 방법별로 수집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검토하였는바, ㉔ M, B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㉕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 ㉖ N, L, AE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각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당초의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내지 단절되었다고 보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㉗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 중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보고문건(별도 임의제출절차로 압수되기 이전 부분에 한함)에 기초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㉘ 증인들의 법정 진술 및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중 이 사건 보고문건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내용 등은 적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해 이루어졌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⁵⁾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①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음에도, 부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과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인적 관련성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과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사실을 비교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는 M이 공범에 해당하지 않고 위 영장 기재 혐의사실에서는 피고인이 공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적 관련성이 없다. M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는 최소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8. 22. 수색할 장소를 'M의 사무실'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는데, 그 영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죄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피의자: AG, AX, P, N, M
 -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2. 공무상비밀누설
- 가. 피의자 M
- 피의자 M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하게 된 비밀인 T, U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AF에게 알려주어 누설하였다.
- 나. 피의자 N
- 피의자 N은 영장전달 판사 Q, R 등과 공모하여 법원 집행관 비리 수사 확대를 차단하여 법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그릇된 명목으로 '지법 집행관 사무원 비리사건' 관련 기록 검토 과정에서 지득한 수사 기밀이자 공개되지 아니한 영장재판 심리에 관한 자료를 5회에 걸쳐 ○

5)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위법하다는 주장과 별개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가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상의 고유한 위법사유에 관하여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2항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도 본다.



인 P에게 유출하여 누설하였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피의자 AG, 피의자 AX, 피의자 P

- 피의자 AG, 피의자 AX, 피의자 P은 공모하여 J지법 기획법관 N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게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N으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의 집행관 비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한 수사상황 파악 및 수사 확대 가능성 등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의자 N, 피의자 M

- 피의자 N, 피의자 M은 공모하여 J지법 대표집행관 AF, J지법 감사계장 AE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요지를 정리하게 하는 등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AF, AE으로 하여금 검찰의 수사상황 파악 및 진술요지를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한 증거는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중 N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증거가 위 압수·수색영장의 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만 이 부분 증거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구별 없이 제출되었으므로, 각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누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은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N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사실과 비교할 때, 범죄혐의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공범으로 추가되었을 뿐이므로 인적 관련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반면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은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 중 일부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각 혐의사실별 대상자 누구와도 공범관계에 있는 등의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검사는 객관의무에 위배하여, ①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물건에 대하여 이미 압수·수색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② AE이 임의제출에 이의가 없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문을 J지방법원에 발송하였는바,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에 실질적 임의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검사는 J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으면서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J지방법원에서 임의제출한 전자정보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임의제출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잠탈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출자의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 임의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는 임의제출 당시, 즉 압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 26. 선고 2016노333 판결 등 참조).

다.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 경위

1) 검사는 'BC 내 AE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J지방법원 총무과 감사계 사무실 중 AE이 사용하였던 컴퓨터 또는 관련 자료 보관 부분'도 수색



할 장소로 함께 기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8. 8. 2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도, 위 J지방법원 부분은 기각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특별수사제1부는 2018. 8. 23. J지방법원에 아래와 같은 임의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수신자: J지방법원장

제목: AE 전 J지방법원 감사계장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보전 조치 및 임의제출 요청

2. 우리 청에서 수사 중인 2018형제45391호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16년 발생한 J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원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당시 J지방법원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검찰 수사기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한 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AE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금품수수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하여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이와 같은 보고과정에서 AE이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련 문건을 작성·저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문건을 신속히 확보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큼니다.

※ 이와 같은 자료제출에 대하여 AE은 이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된 AE이 J지방법원 감사계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대해 보전조치 및 임의제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만약 하드디스크에 대한 임의제출이 어려우시면, 위 집행관 사무원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된 파일을 추출하여 보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J지방법원 감사담당관 BD는 2018. 8. 24.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하고, AE이 사용하였던 컴퓨터에서 추출한 관련 파일을 저장한 USB 1개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1) 먼저 임의제출에 실질적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 공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 기각사실이 기



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E이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출 권한이 있는지 자체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의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제출에 대한 AE의 동의 여부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 당시의 제반 상황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 의사에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J지방법원은 검찰의 임의제출 요청 공문을 받은 후 ① 임의제출에 협조하는 방안, ② 임의제출을 일단 거부하고 추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제공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J지방법원은 임의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취지 등에 비추어 공무소의 경우에는 수사에 협조할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만약 압수·수색영장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알았다면 임의제출을 거부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는 해당 물건을 임의로 제출할 수 있다. AE은 J지방법원 총무과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전출되었는바, AE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남기고 간 문서파일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용도로 작성된 것이고, 작성주체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해당 문서파일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는 J지방법원이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서 이를 임의제출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해당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함에 있어 AE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다고 하더라도 J지방법원의 임의제출 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J지방법원이 제출한 자료는 감사 관련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출을 거절할 이유도 없다.

2) 다음으로 상세목록 미교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압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그런데 증인 BD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J지방법원에 압수된 전자정보에 관한 상세목록이 교부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BD는 이 법정에서 'BD와 감사계장 BE가 AE이 사용하였던 컴퓨터에서 직접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 선별, 복제하는 작업을 하였고,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직접 목록을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전자정보 압수절차의 대부분을 피압수자 측에서 직접 하였고, 제출한 전자정보 내역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129조에서 압수목록을 교부하도록 한 취지 등에 비추어 검사가 J지방법원에 파일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잘못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검사가 J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제출 협조를 받는 과정에서 사소한 하자가 있었다고는 보이나, 그 절차위반의 정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N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①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고 한다) 이메일 백업파일은 전산망과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보관된 자료로서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는



대법원이므로, 대법원이 아닌 N 개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것은 임의제출자가 잘못 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② 검사는 N으로부터 법원 내부 전산망에 보관 중인 이메일에 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을 뿐, 백업파일에 대한 제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N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코트넷 이메일 백업파일에 대한 압수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집행 목적물을 착오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

2) 임의제출자에게 파일 상세목록이 교부되어야 하는데, 검사는 N에게 파일 상세 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N의 이메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 경위

1) N은 2018. 8. 26. 이메일 임의제출에 동의하는 내용의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교부하였다. N이 작성한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	
본인은 법원 내부전산망에 보관중인 본인의 이메일, 메신저 등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임의제출 포함)함에 동의합니다.	
1. 자료 등을 제공받을 자: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특수1부
2. 자료 등을 제공할 기관:	대법원전산정보센터
3. 제공할 자료 등의 범위	-가입성명: N -아이디: (생략) -주민등록번호: (생략) -요청기간: 2013. 2. 1.부터 2018. 8. 26.까지 -위 기간 동안 송, 수신된 모든 이메일 내용(헤더포함), 이메일 로그, 이메일 첨부자료, 메신저, 쪽지 자료
4. 동의서 유효기간:	작성일로부터 2018. 9. 30.까지

2) N의 이메일에 대하여는 2018. 8. 27.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다.



장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65번길 23,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2층'이고, 방법은 '대법원 전자정보센터 서버에서 대상자들의 이메일 추출 후, 디지털 포렌식 방법으로 이미징하여 제출'하는 것이었다. 법원 측에서는 정보화심의관 BF과 사무관 BG, BH이 현장에 입회하였다.

3) N의 이메일 압수에 관한 현장 조사 보고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다른 임의제출자들에 대한 각 현장 조사 보고서(증거순번 457, 460)에 의하면, 압수할 이메일의 송·수신 기간에 따라 해당되는 코트넷 이메일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추출한 것으로 보인다(즉, 전산정보센터에서는 2018. 5. 27.자 백업파일, 2018. 7. 21.자 백업파일, 운영 중인 전산망을 압수 절차에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8. 5. 27. 이전까지의 이메일은 2018. 5. 27.자 백업파일에서, 2018. 5. 27.부터 2018. 7. 21.까지의 이메일은 2018. 7. 21.자 백업파일에서, 2018. 7. 21. 이후의 이메일은 운영 중인 전산망에서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4)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은 이 법원의 사실조화에 대하여, '사범부전산망 주전산기 백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스템 장애로 인한 데이터 파괴에 대비하여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범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백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압수한 위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이메일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전산망에 직접 로그인하게 하여 대상 이메일을 압수하는 방법과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대상 이메일을 압수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



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에서 임의제출 동의의사는 이메일서비스이용자인 N 등으로부터 확인하고, 실제 압수절차는 이메일서비스제공자인 법원행정처가 보관하고 있는 백업파일 등으로부터 압수하는 방법으로 하여 동의의 주체와 압수의 대상이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실제 압수절차 진행 당시 상황, N의 경우와 같이 선별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던 경우 참여권이 보장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메일 계정 이용자와 검찰, 법원행정처와 검찰 사이에는 이메일 계정 이용자의 임의제출 동의가 있을 시 그 압수절차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는 상호 협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 그 압수절차에서, 운영 중인 전산망이 아니라 백업파일에 대한 압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다르게 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임의제출에 동의한 N 등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서 백업파일을 검찰에 제공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는 정기적으로 백업파일을 생성하여 왔고, 백업파일을 압수의 대상으로 제공한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N 등은 이메일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었고, 범위를 한정하여 임의제출할 수도 있었으나 한정 없이 임의제출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파일 상세목록 미교부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N은 검찰에 상당한 분량의 이메일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와 같은 간략한 압수목록만을 교부받고(증거순번 454), 상세목록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증제번호	압수물건명	수량
1	N 메일전자정보사본	1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파일 명세가 특정된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압수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는 취지(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임의제출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압수에 비하여 압수목록 교부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② 압수목록의 교부는 압수절차가 종료된 후에 작성·교부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와 비교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③ N은 검찰에서 진행한 이메일 선별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압수 범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선별절차를 통하여 당초 검찰이 추출한 이메일 중 상당 부분은 선별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이나, 그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가 제공한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압수한 것에는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압수된 이메일 등 전자정보에 관한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절차위반이라고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



로, 위 사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BB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검사는 BB의 이메일을 임의제출받으면서 AG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사실에 관하여 이를 압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임의제출자에게 파일 상세목록이 교부되어야 하는데, 검사는 BB에게 이를 교부한 적이 없다. BF은 단순 참관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파일 상세목록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않다.

나. 구체적 판단

1)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압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소 불분명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서는 B의 이메일을 압수하면서 BF에게 교부된 압수목록에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61618호 등 피의자 AG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라고 기재된 부분이 확인되나(증기순번 457), 위 압수목록은 압수절차를 종료한 후 작성·교부된 것이고, BB이 그 이전에 직접 작성한 '이메일 등 자료제공 동의서' 등에 특정 사건에 대하여 이메일을 임의제출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위 1.마.2)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이 이메일에 대한 임의제출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이 사건 혐



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B이 이메일 임의제출 당시 특별히 제출하는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B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임의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에 의하면, BB 등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절차 당시 정보화심의관 BF이 이메일 추출 절차에 참여하였고, 검찰은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압수목록을 BF에게 교부하였으며, 파일 상세목록은 바탕화면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4.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의제출의 경우 압수목록 교부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압수목록의 교부 위반으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가 다른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에 비하여 중하지 않은 점,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협조로 이메일에 대한 압수 절차를 전산정보센터에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측 임회인으로 참석한 BF에게 파일 상세목록이 교부되었던 점, 그 밖에 상세목록을 교부받은 BF의 지위와 B B과의 관계, 상세목록 교부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에 비추어 BB에게 압수된 전자정보 상세목록이 직접 교부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압수한 위법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위 4.가.항 및 4.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6. L, AE의 이메일 임의제출로 수집한 증거에 관한 판단

가. 백업파일에서 이메일을 압수한 위법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위 4.가.항 및 4.다.항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파일 상세목록 미교부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위 5.가.항 및 5.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II.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기초 되는 사실관계

가. 2016년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

1) 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은 2016. 8.경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소속 사무원들의 범
 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이라
 고 한다).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J지방법원 판사가 처리하였던 압수
 ·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다만 순번 17
 내지 22 영장은 타 법원의 동종 사건에 관한 것이다).

순번	청구일자 / 결정일자	종류	결과	담당판사	영장번호	증거순번
1	2016. 8. 31.	압수·수색영장 (금융계좌추적용)	일부기각	R	2016-7423	375, 24
2	2016. 9. 12.	압수·수색영장 (금융계좌추적용)	일부기각	R	2016-7729	372, 25
3	2016. 10. 17.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Q	2016-8663	108, 27
4	2016. 10. 17.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Q	2016-8664	109, 27
5	2016. 10. 17.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Q	2016-8665	110, 27
6	2016. 10. 25.	체포영장(U)	발부	R	2016-8915	116, 39
7	2016. 10. 25.	체포영장(T)	발부	R	2016-8916	117, 39
8	2016. 10. 27. / 2016. 10. 28.	구속영장(T)	발부	Q	2016-9013	111, 41
9	2016. 10. 27. / 2016. 10. 28.	구속영장(U)	발부	Q	2016-9014	112, 41
10	2016. 11. 1.	압수·수색영장 (금융계좌추적용)	발부	Q	2016-9113	113, 45
11	2016. 11. 1.	압수·수색영장	기각	Q	-	114, 43



12	2016. 11. 1.	압수·수색영장	기각	Q	-	115, 44
13	2016. 11. 3.	구속기간연장결정(T)	허가	Q	-	118
14	2016. 11. 3.	구속기간연장결정(U)	허가	Q	-	119
15	2016. 11. 3.	압수·수색영장	발부	Q	2016-9209	120, 47
16	2016. 11. 3.	압수·수색영장	발부	Q	2016-9208	121, 47
17	2016. 11. 15.	압수·수색영장	기각	Q	-	49
18	2016. 11. 15.	압수·수색영장	기각	Q	-	49
19	2016. 11. 28.	압수·수색영장 (금융계좌추적용)	기각	Q	-	53
20	2016. 11. 28.	압수·수색영장	기각	Q	-	54
21	2016. 11. 28.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Q	2016-9937	55
22	2016. 11. 28.	압수·수색영장	일부기각	Q	2016-9936	55

2) 2016. 10. 18. 10:10경부터 14:10경까지 위 표 순번 4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J지방법원 1층에 위치한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3)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수사 결과, 집행관사무원 T, U은 2016. 11. 15. J지방법원에 각 기소되었는데, 기소된 내용은 ① 2008. 1.경부터 2016. 10.경까지 강제집행 현장에 필요한 노무인부 수를 부풀린 후, 부풀려진 노무인부 수에 해당하는 노무자 인건비를 노무반장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기 및 ② 2011. 2.경부터 2016. 8.경까지 강제집행한 물건을 보관하는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알선료 명목으로 컨테이너 1개당 25만 원 또는 20만 원을 교부받은 배입수재의 범죄사실이다.

나. AE, M의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의 소지 및 N에게 전달

1) 총무과장 M은 2016. 9. 13.경 기획법관 N에게 2016. 8. 31.자 압수·수색영장청구서(위 표 순번 1) 사본 파일과 2016. 9. 12.자 압수·수색영장(위 표 순번 2) 사본 파일을 각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순번 370, 374).

2) 총무과 감사계장 AE은 앞서 본 각 영장이 청구 및 발부되던 무렵에 위 표 순번 3 내지 16의 각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 파일을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



다(위 표 순번 3 내지 12에 관한 영장 청구서와 13 내지 16의 결정문 또는 영장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고, 위 표 순번 2의 2016. 9. 12.자 압수·수색영장은 제1면의 사본만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순번 6 내지 9 영장청구서 사본은 발부·기각 란에 판사의 날인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3) 또한 AE은 2016. 10. 18.경 N에게 2016. 10. 17.자 압수·수색영장청구서(위 표 순번 3, 4, 5) 사본 파일 3개를, 2016. 11. 3.경 N에게 2016. 11. 1.자 압수·수색영장청구서(위 표 순번 10, 11, 12) 사본 파일 3개를 각 이메일로 송부하였다(증거순번 380, 424).

다. AE의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1) 이 무렵 AE은 법원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한 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조사일자	조사대상자		작성된 문건	증거순번
1	2016. 10. 21.	Y	BO 대표	문답요약서 문답서	183(=390), 391
2	2016. 10. 21.	Z	BP 대표	문답요약서	185
3	2016. 10. 24.	Z, Y	-	문답요약서	187=402
4	2016. 10. 24.	BI	집행관사무원	문답서	188=404
5	2016. 10. 24.	AB	집행관사무원	문답서	190=405
6	2016. 10. 24.	BJ	BQ 대표	문답요약서	189=403
7	2016. 10. 24.	Z	-	문답요약서	102
8	2016. 10. 24.	BK	BQ 대표	문답요약서	103
9	2016. 10. 25.	V	X 대표 (W 운영)	문답요약서	191=410
10	2016. 10. 25.	BL	집행관사무원	문답서	192=411
11	2016. 10. 26.	BM BN	AC 대표 AD 대표	문답요약서	193=41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9-21

12	2016. 10. 26.	BR	아르바이트생	문답서	194=415
13	2016. 10. 26.	BS	아르바이트생	문답서	195=414
14	2016. 10. 26.	U	집행관사무원	전화통화 요약서	420
15	2016. 10. 27.	BT	집행관사무원	문답서	196=419
16	2016. 10. 27.	Y	-	문답요약서	104=197=417
17	2016. 10. 27.	AB	-	문답요약서 메모	105(=423), 106
18	2016. 10. 27.	BU	아르바이트생	문답서	198=418
19	2016. 11. 2.	BI	-	문답요약서	422

2) AE은 위 보고서 문건 대부분을 N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위 각 문건 중 순번 2, 7, 8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의 송부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N은 전달받은 문건 중 일부를 아래 라.항의 보고문건 작성에 활용하였다.

라. N의 P에 대한 총 5회에 걸친 보고서 송부

N은 2016. 10. 18.부터 2016. 11. 4.까지 O P에게 총 5회에 걸쳐 이메일로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건의 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송부하였다(이들 보고서가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보고문건'이다). 이 사건 보고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2.가.항에서 살핀다.

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고문건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보고문건에 기재된 내용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보고문건별로 특히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부분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적시한 부분의 구체적 기재는 아래와 같다.

작성일자	제목
순번	적시된 부분 기재
16.10.18.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보고
①	T, U의 계좌에서 자기 월급 이외의 많은 입금내역 발견(영장전담판사의 전언)
②	2016. 10. 18. 집행관사무실 압수수색 실시
③	수사진행척도에 따라,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④	J지법 전체 집행관 및 사무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도 영장청구되었으나, 영장전담판사가 발부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에 기인하여 이에 대하여는 기각 ⇨ 추후 전체 집행관 및 사무원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 확대 가능성
⑤	서울중앙지법 관내 보관업체 등 특정업체가 거론되고 있고, 다른 모든 법원 집행관사무소



도 동일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 서울 관내 법원 수사 확대 가능성

살피건대, 위 ① 부분은 피의자 측에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그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준비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② 부분은 J지방법원 1층에 위치한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현장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로 N,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J지방법원 구성원들이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수사기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④ 부분은 N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④ 기재 중 계좌추적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되었다는 내용은 사실에 해당하나,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⑤ 부분 중 앞부분은 제보자의 진술로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적시한 부분의 구체적 기재는 아래와 같다.

작성일자	제목
순번	적시된 부분 기재
16.10.21.	J 집행관사무원 등에 대한 수사 등 상황보고
①	노무비청구서철 ⇨ 압수됨
②	가. 서부지검 수사 진행 내역(대표집행관 전언) ■ 2016. 10. 18.(화) 피의자 V(W, X) 소환조사 ● 점심값, 수고비 정도 제공 사실 인정(대표집행관 전언)
③	나. J지법 내부감사 진행 내역 ■ 2016. 10. 21.(금) 총무과 감사계, 피의자 Y 면담 및 문답서(별첨) 작성 ⇨ 검찰 조사 및 진술 내용을 아래와 같이 확인 ● 피의자 T, U에게 부풀린 노무비 지급 사실 자체는 인정
④	■ 2016. 10. 21.(금) 총무과 감사계, 피의자 Z 면담 ● 2015년까지 계속해서 피의자 T, U에게 현금으로 건당 20 내지 30만 원 지급했고, 자신 몫은 챙기지 않았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9-21

⑤	■ 2016. 10. 21.(금) 총무과장, 피의자 T, U 면담 ● 피의자 T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 피의자 U은 명도집행이 어려워 고생했던 현장에서 수고비조로 받은 것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었음																		
⑥	다. 보관업자의 서울 관내 타법원 담당 내역 ⇨ 타법원 수사확대 가능성 ■ 내역 <table border="1" data-bbox="311 566 1417 775"> <thead> <tr> <th>J 보관업체</th> <th>담당 법원</th> <th>대표 및 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BV</td> <td>중앙, 남부, J</td> <td>BX</td> </tr> <tr> <td>BW</td> <td>고양, J</td> <td>피의자 V</td> </tr> <tr> <td>AD</td> <td>J, 남부</td> <td>BN</td> </tr> <tr> <td>W</td> <td>J</td> <td>피의자 BY</td> </tr> <tr> <td>BQ</td> <td>중앙, 남부, J</td> <td>피의자 BK</td> </tr> </tbody> </table>	J 보관업체	담당 법원	대표 및 연락처	BV	중앙, 남부, J	BX	BW	고양, J	피의자 V	AD	J, 남부	BN	W	J	피의자 BY	BQ	중앙, 남부, J	피의자 BK
J 보관업체	담당 법원	대표 및 연락처																	
BV	중앙, 남부, J	BX																	
BW	고양, J	피의자 V																	
AD	J, 남부	BN																	
W	J	피의자 BY																	
BQ	중앙, 남부, J	피의자 BK																	
⑦	7. 추후 수사 예상 내용 ■ 이르면, 다음주 내 피의자 T, U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 피의자 T은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안좋은 것으로 보여져, 밝혀지는 수수액에 따라 영장청구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피의자 U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임																		

살피건대, ① 부분은 집행관사무소를 압수·수색하면서 대표집행관에게 압수목록이 교부되었고(증거순번 28, 23580면), 피의자 측에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다. ② 부분은 AF이 V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M 또는 N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정보의 출처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부분은 감사제에서 Y로부터 직접 청취한 내용으로, 그 진술의 주체가 검찰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외부에 알려진 것으로서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된 AE 작성 문답요약서를 보더라도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한 것이 아니고, AE이 Z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⑤ 부분 또한 M이 T, U을 만나 직접 청취한 내용을 N에게 전해준 것으로, 당사자로부터 직접 확인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시점은 검찰 조사 이전이기도 하여 수사기밀이라고 할 수 없다. ⑥ 부분은 전체적으로 N이 법원 내부 자료를 기



초로 파악한 내용과 그에 따른 의견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중 피의자를 정확히 특정한 부분은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외부에 알려지면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⑦ 부분은 전체적으로 N의 의견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2016. 10. 25.자 1차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적시한 부분의 구체적 기재는 아래와 같다.

작성일자	제목
순번	적시된 부분 기재
16.10.25 1차	J 집행관사무원 등에 대한 수사 등 상황보고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10. 25.(화) 피의자 T, U 체포영장청구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실시간 위치 확인)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상황에서, 피의자들은 본건 수사가 개시되자 공여자를 찾아가 진술조작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③	나. J지법 내부감사 진행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10. 24. 피의자 Z과 피의자 Y 대질 ● 피의자 Z: T, U에게 동일하게 인원을 부풀려 상납하였다고 진술 ● 피의자 Y: Z과 대질진술 결과 2013년도에 몇 번 7:3의 비율로 상납했고 그 이후에는 Z과 동일하게 부풀린 금액 전부를 상납했다고 진술
④	7. 추후 수사 예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포영장발부시, 피의자 T, U 체포 후 구속영장청구

살피건대, ① 부분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의자 등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고, 해당 보고문건이 송부된 시점도 체포영장 발부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부분은 체포영장청구서에서 확인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의자 등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추가적인 증거 조작, 허위 진술 준비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③ 부분은 법원 감사계에서 이루어진 대질 조사로,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다. ④ 부분은 N의 의견으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이 사건 2016. 10. 25.자 2차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적시한 부분의 구체적 기재는 아래와 같다.

작성일자 순번	제목
16.10.25. 2차	J 집행관사무원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보고
①	2016. 10. 25. 오후 체포영장 발부
②	2. 수사기록 5권 2645쪽 수사보고서 내용 ▣ 피의사실 ● 사기: ... 총 1,039회에 걸쳐 노무자 인건비 부풀려 강제집행 신청 채권자들로부터 166,185,500원을 편취함 ● 배임수재: ... 총 293회에 걸쳐 보관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컨테이너 1개당 20만 원의 돈을 받아 합계 148,35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음 ▣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 사기 - Y을 통하여 사기금액 특정: Y 주거지에서 압수한 금품 제공 내역이 기재된 업무일지 내역 및 수표사본 - Z을 통하여 사기금액 특정: 집행관사무실에서 압수한 노무비용청구서철에 기초하여 Z의 기억에 따른 특정, Z이 부풀린 노무비를 피의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메모해둔 메모지 기재내역, 노무비가 Z계좌에 입금되자, 현금 출금된 사실 및 피의자들 계좌에 지속적으로 불상의 현금이 입금된 사실 - 피의자들 계좌내역: 피의자들의 월 급여가 각 250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T의 계좌에는 ... 입금된 내역, 피의자 U 및 처의 계좌에는 ... 입금된 내역 ● 배임수재 - 공여자 V 및 Z의 진술, V 사무실에서 압수한 장비사용 내역(보관한 컨테이너 개수와 집행부서를 기재해둔 장부)를 통하여 금액 특정 - V 및 Z은 2011년 이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Q 등 다른 창고업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계속 수사 시 피의자들 수수금액은 추가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임 ▣ 체포의 필요성: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
③	3. 수사기록 기록목록 등에 따른 수사확대가능성 관련 ▣ 집행 2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AA ⇒ 피의자 입건 가능성 ● 위 수사보고서 중에 Y은 T, U 이외에도 AA(집행 2부 과장) 등에게도 부풀려진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업무일지에 그 근거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T, U에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9-21

	하여는 T, U 해당 부분만을 공범으로 특정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함'이라는 내용이 있음 ■ 집행 3부 사무원 보조로 근무한 AB ⇨ 피의자 입건 가능성 ● 기록목록에, AB가 피의자 T에게 9회에 걸쳐 11,7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수사보고(추가 계좌 거래내역분석))
④	■ 집행관 및 타법원으로서의 확대 가능성 ● 그러나, 피의자 T, U의 체포 및 구속 이후, 수사의 불통이 어디로 될지는 미지수임

살피건대, ① 부분은 N의 보고 시점 기준으로 아직 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므로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② 부분은 수사기관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사실, 증거관계, 피의자들의 행적 등에 관한 것으로 수사기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③ 부분은 AA와 AB가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은 N의 의견으로 보이나, 그 근거가 되는 Y의 진술 내용 및 AB의 송금내역은 수사기관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증거에 관한 것으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④ 부분은 N의 의견으로 보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2016. 11. 4.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비밀로 적시한 부분의 구체적 기재는 아래와 같다.

작성일자	제목
순번	적시된 부분 기재
16.11.4.	J 집행관사무원 수사 등 상황보고 III
①	2016. 10. 28.(금) 피의자 T, U 구속영장 발부
②	● 피의자 T, U이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AC와 AD로부터 동일하게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함
③	■ 2016. 11. 3.(목) AC(피의자 BX, BM), AD(피의자 BN)에 대한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영장청구 및 발부
④	■ 체포영장발부 사실이 사전에 피의자 T, U에게 유출 ● 체포대상 피의자들에게, 그들에 대한 영장발부사실이 법원에서 사전에 유출되었음 ⇨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수사기록 이곳 저곳에서 그 유출경로를 밝히려는 노력들이 엿보임
⑤	■ AC, AD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및 압수물 분석 ⇨ 추가 피의자 입건 및 경우에 따라 타법원으로서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수결과에 따라, AC 및 AD 거래처인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실로 확대가능성 있음 ■ 집행관과의 연루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추가로 집행관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함
--	--

살피건대, ① 부분은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된 이후이므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내용에 해당한다. ② 부분은 외부에 알려질 경우 관련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위험이 있어 영장재판의 비밀에 해당한다. ③ 부분은 보고문건 송부 시점 기준으로 아직 해당 영장이 집행되기 전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 ④ 부분 중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외부에 알려져 전해지고 있는 소문에 근거한 것이거나 N 또는 수사기록을 살펴본 사람의 의견으로 보이나, 검찰이 체포영장 유출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수사기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⑤ 부분의 대부분은 N의 의견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그 근거가 되는 'AC, AD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및 압수물 분석' 부분은 2016. 11. 3.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 부분은 수사기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뒷부분 내용은 N의 의견이거나 감사계 조사 과정에서 청취한 내용이므로 수사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가) 이처럼 이 사건 보고문건의 내용 중 일부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비밀에 해당한다.

나) 한편 N은 이 사건 당시 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획법관으로서 법원 내 중요사건, 법관·직원 관련 사건,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 등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은 이와 같은 기획법관의 보고 대상에 해당하였던바, N은 보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과를 통하여 영장청구서 사본, 감사 자료 등을 수집하거나 영장전담판사를 찾아가 문의를 하는 등 협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N이 작성한 이 사건 보고문건의 내용 중에는 N의 의견에 해당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것으로서 수사기밀로 볼 수 없는 것도 상당수 있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수사기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유지되고 있던 것이어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N이 기획법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공동정범의 법리와 피고인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들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N이 이 사건 보고문건을 5회에 걸쳐 P에게 송부함으로써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수사기밀을 누설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하여 N에게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한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하여 J지방 법원의 직원들과 영장전담판사들에게도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이나 영장청구서 사본 등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을 수집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N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고문건을 보고함으로써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N의 행위가 수사기밀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N과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의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공모의 동기로서 피고인에게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② 보고서 작성을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수사기밀 수집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③ 그리고 N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함에 있어 보고 행위에 관하여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하 차례대로 본다.

다. 피고인에게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N에게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한 수사기밀을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지시 또는 승인(변경된 공소장⁶⁾ 4면 6행 이하)', △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같은 공소장 9면 7행 이하)', △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수사가 확대되는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같은 공소장 9면 17행 이하)' 라고 기재하여⁷⁾ 피고인에

6) 검사가 2020. 7. 27.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20. 8. 13. 이를 허가한 공소장이다.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 중에도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검찰 수사가 집행관 및 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소로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목적으로(같은 공소장 10면 15행 이하)라고 기재하여 같은 목적을 적시하고 있다.



게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이 부분 범행의 구성요건이 아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러한 목적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이자,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과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의 공범들 행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2) 살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기록상 피고인이 P 등으로부터 이런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수사 확대의 저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실행하거나 마련한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법원장의 통상적 업무 보고의 일환으로 2016. 9. 13.자 영장 청구 사실을 P 차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였으며, L, M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지시하였고,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11. 2. 경 T, U에 대하여 채용허가를 취소하였으며, 2016. 11. 21.경에는 대표집행관 AF을 비롯한 집행관 4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이다.

나) 앞서 1.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M, AE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영장 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2016. 11. 3.자 압수·수색영장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 청구, 발부된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을 소지하고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2016. 11. 15. 이후로 청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은 타 법원 집행관 사무소의 동종 비리 사건에 대한 것인데, 만일 피고인에게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였다면 M, AE 등이 타 법원 사건에 관한 자료



수집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다)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법원이 자의적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저지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에는 '영장전담판사가 발부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에 기인하여 이에 대하여는 기각'이라는 기재가 있고, 검사는 이 부분 기재를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노력의 증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장 판사가 고려하는 요소들 중 하나에 관한 표현인 것으로 보일 뿐,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으로 영장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는 이해되지 않으며, 위 영장의 처리자인 Q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라. 피고인이 L, M, K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확보 및 검찰 진술내용 파악의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무국장 L, 총무과장 M, 형사과장 K에게 각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이 ① K에게는 추가 청구되는 영장이 있으면 보고하고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할 것을, ② L, M에게는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그 진술내용 및 영장청구서 사본을 N에게 제공할 것을, ③ N을 통하여 영장전담판사인 Q, R에게는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각종 영장 관련 기록에 나타난 내용들을 알려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AE, M이 형사과를 통하여 관련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을 확보하였고, 그중 상당수를 N에게도 전달한 사실, ② AE은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수의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중 상당수를 N에게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보고문건 및



AE의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③ N은 전달받은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과 조사 자료를 이 사건 보고문건 작성시 활용하였던 사실, ④ AE이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 중 일부도 확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 곧바로 법원장인 피고인이 AE, M, N 등의 각 행위에 대한 총괄적인 지시를 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진술, 그 당시의 객관적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가 존재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먼저 K, L, M의 관련 진술을 보건대, 이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저한 감사를 지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확보 및 전달, 검찰 진술내용 파악에 관한 지시는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법정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가)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진술인은 영장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감사계장이 피고인으로부터 감사 지시를 받았고, 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영장청구서 사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들었다. 진술인이 영장계장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총무과에 전달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입수·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M 등에게 검찰 수사상황 파악을 지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K이나 M으로부터 N에게 자료를 주었다는 등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감사에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고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M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집행관사무원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진술인도 AE에게 관련자들을 조사하라고 했을 뿐이다. 피고인으로부터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진술인이 AE에게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은 영장청구서 사본을 N에게 송부한 것에 관해 이 법정에서 '영장청구서 사본을 N에게 전달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는 없었다. 2016. 9. 13.경 N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등을 송부한 것도 N의 부탁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AE, 영장계장 BZ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E이 영장계로부터 영장청구서 또는 영장 사본을 받게 된 것은 AE이 BZ에게 직접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각 상급자의 지시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가) AE은 이 법정에서 'M으로부터 영장 사본을 받아 오라거나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 자연스럽게 영장계로부터 영장 사본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BZ는 검찰 조사에서 '2016. 10. 18.경 AE으로부터 "지금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침이나 내규를 새로 준비해야 한다. 이제 청구된 영장을 전부 사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영장계에서 보관하고 있던 영장청구서를 사본하여 AE에게 주었다. K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K의 승인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K, L, AE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모두 반복하였기에 법정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 진술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각자의 법정에서의 해명을 살펴보면, (1) K은 검찰 조사 초반에는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판사의 날인이 있기 전의 영장청구서 사본을 제시받은 때부터는 스스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한다. (2) L은 '피고인이 추가로 영장이 청구되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된 부분은 기억에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 당시에도 삭제 요청을 했었고, '피고인이 총무과장에게 N이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협조하라'는 취지로 진술된 부분도 이 사건에 관한 답변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의 법원 내 기획법관과 총무과장 사이의 업무협조에 관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3) AE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 중 "검찰 진술내용"이라고 정리된 부분을 제시 받았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 같아 M이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위 세 사람은 모두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였는바, 이들의 검찰 진술은 거듭된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제시하는 관련 자료를 보고 추측에 기하여 이루어진 답변이거나 검사의 질문과 다른 전제에 선 답변 혹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답변으로서 각자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검찰 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당시의 감사 진행 상황 및 위 각 진술인들의 당시의 업무 분장 상황, 특히 N은



기획법관 뿐 아니라 공보관의 업무도 겸하고 있어 피고인의 지시가 없더라도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법원 직원들에게 요청하고 협조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도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검찰 진술 보다는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5)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N은 주로 M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에는 M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이나 총무과 작성 문건을 받았고, 이후에는 AE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 조사 자료 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인하여 N이 총무과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가) 이 법정에서 M은 N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송부했던 것도 N의 부탁을 받고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N도 '피고인이 진술인에게 M을 통하여 영장 사본을 받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총무과 또는 형사과에 영장 사본을 진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 영장 사본과 감사계 조사 자료는 M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M이 2016. 9. 13.경 N에게 영장 사본 등을 보내주면서 작성한 이메일 본문을 보더라도 N이 M에게 자료 송부를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M, AE의 N에 대한 이메일 내용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6) 피고인이 N을 통하여 영장전담관사이던 Q이나 R에게 영장 관련 자료를 N에게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본다.

N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N은 집행관사무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



을 듣고 Q을 찾아가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고 내용을 파악한 후 이 사건 2016. 10. 18. 자 보고문건에 기재한 사실, 2016. 10. 25. R를 찾아가 양해를 구한 후 T, U에 대한 체포영장청구 수사기록 중 특정 수사보고서를 복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 목록도 열람하였으며, 위 수사보고서 및 수사기록 목록 내용을 이 사건 2016. 10. 25.자 보고문건에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Q은 이 법정에서, N이 영장청구사건에 대해 문의하면 답변해 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작성하는 데 사용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N이 기획법관 내지 공보관으로서의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R도 N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의 보고 누락에 대하여 Q을 질책하였고' 부분의 기재는 피고인이 Q에게 영장 관련 자료의 제공을 지시한 정황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Q이 2016. 10.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관한 형사과의 보고가 누락된 사실로 지적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련 보고가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 Q에게 물어 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이 Q이나 R에게도 영장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7) 위 3) 내지 6)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 M, L이나 Q, R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은 감사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서 또는 N의 요청에 의해 이루



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보고 행위에 관한 공모 여부

1) 이 부분 쟁점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쟁점은, N이 총 5회에 걸쳐 이 사건 보고문건을 P에게 송부한 행위에 피고인이 공모하였는지 여부이다. 검사는 피고인과 N 사이에, N과 Q·R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모 사실을 다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총무과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였을 뿐, N이 별도로 P에게 보고하는지는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보고문건 등 송부에 관한 당시 정황 및 이에 대한 N의 진술

가) N은 2016. 9. 13.경 법원행정처 BB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2016. 8. 31.자 및 2016. 9. 12.자 압수·수색영장 발부 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나) N은 2016. 10. 18.경 CA, BB, CB에게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해당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N은 아래 이메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을 P에게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제목	J지법 집행관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보고
본문	존경하는 CA님, BB, CB님께, 지난 번 J지법 집행관 사무원 계좌 압수수색영장보고에 이은 오늘자 J지법 집행관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보고입니다. 암호는 영문으로 "집행관"입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9-21

	<p>원장님께서 내일 인편으로 보내자고 하셨고, 차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나⁸⁾, 차장님께서 암호 걸어서 메일로 일단 보내달라고 하셔서 차장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원장님의 취지를 살피시어, 제가 이 메일을 보내는 것을 비밀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p> <p>아마 원장님께서 인편으로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서를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p> <p>N 올림</p>
첨부 파일	(161018)지법 집행관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보고

한편 N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2016. 9. 13.자 최초 보고문건 외에 2016. 10. 18.자 보고문건부터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에는 '위 이메일을 보니 피고인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N은 2016. 10. 22. 00:35경 P에게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N은 2016. 10. 24. 09:04경 L, M에게 위 보고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금요일 야간에 원장님께 메일로 보고드린 집행관사무실 관련 보고서입니다.
본문	<p>국장님, 과장님</p> <p>금요일 밤에 원장님께 메일로 보고드렸던 보고서입니다.</p> <p>비밀번호는 영문으로 "집행관"입니다.</p> <p>감사합니다.</p>
첨부 파일	(161021)지법 집행관사무실 수사상황보고

한편 N은 검찰 조사에서는 위 보고문건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P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위 이메일 기재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도

8) 문언상 '말씀드렸으나'의 오기도 보인다.



해당 보고서를 보낸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2016. 10. 25.자 보고문건 2건 및 2016. 11. 4.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서는 N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메일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N은 검찰 조사에서는 이들 보고문건은 피고인에게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어느 순간부터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P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3) N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이메일 및 N의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에서 N의 일부 보고 사실은 인지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보고 행위를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N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보고문건 송부행위에 공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N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N을 통하여 Q·R와 순차 공모하였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해 N은, P의 지시에 따라 2016. 9. 13.자 보고문건 및 이 사건 보고문건을 작성하여 보냈던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N은 이 법정에서 2016. 9. 13.경 무렵 P으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검찰이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상황 파악을 해서 보고하고, 추가로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16. 9. 13.자 보고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보고문건을 계속하여 작성, 송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N은 J지방법원 근무 직전 법원행정처에서 2년간 P과 같이 근무하기도 하여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이러



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P은 실제로 N에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0. 18. J지방법원 1층 집행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N에게 특별히 지시를 한 사항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N의 법정 진술 및 이메일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N이 2016. 9. 13.자 보고문건 및 이 사건 2016. 10. 18.자, 2016. 10. 21.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㉔ 특별한 반응 없이 이를 용인하였거나(2016. 9. 13.건), 또는 ㉕ 사후적으로 그 의사를 전달받았고(2016. 10. 21.건), ㉖ 심지어 제지한 적도 있다는 것(2016. 10. 18.건)이다.

○ N은 이 법정에서, 2016. 9. 13.자 보고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하라' 내지는 '알았다' 정도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N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서가 완성된 시점이 2016. 10. 18. 퇴근 이후였던 것 같은데, 진술인이 피고인에게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전화를 해서 P이 보고를 해달라고 한다고 말씀드리자 피고인은 내일 인편으로 보내면 되니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다시 P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뜻을 전하였는데 P이 급히 보고서가 필요하니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는 이메일로 보낸다는 말을 하지 않고 보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런 일이 한 번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 N은 피고인의 퇴근 시간 후인 2016. 10. 22. 00:35경 P에게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에게도 그 무렵 이메일로 위 보고문건을 송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2016. 9. 13.자 보고문건 및 이 사건 보고문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N의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위 각 보고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 N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6. 9. 13.자 보고문건만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 및 2016. 10. 21.자 보고문건과 관련하여 이메일 기재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해당 보고문건을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그런데 2016. 9. 13.자 보고문건에 관하여도, N은 이 법정에서 '첫 보고는 피고인에게 대면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후 보고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N의 위 보고서 완성 시각이 2016. 9. 13. 18:15경이고 그 날은 추석연휴 바로 전날이어서 법원장인 피고인이 그 시각까지 청사에 남아 있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바, N이 피고인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였다는 이 부분 진술은 정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이다.

라) N은 위 2)항에서 본 것처럼 2016. 10. 18. 피고인에게는 비밀로 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보고서를 메일로 보내기도 하였는데, N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면 이처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 몰래 보고서를 보낼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직접 총무과에 지시하여 2016. 9. 13.경⁹⁾ 및 2016. 10. 19.경¹⁰⁾ 법원

9) 이때 법원행정처에 인편으로 송부된 보고서가 어떤 것이었는지 다소 불분명하다. 피고인 측은 2016. 9. 13. 총무과에서 법원행정처에 인편으로 송부한 보고서가 증거순번 150(증거순번 177, 281, 377과 동일) 문건이라고 주장한다(그리고 N이 해당 문건에 숫자 2개만을 추가한 증거순번 379 문건을 2016. 9. 13. B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AB은 검찰



행정처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2회에 걸쳐 인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법원행정처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 절차를 취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 외의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행정처와 연락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상 피고인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연락할 만한 동기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검사는 총무과에서 인편으로 송부한 보고서도 P 또는 AX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 10. 18.자 총무과 작성 보고서(증거순번 74) 기재 및 L의 면담 녹취록 기재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9권, 179261면), 위 보고서는 CC 또는 윤리감사관실로 송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식적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바)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 M, K에게 영장청구서 사본 및 검찰 진술내용을 확보하여 N의 보고문건 작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이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고문건을 P에게 송부하였다는 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나, 피고인이 L, M, K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조사에서 증거순번 150 문건과 유사한 형태인 증거순번 83 문건(증거순번 150의 수정 전 문건으로 보인다)에 대하여 N이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이 법정에서는 증거순번 83, 150 문건에 대하여 본인이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N도 이 법정에서 증거순번 377 문건은 진술인이 작성한 문건을 기초로 일부 수정된 것으로 보이고, 증거순번 83 문건은 진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증거순번 371 문건의 경우가 진술인이 총무과로부터 받았던 초안과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순번 371 문건은 작성일자가 2016. 2. 16.로 되어 있는 등 2016. 9. 13.에 송부된 보고서로 보이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내용이 동일하고 작성일자는 2016. 9. 13.로 수정된 문건이 AE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증거순번 248) 등에 비추어 보면, 총무과에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문건은 증거순번 248 문건일 개인성이 높다고 보인다. 증거순번 377 문건은 N이 증거순번 371 문건을 기초로 대체적으로 작성할 것을 M 등이 일부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행정처에 송부된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의 별론으로 하고, 증거순번 248 문건이나 증거순번 150 문건은 형식에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10) 다만, 2016. 10. 19. 인편으로 송부된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이 대립한다.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에 인편으로 보내졌다고 한 보고서가 진술인이 작성한 보고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20. 4. 24.자 증언, 26면), 검사는 이에 근거하여 인편으로 송부된 보고서가 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6. 10. 18. 총무과에서 작성한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235, 62669면), 이 법정에서도 총무과에서 작성한 문건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2016. 10. 18.자로 작성한 보고서(이 사건 2016. 10. 18.자 보고문건)와는 그 내용과 형식에 차이가 있는 다른 문건이다'가 완결된 형태로 M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2016. 10. 19. 법원행정처에 인편으로 송부된 보고서는 총무과에서 작성한 것(증거순번 74)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소결론

이처럼 1) 피고인에게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L이나 M 등에게 수사 관련 기밀을 수집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2) N이 이 사건 보고문건을 P에게 송부하는 데 대하여 이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공모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공범으로 적시된 N은 기소되지 않아 이에 대한 N의 방어권 행사 및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보고 행위가 누설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든 것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



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K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피고인에게 감사의 목적을 초과한 수사 확대 저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2) 영장청구서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K의 법정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에도 통상적인 업무로서 영장 공람결재를 하고 있고,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종국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영장청구사건의 접수 사실을 별도로 보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K의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사 피고인이 K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더라도, 그 지시는 정당한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이므로,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모든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 감사계장인 AE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② AE이 2016. 10. 17.자 영장청구서 사본 3부, 2016. 11. 1.자 영장청구서 사본 3부를 N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던 사실은 앞서 1.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2.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K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AE이 BZ에게 직접 부탁하여 영장청구서 사본을 받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K은 BZ로부터 AE이 감사에 참고하기



위해 영장청구서 사본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K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총무과에 제공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그러한 내용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L·M·AF·AE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AF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가) AF이 검찰 조사에서 M의 지시를 받고 사건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AF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확인한 검찰 진술내용이 이 사건 2016. 10. 21.자 보고문건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① 이 부분 공소사실은 M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은 AF이 V, BJ의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 및 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AF의 검찰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V·BJ으로부터 확인한 검찰 진술내용을 M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인지 집행관사무소 창고에 방문한 N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AF의 진술에 의하면, N이 갑자기 집행관사무소로 내려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했다는 것이다). 한편 M은 이 법정에서 AF에게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그때그때 물어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AF의 검찰 진술만으로 AF이 M의 지시를 받고 해당 내용을 N 등에게 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또한 피고인이 L·M에게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위 2.라.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이처럼 피고인이 L·M에게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그 진술내용을 N에게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M이 이를 AF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



은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M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M은 이 법정에서 N의 부탁을 받고 집행관사무소에서 T, U을 면담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N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T, U이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일자 2016. 10. 26.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이 조사 일자보다 앞선 2016. 10. 21.경 T, U으로부터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AE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8]

가)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8 기재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는 AE이 사건 관련자들을 면담하여 작성한 문답서 또는 문답요약서로 보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나) 이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6과 관련하여서는, 문답서 및 문답요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AE이 관련자들로부터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순번 4와 관련하여 노무업체 대표 Y에 관한 문답서 및 문답요약서에는 검찰 진술내용, 검찰에서 압수한 압수물에 관한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부분의 전후 맥락 등을 보면, AE이 검찰 진술내용과 검찰 압수물 내역을 알아보고자 이를 질문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자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AE의 사실관계 확인 질문에 대하여 답하다 보니 자발적으로 검찰 진술내용을 언급하면서 부연설명을 하는 등 이를 자연스럽게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E이 2016. 10. 24.경 L에게 감사 진행에 관하여 보고한 문건에도 해당 조사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위 문건



에도 확인된 사실관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검찰 진술내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순번 5와 관련하여 노무업체 대표 Z에 관한 문답요약서를 보건대, 위 요약서 작성 당시에는 사실관계 확인만 이루어졌을 뿐, 검찰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순번 6과 관련하여 보관업체 대표 V에 대한 문답요약서를 보건대, '동일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 한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위 표 순번 7, 8번과 관련하여서는 AE이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 순번 7과 관련하여 집행관사무원 AB에 대한 AE의 메모 및 문답요약서를 보건대, 제목이 'AB 참고인 조사'이고, 본문에 AB가 2016. 10. 27.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실제로 AB는 그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의 질문사항과 그에 대한 AB의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증거 순번 105, 106).

○ 순번 8과 관련하여 집행관사무원 BI에 대한 문답요약서를 보건대, 제목이 'BI 집행관사무원 참고인 조사'이고, 본문에 검찰 진술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422).

라)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E이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8 기재와 같이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M에게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내용을 파악하여 그 진술내용을 N에게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M이 이를 AE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앞서 2.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L은 피고인으로부터 검찰 진술내



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M도 피고인으로부터 검찰 진술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자신이 AE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AE은 이 법정에서 '감사에 필요한 조사를 한 것이고,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AB, BI를 조사한 것이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A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조사 내용을 직접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M, L은 AE으로부터 면담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문건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검찰 진술내용이 기재된 2016. 10. 27.자 AB에 대한 문답요약서, 2016. 11. 2.자 BI에 대한 문답요약서가 2016. 11. 3.경 N에게 이메일로 전달된 사실은 확인된다(증거순번 421). 그러나 이와 관련된 AE, N의 진술을 살펴보면, N이 M 또는 AE에게 자료를 요청하였고, AE이 이를 송부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이처럼 AE이 AB, BI에 대하여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한 시점은 2016. 10. 27.경 및 2016. 11. 2.경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0. 18.경 피고인의 검찰 진술내용 파악 지시가 있었다면, AE이 2016. 10. 21.부터 10. 26.까지 다수를 조사하면서는 매번 검찰 진술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나 L에게 보고한 2016. 10. 24.자 중간보고서에 검찰 진술내용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6) 또한 검사는 M의 업무수첩에 "피의자 전환 가능성: AB, BI"라는 기재가 있음을 들어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위 기재는 2016. 11.



9.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재만으로는 이것이 피고인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B, BI에 대한 검찰 진술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본

이처럼 피고인이 L, M, K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직권남용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L, M, K, AE, AF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래니 _____

 판사 이진아 _____

 판사 신철순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9-2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일자	대상자	내용
1	2016. 10. 18.	K	2016. 10. 17. 발부된 J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3부를 사본하여 보고하고 총무과에 제공
2	2016. 10. 25.	K	2016. 10. 25. 접수된 T, U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서 각 1부를 사본하여 보고하고 총무과에 제공
3	2016. 10. 28.	K	2016. 10. 28. 접수된 T, U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각 1부를 사본하여 보고하고 총무과에 제공
4	2016. 11. 1.	K	2016. 11. 1. 발부, 기각된 AC 운영자 BM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3부를 사본하여 보고하고 총무과에 제공
5	2016. 11. 3.	K	2016. 11. 3. 발부된 AC 운영자 BM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청구서 2부를 사본하여 보고하고 총무과에 제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0-09-21

범죄일람표(2)

순번	일자	대상자	내용
1	2016. 10. 18.	L M AF	T, U에게 금품을 제공한 W 운영자 V로부터 '점심값, 수고비 정도를 집행과장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
2	2016. 10. 20.	L M AF	T, U에게 금품을 제공한 BQ 운영자 BJ으로부터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
3	2016. 10. 21.	L M	T, U으로부터 '수표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내용, 'V가 검찰에서 T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
4	2016. 10. 21.	L M AE	T, U에게 강제집행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노무자 인건비를 제공한 노무업자 Y로부터 'T, U에게 부풀린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그 내용이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
5	2016. 10. 21.	L M AE	노무업자 Z로부터 '2015년경부터 계속하여 T, U에게 현금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
6	2016. 10. 25.	L M AE	보관업자 V로부터 '채권자로부터 110만 원을 입금받으면 30만 원을 Z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
7	2016. 10. 27.	L M AE	집행3부 사무원 AB로부터 '용역업체 및 보관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그동안 집행현장에서 용역 인원 확인은 집행관이 아니라 T, U 등 집행관 사무원이 했으며, 인원을 부풀려 요청한 사실을 집행관들이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
8	2016. 11. 2.	L M AE	집행1부 사무원 BI로부터 '용역업체 및 보관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용역인원을 부풀려서 요청하고 현장에 요청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왔을 때 집행관이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내용 확인 및 보고